第4代 議會

議政白書



忠清南道議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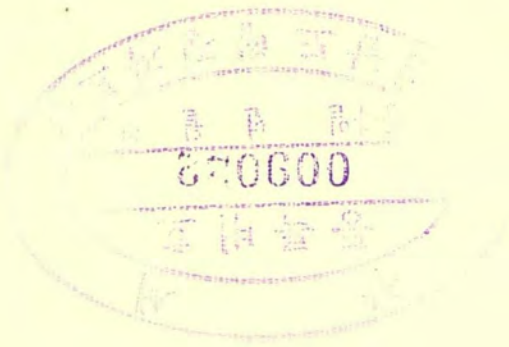

第4代 議會

議政白書



忠淸南道議會



충 청 남 도 의 회

The Chungcheongnam-do Provincial Council

發 刊 辭



지난 제4대 도 의회의 의정활동 사항을 정리하여 「第4代 忠淸南道議會 議政白書」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년전인 1991년 7월,

30년동안 단절되었던 지방자치가 기나긴 동면을 깨고 제4대 의회가 처음 개원 되었을 때, 벅차고 설레이던 감동은 지금도 가슴에 잔잔히 흐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많은 희생과 민주화의 투쟁으로 되찾은 풀뿌리 민주주의는 우리 의정사에 찬란히 빛날 것입니다.

이번에 제4대 의회의 의정활동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지난 제4대 의회의 당시 새롭게 출범한 지방의회의 의원으로써 우리 도의 앞날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걱정하면서 정열을 쏟았던 소중한 시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歷史는 現在와 未來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道 의회의 발자취를 더듬어 재 조명함으로써 역사의 순리와 지혜를 배우고 지방의 어려움을 극복함은 물론 한 차원 높은 의정 활동을 구현할 수 있도록 큰 디딤돌을 놓는 일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가 21세기 세계속의 지방자치단체로 전진하기 위한 소중한 자료로 본 「議政白書」가 활용되기를 바라면서 편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2000년 10월 일

충청남도의회의장 金載鳳

祝 刊 辭



「第4代 忠淸南道議會 議政白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91년 제4대 도의회가 출범함으로서 획일적인 중앙정치의 긴 터널을 지나 명실상부한 지방 자치가 30년만에 부활 되었습니다.

지난 제4대 의회의 의정활동을 미루어 생각해 보니 비록 서툴었지만 열악한 조건하에서도 열심히 배우며 주민의 뜻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왕성하게 활동했던 동료 의원들의 모습이 커다란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21세기의 길목에 서있습니다.

역사는 흘러간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고뇌와 애환이 담겨있는 살아있는 정신입니다. 시대를 정리 할 줄 아는 민족은 내일을 올바르게 내다보고 건설적인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희망의 화두를 가슴에 안고 살아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第4代 忠淸南道議會 議政白書」의 발간은 이 고장의 민주역사를 돌이켜 볼 수 있는 커다란 매듭이며 의회의 활동 사항을 도민에게 알릴 수 있는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족한 저희 활동을 애써 정리해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노고를 치하드리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온몸으로 외치어 주신 제4대 충청남도의회 의원님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10월 일

제4대 충청남도의회의장 李大熙

第4代 忠淸南道議會

前 半 期 議 長 團

('91. 7 ~ '93. 6)



議　長

李　大　熙



副 議 長

金　容　鎬



副 議 長

金　高　盛

第4代 忠淸南道議會

前半期 常任委員長

('91. 7 ~ '93. 6)



運營委員長

鄭 善 興



內務委員長

李 鍾 洙



敎育社會委員長

金 基 興



農林水產委員長

李 根 容



地域經濟委員長

孟 致 鎬



建設委員長

金 顯 根

第4代 忠淸南道議會

後半期 議長團

('93. 7 ~ '95. 7)



議　長

李　大　熙



副議長

金　容　鎬



副議長

李　鍾　洙

第4代 忠淸南道議會

後半期 常任委員長

('93. 7 ~ '95. 7)



運營委員長
金 顯 根



企劃經濟委員長
柳 在 元



內務委員長
田 溶 鳥



敎育社會委員長
李 福 求



農林水產委員長
金 成 振



建設委員長
李 甲 俊

議　　員

第4代　忠淸南道 議會議員 名單

성 명(생년월일)	학력 및 경력	주소/전화번호
 文　性　珪 (28. 8. 30)	**천안시 제1(민자)** • 경희대한의학과졸 • 충남도한의사회장 • 민자당충남도부위원장 • 민주평통자문회의부의장 • 제4대 농림수산위원회위원(전) • 제4대 교육사회위원회위원(후)	천안시 사직동 176-9 自 : (041) 551-8271 事 : (041) 551-8272
 李　鍾　洙 (32. 7. 9)	**천안시 제2(민자)** • 단국대경영대학원졸(석사) • 민주평통천안시협의회장 • 충남상공회의소부회장 • 충남발전협의회부회장 • 제4대 내무위원회위원장 겸 운영위원회위원(전) • 제4대 부의장(후) • 제4대 기획경제위원회위원(후) – 예결특별위원회위원장	천안시 원성동 551-1 우성5차A 501호 自 : (041) 551-3856
 孟　致　鎬 (27. 7. 29)	**천안시 제3(민자)** • 중앙대산업경제대학원수료 • (주)광복운수대표이사 • 상이군경회충남지부장 • 도체육회이사 • 제4대 지역경제위원회위원장 겸 운영위원회위원(전) • 제4대 농림수산위원회위원(후)	천안시 봉명동 54-17 自 : (041) 572-8589 事 : (041) 575-7733

성 명(생년월일)	학력 및 경력	주소/전화번호
 金 善 泰 (55. 9. 5)	**공주시 제1(민자)** • 단국대건축공학과졸 • 제세당건재약방대표 • 공주시의용소방대장 • 자유총연맹공주시지부장 • 한국한약수출입조합이사 • 제4대 내무위원회간사(전) • 제4대 기획경제위원회간사 겸 운영위원회위원(후)	공주시 교동 115-2 自 : (041) 854-5555 事 : (041) 855-2452
 羅 榮 珍 (53. 2. 11)	**공주시 제2(민자)** • 충남대행정대학원수료 • 새마을협의회공주시지회장 • 민자당공주지구당부위원장 • 웅진산업사대표 • 제4대 교육사회위원회위원(전) • 제4대 내무위원회간사 겸 운영위원회위원(후) – 예결특별위원회간사 – 도청이전특별위원회간사	공주시 금흥동 527-8 自 : (041) 855-2828
 朴 鍾 武 (33. 6. 19)	**대천시 제1(민자)** • 충남대경영대학원수료 • 충남탄광협회회장 • 태권도시군연합회장 • 민주평통자문위원 • 제4대 건설위원회위원(전 · 후) – 예결특별위원회위원장	보령시 대천동 태영A 2동 1606호 自 : (041) 933-5555 事 : (041) 933-9999
 李 時 雨 (48. 7. 11)	**대천시 제2(민주)** • 충남대경영대학원수료 • 한국JC중앙임원 • 평민당대천보령지구당위원장 • 13대국회의원입후보 • 제4대 건설위원회위원(전) • 제4대 내무위원회위원(후) – 예결특별위원회간사	보령시 대천동 210-26 自 : (041) 935-2700 事 : (041) 935-9043

성 명(생년월일)	학력 및 경력	주소/전화번호
 金 載 鳳 (39. 8. 14)	**온양시 제1(민주)** • 단국대행정대학원졸 • 온양JC회장 • 국도정홍보위원 • 통일원통일교육전문위원 • 제4대 내무위원회위원 겸 운영위원회위원(전) • 제4대 기획경제위원회위원(후) – 결산검사대표위원	아산시 풍기동 231 인정프린스A 101/1305 自 : (041) 545-3488
 李 福 求 (45. 10. 17)	**서산시 제1(민자)** • 동국대농학과졸 • 향토예비군중대장 • 서산JC회장 • 민정당서산태안지구당사무국장 • 민주평통자문위원 • 제4대 농림수산위원회간사 • 제4대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서산시 읍내동 212 自 : (041) 665-2692 事 : (041) 665-4469
 李 甲 俊 (38. 8. 7)	**서산시 제2(민자)** • 대전공고졸 • 건축사협회충남지부장 • 충남종합건설계획심의위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제4대 건설위원회위원(전) • 제4대 건설위원회위원장(후)	서산시 동문동 863-11 自 : (041) 665-2398
 金 顯 根 (38. 11. 3)	**금산군 제1(민자)** • 충남대법과졸 • 금산군산림조합장 • 금산군반공연맹지부장 • 삼일새마을금고이사장 • 금산군평통협의회장 • 제4대 건설위원회위원장 겸 운영위원회위원(전) • 제4대 운영위원회위원장 겸 기획경제위원회위원(후)	금산군 금산읍 삼일A 2/706 自 : (041) 751-2233

성 명(생년월일)	학력 및 경력	주소/전화번호
 崔 源 植 (34. 9. 28)	**금산군 제2(민자)** • 대전공고졸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자당중앙상무위원 • 민자당금산지구당부위원장 • 제4대 지역경제위원회위원(전) • 제4대 내무위원회위원(후) – 예결특별위원회위원장	금산군 추부면 신평리 308 自 : (041) 752-5879
 梁 熙 喆 (36. 7. 2)	**금산군 제3(민자)** • 금산농고졸 • 금산남일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 금산군새마을지회장 • 금산라이온스클럽회장 • 제4대 농림수산위원회위원(전 · 후)	금산군 남일면 신정리 178 自 : (041) 752-9109
 李 基 鳳 (36. 12. 28)	**연기군 제1(민자)** • 충남대행정대학원수료 • 조치원문화원장 • 라이온스309-E지구부총재 • 조치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4대 내무위원회위원(전) • 제4대 교육사회위원회위원 겸 운영위원회위원(후) – 예결특별위원회간사	연기군 조치원읍 침산리 욱일A 111동 1402호 自 : (041) 865-2828 事 : (041) 865-5801
 康 基 世 (36. 10. 10)	**연기군 제2(민자)** • 서울대약학대학졸 • 라이온스309-E지구부총재 • 민주평통자문위원 • 금남마을금고이사장 • 제4대 농림수산위원회위원(전) • 제4대 내무위원회위원(후) – 예결특별위원회위원장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205 自 : (041) 866-7018 事 : (041) 866-7018

성 명(생년월일)	학력 및 경력	주소/전화번호
 金 高 盛 (41. 7. 25)	**연기군 제3(민자)** • 경희대경영대학원수료 • 흥진건설 · 강내레미콘(주)회장 • 충남축구협회회장 • 자유총연맹충남지부장 • 민자당충남부위원장 • 제4대 부의장(전) • 제4대 교육사회위원회위원(전) • 제4대 건설위원회위원(후)	연기군 전동면 송성리 217 自 : (041) 862-4842 事 : (041) 865-8100
 具 輿 書 (44. 11. 1)	**공주군 제1(민자)** • 한양대공학대졸 • 공주군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 • 자유총연맹공주군지부장 • 민정당충남5지구당연락소장 • 유진건설부사장 • 제4대 건설위원회간사(전) • 제4대 건설위원회위원(후) – 백제문화권개발특별위원회위원장	공주시 금흥동 현대A 402동 901호 自 : (041) 881-7766 事 : (041) 855-3188
 柳 在 元 (50. 8. 25)	**공주군 제2(민자)** • 고려대경영대학원수료 • 대림산업(주)근무 • 인풍건설(주)회장 • (주)인풍 · 인풍비전회장 • 민주평통자문위원 • 제4대 건설위원회위원(전) • 제4대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후) – 예결특별위원회간사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3단지 352-412 自 : (02) 448-1450 事 : (02) 474-7266
 趙 日 東 (45. 3. 20)	**공주군 제3(민자)** • 중앙대법과졸 • 공주시민통협의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제4대 내무위원회위원(전 · 후) • 제4대 운영위원회위원(전) – 백제문화권개발특별위원회위원장 – 예결특별위원회위원장	공주시 신관동 한아름A 1007호 自 : (041) 855-2450 事 : (041) 855-3501

성 명(생년월일)	학력 및 경력	주소/전화번호
 朴 元 來 (50. 5. 4)	**논산군 제1(민자)** • 중앙대약대졸 • 충남근대5종경기연맹회장 • 논산군약사회장 • 대우약국대표 • 민주평통자문위원 • 제4대 건설위원회위원(전) • 제4대 내무위원회위원(후) – 백제문화권개발특별위원회간사	논산시 화지동 45 自 : (041) 732-3952 事 : (041) 735-3952
 孔 均 (44. 1. 5)	**논산군 제2(민자)** • 충남대경영대학원, 행정대학원수료 • 신진물산대표이사 • 충남직장새마을협의회부회장 • 국제라이온스309-E지구총재 •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충남북지부장 • 민자당충남홍보분과위원장 • 제4대 내무위원회위원(전) • 제4대 기획경제위원회위원(후)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532 自 : (042) 482-1988 事 : (041) 745-1234
 金 容 鎬 (34. 5. 7)	**논산군 제3(민자)** • 중앙대산업경제대학원수료 • 대호종합건설(주)대표 • 동학사온천개발(주)회장 • 광산신용협동조합장 • 제4대 부의장(전 · 후) • 제4대 내무위원회위원(전) • 제4대 교육사회위원회위원(후)	논산시 부창3동 276-96 自 : (041) 735-5839 事 : (041) 742-6150
 劉 載 甲 (30. 10. 16)	**부여군 제1(민자)** • 충남대경영대학원수료 •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 부여고총동창회장 • 민자당도의회의원협의회장 • 제4대 내무위원회위원 겸 운영위원회위원(전) • 제4대 농림수산위원회위원(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1-5 自 : (041) 835-2088 事 : (041) 834-3030

성 명(생년월일)	학력 및 경력	주소/전화번호
 李 準 喆 (32. 7. 4)	**부여군 제2(민자)** • 고려대대학원수료 • 충남도정자문위원 • 민자당충남도수석부위원장 • 재건국민운동충남부위원장 • 제4대 건설위원회위원 겸 운영위원회위원(전) • 제4대 교육사회위원회위원(후)	부여군 홍산면 남촌리 103-3 自 : (041) 836-1025 事 : (041) 835-1077
 趙 吉 衍 (51. 9. 6)	**부여군 제3(민자)** • 인천체육전문대졸 • 부여청년회의소회장 • 충남체육회이사 • 제4대 운영위원회간사 겸 교육사회위원회위원(전) • 제4대 운영위원회간사 겸 내무위원회위원(후)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374 自 : (041) 835-4212 事 : (041) 833-6255
 宋 善 圭 (37. 9. 25)	**서천군 제1(민자)** • 충남대행정대학원수료 • 서천군한약협회장 • 장항로타리클럽회장 • 민자당서천지구당부위원장 • 제4대 교육사회위원회간사(전) • 제4대 교육사회위원회위원(후) - 서해안개발특별위원회위원장	서천군 장항읍 창선1리 248 自 : (041) 956-2823 事 : (041) 956-0373
 羅 信 燦 (37. 5. 25)	**서천군 제2(국민)** • 건국대법정대졸 • 시군공무원(63~71) • 서천군개발위원회위원장 • 서천고총동창회장 • 제4대 내무위원회위원(전) • 제4대 기획경제위원회위원 겸 운영위원회위원(후)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481-11 自 : (041) 951-4567

성 명(생년월일)	학력 및 경력	주소/전화번호
 李 相 敦 (48. 9. 30)	**서천군 제3(민자)** • 명지대사회교육원수료 • 서천군체육회이사 • 민자당중앙수산분과부위원장 • 라이온스309-E지구동백클럽회장 • 제4대 농림수산위원회위원(전 · 후) – 조례개정특별위원회간사 – 예결특별위원회간사	서천군 서면 도둔리 132 自 : (041) 952-2514
 姜 信 國 (33. 2. 14)	**보령군 제1(민자)** • 건국대행정학과졸 • 대천수협조합장 • 민자당대천 · 보령지구당부위원장 • 제4대 농림수산위원회위원(전 · 후) • 제4대 운영위원회위원(전) – 예결특별위원회위원장	보령시 주교면 은포리 567 自 : (041) 932-4833
 申 載 元 (43. 4. 10)	**보령군 제2(민자)** • 경희대한의학과졸 • 자유총연맹대천시지부장 • 신진한의원원장 • 보령군축협조합장 • 제4대 내무위원회위원(전) • 제4대 교육사회위원회위원(후)	보령시 동대동 983-96 自 : (041) 935-3547 事 : (041) 934-1553
 李 大 熙 (38. 2. 27)	**보령군 제3(민자)** • 한국외국어대불어과졸 • 보령군개발위원장 • 민자당중앙상무위원 • 제13대 국회의원입후보(민정) • 제4대 의장(전 · 후)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463-8 自 : (041) 933-2252

성 명(생년월일)	학력 및 경력	주소/전화번호
 鄭 善 興 (38. 10. 12)	**청양군 제1(민자)** • 고려대경영대학원수료 • 청양중 · 농고연합동창회장 • 대한민국광복회원 • 대명가스상사 대표 • 국가대표배구선수 및 감독 • 제4대 운영위원회위원장 겸 내무위원회위원(전) • 제4대 기획경제위원회위원(후)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161 自 : (042) 523-2611 事 : (042) 522-6485
 禹 智 命 (43. 8. 25)	**청양군 제2(민자)** • 충북대약학과졸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청양군약사회장 • 정산중학교육성회장 • 제4대 교육사회위원회위원(전) • 제4대 내무위원회위원(후) –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간사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123 自 : (041) 942-0400 事 : (041) 942-0025
 徐 重 喆 (39. 6. 24)	**홍성군 제1(민주)** • 한남대지역개발대학원수료 • 홍성라이온스클럽회장 • 민주당중앙상무위원 • 홍성군개발위원회이사 • 제4대 교육사회위원회위원(전) • 제4대 농림수산위원회위원(후) – 예결특별위원회간사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85-9 自 : (041) 632-3728 事 : (041) 632-2577
 金 榮 昶 (36. 6. 19)	**홍성군 제2(민자)** • 성균관대약대졸 • 홍성군약사회장 • 광천로타리클럽회장 • 광천의용소방대장 • 제4대 교육사회위원회위원(전 · 후)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179 自 : (041) 641-2022 事 : (041) 634-2999

성 명(생년월일)	학력 및 경력	주소/전화번호
 田 溶 鳥 (40. 5. 20)	**홍성군 제3(민자)** • 충남대경영대학원수료 • 충남지구JC회장 • (주)호서레미콘사장 • (주)서오개발부사장 • 제4대 건설위원회위원(전) • 제4대 내무위원회위원장(후) – 서해안개발특별위원회위원장	보령시 대천동 37-11 보령A 나동 105호 自 : (041) 935-2020 事 : (041) 934-4334
 李 根 容 (29. 9. 30)	**예산군 제1(민자)** • 예산농고졸 • 예산농업협동조합장 • 예산군개발위원장 • 충남개발위원회부회장 • 제4대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겸 운영위원회위원(전) • 제4대 농림수산위원회위원(후) – 조례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군 예산읍 석양리 195 自 : (041) 334-3890
 韓 道 源 (32. 5. 22)	**예산군 제2(민자)** • 동양공고졸 • 대산건설(주)대표이사 • 평통자문회의예산군협의회장 • 제4대 지역경제위원회위원(전) • 제4대 건설위원회위원(후) – 예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군 삽교읍 두리 575-24 自 : (041) 337-7007 事 : (041) 331-2919
 李 東 旭 (37. 7. 9)	**예산군 제3(민자)** • 단국대법정학부졸 • 예비군중대장 • 신양농협조합장 • 민자당예산지구당부위원장 • 제4대 지역경제위원회위원(전) • 제4대 농림수산위원회위원(후) – 예결특별위원회간사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705 自 : (041) 333-4641

성 명(생년월일)	학력 및 경력	주소/전화번호
 姜 模 俊 (37. 10. 25)	**서산군 제1(무)** • 성균관대법학과졸 •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 부남우체국장 • 부석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4대 지역경제위원회위원(전) • 제4대 기획경제위원회위원(후)	서산시 부석면 대두리 423 自 : (041) 662-4130 事 : (041) 662-4013
 金 珍 經 (41. 12. 16)	**서산군 제2(민자)** • 서울배문고졸 • 서산군개발위원장 • 대신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4대 내무위원회위원(전) • 제4대 교육사회위원회위원(후) – 서해안개발특별위원회간사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133-11 自 : (041) 663-3033 事 : (041) 663-8512
 金 基 興 (38. 10. 10)	**서산군 제3(민자)** • 성균관대법학과졸 •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 서산현대자동차운전학원회장 • 서산군체육회상임부회장 • 제4대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겸 운영위원회위원(전) • 제4대 내무위원회위원(후)	서산시 음암면 유계리 464 自 : (041) 660-2203 事 : (041) 660-2201
 金 世 鎬 (50. 2. 26)	**태안군 제1(민자)** • 한양대행정학과졸 • 전국별정우체국장향상회충남지부장 • 충남유도협회회장 • 민자당충남도부위원장 • 제4대 지역경제위원회간사(전) • 제4대 기획경제위원회위원(후) – 예결특별위원회간사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52 自 : (041) 674-2147

성 명(생년월일)	학력 및 경력	주소/전화번호
 朴 東 允 (50. 3. 5)	**태안군 제2(민자)** • 명지대행정학과졸 • 안면JC회장 • 태안군재향군인회부회장 • 동성건설대표 • 제4대 지역경제위원회위원(전) • 제4대 건설위원회위원(후) – 예결특별위원회간사 – 서해안개발특위간사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142 自 : (041) 673-5158 事 : (041) 673-3507
 金 成 振 (42. 1. 21)	**태안군 제3(민자)** • 한남대지역개발대학원수료 • 민주평통자문위원 • 제4대 농림수산위원회위원(전) • 제4대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겸 운영위원회위원(후) – 예결특별위원회위원장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1269 自 : (041) 675-1057 事 : (041) 673-1124
 李 弘 根 (42. 5. 15)	**당진군 제1(민자)** • 경희대법과대졸 • 당진JC 및 특우회장 • 당진군재향군인회회장 • 민자당당진지구당위원장직대 • 제4대 교육사회위원회위원 겸 운영위원회위원(전) • 제4대 건설위원회위원(후) – 예결특별위원회위원장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542 自 : (041) 352-2100 事 : (041) 352-2400
 金 鍾 成 (46. 4. 10)	**당진군 제2(민자)** • 건국대농과대원예과졸 • 충남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충남도정자문위원회민방위분과위원장 • 민주평통자문위원 • 제4대 내무위원회위원(전) • 제4대 교육사회위원회위원(후) – 예결특별위원회위원장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256-1 自 : (041) 363-1100 事 : (041) 568-2504

성 명(생년월일)	학력 및 경력	주소/전화번호
 金 佐 泳 (29. 6. 3)	**당진군 제3(민자)** • 당진고등공민학교졸 • 면장(송악, 송산 12년) • 민자당당진군사무국장 • 민주평통자문위원 • 제4대 지역경제위원회위원(전) • 제4대 농림수산위원회위원 겸 운영위원회위원(후)	당진군 송악면 광명리 294 自 : (041) 355-6314
 全 泳 俊 (32. 5. 3)	**아산군 제1(민자)** • 조선대정치과졸 • 구화중학교설립자(교장) •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 제4대 교육사회위원회위원 겸 운영위원회위원(전) • 제4대 내무위원회위원(후) – 예결특별위원회위원장 –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아산시 배방면 북수리 709-19 自 : (041) 548-1609
 李 元 昌 (36. 7. 28)	**아산군 제2(민주)** • 건국대법과졸 • 민주동우회충남지부장 • 신민당선전조직부장(아산, 천안) • 국회의원입후보(78년) • 온양 · 아산전주이씨종친회부위원장 • 민주당충남도지부부지부장 • 제4대 건설위원회위원(전 · 후)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383-10 自 : (041) 531-2277 事 : (041) 541-4958
 金 南 鎬 (26. 9. 20)	**아산군 제3(민자)** • 고려대자연자원대학원수료 • 사단법인농촌지도자중앙회장 • 농림수산부정책자문위원 • 산학협동중앙협의회장 • 제4대 농림수산위원회위원 겸 운영위원회위원(전) • 제4대 기획경제위원회위원(후) –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산61 自 : (041) 546-8885

성 명(생년월일)	학력 및 경력	주소/전화번호
 金 文 圭 (50. 9. 23)	**천안군 제1(무)** • 경원대행정대학원수료 • 성환라이온스클럽회장 • 민주평통자문위원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제4대 지역경제위원회위원(전) • 제4대 건설위원회간사 겸 운영위원회위원(후) – 예결특별위원회간사	천안시 성환읍 성환리 449-48 自 : (041) 581-2310 事 : (041) 581-2415
 張 基 日 (43. 2. 21)	**천안군 제2(무)** • 단국대경영대학원수료 • 천안군4H후원회회장 • 대한무공수훈자천안군지회장 • 민주평통자문위원 • 제4대 농림수산위원회위원(전) • 제4대 농림수산위원회간사 겸 운영위원회위원(후)	천안시 입장면 홍천리 신우빌라 나동 301호 自 : (041) 583-4552
 李 傑 宰 (48. 3. 19)	**천안군 제3(국민)** • 단국대행정대학원수료 • 전통의학박사 • 천성라이온스회장 • 신민주공화당천안 · 아산부위원장 • 제4대 교육사회위원회위원(전) • 제4대 교육사회위원간사 겸 운영위원회위원(후) – 예결특별위원회위원장	천안시 목천면 신계리 140-3 自 : (041) 556-4055 事 : (041) 551-7610

忠淸南道議會
忠淸南道議會

第4代 道議會

의정활동화보

忠淸南道議會
忠淸南道議會







▲ 도의회 현판식('91. 7. 8)



▲ 도의회 개원기념('91. 7. 8)



▲ 본회의를 주재하는 이대희 의장



▲ 본회의장 의안 처리



▲ 도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박중배 도지사



▲ 교육행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백승탁 교육감



▲ 운영위원회 회의



▲ 운영위원회 전라남도의회 비교시찰



▲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 기획경제위원회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 내무위원회 회의



▲ 내무위원회 아산군 민속마을 방문



▲ 교육사회위원회 회의



▲ 교육사회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방문



▲ 농림수산위원회 회의



▲ 농수산위원회 한해피해농가 현지조사



▲ 건설위원회 회의



▲ 건설위원회 안흥교 건설현장 방문



▲ 지역경제위원회 주차장확보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방문



▲ 농림수산위원회 태안화훼단지현장 방문



▲ '93 결산 감사 (도 본청)



▲ '94 결산 감사 (교육청)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 예산결산특위 예산심의



▲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지원 특별위원회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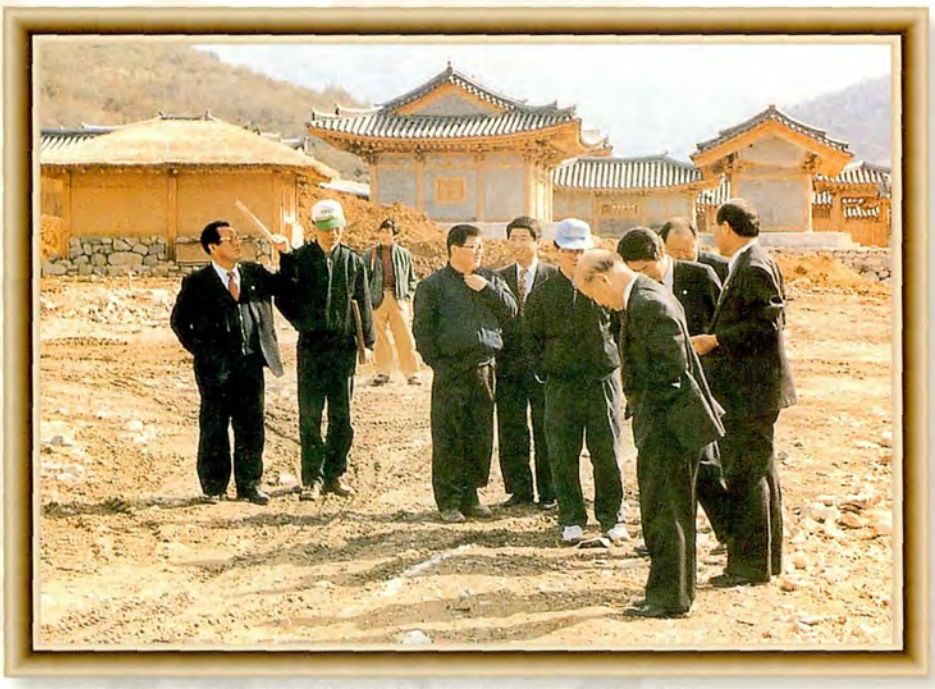

▲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경주 신라촌 현장 방문



▲ 서해안개발사업지원 특별위원회 회의



▲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위 홍보지구 현장 방문



▲ 도청이전특별위원회 전체회의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



▲ 제4대 충청남도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



▲ 개원 3주년 기념행사



▲ '92하반기 의원 연찬회



▲ '93하반기 의원 연찬회



▲ '94상반기 의원 연찬회



▲ '94하반기 의원 연찬회



▲ 농산물 금요광장 개장



▲ '92생력 신기술 연시회 참관



▲ 도의원 초청 경찰업무현황 설명회



▲ 전직 도의원 초청간담회



▲ 대전 국립묘지 참배



▲ 삼성전자 오 · 폐수시설 현지 견학



▲ 서천 금매양로원 위문



▲ 천안 삼일유아원 위문



▲ 제4대 충청남도 의회의원 재직기념 (1991. 7. 8 ~ 1995. 7. 7)

目　　次

發 刊 辭 4
祝 刊 辭 5
第4代 議會 議長團 6
第4代 議會 議員 10
第4代 議會 議政活動 畫報 25

第1章　忠淸南道議會 沿革

第1節 初代 忠淸南道議會의 誕生 61
第2節 第2代 忠淸南道議會 69
第3節 第3代 忠淸南道議會 79
第4節 第4代 忠淸南道議會 86

第2章　第4代 忠淸南道議會

第1節 第4代 忠淸南道議員의 選擧現況 100
第2節 第4代 道議會 構成現況 111
第3節 議會의 組織 137
第4節 議會의 權限 140
第5節 議會의 運營 143
第6節 議會事務處 現況 146

第3章 第4代 議會 議政運營

第1節 第54回 臨時會 161
Ⅰ. 槪　　況 161
1. 開會背景 161
2. 議事日程 161
3. 案件處理現況 162
4. 議長·副議長 選出 162
5. 李大熙議長 當選人事 163
6. 道政報告 164

第2節 第55回 臨時會 189
Ⅰ. 槪　　況 189
1. 開會背景 189
2. 議事日程 189
3. 案件處理現況 191
4. 條例案 處理內譯 191
5. 常任委員會 構成 및 委員長選擧 192

第3節 第56回 臨時會 194
Ⅰ. 槪　　況 194
1. 開會背景 194
2. 議事日程 194
3. 案件 處理現況 196
4. 條例案 處理內譯 196
5. 教育委員候補 所見發表 및 教育委員 選出 197

第4節 第57回 臨時會 198
Ⅰ. 槪　　況 198
1. 開會背景 198
2. 議事日程 198

3. 案件處理現況 202
4. 條例案 處理內譯 202
5. 第57回 臨時會 道政 및 敎育行政에 關한 質問·答辯要旨 209

第5節 第58回 臨時會 218
Ⅰ. 槪 況 218
1. 開會背景 218
2. 議事日程 218
3. 案件處理現況 220
4. 條例案 處理內譯 220

第6節 第59回 臨時會 224
Ⅰ. 槪 況 224
1. 開會背景 224
2. 議事日程 224
3. 案件處理現況 226
4. 條例案 處理內譯 226
5. 第59回 臨時會 道政 및 敎育行政에 關한 質問·答辯要旨 229

第7節 第60回 定期會 239
Ⅰ. 槪 況 239
1. 開會背景 239
2. 議事日程 239
3. 案件處理現況 248
4. 條例案 處理內譯 249
5. 第60回 定期會 道政 및 敎育行政에 關한 質問·答辯要旨 262

第8節 第61回 臨時會 306
Ⅰ. 槪 況 306
1. 開會背景 306

2. 議事日程 306
3. 案件處理現況 309
4. 條例案 處理內譯 309

第9節 第62回 臨時會 315
Ⅰ. 槪 況 315
1. 開會背景 315
2. 議事日程 315
3. 案件處理現況 317
4. 條例案 處理內譯 318
5. 第62回 臨時會 道政 및 敎育行政에 關한 質問·答辯要旨 325

第10節 第63回 臨時會 331
Ⅰ. 槪 況 331
1. 開會背景 331
2. 議事日程 331
3. 案件處理現況 335
4. 條例案 處理內譯 336
5. 第63回 臨時會 道政 및 敎育行政에 關한 質問·答辯要旨 344

第11節 第64回 臨時會 369
Ⅰ. 槪 況 369
1. 開會背景 369
2. 議事日程 369
3. 案件處理現況 371
4. 條例案 處理內譯 371

第12節 第65回 臨時會 375
Ⅰ. 槪 況 375
1. 開會背景 375

2. 議事日程 375
3. 案件處理現況 377
4. 條例案 處理內譯 378
5. 第65回 臨時會 道政 및 教育行政에 關한 質問·答辯要旨 380

第13節 第66回 臨時會 391
Ⅰ. 槪 況 391
1. 開會背景 391
2. 議事日程 391
3. 案件處理現況 394
4. 條例案 處理內譯 395
5. 第66回 臨時會 道政 및 教育行政에 關한 質問·答辯要旨 398

第14節 第67回 臨時會 427
Ⅰ. 槪 況 427
1. 開會背景 427
2. 議事日程 427
3. 案件處理現況 430
4. 條例案 處理內譯 430
5. 第67回 臨時會 道政 및 教育行政에 關한 質問·答辯要旨 433

第15節 第68回 臨時會 443
Ⅰ. 槪 況 443
1. 開會背景 443
2. 議事日程 443
3. 案件處理現況 446
4. 條例案 處理內譯 447

第16節 第69回 定期會 449
Ⅰ. 槪 況 449

1. 開會背景 449
2. 議事日程 449
3. 案件處理現況 456
4. 條例案 處理內譯 457
5. 忠淸南道廳 移轉推進 特別委員會 構成決議 461
6. 쌀輸入 開放反對에 대한 決議 463
7. 第69回 定期會 道政 및 敎育行政에 關한 質問·答辯要旨 466

第17節 第70回 臨時會 481
Ⅰ. 槪 況 481
1. 開會背景 481
2. 議事日程 481
3. 案件處理現況 485
4. 條例案 處理內譯 485

第18節 第71回 臨時會 490
Ⅰ. 槪 況 490
1. 開會背景 490
2. 議事日程 490
3. 案件處理現況 492
4. 條例案 處理內譯 492
5. 第71回 臨時會 道政 및 敎育行政에 關한 質問·答辯要旨 496

第19節 第72回 臨時會 516
Ⅰ. 槪 況 516
1. 開會背景 516
2. 議事日程 516
3. 案件處理現況 518
4. 條例案 處理內譯 518

第20節 第73回 臨時會 520
Ⅰ. 槪 況 520
1. 開會背景 520
2. 議事日程 520
3. 案件處理現況 522
4. 條例案 處理內譯 522

第21節 第74回 臨時會 525
Ⅰ. 槪 況 525
1. 開會背景 525
2. 議事日程 525
3. 案件處理現況 528
4. 條例案 處理內譯 528
5. 第74回 臨時會 道政 및 敎育行政에 關한 質問·答辯要旨 532

第22節 第75回 臨時會 584
Ⅰ. 槪 況 584
1. 開會背景 584
2. 議事日程 584
3. 案件處理現況 585
4. 議長·副議長選擧 및 常任委員長 選擧 585

第23節 第76回 臨時會 587
Ⅰ. 槪 況 587
1. 開會背景 587
2. 議事日程 587
3. 案件處理現況 591
4. 條例案 處理內譯 591

第24節 第77回 臨時會 597
Ⅰ. 槪 況 597

1. 開會背景 597
2. 議事日程 597
3. 案件處理現況 600
4. 條例案 處理內譯 601
5. 第77回 臨時會 道政 및 教育行政에 關한 質問·答辯要旨 606

第25節 第78回 臨時會 636
Ⅰ. 槪 況 636
1. 開會背景 636
2. 議事日程 636
3. 案件處理現況 639

第26節 第79回 臨時會 640
Ⅰ. 槪 況 640
1. 開會背景 640
2. 議事日程 640
3. 案件處理現況 642
4. 條例案 處理內譯 642

第27節 第80回 定期會 644
Ⅰ. 槪 況 644
1. 開會背景 644
2. 議事日程 644
3. 案件處理現況 657
4. 條例案 處理內譯 659
5. 第80回 定期會 道政 및 教育行政에 關한 質問·答辯要旨 671

第28節 第81回 臨時會 710
Ⅰ. 槪 況 710
1. 開會背景 710

2. 議事日程 710
3. 案件處理現況 713
4. 條例案 處理內譯 713

第29節 第82回 臨時會 717
Ⅰ. 槪 況 717
1. 開會背景 717
2. 議事日程 717
3. 案件處理現況 720
4. 條例案 處理內譯 721
5. 第82回 臨時會 道政 및 敎育行政에 關한 質問·答辯要旨 726

第30節 第83回 臨時會 761
Ⅰ. 槪 況 761
1. 開會背景 761
2. 議事日程 761
3. 案件處理現況 764
4. 條例案 處理內譯 765

第31節 第84回 臨時會 768
Ⅰ. 槪 況 768
1. 開會背景 768
2. 議事日程 768
3. 案件處理現況 770
4. 條例案 處理內譯 771
5. 缺損된 敎育委員 選出 773
6. 第84回 臨時會 道政 및 敎育行政에 關한 質問·答辯要旨 774

第32節 第85回 臨時會 799
Ⅰ. 槪 況 799

1. 開會背景 799
2. 議事日程 799
3. 案件處理現況 802
4. 條例案 處理內譯 803

第33節 第86回 臨時會 805
Ⅰ. 槪 況 805
1. 開會背景 805
2. 議事日程 805
3. 案件處理現況 808
4. 條例案 處理內譯 809
5. 第86回 臨時會 道政 및 敎育行政에 關한 質問·答辯要旨 812

第34節 第87回 臨時會 846
Ⅰ. 槪 況 846
1. 開會背景 846
2. 議事日程 846
3. 案件處理現況 850
4. 條例案 處理內譯 851

第35節 第88回 臨時會 856
Ⅰ. 槪 況 856
1. 開會背景 856
2. 議事日程 856
3. 案件處理現況 860
4. 條例案 處理內譯 860

第36節 第89回 定期會 865
Ⅰ. 槪 況 865
1. 開會背景 865

2. 議事日程 865
3. 案件處理現況 877
4. 條例案 處理內譯 878
5. 第89回 定期會 道政 및 敎育行政에 關한 質問·答辯要旨 885

第37節 第90回 臨時會 928
Ⅰ. 槪 況 928
1. 開會背景 928
2. 議事日程 928
3. 案件處理現況 931
4. 條例案 處理內譯 932

第38節 第91回 臨時會 934
Ⅰ. 槪 況 934
1. 開會背景 934
2. 議事日程 934
3. 案件處理現況 936
4. 條例案 處理內譯 937
5. 第91回 臨時會 道政 및 敎育行政에 關한 質問·答辯要旨 942

第39節 第92回 臨時會 974
Ⅰ. 槪 況 974
1. 開會背景 974
2. 議事日程 974
3. 案件處理現況 977
4. 條例案 處理內譯 978
5. 闕員된 敎育委員 選出 983

第4章 第4代議會 議政活動 決算

第1節 會期運營狀況 989
第2節 議長團 및 常任委員長 議會開催 989
第3節 豫算審議 991
第4節 各種 案件處理 992
第5節 行政事務監査實務 996
第6節 道政 및 教育行政 質問 1002
第7節 請願 및 陳情等 民願處理 1003
第8節 常任委員會 現場活動 1008
第9節 特別委員會 構成 運營 1016
第10節 議員 研鑽金 1017
第11節 歷代 會議錄 復元發刊 1018

附　　錄

第1節 忠淸南道 現況 1023
第2節 歷代議員尊影 1035

第1章 忠淸南道議會 沿革

第1節 初代 忠淸南道議會의 誕生

第2節 第2代 忠淸南道議會

第3節 第3代 忠淸南道議會

第4節 第4代 忠淸南道議會

第1章 忠淸南道議會 沿革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되어 그 다음해인 1950년 12월 지방자치를 위한 선거를 실시 할 계획이었으나 1950년 6.25동란 등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실시가 연기되어 오다가 1952년 4월 25일 시·읍·면의회의원선거에 이어 5월 10일에는 도의원 선거가 실시됨으로서 지방자치제가 시작되었다.

第1節 初代 忠淸南道議會의 誕生

6.25사변의 동란중에도 1952년 5월 10일 최초의 충청남도의회 의원 선거가 1시, 14군의 전투표구에서 일제히 실시되었다.

총유권자 916,288인중 78.5%인 719,784인이 투표에 참가, 128인이 입후보하여 2.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46인의 초대 도의원이 선출되었다.

□ 選 擧 日 : 1952년 5월 10일

□ 議員定數 : 46인

□ 任　　期 : 1952년 5월 ~ 1956년 8월 (4년 3월)

□ 會　　期 : 1회 ~ 22회

□ 初代 道議會議長, 副議長

○ 의　장 : 金達永(홍성)(임기4년 : 1952. 5월 ~ 1956. 8월)

○ 부의장 : 李丁雨(대전)(　　〃　　)

□ 道議會議員 名單

- 초대 도의원 당선자 시군별 명단 -

○ 대전시 : 李丁雨, 崔錫煥, 宋錫濂, 李鎭洛(보)
○ 대덕군 : 宋禮憲, 姜仁煥
○ 연기군 : 崔秉億, 姜泰鎭
○ 공주군 : 金永沃, 成斗基, 金達洙, 嚴大燮, 尹璿炳(보), 姜桂周(보)
○ 논산군 : 林承復, 金千洙, 洪民, 朴昌來
○ 부여군 : 金健培, 金在鍊, 李戶喆
○ 서천군 : 禹熙昌, 金錫圭, 羅熙集, 趙南明(보)
○ 보령군 : 卜連奉, 朴鍾淵, 李相樂
○ 청양군 : 兪忠植, 池聖壁
○ 홍성군 : 金智鉉, 朴泰富, 金達永
○ 예산군 : 趙瑢鎬, 尹世熙, 李升鍾
○ 서산군 : 張慶淳, 李相禧, 朴鳳燮, 吳順南, 蔡相根
○ 당진군 : 車萬基, 申鉉九, 宋之源
○ 아산군 : 元容泰, 李成珪, 洪淳徹, 曺鳳煥(보)
○ 천안군 : 李鍾泰, 洪昶植, 劉載仁, 任晩宰(보)

※ 초대 도의원중 천안군 劉載仁의원은 재임기간중 작고하시었고 대전시 宋錫濂의원, 공주군 金達洙, 嚴大燮의원, 서천군 羅熙集의원, 아산군 洪淳徹의원 등 5인은 1954년 5월 제3대 민의원 출마를 위하여 사퇴하였다.

결원된 6인(작고 1명, 민의원출마를 위한 사퇴5명)의 도의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1954년 9월 30일 보궐선거를 실시 대전시의 李鎭洛의원, 공주군 尹璿炳의원, 姜桂周의원, 서천군 趙南明의원, 아산군 曺鳳煥의원, 천안군의 任晩宰의원 등이 선출되었다.

※ 주 : (보)는 보궐선거 선출

□ 初代 道議會 會議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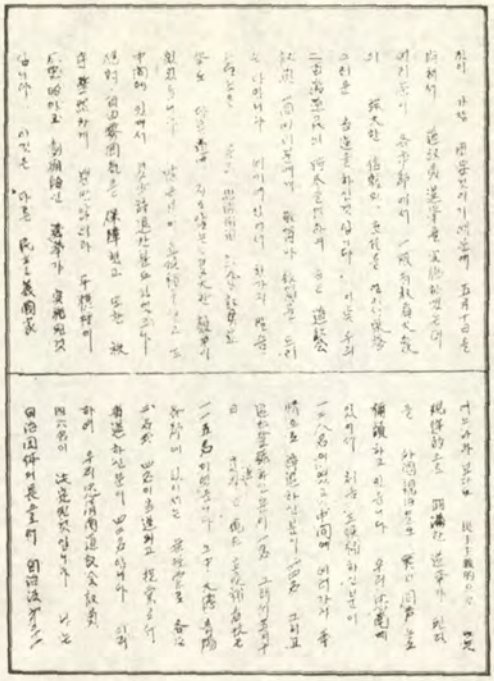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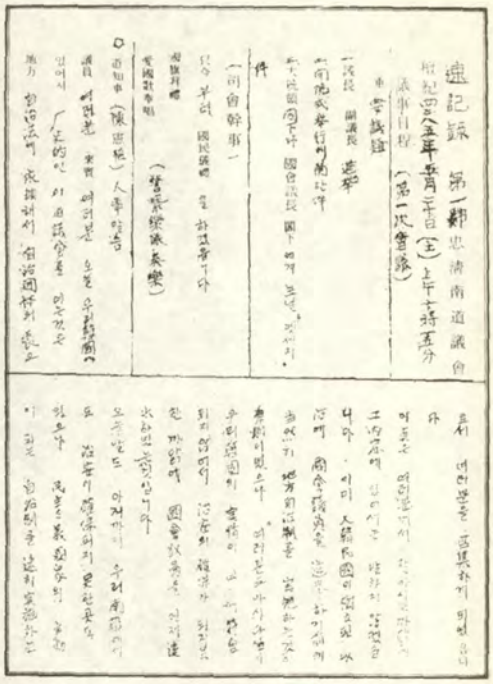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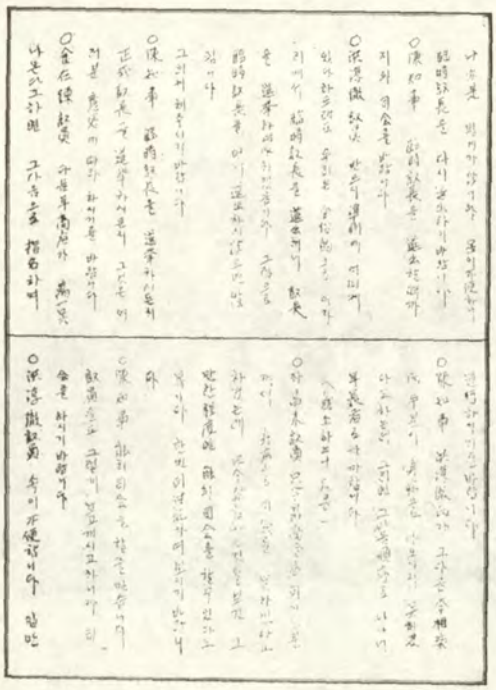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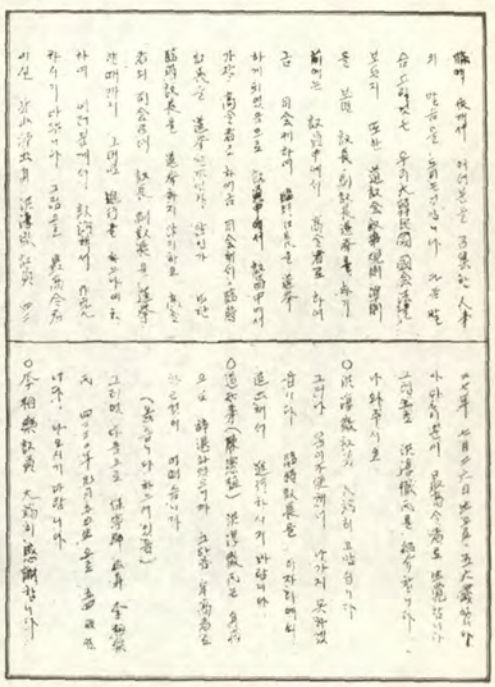

□ 初代 道議會의 사진 스크랩

▶

初代 도의선 선거가 1952년 5월 10일 실시되었다.

사진은 충남 연기군 전의면에서 한 부부가 나란히 초대 도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





▲ 초대 도의원과 도간부공무원



◀ 초대의회운영



초대당시 충남대학교 ▶



◀ 초대당시 충남대
도립병원

□ 言論에 비친 初代 道議會

1952. 4. 12 대전일보

忠南道議員立候補統計

三對一의競爭率

定員四六名에 一二七(女子二名)名登錄

모의원입후보등록은 모 七명의입후보자가있었고 마감을보게되었거니와 모당국에들어온보고 디어十일하오六시를기하 에 따르면정원四十六명에 대하면경쟁률은 평균三대一인 一백二십 소속별 보면 자유黨五 十五명이단연수위로 무 소속三五 한청十七명등 의순으로되어있다。한데 특히百二十七명의입후보 자중에서 부인회기一명

1952. 4. 12 대전일보

地方選擧事犯은嚴罰

檢察當局의監視에注目

대전지방검찰청에서는 지난四월시되공주 서산 로기三개국의선보결선거 에있어 탐문한바에의하 면 선거시법이발생하여 그간극비에부칠한조사 에당하고있었는데 전기 三개구에서七건의사법을 적발하게되어 사건을기 소하야엄중한처벌을내릴 것을가졌든것을 중앙당국과 협의끝에 처음인만큼금 번 특별히조치로서 관 대아훈계처분을내리기로 되었다한다 그런데한편 작금각지방에서실시중에

區別	定員	立候補者 男	女	計	自由黨	民國黨	國民會	韓青婦人會	女子	無所屬	其他
大田	三	一〇	一	一一	五	二	二			一	
大德	二	一三		一三	七	二	一			一	
瑞山	五	一〇		一〇	七					一	
唐津	三	七		七	四	三				一	
牙山	三	八		八	三	二				三	
天安	三	八		八	三	三				二	
洪城	三	一〇		一〇	三	一				四	
禮山	三	九		九	五					一	
靈岩	二	五		五	一					三	
保寧	三	六		六	二					一	
靑陽	二	三	一	四	一					三	
公州	四	九		九	三	一				五	
舒川	三	七		七	三					四	
扶餘	三	七		七	二					四	
論山	四	一九	一	二〇	六	二				五	
合計	四六	一二五	二	一二七	五五	二一	四	一	二	三五	一

大田은三對一

十一名立候補

한편 대전시의원 등록상황을보면 정원三名에 十一名이입후보하므로있어 약三대一의경쟁률을 나타내고있다 十日 등록한입후보자는 다음과같다

大田市▮ 崔凞燮 (四四 無所屬) 南天午 (五七 自由黨) 宋鎭業 (四〇 自由黨) 趙培世 (五四 大韓婦人會) 柳宣永 (五〇▮自由黨) 孫翊照 (六四▮無所屬) 洪起學 (四三▮自由黨) 合計 十一名

네자주민당一명이 당당 히입후보하게되어 금번 의선거선에있어 흥미점 이될것으로보여지고있다

1952. 9. 15 대전일보

撤去建議案可決

그러나對象者店舖完備後

會議道

十四日도 회 제七차 본회의는상 오十시四十 분開會됐다 이날 의장사회로 개회먼저금 차 도정감 사에있어의 견으로나착을보고 하오 一시산회하였다 한편금 十五일부터는 도정감시 하에 승인하고 八五년 한다

議員發言要旨

申洞가시철거문제를위 어 전일상정되었던 中 상당하는바이있을에八 번도분수주빙서류첨부 및지방시찰이있을것이다 선의로 낙착되었다 이 문제를위요로 조사보고를 元容燦의원 으로부터마치자그처결는 에들어가기에앞서계국장의목할 요十시四十 분開會됐다 이날 의장사회로 개회먼저금 차 도정감 사에있어의 견으로나착을보고 하오 一시산회하였다 한편금 十五일부터는 도정감시 하에 승인하고 八五년 한다 요하고발언된 十四일오 회주의끝자는 다음과같다

△元容燦議員(牙山)=報告依相본시장은九、二八수복후 당시거주상을 숭심으로 당시거주상을 에게하시라도 철거할것 을 조건으로 건설되어 현재에이르렀나 만년 그당시는 도의회당국에 서의 종용으로가시주택 의 건축착수케된것이다 그러나 도시계획경비에 따라 시당국에서는 도 획정구역의철거를 九 월十五일까지명하고 이 에약四六三세대(三천명)의상인은 억을한사정 을 당국에진정 또는탄 원하여 명년四월까지유 예해줄것을호소하고있는 데 하편시당국의말에는 본계획은 국고보조一억 三천만원을 써서 만약년 내로 시작않으면 이를 사용치못하게된다고하며 들시 강연할동안사소도 하지않았다한다

1952. 9. 9 대전일보

景風會議

△논산夏期放學四十五日만에 다시開校된 學校아동 道議會△ 이러나政府米大幅引上에 官需民需까지 區 開會벽頭 反對聲을 急動의△運 別하다니 △一件이 林承復君 發되ㅇ 再開三請에動 다고 土敬稅廢止建議 「道政監 査를四日 間에한이 케할수있 느냐? 있 는가? 없 는가를 請천을 지말고 터난까 升級君 「八月부 지林承復君 발덕이며 터소급도되이만 舊稅 나 土敬稅廢止한句 을五倍引上을 意味하 에歸意이有하니 그眞 意를期해기錄하야三 十日間으로하자」고 會 니 外大体政府는상사

政府는장사속이냐?

米價引上에떠늘석!

議는 無難히採擇으로 案登場 金永沃君의提 去하고 案도다시 採擇△그러 면난까升級君 「八月부 지林承復君 발덕이며 터소급도되이만 舊稅 나 土敬稅廢止한句 을五倍引上을 意味하 에歸意이有하니 그眞 意를期해기錄하야三 十日間으로하자」고 會 니 外大体政府는상사 意議册要求하자△提의 者金永沃君 이는無議 外의強制인지라 感情 으로拒受하오」하고應 수하며賦役復活을 反 할이다마는 意味性賦 를 實現△이를듯는林 君(일있소) 하고주거 니받거니 이때서盲爭 은스물:△下午會의에 農政價格 年限延長의 動의를 또金永沃君提 君의動案占領台化:△ 今日은 果然누구가또

自由黨이絶對多數

棄權者가十八萬二千餘名

五·十道議員選擧狀況과統計

公州는69%

五月十日實施된公州郡外十一個郡道議員選擧에있어서投票率은六九四%라고한다 이것은全國的으로보아서도 또는 過去의 地方選擧에있어서도 그例를 보지못하는 高率이라고한다 이것은 全國的으로 自由黨의 壓勝을 豫測하는 一般的 空氣에 對하여 野黨側에서 棄權을 宣言하고 나섰기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一般的 觀測이다 그러나 이것은 表面的 觀察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며 實際에 있어서는 棄權者의 大部分은 自由黨의 壓勝을 豫測하고 投票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正當한 觀察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第2節 第2代 忠淸南道議會

1956년 8월 13일에 실시된 제2대 도의원 선거에서는 유권자 720,673인중 626,575인(86.9%)이 투표에 참가했다.

도의회 의원정수는 45인으로 123인이 입후보하여 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도지사는 초대와 마찬가지로 임명제를 유지하였다.

□ 選 擧 日 : 1956년 8월 13일

□ 議員定數 : 45인

□ 任　　期 : 1956년 8월 ~ 1960년 12월 (4년 4월)

□ 會　　期 : 23회 ~ 50회

□ 第2代 道議會議長, 副議長

〈第1期〉

○ 의　장 : 李升鍾(예산)(임기 1년 : 1956년 8월 ~ 1957년 8월)

○ 부의장 : 李相禧(서산)(　　〃　　)

〈第2期〉

○ 의　장 : 崔秉億(연기)(임기 2년 4월 : 1957년 8월 ~ 1959년 12월)

○ 부의장 : 李相禧(서산)(　　〃　　)

〈第3期〉

○ 의 장 : 兪忠植(청양)(임기 4월 : 1959년 12월 ~ 1960년 4월)

○ 부의장 : 李相禧(서산)(〃)

〈第4期〉

○ 의 장 : 兪忠植(청양)(임기 8월 : 1960년 4 · 19직후 ~ 1960년 12월)

○ 부의장 : 李相禧(서산), 姜九鉉(홍성)(임기 8월 : 1960년 4 · 19직후 ~ 1960년 12월)

□ 道議會議員 名單

- 제2대 도의회 당선자 시군별 명단 -

○ 대전시 : 朴春景, 卞鍾九, 宋秉熹

○ 대덕군 : 姜仁煥, 朴彰培

○ 연기군 : 崔秉億, 林鵬洙

○ 공주군 : 金永沃, 李元圭, 朴 璨, 洪龍八

○ 논산군 : 林昌來, 鄭寬浩, 姜麟秀, 朴炳鮮

○ 부여군 : 太官童, 宋斗燮, 趙俊九

○ 서천군 : 羅燾英, 趙南明, 韓億洙

○ 보령군 : 李永雨, 黃命顯

○ 청양군 : 兪忠植, 任東先

○ 홍성군 : 金滿俊, 姜九鉉, 金榮漢

○ 예산군 : 李升鍾, 李昇求, 崔翼模

○ 서산군 : 李雲宰, 孫昌洙, 柳濟豊, 李相禧

○ 당진군 : 崔炳麒, 李相念, 兪慇相, 宋之源

○ 아산군 : 方周鉉, 曺鳳煥, 金德成

○ 천안군 : 安長勳, 任晩宰, 吳 椿

□ 第2代 道議會 當選通知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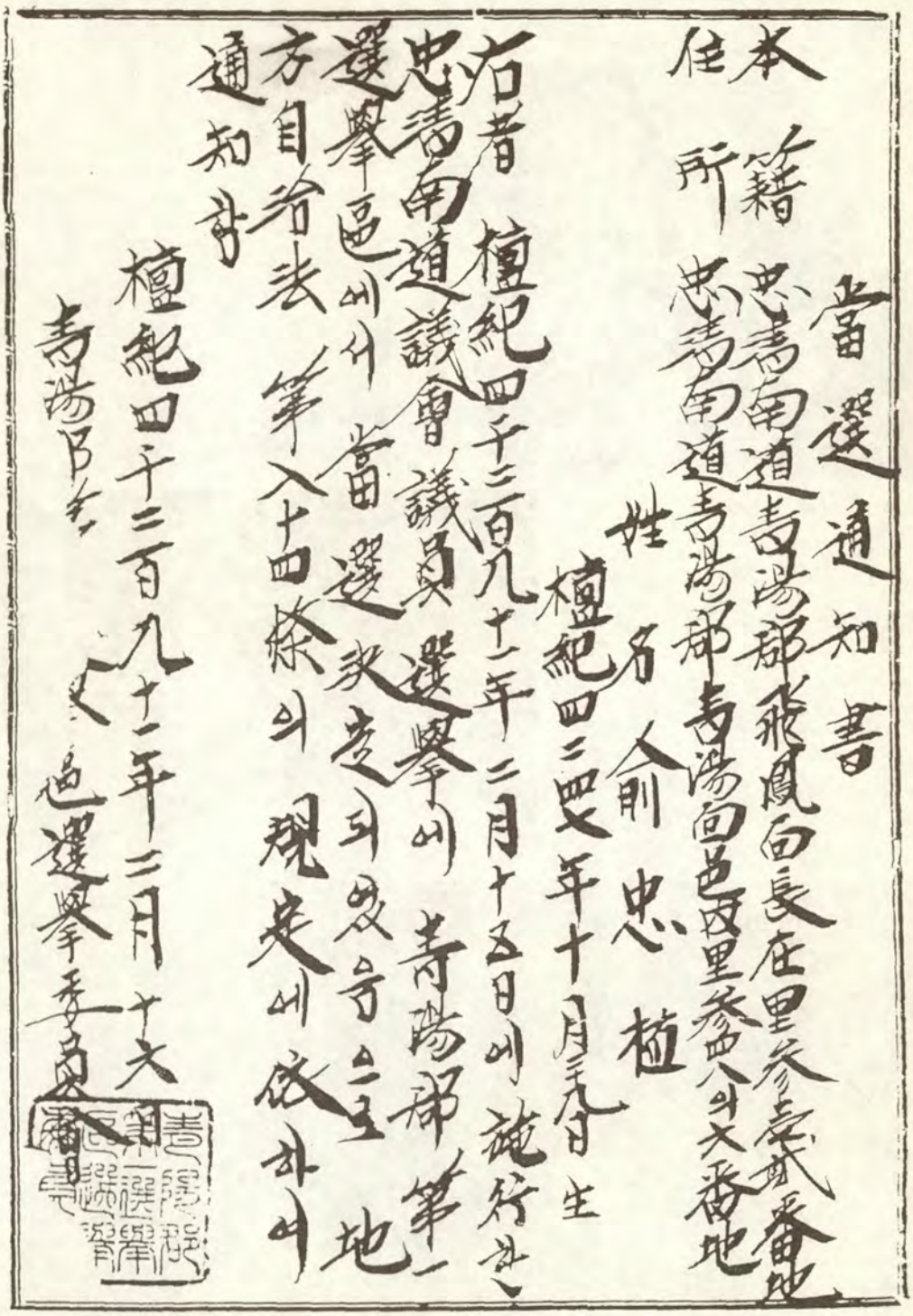

當選通知書

本籍 忠淸南道 靑陽郡 飛鳳面 長在里 參拾貳番地

住所 忠淸南道 靑陽郡 靑陽面 邑內里 參八의 大番地

姓名 全 前 忠 植

檀紀四三四年十月三日生

右者 檀紀四千二百九十二年二月十五日에 施行된 忠淸南道議會議員 選擧에 靑陽郡 第一 選擧區에서 當選人 決定되었음을 玆에 證明하고 方自治法 第八十四條의 規定에 依하여 通知함

檀紀四千二百九十二年二月十六日

靑陽郡 選擧委員會

□ 본회의 이모저모



▲ 본회의



도정연설 ▶



◀ 안건심의

□ 도정감사 및 상임위 활동









□ 본회의장 이모저모



◀ 안건숙의





◀ 방청석 ▶



◀ 기자석

□ 言論에 비친 第2代 道議會

二代道議員當選者全貌判明

自由黨系八七%

與黨側의壓倒的勝利로歸結

1956. 8. 15 대전일보

우리의 도정을 제손으로 다스릴 제二대 도의원인 五만선량 四十五명의 당락자 전모는결정되었다 十三일 하오七시를 전후하여 도내 三十五개투표구에서 가슴조이게 시작된 개표결과는 속속 밝혀지어밤을새운 작十四일 상오六시경에는 모두어개로는 완료되고 투루표당선자 十명을 포함한四五명은 판명되었든것이다 그런데 뭇결과에나타난패자는 자유당이 단일 우세하여정수의 六〇%을득점하고 여기에 무소속중군자및국민회를통합한 그승산을 실로八七%에달하는데승을 잦어오므로서 자유당一색을 보여주었으며 초대도의원 재선자로十二명을넘으로서 지방자치제에 새로운기원을기약한제二대도의원선거는 대단원에종료되었다

道內投票率87%

제二대도의원선거투표율은 전체비율이八七%이며 도시인 대전은겨우六六%인 최저성에부여二구는九六%의 호성적을올리고있다 이로보면 도시는 [illegible]이 중명되었고 농촌지대는 비교적 양호한편이었는데 九〇%이상의구비율을 보여二十九六、四% 부一구九〇% 鵬山二구九三% 唐津二구九六%등三구九四% 牙山一구九一% 보二구九五%등三구九五%의 [illegible]이며 기타선거구는八〇%一九〇%사이의 투표율로서 비교적 양호한성적을나타내고있다

1956. 8. 15 대전일보

1956. 11. 25 대전일보

不當支出을 追窮

230萬圓豫備費支出案否決

道議會

一반회계豫備費 지출안건을 심의의결하기위하여 개회된 二十四 임시도의회 제一차본회의에서는 행정부의歲計 소차가 무책임하다는이유로 의회비특별회계공비 三十만환및 시무비 모본청특별공비 二백 만환의 豫備費지출안건을 본회의의결로서 부결시켜버렸다 이와같은의회의 태도에 대하여 여당의원들의 치열한대당국공세와 여기에호응하여 여당의원들이합세함으로 경인데도 의 이날부당지출이라고 규정하고 번상정하여 육박하였은 것으로 이 후의 행정당국의 사무조치가 주목을끌 되었다 이날약한시간만에 걸쳐는난 되의 결과 당국간의 의의용법요지는 다음과같다

△姜仁煥(自由大德一內務委員長의 審査結果報告 및 내무분위 심사보고대 豫備費에 대한 질의없이 만장일치로 불승인 하기로 이의 △朴昌來(무소속論山) 이미 도의회에서 豫備費에 대하여 충분한 심의를 거쳐 통과된 것인가 법제처의 질의에 대하여 지출한 것인데 승인해주시는 다니 대단히 당황하지 않을수없다 자체법에의하면 불승인 경우 법적책임이 있어 대단한 곤란하다 법제처근거를 아직 깊이연구해보지못했

△崔炳基(民主論山) 예비 지출한 모양인데어떻게 됐는지 알수가없다 三十만환을 어떻게 했는지 지출내역을 분계하기 바란다(正式動議)

△崔炳基(民主論山) 사전에 三十만환을 무슨 명목으로 누가 얼마 썼는지 내부에 알아보아서 알려주기 바란다

△金永沃(무소속公州) 의원입장에서 하나라 밝혀야된다 추계자는 어떤 공식적인 이유로 부당지출이다 번상해야 된다 부차례에 걸쳐 어떠케처리한것인지 보고 넘어가서는 안된다 내부적으로 책임있는 답변을 들기도하자

△閔泳珪(民主論山) 局長 豫備金지출에있어만일 승인을얻지못할때의사후조치는법적

特別會計에 對한 質疑

下午엔 新年度豫算提案說明



어제五일 대一경파 그에따라명경운씩 구학는 劉市전의로 는 전시의회계四자 난되었으나 주주과提물 본회의는 장오 의 협력적인답변으로공 十一시부터 金 문서답제이전의에 불과 滿場사회로개회 하였다장오회의로 신년 되어 장오회의 에서는 도예산편성방침에 대한 신년도예 산편성 방침 질의종결마친 어제의회 의 특별회계에대한질의 는 장오회의에서 市公 가 전일에이어 계속되 館대지 임대계약문제가 었으며 장오회에서동 의혁간에 논난되었으며 예산제안설명을 청취하 이어서 예산제안설명을 었다

어제일정은 장오회의 청취하고 폐회하였는데 에서 상년도예산제안설 오후부터 의사일정에따 명을 청취한예정이었으 라 각상임분과의현회에 며 예산편성방침에대한 관어갈예정이다 질의를 전일에전부종결 하지못한관계로 특별회 계에대한질의가 계속되 었다 특별회계에대한질 의에서 朴丙鈺、柳延鳳 孤福興、閔時鎬、林憲씨 金鍾燁의질문은 대전주 택문제、가계용수도제량 기설치문제 洞分洞問 題 재정법개정후의市稅 增額問題등 전행당국의 미온적인 행정을강화당

1956. 11. 6 중도일보

道議員補궐選擧

大田、論山等五月15日實施

제四대민의원에입후보 二십一일부터二일간 도의원을사퇴한 대 한도호국단지도위원및교 전、논산등보선이 오는 외생활지도위원과 시군연 五월十五일자로결정되여 합회대표자회의를 개최 어제十五일자로 공고되 할것이라고한다 었다 이번에공고된 보 한편 한도호국단교의 궐선거지구는 대전시제 생활지도위원회서는시내 一선거구와 제二선거구 용두동에건립된 영렬탑 이며 논산제四선거구로 구내의 미화청소작업을 써 도의원직에서사퇴한 전담하기로 되었다고한 자는 成周連、李丁雨 徐文源등二명이다

1958. 4. 16 중도일보

1959. 7. 8 대전일보

追加豫算案通過

異議없소로14分에處理

道議會

六日의 道議會本會議에서는 一般의계에 있어서는 단 지林業銀의 임차료및 이 용료에서 만八천환을삭감 하였는데 一、扶餘世道面 의금강연안축제중지요망二、교육회관 설치보조요청三、석탄연료조합의 보조 요청등은 집행부에서처리 하고 石城川의 개수공사 수의계약의 正不當性의조 사보고에따른 지적을할바 있는데 결론은 當局의처 사가 그다지나루지않았으 나 이후 좀주의를 하여 야할것이라는 데산업동에 서 八十환내지 百환 까지 인도하여 정판에정 할바 백분의三이상의 막 대한 이익을 취한것은옳 지못한것이다 ‖原理‖첫째 이루강매지발것 둘째 시기를 잘포착할것 세째 너무비싼 이익을 취하지 말것

▲…石川城수의계약의건 ‖당지 시설과 中間로진 사의 입적으로 보아 타 당하다고본다

1956. 11. 26 대전일보

否次과承認

各々두件式

豫備費支出案에

議會

一백三十만환에 달하는 예비비를 의장단일도 지사회 전대비 로 인하였다 두개 안인 二百五十만환의 안건 ‖대전 산림계 와 八個읍면의 防水潮堤防 ‖錦山郡 ‖ 에 승인한도의 三호안인 二百五十만환의 안건 ‖대전 산림계 와 八個읍면의 防水潮堤防 ‖錦山郡 ‖ 에 승인한도의

第3節 第3代 忠淸南道議會

4·19혁명으로 자유당이 붕괴되고 민주당의 제2공화국이 수립되어 실시된 제3대 도의원선거는 1960년 12월 12일 총유권자 1,137,184명중 781,935명(68.8%)이 투표에 참가하여 188명의 후보자중 3.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48명의 당선자가 확정되었다. 한편 12월 29일 실시된 최초의 도지사 선거는 李琦世 (4代) 도지사가 당선되었다.

그러나 3대 도의회는 의회가 구성된지 6개월도 안되어 1961년 5월 16일 5·16사건으로 인하여 지방자치제가 전면 중단되었다.

□ 選 擧 日 : 1960년 12월 12일

□ 議員定數 : 48인

□ 任　　期 : 1960년 12월 ~ 1961년 5월 (6개월)

□ 會　　期 : 51회 ~ 53회

□ 第3代 道議會議長, 副議長

○ 의　장 : 林憲世(공주)(임기 6월 : 1960년 12월 ~ 1961년 5월)
○ 부의장 : 朴　璨(공주)(　　)

□ 道議會議員 名單

- 제3대 도의회 당선자 시군별 명단 -

○ 대전시 : 李文鎬, 兪永植, 金潤植, 徐完錫
○ 대덕군 : 宋泰燮, 朴鎭穆
○ 연기군 : 陳雄植, 金泰龍
○ 공주군 : 林憲世, 李紀永, 朴 璨, 金鳳泳
○ 논산군 : 劉忠烈, 尹己炳, 金容弼, 朴鳳鎬
○ 부여군 : 金鍾午, 宋斗燮, 趙俊九, 趙森九
○ 서천군 : 申文燮, 崔雲集
○ 보령군 : 李永雨, 金顯璞
○ 청양군 : 李哲雨, 韓哲元
○ 홍성군 : 張箕翼, 金應柱
○ 예산군 : 朴昌植, 李會榮, 李鍾漢, 尹南儀
○ 서산군 : 趙濟顯, 明華燮, 李鍾伸, 賈敬魯
○ 당진군 : 姜永植, 洪顯先, 朴燦成, 李貞植
○ 아산군 : 黃明秀, 方周鉉, 池泰永, 林或善
○ 천안군 : 許萬錫, 黃圭英, 李義伯, 金永錫

□ 第3代 道議會 會議錄

□ 1961年初 忠淸南道 行政區域圖



□ 言論에 비친 第3代 道議會

道議會 制覇에 重點
民·新兩黨 地方選擧戰에 布陣

【서울八日發=東洋】民議院은八日新年度豫算案을通過시키는데로 九日間의休會에들어간다 그期間中에는 내년의 地方選擧를앞두고民議院은勿論 長期休會로는 이가는것이며 地方選擧 에 重點的인 政治 陣을 펼칠것으로있다

民主黨은 地方自治法의 改正에따르는 地方自治制의確立에 應하여 各道議會 組織에最大의 力을 集中하고있다

그러나 創黨한지 日淺하여 地方組織이 未備한新民黨은 道議會보다 道知事및 市長等行政官吏選擧에서 重點的인 勝利를 獲得한目標로 選擧戰에 臨하고있으며 民主 新民兩黨의 對決은 各道知事와 서울特別市長을 選出하게되는 二十九日을앞두고 그熱風은 十一日끝난다

이에對抗하여 新民黨은 九日부터 院內有力議員을 柱軸으로하는 强力遊說班을 編成하여 新民黨勢力이 强한嶺南地方에 一齊히 遊說을 展開하고 문關談에 上程하여 可決할것으로있다

政府가 現在起案中인 地方自治法改正骨子는 大體로從來의 高試應試資格이大學一年修了者를 大卒로 하고 세로히停年制를 規定하는同時 現時公務員의 昇進으로 便宜 任用令에있어서는一定一服務年限을 以上으로하고 公務員의新陳代謝를 期하기로되어있다

1960. 12. 9 중도일보

道議員들 甚한 不滿

小規模水利事業策定

충남도내에는 국도에 반사업의 규모수리사업지구의 정을 끝마쳤다 그동안 각계각층의 라과 압력이 도당국이 보는 하여 사업의 완급과 술적견지뿐 의 의견을 참작해 난날 자유당정부에서 수있던 사업임에도 하고 이번에 심의하라는 포함되게 되었다

이번 도의원들은 동삭·천에못기위해 당초의방안을 보류한다는것이다

1961. 3. 8 중도일보

道議員選擧結果 거의 判明

當選確定四百84名

無二一九·民一九三·新民六七名

【서울十四日發=合同】 四百八十四名 政黨所屬 總投票函의三分之二가 運 十二日實施된 서울特別 을보면 無所屬이二百十 延됨으로 開票에着手치 市및 各道議會議員選擧 九名이고 民主黨百九十 못하고있으며 沃溝第一 開票는 十四日上午現在 三名 新民黨六十七名社 選擧區는二十九個投票函 再選擧를實施하게된 忠 大黨二名 其他三名인데 中二十一個投票函의開票 南瑞山第四選擧區를除外 開票가끝나지않고있는二 를끝내고 現在八個投票 하고 珍島第二、全北沃 個選擧區의 現在實情을 函의 開票가進行中에있 溝第一區等 二個選擧區 보면 珍島第二選擧區는 음으로 오늘下午中에는 의開票가아직 끝나지않 二十二個投票中 十二 黨落이判明될다고한다 고있음이다 定員四百 個가到着하고 나머지十 八十七名中 當選確定者 個가아직 到着되지않아

1960. 12. 15 중도일보

道廳內에 戒嚴事務所設置



道議事務室을 巡기로

17日上午趙參謀長等一行과 協議코 決定

▲▲▲ 군사혁명으로 천하가혼란구어진지 이틀째되는十七일상오七시부로 계엄사무소장으로 임명된제三관구사령관 金鍾元 소장에하고 급장교단일행은 참모장趙대령인솔하에 본도도청을방문하고 계엄사무소를도청내에설치하는데관한구체적인 의논하고 늦어도이날하오三시까지 지방의의해산으로모든업무가정지되고 보여지고있었다 계엄사무소를 설치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사진은 조감모 중앙 一행과 협의광경)

이날상오九시경 도지사 수사대등이 도청대에 자리잡고있는 도의회 의장실과 三층에 있는 도의회 의원실 그리고 의자들을 일일히 조사하고 계엄사무소 설치를 협의하였다 동장교단을 인솔한 趙참모장은 우선계엄업무에 필요한 인원과 시설문제를 검토하고있어 군계엄업무 부흥일반 참모부와 현재의 갖기지속에 대비하는 군사혁명위원회는 十六일하오五시로고문제四호를공포하고 조국의 혁신적인 국민적인 열망에 호응하기위하여 다음六개항목의포고를 위기돌극복하고 건설선포하였다

一、현장면직무의 일체 위원은 해포한다
二、현국회는 해산한다
三、일체의 정당사회단체의 정치활동은금지한다
四、현국무위원과 직무 권은 단기四二九四년五월十六일하오八시까지 완전인수한다
五、국가기구의 일체기능은 군사혁명위원회의 하에 이를정상적으로 집행한다
六、모든기관시설의 운영은 정상화하고 여하한 유혈적인 행위는 이를엄금한다【聯和】

1961. 5. 17
대전일보

國會및地方議會解散
國務·政務委員은逮捕

布告第四號로張政權引受等六個項決定

1961. 5. 16 대전일보

第4節 第4代 忠淸南道議會

1991년 4월 15일 시·군 기초의회가 개원되고 같은 해 6월 20일 제4대 도의원 선거가 도내 5개시 15개군에서 일제히 실시됨으로서 5·16으로 중단되었던 지방의회가 30년만에 부활되었다.

184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3.3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이 선거에서는 총유권자 1,180,314인중 813,730(68.9%)인이 투표에 참여하여 55인의 도의원이 선출되었고 7월 8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의회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개원식을 가졌다.

□ 選 擧 日 : 1991년 6월 20일

□ 議員定數 : 55인

□ 任　　期 : 1991년 7월 ~ 1995년 7월 7일 (4년)

□ 會　　期 : 54회 ~ 92회

□ 第4代 道議會議長, 副議長

〈전반기〉

○ 의　장 : 李大熙(보령군)(임기 2년 : 1991년 7월 ~ 1993년 6월)

○ 부의장 : 金容鎬(논산군), 金高盛(연기군)

〈후반기〉

○ 의　장 : 李大熙(보령군)(임기 2년 : 1993년 7월 ~ 1995년 7월 7일)

○ 부의장 : 金容鎬(논산군), 李鍾洙(천안시)

□ 道議會議員 名單

- 제4대 도의회 당선자 시군별 명단 -

○ 천안시 : 文性珪(尹用一), 李鍾洙, 孟致鎬
○ 공주시 : 金善泰, 羅榮珍
○ 대천시 : 朴鍾武, 李時雨
○ 온양시 : 金載鳳, (金鍾煥)
○ 서산시 : 李福求, 李甲俊
○ 금산군 : 金顯根, 崔源植, 梁熙喆
○ 연기군 : 李基鳳, 康基世, 金高盛
○ 공주군 : 具興書, 柳在元, 趙日東
○ 논산군 : 朴元來, 孔 均, 金容鎬
○ 부여군 : 劉載甲, 李準喆, 趙吉衍
○ 서천군 : 宋善奎, 羅信燦, 李相敦
○ 보령군 : 姜信國, 申載元(吳瓚圭), 李大熙
○ 청양군 : 鄭善興, 禹智命
○ 홍성군 : 徐重喆, 金榮昶, 田溶鳧
○ 예산군 : 李根容, 韓道源, 李東旭
○ 서산군 : 姜模俊, 金珍經, 金基興
○ 태안군 : 金世鎬, 朴東允, 金成振
○ 당진군 : 李弘根, 金鍾成, 金左泳
○ 아산군 : 全泳俊, 李元昌, 金南鎬
○ 천안군 : 金文圭, 張基日, 李傑宰

- 제4대 의원 신분 변동 사항 -

구 분	지 역	성 명	신분변동사유	비 고
1	보령군 (제2)	吳 璨 圭	• 92. 12. 22 의원직 상실	• 보궐선거에 의하여 申載元의원 당선(93.4.9)
2	천안시 (제1)	尹 用 一	• 93. 2. 12 의원직 상실	• 보궐선거에 의하여 文性珪의원 당선(93.4.9)
3	온양시 (제2)	金 鍾 煥	• 94. 9. 13 의원직 상실	• 보궐선거 미실시

※ 의원 정수는 55인이나 온양시 제2선거구 보궐선거 미 실시로 의원 명부에는 54인임.

□ 第4代 道議會 會議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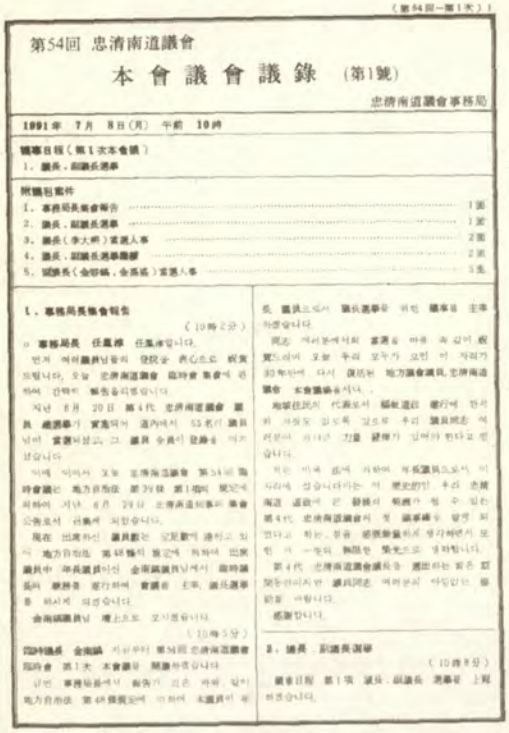

（第54回－第1次）1

第54回 忠淸南道議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1號)

忠淸南道議會事務局

1991年 7月 8日(月) 午前 10時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議長·副議長選擧

附議된 案件

1. 事務局長報告 …… 1面
2. 議長·副議長選擧 …… 1面
3. 議長(李大熙)當選人事 …… 2面
4. 議長·副議長選擧關係 …… 2面
5. 議席名(金容鎬·金泰盛)當選人事 …… 5面

1. 事務局長報告(任基淳)

(10時2分)

○ 事務局長 任基淳 任基淳입니다.

먼저 여러議員님들의 많은 協力으로 無事히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第4代 道議會가 開院을 하게 되었읍니다.

지난 6月 20日 第4代 忠淸南道議會 議員 總選擧가 實施되어 選擧에서 55名의 議員님이 當選되셨고, 그 議員 全員이 登院을 하시었읍니다.

이에 이어서 오늘 忠淸南道議會 第54回 臨時會議는 地方自治法 第39條 第1項에 規定에 의하여 지난 6月 29日 忠淸南道知事가 召集을 公告함에 의합니다.

現在 出席하신 議員數는 定足數에 達하고 있어 地方自治法 第48條의 規定에 의하여 出席議員中 年長議員이신 金泰盛議員님께서 臨時議長의 職務를 行하여 會議를 主宰, 議長選擧를 하시게 되겠읍니다.

金泰盛議員님 壇上으로 모시겠읍니다.

(10時5分)

臨時議長 金泰盛 지금부터 第54回 忠淸南道議會 臨時會 第1次 本會議를 開會하겠읍니다.

금번 本會議召集에 對하여 바쁘신 가운 데에 많이 地方自治法 第48條規定에 의하여 本議員이 年長議員으로서 議長選擧를 위한 臨時議長 主宰하겠읍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本議會를 바쁜 中에 많이 協力해 주심에 깊이 感謝드리며 앞으로 의정 이 무리가 30年하여 다시 復活된 地方議會議員, 忠淸南道議會 本會議錄습니다. .

本席은 지난 6月 20日 第4代 忠淸南道議會 議員 總選擧에 當選되어 選任된 분들 가운데 가장 年長이시고 또한 우리 議員同志 여러분이 서로가 信賴 깊은 分으로 우리 議員同志 여러분이 서로가 信賴 깊은 分으로 우리 議員同志 여러분이 서로가 信賴 깊은 分으로

1991. 7. 8 중도일보

The Joong-do Ilbo 1991年(檀紀 4324年) 7月 8日 月曜日 【日刊】

大田·忠南등 市·道의회 開院

議長내정자 脫落 "파란"

"양심에 따라 職務 성실히 수행" 議員선서



의장선출 투표 30년만에 부활된 광역의회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가 개최, 의장단 선출이 있었으나 곳곳에서 의장단 내정에 따른 후유 이 표출돼 지방자치제가 첫 단계부터 파란을 겪었다. 〈金星鎬기자〉

대전시·충남도의회를 비롯, 전국 15개 시·도의회가 8일 일제히 개원함으로써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가 본격 개막됐다.

이날 오전10시 대전시·충남도의회는 각각 본회의장에서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를 열고 의장 부의장 등 의장단을 무기명투표로 선출, 4년 임기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대전시의회는 『양심을 존중하고 파당적 정치를 배격하며 지방의 발전을 이룩하는 2년의 의정활동을 수행할 것을 선서했다.

이날 오전9시에 열린 개원식에서 대전시·충남도의회 의원들은 『양심을 존중하고 파당적 정치를 배격하며 주민의 복지와 지방의 발전을 이룩하는 2년의 의정활동을 수행할 것을 선서했다.

이어 개원식에 참석한 내빈들의 축하메시지를 통해 『지방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서 의원들의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불신과 파당적 정치를 지양하고 주민의 복지와 지방의 발전을 이룩하는 기초의회가 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기는 3일간의 일정으로 시·도의회가 개원식과 함께 의장단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 대전시의회는 연 1백32표 중 15표를 얻은 이영우의원(민정·동구)이 의장으로 선출됐으며 충남도의회는 전체 의원 80명 중 79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가 실시,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예정된 의장단 선출이 무산됐다.

대전시·충남도의회가 의장단 선출에 실패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결선투표 실시여부 검토 등 의장단 선출을 위한 후속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이나 이번 개원으로 정식 출범한 시·도의회는 앞으로 1년간 의정활동을 펴게 되며 이에 따라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각종 파당적 정치가 지양되고 주민의 복지와 지방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이 펼쳐질 것이 기대된다.

◇대전시의회 ▲의장 이영우(민정·동구) ▲부의장 송병식(민정·중구) 박희승(민정·서구) ▲의원 김종필(민정·중구) 김종호(민정·중구) 김홍기(민정·중구) 박종원(민정·중구) 박희승(민정·서구) 송병식(민정·중구) 이영우(민정·동구) 정기원(민정·동구) 정순덕(민정·동구) 조성태(민정·서구) 최병렬(민정·서구) 최재욱(민정·서구) 한광옥(민정·동구) 이해찬(민주·대덕) 이희규(민주·대덕) 조남조(민주·중구) 조세형(민주·서구) 조순형(민주·서구) 조홍래(민주·중구) 최명헌(민주·서구) 한영수(민주·중구) 홍사덕(민주·중구) 황인성(민주·동구) 이상철(신민·대덕) 이정무(신민·서구) 이종찬(신민·동구) 정석모(신민·중구) 정해주(신민·중구) 조남기(신민·중구) 조부연(신민·중구) 조세현(신민·서구) 조순용(신민·중구) 조일재(신민·중구) 조정식(신민·서구) 조진형(신민·중구) 조한기(신민·중구) 조홍래(신민·중구) 최명헌(신민·서구) 한영수(신민·중구) 홍사덕(신민·중구) 황인성(신민

□ 言論에 비친 第4代 道議會

1991. 7. 27 중도일보

1991年 (檀紀 4324年) 7月 27日 土曜日 【日刊】

道의회 상임위 구성

위원장 민자 5 무소속 1명

충남도의회(의장 李大熙)에 孟致鎬의원(무소속·천안)는 27일오전 제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내무위원회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忠南道의회 상임위 명단

내 무 위(13)	농림수산위(10)	건 설 위(11)
위원장 李鍾洙 (민자·천안시)	위원장 李根容 (민자·예산군)	위원장 金顯根 (민자·금산군)
金善泰 金載鳳 李基鳳 趙日東 金容鎬 孔 均 劉載甲 羅信燦 吳瓚奎 鄭善興 金珍經 金鍾成	李福求 尹用一 梁熙喆 廉基世 李相敦 姜信國 金成振 金南鎬 張基日	具興書 朴鍾武 金鍾燦 李甲俊 柳在元 朴元來 李時雨 李準喆 田溶高 李元昌
문교·사회위(11)	지역경제위(9)	운 영 위(15)
위원장 金基興 (민자·서산시)	위원장 孟致鎬 (무·천안시)	위원장 鄭善興 (민자·청양군)
宋善奎 羅榮珍 金高盛 趙吉衍 禹智命 金榮昶 余重喆 李弘根 全泳俊 李傑孝	金世鎬 崔源植 李東旭 韓道源 姜模俊 朴東允 金佐泳 金文圭	趙吉衍 李鍾洙 孟致鎬 金載鳳 金顯根 趙日東 劉載甲 李準喆 姜信國 李根容 金基興 李弘根 全泳俊 金南鎬

( )안 숫자는 의원수

1991. 9. 10 대전일보

西紀1991年(檀紀4324年)9月10日 火曜日 (1版) (日刊)

소모성 豫算 삭감방침 道의회

예산심사小委가동

○…91년 忠南道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 제57회충남도의회 임시회개원을 앞둔 도의회는 의장단을 비롯 전문위원, 사무국요원들은 추경안을 다룰 개원준비에 분주한 모습.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정원15명의 예결위를 구성키로 하고 예결위선임문제를 도의장에게 일임하는한편 오는19일부터 예결위원장선출과 예산안심사소위를 본격 가동할 방침.

충남도의회 李大熙의장은 9일 예결위운영과 관련 『현재 나라전체의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긴축·절약하는 풍토를 조성하는것이 있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그 재원을 복지부문으로 돌릴 계획』이라고 피력.

한편 도의회는 10일 개원에 이어 내무등 각 상임위활동을 벌인뒤 오는19일 본회의를 열어 가까스로 특위를 구성키로 함의.

논란의 발단은 權周炳의원(선화2동)의 제안 설명에 대해 金飛龍의원(무창1동)이 『특위 구성에는 찬성하나 사안에 비춰볼때 中區議會 단독으로 구성하는 것과는 大田市차원에서 市의회와 각 區의회가 연계하여 합동으로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힘을 결집시킬 수 있다』며 수정안을 제의하면서 비롯.

이어 찬성·반대토론에 나선 의원들은 금강제2휴게소 건설을 막아 1백10만 대전시민의 생명수인 大淸湖를 보호하기 위해선 中區의회가 특위를 구성, 선도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소장파와 정부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범시민적으로 힘을 합쳐 대처해나가야 한다는 노장파의 신중한 의견이 맞서 설전.

장시간의 논란에도 불구, 합의점을 찾지못한 의원들은 이 문제를 표결에 붙여 13대10이라는 팽팽한 접전끝에 中區의회부터 특위를 구성하자는 원안을 채택.

결국 이날의 설전은 소장파의원들의 승리로 끝났지만 한편에서는 집행부와 의회간의 불협화음을 빚는 계기가 되기도.

大淸湖 수질특위 접전끝 구성

中區團體長후보 하마평 벌써 무성

沃川

○…9일 오후 열린 천안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는 조례개정안을 제안설명해야할 담당과장이 자리를 지키지 않아 제안설명이 제외되는 바람에 의원들의 질의 끝에 금강제2휴게소 건설 강행방침에 맞서기 위해선 노장파의원들의 신중한 대처가 더욱 설득력이 있었다며 수긍하는 눈치.

"회의진행 뒤죽박죽"

1991. 11. 28 중도일보



1991年(檀紀 4324年) 11月 28日 木曜日 【日刊】

지방議員 판공비 거부

大田市·忠南道 이어 기초의회로 확산

豫算심의때 삭감키로

大田市議會

1991. 12. 10 대전일보

忠南 唐津·長項배후도시 계획 수립중

大田 1·2工團 이전 대상지 물색못해





孔 ○○의원



李○○의원



李○○의원



劉○○의원

서울신문사 ○○○지국
나○○ 전화 ☎ 3134

1992. 4. 19 대전매일

(2) 日曜日 西紀1992年4月19日

「議員보좌관제」추진 움직임

忠南道의회 서울시와 뜻같이…政府측과 마찰예상

서울시의회가 의원개인보좌관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내 지방의회가 이를 「원점」으로 받아들여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상당수 의원들은 지난해 의회개혁조치부터 의회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의원별 개인보좌관제의 필요성을 줄곧 제기해 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내무부는 17일 「서울시의회의 개인보좌관제 신설동향에 관하여」라는 자료를 충남도내 자치단체에 보내 개인보좌관을 두는 것은 지방의원들이 의원직을 수행하는데 시간적이나 활동영역상의 한계를 어느정도 극복하고 지방의회 수행을 보다 활성화하는데 거의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무보수·명예직의 원칙에 위배되며 ▲행정조직과 관리체계에 혼란 ▲조례개정만으로 보좌관제 도입은 법적으로 불가 ▲보좌관을 통한 지방의원의 권한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의회관계자는 상당수의원이 보좌관제도입을 찬성하고있어 서울시의회입장에 동조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職員은 "17일 서울서 개최된 지방의원은 직업이 정치인 국회의원과 다른만큼 보좌관제 시행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말하고 이에대한 보완책으로 전문위원수준가의 이들의 자질향상을 통한 의원별보좌관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대부분 의회의장단들이 서울시의회의 방침을 수용했으며 충남도의회 의원들도 보좌관제도입을 바라고있는 만큼 단독으로 실무협의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대해 金東勳충남대교수(지방자치학과)는 "지방행정의 전문화등으로 보좌관제의 도입은 필요하나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이 유급보좌관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정신에 위배된다

1992. 6. 27 조선일보

西紀 1992年 6月 27日 土曜日

"忠南도청을 옮겨야 한다"

"균형발전·주민편의 위해 필요"
후보지 선정 논란도 치열할듯

道議会서 공식문제 제기

충남도청이전문제가 도의회를 중심으로 또다시 복격 거론되고있다.

지난 89년 1월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된후 각종 협력으로 제기되어온 도청이전논의가 도의회에서의 원시점의 문제로 다시 불거져 나온 것이다.

이번 논의는 지난 4월 총선을 전후해 대전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잇따라 도청이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나서면서 촉발됐다.

우선 표면적으로 거론되고있는 도청분만아니라 교육청 경찰청을비롯, 농수축협도지부, 농촌진흥원 농민교육원 가축위생시험연구소 잠업곤충소 보건환경연구원등이 대전에 집중돼있어 이용하는 도민들이 대전에까지 와야 일을 볼수밖에 없고 각기관단체의 행사도 대전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도청이전은 단순한 소재지이전이 아니라 관련 기관들이 따라 도내전체가 균형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이들 기관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대전에 나는 후보지선정문제가 오히려 난제로 도사리고 있다.

이전이 가져오는 해당지역의 개발효과등을 노려 저마다 유치경쟁을 벌일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그에 따른 도내전체가 갈등과 분열에 휩싸일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이전의 당위성여부 현재 이전후보지로 거론되고있는 지역은 천안 공주 청양 홍성 예산 서산 온양등 7개지역, 3년전 분리이전이 논의될때부터 이들지역이 대상지로 올랐으나 결론이 나지않아 이문제가 본격화될경우 유치경쟁 또한 치열해질 전망이다.

담사자이기도한 도청측이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문제제기 자체를 사실상 꺼려했던 것도 그때문이다.

李鍾國충남지사가 이문제와 관련한 답변에서도 도청이전에 따른 지역간의 유치경쟁으로 안정과 주민화합을 해치고 갈등을 초래할 소지가 있기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무해야 할것이라며 신중론을 펴왔던것도 이때문이다.

도청이전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문제도 난제중 하나.그러나 의원들은 광역개발차원으로 신도시건설을 추진,개발이익금을 조성하는 한편,현 도청부지등 대전시내에 있는 도유재산을 처분하면 재원조달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견해를 갖고있다.

문제는 의원들 스스로도 인정하듯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후보지선정을 위한 도민의 합의를 어떻게 도출해내느냐 하는게 관건이라 할수있다.

〈金昌洙기자〉



◇지방화시대를 맞아 대전시내에 자리잡고 있는 충남도청 이전문제가 6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또다시 거론되고있다.

1992. 6. 29 중도일보

1992年(檀紀4325年) 6月29日 月曜日 【日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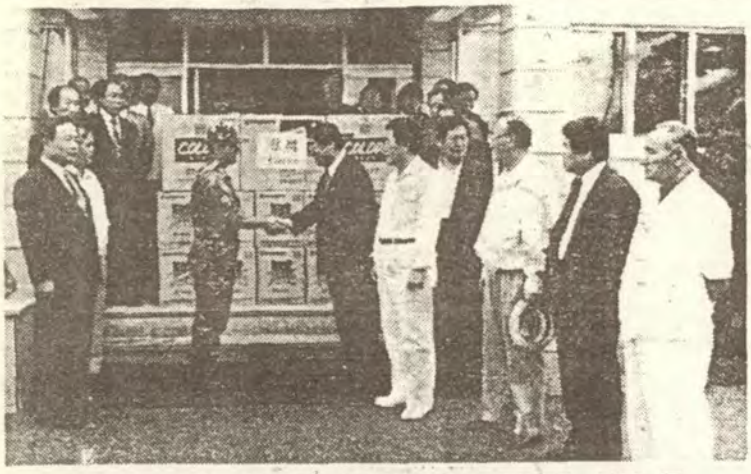

충남도의회 의원과 사무처직원등 67명이 서울 통일연수원에서 교육을 마친뒤 전방의 ○○부대를 방문, 위문품을 전달했다.

道의회의원 연수 마쳐

예산심의 전문기술 습득

전방○○사단 방문 위로

지방의회의 결산과 예산 안심사기법등 전문적 지식 습득을 위한 의원연수교육이 지난6월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수유리 통일연수원에서 열렸다.

이 연수교육에는 충남도의회의원 55명 전원과 사무처직원등 67명이 참석, 국회예산안 입법심의과정 등에 대해 수강했다.

또한 이자리에서는 통일연수원 崔문현원장의 통일정책특강과 재미교포 李은일씨의 북한방문경험담도 있었다.

이어 일행은 통일전망대를 관람하고 전방 ○○사단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 장병들을 위문했다.

第2章 第4代 忠淸南道議會

第1節 第4代 忠淸南道議員 選擧現況

第2節 第4代 道議會 構成現況

第3節 議會의 組織

第4節 議會의 權限

第5節 議會의 運營

第6節 議會事務處 現況

第2章 第4代 忠淸南道議會

1991년 6월 20일 30년만에 부활되어 실시한 제4대 도의원선거는 5개시 15개군에서 총유권자 1,180,314인중 813,816인(68.9%)이 투표에 참여하고 184인의 입후보자중 55인의 의원을 선출하여 1991년 7월 8일에 역사적인 충청남도의회가 개원되었다.

□ 選 擧 日 : 1991년 6월 20일

□ 議員定數 : 55인

□ 任　　期 : 1991년 7월 ~ 1995년 7월 7일 (4년)

□ 會　　期 : 제54회 ~ 제92회

□ 初代 ~ 第4代 道議會 選擧現況

구　　분	초　대	제2대	제3대	제4대
선 거 일	'52. 5. 10	'56. 8. 13	'60. 12. 12	'91. 6. 20
의원정수	46인	45인	48인	55인
입후보자수	128인	123인	188인	184인
경 쟁 률	2.8:1	2.7:1	3.9:1	3.3:1
투 표 율	78.5%	86.9%	68.8%	68.9%

第1節 第4代 道議員選擧 現況

가. 選擧主要事務 日程表

시행일자	주 요 사 무 일 정	담 당 기 관	비 고
1991 6. 1일	○ 선거일 공고 ○ 인구수 등 공시	대통령 시 · 군위원회	
6. 4일 까지	○ 선거구명부 열람 및 공람장소 시간공고	읍 · 면의장 선거구 위원회	
6. 1일 부터 6. 6일 까지	○ 후보자 등록 ○ 투표공고 · 통보 ○ 부재자신고 및 명부작성	선거구 위원회 시 · 군의장 〃	
6. 6일	○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 (기호)결정 ○ 합동연설회 일시와 장소 결정	선거구 위원회 〃	
6. 7일	○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읍 · 면의장	
6. 7일 부터 6. 9일 까지	○ 선거인명부 열람 · 공람 및 이의신청	〃	
6. 10일 까지	○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투표구 위원회	
6. 11일 까지	○ 선전 벽보 작성	선거구 위원회	
6. 11일 부터 6. 13일 까지	○ 우편투표 용지의 발송 (선거공보 동봉)	시 · 군 위원회	
6. 13일 까지	○ 투표용지 모형공고(투표구 마다)	〃	
6. 14일 까지	○ 선전 벽보 첨부	선거구 위원회	
6. 15일 까지	○ 개표장소 공고	시 · 군 위원회	
6. 15일(토)	○ 선거인명부 확정	읍 · 면의장	
6. 17일 까지	○ 투표사무종사원 위촉 · 공고 ○ 개표사무종사원 위촉 · 공고	투표구 위원회 시 · 군 위원회	
6. 18일 까지	○ 투표 통지표 교부 및 교부록 작성	읍 · 면의장	
6. 19일 까지	○ 정당대린인의 투표용지 가인 ○ 투표소의 설비	시 · 군 위원회 투표구 위원회위원장	
6. 20일(목)	○ 선거실시	투표구 위원회	

나. 市郡別 道議員選擧 投票現況

구분 / 시군	선거구수	투표구수	인구수 (91.4.30)	선거인수 (무투표 선거구 제외)	투 표 수	투표율 (%)	비 고
계	55	859	1,903,864	1,180,314	813,816	68.9	
천 안 시	3	52	177,056	113,242	63,978	56.5	
공 주 시	2	19	54,796	34,224	24,573	71.8	
대 천 시	2	16	53,300	32,301	23,146	71.7	
온 양 시	2	19	58,648	37,239	22,684	60.9	
서 산 시	2	21	53,433	33,221	23,334	70.2	
금 산 군	3	43	81,162	52,910	37,326	70.5	
연 기 군	3	34	87,392	57,191	40,920	71.5	
공 주 군	3	58	91,784	60,020	42,053	70.1	
논 산 군	3	69	175,530	111,877	79,776	71.3	
부 여 군	3	59	121,171	34,141	21,820	63.9	
서 천 군	3	52	95,892	62,134	43,933	70.7	
보 령 군	3	46	80,455	51,204	38,469	75.1	
청 양 군	2	41	54,649	35,373	25,580	72.3	
홍 성 군	3	57	110,074	70,731	50,903	72.0	
예 산 군	3	55	121,789	78,333	56,266	71.8	
서 산 군	3	42	89,695	58,137	40,720	70.0	
태 안 군	3	40	80,603	50,394	37,919	75.2	
당 진 군	3	46	126,410	81,070	54,680	67.4	
아 산 군	3	42	92,859	61,819	41,149	66.6	
천 안 군	3	48	97,166	64,753	44,587	68.9	

다. 候補者 登錄現況

(단위 : 명)

구 분	선출정수	등록자수			경합비율	비 고
		계	남	여		
지역구	55인	184	180	4	3.3 : 1	

라. 當選者 現況

□ 직업별

(단위 : 명)

구 분	계	정당인	농업	상업	광·공업	수산업	운수업	건설업	의사·약사	회사원	기타
당선자수	55	1	13	10	1	2	2	7	6	2	11
비율(%)	100	1.8	23.7	18.2	1.8	3.6	3.6	12.8	10.9	3.6	20

□ 학력별

(단위 : 명)

구 분	합계	독학	국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수료	대학원 졸업	비고
당선자수	55	1	2	2	10	4	18	14	4	
비율(%)	100	1.9	3.6	3.6	18.2	7.3	32.7	25.5	7.3	

□ 연령별 · 성별

(단위 : 명)

구 분	합계	연령별							성별	
		34이하	35~39	40~44	45~49	50~54	55~59	60이상	남	여
당선자수	55	1	2	9	11	16	10	6	55	
비율(%)	100	1.8	3.6	16.4	20.0	29.1	18.2	10.9	100	

□ 정당별 당선자수

(단위 : 명)

구 분	합 계	민주자유당	신민당	민 주 당	무 소 속
당선자수	55	37	-	4	14
비율(%)	100	67.3	-	7.3	25.4

□ 道議員 選擧活動 畵報

▣ 입후보 안내 설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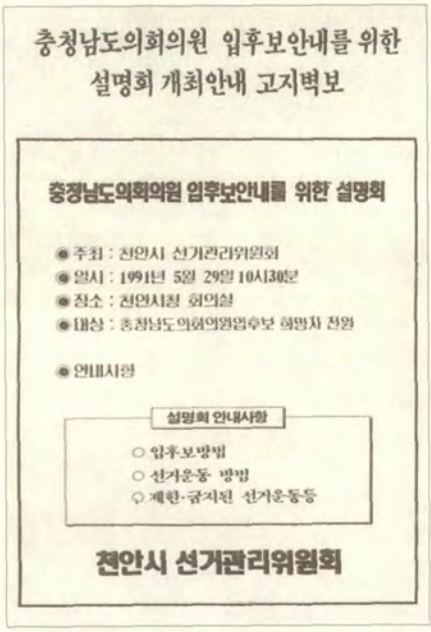
충청남도의회의원 입후보안내를 위한
설명회 개최안내 고지벽보

충청남도의회의원 입후보안내를 위한 설명회

- 주최 : 천안시 선거관리위원회
- 일시 : 1991년 5월 29일 10시30분
- 장소 : 천안시청 회의실
- 대상 : 충청남도의회의원입후보 희망자 전원
- 안내사항

설명회 안내사항

○ 입후보방법
○ 선거운동 방법
○ 제한·금지된 선거운동등

천안시 선거관리위원회

입후보 안내 설명회 개최 고지벽보('91. 5. 27 천안시)



입후보 안내를 위한 설명회('91. 5. 29 천안시)

▣ 선전벽보



첩부된 선전벽보(온양시)



소형인쇄물(대천시 · 온양시)

▣ 합동연설회



합동연설회 연설순위 추첨('91. 6. 16 온양시)



합동연설회('91. 6. 12 서천군)

▣ 투 표



투표를 기다리는 선거인('91. 6. 20 논산군)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는 선거인('91. 6. 20 연기군)

▣ 당선인 결정 및 당선통지서 전달



당선인에게 당선통지서 전달('91. 6. 21 천안시)



당선통지서 전달식('91. 6. 21 아산군)

▣ 선거계도



선거계도 청사현판(도위원회)



선거계도 포스터



선거계도 선전탑(온양시)

▣ 신문광고



1차('91. 5. 27 대전일보)



2차('91. 6. 2 대전매일신문)



3차('91. 6. 7 중도일보)

第2節 第4代 道議會 構成現況

1. 道議會 構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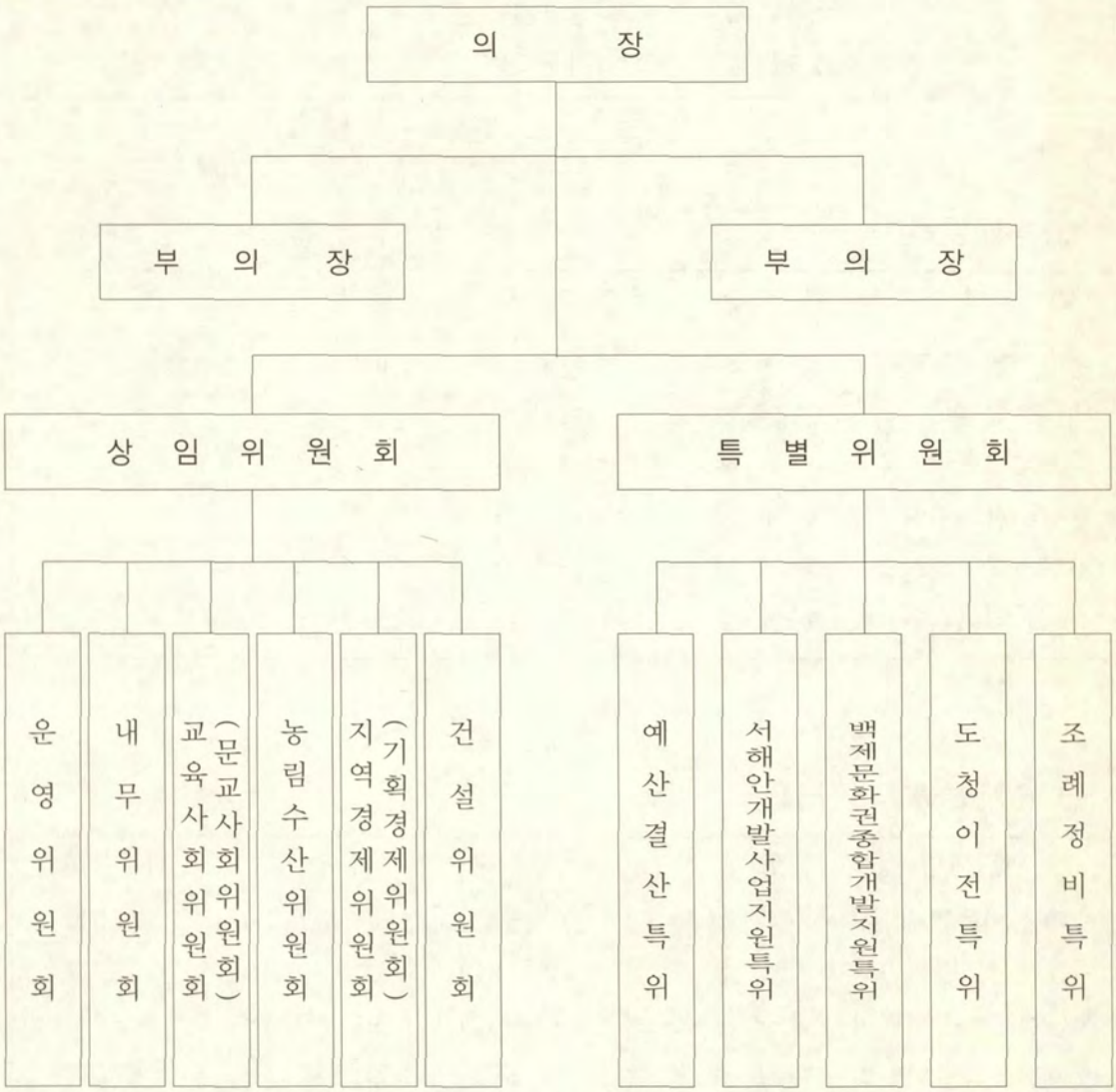

2. 前半期 構成 현황

□ 議長, 副議長

직 위	성 명	지 역 구	피 선 일	비 고
의 장	李 大 熙	보령군(3)	1991. 7. 8	
부 의 장	金 容 鎬	논산군(3)	〃	
〃	金 高 盛	연기군(3)	〃	

□ 常任委員長

위 원 회 별	위 원 장	지 역 구	피 선 일	비 고
운 영 위 원 회	鄭 善 興	청양군(1)	1991. 7. 27	
내 무 위 원 회	李 鍾 洙	천안시(2)	〃	
교육사회위원회	金 基 興	서산군(3)	〃	
농림수산위원회	李 根 容	예산군(1)	〃	
지역경제위원회	孟 致 鎬	천안시(3)	〃	
건 설 위 원 회	金 顯 根	금산군(1)	〃	

□ 特別委員會 委員長

위원회명	위 원 장	지 역 구	피 선 일	비 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李 根 容	예산군(1)	91. 7. 26	제5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李 鍾 洙	천안시(2)	91. 9. 10	제5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全 泳 俊	아산군(1)	91. 10. 10	제5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康 基 世	연기군(2)	91. 12. 9	제60회

위 원 회 명	위 원 장	지 역 구	피 선 일	비 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李 弘 根	당진군(1)	92. 6. 2	제63회
백제문화권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趙 日 東	공주군(3)	92. 10. 6	제66회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	田 溶 鳧	홍성군(3)	92. 10. 6	제6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崔 源 植	금산군(2)	92. 11. 9	제6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姜 信 國	보령군(1)	92. 11. 30	제69회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金 南 鎬	아산군(2)	92. 12. 24	제6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韓 道 源	예산군(2)	93. 5. 26	제7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金 成 振	태안군(3)	93. 6. 9	제74회

□ 常任委員會 幹事

위 원 회 별	간 사	지 역 구	피 선 일	비 고
운 영 위 원 회	趙 吉 衍	부여군(3)	1991. 7. 27	
내 무 위 원 회	金 善 泰	공주시(1)	〃	
교육사회위원회	宋 善 奎	서천군(1)	〃	
농림수산위원회	李 福 求	서산시(1)	〃	
지역경제위원회	金 世 鎬	태안군(1)	〃	
건 설 위 원 회	具 興 書	공주군(1)	〃	

□ 特別委員會 幹事

위 원 회 명	간 사	지 역 구	피 선 일	비 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李 相 敦	서천군(3)	91. 7. 26	제5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金 世 鎬	태안군(1)	91. 9. 10	제5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羅 榮 珍	공주시(2)	91. 10. 10	제5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金 世 鎬	태안군(1)	91. 12. 9	제6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李 基 鳳	연기군(1)	92. 6. 2	제63회
백제문화권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朴 元 來	논산군(1)	92. 10. 6	제66회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	金 珍 經	서산군(2)	92. 10. 6	제6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李 東 旭	예산군(3)	92. 11. 9	제6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柳 在 元	공주군(2)	92. 11. 30	제69회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羅 榮 珍	공주시(2)	92. 12. 24	제6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金 文 圭	천안군(1)	93. 5. 26	제7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李 時 雨	대천시(2)	93. 6. 9	제74회

□ 前半期 構成表


議長 李大熙
副議長 金容鎬
副議長 金高盛
運營委員會
委員長 鄭善興 青陽郡
幹事 趙吉衍 扶餘郡
李鍾洙 天安市
孟致鎬 天安市
金載鳳 溫陽市
金顯根 錦山郡
趙日東 公州郡
劉載甲 扶餘郡
李準喆 扶餘郡
姜信國 保寧郡
李根容 禮山郡
金基興 瑞山郡
李弘根 唐津郡
全泳俊 牙山郡
金南鎬 牙山郡
內務委員會
委員長 李鍾洙 天安市
幹事 金善泰 公州市
金載鳳 溫陽市
李基鳳 燕岐郡
趙日東 公州郡
金容鎬 論山郡
孔 均 論山郡
劉載甲 扶餘郡
羅信燦 舒川郡
申載元 保寧郡
鄭善興 青陽郡
金珍經 瑞山郡
金鍾成 唐津郡
教育·社會委員會
委員長 金基興 瑞山郡
幹事 宋善奎 舒川郡
羅榮珍 公州市
金高盛 燕岐郡
趙吉衍 扶餘郡
禹智命 青陽郡
金榮昶 洪城郡
徐重喆 洪城郡
李弘根 唐津郡
全泳俊 牙山郡
李傑宰 天安郡
農林水產委員會
委員長 李根容 禮山郡
幹事 李福求 瑞山市
文性珪 天安市
梁熙喆 錦山郡
康基世 燕岐郡
李相敦 舒川郡
姜信國 保寧郡
金成振 泰安郡
金南鎬 牙山郡
張基日 天安郡
地域經濟委員會
委員長 孟致鎬 天安市
幹事 金世鎬 泰安郡
崔源植 錦山郡
李東旭 禮山郡
韓道源 禮山郡
姜模俊 瑞山郡
朴東允 泰安郡
金佐泳 唐津郡
金文圭 天安郡
建設委員會
委員長 金顯根 錦山郡
幹事 具興書 公州郡
朴鍾武 大川市
李時雨 大川市
李甲俊 瑞山市
柳在元 公州郡
朴元來 論山郡
李準喆 扶餘郡
田溶鳥 洪城郡
李元昌 牙山郡

3. 後半期 構成現況

□ 議長, 副議長

직 위	성 명	지 역 구	피 선 일	비 고
의 장	李 大 熙	보령군(3)	1993. 6. 30	
부 의 장	金 容 鎬	논산군(3)	〃	
부 의 장	李 鍾 洙	천안시(2)	〃	

□ 常任委員長

위 원 회 별	위 원 장	지 역 구	피 선 일	비 고
운 영 위 원 회	金 顯 根	금산군(1)	1993. 7. 2	
기획경제위원회	柳 在 元	공주군(2)	〃	
내 무 위 원 회	田 溶 鳧	홍성군(3)	〃	
교육사회위원회	李 福 求	서산시(1)	〃	
농림수산위원회	金 成 振	태안군(3)	〃	
건 설 위 원 회	李 甲 俊	서산시(2)	〃	

□ 特別委員會 委員長

위 원 회 명	위 원 장	지 역 구	피 선 일	비 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趙 日 東	공주군(3)	1993. 9. 16	제7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李 弘 根	당진군(1)	1993. 10. 18	제78회
서해안개발사업지원 특별위원회	宋 善 奎	서천군(1)	1993. 10. 19	제78회

위 원 회 명	위 원 장	지 역 구	피 선 일	비 고
백제문화권종합개발 지원특별위원회	具 興 書	공주군(1)	1993. 10. 19	제78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全 泳 俊	아산군(1)	1993. 10. 19	제7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劉 載 甲	부여군(1)	1993. 12. 1	제8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金 鍾 煥	온양시(2)	1994. 4. 27	제8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金 鍾 成	당진군(2)	1994. 7. 8	제8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金 世 鎬	태안군(1)	1994. 10. 14	제8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朴 鍾 武	대천시(1)	1994. 12. 2	제8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羅 信 燦	서천군(2)	1995. 5. 23	제92회

□ 常任委員會 幹事

위 원 회 별	간 사	지 역 구	피 선 일	비 고
운 영 위 원 회	趙 吉 衍	부여군(3)	1993. 8. 17	
기획경제위원회	金 善 泰	공주시(1)	〃	
내 무 위 원 회	羅 榮 珍	공주시(2)	〃	
교육사회위원회	李 傑 宰	천안군(3)	〃	
농림수산위원회	張 基 日	천안군(2)	〃	
건 설 위 원 회	金 文 圭	천안군(1)	〃	

□ 特別委員會 幹事

위 원 회 명	간 사	지 역 구	피 선 일	비 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李 時 雨	대천시(2)	93. 9. 16	제7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朴 東 允	태안군(2)	93. 10. 18	제78회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	朴 東 允	태안군(2)	93. 10. 19	제78회
백제문화권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朴 元 來	논산군(1)	93. 10. 19	제78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禹 智 命	청양군(2)	93. 10. 19	제7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朴 東 允	태안군(2)	93. 12. 1	제8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李 傑 宰	천안군(3)	94. 4. 27	제8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李 相 敦	서천군(3)	94. 7. 8	제8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申 載 元	보령군(2)	94. 10. 14	제8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徐 重 喆	홍성군(1)	94. 12. 2	제8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李 東 允	태안군(2)	95. 5. 23	제92회

□ 後半期 構成表


議長 李大熙
副議長 金容鎬
副議長 李鍾洙
運營委員會
委員長 金顯根 錦山郡
幹事 趙吉衍 扶餘郡
金善泰 公州市
羅榮珍 公州市
李基鳳 燕岐郡
羅信燦 舒川郡
金成振 泰安郡
金佐泳 唐津郡
金文圭 天安郡
張基日 天安郡
李傑宰 天安郡
企劃經濟委員會
委員長 柳在元 公州郡
幹事 金善泰 公州市
李鍾洙 天安市
金載鳳 溫陽市
金顯根 錦山郡
孔 均 論山郡
羅信燦 舒川郡
鄭善興 靑陽郡
姜模俊 瑞山郡
金世鎬 泰安郡
金南鎬 牙山郡
內務委員會
委員長 田溶鳳 洪城郡
幹事 羅榮珍 公州市
李時雨 大川市
崔源植 錦山郡
康基世 燕岐郡
趙日東 公州郡
朴元來 論山郡
趙吉衍 扶餘郡
禹智命 靑陽郡
金基興 瑞山郡
全泳俊 牙山郡
教育·社會委員會
委員長 李福求 瑞山市
幹事 李傑宰 天安郡
文性珪 天安市
李基鳳 燕岐郡
金容鎬 論山郡
李準喆 扶餘郡
申載元 保寧郡
宋善圭 舒川郡
金榮昶 洪城郡
金珍經 瑞山郡
金鍾成 唐津郡
農林水產委員會
委員長 金成振 泰安郡
幹事 張基日 天安郡
孟致鎬 天安市
梁熙喆 錦山郡
劉載甲 扶餘郡
李相敦 舒川郡
姜信國 保寧郡
徐重喆 洪城郡
李根容 禮山郡
李東旭 禮山郡
金佐泳 唐津郡
建設委員會
委員長 李甲俊 瑞山市
幹事 金文圭 天安郡
朴鍾武 大川市
金高盛 燕岐郡
具興書 公州郡
韓道源 禮山郡
朴東允 泰安郡
李弘根 唐津郡
李元昌 牙山郡

4. 特別委員會 構成 및 活動

□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 회 기 : 제55회 임시회, 제78회 임시회

○ 구성현황(11인)

- 위원장 : 전반기 : 李根容 의원, 후반기 : 全泳俊 의원
- 간 사 : 전반기 : 李相敦 의원, 후반기 : 禹智命 의원
- 위 원 : 전반기 : 李準喆 의원, 金顯根 의원, 朴元來 의원, 金世鎬 의원, 金成振 의원, 金載鳳 의원, 羅信燦 의원, 朴元昌 의원, 李傑宰 의원
  후반기 : 金載鳳 의원, 李準喆 의원, 李東旭 의원, 金文圭 의원, 羅信燦 의원, 金基興 의원, 李弘根 의원

○ 활동기간 : 전반기 : '91. 7. 26~7. 26(1일간),
후반기 : 조례정비 완료시까지

○ 심사안건 : 충청남도의회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 및 충청남도 조례 203건

○ 내 용

- 산업위원회를 농림수산위원회와 지역경제위원회로 분리
- '94. 1. 27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실무작업반 구성
- '94. 3. 5 총 조례 203건중 검토대상 157건에 개정을 요하는 35건 분리 19건은 정비완료하고 16건은 계속 정비키로 함.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회 기 : 제57회 임시회

○ 구성현황(15인)

- 위원장 : 李鍾洙 의원
- 간 사 : 金世鎬 의원
- 위 원 : 金載鳳 의원, 李甲俊 의원, 梁熙喆 의원, 康基世 의원, 金善泰 의원, 朴元來 의원, 趙吉衍 의원, 羅信燦 의원, 吳瓚圭 의원, 金榮昶 의원, 李東旭 의원, 李弘根 의원. 李傑宰 의원

○ 활동기간 : '91. 9. 13 ~ 9. 19 (6일간)

○ 심사안건 : '91 제2회 충청남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회 기 : 제58회 임시회

○ 구성현황(15인)

- 위원장 : 全泳俊(민자)의원
- 간 사 : 羅榮珍(무소속)의원
- 위 원 : 李時雨 의원, 李福求 의원, 崔源植 의원, 李基鳳 의원, 趙日東 의원, 孔 均 의원, 金鍾煥 의원, 禹智命 의원, 徐重喆 의원, 韓道源 의원, 金珍經 의원, 朴東允 의원, 張基日 의원

○ 활동기간 : '91. 10. 14 ~ 10. 15 (2일간)

○ 심사안건 : '91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내 용 : '91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승인함.
- 세입 277억원, 세출 277억원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회 기 : 제60회 정기회

○ 구성현황 (25인)

- 위원장 : 康基世(민자) 의원
- 간 사 : 金世鎬(민자) 의원
- 위 원 : 尹用一 의원, 金善泰 의원, 朴鍾武 의원, 金載鳳 의원, 具興書 의원, 柳在元 의원, 弘 均 의원, 劉載甲 의원, 趙吉衍 의원, 宋善奎 의원, 李相敦 의원, 姜信國 의원, 吳瓚圭 의원, 金榮昶 의원, 田溶鳧 의원, 姜模俊 의원, 金珍經 의원, 金成振 의원, 金鍾成 의원, 金佐泳 의원, 李元昌 의원, 全泳俊 의원, 金文圭 의원

○ 활동기간 : '91. 12. 17 ~ 12. 20 (4일간)

○ 심사안건 : 1. '92충청남도예산과 '92충청남도교육비 예산안
2. '91충청남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91충남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 소위원회 구성

- 제1소위원회 구성('92 충청남도예산안 심의) 13인
  - 위원장 : 田溶鳧(민자) 의원
  - 간 사 : 吳瓚圭(무소속) 의원
  - 위 원 : 金載鳳 의원, 姜信國 의원, 具興書 의원, 趙吉衍 의원, 宋善奎 의원, 金善泰 의원, 金世鎬 의원, 金成振 의원, 金鍾成 의원, 李元昌 의원, 金文圭 의원,
- 제2소위원회 구성('92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예산심의) 11인
  - 위원장 : 金榮昶(민자) 의원
  - 간 사 : 金珍經(민자) 의원
  - 위 원 : 尹用一 의원, 朴鍾武 의원, 柳在元 의원, 孔 均 의원, 劉載甲 의원, 李相敦 의원, 姜模俊 의원, 金佐泳 의원, 全泳俊 의원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회　　기 : 제63회 임시회

○ 구성현황(20인)

- 위원장 : 李弘根(민자) 의원
- 간　사 : 李基鳳(무소속) 의원
- 위　원 : 尹用一 의원, 羅榮珍 의원, 李時雨 의원, 金鍾煥 의원, 李福求 의원, 崔源植 의원, 柳在元 의원, 朴元來 의원, 趙吉衍 의원, 羅信燦 의원, 吳瓚圭 의원, 禹智命 의원, 金榮昶 의원, 李東旭 의원, 朴東允 의원, 金鍾成 의원, 李元昌 의원, 張基日 의원

○ 활동기간 : '92. 6. 8 ~ 6. 10 (3일간)

○ 심사안건 : '92 도 및 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내　　용 : 1. '92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승인함.

- 세입 1,127억원, 세출 1,127억원

2. '92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승인함.

- 세입 353억원, 세출 353억원

□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지원 특별위원회

○ 회 기 : 제66회 임시회, 제78회 임시회

○ 구성현황 (7명)

- 위원장 : 전반기 : 趙日東 의원, 후반기 : 具興書 의원
- 간 사 : 전반기 : 朴元來 의원, 후반기 : 朴元來 의원
- 위 원 : 전반기 : 羅榮珍 의원, 崔源植 의원, 李基鳳 의원, 李準喆 의원, 禹智命 의원
  후반기 : 金善泰 의원, 梁熙喆 의원, 金高盛 의원, 劉載甲 의원, 鄭善興 의원

○ 활동기간 : 전반기 : '93. 6월말까지, 후반기 : '95. 6월말까지

○ 주요기능

- 백제문화권 개발에 따른 사업비 확보 및 대정부 섭외활동
- 관련사업 추진에 따른 집단민원 해소방안

○ 활동상황

- '92. 10. 8 제1차 회의
  -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지원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보고 청취
- '92. 11. 9 제2차 회의
  -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사업추진에 따른 건의안 심사
- '92. 11. 13 제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백제 문화권 종합개발 사업추진에 따른 건의안 채택
- '92. 6. 10 제3차 회의
  - 특정지역 지정등 종합추진 상황보고 청취
- '94. 2. 17 ~ 18 경주신라문화권 개발 비교시찰
- '94. 3. 23 ~ 3. 29 일본백제문화 탐방

□ 서해안 개발사업지원 특별위원회

○ 회 기 : 제66회 임시회, 제78회 임시회

○ 구성현황 (13명)

- 위원장 : 전반기 : 田溶鳥 의원, 후반기 : 宋善奎 의원
- 간 사 : 전반기 : 金珍經 의원, 후반기 : 朴東允 의원
- 위 원 : 전반기 : 尹用一 의원, 李時雨 의원, 金鍾煥 의원, 李甲俊 의원, 李相敦 의원, 姜信國 의원, 李東旭 의원, 金成振 의원, 李弘根 의원, 全泳俊 의원, 金文圭 의원
  후반기 : 孟致鎬 의원, 李時雨 의원, 金鍾煥 의원, 姜信國 의원, 徐重喆 의원, 李根容 의원, 金珍經 의원, 金佐泳 의원, 李元昌 의원, 李傑宰 의원

○ 활동기간 : 전반기 : '93. 6월말까지, 후반기 : '95. 6월말까지

○ 주요기능

- 홍·보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등 대단위 사업비 확보를 위한 대정부 예산 섭외 활동
- 관련 사업추진에 집단민원 해소방안 모색 등

○ 활동상황

- '92. 1. 8 추진상황보고(3회)
- '92. 12. 21~12. 22 홍보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외 9개 사업장 시찰
- '93. 3. 19 서해안개발사업관련 국비지원 및 문제해결을 위한 건의안 채택
- '93. 5. 24 서해안 개발사업 문제점 및 국비지원 건의
- '93. 6. 2~6. 3 건설부등 중앙관련부처 및 민자당 김종필 대표위원, 황명수 사무총장 면담등 대정부 활동 전개
- '94. 3. 7~3. 9 홍보지구외 9개사업장 시찰
- '94. 3. 16 중앙서해안개발추진사업위원회 존치 건의문 채택 국무총리실, 경제기획원, 건설부, 총무처에 제출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회 기 : 제68회 임시회

○ 구성현황(20명)

- 위원장 : 崔源植(민자) 의원
- 간 사 : 李東旭(민자) 의원
- 위 원 : 尹用一 의원, 羅榮珍 의원, 李時雨 의원, 金鍾煥 의원, 李福求 의원, 李基鳳 의원, 柳在元 의원, 朴元來 의원, 趙吉衍 의원, 羅信燦 의원, 吳瓚圭 의원, 禹智命 의원, 金榮昶 의원, 李弘根 의원, 朴東允 의원, 金鍾成 의원, 李元昌 의원, 張基日 의원

○ 활동기간 : '92. 11. 13~ 11. 18(6일간)

○ 심사안건 : 1. 9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 9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회 기 : 제69회 정기회

○ 구성현황(25명)

- 위원장 : 姜信國(민자) 의원
- 간 사 : 柳在元(민자) 의원
- 위 원 : 尹用一 의원, 羅榮珍 의원, 李時雨 의원, 金鍾煥 의원, 李福求 의원, 李基鳳 의원, 李東旭 의원, 朴元來 의원, 孔 均 의원, 趙吉衍 의원, 羅信燦 의원, 崔源植 의원, 吳瓚圭 의원, 禹智命 의원, 金榮昶 의원, 田溶鳧 의원, 金珍經 의원, 朴東允 의원, 金佐泳 의원, 全泳俊 의원, 李元昌 의원, 金文圭 의원, 張基日 의원

○ 활동기간 : '92. 11. 30 ~ 12. 11(12일간)

○ 심사안건 : '93충청남도예산안 및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92 제3회 추경예산안, '91 도 및 교육청소관결산안,
'91예비비지출승인안

○ 소위원회 구성

- 제1소위원회('93충청남도예산안 심의)
  - 위원장 : 孔 均(민자) 의원
  - 간 사 : 禹智命(민자) 의원
  - 위 원 : 尹用一 의원, 羅榮珍 의원, 李時雨 의원, 李基鳳 의원, 柳在元 의원, 金榮昶 의원, 李東旭 의원, 金珍經 의원, 金佐泳 의원, 全泳俊 의원, 張基日 의원 (11인)
- 제2소위원회 ('93교육비특별회계 예산심의)
  - 위원장 : 李福求(민자) 의원
  - 간 사 : 金文圭(무) 의원
  - 위 원 : 金鍾煥 의원, 崔源植 의원, 朴元來 의원, 趙吉衍 의원, 羅信燦 의원, 吳瓚圭 의원, 田溶鳧 의원, 朴東允 의원, 李元昌 의원 (9인)

□ 도청이전추진 특별위원회

○ 회 기 : 제69회 정기회

○ 구성현황(20명)

- 위원장 : 金南鎬 의원
- 간 사 : 羅榮珍 의원
- 위 원 : 전반기 : 尹用一 의원, 朴鍾武 의원, 金載鳳 의원, 李甲俊 의원, 崔源植 의원, 李基鳳 의원, 柳在元 의원, 朴元來 의원, 劉載甲 의원, 宋善奎 의원, 姜信國 의원, 禹智命 의원, 金榮昶 의원, 韓道源 의원, 姜模俊 의원, 金世鎬 의원, 金鍾成 의원, 張基日 의원

  후반기 : 文性珪 의원, 朴鍾武 의원, 金載鳳 의원, 崔源植 의원, 李基鳳 의원, 趙日東 의원, 孔 均 의원, 趙吉衍 의원, 李相敦 의원, 申載元 의원, 禹智命 의원, 金榮昶 의원, 韓道源 의원, 姜模俊 의원, 金世鎬 의원, 金鍾成 의원, 張基日 의원

○ 활동기간 : '95. 6. 30 (임기 만료시까지)

○ 기본방향

- 도청 이전의 당위성에 대한 홍보활동 극대화로 공감대 형성
- 미온적인 집행부에 대한 도청이전 촉구 및 추진상황 평가
- 국회 및 중앙정부등 도청이전 필요성에 대한 도민의 의사전달과 건의
- 제반행정 절차를 통한 제도적인 보완장치 마련

○ 활동상황

- '93. 2. 12 간담회 (제1차 회의)
  - 도청이전 기획단 설치 조례제정 및 소위원회 구성협의
- '93. 4. 29 제2차 회의
  - 도청이전 추진상황 보고 청취
- '93. 6. 9 제3차 회의
  - 도청이전 추진 기획단 설치조례 제정
- '93. 8. 27 간담회
  - 도청이전 추진상황 보고
- '93. 10. 27
  - 도청이전 간담 (여론조사설문 "안"마련)
- '94. 1. 20 도청이전 설명회
  - 갤럽조사 연구소 의뢰결과 발표
- '94. 3. 4~3. 15 경상북도 의회방문
  - 도청이전 운영 실태비교
- '94. 6. 2
  - 도청이전 간담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회　　기 : 제73회 임시회, 제74회 임시회

○ 구성현황(20명)

- 위원장 : 韓道源 의원, 金成振 의원
- 간　사 : 金文圭 의원, 李時雨 의원
- 위　원 : 文性珪 의원, 金善泰 의원, 金載鳳 의원, 李甲俊 의원,
  梁熙喆 의원, 康基世 의원, 趙日東 의원, 孔　均 의원,
  劉載甲 의원, 宋善奎 의원, 申載元 의원, 禹智命 의원,
  田溶鳥 의원, 姜模俊 의원, 李弘根 의원, 金南鎬 의원

○ 활동기간 : '93. 5. 24 ~ 5. 31(8일간), '93. 6. 7 ~ 6. 14(8일간)

○ 심사안건 : 1. '9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 '9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회　기 : 제77회 임시회

○ 구성현황(19인)

- 위원장 : 趙日東 의원
- 간　사 : 李時雨 의원
- 위　원 : 文性珪 의원, 金善泰 의원, 金載鳳 의원, 梁熙喆 의원, 康基世 의원, 孔　均 의원, 劉載甲 의원, 宋善奎 의원, 申載元 의원, 禹智命 의원, 徐重喆 의원, 韓道源 의원, 姜模俊 의원, 朴東允 의원, 李弘根 의원, 金南鎬 의원, 金文圭 의원

○ 활동기간 : '93. 9. 17 ~ 9. 20 (3일간)

○ 심사안건 : '93 제1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회　기 : 제78회 임시회

○ 구성현황(19인)

- 위원장 : 李弘根 의원
- 간　사 : 朴東允 의원
- 위　원 : 孟致鎬 의원, 金善泰 의원, 李時雨 의원, 金載鳳 의원, 梁熙喆 의원, 康基世 의원, 趙日東 의원, 孔　均 의원, 劉載甲 의원, 宋善奎 의원, 申載元 의원, 禹智命 의원, 徐重喆 의원, 韓道源 의원, 姜模俊 의원, 金南鎬 의원, 金文圭 의원

○ 활동기간 : '93. 10. 19 ~ 10. 25 (7일간)

○ 심사안건 : '92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회 기 : 제80회 정기회

○ 구성현황(25인)

- 위원장 : 劉載甲 의원
- 간 사 : 朴東允 의원
- 위 원 : 孟致鎬 의원, 金善泰 의원, 羅榮珍 의원, 李時雨 의원, 金載鳳 의원, 梁熙喆 의원, 李基鳳 의원, 趙日東 의원, 孔 均 의원, 趙吉衍 의원, 宋善奎 의원, 姜信國 의원, 禹智命 의원, 鄭善興 의원, 徐重喆 의원, 韓道源 의원, 姜模俊 의원, 金基興 의원, 李弘根 의원, 金南鎬 의원, 張基日 의원, 金文圭 의원, 李傑宰 의원

○ 활동기간 : '93. 11. 20 ~ 12. 24(35일간)

○ 심사안건 : 1) '93 제3회 추경예산안 및 '94충청남도 예산안
2) '93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 및 '94도교육청 예산안
3) 제1·2소위원회 심의내용 검토 및 의결

○ 소위원회 구성

- 제1소위원회(13명) — 충청남도예산안심의
  - 위원장 : 李基鳳 의원
  - 간 사 : 金善泰 의원
  - 위 원 : 趙吉衍 의원, 鄭善興 의원, 徐重喆 의원, 韓道源 의원, 姜模俊 의원, 金基興 의원, 朴東允 의원, 金南鎬 의원, 姜信國 의원, 張基日 의원, 李傑宰 의원
- 제2소위원회(11인) — 충청남도 교육청 예산안심의
  - 위원장 : 禹智命 의원
  - 간 사 : 李時雨 의원
  - 위 원 : 孟致鎬 의원, 羅榮珍 의원, 金載鳳 의원, 梁熙喆 의원, 趙日東 의원, 孔 均 의원, 宋善奎 의원, 李弘根 의원, 金文圭 의원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회 기 : 제83회 임시회

○ 구성현황(19인)

- 위원장 : 金鍾煥 의원
- 간 사 : 李傑宰 의원
- 위 원 : 文性珪 의원, 羅榮珍 의원, 朴鍾武 의원, 崔源植 의원, 金高盛 의원, 具興書 의원, 朴元來 의원, 趙吉衍 의원, 李相敦 의원, 姜信國 의원, 鄭善興 의원, 徐重喆 의원, 李根容 의원, 金基興 의원, 金世鎬 의원, 金鍾成 의원, 全泳俊 의원

○ 활동기간 : '94. 4. 27 ~ 5. 6 (10일간)

○ 심사안건 : '94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회 기 : 제85회 임시회

○ 구성현황(19인)

- 위원장 : 金鍾成 의원
- 간 사 : 李相敦 의원
- 위 원 : 孟致鎬 의원, 羅榮珍 의원, 朴鍾武 의원, 金鍾煥 의원, 崔源植 의원, 金高盛 의원, 具興書 의원, 朴元來 의원, 趙吉衍 의원, 申載元 의원, 鄭善興 의원, 徐重喆 의원, 李根容 의원, 金基興 의원, 金世鎬 의원, 全泳俊 의원, 李傑宰 의원

○ 활동기간 : '94. 7. 18~ 7. 22 (5일간)

○ 심사안건 : 1. '94 제2회 충청남도 추경예산안
2. '94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회 기 : 제87회 임시회

○ 구성현황(19인)

- 위원장 : 金世鎬 의원
- 간 사 : 申載元 의원
- 위 원 : 孟致鎬 의원, 羅榮珍 의원, 朴鍾武 의원, 金鍾煥 의원, 崔源植 의원, 金高盛 의원, 具興書 의원, 朴元來 의원, 趙吉衍 의원, 李相敦 의원, 鄭善興 의원, 徐重喆 의원, 李根容 의원, 金基興 의원, 金鍾成 의원, 全泳俊 의원, 李傑宰 의원

○ 활동기간 : '94. 10. 24 ~ 10. 27 (4일간)

○ 심사안건 : 1. '93 충청남도결산 승인
2. '93 충청남도예비비지출 승인
3. '93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승인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회 기 : 제89회 임시회

○ 구성현황(25인)

- 위원장 : 朴鍾武 의원
- 간 사 : 徐重喆 의원
- 위 원 : 孟致鎬 의원, 羅榮珍 의원, 金善泰 의원, 金載鳳 의원, 崔源植 의원, 金高盛 의원, 具興書 의원, 朴元來 의원, 趙吉衍 의원, 李相敦 의원, 羅信燦 의원, 姜信國 의원, 鄭善興 의원, 李根容 의원, 金基興 의원, 金世鎬 의원, 金鍾成 의원, 金佐泳 의원, 全泳俊 의원, 李元昌 의원, 李傑宰 의원, 張基日 의원, 金文圭 의원

○ 활동기간 : '94. 12. 12 ~ 12. 30 (19일간)

○ 심사안건 : 1. '95 충청남도예산안
2. '94 제2회 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3. '94 제3회 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4. '95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5. '94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회 기 : 제92회 임시회

○ 구성현황(11인)

- 위원장 : 羅信燦 의원
- 간 사 : 朴東允 의원
- 위 원 : 鄭善興 의원, 姜模俊 의원, 李時雨 의원, 禹智命 의원, 李傑宰 의원, 李基鳳 의원, 張基日 의원, 梁熙喆 의원, 金文圭 의원,

○ 활동기간 : '95. 5. 25 ~ 5. 27 (3일간)

○ 심사안건 : '95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第3節 議會의 組織

1. 議員의 定數

1991년 6월 20일 제4대 도의원 선거가 도내 20개시·군 55개 지역선거구에서 선출된 5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1991년 7월 8일 제4대 충청남도 의회가 개원하였다.

시·군별 의원정수

시·군별	의원수	시·군별	의원수
계	55명		
천안시	3	부여군	3
공주시	2	서천군	3
공주군	3	홍성군	3
대천시	2	청양군	2
보령군	3	예산군	3
온양시	2	서산시	2
아산군	3	서산군	3
금산군	3	태안군	3
연기군	3	당진군	3
논산군	3	천안군	3

2. 構 成

가. 議長과 副議長

도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 두며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의장은 도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의회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부의장은 2인을 두고 있으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고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나. 本會議

도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도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 委員會와 委員

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2종이 있다.

상임위원회는 운영·기획경제·내무·교육사회·농림수산·건설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고 특별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의 심사가 완료되어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자연히 소멸된다.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 안건을 심사한다.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거나 수정안 또는 대안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도정에 관한 감사와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 경험이 있는자 등으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때에는 심사결과 보고서에 소수 의견의 요지를 기재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도조례로 정하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이 되며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며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고,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거로 선출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 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第4節 議會의 權限

1. 地方自治立法에 關한 權限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또한 조례안등 의안의 의결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된 때에는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5일 이내 공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재의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며, 확정조례가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공포한다.

2. 財政에 關한 權限

도의회는 도의 에산안을 심의·확정하고 결산을 승인하며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조례를 제정 및 개정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승인등 재정에 관한 의회의 주요한 기능이다.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도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의를 거쳐 계수조정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 확정한다.

지방의회는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그 규모와 내용을 수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

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세입세출예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예산안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심사한다. 세입세출예산은 도에서 제출되면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후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산안(추경) 및 예산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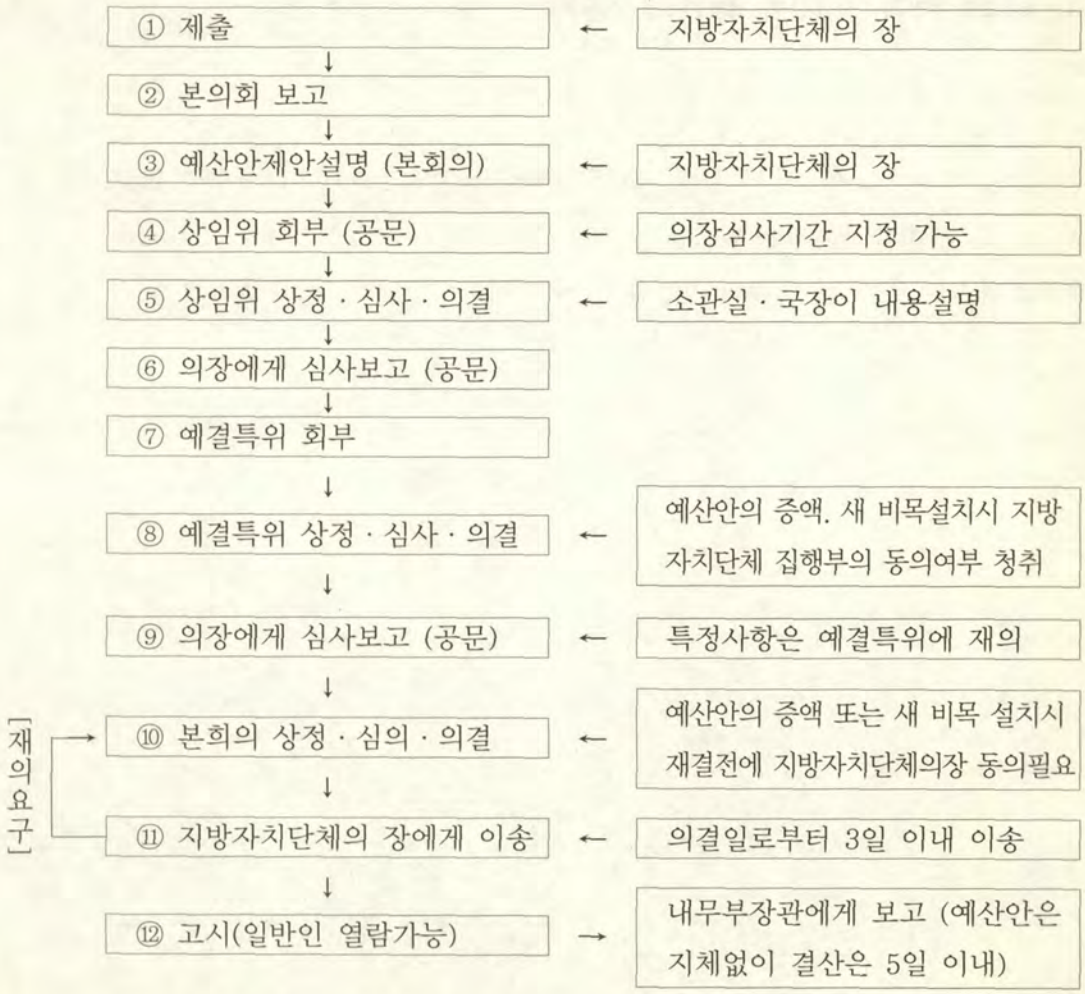

3. 道政統制에 關한 權限

도의회는 집행기관의 행정 통제수단의 일환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의결 안건의 심의 또는 행정사무감사나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중 부지사·부교육감·실국장·담당관·실과장을 비롯한 그 보조기관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을 보고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4. 議會 內部事項에 關한 自律權

도의회는 법률 및 조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한 의회의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

임시회 소집, 개회, 휴회, 폐회, 회기 결정권과 회의 규칙등 의회운영 관련 규칙제정권, 의장·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결의권, 의원의 자격·징계 결정권, 위원회의 구성 및 의안발의권 등을 다른 기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결정한다.

第5節 議會의 運營

1. 召集과 會期 및 休會

도의회의 집회는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다.
정기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되며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되며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15일이내에 소집하고 집회일 7일전에 공고한다.

도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의회의 의결로서 정하며 년간 회의 총일수는 정기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회는 회기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하며 폐회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회할 수 있다.

2. 議事節次

본회의는 도의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이며,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의장은 개회일시 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나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회의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 또는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의원이 발의한 의안이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1/4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간단한 사항 ·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의 · 보충발언 ·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장은 토론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의사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의원의 자격상실, 제명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의안을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하며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의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고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으며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3. 會議錄

도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발언자의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하고 의장이 의회에서 선출한 2인이상의 의원 및 사무처장이 서명 · 날인하여 의회에 영구히 보존하고 의원과 일반에게 배부하고 공개한다.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기록할 수 있으며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되며 위원회 회의록에도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 · 날인한다.

4. 委員會別 所屬 室·局

□ 前半期

위 원 회 명	인 원	소 관 실 · 국
운 영 위 원 회	15	• 의회사무처
내 무 위 원 회	13	• 공보관실 • 기획관리실 • 내 무 국 • 민방위국 • 공무원교육원
교육사회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11	• 보건사회국 • 가정복지국 ※ 도교육청
농림수산위원회	10	• 농 림 국 • 식 산 국 • 농촌진흥원
지역경제위원회	9	• 지역경제국
건 설 위 원 회	11	• 건 설 국

□ 後半期

위 원 회 명	인 원	소 관 실 · 국
운 영 위 원 회	11	• 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11	• 공보관실 • 기획관리실 • 지역경제국
내 무 위 원 회	11	• 내 무 국 • 민방위국 • 소방본부 • 공무원교육원
교육사회위원회	11	• 보사환경국 • 가정복지국 ※ 도교육청
농림수산위원회	11	• 농어촌개발국 • 농수산국 • 농촌진흥원
건 설 위 원 회	10	• 건설도시국

第6節 議會事務處 現況

도의회는 그 본질적 업무인 조례안의 심의 · 의결, 예산안의 심의 · 확정등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의회 회의운영과 의원들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사 보조와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1. 事務處의 機構

□ 事務處長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 감독한다.

□ 事務處長의 補佐機關

의회사무처의 기구는 사무처장밑에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7인 전문위원을 두고 있으며 전문위원은 의회운영, 기획경제, 내무, 교육사회, 농림수산, 건설, 예산결산특별위원이 있으며, 총무담당관실에는 총무계, 경리계, 자료계, 의사담당관실에는 의사계, 의안계, 기록계로 구성되어 있음.

□ 人 力

○ 개원당시 인력현황

• 충청남도조례 제2164호(1991년 6월 7일)에 의하여 1991년 7월 8일 개원당시 의회사무처 정원은 총 29명으로 행정3급 1명, 행정4급 1명, 행정 · 별정7급 1명등 일반직 또는 별정직이 21명 이었으며, 기능직은 9등급 6명, 10등급 2명 등 8명이었다.

○ 정원의 변동

• 1991년 12월 30일 조례 제2219호에 의거 사무직원을 29명에서 47명으로 정원을

증원하였는데 그 내용은 전문위원 1명, 전문위원보좌직원 4명과 의장비서 1명, 음향장비요원 2명, 속기요원 6명, 의전용 운전요원 1명, 기타 보조인력 3명 등이다.

- 1992년 2월 10일 조례 제2223호에 의거 47명에서 57명으로 10명 증원되었는데 증원내역은 전문위원 2명과 보좌직원 2명, 속기사 2명, 의원 및 위원회의 요구자료 지원요원 3명, 부의장실 안내요원 1명등 10명을 증원하고, 의장실 직원의 직급을 별정 7급에서 별정 5급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 1992년 9월 4일 조례 제2264호에 의거 57명에서 2명을 증원하였는데 증원내용은 의장 보조요원 1명과 공보전담요원 1명이다.
- 1993년 9월 1일 조례 제2320호에 의거 정원을 59명에서 64명으로 5명을 증원하였는데 이는 경리계와 기록계의 신설에 따른 것이다.
- 1994년 5월 24일 조례 제2416호로 정원 1명을 증원하여 총 65명이 되었는데 이는 버스 구입에 따른 운전원이 증원되었다.
- 의회사무처의 정원은 개원후 총 36명의 인원이 증원되어 1994년 7월 31일 현재는 65명으로 변동되었다.

의회사무처 지방공무원 정원표

('94. 6. 30 현재)

직급 / 직렬 / 부서	합계	3급	4급		5급		6급	7급		기능직		
		지방부이사관	행정	행정별정	행정	행정별정	행정	행정	행정별정	8등급	9등급	10등급
합 계	65	1	1	8	6	2	6	15	1	4	14	7
총무담당관실	24	1	1		3	2	3	2	1	4	2	5
의사담당관실	26			1	3		3	6			12	1
전문위원실	15			7				7				1

2. 事務處의 機能

□ 총무담당관실

○ 의회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 의전 및 대외협력, 교류
○ 의회청사시설 ·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 조사연구 및 보관관리
○ 의회활동 홍보계획의 수립 · 조정
○ 의회정보자료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 의회사편찬 및 각종 간행물 발간 등

□ 의사담당관실

○ 정기회, 임시회 집회 및 회의(위원회 포함)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 본회의 의사진행 보좌
○ 각종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 본회의장 및 회의실 사용조정
○ 회의록 녹음 및 속기에 관한 사항
○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등 종합처리
○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제공 및 조사연구
○ 청원, 진정의 접수분류 및 처리
○ 의안문서의 보존, 관리, 발간, 이송등 총괄처리 등

□ 전문위원실

○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 위원회 심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 작성
○ 위원회의 감사, 조사활동 보좌
○ 위원회 소관 진정서 처리 등

3. 廳舍 및 施設

□ 의회청사

○ 위 치 : 의회청사는 대전시 중구 선화동 28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청과 병존하고 있음.

○ 규 모 : 연면적 490.3평으로 사무실 7실 137.4평 의정활동 시설로 본회의장 등 324.5평, 기타 자료실, 방송실이 28.4평임.

□ 시설 및 장비현황

○ 폐쇄회로 장치 : CCTV 1세트(본회의장, 위원회 회의실)

○ 음향기기 : 앰프 7대, 마이크 116조, 음향믹서 6대

○ 회의용집기 : 회의용 목의자 74개, 탁자 125, 서가 15, 발언대 6개 등

4. 議會事務處 機構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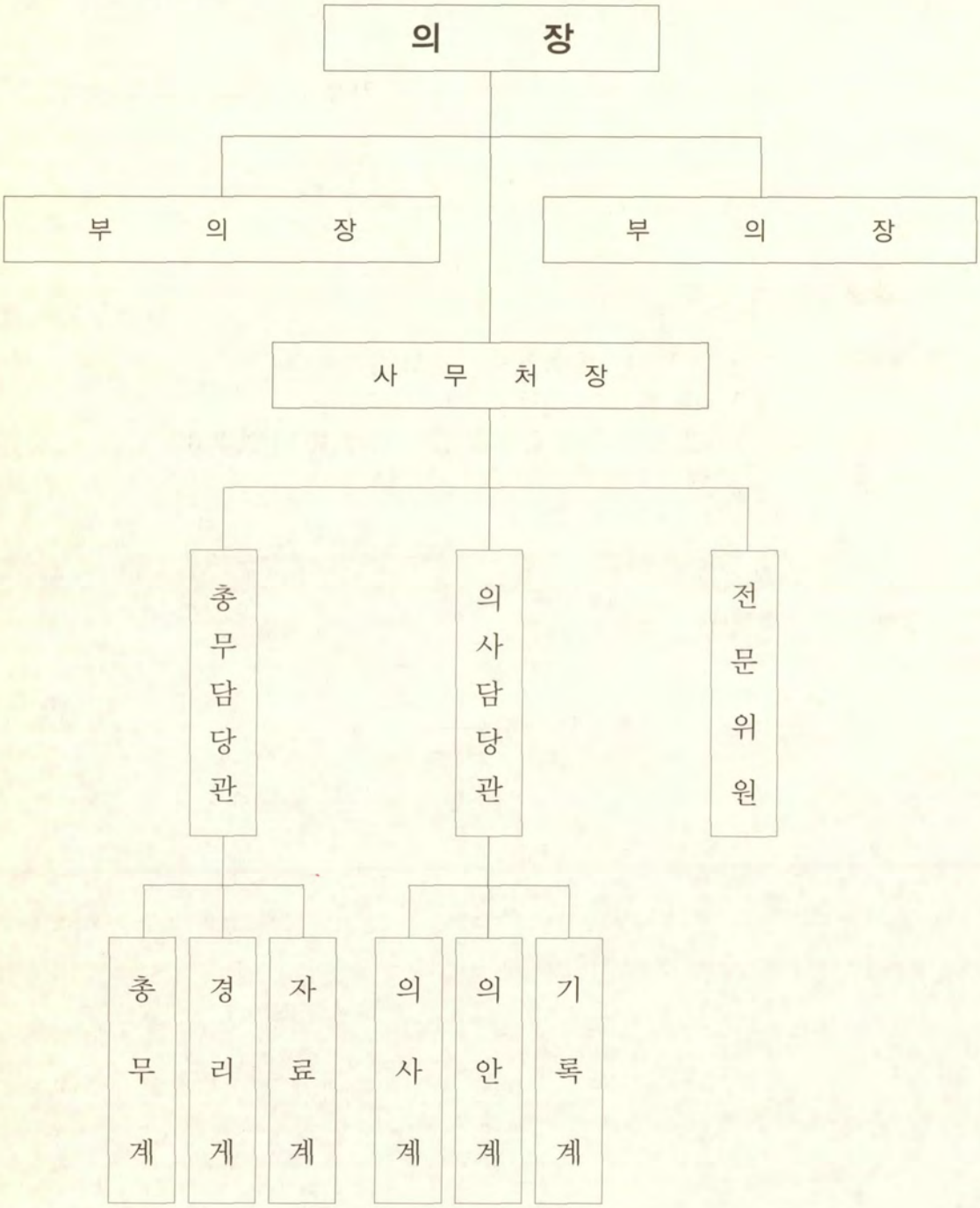

5. 第4代 議會事務處 幹部 및 職員 現況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의회사무국 의회사무처	사무국장 사무처장	지방부이사관	任鳳淳	91. 7. 8~ 93. 3. 28	92.2.10 직제명칭변경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	金建培	93. 3. 29~ 94. 2. 6	
		〃	金壽鎭	94. 2. 7~ 95. 7. 25	
총무과 총무담당관실	총무과장 총무담당관	지방서기관	趙鎭珏	91. 7. 8~ 92. 7. 14	92.2.10 직제명칭변경
총무담당관실	총무담당관	지방서기관	李承學	92. 7. 15~ 94. 2. 6	
		〃	崔君一	94. 2. 7~ 95. 7. 25	
	총무계장	지방행정사무관	金在鉉	91. 7. 8~ 93. 7. 28	
		〃	禹榮一	93. 7. 29~ 98. 9. 8	
	경리계장	지방행정사무관	姜元模	93. 7. 29~ 94. 2. 15	
		〃	尹大燮	94. 2. 16~ 95. 8. 9	
	자료계장	지방행정사무관	朴忠男	91. 7. 8~ 93. 1. 31	
		〃	尹大燮	93. 2. 1~ 93. 7. 28	
		〃	黃明淳	93. 7. 29~ 95. 1. 9	
		〃	辛松寅	95. 1. 10~ 97. 12. 31	
	비서실장	지방행정사무관	尹大燮	93. 7. 29~ 94. 2. 15	
		〃	張文淳	94. 2. 16~ 96. 2. 16	
		지방행정주사	李鍾一	91. 7. 8~ 92. 6. 30	
		〃	洪錫宇	91. 7. 8~ 92. 11. 24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총무담당관실		지방행정주사보	韓 萬 悳	91. 7. 8~ 92. 2. 20	
		〃	郭 炳 昌	91. 7. 8~ 92. 11. 24	
		지방기능9등급	沈 載 榮	91. 7. 8~	
		〃	金 炯 煥	91. 7. 8~ 97. 2. 5	
		지방기능10등급	李 仁 淑	91. 7. 8~ 97. 3. 14	
		지방별정7급	沈 完 補	91. 7. 26~ 2000. 1. 20	
		지방행정주사보	羅 哲 淳	91. 11. 4~ 91. 12. 25	
		지방기능10등급	李 承 子	92. 2. 10~ 97. 6. 3	
		〃	徐 容 吉	92. 2. 10~ 93. 10. 31	
		지방행정주사보	金 景 煥	92. 2. 21~ 95. 1. 23	
		지방행정서기	盧 光 斌	92. 2. 21~ 93. 4. 9	
		지방기능10등급	李 聖 愛	92. 6. 19~ 93. 10. 20	
		지방기능10등급	李 再 姬	92. 6. 19~ 96. 2. 28	
		지방기능7등급	金 俊 奎	92. 7. 1~ 96. 5. 25	
		지방행정주사	金 世 顯	92. 7. 1~ 94. 7. 20	
		지방기능10등급	金 榮 昊	92. 11. 1~	
		지방행정주사	李 良 求	92. 11. 25~ 95. 1. 23	
		지방행정주사보	姜 信 普	92. 11. 25~ 95. 5. 19	
		지방행정주사	白 樂 興	92. 11. 25~ 94. 8. 26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총무담당관실		지방별정7급	崔 昊 植	93. 4. 6~ 95. 7. 7	
		지방행정주사보	金 學 起	93. 4. 10~ 95. 5. 19	
		지방기능10등급	姜 允 卿	93. 10. 21~	
		〃	沈 讚 鎬	93. 12. 21~	
		지방기능8등급	金 先 鳳	94. 5. 28~ 98. 9. 30	
		지방행정주사	文 雙 柱	94. 7. 21~ 95. 8. 10	
		〃	尹 鎬 益	95. 1. 24~ 97. 2. 18	
		지방행정주사보	崔 天 在	95. 1. 24~ 96. 2. 22	
		〃	金 鍾 聲	95. 1. 24~ 96. 2. 22	
		〃	韓 圭 聖	95. 5. 20~ 98. 9. 26	
		〃	李 英 錫	95. 5. 20~ 98. 9. 26	
		〃	金 根 洙	95. 5. 20~ 98. 1. 9	
		〃	姜 永 圭	95. 5. 20~ 97. 2. 28	
의 사 과 의사담당관실	의 사 과 장 의사담당관	지방서기관	李 承 學	91. 7. 8~ 92. 7. 14	92.2.10 직제명칭변경
의사담당관실	의사담당관	지방서기관	梁 錫 煥	92. 7. 15~ 94. 5. 3	
		〃	李 淵 植	94. 6. 10~ 98. 6. 30	
	의 사 계 장	지방행정사무관	李 羲 慶	91. 7. 8~ 93. 7. 28	
		〃	金 基 培	93. 7. 29~ 95. 8. 9	
	의 안 계 장	지방행정사무관	姜 元 模	91. 7. 8~ 93. 7. 28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의사담당관실	의 안 계 장	지방행정사무관	李 英 善	93. 7. 29~ 95. 1. 9	
		〃	申 和 容	95. 1. 10~ 96. 11. 14	
	기 록 계 장	지방행정사무관	金 基 丙	93. 7. 29~ 95. 1. 9	
		〃	安 熙 俊	95. 1. 10~ 96. 2. 16	
		지방행정주사	朴 喜 龍	91. 7. 8~ 95. 1. 9	
		〃	宋 辰 鎬	91. 7. 8~ 94. 2. 21	
		지방행정주사보	朴 用 權	91. 7. 8~ 93. 2. 11	
		〃	朴 秉 熙	91. 7. 8~ 92. 11. 24	
		〃	金 鎭 守	91. 7. 8~ 92. 6. 30	
		지방기능10등급	朴 香 淑	91. 7. 8~	
		〃	趙 現 文	91. 7. 8~	
		지방기능9등급	李 英 姬	91. 7. 8~	
		〃	柳 貞 順	91. 7. 8~	
		〃	羅 柠 玉	91. 7. 8~ 99. 9. 3	
		지방행정주사보	張 允 鎔	91. 11. 14~ 91. 12. 25	
		〃	金 是 春	91. 11. 4~ 91. 12. 25	
		〃	尙 炳 鶴	91. 11. 4~ 91. 12. 25	
		〃	申 載 相	91. 11. 4~ 92. 12. 25	
		지방기능10등급	尹 景 娥	91. 12. 6~ 91. 12. 29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의사담당관실		지방기능9등급	池 点 順	91. 12. 6~	
		〃	任 東 眞	91. 12. 6~ 96. 4. 4	
		〃	金 花 英	91. 12. 6~ 98. 6. 3	
		지방행정서기	梁 珍 奎	92. 2. 21~ 95. 1. 23	
		〃	徐 載 淸	92. 2. 21~ 94. 7. 20	
		지방행정주사보	鞠 正 德	92. 7. 1~ 95. 1. 23	
		지방기능9등급	金 日 鎬	92. 11. 24~	
		지방기능10등급	梁 京 姬	92. 11. 24~ 97. 2. 5	
		〃	姜 美 善	92. 11. 24~	
		지방행정주사보	李 弘 雨	92. 11. 25~ 94. 7. 20	
		지방기능10등급	韓 玉 子	93. 1. 1~ 2000. 6. 7	
		지방행정서기	李 敏 熙	93. 2. 12~ 94. 7. 20	
		지방행정주사	丁 東 國	93. 8. 12~ 94. 1. 24	
		지방기능10등급	朴 喜 德	93. 12. 1~ 96. 5. 6	
		지방행정주사	田 敬 一	94. 2. 16~ 98. 9. 15	
		지방행정주사보	全 泳 均	94. 7. 21~ 95. 8. 9	
		〃	柳 炳 求	94. 7. 21~ 96. 2. 22	
		〃	高 孝 烈	94. 7. 21~ 95. 8. 20	
		지방행정주사	趙 南 明	95. 1. 24~ 97. 12. 31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의사담당관실		지방행정주사	朴 用 權	95. 1. 24~ 97. 2. 28	
		지방행정주사보	尹 鎭 燮	95. 1. 24~ 96. 2. 22	
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지방서기관	金 大 吉	91. 8. 1~ 92. 2. 13	
		〃	趙 瓘 鎬	92. 2. 14~ 93. 6. 22	
		지방별정4급	柳 在 環	93. 6. 23~ 94. 12. 31	
		지방서기관	朴 源 泰	95. 1. 1~ 98. 6. 30	
내무위원회	전 문 위 원	지방서기관	金 大 吉	91. 8. 1~ 93. 4. 29	
		지방행정사무관	安 卿 煥	93. 4. 30~ 93. 6. 22	
		지방서기관	印 致 昇	93. 6. 23~ 94. 2. 6	
		〃	鄭 祥 東	94. 2. 7~ 94. 7. 12	
		지방별정4급	李 康 云	94. 7. 13~	
문교사회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전 문 위 원	지방서기관	林 憲 龍	91. 8. 1~ 94. 7. 12	93. 6. 23 위원회명칭변경
교육사회위원회	전 문 위 원	〃	郭 泳 碩	94. 7. 13~ 95. 5. 19	
		〃	朴 洪 淳	95. 5. 20~ 95. 7. 25	
농림수산위원회	전 문 위 원	지방별정4급	柳 在 環	91. 8. 1~ 91. 11. 26	
		지방서기관	印 致 昇	91. 11. 27~ 93. 6. 22	
		지방별정4급	李 康 云	93. 6. 23~ 94. 7. 12	
		지방서기관	申 瑞 均	94. 7. 13~ 94. 12. 31	
		〃	徐 明 植	95. 1. 1~ 95. 7. 25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지역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지방서기관	林 憲 龍	91. 8. 1~ 91. 10.11	
		지방별정4급	李 康 云	91. 10. 12~ 93. 6. 22	
기획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지방서기관	安 卿 煥	93. 6. 23~ 94. 4. 19	93. 6. 23 위원회명칭변경
		지방별정4급	柳 在 環	94. 4. 20~ 94. 7. 12	
		지방서기관	朴 源 泰	94. 7. 13~ 94. 12. 31	
		〃	朴 洪 淳	95. 1. 1~ 95. 5. 19	
		〃	李 四 榮	95. 5. 20~ 97. 2. 12	
건설위원회	전 문 위 원	지방별정4급	柳 在 環	91. 8. 1~ 93. 6. 22	
		지방서기관	趙 瓘 鎬	93. 6. 23~ 94. 12. 31	
		〃	洪 龍 杓	95. 1. 1~ 97. 9. 9	
예 산 결 산 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지방서기관	金 大 吉	91. 8. 1~ 92. 2. 13	
		〃	李 戠 橫	93. 2. 14~ 94. 7. 12	
		〃	鄭 祥 東	94. 7. 13~ 94. 12. 31	
		〃	朴 雨 喜	95. 1. 1~ 95. 7. 25	
전문위원실		지방행정주사보	羅 哲 淳	91. 12. 26~ 94. 7. 20	
		〃	張 允 鎔	91. 12. 26~ 94. 7. 20	
		〃	金 是 春	91. 12. 26~ 94. 7. 20	
		〃	尙 炳 鶴	91. 12. 26~ 94. 7. 20	
		〃	申 載 相	91. 12. 26~ 96. 2. 22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전문위원실		지방기능10등급	尹 景 娥	91. 12. 30~	
		지방행정주사보	崔 完 植	92. 2. 21~ 95. 5. 19	
		〃	李 萬 熙	92. 2. 21~ 94. 7. 20	
		〃	李 仁 範	94. 7. 21~ 95. 5. 19	
		〃	趙 昊 鎬	94. 7. 21~ 95. 8. 22	
		〃	金 鍾 聲	94. 7. 21~ 95. 1. 23	
		〃	金 萬 相	94. 7. 21~ 95. 5. 19	
		〃	朴 俊 澤	94. 7. 21~ 96. 2. 22	
		지방기능10등급	宋 善 美	94. 8. 12~	
		지방행정주사보	金 聖 鎬	95. 1. 24~ 96. 2. 22	
		〃	金 榮 鎭	95. 5. 20~ 98. 9. 26	
		〃	李 采 求	95. 5. 20~ 96. 2. 22	
		〃	李 範 鎭	95. 5. 20~ 98. 9. 26	

第3章 第4代 議會 議政運營

第 1 節 第54回 臨時會
第 2 節 第55回 臨時會
第 3 節 第56回 臨時會
第 4 節 第57回 臨時會
第 5 節 第58回 臨時會
第 6 節 第59回 臨時會
第 7 節 第60回 定期會
第 8 節 第61回 臨時會
第 9 節 第62回 臨時會
第10節 第63回 臨時會
第11節 第64回 臨時會
第12節 第65回 臨時會
第13節 第66回 臨時會
第14節 第67回 臨時會
第15節 第68回 臨時會
第16節 第69回 定期會
第17節 第70回 臨時會
第18節 第71回 臨時會
第19節 第72回 臨時會
第20節 第73回 臨時會
第21節 第74回 臨時會
第22節 第75回 臨時會
第23節 第76回 臨時會
第24節 第77回 臨時會
第25節 第78回 臨時會
第26節 第79回 臨時會
第27節 第80回 定期會
第28節 第81回 臨時會
第29節 第82回 臨時會
第30節 第83回 臨時會
第31節 第84回 臨時會
第32節 第85回 臨時會
第33節 第86回 臨時會
第34節 第87回 臨時會
第35節 第88回 臨時會
第36節 第89回 定期會
第37節 第90回 臨時會
第38節 第91回 臨時會
第39節 第92回 臨時會

第3章 第4代 議會 議政運營

第1節 第54回 臨時會

Ⅰ. 槪 況

1. 開會背景

○ 제5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 6월 29일 충청남도지사의 집회공고로 소집되어 91년 7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회기 : '91. 7. 8 ~ 7. 9 (2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1. 7. 8(월) 10 : 00	본 회 의 (제 1 차)	1. 사무국장 소집보고 2. 의장 선거 3. 의장(李大熙)당선인사 4. 부의장 선거 5. 부의장(金容鎬 · 金高盛) 당선인사 〈개원식 : 14:00〉	
'91. 7. 9(화) 14 : 00	본 회 의 (제 2 차)	1. 회기 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3. 도정보고(도지사 韓淸洙)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 수	안 건	비 고
계	5		
기 타	5	1. 의장, 부의장 선거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3. 제54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상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5. 도정보고	

4. 議長 · 副議長 選出

○ 제5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 의원인 金南鎬의원 주재로 의장선서를 실시하였다.

• 의장당선자 : 李大熙(보령군)

○ 의장에 당선된 李大熙의장은 당선인사에 이어 본 회의를 주재하고 계속하여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였다.

• 부의장당선자 : 金容鎬(논산군)

金高盛(연기군)

※ 제5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나 의원 개개인의 상임위원회 희망사항과 전문경력, 지역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 별로 배치하고자 상임위원회 구성을 연기하였다.

5. 李大熙議長 當選人事

학식과 덕망이 높으신 훌륭하신 의원 여러분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모든 면에 부족한 저를 제4대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 뽑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어려운 현안문제들을 조화와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합심 협력하여 그 어느때 보다도 도정발전을 위해 앞서 가는 의회,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의원동지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도의회를 위해서 분골쇄신 열과 성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짐을 가득실은 수레는 두 개의 수레바퀴로 굴러 갑니다. 소리를 내면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흐트러지지 않고 굴러 갑니다. 도정을 집행하는 기관과 주민의 대표자인 의회는 두 개의 수레바퀴와 같다고 봅니다. 저 혼자만 열심히 뛴다고 해서 수레가 잘 굴러갈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제가 하나의 수레바퀴가 되어 균형을 이룬다면 도정발전을 위한 의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도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이 한층 높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훌륭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견을 집약해서 의회를 알차게 운영할 것을 마음깊이 새기면서 간단하나마 당선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6. 道政報告

道 政 報 告

본 도정보고는 91년 7월 9일 충청남도 제54회 임시회에서 보고한 사항임.

忠 淸 南 道

一 般 現 況

[1] 基本現況

○ 면적 - 8,318㎢ (전국의 8%)

경 지	임 야	기 타
32% (전국 22%)	55% (66%)	13% (12%)

○ 가구 및 인구

- 가 구 : 468천가구 (전국의 4.2%)
- 인 구 : 2,028천명 (전국의 4.7%)

○ 산업구조

농수산업	광 공 업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
39% (전국 11%)	20% (32%)	41% (57%)

[2] 行政區域

구 분	충 남	도평균	전 국	비 고
시	5	7	67	
군	15	15	137	
읍	20	20	180	
면	149	140	1,261	
동	39	111	2,117	
리	4,211	3,867	34,802	
통	469	1,780	46,534	
반	19,263	21,994	393,327	

※ 북한의 행정구역

○ 특별시 1, 직할시 2, 도 9 ○ 시 21, 군 150

[3] 機構 및 定員

○ 기 구



〈사업소 : 21〉

- 계룡출장소
- 여성회관
- 치산사업소
- 종축장
- 내수면개발시험장
- 공영개발사업단
- 도로관리사업소
- 자연학습원
- 농산물원종장
- 가축위생시험소 (서부, 남부, 북부, 서해지소)
- 잠종장
- 보건환경연구소
- 임업시험장
- 잠업검사소
- 농어촌공업유치사업소
- 보령댐 건설사업소
- 농민교육원

○ 정 원

구 분		계	정무직	별정직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소방직
합 계		14,039	1	500	10,061	2,943	79	455
도	소 계	1,881	1	47	1,243	580		10
	본 청	1,231	1	25	838	357		10
	사업소	545		19	320	206		
	출장소	105		3	85	17		
시·군계		12,158		453	8,818	2,363	79	445
시	소 계	2,467		83	1,537	531	47	269
	본 청	1,700		28	962	406	35	269
	사업소	294		1	193	99	1	
	동	473		54	382	26	11	
군	소 계	9,691		370	7,281	1,832	32	176
	본 청	3,430		48	2,423	831	19	109
	사업소	1,473		31	1,233	200	9	
	읍 면	4,788		291	3,625	801	4	67

※ 국가 공무원 1,505명, 지방공무원 12,534명

[4] 主要機能

□ 企劃管理室

- ○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 및 심사분석
- ○ 도의회 관련업무 총괄
- ○ 재정계획의 수립 · 조정 및 도 예산의 편성
- ○ 도 종합개발 계획등 주요 개발계획의 수립 조정
- ○ 산하 기관감사 및 공무원 감찰 활동
- ○ 자치법규의 운영관리 및 소송 업무
- ○ 통계관리 및 행정 전산화 업무

□ 公報官室

- ○ 공보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 ○ 도정시책의 홍보 · 선전
- ○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업무 및 유선방송 관리

□ 內 務 局

- ○ 각종 의식 및 행사와 공무원 인사운영
- ○ 시군행정 지도감독 및 연락 조정
- ○ 시군 의회운영 지원
- ○ 선거 및 국민 투표 관련업무
- ○ 국민운동 지원과 생활교육 진흥
- ○ 지방세 및 지적관리 업무와 회계 및 재산관리
- ○ 문화예술 행정 및 민원실 운영

□ 保健社會局

- ○ 사회복지 및 구호와 노동단체 지도 육성

○ 보건행정의 종합계획 및 병원의 예방·방역
○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종합계획 조정
○ 환경보전 및 공해사업 지도 감독

□ 家庭福祉局

○ 노인·아동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
○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의 관리
○ 부녀복지 업무 및 가정의례 준칙 지도
○ 청소년 건전육성 업무

□ 農 林 局

○ 농어촌 종합대책업무 추진
○ 농업생산과 농산물 가공 처리업무
○ 농지개량 및 농업 용수 개발과 농지개량 조합의 지도 감독
○ 산림행정과 야생조수 보호

□ 殖 産 局

○ 정부 양곡관리 및 곡가조절
○ 축산행정과 낙농의 진흥
○ 잠업 및 특용작물 생산 시책
○ 수산진흥과 어업육성

□ 地域經濟局

○ 지역경제 개발방안 연구 및 지원
○ 시장관리 및 연료수급과 수출 진흥
○ 지방 공업육성과 지하자원 및 전원개발
○ 관광 및 교통·운수 행정

□ 建 設 局

○ 도시계획 및 토지구획 정리 사업과 상하수도 업무
○ 주택건축 기술 보급 및 국민주택 관리
○ 항만 치수사업의 종합계획 및 하천의 개량 · 유지관리
○ 도로 개발계획 수립과 도로 · 교량공사 및 유지관리

□ 民防衛局

○ 민방위 계획 수립 및 실시와 교육훈련 업무
○ 소방 기본계획 수립과 화재예방 및 진압
○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農村振興院

○ 농촌지도 사업과 농촌의 생활개선 지도
○ 작물의 품종개량과 재배개선등에 관한 시험 · 연구
○ 식량 및 원예작물 재배기술 지도와 소득경영 지도

□ 地方公務員 敎育院

○ 지방행정에 관한 기술과 이론습득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 교육자료의 수집 · 조사 및 교재 편찬

[5] '91 財政規模

① 總 規 模

(단위 : 억원)



② 他道와의 比較

(단위 : 억원)

구분 / 단체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계	54,495	15,308	10,795	17,333	16,656	24,665	24,050	35,736	4,317
도	16,156	4,384	3,960	6,893	5,071	8,035	7,519	10,242	1,582
시 · 군	38,339	10,924	6,835	10,440	11,585	16,630	16,531	25,494	2,735
재정자립도	79.2	36.5	36.7	35.8	38.2	31.1	39.7	54.1	44.3

※ 본도 재정자립도 : 35.8% (도 35.5%, 시 55.1%, 군 27.8%)

③ 道 一般會計 豫算의 內譯

세 입 ---------- 3,820억원

〈자체재원〉 ---------- 1,357억원(35.5%)

- ○ 지 방 세 : 653억원(17.1%) - 1인당 담세액 32천원
- ○ 세 외 수 입 : 704억원(18.4%)

〈의존재원〉 ---------- 2,463억원(64.5%)

- ○ 지방교부세 : 956억원(25.1%)
- ○ 지방양여금 : 150억원(3.9%)
- ○ 국고보조금 : 1,357억원(35.5%)

세 출 ---------- 3,820억원

- ○ 의 회 비 : 31억원(0.8%)
- ○ 일 반 행 정 비 : 272억원(7.1%)
- ○ 사 회 복 지 비 : 551억원(14.4%)
- ○ 산 업 경 제 비 : 1,205억원(31.5%)
- ○ 지 역 개 발 비 : 1,081억원(28.3%)
- ○ 문화및체육비 : 146억원(3.8%)
- ○ 민 방 위 비 : 46억원(1.2%)
- ○ 지원및기타경비 : 488억원(12.9%)

'91道政의 重點課題

道政의 基本構圖

1 계룡산으로 상징 - 화합·충절의 精神文化 함양

2 금 강 유 역 - 傳統文化 의 새로운 창출

3 서해안·내륙지역 - 조화로운 開發文化 의 실현

4 국토의 중심지 - 국가개발을 위한 中心文化 의 창조

重 點 課 題

1 신뢰와 화합을 통한 지역역량의 결집

2 성숙된 민주자치기반의 확립

3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확산·발전

4 자랑스런 충남건설의 전략사업 추진

5 유서 깊은 충남문화의 창조적 진흥

1. 信賴와 和合을 통한 地域力量의 結集

○ 「사회불신 · 생활불편 · 주민불만사항」을 과감히 적출 · 시정
○ 「어려운 사람 · 그늘진 곳」에 대한 지원 행정 강화
○ 「작은 민원 · 조그만 바램」에 대하여도 세심한 친절 봉사

[1] 「내고장 으뜸가꾸기」 運動 展開

○ 애향과 전통 긍지와 활력을 높이기 위해 모든 마을마다

1道義 1名所 1民俗 1特産物 을 발굴 육성

○ 마을 단위 자원조사 완료 - 6.24 시군 시안계획보고회 개최
○ 관주도보다는 마을 주민 전체가 자율참여 추진토록 유도
○ 대상사업을 조속 가시화하여 마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

[2] 零細民子女 自立을 위한 長期支援 施策

○ 어린 시절부터 성장 단계별로 자립기반을 갖추어 주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실히 보장

〔5단계 장기지원〕 ① 정서보호 → ② 적성계발 → ③ 장학지원 → ④ 직장알선 → ⑤ 사회봉사

○ 추진실적

- 정서함양을 위해 도서관신축 2개소, 글짓기, 그림그리기대회 개최
- 장학금 지원 - 33천명 대상 3,316백만원
- 직업훈련실시 1,063명, 결연사업 확대 1,800명

[3] 眞實로 고마워하는 社會福祉施策의 擴大

○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 거택보호자 : 30천명, 128억원, 자활능력자 : 227천명, 140억원

○ 지역별 저소득 주민 후원회 구성 운영
- 후생 복지시설 지원 및 영세민 취업 알선등

○ 노인회 활동에 따른 지원과 보살핌으로 사회참여 역할 제고
- 노인연합회 지원, 경노당 지원등 : 990백만원
- 시·군 원로와의 특별 간담회 실시 : 200명

[4] 基礎生活民願의 重點 解決

○ 뒷골목 포장, 방범·가로등 설치등 생활불편의 해소
- 상반기중 8,752건 처리(1,230백만원 투자)

○ 도서, 벽지, 낙후지역의 기초 생활환경 개선 - 8,340백만원 투자

〈今年度 豫算運營은〉

- 큰 사업에 앞서 작은 사업을 먼저
- 여유있는 사람보다 어려운 사람 위주로
- 밝은 곳보다 어두운 곳을 먼저
-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고루 받는 사업에 초점

[5] 集團民願의 積極 解決

<주요 집단민원 - 총 11건>

○ 원 인 별 : 개발관련 3, 공해 4, 군사시설 3, 토지분규 1
○ 내 용 별 : 조기해결 가능 3, 해결 지난 8

○ 최근 집단민원의 특징

- 일단 집단행동을 제기하면 「손해볼 것 없다」는 사고 팽배
- 진정·탄원등 소극적 행동에서 과격한 행동등 물리적 해결 시도

○ 중점해결 노력

- 주요사업의 사전 영향평가 확행과 행정 예고제 강화
- 지방의회, 공청회등 합리적·민주적 절차에 의한 해결관행 정착
- 민원별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합리적대안제시, 적극적인 조정활동

[6] 經濟安定을 위한 基盤 構築

○ 노사안정과 산업평화의 정착

- 노사분규 - 20건 발생, 15건 타결, 5건 진행중
- 지역단위 노사정 간담회, 연수회등 화합분위기 고양

○ 물가안정을 위한 지방적 노력 강화

- 생필품(65개) 중심으로 가격감시체제 확립, 불공정거래등 단속
- 공직자·부녀단체중심으로 과소비 억제와 에너지 절약 실천

2. 成熟된 民主自治基盤의 確立

> ○ 상호 존중과 협력으로 바람직한 자치 관행의 기여
> ○ 자율과 참여를 통한 성숙한 민주자치 역량의 발양

[1] 地方議會運營의 效率性 提高

①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행정 지원
- ○ 의정수행에 필요한 각종 행정 통계와 자료의 제공
- ○ 의회 관련행사의 적극적 지원과 협조

②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보완·협력의 동반자적 관계 정립 노력
- ○ 의　　회 → 주민의 욕구와 바램을 수렴하여 지역의사를 결정
- ○ 집행기관 → 의회에서 논의 결정된 사항의 성실한 집행

[2] 地方化 時代의 自治行政 組織과 機能의 補强

① 새로운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기능 보강
- ○ 주민생활 관련 업무와 민원처리기능 강화
  - 지방자치, 환경, 도시계획, 교통, 가정복지 분야에 중점

② 행정의 전문성 제고와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강화
- ○ 도시개발, 컴퓨터제작, 회의진행요령등 3개 교육과정 신설
- ○ 다양한 소재발굴, 사계권위자 초청 직장교육 실시

[3] 自治財政力의 均衡的 擴充

① 자주 재원확충 방안의 강구
- ○ 개발사업 추진등 여건변화에 따른 자주재정력 확충 노력
- ○ 과표, 사용료등의 현실화 은닉재산찾기

② 경영재정의 활력 추진

○ 공영개발, 민자유치, 경영수익 사업의 확대

○ 우수개발사업의 모델 적용으로 순수익 극대화

③ 투자 심사기능의 강화를 통한 재원배분의 합리성 도모

[4] 公職風土와 民願行政의 刷新

① 깨끗하고 소신있는 공직풍토 조성

○ 업무관련 비리의 발본척결과 엄정한 공직기강의 확립

- 10대 취약업무 일제 점검, 기동감찰반 운영

○ 무사안일, 시류에 편승하는 기회주의의 단호한 배격

② 바르고 진실된 업무 수행

○ 인허가민원의 긍정적이고 공정한 처리 - (예) 선접수 후보완제

○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주민 불편신고센타의 내실 운영

③ 현장봉사 행정의 강화

○ 행정을 일하는 현장으로 옮겨 주민과 접촉 확대

○ 주민과 더불어 걱정과 아픔을 함께하는 도정 실천

3. 새秩序 · 새生活實踐의 擴散 發展

단호하고 일관된 실천의지에 신뢰와 호응분위기 확산
사회안정과 민주발전을 뒷받침하는 국민운동으로 승화

[1] 그동안의 成果

① 주민, 경찰, 행정의 총체적 대응으로 범죄분위기 크게 위축
- 전년대비 5대 강력범죄 21%감, 검거 15%증
- 주민자율 방범수 범인검거 , 경찰인계 658명

② 하나하나 뿌리뽑기식의 개별단속으로 범인성 유해환경 격감
- 유흥업소 전 · 폐업(50개), 종사자 이직증가(25%)
- 학교주변의 불량만화, 음난비디오등 869건 몰수, 폐기

③ 주 · 정차질서의 생활화로 간선도로의 교통유통이 향상
- 도심지역 차량 주행단속 호전 : 시속 20㎞ → 40㎞
- 시내모임의 경우 「걸어가기」 운동 생활화

④ 산쓰레기 배출량의 감소등 환경정화 · 공해 퇴치의식 고양
- 산쓰레기 배출량(계룡산) : 43% 감소(179 → 101톤)
- 공해배출 · 쓰레기 투기행위 위반율 : 10%감소(27 → 17%)

⑤ 범도민적 참여분위기 확산으로 건전사회 기풍 진작

사회분위기도 달라지고 새로운 생활모습이 정착

[2] 우리道의 垂範施策 事例

① 「새질서 새생활실천 봉사왕」 선발 표창

○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밝은 사회건설에 수범을 보인

용감한 시민 • 선행도민 • 숨은 일꾼	을 발굴 선양(9명)

○ 대상자 엄선과 대대적 홍보로 봉사왕의 명예심을 제고

② 「기관 · 단체별 중점봉사의 날」 운영

○ 일시 참여 방식에서 기관별 1일씩 윤번제 참여로 전환

○ 자율참여분위기 고조로 연중 지속화 가능 확인

③ 건전가치관 확립을 위한 국민교육과 실천운동의 전개

○ 지역원로 스승존경 향약실천 의 확산 지역원로존중

○ 충효교실 · 주부교실 · 시민대학의 내실있는 운영

○ 예비군 · 방위병등 젊은 세대에 대한 도의교육 확대 실시

○ 모교를 찾아가 후배에게 올바른 사회질서의식 심어주기 확산

※ 도특설 예절학교 개설운영계획 - 공무원, 사회단체, 통리장등 대상

④ 「읍면 주차장 설치 5개년 계획」 추진

○ 현실여건 : 차량의 급증과 도심지 높은 지가로 신규 주차장시설 불가능

→ 읍면지역 공한지, 하천부지 주차공간으로 조성 불가피

○ 94년까지 191지구에 76천평, 16천대 주차목표로 추진중

[3] 最近들어 露呈되고 있는 問題點

○ 작금의 사회기강 해이를 틈타서

- 음성적인 탈 · 불법 행위가 되살아 나려는 조짐
- 불법집단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릇된 심리 잔존

○ 아직 생활화되지 못한 주민질서 의식으로

- 「나만 편하고 보자」는 이기주의 만연
- 「단속만 피하고 보자」는 탈법주의 재연

다수의 진지한 노력과 헌신적 참여 성과 퇴색 우려

[4] 앞으로의 重點 推進方向

① 단속의 효율성과 체계성 제고

- 피단속자가 예측할 수 없는 취약시간대 집중단속 실시
- 대상업소별로 단속공무원을 주기적으로 교체

② 법적 · 제도적 미비점의 지속적인 보완

- 단속에 앞서 주차공간과 쓰레기 처리시설 대폭 확충
- 학교보건법 강화로 학교주위 범인성 환경 일절 불허가

③ 추진주체를 관주도에서 가정, 직장, 단체로 전환

- 「제자리」, 「제본분」, 「제역할」을 다하는 사회기풍 진작
- 민간단체와 종교 · 학계등이 참여하는 공동노력 방안 강구

- 주민모두의 자율실천속에 일상생활규범으로 정착시켜나감 -

4. 자랑스런 忠南建設을 위한 戰略事業 推進

[1] 道勢跳躍을 위한 重點事業

① 공업화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

- 2000년까지 국가 지방단체, 농공단지등 82지구 1,902만평조성 -

○ 91년까지 58개 지구 565만평 조성목표

○ 무공해 첨단업종중심의 유망중소기업을 적극 유치

②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 백제고향인 공주·부여를 중심으로 한 찬란한 백제문화 재현

→ 문화유적 보수정비, 백제촌 건립, 관광휴양지 조성등 장기개발

○ 특정지역으로의 종합개발을 위한 용역중('90. 4 ~ '91. 10)

→ 금년중 특정지역 지정고시, 92년부터 본격개발 착수

③ 「금강종합개발계획」의 수립 추진

○ 총체적·체계적 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91. 7월)

○ 치수사업, 수질보전, 관광·레포츠시설등

④ 서북부지역 「물」 문제의 근원적 해결

보령댐 실시설계 용역중 : 91년 하반기 공사착공

- 댐시설 : 시설용량 292천톤/일
- 공급시설 : 공급용량 248천톤/일
- 공급대상지역 : 대천·서산시등 2시 2읍 1면

[2] 道民生活 基盤의 擴充을 위한 力點事業

① 「주택 200만호 건설」의 지방적 책임 완수

> ○ 정부 200만호 건설의 충남계획 : 54,000호
>
> ○ 91계획 : 15,000호 (국민주택 5,000, 민간부문 10,000)

→ 금년말 목표완료시 57,000호 건설 - 목표 초과달성

② 지방도와 군도 포장사업의 조기 매듭

> ○ 지 방 도 - 36개 노선 78.7㎞, 334억원
>
> ○ 군 도 - 15개군 235㎞, 605억원

→ 금년말까지 포장률 전망 : 지방도 71%, 군도 53%

③ 상·하수도 시설의 지속적 정비 확충

> ○ 상수도 - 시설개량 43개소, 관로시설 694㎞, 478억원
>
> ○ 하수도 - 하수관거 1,160㎞, 하천처리장 7개소, 1,167억원

→ 상수도 관로시설 91㎞

→ 하수도 관거시설 903㎞, 하수처리장 4개소 착공

[3] 活力있는 農漁村建設를 위한 戰略事業

「자립·성장」의 기반구축

- 모든 마을마다 대표농가 를 선정하여 중점육성
- 지역별로 주민생활의 중심이 되는 거점마을 을 우선지원
- 생활환경개선과 생산활동을 연결한 정주생활기반 확충

① 농어촌 인재 육성

- 성장단계별로 지원 : 4H → 농어민후계자 → 농촌지도자
- 농고출신 공직특채, 영농자금지원, 해외연수의 확대

[사 례] 「영농성공사례의 기획보도」와 「홍보책자」의 발간

① 지방 일간신문에 영농성공사례를 중점 홍보

대전일보 「UR을 이긴다」 (UR대비 영농사례)

대전매일 「오늘의 인물, 내일의 등불」 (농어민후계자)

② 「앞서가는 충남농업」 「함께하는 영농성공사례」 등 홍보책자 5집 발간 배포

② 농업소득 경영구조의 개편

- 관광농업 : 지역특산품 · 부업제품등 13개 지구
- 다품목 소량생산 - 상품성 향상 및 주년생산체계 확립

[사 례] 「거봉포도」 소포장 규격 출하(천안군)

4kg들이 상자(4,000원) → 2kg들이 상자(3,000원)

③ 농어촌 특산단지 생산품의 유통개선과 판로확충

○ 협업영농, 공동출하, 유통시설확충으로 상업농 육성

○ 특산단지 육성(57억), 유통시설확충(11억), 포장자재비지원(8억)

[사 례] 참깨가공 판매(논산군)

참기름 착유공장을 설치, 마을에서 생산한 참깨를 가공하여 호당 연 263만원 소득

④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의 본격 추진

○ 군당 1개면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개발 - 15개 지구 177억원

→ 90년 : 2개 지구 29억 투자(공주 계룡면, 부여 홍산면)

중 점 추 진 사 업

- 생활환경시설 : 가로등, 농어촌도로, 취락정비등
- 산업기반시설 : 농어촌 용수, 유통시설, 영농시설등
- 편익복지시설 : 복지회관, 체육시설, 공원조성등

⑤ 수입개방에 따른 유망작목의 중점육성

○ 작목별 단지조성으로 특산물 명산지화 : 10개사업 26억원

○ 특산품 개발, 원예작물 생산기반확충, 과수·꽃단지 조성등

[사 례] 화훼단지 조성(태안군)

전문화훼단지(31농가, 15.4ha)를 조성하여 호당 1,860만원의 소득올림

5. 由緖깊은 忠南文化의 創造的 振興

> ○ 조상의 얼과 전통을 멈추지 않는 흐름으로 계승
> ○ 향토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우리의 것」을 재창조
> ○ 역사와 문화와 자연을 함께 살린 생활문화 공간의 확충

[1] 忠南特有의 精神文化 涵養

○ 충남정신의 발양
- 「충효정신」 「절의정신」 「선비정신」 등 숭고한 충남특유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자랑스런 충남인상 재현
- 교육용 교재발간 보급, 학생 · 공무원 · 주민대상 특정 실시

○ 충남고유의 전래향풍의 진작
- 세시풍속등 전통민속의 체계적 계승발전
- 전통민속 시범학교 지정육성 : 1시군당 1개학교

[2] 自己마을에 대한 歷史 · 文化的 自矜心 鼓吹

○ 마을 「역사안내판」 설치
- 구전, 향토사료집등을 통하여 분산적으로 전승되는 마을의 역사를 정리하여 마을 입구 · 회관등에 「역사안내판」 설치
- '91말까지 1단계 20개 마을 선정하여 추진(1억원)

○ 향토 역사 · 문화에 관한 문헌 발간
- 「계룡산지」 「금강사지」 「지명유래집」 「마을이야기모음집」

[3] 傳統文化 · 遺蹟의 再照明 宣揚

○ 백제 문화제 · 금산인삼제등 향토문화제의 전통과 특성 부각

○ 문화유적의 복원으로 천년 백제의 얼을 되살림

[사 례] 부여「고란사」의 옛모습 복원

- 시멘트등으로 보수, 한국 고유의 아름다움 손상
  → 점토흙과 같은 토속적 재료사용, 당시의 모습 재현
- 「고란초」에 상징성을 부여하고 관광 기념품화
- 「낙화암전설」을 극화한 관광비디오 제작 판매(20분용)

4 「百濟村」의 建立

○ 백제 고도에 한국전통 민속마을 조성(100만평)
→ 백제의 역사·문화·관광의 상징적 중심지화

- 백 제 민 속 촌 : 전통한옥·전통정원·풍물거리
- 전 통 한 국 관 : 모형전시관, 관광객접대시설(게스트하우스)
- 전 통 농 원 : 한국화, 수목원 및 농업체험관등
- 교육및연구시설 : 전통예술대학, 공연장, 민속공방등

○ 금강도로변의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자연과 역사와 현대문화가 어우러진 「백제조각공원」을 조성

5 文藝振興 基盤의 擴充

○ 「문화원」을 지역 문예활동의 중심센타가 되도록 지원 확대
- 향토사 연구등 지역의 뿌리찾기 운동 적극 전개
- 문화원장의 문화적 경륜을 행정시책에 적극 반영

○ 95년까지 1시·군 1 종합문예회관 건립
- 기 건립완료 11개소, 건립추진중 5개소, 미건립 지역 5개소

※ 우선순위 고려, 연차적으로 건립 추진

○ 도자체 「문예진흥기금」 조성 운영

- 도의 개발이익 환수금을 재원으로 60억원 목표로 조성
- 이자 수익금으로 공립예술원 운영등 지원

[6] 成熟한 生活文化의 創出 · 擴散

○ 국악관현악원, 문예악단등의 공연 확대 (월 1회 이상)

○ 1인 1취미갖기운동 전개등 건전한 생활 문예활동의 지원

○ 도시의 중심지역에 특색있는 「문화의 거리」 조성

대 상 지 역 (예시)

- 천 안 시 : 아라리오 조각거리 250m (종합터미날 → 신부동 5거리)
- 온 양 시 : 남산로 문화장터 600m (온양문화원 → 신정호)

第2節 第55回 臨時會

Ⅰ. 概 況

1. 開會背景

○ 제5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李準喆의원외 18인으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제출되어 1991년 7월 18일 집회공고를 실시하고 91년 7월 26일 10:00에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회기 : '91. 7. 26 ~ 7. 27 (2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1. 7. 26(금) 10:00	본 회 의 (제 1 차)	1. 회기결정의 건 2.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개정 특 위	1. 위원장 선출 2. 위원장(李根容) 인사 3. 간사 선임의 건 4. 간사(李相敦) 인사 5.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내무위 회의실
'91. 7. 27(토) 10:00	본 회 의 (제 2 차)	1.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2. 상임위원장 선거 3. 상임위원장 당선 인사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1. 7. 27(토) 11 : 40	내무위원회	1. 위원장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3. 간사(金善泰) 인사	
11 : 40	농림수산 위 원 회	1. 위원장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3. 간사(李福求) 인사	
11 : 40	건설위원회	1. 위원장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3. 간사(具興書) 인사	
11 : 40	문교사회 위 원 회	1. 위원장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3. 간사(宋善圭) 인사	
11 : 40	지역경제 위 원 회	1. 위원장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3. 간사(金世鎬) 인사	
12 : 50	운영위원회	1. 위원장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3. 간사(趙吉衍) 인사 4. 제56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개정 특별위원을 구성(제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하고 도에서 제출한 산업위원회의 분리 증설과 위원수 조정,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개정키로 함.

- 李根容(위원장), 李相敦(간사), 李準喆, 金顯根, 朴元來, 金世鎬, 金成振, 金載鳳, 羅信燦, 李元昌, 李傑宰(11명)

○ 상임위원장 선거(제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운 영 위 원 장 : 鄭 善 興
- 내 무 위 원 장 : 李 鍾 洙
- 문교사회위원장 : 金 基 興
- 농림수산위원장 : 李 根 容
- 지역경제위원장 : 孟 致 鎬
- 건 설 위 원 장 : 金 顯 根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 수	안 건	비 고
계	6		
조 례 안	1	1.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결 의 안	1	1.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안	
기 타	4	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2. 제55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상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4. 상임위원장 선거	

4. 條例案 處理內譯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2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 조례안	李準喆 의원외 15인 ('91.7.16)	조례 개정 특위	○도본청의 기구개편(국 통폐합 및 명칭변경)내용과 각 위원회의 소관부서를 일치시키고	'91. 7. 26	'91. 7. 26	원안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현행 상임위원회는 내무, 산업, 건설, 문교사회, 의회운영위원회등 5개로 되어 있으나 ○산업위원회를 농림수산위원회와 지역경제위원회를 구분설치하며 그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수를 조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조정			

5. 常任委員會 構成 및 委員長選擧

○ 제55회 충청남도의회충청남도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6개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가결하고

○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위원을 선임한 후 각 상임위원회위원장을 투표로 선출하였다.

○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임위원회마다 간사를 선출하고 상임위원회의 구성을 마치었다.

○ 상임위원회 구성 현황

위원회명	운 영 위원회	내 무 위원회	문교사회 위원회	농림수산 위원회	지역경제 위원회	건 설 위원회
구성인원	15	13	11	10	9	11
위원장	鄭善興	李鍾洙	金基興	李根容	孟致鎬	金顯根
간 사	趙吉衍	金善泰	宋善奎	李福求	金世鎬	具興書
위 원	李鍾洙 金顯根 趙日東 劉載甲 李準喆 姜信國 李根容 金基興 李弘根 全泳俊 金南鎬 金載鳳 孟致鎬	趙日東 金容鎬 孔 均 劉載甲 鄭善興 金珍經 金載鳳 李基鳳 羅信燦 吳瓚圭 金鍾成	金高盛 趙吉衍 禹智命 金榮昶 李弘根 全泳俊 徐重喆 羅榮珍 李傑宰	梁熙喆 康基世 李相敦 姜信國 金成振 金南鎬 尹用一 張基日	崔源植 李東旭 韓道源 朴東允 金佐泳 姜模俊 金文圭	金鍾煥 柳在元 朴元來 李準喆 田溶鳥 李時雨 朴鍾武 李甲俊 李元昌

第3節 第56回 臨時會

Ⅰ. 槪 況

1. 開會背景

○ 제5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1년 7월 30일 金載鳳의원외 19인으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제출되어 1991년 8월 1일 집회공고를 실시하고 91년 8월 9일 14:00에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회기 : '91. 8. 9 ~ 8. 12 (4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1. 8. 9(금) 14:00	본 회 의 (제 1 차)	1. 회기결정의 건 2. 충청남도기구 직제개편에 대한 보고 3. 교육위원후보자 소견 발표	
'91. 8. 10(토) 10:00	본 회 의 (제 2 차)	1. 의사과장 보고 2. 교육위원 선출 가. 교육위원선출 방법 결정 나. 대천교육청 교육위원 결선 3. 휴회의 건	
14:00	내무위원회	1.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2. 도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의 건	
14:00	교육사회 위 원 회	1. 금강수계대책협의회 및 금강하류 환경관리 위원회위원 추천의 건 2. 충청남도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1. 8. 12(월) 10 : 30	내무위원회	1. 현황 보고 가. 기획관리실 소관 현황보고 나. 공보관실 소관 현황보고 다. 내무국 소관 현황보고 라. 재무국 소관 현황보고 마. 민방위국 소관 현황보고 바.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현황보고	
10 : 30	농림수산 위 원 회	1. 현황 보고 가. 농어촌개발국 소관 현황보고 나. 농림수산국 소관 현황보고 다. 농촌진흥원 소관 현황보고	
10 : 30	건설위원회	1. 현황 보고 가. 건설도시국 소관 현황보고	
10 : 30	교육사회 위 원 회	1. 현황 보고 가. 보건환경국 소관 현황보고 나. 가정복지국 소관 현황보고	
10 : 30	지역경제 위 원 회	1. 현황 보고 가. 지역경제국 소관 현황보고	
10 : 30	본 회 의 (제 3 차)	1. 충청남도모자복지기금운용조례안 2.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 및 운영조례안 3. 도유재산 무상사용 동의건 4. 운영위원회소집의 건	

3. 案件 處理現況

구 분	건 수	안 건	비 고
계	8		
조 례 안	2	1.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동의승인안	1	1. 도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의 건	
기 타	5	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2. 제56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교육위원후보자 소견 발표 4. 교육위원 선출 5. 운영위원회 소집의 건	

4. 條例案 處理內譯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3	충청남도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도지사('91.8.6)	문교사회	○저소득모자가정의 자립기반 구축으로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가정 육성을 위하여 모자복자기금을 91년부터 5년간 조성하여 이자사업으로 모자복지사업을 시행하고자 조례제정	'91. 8. 12	'91. 8. 12	수정
4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조례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내무위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직렬을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의 복수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	원안

5. 教育委員候補 所見發表 및 教育委員 選出

○ 제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35인의 충청남도 교육위원 후보에 대한 소견을 듣고 91년 8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교육청별로 1인의 교육위원 선출이 있었다.

○ 충청남도교육위원 당선자 명단

소관교육청	당선자성명	비 고
천안교육청	閔丙達	계 15 인
공주 〃	金容喆	
온양 〃	鄭英鎭	
대천 〃	申載德	
서산 〃	任重鎬	
금산 〃	崔東煥	
연기 〃	兪歡浚	
논산 〃	吳在煜	
부여 〃	李永徽	
서천 〃	李鍾分	
청양 〃	禹善求	
홍성 〃	吳景煥	
예산 〃	申鉉均	
태안 〃	趙明鎬	
당진 〃	金鍾文	

第4節 第57回 臨時會

Ⅰ. 槪 況

1. 開會背景

○ 제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1년 8월 30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 개정조례외 11건의 조례안 개정과 정수물품의 취득에 관한 건 및 91년도 제2회 충청남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91년 9월 10일 14:00에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회기 : '91. 9. 10 ~ 9. 19 (10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1. 9. 10(화) 14:00	본 회 의 (제 1 차)	1. 회기결정의 건 2. 1991년도충청남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00	내무위원회	1.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경영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정수물품취득에 관한 건	
15:00	농림수산 위 원 회	1. 충청남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1. 9. 10(화) 14 : 00	건설위원회	1. 충청남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 조례안	
15 : 00	문교사회 위 원 회	1. 충청남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	
15 : 00	지역경제 위 원 회	1. 충청남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1. 9. 11(수) 14 : 00	내무위원회	1. 정수물품취득에 관한 건 2. 1991년도충청남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관리실 소관 나. 공보관실 소관 다. 내무국 소관 라. 재무국 소관 마. 계룡출장소 소관	
14 : 00	농림수산 위 원 회	1. 1991년도충청남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농어촌개발국 소관 나. 농림수산국 소관	
10 : 00	건설위원회	1. 현황 보고 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나. 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 2. 1991년도충청남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 나.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다. 건설도시국 소관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1. 9. 11(수) 14 : 00	문교사회 위 원 회	1. 1991년도충청남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보사환경국 소관 나. 가정복지국 소관	
14 : 00	지역경제 위 원 회	1. 1991년도충청남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지역경제국 소관	
'91. 9. 12(목) 10 : 00	내무위원회	1. 1991년도충청남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민방위국 소관 나.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14 : 00	농림수산 위 원 회	1. 1991년도충청남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농촌진흥원 소관	
15 : 00	문교사회 위 원 회	1. 1991년도충청남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보사환경국 소관 나. 가정복지국 소관	
'91. 9. 13(금) 10 : 00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 위원장선임의 건 2. 위원장 당선 인사 3. 간사선임의 건 4. 간사 당선 인사 5. 1991년도충청남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4 : 00	본 회 의 (제 2 차)	1. 정수물품취득에 관한 건 2.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현황보고(도 교육청 소관) 4. 휴회의 건	
15 : 20	문교사회 위 원 회	1. 현황보고 가. 초등교육국 소관 나. 중등교육국 소관 다. 관리국 소관	
15 : 10	운영위원회	1. 1991년도충청남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1. 9. 14(토) 10 : 00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 1991년도충청남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구성의 건	
'91. 9. 16(월) 14 : 00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 1991년도충청남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 건	
'91. 9. 17(화) 20 : 30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 1991년도충청남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구성의 건	
'91. 9. 18(수) 10 : 00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 1991년도충청남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1. 9. 19(목) 10 : 00	문교사회 위 원 회	1. 현황보고 가. 관리국 소관 나. 초등교육국 소관 다. 중등교육국 소관	
14 : 00	본 회 의 (제 3 차)	1. 1991년도충청남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 충청남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충청남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충청남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3. 충청남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4. 도정질문 15. 결의문채택의 건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 수	안 건	비 고
계	21		
조 례 안	12	1.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예 산 안 (결 산 안)	1	1. 1991년도 충청남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동의승인안	1	1. 정수물품취득에 관한 건	
기 타	7	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2. 제57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현황보고(도교육청 소관) 6. 도정 질문 7. 결의문 채택의 건	

4. 條例案 處理內譯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6	충청남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91.9.3)	지역 경제	○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 당연직 직명을 개정된 직제에 부합되도록 "건설국장" 을 "건설도시국장" 으로 변경	'91. 9. 19	'91. 9. 20	원안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7	충청남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91.9.3)	건설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부위원장과 간사직의 명칭을 개정된 직제에 부합되도록 "건설국장" 을 "건설도시국장" 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을 "문화예술과장" 으로 변경	'91. 9. 19	'91. 9. 20	원안
8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	○도립공원위원회의 간부직 명칭을 개정된 직제와 부합되도록 함. • 보건사회국장→보사환경국장 • 농림국장→농어촌개발국장 • 건설국장→건설도시국장 • 도시과장→도시개발과장	〃	〃	〃
9	충청남도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 조직 및 명칭 등을 현행 도의 직제와 부합되도록 함. "내무국장, 농림국장, 건설국장" 을 "농어촌개발	〃	〃	〃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으로 "도시과장" 을 "도시계획과장" 으로 함.			
10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91.9.3)	내무	○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개발기금관리업무가 내무국 지방과에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로 이관되어 기금의 관리자를 "내무국장" 에서 "기획관리실장" 으로 변경하고 위원구성을 개정된 직제의 기능과 부합되도록 함	'91. 9.19	'91. 9.20	원안
11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건설	○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남도지방기술건설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직 명칭을 개정된 직제의 명칭과 부합되도록 "건설국장" 을 "건설도시국장" 으로 조정함.	〃	〃	〃
12	충청남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농림수산	○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남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개정된 직제의 기능과 부합되도록 조정	〃	〃	〃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13	충청남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91.9.3)	지역경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남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직명을 개정된 규정에 맞추어 보완하고 가정주부등 여성이 주요 소비층을 이루고 있는 점을 감안 가정복지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선정 제3조 제3항중 "보건사회국장, 농림국장, 식산국장, 보건환경연구소장" 을 "보사환경국장, 가정복지국장, 농어촌개발국장, 농림수산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으로 함.	'91. 9.19	'91. 9.20	원안
14	충청남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문교사회	○경찰법의 제정(91.5.31법률 제4369호)으로 경찰청이 신설되고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의 제정(91. 3. 8법률 제4347호)으로 합의제 기관인 충청남도교육위원회가 충청남도교육청으로 기구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기관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경찰국장" 을	〃	〃	〃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지방경찰청장" "교육위원회, 경찰국"을 "도교육청, 지방경찰청"으로 함.			
15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91.9.3)	내무	○91.3.6일자로 충청남도교육위원회가 충청남도교육청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91.9.1일자로 교육청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구성내용을 일부 보완 개정하려는 것임.	'91. 9.19	'91. 9.20	원안
16	충청남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	○지방교육자치에 법률 제정 등으로 합의제 집행기관이였던 도 교육위원회가 심의, 의결기관으로 되고 합의제 집행기관의 사무장격에 있던 도 교육감은 독임제 집행기관이 됨에 따라 현행 조례중 "도교육위원회교육감"을 "도교육청 교육감"으로 변경	〃	〃	〃
18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도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신 직제에 맞추어 위임 사무를 분야별로 조정하려는 것임.	〃	〃	〃

○ '9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15인)
(제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李 鍾 洙 議員(위원장)
- 金 世 鎬 議員(간사)
- 梁 熙 喆 議員
- 金 載 鳳 議員
- 李 甲 俊 議員
- 朴 元 來 議員
- 康 基 世 議員
- 金 善 泰 議員
- 吳 瓚 圭 議員
- 趙 吉 衍 議員
- 羅 信 燦 議員
- 李 弘 根 議員
- 金 榮 昶 議員
- 李 東 旭 議員
- 李 傑 宰 議員

決 議 文

우리는 최근 사회 일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치와 낭비, 분수에 넘치는 소비풍토가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지속적인 안정과 번영을 이루는데 앞장설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서 확산되고 있는 과소비와 사치 낭비 풍조를 퇴치하여 건전한 소비문화를 이루는데 솔선 참여한다.

1. 우리는 어렵게 벌어들인 외화를 무분별한 해외여행이나 사치성 외래품 구입에 낭비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제한다.

1. 우리는 에너지 및 물자의 소비절약을 생활화함은 물론 '93년 대전 세계무역박람회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데 앞장선다.

1. 우리는 우리의 미풍양속인 근검절약을 생활화하고 저축하는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최선을 다한다.

1991년 9월 19일

忠淸南道議會 議員 一同

5. 第57回 臨時會 道政 및 教育行政에 關한 質問 · 答辯要旨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시우 (대천시)	• 대천시는 지난 '86년도 1월 온양시, 공주시와 동시에 시로 승격된지 6년에 이르렀습니다. 대천시가 시로 승격될 당시에는 대천읍사무소 청사를 인수받아 협소한 청사로 지금에 이르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청사가 시가지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 혼잡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현재의 대지 1,755평의 협소한 현 청사로는 시청의 기능을 못하게 될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1년 7월 1일 대천시 의회의원 일곱분의 이름으로 한청수지사님께 이미 건의한 사실도 있습니다. 대천시는 청사이전 부지를 확보키 위해 지난 '91년 4월 지방청사 공제에서 신축대여금 10억원을 결정받아 이미 부지확보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대천시내에 위치한 충청남도 종축장은 지난 1941	농 림 수 산 국 장 유덕현	• 이시우 의원님께서 대천시에 소재한 종축장 부지를 대천시 청사부지로 유상 양여해 주실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천시 명천동에 위치한 종축장은 우량종축의 생산 보급과 혈통을 보존하고 시책사업 개발을 위한 시험 연구를 위하여 사료포와 초지와 시험부지등 총 70.9ha의 면적에 842두의 종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천시의 시세 확장과 도시발전 전망으로 보아서 종축장이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종축장 이전부지도 물색되지 않았고 또 이전계획도 없는 실정으로 종축장 부지를 양여하는 문제는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시우 (대천시)	년도 충청남도 종축장으로 발족하여 현재 50년사의 역사속에서 우량 종축의 생산 보존과 혈통 보존 그리고 시책사업 개발을 위하여 시험 연구에 큰 기여를 해온 바 있습니다. 충남도 입장에서도 종축장에 시청이 유치된다면 경영 수익사업 측면에서도 도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원대한 대천시 중·장기 개발과 서해안 중핵도시로, 국제 관광 도시로, 발돋움해 나가는 대천 발전을 위하여 5만7천여 대천시민들의 숙원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도 간부 여러분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절대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 그동안 전국 도처에서 국비, 도비, 지방비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	보사환경국장 이종현	• 저희 도내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총 4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약 4,300여명이 수용이 되어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시우 (대천시)	지시설등의 고질적인 병폐가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역 사회 많은 분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회기내에 원내에서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있으나 아무리 회기중이라 할지라도 지방의회의원이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의정발언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까닭에 굳이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도내 일원의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원생들의 급식 및 처우 그리고 국비, 도비, 지방비로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등이 일부 몰지각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측의 부정과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행정 차원에서 당국의 상시지도 감독이 절실히 요구되는 작금의 실정이라고 사료되는데 '91년도 행정에서 활동한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종현	있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중에 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에 대하여 전반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했습니다. 감사원에서 1회, 보사부와 저희 도에서 각각 2회 실시를 했고 또 시·군은 시·군대로 월 1회씩 자체 점검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중에 지도·점검 결과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일부 보호비용을 받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오해의 소지도 있기는 합니다만 게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내의 사회복지시설중에서 유료입소자가 약 940여명이 있습니다. 그 시설정원의 30% 범위내에서는 시설장이 유료로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비용에 대한 수납 기준은 정신질환자는 1인당 월 8만원, 심신장애자는 6만6천원을 받아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은 특수성을 감안해서 정신지체자 재활시설은 1인당 월 10만원, 장애인 요양시설은 월 20만원까지 시설을 추가해서 1만원과 2만원까지 징수할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시우 (대천시)		보 사 환 경 국 장 이종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 걱정이 되시지 않도록 복지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을 강화하고 또 시설장에 대한 특별교육도 수시로 실시해서 도내에 있는 42개의 모든 시설들이 건전하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공무원 교육은 도정발전의 활력소요, 원동력이라고 생각할 때에 지난해 1991년도 당초 예산편성시에 더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공무원교육을 보다 더 활성화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시·도별 공무원 교육원 운영·실태와 연간 공무원 교육원 운영에 따른 예산이 각 시·도별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무원 교육이 교육원에 재임하게 되는 것을 공직자들 간에도 기피하고 있는 줄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원장 구기찬	• 시·도별 공무원 교육원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저희 교육원의 교육인원은 5급이하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29개 과정에서 3,450명이고 전국 평균은 3,810명이며 지방교육인원은 82명으로 전국 평균 83명과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연간 운영예산은 총 10억 3,700만원으로 타 시·도와 도세를 기준으로 비교해 볼때 비슷한 수준이며 '90년대에 비해서는 1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발맞추어 우수한 지방 행정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저명 외래교수 초빙, 우수교관 확보 및 교관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등 당면한 사항이 많아서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운영의 활성화를 통해서 교육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시우 (대천시)	공무원 교육원에는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공직자를 배치하여 전공직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공직자로서의 이수해야될 정규과정을 설정하여 그간 주입식 강의만을 탈피하고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자질향상 그리고 전문요원 양성을 위하여 넉넉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사료되는데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교육원장 구기찬	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관의 자질이 중요하고 교관의 자질이 교육 운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원내 교관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과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6급 이상의 우수한 공무원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교관으로 일정기간 근무후에는 희망부서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배치된 교관의 사기를 높이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방법에 있어 주입식 위주의 강의를 면치 못하고 있음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적정한 교육인원의 편성과 충실한 실기, 실습 VTR등 시청각 자료 적극 활용, 현장실습등 참여식 교육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수교관의 확보를 통하여 교육의 질과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의 공무원 교육기관 및 대학등의 협조를 얻어 외래 우수강사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원내 교관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질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공무원 교육운영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전용설 (홍성군)	• 우리 충남은 정부의 서해안개발계획에 따라 여러가지 개발시책이 중앙 또는 도에서 발표되고 있고, 일부 시책은 착수되어 추진중으로 알고있습니다. 그중 도에서 계획중인 시책은 무슨 사업이며 이 시책은 상위의 계획인 국가개발계획과 어떻게 연계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정투자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 획 관 리 실 장 정하용	• 충남서해안 개발계획은 '89년 2월 서해안지역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제6공화국의 정책적 의지로 수립, 추진되고 있는 국가차원의 종합개발 계획이 됩니다. 동 계획은 '90년도부터 2001년까지 12년간에 걸쳐서 모두 6조 7천억원을 투자해서 서해안 고속도로, 홍보지구 간척사업을 비롯한 34건의 사업을 추진하되 중앙정부가 22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충청남도가 12건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천억원이 투자되어서 금강 홍수예경보 시설과 서해안 위성통신지국국 사업등 2건을 완료하였고, 11건은 현재 타당성 조사 내지는 실시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건은 현재 개발공사를 시공중에 있고 나머지 9건은 아직 추진시기가 도래 되지않은 사업들입니다. 도의 사업으로는 천안 제2공단 조성에 366억원, 아산 인주공단 조성에 1,700억원, 청양 첨단산업기지 조성에 600억원, 보령댐 건설에 3,327억원, 천안하수 처리장에 179억원, 공주 하수처리장 107억원, 대천 하수처리장 70억원, 온양 하수처리장 54억원, 서산 하수처리장에 51억원 그리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전용설 (홍성군)	• 우리 충청남도는 재정자립도가 겨우 35.8% 밖에 안되는 빈약한 재정으로 알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지방자치제 실시로 전보다도 주민들의 욕구 분출과 지역마다 숙원사업을 해결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다른 재정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획 관 리 실 장 정하용	고 대천,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5,254억원 백제 문화권개발에 486억원등이 도의 사업으로 투자가 됩니다. 앞으로 도 의회와 공조 협력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민간자본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투자방안을 모색, 강구해서 지역 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면서 특히 자연과 개발과 문화가 상호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개발문화를 실현시켜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지역개발 사업중에서 주민의 편의증진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보장되는 사업에 대해서 풍부한 자금과 기술 그리고 정보를 가진 민간기업을 참여시켜서 지역개발을 앞당기고 지역경제 활력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민·관 공동투자 사업의 추진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는 민·관 공동출자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아직은 없습니다만 금년 연초부터 마땅한 사업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 대상사업으로 서천군의 한산모시타운 건설, 금강 하구둑과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전용설 (홍성군)		기 획 관 리 실 장 정하용	연계한 관광개발 사업을 선정해서 공공성과 지역성을 현재 정밀 분석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농산물유통센타 건설사업과 같이 도단위에서 추진하여야 할 대형사업에 대해서도 민간자본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민·관 공동출자가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성보다는 공공성이 더 요구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자치단체의 시책과 행정운영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업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민의 복지와 대민 서비스 향상에 연계되는 사업, 합리적인 경영과 함께 자치단체의 지도와 감독이 비교적 용이한 사업등을 광범위하게 물색해서 공동출자가 손쉽고 공공성이 우선되는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 도의 내년도 도로포장 계획을 보면, 지방도는 100%, 시·군도는 60% 포장률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동 계획은 중앙정부 계획과 일치하는 계획이며, 이에 대한 재원대책은 마련돼 있는지?	건 설 도 시 국 장 정진홍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도에서 '89년도부터 금년까지 지방도와 군도포장 사업에 총 2,330억원을 집중투자 해서 766㎞구간을 포장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금년도의 사업을 모두 마치게 된다면 우리 도의 포장률은 작년말 포장률이 지방도가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전용설 (홍성군)	또 정부에서 주는 지방양여금은 시·군에 대폭 이양해서 시급한 농어촌 도로포장과 상하수도 시설, 낙후지역에 투자해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 설 도 시 국 장 정진홍	59.8%인 것이 72.4%로 올라가게 되고 군도는 작년말 31.6%였던 것이 47.8%를 상회하게 됩니다. '92년까지 지방도 100%, 아까 전의원님께서 군도 60% 목표로 생각하셨는데 그것이 80%입니다. 80%의 목표사업을 마무리하려면, 지방도는 313㎞, 군도는 472㎞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지방도, 군도를 포장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은 약 3,300억원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방도 100%, 군도 80%의 포장사업 계획은 중앙정부의 계획과 저희 도 계획 모두 중앙정부 계획에 따르기 때문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재정 계획도, 재원계획도 중앙정부에서 양여금으로 지원하는 방침등이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이와같은 지방도로 포장사업의 조기 목표달성을 위해서 기히 작년말에 보조금을 양여세로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도 양여금 재원을 추가 조정하는 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第5節 第58回 臨時會

Ⅰ. 槪 況

1. 開會背景

○ 제5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9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관인조례외 3건의 조례안이 91년 9월 30일자로 제출됨에 따라서 金基興의원외 21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91년 10월 2일 집회공고를 실시하고 91년 10월 10일 14:00에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회기 : '91. 9. 10 ~ 9. 19 (10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1. 10. 10(목) 14 : 00	본 회 의 (제 1 차)	1. 청가허가의 건 2. 회기결정의 건 3. 91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11 : 00	운영위원회	1.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3. 의회운영협의의 건	
15 : 00	내무위원회	1. 위원장 인사 2. 충청남도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1.10.10(목) 15 : 00	농림수산 위 원 회	1.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 : 00	문교사회 위 원 회	1. 충청남도교육사회위원회관인조례안 2. 충청남도교육사회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3. 충청남도교육사회위원회에출석, 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4. 충청남도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5. '91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91.10.11(금) 10 : 00	문교사회 위 원 회	1.'91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91.10.12(토) 09 : 30	문교사회 위 원 회	1.'91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91.10.16(수) 14 : 00	본 회 의 (제2차)	1. 충청남도교육사회위원회관인조례안 2. 충청남도교육사회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3. 충청남도교육사회위원회에출석, 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4. 충청남도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5. 충청남도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91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 수	안 건	비 고
계	12		
조 례 안	7	1.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예 산 안 (결 산 안)	1	1. 1991년도 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 타	4	1. 청가허가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3. 제58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條例案 處理內譯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21	충청남도교육위원회관인조례안	교육감 ('91.9.30)	문교사회	○충청남도교육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청인 및 직인의 종류를 정하고 그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91. 10.16	'91. 10.16	원안
22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시행령 제9조의 범위안에서 교육위원의 일비 및 여비의 지급기준은	〃	〃	〃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당해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동안 적용했던 충청남도교육위원회 위원비용변상조례를 폐지하고 그 조례명칭을 변경하여 새로 제정 시행하기 위함.			
23	충청남도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교육감 ('91.9.30)	문교사회	○교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①부교육감 ②교육감보조기관중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 ③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의 교육장과 소속실과장 ④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장과 그의 차하위 직급에 있는 자	'91. 10.16	'91. 10.16	원안
24	충청남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	〃	〃	〃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를 제정 시행하기 위함.			
25	충청남도의회 사무국의설치 및사무직원의 정수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91.10.4)	내무	○지역경제위원회의 증설에 따른 의안심사 및 의사진행을 위한 전문위원 및 기록요원 등 의회운영을 위한 사무국 요원을 보강하려는 것임.	'91. 10.16	'91. 10.16	원안
26	충청남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기회 확대에 부응하고 여성교육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여성부관장의 직급인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을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복수직화하고 직급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	〃	〃
27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농림수산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 운용업무가 농림국	〃	〃	〃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농어촌개발과, 농어촌개발계에서 농어촌개발국, 농어촌개발과, 영농조직계로 이관되어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설치한 일부 규정을 수정 보강하는데 있음.			

第6節 第59回 臨時會

Ⅰ. 槪 況

1. 開會背景

○ 제5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鄭善興의원외 24인으로부터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 및 작성을 위하여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제출되어 91년 10월 31일 집회공고를 실시하고 91년 11월 8일 14:00에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회기 : '91. 11. 8 ~ 11. 15 (8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1. 11. 8(금) 14 : 00	본 회 의 (제 1 차)	1. 회기결정의 건 2.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1 : 00	운영위원회	1. 회기결정협의의 건 2. 충청남도의회공무원상호부조규약안 3. 기타 협의의 건	
14 : 40	내무위원회	1.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1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 3. 1991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협의의 건	
14 : 40	문교사회 위 원 회	1. 충청남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1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 건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1.11.8(금) 14 : 50	지역경제 위 원 회	1. 충청남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안 2. 1991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 건	
14 : 40	건설위원회	1. 1991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 건	
15 : 20	농림수산 위 원 회	1. 1991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 건	
'91.11.14(목) 10 : 10	운영위원회	1. 1991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 건	
10 : 10	내무위원회	1. 1991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 건 2. 1991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 및 관계인출석요구의 건	
14 : 00	지역경제 위 원 회	1. 충청남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안(계속) 2. 1991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 건 3. 1991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 및 관계인출석요구의 건	
14 : 00	문교사회 위 원 회	1. 1991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 건 2. 1991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 및 관계인출석요구의 건	
'91.11.15(금) 13 : 00	건설위원회	1. 1991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 건 2. 1991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 및 관계인출석요구의 건	
13 : 00	농림수산 위 원 회	1. 1991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 건 2. 1991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 및 관계인출석요구의 건 3. 진정서처리의 건	
14 : 30	본 회 의 (제 2 차)	1. 충청남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안 2.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1년도국유재산관리계획서변경의 건 5. 도정에 관한 질문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 수	안 건	비 고
계	9		
조 례 안	3	1.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동일승인안	1	1. 1991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	
기 타	4	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2. 회기 결정의 건 3.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5. 도정에 관한 질문	

4. 條例案 處理內譯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28	충청남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감('91.10.31)	문교사회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령(교육부령 제604호 '91.10.8)이 공포되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응시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각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충청남도 공립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공개 전형응시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최소한의 소요 경비를 수	'91. 11.15	'91. 11.16	원안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응시장에게 부담시켜 교육비 특별회계 재정 결격을 보전하고 재정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8	충청남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안	도지사 ('91.11.4)	지역경제	○시도 경제협의회규정 제9조에 의거 지역경제협의회를 도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있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시책과 주요 현안문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 설치되어 있는 지역경제협의회를 실무급으로 개편하여 실질적인 협의체로서 법제화하여 도단위의 지역경제에 관한 구심적 협의기구로 정착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정코자 함	'91. 11.15	'91. 11.16	수정
29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내무	○ "음반에 관한 법률"에 문화부장관의 권한이었던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91. 3. 8 법률	'91. 10.16	'91. 10.16	원안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제4,351호)의 제정으로 도지사의 권한으로 됨에 따라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업자 등록등에 관한 권한을 시장, 군수, 출장소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5. 第59回 臨時會 道政 및 教育行政에 關한 質問·答辯要旨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원창 (아산군)	• '91년 7월 9일 도의회에서 보고한 도정보고 20페이지를 보면 자랑스러운 충남건설을 위한 전력추진과 공업화 시책에 적극적인 추진을 하며 2000년까지 국가지방공단 농공단지등 82개지구 1,902만평을 조성하고 '91년까지는 58개지구 565만평을 조성하기로 하고 특히 무공해 첨단업종 중심의 유망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공해업체를 유치한다고 하면서 가장 공해폐수가 많은 피혁공단을 왜 유치하려고 하는지요? 지난 4월 26일 아산군청 회의실에서 군의원과 주민대표와 도지역경제국장이 주민여론 수렴을 위한 주민대표자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군의원과 주민대표가 회의벽두부터 논쟁이 벌어져 전원 퇴장한 일이 있습니다.	부지사 박중배	• 인주공단조성과 관련해서 도가 자의적으로 피혁단지를 유치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은 없었고, 또 그런 노력을 하는 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도의 취약한 공업기반의 확충과 지역간 균형개발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시·도의 피혁단지를 우리 도내에 유치하는 일만은 찬성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저희가 상공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26일 아산군청 회의실에서 지역주민과 아산군의회의원, 그리고 기관단체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지역주민의 종합된 의견을 청취해서 주민의 의견을 중앙에 확실하게 전달키위한 그런 모임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자동차등 기계나 장비업종의 유치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하여 공해관련 업종이 입주되지 않는 그런 공단이 조성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원창 (아산군)	왜 지역경제국장이 도민을 위하고 그 지역주민을 위하여 공해, 폐수업체 입주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들이 결사반대하는데 지사께서는 피혁공단을 유치할 것인지 아니면 도민편에 서서 입주를 반대하는데 앞장서서 저지하고, 그리고 무공해 업체를 조속이 입주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는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양질의 급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수도시 43개소에 70만 인구가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청호 수질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최근 물꽃현상이 심하고 골짜기 호반에는 곳곳에 황록색의 조류가 즉 수초가 마치 꽃모양의 덩어리를 이뤄 떠다니고 악취는 말할 수 없고 생	보 사 환 경 국 장 이종현	• 현재 대청호 수질오염도는 1급수를 약간 상회하는 1.7PPM으로서 이는 대청상류 지역인 충북 영동, 옥천, 보은, 청원 등지의 생활하수와 축산폐수 유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대청호 수질 개선을 위해서 대청호 상류 일부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으며, 특히 대청호 상류지역의 생활하수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89년부터 하수종말처리장 3개소 등 환경시설 11개 사업에 182억원을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원창 (아산군)	화학적 산소요구량 비오디는 1.7PPM으로 3급 급수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댐 상류지역의 생활하수와 축산 폐수농업용수등으로 물을 점점 오염시키고 있으니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류지역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과 댐 바닥준설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또한 수질을 오염시키는 가두리 양식장도 폐쇄하도록 유도하여야 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70만 도민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강력히 시정을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요?	보 사 환 경 국 장 이종현	투입을 해서 '92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시설이 완공되면 대청호 수질이 현재보다 현격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대청댐의 바닥증설 문제는 별도 한국수자원 공사와 협의해서 추진방향을 강구할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정주권 개발계획의 목적은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 복지시설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보충하고 농어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특히 농어촌지역의 쾌적한 정주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된 산업구조의 정착은 물론 이	농어촌 개 발 국 장 김정인	•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어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도는 15개군 102개면이 개발 대상으로, 그중 작년도에 공주군 계룡면과 부여군 홍산면의 2개면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29억원을 투자한 것을 시작으로 금년도에는 13개군 13면을 선정해서 작년도 시범지역을 포함 15개면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원창 (아산군)	며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안정된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충청남도에는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는곳이 몇 개군에 몇 개면이 해당되고 있으며 정주권 개발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군 산업과 농어촌 개발계에 전담할 공무원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요.	농어촌개발국장 김정인	에 총177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금년에 추진하는 15개면에 계속하여 120억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 예산지원 상황을 감안해서 사업지역을 점차 확대하여 낙후지역 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군사업과의 전담 공무원 배치는 현재까지는 군당 1개면씩 추진하고 있으므로 군외 타부서 또는 면의 기술직 공무원을 활용을 해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앞으로 사업이 확대될 경우 이 업무를 전담하는 기술직 공무원의 배치를 검토 하겠습니다.
	• 당진군 석문면 상봉리, 통정리 일대 해면 358만 2천평을 공장부지로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유치업종이 수송, 기계, 정밀과학조립금속, 일반기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곳에 염색공단이 입주한다는데 그게 사실인지요. 주민들의 결사반대 하는 것도 아시는지요. 왜 충남에는 공해폐수업체만 유치하는지요.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 먼저 석문공단 내에 염색공장입주여부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중앙정부의 공식적 결정 통보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국의 대규모 국가공영단체등에는 그 일부면적 20%에서 30% 정도를 염색, 피혁, 도금, 주물, 연료 등 주요 공해 업종산업을 집단화하고 이 집단화를 통해서 공해 방지시설을 공동설치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최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원창 (아산군)	도지사께서는 200만 도민을 위하여 염색공단 입주를 적극 저지할 용의는 없는지요? 사업시행자가 어디인지를 포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 역 경 제 국 장 노규래	근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 추세에 대응하는 국제경쟁력 강화등 국가 산업정책적차원에서 전국 일원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항인 만큼 이런 문제는 대국적 견지에서 국가 입장과 또 지방적 입장을 종합검토해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문공단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나 여러가지 여건상 건설부에서 국가공단으로 지정한 것으로 전망하고 우리 도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석문공단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현재 건설부에 적극적으로 건의중에 있습니다.
서중철 (홍성군)	• 지난 1989년 1월 1일자로 대전 직할시가 충청남도에서 분리되면서 도세가 약화되어 재정자립도가 35.8%로 빈약한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빈약한 재원을 확충하고 충남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서해안 개발사업이 활발히 이룩되어야 함은 물론 충남도청 또한 천안권, 공주권, 서해안 중심권 어디로든지 이	부지사 박중배	• 지적해 주신대로 도청이전 문제는 지역발전과 도정수행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또한 민감한 문제로 저희 도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의 중심도시 역할을 수행해온 대전시가 지난 '89년 1월 1일 직할시로 승격 분리되면서 도청이전의 문제는 도정의 구심 역할을 수행할 새로운 도시의 구성에 대한 당위성이 제기 되면서 도민 모두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청 이전에 따른 지역간 과다한 유치경쟁으로 주민간의 화합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서중철 (홍성군)	전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분분한 것은 누구도 부인 못하리라 믿습니다. 더욱이 충남도청이 대전에 소재함에 따라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거주케 되어 대도시 인구집중과 업무수행에 따른 각종회의 및 민원인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소요경비 즉, 교통비, 식대, 회의비등도 대전지역에 전액 소비된다고 볼 때 도청이 충남지역으로 이전한다면 빈약한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이에 부수하여 도재정 확충에도 보탬이 되고 이전지역의 발전은 물론 충남의 표상이 되는 상징적인 도시를 건설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도민의 여망을 수렴하는 뜻에서 충남도청의 이전계획은 수립해 보셨는지요? 도청을 이전한다면 유관기관의 합동이전으로 종합청사식의 구상은 해보셨는지요?	부지사 박중배	을 해치고 지역간 갈등을 심화시킬 소지가 있는 도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거론할 시기가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청후보지 선정이나 종합청사건립등 이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서 도의적 공감속에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의원이 포함된 도청 이전을 위한 별도의 입지선정 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말씀에 관해서는 도청 이전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와 행정적 여건이 성숙될 때 반드시 구성하여야 할 필수적인 기구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행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 규정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이때 조례는 도의회의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도청 이전은 도의회의 절대적인 찬성이 없이는 불가함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도청이전이 불가할시에 대전권 소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서중철 (홍성군)	도청이전에 따른 애로사항과 현안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도청부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전문위원, 광역의원과 집행부서의 필수요원으로하는 위원회를 둘 용의는 없는지요.	부지사 박중배	재 외청이나 사업소의 도내 이전 문제는 앞으로 이전이 이루어질때에는 당연히 우리 도 관내로 이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서중철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여성회관의 이전은 현재 우리 도 관내로 이전하기 위해 검토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 현재 충청남도내에는 홍성군 소재, 저희 군을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마면 봉서리 화장장외에는 전무하며 봉서 화장장도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화장장이 시설이 낡어 운영과 가동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시설을 보강하여 충청남도가 직영사업소로 운영하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도내 1개뿐인 화장장이 원거리에서는 이용이 불가하므로 1개소를 증설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그 대책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가 정 복 지 국 장 조춘자	• 지적해 주신 홍성 화장장은 지난 '78년에 화장장 1기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으나 최근 노후로 인한 내부 균열과 부식으로 수선이 불가하여 운영치 못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화장장 설치 1기와 진입로 포장을 위한 1억9,100만원을 긴급 투자하여 정상운영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생활권역별 화장장 신설은 오래전부터 정부와 도의 당면 과제로 대두되어 왔으나 지역 주민들의 혐오시설에 대한 기피와 완강한 반발로 입지 선정등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서중철 (홍성군)	• 읍지역의 주거지역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읍지역의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과의 지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폐단을 방지키위하여도 중소도시의 도시계획 재정비시에는 자연녹지 지역중에서 택지화 가능지역을 대폭적으로 주거지역화 할 용의는 없는지요?	건설도시국장 정진홍	• 서중철의원님 질문사항은 읍지역의 자연녹지중 택지화가 가능한 지역을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거지역으로 대폭 조정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도내 18개읍의 도시계획상 용도 지역의 구성은 전체계획 면적 192평방 킬로미터중 주거지역이 27평방 킬로미터인 14%이고 자연녹지 지역이 125평방 킬로미터인 65%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당해 지역 시장, 군수가 20년을 단위로 기본 도시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주민에게 공람하고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지방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지방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단순히 지형 형태에 따라 용도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통제규정에 따라서 지역내 여건 변동을 감안해서 5년단위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5개 읍, 조치원, 부여, 예산, 태안, 성환읍을 대상으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서중철 (홍성군)		건 설 도 시 국 장 정진홍	앞으로 그 지역별 인구증가 및 주택부금율등 종합적인 도시발전 추세를 고려해서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거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충남보건환경연구원 분원설치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대전에 소재함에 따라 서북부지역의 환경오염조사를 위한 각종 검사를 하기 위하여 대전에 까지 출장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이전문제는 대전직할시의 검사 업무 형편상 이전이 어려우시면 서북부지역에 분원을 설치해 주든지 또한 분원설치가 불가할시는 현 홍성군 보건소건물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검사장비를 시설하고 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하면 서북부지역의 환경오염방지대책에 일익을 도모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보 사 환 경 국 장 이종현	• 이 문제는 현재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은 대전시 동 구가 양동에 건물 561평과 109종의 각종 장비를 갖추고 충남과 대전시 일원에서 의뢰되는 미생물 검사등 8개 분야에 연간 8만6천여건의 시험 및 검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중철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건환경연구원이 대전에 위치하고 있어서 도내 서북부지역 주민들의 이용에는 거리상 다소 불편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의 본연구원은 신종질환 업무등 새로운 업무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서 농산물 분석과와 역학조사과의 증설과 이에 따른 원자흑광광도계등 장비도 상당수 보강되어야 하는등 21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재정 형편상 연차별로 보강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새로운 지원을 설치할 경우 본원과 지원 모두가 원활한 기능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또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이전시에는 약 50억원 또 지원설치의 경우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보 사 환 경 국 장 이종현	는 1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홍성군 보건소에서 검사토록 하는 문제도 보건소 기능상에 관한 제도상의 문제와 건물의 협소로 현재로서는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1차적으로 본원의 기능 보강을 중점 추진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그 이후에 지역의 검사업무 수효를 감안해서 증설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第7節 第60回 定期會

Ⅰ. 概 況

1. 開會背景

○ 제60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1년 11월 25일 집회공고를 실시하고 91년 12월 2일 14:00에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회기 : '91. 12. 2 ~ 12. 30 (29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1. 12. 2(월) 14 : 00	본 회 의 (제 1 차)	1. 회기결정의건 2. '92년도충청남도예산안에 대한 도정 연설 3. '92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교육시책 연설 4.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 5. '91년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91. 12. 4(수) 11 : 00	내무위원회	1. 정수물품취득 승인의 건	
'91. 12. 9(월) 10 : 00	본 회 의 (제 2 차)	1. 정수물품취득 승인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3. 도정에 관한 질문	
'91. 12. 10(화) 14 : 00	본 회 의 (제 3 차)	1. 도정에 관한 질문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1.12.11(수) 10 : 00	내무위원회	1. 충청남도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2. 19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안 가. 기획관리실 소관 나. 재무국 소관	
11 : 00	농림수산 위 원 회	1. 19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안 가. 농어촌개발국 소관 나. 농림수산국 소관	
10 : 00	건설위원회	1. 19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 나.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10 : 00	문교사회위	1. 19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안 가. 보사환경국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4 : 00	지역경제 위 원 회	1. 19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안 가. 지역경제국 소관	
'91.12.13(금) 10 : 00	내무위원회	1. 19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안 가. 지역경제국 소관 나. 계룡출장소 소관	
17 : 00	농림수산 위 원 회	1. 19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안 가. 농어촌개발국 소관 나. 농림수산국 소관 다. 농촌진흥원 소관	
10 : 00	건설위원회	1. 19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안 가. 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 나.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1.12.13(금) 10 : 00	문교사회 위 원 회	1. 1992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3 : 00	운영위원회	1. 19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91.12.14(토) 10 : 00	내무위원회	1. 19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민방위국 소관	
11 : 00	문교사회 위 원 회	1. 19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예산안 2. 1992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 : 00	운영위원회	1. 19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91.12.16(월) 11 : 00	본 회 의 (제4차)	1. 1991년도충청남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2. 1991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13 : 30	예결특위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소위원회 구성의 건 4. 19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예산안 5. 1992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6 : 00	내무위원회	1. 1991년도충청남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내무국 소관 나. 재무국 소관 다. 민방위국 소관 라. 계룡출장소 소관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1.12.16(월) 16 : 00	농림수산 위 원 회	1. 1991년도충청남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농어촌개발국 소관 나. 농림수산국 소관 다. 농촌진흥원 소관	
16 : 10	건설위원회	1. 1991년도충청남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	
16 : 00	문교사회 위 원 회	1. 1991년도충청남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보사환경국 소관 나. 가정복지국 소관 2. 1991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6 : 00	지역경제 위 원 회	1. 1991년도충청남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지역경제국 소관	
17 : 00	운영위원회	1. 1991년도충청남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1.12.17(화) 11 : 00	예결특위 (제1소위)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19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관리실 소관 나. 공보관실 소관 다. 내무국 소관 라. 재무국 소관	내무위 회의실
11 : 10	예결특위 (제2소위)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1992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문 교 사회위 회의실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1.12.18(수) 10 : 00	예결특위 (제1소위)	1. 19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계룡출장소 소관 나. 보사환경국 소관 다. 가정복지국 소관 라. 지역경제국 소관 마. 민방위국 소관 바. 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 2. 1991년도충청남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내무위 회의실
10 : 00	예결특위 (제2소위)	1. 1992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1991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문 교 사회위 회의실
'91.12.19(목) 10 : 00	예결특위 (제1소위)	1. 19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어촌개발국 소관 나. 농림수산국 소관 다. 농촌진흥원 소관 라. 건설도시국 소관 마.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바. 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	내무위 회의실
'91.12.20(금) 18 : 00	예결특위 (제1소위)	1. 19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예산안 2. 19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3. 19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제2차수정예산안	내무위 회의실
10 : 00	예결특위 (제2소위)	1. 1992년도충청남도교육특별회계세출예산안 2. 1991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세입세출 추가변경예산안	문 교 사회위 회의실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1.12.20(금) 20 : 58	예결특위	1. 19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예산안 2. 1991년도충청남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19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4. 19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제2차수정예산안 5. 1992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1991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 회의실
09 : 00	내무위원회	1. 충청남도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91.12.21(토) 10 : 30	본 회 의 (제 5 차)	1. 충청남도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2. 19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예산안 3. 1991년도충청남도제3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1992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1991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4 : 30	문교사회 위 원 회	1. 충청남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91.12.23(월) 14 : 00	내무위원회	1. 충청남도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92도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 건 4. 충청남도도세조례개정안 5. 충청남도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도세과세면제 에관한제정조례안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1.12.23(월) 14 : 00	내무위원회	6. 충청남도새마을공장등에대한취득세및등록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남도광산지역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남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충청남도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충청남도국가유공자및그유족의주택구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충청남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충청남도의료취약지구내의료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충청남도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충청남도주차장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조례중개정조례안 16. 충청남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충청남도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8. 충청남도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1.12.23(월) 14 : 00	내무위원회	19. 충청남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 충청남도다가구주택에대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1. 충청남도철도건설공유지분분할등기에따른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2. 의안철회동의의건	
'91.12.27(금) 11 : 00	본 회 의 (제 6 차)	1. 충청남도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제정조례안 2. 충청남도새마을공장등에대한취득세및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광산지역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국가유공자및그유족의주택구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남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남도의료취약지구내의료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충청남도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1.12.27(금) 11 : 00	본 회 의 (제6차)	11. 충청남도주차장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조례중개정조례안 12. 충청남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충청남도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충청남도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충청남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충청남도다가구주택에대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7. 충청남도철도건설공유지분분할등기에따른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8. '92도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 건 19. 충청남도도세조례개정안 20. 충청남도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1.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2. 충청남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3.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1.12.28(토) 11 : 00	내무위원회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11 : 50	농림수산 위 원 회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1.12.28(토) 10:40	건설위원회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10:00	지역경제 위 원 회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91.12.30(월) 11:00	본 회 의 (제7차)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5건)의 건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수	안 건	비 고
계	41		
조 례 안	24	1.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예 산 안	4	1. '92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1년도제3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3. '92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1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동일승인안	2	1. 정수물품취득에 관한 건 2. '92도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	
기 타	11	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2. 회기 결정의 건 3. '92충청남도예산안에 대한 도정연설 4. '92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교육시책 연설	

구 분	건수	안 건	비 고
		5.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91년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도정에 관한 질문 9. '91년도 충청남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10. '91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11. 1991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보고(5건)의 건	

4. 條例案 處理內譯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39	충청남도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도지사 ('91.11.30)	내무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한 공업, 항공, 농업계통의 각급 사립학교가 학생의 실험 실습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교육용 재산을 취득·등록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등 도세의 과세면제를 하고자 하는데 있음	'91. 12.27	'91. 12.28	원안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57	충청남도지방 양여금특별회 계설치조례안	도지사 ('91.11.30)	내무	○지방양여금법(제정 1990. 12.31 법률 제4270호)의 개정으로 지방양여금 대상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도에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내무부 장관의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충청남도 지방 양여금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91. 12.21	'91. 12.21	수정
58	충청남도지방 소방학교건립 준비단설치조 례안	도지사 ('91.12.13)	〃	□제정이유 ○천안시 유량동에 지방소 방학교 건립을 추진하여 '92년 하반기에 준공예정 인 바 공업추진 및 개교 준비를 위하여 준비단을 구성하기 위함. (배치인원) 10명-소방직 4명(개교준비) -기술직 6명(공사감독) □철회이유 ○본 안건에 대하여는 도 규칙을 개정 운영함으로 써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자 철회하려는 것으로써 ○제60회 정기회 제8차 내 무위원회('91.12.23)에서 철회키로 동의함.			철회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37	충청남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안	교육감 ('91.11.20)	문교사회	○신설학교에 대하여 학군(구)를 배정하고 학생통학여건의 개선과 소규모 국민학교 통·폐합에 따른 학교폐지 및 분교장 격하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충청남도중학교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91. 12.27	'91. 12.28	원안
40	충청남도새마을공장등에대한취득세및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91.11.30)	내무	○본조례는 농어촌 유휴노동인구의 고용증대와 농어촌 소득원개발사업추진을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1년 면제후 3년간 50% 경감하여 주고자 '73.3.8부터 실행되고 있는 조례로서 ○본조례 명칭을 법률상의 명칭과 일치시키고 일부내용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며, 금년말로 만료되는 적용기간을 향후 3년간 더 연장 시행하고자 하는데 있음.	〃	〃	〃
41	충청남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본 조례는 국가에 유공한 상이군경등 신체 장애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지계통 상이자들이 사용하는 보철용차량 1대에 한하여 도세를 면제	〃	〃	〃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하여 주고자 '76.12.31부터 시행하는 조례로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계속적인 예우를 위하여 적용 기간이 금년말로 만료되므로 향후 3년간 더 연장시행을 위하여 개정코자 함.			
42	충청남도광산지역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91.11.30)	내무	○본 조례는 광산촌 근로자 복지를 위하여 '85.12.20부터 광산촌 근로자용 사택, 목욕탕, 회관 공동변소 등을 신축시 도세를 면제하는 조례로서 ○그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광산업을 활성화 시켜야 하는데도 어려운 일을 회피하는 풍조 때문에 폐광사태가 날로 늘어나는 실정임 ○광산촌의 환경개선으로 근로자의 이직을 막기 위하여 향후 3년간 더 연장시행하고자 함.	'91. 12.27	'91. 12.28	원안
43	충청남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	〃	〃	○본 조례는 '78.1.10부터 새마을사업을 적극 활성화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취득하	〃	〃	〃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중개정조례안			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과세면제하는 조례로서 ○적용기간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대부분이 농어촌개발과 관련될 뿐만아니라 U.R등으로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 향후 3년간 더 연장 시행하고자 함.			
44	충청남도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91.11.30)	내무	○본 조례는 태양열 난방주택 건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84.3.20부터 태양열 난방주택을 건축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과세면제하는 조례로서 ○적용기간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대체에너지 개발이 필요하고 환경오염방지 차원에서도 확대 보급하여야 할 실정임을 감안하여 향후 3년간 더 연장 시행하고자 함.	'91. 12.27	'91. 12.28	원안
45	충청남도국가유공자및그유족의주택구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	〃	〃	○본 조례는 '81.1.3부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주택자금을 대부받아 소형주택을 구입시 취득세, 등록세를 과세면제하는 조례로서	〃	〃	〃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조례중개정조례안			○적용기간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계속적인 예우를 위하여 향후 3년간 더 연장 시행하고자 함			
46	충청남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91.11.30)	내무	○본 조례는 사회교육시설 설치 유도를 목적으로 '87.2. 20부터 사회교육시설용 토지 및 건축물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를 과세면제하는 조례로서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공동시설세가 시·군세에서 도세로 변경되었고, 사회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시·군세 당시부터 면세하던 것으로서 본 조례에도 공동시설세를 신설 면세하고자 하며, '91.11.30 법률 제4410호로 박물관법이 폐지되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이 제정 공포되어 이에따른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또한 적용기한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도서관, 강습소, 체육시설등의 설치	'91. 12.27	'91. 12.28	원안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를 유도하고 사회정서 함양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향후 3년간 더 연장 시행하고자 함.			
47	충청남도의료취약지역내의 의료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91.11.30)	내무	○본조례는 '87.1.10부터 의료시설이 취약한 농어촌에서 병원의료용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과세면제하는 조례로서 ○적용기간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전국민 의료보장 제도의 확대 실시와 병원진료대상도 취약지구 주민에 의료혜택이 부여되도록 하기 위하여 3년간 연장 시행하고자 함.	'91. 12.27	'91. 12.28	원안
48	충청남도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본 조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이 집단촌에 정착하는 음성나환자의 생활안정도모를 목적으로 '91.1.1부터 부동산을 양여하는 경우 이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과세면제하는 조례로서	〃	〃	〃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공동시설세가 시·군세에서 도세로 변경되었고, 공동시설세는 건물분 재산세와 동시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면세하기 위하여 본 조례에 공동시설세 세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49	충청남도주차장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91.11.30)	내무	○본 조례는 도심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민간 투자에 의한 주차시설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차전용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를 과세면제하기 위하여 '91.1.1부터 시행하는 조례로서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공동시설세가 시·군세에서 도세로 변경되었고, 주차전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공동시설세를 시·군세 당시부터 면세하던 것으로 본 조례에도 공동시설세를 신설 면제하고자 하며 ○적용기간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최근 급격한 자동차 증가 추세에 따라 민간 자본투자 주차시설 유	'91. 12.27	'91. 12.28	원안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도가 필요한 점을 고려 향후 3년간 더연장하여 시행하기 위함.			
50	충청남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91.11.30)	내무	○본조례는 서민용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건축업자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이를 최초취득자에게는 세액의 50%를 경감하기 위하여 '89.5.25부터 시행하는 조례로서 ○주택난 해소와 소형주택 확대보급을 위하여 불균일과세 범위를 확대함 ○다만, 분양받은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도세 면제 또는 경감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새로 신설하고 적용기간을 향후 3년간 더 연장 시행하고자 함.	'91. 12.27	'91. 12.28	원안
51	충청남도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도세과세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본 조례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취득할 경우 무적차량방지 및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83.12.23부터 시행하고 있는 조례로서	〃	〃	〃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적용기간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급격한 자동차증가에 따른 무적차량의 증가를 방지하고 매매거래 질서확립 차원에서도 향후 3년간 더 연장 시행하고자 함			
52	충청남도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91.11.30)	내무	○본 조례는 도시민의 생활편익도모 및 연료 현대화 촉진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가 취득하는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각각 50/100 경감하기 위하여 '84.1.20부터 시행하는 조례로서 ○적용 기간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도시가스 보급율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 조례시행 기간을 향후 3년간 더 연장코자하며 내용중 불합리한 용어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91. 12.27	'91. 12.28	원안
53	충청남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본 조례는 '87.3.1부터 검인계약제도 확대실시에 따라 개인간의 거래시에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게 되므로서 취득세, 등록세를 종전보다 2-3배	〃	〃	〃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과중되게 부담하게되어 이를 점진적으로 부담을 늘려나가기 위하여 '88.10.1부터 시행하는 조례로서 ○1988년부터 '90년까지는 세액의 70/100을 경감하였으나 점차 사실가격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91년부터 세액의 40/100으로 경감율을 낮추어 시행하고 있음. ○일시에 도세부담 급증으로 인한 조세저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3년간 더 연장 시행하고자 함.			
59	충청남도의회 사무국설치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91.12.13)	내무	○의회사무국의 의전용차량 구입으로 인한 운전원을 보강하려는 것임. "정수를 46명에서, 47명으로 함"	'91. 12.27	'91. 12.28	원안
61	충청남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감 ('91.12.13)	문교 사회	○초·중 신설학교에 대하여 학교명칭과 위치를 삽입하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으로 격하된 국민학교의 학교명칭과 위치를 삭제 또는 변경하며,	〃	〃	〃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강경여자고등학교를 남·여 공학인 강경고등학교로 학칙변경 인가함에 따라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62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91.12.21)	내무	○제156회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종래의 시·군세인 공동시설세와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역개발세가 도세의 목적세로 신설되는등 세목체계가 개편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도세 조례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91. 12.27	'91. 12.28	원안
63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	○소방법 개정법률('91.12.14 법률 제4419호)이 공포되어 '92.1.1부터 소방사무 권한이 국가에서 도지사 권한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방서 미관할구역에 대하여는 도지사(소방서장)의권한을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출장소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	〃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54	충청남도다가구주택에대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도지사 ('91.11.30)	내무	○본 조례는 1세대당 60㎡ 이하의 다가구 주택이라 하더라도 1동의 주택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주택은 사치성 재산인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중과세하게 되므로 주택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세부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90.5.28부터 시행하는 조례이나 ○지방세법 시행령에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규정하게 됨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91. 12.27	'91. 12.28	원안
55	충청남도철도건설공유지분분할등기에따른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	○이 조례는 철도부지로 편입된 토지를 확정 분할할 경우 잔여토지 소유자에게 등록세를 면제하기 위하여 '85.1.20부터 시행하고 있는 조례로써 ○지방세법시행령에 도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규정하게 됨으로 본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	〃

5. 第60回 定期會 道政 및 敎育行政에 關한 質問·答辯要旨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정선홍 (청양군)	• 지금 우리의 현실은 한해의 무역적자가 1백억불, 그동안 누적된 총외채가 다시 4백억달러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자금난, 기술난, 인력난등으로 3,400여개의 중소기업이 폐업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의 경제를 걱정하는 외신의 보도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는 뼈아픈 시점이지만, 눈앞에 절벽이 있는 것을 모른채 불건전한 소비성향 및 과소비의 고삐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이때에, 궁여지책으로 「공무원 30분 일더하기」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 등의 시책추진만으로 이 경제위기극복의 지방적 책임을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도정전반을 책임지고 계신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구상하고 계신 대책이 있으시면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한청수	• 30분 더 일하기 씀씀이 10% 줄이기로 최근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방적 책임완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발상이나 대책은 어떤것이냐, 소비절약 운동을 범 도민 정신운동으로 전개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질문이셨는데, 의원께서 오전에 지적하신대로 물가 불안과 국제수지 적자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태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민주화 추진 과정에서 어렵고, 좀 힘든일이라든지 위험한 일을 하기 싫어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도농간에 가릴 것 없이 과소비 풍조가 만연되어서 경제적인 저력이 사그러 들고 있지 않느냐 하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다시 우리가 시작을 하고 뛰어서 오늘의 경제 어려움을 극복해야겠다고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부, 사회단체등이 중심이 되어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소비를 적게하고 조금이라도 더 일하는 기쁨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더 일하자. 씀씀이를 줄이자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정선흥 (청양군)	또한, 우리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본생계비가 부족하여 구호 대상자로 정부의 지원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고, 전세계적으로는 기아인구가 헤아릴수 없이 많은 이 시대에, 연 8조원에 육박하는 음식물찌꺼기와 무분별한 외제선호사상, 지도층 인사의 무분별한 사치 향락풍조 등을 고려할 때 도내 전도민과 직능단체가 참여하여 차체에 「소비절약운동」을 범도민 정신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사님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며 도의 행정책임자로서 그 대응책을 어떻게 펴나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한청수	저희 도에서도 근검, 절약하는 운동 그리고 일하는 기풍운동의 확산을 위해서 실천 결의 대회도 하고 홍보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 기업, 가계 하나만으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 않고 모든 나라의 경제 주체가 또 모든 국민이 근검, 절약하고 열심히 일하고 제몫을 다하지 않고는 오늘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저희도 앞장서서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범 국민적인 소비절약 운동이든 일을 열심히 해서 일본을 따라 잡고 능가하자든지 하는 운동은 앞으로 전 국민, 전 경제 주체가 참여를 필요로 하는 운동은 정부가 앞장서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운동은 민간이 앞장을 서고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도로써는 유관기관 단체와 협력도 하고 모든 공직자가 경제 극복운동을 벌여 나가겠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정선흥 (청양군)	• 노인 복지대책은 실로 중요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노인문제의 일단을 피력하고 그에따른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에 대한 도지사님의 대책을 답변으로 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는 주민복지의 증진이라 할 수 있겠는데, 그중에서도 자립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소외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이에따른 시책이 뒤따라야 하고, 특히 인구구조가 현대의술의 발전, 생활수준의 향상에 힘입어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전되면서 우리 주변에는 노령으로 사회적 역할을 상실한채, 주변으로부터 소외되어 가고, 그중에는 쓸쓸히 여생을 보내야 하는 노인의 수가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들도 사회의 발전수준에 걸맞게 여가를 즐기면서 이용할 수 있는 경노당, 노인 복지회관 등	도지사 한청수	• 먼저 도내 노인회 20개 시·군 지부회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임차사용중인 회관이 6개소이고, 시·군소유회관이 14개소, 금년중에 추진중인 3개소 신축이 완료되면 임차회관이 3개소, 나머지 시·군소유 회관이 17개소가 됩니다. 규모별로 보면 50평 미만이 7개소, 50평 이상이 8개소, 100평 이상이 5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건립한 시·군 노인회 지부 회관건물이 지적하신대로 노인을 모시는데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안됩니다. 그러나 20개 지부중에서 금년에 신축중인 것을 포함해서 13개 시·군은 큰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나머지 7개 지부 회관은 노후되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7개소에 대해서는 건축대지의 확보정도, 이용도, 제반여건등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설을 좀 더 편리하도록, 그리고 조금은 나은 상태로 연차적으로 확충, 해결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노당 현황과 환경개선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도내에 경노당이 2,057개소가 있습니다. 경노당은 또 95%가 농촌지역에 위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정선흥 (청양군)	노인 복지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군에는 노인들이 친목도모와 복지증진을 위한 구심적 단체로서 대한노인회 시군지부가 조직되어 있고, 이분들은 지부회관 또는 노인복지회관 등의 이용 시설이 없어 대부분 임대사용하거나, 있어도 그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이용하기에 불편한 실정인데, 그 현황은 어떠하며 앞으로 이들 시설을 대폭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마을단위 또는 소지역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경노당시설이 20여년전 정부의 자재지원과 독지가의 출연금으로 순수하게 새마을사업으로 추진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현재는 극히 부실한 시설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들 경노당에 대한 실태를 파악 분석한 현황이 있으면 어떠하며 시설확충	도지사 한청수	치하고 있고, 이중 57% 정도가 마을회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운영은 31% 정도가 적정수준 미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규모별로 보면 10평 미만이 31%, 20평 미만이 44%, 20평 이상 규모가 24% 내구년한 별로는 10년 미만이 46%, 20년 이상이 17%, 그리고 전화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문화적인 시설은 20% 정도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도에서 '89년부터 환경을 개선해 드리기 위해서 돈이 안드는대로 작은 손보기 운동을 전개해서 전화기를 400개소 개설해 드리고, 목욕탕 400개, 보호물통 200개소, 변소개량 20개소, 이렇게 소액 투자를 해서 편익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정선흥 (청양군)	과 환경개선 계획은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도정의 목표는 우리 도민 전체가 다함께 더불어 잘살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으며, 특히 근로능력이 없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기본 확충 시책추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의 생활보호 대상자는 통계에 의하면 67,923가구 257,192명으로 전체 도민의 12.8%나 차지하고 있음을 더욱 자활능력 배양시책 추진의 중요성은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91년도 도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역을 보면 거택보호비 11,668백만원, 자녀학비보조 8,585백만원, 직업훈련비 1,391백만원, 취로사업비 1,288백만원, 계 22,932백만원으로써 그 내용을 보면 생계유지비	보사환경국장 이종현	• 먼저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능력 향상대책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도비로 시행할 취로 사업의 규모라든지 확대 추진용의와 또 항구적인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시책의 내용이라든지 추진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취로사업은 저소득층의 노임소득 증대와 소규모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등 양면적인 효과를 위해서 보사부 주관으로 일정한 노임기준하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재정 형편상 도비를 투자하는 취로사업은 내년도에 미리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화재발생이라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사안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항구적인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시책으로써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저소득층 자녀 1,777명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를 비롯해서 생업 및 생활안정 자금 융자로 951가구에 37억4,600만원, 취로 사업비에 12만9천명을 3만 5,100명에 대한 85억원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정선흥 (청양군)	에 필수 불가결한 비용에 불과하며 그중 유일한 소득원은 취로사업비인데 1가구당 겨우 연2만원 꼴로 지원되는 결과일 뿐만 아니라 지원액의 80%이상을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 등 도자체 지원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92년도에 도비로 시행할 취로사업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추진할 계획인지? 또 이를 확대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본의원은 생계유지수단의 사업비 지원 보다는 항구적인 자활능력 배양시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소득 계층에 대한 전반적인 자활능력 제고 시책을 추진하고 계시다면 그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사 환 경 국 장 이종현	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또 41만 5천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총 6개 분야에 250억원을 연 58만 1천명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도 자체 특수 시책으로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 30억 조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6억원을 조성했습니다. 내년부터 그 이자를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각종 시책을 보다 내실있게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자립능력을 배양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원래 (논산군)	• 지방화 시대를 맞이한 시점에서 우리 도내 전역에서 대규모 국토개발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을	도지사 한청수	• 현행 지방건설업체 참여 한도액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토록 관계부처에 건의해서 관철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박원래 (논산군)	200만 도민과 더불어 환영을 합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내에는 80개의 전문건설 업체들이 소재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지역개발 사업의 일익을 담당하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력하고 있으나 예외없이 인력, 자금, 기술난으로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으며 더욱이 지방에서 발주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마저 대기업에게 잠식당하여 경제난에 더욱 가중시키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음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0조,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지방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공사 금액 15억원 이하로 제한되고 있을뿐더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의한 지역업체와의 공동 도급을 공사를 수주한 대기업들이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서해안 개발사업등 대규모의 공사가 우리 지역에서 발주	도지사 한청수	또 도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공사발주시에 지역소득사업체와 공동도급이 가능토록 역시 촉구를 하였습니다. 지방건설업체 한도액 상환 문제는 이것은 종전에 10억원이던 것을 '91년 7월 11일 정부 방침을 바꾸어서 10억원에서 50%를 인상해서 15억원으로 인상 조정이 되었던 것을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시행된지가 5개월 정도로써 시행기간이 짧지만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소규모 공사에 대한 과당 경쟁억제와 지방업체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건설협의회 충남도회와 협의하여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서 회원님과 함께 이것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시형 대규모 공사발주시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문제에 대하여는 커다란 공사는 기술이 필요한 것은 기술이전을 받는다든지 또 중소기업을 육성 참여해서 공동도급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동 도급제도의 취지를 살려가면서 도 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도가 발주하는 업체는 무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해서 중소기업이 보호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박원래 (논산군)	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업체 참여 한도액 규정을 삭제하거나 현행 15억원을 30억원 정도로 상향조정하여 지방업체의 참여폭을 넓힐 수 있는 제도개선책을 마련 관계부처에 강력히 건의할 것을 촉구하면서 충청남도 자체에서 시공하는 대규모 공사 발주시에는 반드시 지역소재 업체와 공동 도급이 가능토록 조치하여 지방건설 업체보호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 소도읍지역의 주차장 확보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우회도로 개설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이카 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차량의 급증실태와 그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함께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충청남도 관내만해도 평	도지사 한청수	육성되고 되도록이면 기술 이전도 포함하도록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 소도읍 지역의 주차장 확보, 특히 논산 우회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 추가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차장확보 문제에 있어서는 도시와 농촌 소도읍할 것 없이 지금의 공동과제로 여러모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12만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자가용차량 9만대에 40%, 3만 6,000대를 기준으로 우선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박원래 (논산군)	균 1일 약120대의 차량이 증가되고 있는 형편으로 소도읍 단위의 주차난과 소도읍을 통과하는 차량의 홍수로 간선도로는 주차장화되어 대형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곤란, 청소차량진입곤란, 분뇨수거차량 진입곤란 등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음은 물론 급변하는 사회현상을 예측 못하고 뒷북만치는 행정당국을 원망하고 있으며, 또한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있어서도 충청남도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개발예정지가 국도 23개소, 지방도 10개소, 군도 3개소등 36개소에 총연장 49,908㎞로써 '77-'78년도에 건설부 공고 및 충청남도고시로 지정만했을뿐 지금까지 개설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지방도내 우회도로의 경우 10개 노선에 1백여 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뿐만 아니라 매년 보상가 및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지연되고	도지사 한청수	현재 확보한 주차 공간은 896개소에 3만1,000대의 주차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90년대부터 주차장 확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107개소의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도록 주차 수요에 대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법상 취약지 우회도로는 총 53개소 그리고 앞으로 도구간은 4차선 도로확장시 지금 보다는 도로 확·포장시에 우회도로 지정구간 도로개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논산의 외각도로는 논산읍 대교면 부창리까지 연결되도록 된 시가지 우회도로로 연장 2,140m, 그리고 폭 8m, 12m를 개설토록 추진하고 있고 소요사업비는 40억 7,0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보면 '86년 10월 24일 착공해서 '90년 말까지 7차에 걸쳐 국비 5억 200만원, 도비 3,100만원, 군비 21억 2,800만원으로 27억 6천만원을 투자했는데 대부분 군비부담으로 했습니다. 잔여 사업량은 28m 육교에 13억 1,200만원이 소요되고 이것은 '92년도에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논산읍 부창리에서 지산리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박원래 (논산군)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날이 가면 갈수록, 본 사업이 지연되면 될수록 소도읍 지역까지의 교통문제가 머지않은 장래에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도지사께서는 소도읍지역의 주차장 확보 및 우회도로 개설사업의 계획과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그 내용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도지사 한청수	대전 지방국토 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우회도로개설 사업입니다. '91년도에 국비 5억원을 투자 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92년도에는 국비가 지원 계속사업으로 시행되도록 중앙과 계속 협의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 충청남도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제문화권 개발정비사업 계획을 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공주, 부여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은 기타 인근 지역에 사장되어 있는 많은 백제문화재를 발굴 보존하려는 의지가 미흡한 발상이며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현대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난 사례라고 생각하며 도지사의 뜻이 「인멸훼손된 백제유적을 복원 정비하여 문화민족으	내 무 국 장 김흥태	• 백제문화권 개발은 '79년도에 문화부 주관으로 해서 백제의 고도인 부여와 공주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 문화 유적을 정비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충남대와 공주대등 관계 학술기관의 현지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확정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 사업이 보다 활력있는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백제문화권개발 사업을 대폭 확대 지원토록 문화부에 건의를 했고, 또 논산의 계백장군묘역등 인근지역 까지도 백제문화권개발 사업에 포함 시켜 추진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박원래 (논산군)	로써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 시키기 위하여 전개하는 사업이라면 백제문화권 개발 정비사업계획은 인근 지역까지 포함 재조정 시행함이 옳을 것이라고 본의원의 소신을 밝히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 무 국 장 김홍태	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마는, 현 단계에서는 인근 지역까지 확대 추진하는 것은 고도를 중심으로 한 본래의 사업 취지상 어려운 점이 있고 또한 예산도 도입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진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서는 백제 문화권 개발 계획이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까지도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봉 (온양시)	• 의원의 자료요구는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이며, 공무원의 자료제출은 의무이면서 민주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의 자세라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또한, 도의원은 출신지역만 대표하는 것인가? 아니면, 200만 도민을 대표하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안성군의회에서의 의회 의사를 무시한 공무원 파면 결의안과 전남 여천시 의회에서 의회 활동방해로 인한 시장 사퇴	도지사 한청수	• 먼저 '92년도 예산안 제출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지연된 점 의원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부 시·군이 공무원들의 의원님들에게 의정활동을 충분히, 그리고 만족스럽게 도와 드리지 못한점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의회의 대표성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계신 도의원님 한분 한분은 200만 도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모든 공무원들은 지방의회가 200만 도민에 의견을 전달하고 이익을 대변하는 도민의 대행 기관으로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재봉 (온양시)	권고결의안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가 솔직한 답변도 아울러 요구하는 바입니다.	도지사 한청수	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지휘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재봉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에서의 공무원 문책 결의사항은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본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규정 이전의 문제이고 그리고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사전에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이해와 협조의 관계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전력은 국가의 원동력이며 산업 발전의 기본이라고 보는 것은 상식임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국가 전력 공급에 관한 정책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일이라고 하나 전국의 발전소는 약 60개이며 그중 3분의 1이 화력 발전소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본의원이 거론하고자 하는 문제는 우리 충남의 기존의 서천과 보령 화력발전소 이외에 태안 화력과		• 먼저 우리나라 발전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전국에 가동중인 발전소 화력, 수력 합쳐서 모두 7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 용량은 2,100만kw입니다. 발전소를 지역별로 보면 경남이 10개소로 제일 많고 그리고 여기에서 발전되는 발전량은 770만kw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경기, 전남, 경북, 충남순으로 우리 도에는 발전소가 3개소가 현재있고 숫자를 봐서 9.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건설 예정인 화력 3개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재봉 (온양시)	당진 화력에 이어 보령의 송학도에까지 화력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태안, 당진, 송학도의 화력발전소 추진현황과 이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들 3개 화력 발전소의 신규입지와 관련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자체분석과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도지사 한청수	소 발전소의 추진 현황은 태안 화력은 '91년 9월에 착수해서 '96년 6월에 완공을 합니다. 그리고 육지 218만평에 약 9천여억원을 드려서 50만kw 2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현재 그 육지를 절반쯤 매립해서 매수율이 51.3% 추진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생계보상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발전소가 동시에 일부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 어장에 피해등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피해에 대해서는 새로 근거지를 이루어서 이주 생계대책을 세우는데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협의를 추진해 나가고 용지 매수는 되도록 수용을 않고 협의 매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 '92년도 충청남도의 중점사업과 특수시책이 있다면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 획 관 리 실 장 정하용	• 다가오는 '92년은 그 시대적 의미가 그 어느때 보다도 소중한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에 따라 북한과의 대화와 교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재봉 (온양시)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세력이 아닌 동반자로서 도정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타협과 협력을 바탕으로 도민의 의견이 도정에 반영될 때 우리는 새로운 충남의 역사를 창출할 것입니다.	기 획 관 리 실 장 정하용	류가 크게 확대될 것이며, 제14대 국회의원총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의 실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가 내년도에 추진해 나갈 중점시책은 현재 각 실·국별로 구상한 업무계획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에서 도지사께서 말씀드린 도정연설의 틀속에서 전개되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의 여망과 바램을 바탕으로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가르침을 도정 계획에 적극 반영하면서 도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 확정 되는 대로 내년도 도정업무 계획을 수립 마무리 짓고, 내년초에 열리게 될 임시회에서 의원님 여러분께 구체적인 도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농촌 공업화 시책의 일환으로 '85년부터 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해온 바 특히 충남은 현재 53개 단지를 조성 완료 하였거나 조성중인 상태로 농공단지 조성에 관한 전국의 시범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 역 경 제 국 장 노규래	• 공해문제 유발 방지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는 농공단지 개발로 인한 농어촌 지역의 공해 다발업체와 특정 유해물질 배출업체에 대하여는 입주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 오폐수 시설을 설치하여 정화처리 후 방류토록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는 한편, 자체적으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재봉 (온양시)	그러나, 농공단지 선정 및 사후 관리와 관련하여 공해 문제 유발, 농촌 인력난 가중, 부동산 투기등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임은 주지하는 사실이라고 생각되는바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된 각종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한 도의 특별한 대책은 무엇이고 농공단지 조성이 지역경제나 지역발전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및 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어떠한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 역 경 제 국 장 노규래	로도 도에서 정기검토를 실시하는 등 공해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공해로 인하여 문제가 제기됨이 없도록 무공해 업체 선정 및 사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공단지의 개발에 따른 공업생산 증대로 2~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져서 저희도 산업구조가 점차 고도화 될 것이 예상되고 농어민의 취업기회 확대로 농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 노동력의 공업인력화, 그리고 농가구 및 농업인구 감소에 대비한 농업기계화등 농업구조 개선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직접 간접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농공단지입지에 따른 농경지의 잠식과 농장가동에 따른 환경오염과 공해 문제등 일부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도 있습니다만 농공단지개발이 착실히 추진될 경우 우리 도의 취약한 산업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뿐만 아니라 농어가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로 지방재정자립에 크게 기여하는등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지 역 경 제 국 장 노규래	인 면이 더 많은 것으로 평가되어 장기적으로 볼때는 저의 도의 도세도약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좌영 (당진군)	• 쌀이 남아 도는 양이 많아짐에 따라서 국가적으로는 쌀의 수매문제, 보관문제등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고 농민의 입장에서는 쌀 소비가 부진함에따라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가계에 많은 주름살을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미풍양속과 전통문화는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것은 농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농촌이 무너진다면 우리의 전통문화는 사그리 무너지고 우리 국민은 정신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질 것입니다. 옛날 여름 농번기에 어려운집에서 쌀밥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 끼니마다 꽁보리	도지사 한청수	• 그간 우리 도에서는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출향인사, 기업체, 공무원, 대량소비처 이런데를 중심으로 해서 고향 쌀먹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15만석의 실적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92년도에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에서 국수대신 떡국으로 식사를 한다든지 케익을 떡으로 대체해서 행사를 한다든지, 쌀막걸리를 권장을 한다든지 쌀소비 확대를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또한 농협을 통한 고향쌀 판매사업과 백화점 및 대규모 유통센타등에 고향쌀 알선창구를 개설하여 산지와 소비자간에 직거래망을 연결시켜 주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쌀국수, 쌀라면, 쌀과자, 쌀빵등 가공식품 개발 연구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중앙에도 건의하고 자체적으로도 건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농촌 문제는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나라 발전에 관련되는 문제로 더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좌영 (당진군)	밥 아니면 밀국수 밖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쌀밥 못 먹어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농번기에 농민들이 그렇게 아침 네·다섯시부터 저녁 여덟시가 넘도록 매일같이 중노동을 해도 쓰러지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 쌀밥 실컷 먹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쌀밥 많이 먹어야 합니다. 쌀많이 소비해야 합니다. 쌀을 많이 먹으면 1석 3조의 이익을 거둘 것입니다. 첫째, 국민 건강면에서, 둘째, 국가재정면에서, 셋째, 외화를 절약하는 면에서 넷째, 농촌과 농민을 살리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쌀소비 촉진을 위한 도민운동을 버릴 의사는 없는지 묻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도지사 한청수	욱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 도의 총력을 기울여서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원창 (아산군)	• 독립기념관 경내 경관으로 무궁화를 식재하도록 추경예산에서 6,584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바깥의 경우에는 골프장으로 사방을 애워싸고 있으니 추경예산의 책정이 잘못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에 178개 골프장이 있는데, 90개가 경기도로 1위, 충남, 강원도가 13개로 공동 2위입니다. 이 2위를 영광으로 생각하십니까, 수치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 기본법 제26조에 의하면 환경 영향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골프장이 과연 환경영향 평가를 받았는지 또한, 기본법시행령 8조에 보면 주민이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 수렴을 했는지, 또 골프장의 산림을 훼손해 가면서 계속 허가 해 줄 것인	도지사 한청수	• 먼저 특혜의 이유에서 40일만에 허가를 내주었는데 이것의 특혜여부와 여기에 비해 이글골프장은 6개월이 소요되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송이글 골프장은 승계의 문제가 있어서 산을 중심으로 승계를 안쪽으로 하면 승계가 저촉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촉이 안되는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기간내에 한 것이 아니고 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정당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면에서 특혜가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도에 연해있는 지역, 1㎞ 이내의 명승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훼손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해주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1㎞ 이내라 해도 시장, 군수가 고시한 지역에 대해서만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훼손을 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궁화 식제를 하기 위해서 도비를 독립기념관에 주어서 골프장 차폐 조림을 했지 않느냐, 그렇게 말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원창 (아산군)	가하고 질문했을 때 지사께서는 골프의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경제적으로 괜찮고, 21세기에 발전적이라고 해서 허가를 계속 해 줄것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산적인 골재채취를 하는데에는 산림 훼손을 억제해 가면서 골프장 허가는 270만평이나 산림 훼손허가를 해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부와 독립기념관측과 협의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독립기념관 간부를 만났습니다마는 그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한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사께서는 문화부와 독립기념관의 협의사항을 본의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한청수	씀하셨는데 처음에 독립기념관에 준 것을 저희가 지원해서 식재했습니다. 천안군에 주어서 천안군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차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178개 골프장이 허가되어 운영중인 것이 있는데 경기도가 제일 많고 충남이 2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 도는 경기도에 이어서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역이고, 또한 수도권의 골퍼하고 저희 충남이 같이 쓴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충남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폐수가 나오는 공장이나 이런 것보다는 골프장이 환경에 의해서 농약중독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환경 문제는 폐수나오는 공해공장과는 비교가 안됩니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꼭 필요한 것만 신중히 검토해서 골프장 사업승인을 신중히 기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 균 (논산군)	• 이번 육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논산군 노성면 육군항공학교 이전 계획 이전에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더		• 육군항공학교는 원래 조치원에 있습니다. 현재 3만평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3군 본부가 이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공 균 (논산군)	깊은 지역개발계획을 세워 놓은 뒤에 이전 계획을 세웠어야 했을텐데 마구잡이식으로 그것도 기존 지역 조치원에서 싫다는 것을 전북 고창, 공주 탄천, 부여 초촌 등의 반대에 밀려 본의원이 살고 있는 지역인 논산군의 노성면에 이전하는 계획이 사전절차 즉, 지역주민의 이해와 공감이 없는 상태에서 이전 후보지를 결정 추진하므로 지역 주민들은 연일 데모를 하고 있고 계속되는 데모속에 취류탄까스를 마셔가며 어느 경우에는 전교조, 농민회등으로 오인도 되어, 경찰과 대치속에 끌려가는 지역에 젊은이들과 아낙네들의 절규속에서 또 그들과 함께 하다보니 합리적인 사전조치 없이 후보지로 선정하는등 아쉬운 점이 극히 많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지사는 도정의 책임자요 또 이 지역 주	도지사 한청수	전해 와야 되기 때문에 이전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육군항공요원들의 훈련등이 필요하고 국방상 임무와 기능을 위해서 부지 이전 및 확장이 불가피 하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육군항공학교측에 당초 육군전투병과 학교가 있었는데 근접한 고창지역에 후보지를 물색하다가 부지 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유보되었습니다. 그리고 3군본부 가까운 충남지역에 부여 초촌과 공주 탄천을 대상으로 입지 검토를 해 오다 그곳의 유명한 선사시대 유적지와 관련하여 문화재 보호구역 관계로 해서 일단 입지에 불적합지로 판단되고 검토대상에서 제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3군본부와 근접성이 용이하고 기상조건이 양호한 노성면을 보다 적합한 후보지로 선정하고 이미 그곳에는 육군 항공기가 입지하고 있는 관계로 확장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이 헬리콥터입니다만 헬리콥터도 개착지와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착륙도 소음이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공 균 (논산군)	민의 대표로써 단합된 지역 주민의 절대적인 다수의 의견과 흥망에 따라 모든 도정에 관련되고 도민과 관련되는 모든일을 처리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직무행위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거론하는 본 사안에 대하여 내일이 아닌 것처럼 한발뒤로 물러서서 구경만 하고계신 도지사께 항공학교 이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기존 지역인 조치원에서 항공학교를 이전하게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전북 고창, 공주 탄천, 부여 초촌에 항공학교 설치계획에 대한 지역검토가 있었는데 굳이 논산군 노성지역으로 그 계획을 변경하게 된 이유와 경위를 상세히 밝혀 주시고 셋째, 이들 지역과 논산군 노성면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넷째, 이 부분은 중요한 부	도지사 한청수	발생하기 때문에 이착륙으로 인한 주민 보상과 관련해서 대상 자치단체인 논산군과 충분히 협의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그 지역에 관계가 있는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다만, 항공학교의 입지가 국방상 필요하고 중요한 국가시설임을 감안해서 더욱 육군항공학교와 지역주민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서 원만히 추진되도록 지역의 발전 또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계속 추진해 가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공 균 (논산군)	분이기 때문에 좀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가 발전하면서 있는 뒤에는 현실적으로 공해문제가 대두되고 이로 인한 정부의 기구가 확장되어 환경처가 생겼으며 공해대책과 환경오염이 정부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분뇨처리장등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장이나 분뇨처리장처럼 주민이 기피하여 설치하기가 곤란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지역에 상당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마땅함에도 논산 강경지역에 대하여는 이러한 조처는 하지도 않고 하루 46톤의 분뇨처리 능력시설에 논산군의 분뇨 처리는 물론 논산훈련소와 계룡대의 군시설의 분뇨까지 처리능력을 감안함도 없이 하루 100톤, 많은 때는 128톤까지 쏟아 붇는 날이 있어 이런때는 하	도지사 한청수	• 분뇨처리장은 생활하수 중에서도 꼭 설치를 해야되고 수질오염에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는 처리장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찍이 강경지역은 다른지역에 우선해서 분뇨처리장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농촌지역에서 비료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분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여건이 달라져서 똑같은 시설가지고 과거에는 처리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이용량 부족으로 처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논산군에 계신 공균의원님과 김용호의원님 또 여러위원님이 수고하셔서 현재 처리장이 46톤 규모입니다만 국비 18억원을 확보해 주셔서 110톤 규모로 증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92년 까지 확장설치가 완전히 끝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송차량문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구하고 조언을 받아서 수송차량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공 균 (논산군)	는 수없이 금강으로 오물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대충 처리된 폐기물을 흘려보내는 상황이고 이는 수질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보고, 또 오물을 수송하는 차량으로부터 길가에 흘러내린 오물로 이 노선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혐오감이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바램은 내년도에 시설을 확장하는 것도 결사 반대 하겠다고 하는 주민의견이 결집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금까지 그런 내용을 대책없이 방치하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지사 한청수	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혐오감을 받거나 불편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감독이나 지도를 위해서 연구를 해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양돈장 설치, 석재공장 설치에 따른 공해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설치 이전에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설을 해서 민원이나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지사 산하의 모든 지방공무원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하여 공직에 들어와서 도민을 위하여 노력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무 국 장 김흥태	• 먼저 교육원 구성현황을 보면 6급이상의 교관은 총 30명입니다. 평균 연령은 46세이고 학력은 대졸이 21명, 전문대졸업이 9명, 7급이하 공무원은 24명으로 주로 이들은 교육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공 균 (논산군)	모든 조직이 다 그렇듯이 도지사님도 산하 공무원의 질적 수준이 높아야 도정 추진에 어려움이 없고 모든 행정 써비스를 제공받게 되고, 그것이 결국 행정을 신뢰하고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면에서 볼 때, 공무원 교육원은 반드시 활력있고 능력있는 인재가 배치되어 교관은 긍지를 갖고 신바람이 나서 좋은 지식을 항시 산하 공무원에게 공급해 주는 일을 하고 교육원은 그러한 곳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들리는바에 의하면 교육원에서 근무하는 교관들은 시군의 사무관중에서 도 전입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소지자중 선발하여 배치하고 도의 인사충원이 되는때에 순차적으로 도의 계장으로 이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한 교관이 배치되어 질높은 교육이 되어야 하	내 무 국 장 김홍태	교육원은 산하 공무원에 대해 국민의 봉사자로서 갖춰야할 정신 자세와 맡은바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무 수양 능력을 배양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이들에 대해서는 타 부서보다 인사나 처우면에서 많은 혜택이 주어져야 이들이 활력을 갖고 수준높은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 의하면 이들에게 근무 가점 즉, 월 0.05점이라는 가점과 교재수당으로 해서 5급이상은 월 5만원 6급은 월3만원이 지급되고 있어서 직무의 중요도에 비해서 매우 미약한 실정이고 이들의 근무지가 도본청과도 떨어져 있어서 다소 소외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교육원 교관은 연령을 50세 이하의 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고시 출신이나 시·군의 사무관등 능력있는 우수자를 배치해서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한편으로 교관으로 일정기간 근무 후에는 이들이 능력에 따라서 승진 또는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인사면에 있어서의 우대와 함께 각종 수당의 인상을 중앙에 건의해서 처우개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공 균 (논산군)	는 중요성을 도지사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말하자면 고시를 치르고 공직에 들어온 학문적 수준이 높은 인재 교관이라든지, 전문성이 높은 공무원을 배치하여 일정기간 근무하게 한후 상향 보직이라든지 승진등 우대를 해주는 인사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공무원 교육원이 합리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특별대책이라도 수립하여 교관의 배치와 우대방안등 도지사님의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무 국 장 김홍태	선을 도모하는 등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질문 내용중에 교관요원의 최근 5년간 근무 연수를 물으셨습니다. 평균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입니다. 또한 현직 교관중에서 최장기간 근속자는 2년 6개월을 근속하고 있는 지방전산 기좌 박덕기라고 41세 되는 교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홍근 (당진군)	• 본 도는 서해안 개발과 연결된 새로운 국토개발의 현장지역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으면서 현재 석유화학단지로 가동중에 있는 대산공단을 비롯해서 건설부에서 추진중인 석문공단, 아산공단, 상공부의 인주공단 그리고 장군공단, 한보철강 대	도지사 한청수	• 정부차원에서 청와대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과 건설부, 국토개발원을 통해서 충남북부지역에 부족한 도로, 용수, 항만과 배후도시건설등에 대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부족한 시설들을 제2차 도건설종합계획에 포함시켜서 조기확충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해 가고자 합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홍근 (당진군)	단위 공장들이 정부 각부처의 특성에 따라서 국가 공단은 국가 공단대로 지방공단은 지방공단대로 민간인 업체는 민간인 업체대로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생각이 됩니다. 또 유망 중소기업도 농공단지를 비롯해서 625개의 업체가 유치되었다고 하는 지사의 도정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도 대단위 공단이 가동되서부터 연계적으로 중소기업의 이전입주 신청이 날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본 도의 상황이며 특히 수도권에 인접한 서북부 지역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이 주거환경문제, 교통문제, 산업공해등 제반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산발적으	도지사 한청수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장·단기적으로 추진되거나 추진키로 확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교통·운송에 관해서는 교통·운송체계의 확립을 위한 태안-당진등 주요간선도로의 확·포장 사업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의 조기건설, 천안-장항 및 서산-대전간 고속도로와 장항선 복선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항만사업으로는 아산항만을 비롯해서 보령항 아산항·대천항만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지역의 중요한 문제인 물을 공급하기 위한 근원적인 해결대책으로는 '95년 완공을 목표로 보령댐 건설을 추진중에 있고 다음으로 대청댐과 금강 제2단계 광역상수도 사업과 아산호 개발등을 앞당겨 추진하면 물 문제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 지역에 유입되는 인구의 효과적이고 원활한 수용과 배후지원을 할 신도시건설을 위해서 대산신도시 계획을 이미 금년 10월에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당진배후도시와 장항 배후도시계획도 현재 수립중에 있고 명년중에는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홍근 (당진군)	로 추진되고 있는 공단의 기능을 조정하고 문제점들을 종합해서 분석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능과 지방화시대에 주민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기구가 절실하게 요청되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시점이 있는 것이 오늘의 충남도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조정 관리할 수 있는 본 도의 서해안 개발 종합대책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께서는 분명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한청수	이러한 종합적인 개발투자 조정을 위해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도에서도 저희 도의 인력을 가지고 북부권 개발 계획단을 설치 운영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앙단위의 지원에 의해서 필요한 구조는 앞으로 점차 협의해 가면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 서해안 개발의 상징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서북부권 지역인 아산 인주공단의 피혁, 한보철강, 당진화력, 아산공단, 석문공단의 염색, 그리고 대산공단의 화학등 공해업체가 해안선 직선거리로 아산의 인주공단으로부터 대산공단까지 직선거리를 따져볼 때 불과		• 삽교호로 유입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해서 유입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96년까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환경기초 시설,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천안시에 1일 처리능력 3만톤 규모의 시설을 우선 '92년 하반기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삽교호로 유입되는 주요 하천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홍근 (당진군)	40㎞-50㎞의 범위내에 있습니다. 반경으로 따져서는 20㎞ 남짓한 반경내에 밀집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로 부터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제아무리 공해에 대한 시설을 완벽하게 한다고한들 이러한 공해 업체들이 반경 20㎞내에 집중 피혁, 염색, 화학공장들이 집단적으로 유치된다고 하면 제2의 울산 또는 여천공단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서해안 개발시대에 있어서 충남이 안고 있는 서북부권 중에서 제1차 산업이 상당히 발달돼서 간척지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은 전국에서 제일 큰 농토지역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이고 제2차 제3차 산업이 병행적으로 발달된 이 지역에 이러한 공단들	도지사 한청수	에 559억원을 투입해서 천안을 포함해 2개를 더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 폐수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축사 밀집지역에 128억원을 들여서 축산폐수 공동 처리장을 설치 계획하에 '92년 4월 홍성군에 1일 처리능력 250톤 규모의 처리장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의 완벽한 처리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최근에 방지시설 조치와 연중 상설 감시반을 투입해서 축산폐수가 처리되지 않고 삽교천에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경기초 시설이 완료되면 '96년에 가서는 삽교호 수질오염이 현저히 저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북부지역의 환경감시기구 설치 문제입니다만 이 지역의 석유화학, 금속기계, 정밀화학등이 들어와서 기간산업이 들어오는 것은 국익발전상 또 저희 도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좋은 일입니다만 여기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각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환경감시기구의 설치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홍근 (당진군)	이 집중적으로 배치된다고 할 때 충남 발전을 위해서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하는 점에 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한청수	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서북부 지역에 공업벨트가 조성되고 공장이 가동되면 적절한 시기에 기구설립을 중앙과 적극협의 관철해 가고자 합니다.
	• 의료보호제도는 1979년부터 시행되어서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장의 일환으로 10여년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개선점이 시정되었다고 봅니다. 첫째, 지정의료원의 수도 급증이 돼서 그 증가로 14,000개의 지정의료소가 확충됐습니다. 둘째, 의료보호의 수가가 '90년도 이후 의료보험 숫자와 동일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셋째, 두 제도 모두 정부가 주관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의료보험체계에서 수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넷째, 의료보호 대상자가	보 사 환 경 국 장 이종현	• 의료보호제도는 의료보호나 생활보호법의 근거에 의해서 생계유지 능력이 없는 자에게 소득상태에 따라서 1종, 2종 의료구조로 구분해서 국가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운영주체가 국가고 본인 진료비 부담이 거의 없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의료보험제도는 의료보험법에 의거해서 전국민 개보험에 따라서 주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와 또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서 진료비에 충당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주체가 바로 보험조합이고 또 진료비 본인부담이 그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상황으로 볼 때 의료보호와 의료보험제도는 통합운영이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법 체제나 저소득층의 생활여건으로 볼 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홍근 (당진군)	심리적인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의료보험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 행정적으로 운영상의 사후관리가 동일한 점으로 볼 때 통합 운영함으로써 지방화 시대, 민주화 시대를 맞이하는 차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동안 극빈자라고 하는 인격적 차별대우와 같은 동기의식을 불식하고 환자의 위화감을 해소시키고 정신적인 소외감으로 부터 해방을 시켜서 의료 진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늘진 곳으로 부터 밝고 명랑한 복지 구현을 위해서는 앞서가는 보건행정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본 도에서 본 제도의 통합관리에 대한 정책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 사 환 경 국 장 이종현	단 됩니다만 앞으로 운영을 더 해가면서 이 운영이 정착되면 적당한 시기에 통합운영 문제를 적극 검토해서 그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준 (서산시)	• 우리 도내에 도시형태를 갖추어 가는 5개 시청의 도	내무국장 김흥태	• 먼저 시·군의 건축행정 기구 증설문제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지방시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갑준 (서산시)	시행정 전담조직을 살펴보면 천안시의 경우는 주택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개 시청의 경우는 도시과내 건축계에 3-4명이 건축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화 추세 및 서해안 개발시대의 개막으로 엄청난 주택수요와 이에 따른 각종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시점에서 건축 전담 부서를 시급히 설치하지 않으면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뿐더러 건축 질서를 문란시켜 불법행위가 판을 치는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써 현재 천안시를 제외한 4개 시지역 및 서산군, 논산군, 예산군 지역의 민원접수 건수 50,179중 건축민원이 11,551건으로써 전체민원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군 도시과 민원처리	내 무 국 장 김흥태	대가 도래하면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지방행정 기구 직제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우선 1차적으로 7월 15일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서 행정여건이 크게 변화된 분야의 도 기구와 일부 직제를 개편한 바 있습니다. 한편으로 시·군 기구와 직제도 내년도 상반기중에 정밀 조직 진단을 실시해서 도 기구와 직제의 연계성과 행정 수요의 증감 취지나 행정여건 변화등을 고려해서 이들의 보완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기구 직제 계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의 주택과 신설과 군의 도시과의 건축지도계 설치문제 그리고 기술직들을 각 군에 6급 2명씩을 추가 배치해 달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시·군 기구 개편시에 심도있게 조치하겠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갑준 (서산군)	사항중 60%이상이 건축 행정에 대한 민원입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주민편의 및 폭주하는 행정수요에 능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4개 시청에 주택과를 신설하고, 타 군지역 도시과내에 건축 지도계를 설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도지사 권한으로 할 수 있는 6급 이하의 직급을 전직, 조정 건축직으로 환원해서 시·군당 최소한 건축직 2명씩을 증원시켜 원활한 건축행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 시청의 수도과장이 행정 또는 토목의 복수직으로 되어 있어 서산 시청의 경우는 토목직으로 보직된 반면 공주, 대천, 온양 시청이 경우는 행정직으로 보직되어 있습니다. 시·군의 도시과장도 공주, 대천, 온양, 서산시 연기, 논산, 서산군, 홍성, 보	내무국장 김흥태	• 실제로 도시과장은 도시계획과 주택조성, 산업구조등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관장하는 이외에 토지수용이나 토지 매수 그리고 보상업무와 주택 사용관리, 토지거래 규제업무와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등 일반 행정사무도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과장도 상수도 사업 설계와 시공, 시설 유지관리와 상수도 수원지 개발등 기술 사무 이외에 상수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갑준 (서산시)	령, 태안군은 토목직으로, 금산, 공주, 부여, 서천, 예산, 당진, 아산, 천안군은 행정직으로 보직을 준 것은 행정직 공무원을 우대하고 기술직 공무원을 홀대하려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예측이 가능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전례 답습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려는 도지사 이하 간부들의 그릇된 사고에서 기인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법 한페이지 읽어 보지도 않은 사람보고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집행하라고 하니 본인도 답답한 노릇이고 옆에서 보는 주민들도 답답하게 생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렇게 불합리한 보직관리 문제에 대하여 구상하고 계신 향후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무 국 장 김흥태	도 특별세 운영과 사용료 부가 징수와 같은 일반 행정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보직 운영에 있어서는 업무의 중요성 확보를 위해서 시·군 도시 수도과장 25명 중에서 토목직으로 14명, 행정직으로 11명을 배치해서 기술직 우선 임용순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한 지난 7월 30일자로 6급인 도시과 도시계장을 행정 단순직에서 행정 또는 토목 복수직으로 조정했음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복수정원은 이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서 행정 추진에 유리한 방향으로 인사를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아산항에 모래 적치장을 설치할 경우 태풍과 해일로 인한 인근 지역의 피해	건 설 도 시 국 장 정진홍	• 아산항 건설계획에서 충남지역에 설치되는 항만 선좌의 규모는 현재 아산산업기지개발사업의 아산항 건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갑준 (서산시)	또는 주변지역의 공해 문제에 대한 사전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당초 계획에 의한 변경된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정확한 톤수에 의한 경기, 충남의 선좌 배치 계획은 어떠한지? 또한, 800여만톤의 모래를 운반 하려면 매일 15덤프트럭으로 3천여대로 이에 대한 교통 소통의 문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이 아산항과 더불어 아산호, 금강하구둑 이 세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묘하게도 경기도와 경계 전라도 전북의 군산과 경계에 있습니다. 이 항구에 가장 지역적으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선좌의 배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산항의 경우 이 선좌가 거의 경기도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산호 역시 배수갑문의 위치가 그 지역의 발전 여부를 결정지어 주는데 아산	건 설 도 시 국 장 정진홍	설계획이 수도권항만인 인천항의 처리능력 부족과 경인간 교통 정체 현상이 심각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건설하는 항만공사로써 총 17개 선좌를 설치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15개 선좌는 지하산업 전면과 경기도 포승면 포승리에 설치되고 나머지 2개 선좌는 저희 관내인 고대부곡공단 지역에 철강 전용 부두로서 2개 선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그 외에 사항을 한가지 보고드리면 같은 당진 서안지역에 석문공단 근접지에 4개 선좌의 부두가 설치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사업도 사전 협의 되는지 여부와 협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당해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사업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도지사는 당해 시장, 군수의 의견과 도의 의견을 종합 제시하는 방법으로 중앙관계 부처와 협의하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갑준 (서산시)	호의 배수갑문은 경기도에 위치해 있고 금강 하구둑 배수갑문은 전북 군산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민 전체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당초 설계나 현장조사시부터 우리 도민이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이 배수갑문의 위치를 우리 도내 지역에 끌어 들였어야 함에도 오늘까지 우리는 정신을 못차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점을 감안해서 도지사 이하 우리 전 의원, 도민 전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충남의 새 건설에 이바지 해 주실 것을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건 설 도 시 국 장 정진홍	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산항 모래 적치장 위치와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모래 적치부두 설치는 항만청에서 시행하는데 항로 준설시에 발생되는 모래를 경기도 남양만 전면에 부두를 설치해서 적출했다가 아산공단 건설시 매립토로 사용하고 양질의 모래는 건설자재로 서울, 경기등지에 반출할 계획으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래 적치장 설치시 공해 문제에 대한 사전 평가 여부에 관한 문제는 모래적치장이 경기도측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충남 지역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행전 공해문제 등은 환경처가 사전평가 및 협의를 관계 도와 협의해서 추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윤 (태안군)	• 천수만A · B지구 간척공사로 인한 어민피해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간척공사로 인한 피해로 생활의 터전을 잃고 극심한 생활고에 허덕이는 태안군, 홍성군, 보령군에 거주하는	도지사 한청수	• 서산 A · B지구 내측과 외측 피해어민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산 A · B지구 어업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지난 '82년부터 '83년까지 매립내측에 어업권자 그리고 어선 업자 등 1,182세대에서 14억 4,600만원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박동윤 (태안군)	5천7백여 피해어민들과 원만한 보상관련합의를 조건부로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기간 연장 허가 및 면허조건 변경"을 농림수산부가 내주며 현대측과 어민들간의 시한까지 정해놓고 합의를 유도하였으나, 정부의 특혜를 받고 성장해 온 국내 최대 재벌 기업이 정부에 정면 도전하겠다는 의도아래 이제와서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해 놓고 충청도 순박한 농어민을 우롱하고 있는데, 과연 충남도지사는 어떻게 해 왔는가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볼 때 현대측의 이 처사는 국세청 세금추징에 따른 화풀이를 힘없는 천수만 어민들에게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기업의 윤리관을 상실한 추태로 총선을 앞두고 사회혼란 사태를 유발시키는 작태이기에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3개군 천수만 피해어민들	도지사 한청수	의 보상금과 매립외측의 김, 생물 및 어장가치 일부 피해와 낭장망등 1,687세대에 73억 1천5백만원을 포함, 총 87억6천1백만원을 어민과 협의 보상한 바 있습니다. '87년도 부터 매립내측 주민 5,700여세대가 자연산어장 상실에 대한 보상금 796억원과 매립외측 어민 1,687세대가 김 양식장 가치상실에 대한 어업권수용 보상금으로 480억원 등 총 1,276억원을 추가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수차례의 진정과 국회에 청원까지 하면서 금년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농촌수산부에서는 '91년 9월 20일 현대건설에 매립 면허기간연장 허가를 하면서 면허조건을 일부 변경하고 새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들의 요구를 부분적으로라도 수용하는 보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매립내측은 무허가, 무신고 어민에 대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여 보상토록 하고 매립내측은 새로운 피해등 합의시 예측지 못한 사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는 당사자간 합의하여 해결토록 조건을 붙였고 매립지 배분은 농촌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박동윤 (태안군)	이 개최한 오늘 서산시 궐기대회장에서 생존권 차원에서 최후의 혈전도 불사할 것을 결의하는 한맺힌 절규에, 행정집행부가 긍정적인 자세로 귀 기울일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도지사 한청수	매립지 일부를 피해 농어민에게 우선 매각토록 조건을 붙여 현장 허가를 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매립내측에 대해서는 무면허, 무신고 보상지침을 수립해서 해당시·군에 시달해서 보상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일부 불만을 표시하는 어민도 계십니다마는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91년 8월에 발생한 안면도지역 패류집단 폐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농업 재해 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와 제3조를 보면 이상조류와 적조현상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재해로 인정되어 최소한이라도 피해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패류 집단 피해는 당연히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령에 의거 정당한 재해로 될		• 지난 8월에 천수만지역 패류 집단폐사에 대해서 행정당국의 업무 소홀로 인해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대천수산연구소의 2차에 걸친 조사결과 기온 및 일사량의 담수호 방류로 인한 염분농도 저하등 복합적인 요인이므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이 불가능하게 된 것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피해어민들의 생계 보호를 위해 보건사회부에 취로사업비 그리고 특별배정과 수산청에 각종 지원 사업을 시행해 줄 것을 건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박동윤 (태안군)	수 있었음에도 행정당국의 업무소홀로 인하여 재해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되며 이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엄동설한이 다가오는 이때에 과연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영세어민을 구제할 것인지 그 생계대책 방법과 시기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지사 한청수	의 하고 있습니다. 관할 군에 피해실태 조사 및 대책을 수립토록 지시한 바 있고 조사중에 있어서 조사가 완료 되는 대로 관계법령 및 규정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우리 충청도내의 각 시·군에는 도유지를 장기간 임대 경작하는 농가가 현재 상당수 많이 있고 그간 도에서는 '86년도까지 잡종재산 임대지를 계속 불하해 왔었으나, '86년 이후부터 전면 중단한 이유는 그 지역의 관광개발계획 때문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관광개발계획이 완료된 지역은 그동안 불하를 기대하며 상승된 임대료를 계속 납부해 온 장기 임대경작자에게는 마땅히 35.8%에 머물고 있는 빈약한 도의 재정자립도 실정에	농 림 수 산 국 장 유덕현	• 태안, 안면도내의 도유임야는 총 1,726필지에 4,268ha이며 도유임야가 형질변경되어 전, 답, 대지화된 토지는 전이 655평에 116ha, 대지가 152ha에 6ha 총 383건에 132ha입니다. 도유임야는 행정재산으로 지방재정법 82조 및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처분을 제한하고 있을뿐 아니라 정부의 공유재산 확대실시에 따라 앞으로 계속 도유임야를 확대해 나가야 할 현시점에서 연고자에게 사용허가외의 불하는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야쿠르트등 대기업에는 도유림 사용료가 저렴하게 책정된 기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박동윤 (태안군)	비추어 볼때 불하해야 옳지 않는가 묻고 싶습니다. 실예로 보면 태안군 안면도 지역은 1,330필지 1천세대가 장기 임대해 경작하고 있는데, 사용료 부담이 토지등급 재평가 사정으로 상승되어 있고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부담이 되는 실정인 반면 두산그룹, 한국야쿠르트등 대기업에게는 우리 농가가 임대료를 물고 있는 1/5의 임대료를 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에게는 도유림 사용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가격이 책정된 산출기준은 무엇인지 비교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 림 수 산 국 장 유덕현	준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한국야쿠르트와 두산에 도유림사용을 허가한 것은 초지용도로서 초지에 대한 사용료 산정은 초지법에 근거 매5년을 단위로 하여 미간 임야 가격의 1/100을 기준으로 하고 기타 농경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매1년을 단위로 농지소득 금액이 150/1000 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25/1000중 저렴한 금액으로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산정의 법적 근거 및 방법과 사용료 부과기준 연도를 각기 달리하므로 다소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재갑 (부여군)	• 백제문화 실체의 창출 사업이자 우리 충남의 상징사업인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지정 종합개발계획' 추진에 대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동 사업계획 수립의 추진 배경과 그 동안의 추	도지사 한청수	• 그동안 우리 충남은 찬란했던 백제문화를 갖고 있고 또 민족 문화의 정수를 간직한 유서깊은 고장입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문화 유산과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 고장에 사는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기본인식을 가지고 충남문화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유재갑 (부여군)	진경위, 그리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시설들이 도입될 계획으로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시설 입지와 관련하여 지역과 주민간에 다소의 갈등도 예상되는데,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도의회에 용역내용에 대한 심의를 부의하고, 주민공청회등을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이같이 방대한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방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지사께서는 「백제의 집」 건설, 「고란사의 복원」 등 백제의 문화, 유적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조명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데에도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지난 '79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백제문화유적	도지사 한청수	의 창조적인 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이 사업계획 수립의 추진 배경과 경위를 말씀하셨는데 종래에는 예산 사정에 의해서 문화유적에 대해서 종합 발굴 정비차원에서 산발적으로 문화권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백제문화의 정수와 실체를 민족문화로 복원 재건시키기 위해서 문화 유적, 관광, 문화체계 등을 종합개발해서 명실상부한 백제문화의 상징적인 중심지로 또는 산물로 집중 개발하기 위해서 백제문화권 특정 지역지정 종합개발 계획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89년부터 건설해서 여기에 따른 용역비 10억원을 확보해서 건설부에서는 국토개발연구원을 통해서 기본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삼안건설기술공사를 통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해서 현재 과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추진한 조사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모든 면에서 우리 백제문화권이 경주권에 손색이 없도록 그리고 나중난 불이 거세다는 경험에 실증이 되도록 민족 문화사업을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유재갑 (부여군)	정비복원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그동안 어려운 도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도비를 적극 지원하면서, 문화부에도 집요하게 건의하여 투자되도록 함으로써 공주「공산성 백제마을」조성,「정림사지 정비」등 여러 곳에서 백제문화의 진면목과 실체를 확인 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지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고자 하는 사항은 문화부 관계관의 얘기에 의하면, "백제문화권 정비 사업은 '92년 수준에서 일단 마무리 짓고 '93년 이후 부터는 개별사업단위로 지원해 나갈 계획" 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사업기간을 설정하여 종합적으로 다룰때와는 달리 국고보조가 현저하게 줄어둘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도지사께서는 사업기간을 '95년까지 연장하여 투자규모를 확대하도록 문화부에 적극적으	도지사 한청수	알차게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 과정에서도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관계되는 전문가와 수시로 공청회도 해서 최종계획을 확정시켜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유재갑 (부여군)	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 찬란했던 백제문화와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도민들의 정신적 구심점으로 삼아 올바른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고 나아가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하된 사명이 아닌가 여겨지는데 이를 위한 범도민 정신운동을 발전시켜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관주도 보다는 자생적인 순수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도층으로부터 범도민적 운동으로 확산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지사 한청수	• 다음으로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백제문화 유산중 유형적인 못지 않게 소중하고 값진 재산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정신적 유산이 있는데 이것을 도민정신으로 뿌리 내리도록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 현상과 관련해서 비추어 볼 때 적절하신 지적으로 본인 또한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전통적인 우리 고장에 문화정신을 살려서 도민들의 새로운 정신적 구심점으로 삼기 위해서 충남의 대표적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충효정신, 절의정신, 선비정신, 예의정신, 끈기와 개척정신을 도민들의 생활속에 깊이 뿌리 내릴수 있도록 이런 정신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지난 11월 18일자 중도일보 1면 톱기사로 천안역세권개발, 서해안지역의 철도신설, 신규 용수원 개발, 섬 해안지역 실태조사에 의한 해양개발, 도시지역 문	내 무 국 장 김홍태	• 문화예술공간 배가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문화의 운영 발전과 지역주민의 균등한 문화 혜택을 위해서는 시·군별로 종합 문화회관 건립이 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유재갑 (부여군)	화예술공간 배가확충운동 전개등 자랑스런 충남건설을 위한 다섯가지 선도사업을 타당성을 검증한 후 확정추진키로 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문화예술공간 배가확충운동」은 매우 바람직한 착상으로 여겨지면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충남은 전통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깊은 사랑과 욕구가 강한 도민성향을 간직해 오고 있으나 그 공간은 매우 부족한 실정인데다 특히, 그동안 대전지역에 집중배치, 운영되어 오던중 '89년 대전 직할시 승격 분리로 전국 어느 도보다도 그 취약성이 더해가고 있는 실정으로 도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정서가 충분히 함양되지 못하고 있어 본의원은 늘 안타깝게 여겨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하고도 이번에 도에서 획기적인 인식전환과 함께 과감한 투자	내 무 국 장 김흥태	우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저희 도내에서는 종합문예회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천안등 10개소가 건립되어 있고 5개소는 현재 건립중에 있고 그 외에 중심도시가 시로 분리 승격된 공주군등 소도시에 7개소는 아직 문화회관이 건립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종합문예회관 건립은 대략 작게는 20억, 60억이 소요되는 큰 사업으로서 지금까지는 시민회관이나 문화회관등 지역실정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건립 계획들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문화회관이 아직 건립되지 못한 시·군부터 우선 회관 건립을 추진하되 현재 시민회관이나 청소년회관등 다양한 용도로 건립되고 있는 시설일지라도 언제든지 지역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융통성있게 시설들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유재갑 (부여군)	계획을 구상한데 대하여 크게 고무되면서 계획으로만 끝나지 않고 착실한 추진으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하는 사항은 보다 구체적인 확충 수단과 방법은 무엇인지를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第8節 第61回 臨時會

Ⅰ. 槪 況

1. 開會背景

○ 제61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조례안 제정과 개정, 9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도 의회 소집 요구가 있어 92년 1월 14일 집회공고를 실시하고 92년 1월 22일 14:00에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회기 : '92. 1. 22 ~ 1. 25 (4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2. 1. 22(수) 14:00	본 회 의 (제 1 차)	1. 제61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92년도충청남도주요업무계획보고 3. '92년도충청남도교육청기본업무계획보고	
'92. 1. 23(목) 10:00	농림수산 위 원 회	1. '92년도충청남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농어촌개발국 소관 나. 농림수산국 소관 다. 농촌진흥원 소관	
11:00	운영위원회	1. 회기결정 협의의 건 2. 충청남도의회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3. 1992년도 충청남도의회주요업무계획보고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2.1.23(목) 10 : 00	내무위원회	1.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안 2. 충청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3. 충청남도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안 4.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1992년도충청남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내무국 소관 나. 기획관리실 소관 다. 재무국 소관	
10 : 00	건설위원회	1. 1992년도충청남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나. 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 다. 건설도시국 소관 2. 충청남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지방건설업체보호육성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 건의안	
14 : 00	문교사회 위 원 회	1. 충청남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2. 1992년도충청남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보사환경국 소관 나. 가정복지국 소관	
14 : 00	지역경제 위 원 회	1. '92년도충청남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지역경제국 소관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2.1.24(금) 14 : 00	내무위원회	1. 1992년도충청남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재무국 소관 나. 민방위국 소관 다. 공보관실 소관 라.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마. 계룡출장소 소관	
14 : 00	문교사회 위 원 회	1. 충청남도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2년도충청남도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가. 담당관실, 과, 관리국 소관 나. 초등교육국 소관 다. 중등교육국 소관	
'92.1.25(토) 11 : 00	본 회 의 (제 2 차)	1.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안 2. 충청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3. 충청남도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안 4.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8. 충청남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남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0. 충청남도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지방건설업체보호육성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 건의안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수	안 건	비 고
계	15		
조 례 안	10	1.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건 의 안	1	1. 지방건설업체보호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건의안	
기 타	4	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2. 제61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3. 1992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4. 199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본업무 계획 보고	

4. 條例案 處理內譯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66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안	도지사 ('92.1.9)	내무	○광역소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체제 정비 ○의용소방대 운영의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제도적인 미비점 보완 ○소방서 설치시의 조례와 군지역의 조례를 통합, 단일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92. 1.25	'92. 1.27	원안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67	충청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도지사 ('92.1.9)	내무	○광역 소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의용소방대 운영체제 정비 ○의용소방대 운영의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제도적인 미비점 보완 ○소방서 설치시의 조례와 군지역의 조례를 통합, 단일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92. 1.25	'92. 1.27	원안
69	충청남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	교육사회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장학혜택 확대로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저소득층의 생활보호로 차세대에 대한 영세민 세습방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	수정
71	충청남도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도지사 ('92.1.15)	내무	○국가유공자단체는 현재 지방세과세면제대상이나 계속 감면의 필요상 금번시행령 개정시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로 전환하였음. ○현행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가 고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일 뿐만 아니라	〃	〃	원안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금번 시행령 개정시 의료업, 부동산 임대업등 수익사업을 과세로 전환하였으나, ○국가유공자단체는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업등 수익사업을 통해 단체운영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도 지방세를 면제받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측면에서 계속 감면조치 필요하다 하겠음.			
33	충청남도의회 사무국의설치 및사무직원의 정수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92.1.9)	내무	○1991.12.31 지방자치법의 개정(법률 제4464호)으로 의회사무국이 의회사무처로 변경되어 조례제명및내용의 변경과, 의회사무처의 운영위원회 및 예결위원회 전담전문위원을 보강하고 이에 따른 사무처리 요원과 의장 또는 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조사 전담 지원인력등 사무직원을 보강하여 의회운영에 원활을 기하려는 것임	'92. 1.25	'92. 1.27	원안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64	충청남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92.1.9)	내무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 1991.6.19) 및 동시행규칙(총리령 제395호 1991.9.30)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공인조례를 수정 보완하는데 있음	'92. 1.25	'92. 1.27	원안
65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	○'90.11.6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의 개정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농지등 제외)의 대부료 산출기준이 종전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바뀜에 따라 대지등의 대부료가 사실상 50~1,000%이상 인상되어 민원이 야기된 바 있음. ○따라서 금번 개정은 과다하게 인상된 대부료를 10~30% 정도로 완화하려는 특례조항으로 내무부에서 개정준칙을 작성하여 전국적으로 시달한 사항임	〃	〃	〃
68	충청남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	○건축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 12906호('90.1.18) 및 제13055호('90.7.16)로 개	〃	〃	〃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정 공포됨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된 조경공사비의 예탁, 건축물 유지관리상태 제출기간, 도시설계 구역안의 건축기준 완화, 오피스텔 건축가능구역 지정 및 건축기준, 아파트형공장의 건축규모등을 개정조례에 신설코자 하며 계룡출장소를 포함한 논산군을 개별조례 운영 군으로 지정하여 개정코자 함			
70	충청남도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감 ('92.1.9)	문교사회	○충청남도교원연수원설치조례의 목적에 교육대상이 교육공무원과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대상이 포괄적이지 못하므로 이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교육전문직, 기능직공무원을 포함시켜 공·사립간 교직의 동질성과 소속감을 고취하고 ○2부1과로 구성된 하부조직을 연수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직제상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총무과를 총무부로 조직의 명칭	'92. 1.25	'92. 1.27	원안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을 변경하여 3부로 조정하고자 함			
72	충청남도의회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趙日東 의원외 14인 ('92.1.18)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 1991.6.19) 및 동시행규칙(총리령 제395호 1991.9.30의 제정과 1991.12.31 법률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이 공포되어 지방의회사무국의 직위명칭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공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92. 1.25	'92. 1.27	원안

第9節 第62回 臨時會

Ⅰ. 槪 況

1. 開會背景

○ 제6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조례안 제정과 개정, 폐지안 등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도 의회 소집요구가 있어 92년 3월 30일 집회공고를 실시하고 92년 4월 7일 14:00에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회기 : '92. 4. 7 ~ 4. 10 (4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2. 4. 7(화) 14:00	본 회 의 (제 1 차)	1. 제62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도지사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5:50	내무위원회	1. 충청남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2.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2. 4. 7(화) 15 : 50	내무위원회	7. 충청남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남도크레인자동차관리및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10. 충청남도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공시의건	
15 : 00	문교사회위원회	1.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 : 00	건설위원회	1. 보령댐건설사업소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92. 4. 10(금) 14 : 00	본 회 의 (제 2 차)	1. 충청남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2.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남도크레인자동차관리및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9. 충청남도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공시의건 10.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도정에관한질문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2.4.2(목) 13 : 00	운영위원회	1. 제6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 건 2.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 조례안 3. 충청남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 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협의의 건 5. 충청남도의회회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협의의 건 6. 충청남도의회회의발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협의의 건 7. 충청남도의회휘장규정협의의 건 8. 충청남도의회회의장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협의의 건 9. 충청남도의회포상규정협의의 건 10. 충청남도의회의원상호경조규약협의의 건	비 회기중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수	안 건	비 고
계	18		
조 례 안	13	1.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동일승인안	1	1. 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 고시의 건	
기 타	4	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2. 제62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3.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도정에 관한 질문	

4. 條例案 處理內譯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74	충청남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도지사 ('92.3.7)	내무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충청남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	'92. 4.10	'92. 4.13	수정
76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감 ('92.3.12)	문교사회	○'90.11.6 지방재정시행령 제92조의 개정으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농지등 제외)의 대부료 산출기준이 종전의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바뀜에 따라 대지등의 대부료가 사실상 50-1,000%이상 인상되어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금번 개정은 과다하게 인상된 대부료를 10-30%정도로 완화하려는 특례조항으로 교육부에서 개정준칙을 작성하여 전국적으로 시달한 사항이며 국유재산법도 개정('91.12.31)하여 시행하고 있음	〃	〃	원안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77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92.3.27)	내무	○도·소매업진흥법(법률 제4380호 1991.5.31)이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 소매점의 종류 및 개설허가 기준이 변경되어 개정된 법에 부합되도록 위임사무를 개정하고,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관광지내에서 관광지조성사업시행자는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바, 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있는 징수대상시설의 범위와 금액결정권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92. 4.10	'92. 4.13	원안
78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	〃	○지방세법개정으로 지역개발세가 도세와 목적세로 신설됨 ○지역개발세 부과대상이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등 4종중 우리도는 지하수(온천수)뿐이 였으나 ○광물시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하자원(광물)이 생산되고 있어 이를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	〃	〃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지하수인 온천수 부과대상 지역이 온양시, 공주군, 예산군, 아산군등으로 제한한바 있으나 운용상 불합리하여 이를 "도내일원"으로 개정코자함			
79	충청남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92.3.27)	내무	○본조례는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취락구조개선사업 계획에 따른 건축물 또는 토지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하여는 세제 혜택이 없어 현지 지역주민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본조례를 개정하여 평등하게 세제혜택을 주고자 함	'92. 4.10	'92. 4.13	원안
80	충청남도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본 조례는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한 공업, 항공, 농업계통의 사립학교가 학생의 실험, 실습용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등	〃	〃	〃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해양계통 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인 선박에 대하여는 도세과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81	충청남도지방세입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92.3.27)	내무	○부결이유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세무수당 이외의 포상금을 지급함은 타 공무원과의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은 부결시키는 것임			부결
82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지방의회의 구성운영과 더불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 보완하여 능률적인 결산업무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92. 4.10	'92. 4.13	수정
83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	○현행 충청남도 물품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거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각실과 담	〃	〃	원안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당자가 이를 잘못 해석하거나 모르고 매입하여 관련장부에 등기가 누락되어 초과물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같은 조례 제11조의2에 의거 중요 물품은 현행 단가 50만원 이상 물품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과 물품이 고급화에 따라 점점 관리대상 수가 늘어나고 있고 정수관리대상 물품과는 별도로 관리가 되는등 물품 관리가 불필요하게 복잡하여져 중요물품을 정수물품과 일치시켜 물품 관리업무를 단순화하기 위함			
84	충청남도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92.3.27)	지역 경제	○ 철회사유 • 철회요구〈기획 01600~156('92.4.3)〉: 충청남도 • 철회통보〈의사 01600~108('92.4.6)〉: 의회사무국			철회
86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趙吉衍의 원외10인 ('92.3.30)	의회 운영	○ 상임위원회는 각종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을 심사하는 위원회로서 그 소관	'92. 4. 7	'92. 4. 7	원안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에 누락된 도 출장소와 실·국의 지도 감독을 받지 않는 사업소중 공영개발사업단과 보령댐 건설사업소를 내무위원회와 건설위원회와 소관에 삽입하고자 하며, ○ 지방자치법(법률 제4464호, '91.12.31)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처"로 기구명칭을 변경하고 ○ 중앙부처인 교육부명칭에 부합되도록 " 문교, 사회위원회"를 "교육, 사회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여 보완코자 함			
87	충청남도의회 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趙吉衍 의원외 10인 ('92.3.30)	의회 운영	○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의원의 여비지급 규정이 개정되어 회기중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시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추가되므로써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함.	'92. 4. 7	'92. 4. 7	원안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75	충청남도크레인자동차관리및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도지사 ('92.3.10)	내무	○충청남도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긴급 구조용으로 보유하고 있던 크레인자동차 1대는 1970년 10월 27일 재일동포 이내옥으로부터 기증받아 운영하던중 그후 성능이 우수한 민간보유 크레인자동차의 보유가 증가되어 민간으로부터 사용신청이 차차 감소하고 도본청에서는 사용처가 없어 동차량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함.	'92. 4.10	'92. 4.13	원안

5. 第62回 臨時會 道政 및 敎育行政에 關한 質問 · 答辯要旨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전용설 (홍성군)	• 먼저 농촌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타개해 나갈 수 있는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아무리 계획이 알차고 규모가 방대하다 하여도 지금과 같이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불신하고 있는 마당에서는 정책의 실현성을 기대할 수가 어렵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지방정책의 입장에서 이러한 의욕적인 계획이 성공리에 마무리 지어질 수 있는 대농민 정책을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농어민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방안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종국	• 첫째로, 농어촌구조개선대책 사업의 실효성 문제와 관련해서 도의 입장에서 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질 수 있는 대농민정책과 신뢰제고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일부 농어민이 불신감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로써 그동안 농업분야에 대한 많은 정부지원과 정책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어민들 사이에서 불신이 일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정책내용과 비젼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부족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본인은 도정의 기조를 농어촌 활력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해 나갈 방침이며, 연내에 도와 시 · 군별로 농어촌발전기획단을 구성하고 중장기 농어촌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을 심어주는 농어촌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둘째로, 향후 10년간 42조원의 사업비를 지방비와 자부담을 제외한 재정 투 · 융자 규모가 35조원에 이르		• 두번째로, 농어촌구조개선과 관련된 정부재정사업을 우리 도에 대대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전용설 (홍성군)	는데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후된 우리 충남지역에 정부재정 투·융자 사업을 대대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대책은 세우고 계신지, 있다면 그 내용과 규모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종국	농어촌구조개선과 관련해서 정부재정사업이 우리 도에 보다 많이 투자되도록 중앙과 긴밀히 협의 노력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 도의 농어촌실상과 개발여건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여 농어촌구조가 개선되고 경제가 활력화되며, 지역간의 균형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우리 도와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찾아내서 정부계획과 직접 연결 시키는데 촛점을 맞춰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정부사업과 도의 자체사업이 서로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조화를 기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협조 노력을 기울이므로써 전용설의원님께서 강조하신대로 보다 많은 사업이 우리 도에 지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셋째로, 농어촌 기반시설을 비롯하여 구조개선사업과 관련된 투·융자 사업비가 작년보다 전국평균 53%가 증가한 것으로 본의원은		• 세번째로, 농어촌의 기반시책을 비롯해서 구조개선사업과 관련된 금년도 우리 도의 투·융자 사업비, 경작규모와 향후 대책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전용설 (홍성군)	알고 있는데, 우리 도의 사업비 증가규모는 얼마이며,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물의 수입 개방화에 대비하여 경쟁적인 면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작목은 무엇 무엇이며, 이의 발굴육성 방안과 지원방법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종국	올해 우리 도지역에서 농어촌 분야에 투·융자 되는 사업비는 총 9,833억여원으로써 지난해에 비해서 44%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기관별로 보면 도와 시·군의 농정관련 사업비가 4,004억원이고, 농·수·축협등 유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5,829억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보면 농업생산기반정비, 농업기계화, 농수산물 유통가공등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에 2,600억원입니다. 앞으로도 중앙계획과 연계를 해서 농어촌구조개선대책 사업을 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촌 활력 증대에 중점을 두고 상품성 향상을 위한 기술혁신과 품질경쟁체제로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생산성과 능률성 그리고 소득신장을 위한 시책에 집중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서해바다와 접해 있는 우리 충남의 서부지역은 서해안 고속도로개통과 함께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 서해안시대의 중심축으로 주도적 역할을 기대할		• 우리도의 서해안개발사업은 2001년까지 34건에 6조7천억원을 투입하여야 하는 국가적 차원의 장기개발사업으로써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전준비단계를 거쳐 본격 추진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전용설 (홍성군)	수 있도록 서부지역발전계획이 이미 수립되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계획을 유도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차원에서 서부지역출신 국회의원들과 도의원을 중심으로 한 가칭「충남서부지역개발협의회」와 같은 조직을 구성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종국.	특히 서해안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서해안개발사업의 상징적 사업으로써 충남관내 130㎞중 이미 작년에 당진 I·C공사를 착공한데 이어서 금년에는 서천군산간 일부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같은 개발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중앙에는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도에는 개발기획 전담부서인 개발담당관실과 북부권 개발기획단을 설치, 운영하는등 광역개발 행정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다음은 농촌지역의 농지 및 토지거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농지거래에 적용되고 있는 농지매매 증명제도는 당초에는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소유 상한제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으나, 근년에는 부동산투기의 주목적으로 되어 있어 결국 농지거래를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농지거래를 자	농어촌 개 발 국 장 강희복	• 비농민은 임의로 농지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농지의 실수요자가 아니거나 투기성을 띤 농지거래가 줄어들면서 지가도 보합세를 유지함에 따라서 일부 농민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거래를 자율화할 경우에 부동산투기가 재현될 우려가 있고, 또 물가 안정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율화하기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농지의 거래에 따른 영향을 시간을 두고 보아가면서 결정할 문제이고, 다만 저희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전용설 (홍성군)	율화시키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중앙정책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보완책으로 임차농업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기를 억제하면서 농민이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대처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강희복	도에서는 농어촌개발특별지시법에 따라서 토지 이용도를 높이고 농민의 토지거래를 활성화하고자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절대농지 660㎡, 상대농지 1,500㎡의 면적까지, 그리고 도지사는 절대농지 3만㎡, 상대농지 30만㎡까지 농지 전용이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에게 대폭 권한이 위임되어 있어 저희 충청남도에서는 공해문제와 집단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농지전용허가를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끝으로 요즈음 충남 천수만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서산 AB지구의 간척사업 때문에 생계의 터전을 잃었다고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해결을 못보고 있는 실정에서 작업을 전환하고자 하나, 천수만에 접한 지역 뿐만아니라 원거리에 있는 지역까지 국토이용 계획상 수자원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의 이용이 규제당하므로서 생계의 터전을 잃은 어민이나 인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 천수만은 계속 보존지역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자원보존지역 지정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 효율적인 보존을 위해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수만의 수산자원 보존지역은 천수만을 둘러싸고 있는 홍성군을 포함한 서산군, 태안군, 보령군등에 대해서 육상과 해면을 포함해서 총 243㎢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수만은 지역 여건상 지적하신대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전용설 (홍성군)	근 농가들에게 이중적인 손해를 주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도지사의 소견을 묻고자 합니다. 충남 서해안의 천수만은 그 여건이 천혜적 수자원의 보고로서 어족의 산란지역으로서 고기들의 서식처였으나, 서산AB지구가 매립되면서 산란지역으로서는 부족할 뿐만아니라 서산AB지구 간척지의 담수호에 담아있던 썩은 물을 배출할시는 천수만일대가 오염되어 그나마 남아있는 어장에 피해가 막심한데 이곳을 구태여 수자원 보호지역으로 지정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도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 림 수 산 국 장 유덕현	로 과거에는 서산AB지구의 매립사업으로 인해서 해양 생태계의 변화와 수질오염등의 영향으로 인접한 어장에 피해가 우려되었으나 현재에는 생태계가 정착되어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인근 140여개소의 어장 즉, 4,460핵타의 어장과 자연산 어패류의 보호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판단되어서 계속 존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第10節 第63回 臨時會

Ⅰ. 概 況

1. 開會背景

○ 제6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1992년도 충청남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 제, 개정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2년 5월 25일 집회공고를 실시하고 92년 6월 2일 14:00에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회기 : '92. 6. 2 ~ 6. 11 (10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2. 6. 2(화) 14 : 00	본 회 의 (제 1 차)	1. 제63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1991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 건 4. 도지사 · 교육감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1992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6. 1992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5 : 30	내무위원회	1. 자료제출요구의 건	
15 : 40	농림수산 위 원 회	1. 충청남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자료제출요구의 건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2. 6. 2(화) 15 : 30	지역경제 위 원 회	1. 버스운행실태현지파악결과보고서채택의 건 2. 자료제출요구의 건	
15 : 30	건설위원회	1.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골재채취사업장현지답사결과보고의 건 3. 자료제출요구의 건	
'92. 6. 3(수) 10 : 00	운영위원회	1. 1992년도충청남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 : 00	내무위원회	1. '92충청남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관리실 소관 나. 공보관실 소관 2.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92충청남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내무국 소관	
11 : 00	교육사회 위 원 회	1. 충청남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무의촌순회진료요원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 4. 충청남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92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보사환경국 소관) 6. 충청남도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7. '92충청남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가정복지국 소관)	
11 : 00	농림수산 위 원 회	1. 1992년도충청남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어촌개발국 소관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2. 6. 3(수) 14 : 00	지역경제 위 원 회	1.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사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폐지조례안 4. 1992년도충청남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지역경제국 소관	
11 : 00	건설위원회	1. 1992년도충청남도건설도시국소관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2. 1992년도충청남도공영개발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2. 6. 4(목) 10 : 00	내무위원회	1. 충청남도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특례 조례안. 2. 정수물품취득및처분에관한 건 3. '92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 건 > 등인 4. '92년도충청남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재무국 소관 나. 민방위국 소관 다. 소방본부 소관	
17 : 00	교육사회 위 원 회	1.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안 2.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2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1992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2. 6. 4(목) 17 : 00	교육사회 위 원 회	가. 보사환경국 소관 나. 가정복지국 소관	
10 : 00	농림수산 위 원 회	1. 1992년도충청남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농림수산국 소관 나. 농촌진흥원 소관	
10 : 00	지역경제 위 원 회	1. 1992년도충청남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지역경제국 소관	
10 : 00	건설위원회	1. 1992년도충청남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 나.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2. 6. 5 (금) 10 : 00	내무위원회	1. 1992년도충청남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공무원교육원 소관 나. 계룡출장소 소관	
'92. 6. 8 (월) 14 : 00	본 회 의 (제 2 차)	1. 도정및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 농협중앙회충청남도지회1992년도업무현황청취의 건 3. 제227차원자력위원회의결사항이행건의문채택의 건 (박동윤의원외 21인)	
'92. 6. 11 (수) 14 : 00	본 회 의 (제 3 차)	1. 1992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1992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충청남도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4.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2. 6. 11(수) 14 : 00	본 회 의 (제3차)	5. 충청남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남도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9. 충청남도무의촌순회진료요원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 10. 충청남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충청남도도 · 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 충청남도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폐지조례안 14.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5.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정수물품취득및처분에관한 건 능원 17. 199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 건 능원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수	안 건	비 고
계	25		
조 례 안	13	1.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예 산 안 (결산안)	2	1. 92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2. 92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구 분	건수	안 건	비 고
건 의 안	1	1. 제227차 원자력위원회 의결사항 이행건의문 채택에 대한 동의	
동일승인안	2	1. 정수물품취득 및 처분에 관한 건 2. 1992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	
기 타	7	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2. 제63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3. 1991년도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임 선임의 건 5. 도지사,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7. 농협중앙회 충청남도지회 92년도 업무현황청취의 건	

4. 條例案 處理內譯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91	충청남도시내버스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도지사 ('92.5.23)	내무	○버스운송사업은 대중 교통수단으로서 도내 여객운송의 60% 이상을 담당하면서도 ○농어촌 인구의 감소로 이용여객 경감, 종사원의 인건비 상승, 화물 및 승용차 증가로 교통체중현상의 증가와 정부의 버스요금 인	'92. 6.11	'92. 6.12	원안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상 억제등의 악 조건으로 경영상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따라 버스운송사업의 지원 측면에서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를 구입하는 업체에 등록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요금인상 요인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이용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것임			
89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감('92.5.20)	교육사회	○현재 교육위원에게 교육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만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91.12.31 법률 제4473호)에 따라 교육위원이 교육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92. 6.11	'92. 6.12	원안
90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92.5.23)	내무	○폐기물관리법(법률 제4363호 1991.3.8)이 전문 개정되고, 오수·분뇨 및 축산	〃	〃	〃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제4364호 1991.3.8) 이 제정됨에 따라, 개정 및 제정된 법에 부합되도록 위임사무를 개정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94	충청남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92.5.23)	교육사회	○가족계획사업은 '60년대부터 정부가 주도하여 추진해오면서 다양한 사회지원 시책등을 부여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렸으나 무료로 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깊어져 있음. 그러나 국민의 피임실천율이 77%이상이며 경제적 수준향상과 가족계획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로 정부가족계획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되어 경제적 부담을 줌으로써 무료의식을 배제함과 동시에 정부에서 보급하고있는 가족계획물품의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기 위함	'92. 6.11	'92. 6.12	원안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95	충청남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92.5.23)	교육사회	○1970년부터 사용하던 결핵환자 치료의 정부표준처방이 현실에 맞지 않아 1982년도 국제항결핵연맹(IUAT)에서 통상치료 처방으로 추천된 바 있는 6개월(4가지 약품) 단기처방을 1983.10.1-1984.12.31 (15개월)까지 충청북도에서 시범실시한 결과, 현재 실시중인 9개월(3가지 약품) 처방보다 치료기간이 3개월 단축되고, 치료효과도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 ○결핵환자의 치료중단 방지 및 치료효율을 향상시키고자 6개월 단기처방이 결핵사업의 표준처방으로 채택되어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음.	'92. 6.11	'92. 6.12	원안
97	충청남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	○환경보전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충청남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운영하였으나, ○환경보전법이 폐지되고 1990.3.1 국회에서 의결 분법화된 5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1991.2.2일부터	〃	〃	〃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시행됨에 따라,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일치시켜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주민 모두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며, ○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수를 줄이고 전문위원 비율을 높여 전문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도민의 환경욕구 충족에 부응토록 하기 위함			
98	충청남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92.5.23)	교육사회	○사회복지시설아동의 학습의욕 고취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장학기금의 추가조성을 위한 근거를 명문화하는등 미비사항을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하여 장학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함	'92. 6.11	'92. 6.12	원안
99	충청남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안	〃	농림수산	○1991년 7월 22일 시행된 도 직제개편에 따라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명칭 및 용어를 개정하고, 관리방조	〃	〃	〃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의 내용을 개정하여 본 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함			
100	충청남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92.5.23)	지역경제	○옥외광고물관리법 제20조(과태료)의 규정은 무허가, 무신고 또는 금지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광고업에 종사하는 자가 교육에 응하지 않는등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상한선만 규정되어 있고 세부기준이 없어 신속하고 공정한 법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하여 구체화 하고자 함	'92. 6.11	'92. 6.12	원안
101	충청남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	○도·소매업진흥법(법률 제4380호)이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소개정의 매장면적 기준변경(3,000㎡이상), 지방도, 소매업진흥심의조정 사항, 진흥심의위원회 구성인원등이 변경되었으며 또한 충청남도도·소매업진흥위원회 운영조례중	〃	〃	〃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행정편의주의적 비민주적인 회의소집절차 및 의결방법을 개선하고, 충청남도도·소매업의 진흥과 조정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개정된 법에 부합되도록 수정 보완하는데 있음			
103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92.5.23)	건설	○자연공원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2205호, 1987.7.1)에 따라 당해공원구역내에 있는 사찰의 주지로서 도지사가 위촉한 자를 특별위원으로 할 수 있어 개정된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정함	'92. 6.11	'92. 6.12	원안
96	충청남도무의촌순회진료요원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	〃	교육사회	○충청남도무의촌 순회의료요원실비변상조례(도 조례 제488호)의 규정에 의거 순회진료 사업에 종사하는 의료요원의 위촉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정부의 무의촌 해소 시책에	〃	〃	〃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따라 면지역에 까지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무의면이 해소되었고 1989년도부터 전국민의료보험 확대실시로 의료혜택을 받게 되어 무의촌순회 의료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짐			
102	충청남도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폐지조례안	도지사 ('92.5.23)	지역경제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인 「충청남도 운수 연수원」이 1987.12.31 설립완료되어 1988.6.13 개원·운영하므로써 행정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계속 존치가 불필요하기에 폐지함	'92. 6.11	'92. 6.12	원안

5. 第63回 臨時會 道政 및 敎育行政에 關한 質問 · 答辯要旨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용호 (논산군)	• '89년 1월 1일자로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됨과 동시에 우리 도에서 분리됨으로써 우리 도의 도세는 줄잡아 1/3정도가 약화되었는가 하면 심지어 문화, 체육시설과 공업시설등 대전에 편중되어 있어 우리 도는 거의 불모지에 가까울 정도로 도세가 허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3년동안 도정의 초점을 서해안개발과 함께 도세 회복에 맞추어 200만 도민의 힘을 합친 결과 현재 면적과 인구를 제외하고는 대전시 분리 이전보다 오히려 능가하는 도세를 확충하여 이제 도청을 이전할 만한 여력이 생겼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도청을 비롯한 교육청과 농수산축협도지부등 지방재정의 중추기능이 대전에 소재하고 있어 지역경제의 구심점이 대전으로 모아지고 있어 지역 균형개발에 저해 요인으로 대두되고	도지사 이종국	• 도청과 유관기관, 그리고 도 직속기관중 일부가 대전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어서 지역경제의 발전적 측면과 이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등에 불편이 있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언젠가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와같은 도민의 바램에 부응하기 위해서 현재 도의 직속기관중 여성회관을 도 관내로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전시내에 있는 도의 직속기관과 유관기관, 단체등 우리도 관내로의 이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문제와 관련하여 말씀하신 대전시내 도유재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도청소재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향후 이전계획을 추진할 때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의 이전 문제는 '89년 대전시의 직할시 승격시 부터 지역 균형 개발과 도민생활에 편의제고등 도정발전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용호 (논산군)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마땅히 농어민들 곁에 있어야 할 도산하 농촌진흥원을 비롯한 농민교육원, 가축위생시험연구소, 잠업 검사소, 보건환경연구원이 대전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도민들이 대전에 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이들 기관 자체에서 주최하는 각종 회의, 행사들이 대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로 인하여 도민들이 빼앗기고 있는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도지사께서는 헤아려본 적이 있으신지요? 도청이 진정 도민을 위한 도정을 편다고 하면 도청을 비롯한 우리 도내 관련된 도청관계 단체는 하루빨리 우리 도의 중심지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여기에서 말하는 도의 중심이라는 것은 물론 지리적 중심을 이야기	도지사 이종국	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문제로 거론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의 기본입장은 대 전시가 분리된 이후 약화된 도세를 신장시키면서 성장기반을 튼튼히 다져 나가는데 총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였습니다. 지난 3년간 도세 도약을 위한 시책과 각종 전략 사업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도세가 점차 신장해 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도청 이전을 위한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계획의 핵심이 되는 도청 후보지의 선정을 도민이라면 누구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역별로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도청 이전에 따른 지역간에 유치 경쟁으로 안정과 화합을 헤치고 갈등을 초래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제반 관련 문제를 폭넓게 검토하는 가운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연구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청 이전을 위한 입지의 타당성 조사나 기본 계획을 수립하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용호 (논산군)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 경제, 사회, 문화가 교통등의 종합적 중심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을 첨언합니다. 이로써 도청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됨으로써 재정 형편상 조기 이전이 어렵다고 하겠지마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대전시내에 있는 도유재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도청소재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다른곳을 개발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개발이익금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판단되는데 도청이전에 따른 타당성에 대하여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단도 궁극적으로는 지방개발공사설치를 전제로 '93년 말까지 한시적인 직제로 발족,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영	도지사 이종국	는 문제는 어느정도 도세의 안정기반을 이룬 가운데 사회적 분위기나 행정적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의회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할 사항으로써 좀 더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획을 수립, 추진할 때에는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전담기획단을 구성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검토하고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에 도민적 공감과 지지속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 도의 공영개발사업단은 지난 '89년 5월 15일 토지공개념의 기초하에 토지의 개발계획을 환수하고 토지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서 공영개발사업단을 설치, 운영을 해오고 있으며 요건이 성숙 되는대로 공사로의 발전적 전환이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용호 (논산군)	개발사업단의 공영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2월 상임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타 시·도를 비교 견학한 결과 서울시의 지하철공사를 비롯, 5개의 직할시에도 도시개발공사등 여러 가지 형태의 공사를 설치하여 부족한 지방재정에 민자를 유치함으로써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도도 이렇게 장점이 많은 개발공사를 어차피 설립할 바에야 하루빨리 설립하여 앞으로 착수한 석문국가공단의 조성사업과 금강종합개발, 그리고 새로운 도청이 들어설 신도시개발 사업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였으면 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고 연내로 공영개발사업단을 개발공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 정비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정기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사전	도지사 이종국	있게 될 기구입니다. 그동안 태안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논산 내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금년에는 천안 신부지구택지개발 사업과 서산 대죽지구 지방공단 조성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당진 석문 국가공단 조성사업도 사업시행자가 우리 도로 확정되어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고자 현재 관련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공사로 전환할 경우에는 전문 인력에 의한 전담 체제를 갖추고 자율성을 제고하고 경영 성과에 대한 책임있는 운영으로 채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관기관의 협력체제의 강화와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조세부담 문제, 그리고 개발이익을 지역개발에 재투자 하기위한 장치마련등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 전환에 따른 자본금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추진중인 공영개발사업이 금년에 일부 준공되어 개발 이익이 발생될 전망으로 있어 추진중인 사업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용호 (논산군)	준비해 줄 것을 바라면서 도지사의 책임있는 소신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종국	을 분석하여 공기업에 대한 경영능력과 자본금 축적등 제반 여건이 성숙되는대로 내무부와 적극 협의하여 공사전환을 검토 추진할 계획임을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79년부터 공주, 부여지역을 중심으로 총 46건의 483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계획자체도 미미하게 수립되었으며, 지난해 까지 200억원 밖에 투자되지 않아 지지부진할 뿐더러 금년도에는 예년수준에 불과한 40억원 밖에 예산조치가 되지 아니하여 나머지 243억원은 '95년까지 투자하도록 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도지사께서는 대전 엑스포가 개최되는 '93년까지 잔여 사업비를 집중투자하여 문화도로서의 위상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또한 백제문화권개발 특정 지역지정문제도 금년 상반기중에는 해결된다고 여러번 보고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	내 무 국 장 김흥태	• 백제문화권 개발정비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문화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79년부터 '95년까지 공주 공산성, 부여 정림사지, 부소산성등 총 46건의 사업에 483억 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간 241억8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무량사, 마곡사, 장곡사 등 17건의 사업을 정리 완료하였으며, 공산성, 정림사지등 29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가옥, 토지매입, 발굴조사, 유적정리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93년도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관련 예산은 지난 5월 문화부에서 검토한 결과 공주 공산성, 부여 정림사지, 부소산성등 21건의 사업에 소요되는 국비 60억7천5백만원을 현재 경제기획원에 예산 요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동안 사업비확보문제와 관련하여 수차에 걸쳐 문화부에 건의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정부예산 심의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용호 (논산군)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연기군과 논산군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무 국 장 김흥태	과정에서 문화부에서 요구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지정문제는 건설부에서 발주한 「기본 조사용역」과 우리 도에서 발주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건설부·국토개발연구원등과 협의를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으로서, 금년 9월경 「특정지역으로서의 지정」 절차가 이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정지역 지정과 함께 기본설계에 착수하여 내년부터 개발사업이 본격 착수되게 됩니다. 그리고, 논산·연기지역은 건설부에 동지역을 특정지역 지정 범위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와같은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성진 (태안군)	• 첫째로, 우리의 농업이 앞으로 국제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경쟁대응력을 갖기 위해서는 물론 영농규모의 확대가 필수적인 건이 되겠지만, 그 보다도 우선 자본의 투자와 과학영농,	도지사 이종국	•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농수산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도 산하기관들이 그 기능과 특성에 따라 도내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유사 기능 업무수행 기관을 일정지역으로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성진 (태안군)	영어만이 최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촌진흥원은 충남지역의 농업연구와 기술개발의 중추기관이라 볼 수 있음에도 대전직할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은 심히 불합리 하다고 생각되는데 충남농업의 장기발전을 위하여 이러한 농업관계 기관들을 한 지역으로 집단화 하여 종합적이고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며, 농민교육의 종합적인 현장실습의 산교육장으로서의 역할과 충남농업의 현실과 발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충남농업연구단지를 건설할 계획과 용의가 없는지 이에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오늘날에 이르러 이러한 어장피해로 인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이제는 보상어업이라고 하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간척 사업으로 농토 확장	도지사 이종국	모아 단지화하는 방안도 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를 단시일내에 해결하기란 여러 가지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기관마다 각기 다른 특성과 기능에 따라 시험연구, 사육 또는 재배등 고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기관들의 연구활동과 시험재배에 필요한 농지와 기관신축을 위한 부지를 일정지역에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와 특히, 기후·풍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농작물과 특수작목의 지역 적응시험등으로 인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는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아래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연구,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 간척매립사업의 제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간 우리 도내에서 간척매립 등으로 인해서 4,100여ha의 어장이 상실되고 780여척의 어선이 폐업되는 등 지역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김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성진 (태안군)	은 경제적 의미가 없어졌으며, 바다를 막아 농토를 만들기 보다는 기존농토 관리에 투자해야 된다고 보며 국가계획에 의하여 용지 가격이 싼 공단부지조성 이전에 소외된 어민을 생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다의 연안도 국토이며 우리나라 국민에게 단백질 공급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수산업을 더 이상 황폐화 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바, 이후 간척매립사업은 절대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책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지와 임야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대체농지 조성비와 대체 조림비를 부과하는 외에도 농지전용금을 부담해야 되는바, 간척매립시에도 대체어장 조성기금을 부과하여 어민의 생계와 복지증진 사업에 투자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 도지사의 견해와	도지사 이종국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농공시책을 함께 펴나가야 하는 우리 도의 입장에서 절대제한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분별한 매립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안간척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매립을 추진하되, 대상지 선정시에는 어민보호 차원에서 수산자원의 다량 서식지나 산란장, 어장 밀집지역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매립을 억제하도록 하는 한편, 매립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간척매립시에 대체어장 조성기금을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 역시 김의원님의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김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간척매립으로 어장이 축소되어 생활터전을 잃은 어민들을 위해서 간척매립면적등에 따라 매립자가 대체어장 조성기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어민들의 대체어장 조성비 지원과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종묘방류, 인공어초시설 확대등에 투자하는 법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성진 (태안군)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종국	이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그간 중앙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관계부처와 더욱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1989년도에 농지개량조합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개정으로 농지개량조합구역의 조합비는 10a당 10kg에서 5kg로 줄어 국가의 지원혜택을 받았으나, 비농조 구역의 자체 수리계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충남도내에는 이러한 자치 수리계가 1,544개이고 농조편입 희망 수리계는 53개나 되며, 그 몽리면적은 1,400여ha로 나타나 있는바, 국가 지원혜택이 형평을 이루도록 편입희망 수리계를 농조에 편입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해소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개 발 국 장 강희복	• 먼저 도내 농지개량조합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농지개량계는 모두 1,507개가 있으며, 농지개량계의 몽리민들이 농지개량조합비보다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농지개량계는 464개이고, 이중 농지개량조합 구역으로 편입을 희망하는 농지개량계가 53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따라 농지개량계의 시설이나 몽리면적을 농조구역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한 농지개량시설로부터 혜택을 받는 지역이어야 하나 이러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여건에 있으며, 또한 현재의 농지개량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로써는 효율적인 용수관리가 불가능하여 농조구역으로 편입시는 시설보강이 선행되어야 하나 이에 소요되는 예산도 약 31억원이라는 많은 설비가 소요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질문	질 문 내 용	답변	답 변 내 용
		농어촌개발국장 강희복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우리 도에서는 중앙에 관련사업비를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정부재정형편상 현재까지 반영이 되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농지개량조합 구역으로 편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강기세 (연기군)	• 그린벨트 주민에 대한 도 단위로써의 지원과 주민 선무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발에서 소외된 주민복지, 생활편의를 개선해 주기 위하여 특별히 군도, 농로의 개설, 확포장 및 주택개량자금, 변소 부엌개량 자금을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둘째, 그린벨트내 소득원은 농업소득일 수 밖에 없으나, 축사나 양어장, 시설원예, 저장고, 집하장 등 모든 시설의 신축이 거의 불가능한 바 지사 승인사항을 적극 활용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종국	• 개발제한 구역내의 군도와 농로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우선적으로 확장되고 포장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택, 변소, 부엌등의 주거환경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린벨트내 주민의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린벨트내의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는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친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농수산업의 경우 15종, 마을공동 사업의 경우 9종등을 허가없이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조치할 수 있는 범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강기세 (연기군)	셋째, 가옥의 증개축은 물론 소·대수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행위에 설계도가 필요한데, 시간의 낭비도 물론 설계비의 부담도 농가 형편으로는 과중한 형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억울한 사정인데 경제적 부담까지 지고 있는바, 설계비에 상응하는 보상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현행법으로는 동일용도 동일 규모내의 개축, 재축, 대수선만 허용되는 바 기존 건축물 내에서의 용도변경을 허가하여 주민 생활편익을 도모할 방안은 없는지? 다섯째, 이상과 같은 민원을 해소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 등을 그린벨트 지역내에 '93년 부터 우선 배정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도지사께서는 그린벨트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기 위한 별도 계획을 수립	도지사 이종국	위 내에서 당해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방안을 찾아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옥의 증·개축이나 대수선에 따른 설계비 보상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건축계획도의 작성은 그린벨트 지역은 물론이고, 도시지역 전체에 적용되는 법률사항으로서 행정적 측면에서의 지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만, 설계비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주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연구,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 대상에 연기군 금남면, 금산군 복수면, 공주군 반포면등 3개면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타지역은 개발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강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취지를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정주권개발과 오지개발 사업등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강기세 (연기군)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과 기술은 대전에서 문화와 관광은 충남에서" 라는 캣치프레즈 아래 지난해부터 문화 관광자원의 적극적인 개발과 활용으로 〈문화 엑스포〉를 통한 도의 이미지를 부각하여 이를 충남발전의 새로운 기폭제로 삼겠다며 거창하게 부풀게 하였는데 지금까지의 준비상황은 과연 어떠하며, 도민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고 보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립공원의 문화재와 관광시설 편익시설 보수정비와 동학사 지구등 새로운 온천개발사업은 어느정도 추진이 되었으며, 6개 핵심관광루트를 개발상품화 한다고 했는데 관련 도로망 구축과 숙박시설은 물론 볼거리와 먹거리 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추진상 문제	기 획 담당관 이종은	• 먼저, 우리 도에서는 「'93대전 EXPO」 개최와 관련하여 인근지역으로서의 분담기능과 역할을 도민적 공감과 참여속에서 추진해 나간다는 기본방향 아래 문화, 관광, 숙박시설, 교통체계, 환경정리등 5개 분야에 28개 사업을 설정하고, 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둘째, 관심을 갖고계신 국·도립공원의 문화재와 관광 편익시설의 보수에 있어서는 공주와 부여지역의 문화유산 46건을 정리하고, 공산성내 임유각 및 부여 정림사지 강당등 주요유적을 엑스포 개최이전에 복원 완료할 계획이며, 관광안내 및 편의시설에 대한 증설과 보수작업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백제문화제의 중흥을 위한 용역 및 아사달 조각대전의 추진에 있어서는 백제문화제에 대한 연구용역은 작년 10월에 착수하여 금년 8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사달 조각 대전은 백제조각의 심도있는 사적 고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공주대 박물관에 「백제조각 연구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강기세 (연기군)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실현성 있는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문화 예술행사의 대표적인 백제문화권의 중흥을 위한 용역결과는 나왔는지, 또한 금년 5월중에 개최한다던 아사달 백제 조각대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라며, 한산 모시타운과 금산의 인삼타운은 '93년까지 차질없이 추진되어 엑스포전 개관이 가능한지, 그리고 한산 모시타운의 건립후 관리운영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만일 관리사업소 같은 기구를 새로 설치하여 가뜩이나 궁핍한 지방재정을 낭비할 요인은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고 말과 서류로만 화려하게 꾸며 놓고 가로변에 꽃이나 심는 것으로 우리 도는 볼거리만 제공하	기 획 담당관 이종은	용역」을 의뢰하여 금년 12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이를 바탕으로 보다 훌륭한 조각대전을 개최하여 찬란했던 백제의 문화가 더욱 선양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넷째, 한산 모시타운과 금산 인삼타운 건설에 있어서는 한산 모시타운은 기반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6월중에 문화부의 설계승인이 나는대로 건축공사를 착수할 계획이고, 금산 인삼타운은 현재 지상 4층의 골조 공사중에 있어 모두 엑스포 개최이전에 개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건립후에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동학사 지구등 온천개발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전액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반시설공사를 시행중에 있어 34%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시행자측의 자본난등 어려움으로 숙박시설등의 착공이 다소 지연되어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을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행자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상품화 개발에 있어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강기세 (연기군)	고 먹고자는 것은 대전시에서 독차지하게 된다면 우리 도는 속빈강정으로 아무 실익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도민에 실익이 있고 알맹이 있는 계획을 확실하게 추진해 주었으면 합니다.	기 획 담당관 이종은	서는 지난 5월 28일 관광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10개 관광코스를 확정하고 한나절코스부터 2박 3일 코스등 소요시간대별로 다양한 상품을 마련하였으며, 관광코스와 관련된 3개의 도로망 42.2㎞에 대한 확·포장 사업을 비롯하여 숙박시설의 확보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중 박정자~공주간 16.7㎞의 도로 확·포장은 금년 하반기중에 용지 보상등을 착수할 예정이어서 엑스포 개최이전 완공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용일 (천안군)	• 본의원은 개도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기념 행사로 전국체전 유치문제는 천안시 아니더라도 어느 지역에서 해야 하는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와 천안시는 천안시 백석동에 15만평 부지를 매입하고 기반조성 사업키로 확정지어 이미 용역설계가 끝나고 1차로 '92년도 도비 30억과 시비 60억이 확보되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511억 6천	도지사 이종국	• 전국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 규격에 맞는 경기시설을 갖춘 다음에 개최지 시·도지사의 재원확보등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도는 윤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전직할시 분리 이후 다른 분야에 비해 체육시설이 극히 미약한 실정에 있어서 아직은 신청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며, 또 이미 '98년까지 체전개최지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전국체전의 유치를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만, 작년도 개최지인 전북의 경우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윤용일 (천안군)	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총사업비중 국비 97억원, 도비 180억원, 시비 214억 6천만원, 민자 20억원으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지원이 늦어질 경우 지가상승과 건축비, 인건비등의 상승으로 200만 도민이 결집하여 유치하여야 할 전국체전이 차질이 오지 않는가 하여 도정질문을 하는 것이니 향후 대책에 대하여 도지사님의 성의있고 상세한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전국체전 유치계획에 대한 도의 추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체전 유치준비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묻습니다. 둘째로, 동체육시설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추진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으며, 소요되는 예산액과 그 지원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하여 묻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성의있는 답	도지사 이종국	체육시설과 도시기반시설확충등 간접시설비 1,100억원과, 대회운영경상비 80억원등 총1,180억원이 소요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전국체전을 한때의 의욕이나 즉흥적인 발상으로만 가볍게 추진할 수는 없는 문제일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더욱 심사숙고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언젠가는 치루어야 할 전국체전임을 염두에 두고 지난 3년전부터 각 시·군별로 1운동장, 1체육관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천안시의 경우는 시세확장에 따라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백석지구에 15만평 규모의 대단위 스포츠타운을 추진하고 있어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시책에 대해서는 도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점진적으로 체육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체전 유치문제도 재정적여건과 시설의 확충등 제반 여건이 어느정도 성숙되면 전국체전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은 물론 치밀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윤용일 (천안군)	변을 부탁드립니다.		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협조를 구하면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감께서는 내고장 학교다니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안지역은 내고장학교를 가고 싶어도 시설과 학교 부족으로 타지역으로 학교를 다녀야 하는 실정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금년도 남자중학교 졸업생 1,831명, 여자중학교 졸업생 1,742명, 졸업생 수도 남녀가 대등소이 하나 지역 고등학교 입학 학생수는 남자고등학교 학생수에 비해 여자고등학교는 남자고등학교의 2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시골지역은 학생이 감소인 반면 도시지역은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인구의 분산책의 일환으로 인구의 도시집중을 견제하는 재정시책은 있으나 천안시 지역같은 경우는 그런	교육감 백승탁	• 첫째, 천안지역 인구증가에 따른 학교시설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라 우리도의 학교수는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추세에 있으나, 천안시는 이와 반대로 시의 발전추세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농어촌과 대조를 보여 점차 학교를 신설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93년도 이후의 신설계획은 대한주택공사와 충남공영개발사업단이 시행하고 있는 택지개발 사업계획에 따라 '93년도에 국민학교 1교와 중학교 1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에 우선 부지매입비로 60억원을 계상하였고, '95년도에는 국민학교 1교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1993년부터 2001년까지 장기학생수용계획상 천안지역에 국민학교 8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2개교의 설립이 우선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의 도시발전추이에 따라 가변적인 것임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윤용일 (천안군)	부분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지역 학교의 절대 부족으로 하는수없이 타지역으로 학교를 보내야 하는 교육행정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며, 반드시 학교의 신설과 증설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한 관점에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천안시의 인구증가에 따른 학교설립에 관한 판단은 해 보셨으며, 해 보셨다면 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천안지역에 절대 부족한 여자고등학교 신설계획은 없으신지? 셋째로, 내고장 학교 다니기의 실적은 어떠하며, 천안시 학생이 타지역으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수는 얼마이며, 그 학생을 내고장에서 다니게 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 인지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백승탁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천안지역 여자고등학교 신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 급속한 도시발전으로 유입인구가 급증하고 생활권도 점차로 광역화되므로 천안인근 지역이 천안을 생활권화 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천안에 여자고등학교를 신설할 경우 인구의 도시집중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매년 학생미달로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인근의 목천고, 병천고, 성환고, 둔포고등학교는 더욱 영세화되어 운영난이 가중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도에서 장기적인 학생 수용계획을 판단할 때 천안시 도시발전에 따른 인구증가로 보면 여자고등학교 설립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남·녀 학생수를 정확히 판단하고 지역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학생 설립계획을 수립 추진할 예정입니다. 셋째로, 내고장학교 다니기 운동의 성과와 천안시 중학생의 고등학교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고장학교 다니기 운동의 '92 학년도 성과를 살펴보면, 본도 전체 고등학교 지원자 35,513명중에서 내고장학교 지원자는 31,137명으로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교육감 백승탁	87.7%이고 타 시·도 학교 지원자는 4,376명으로 12.3%입니다. 이는 '91학년도에 비해 801명이 감소한 수로서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천안시내 중학생의 타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92학년도 천안시내 중학교 졸업생중 고등학교 진학생은 3,400명으로 천안시·군에 2,852명이 진학하였고, 타 시·군 및 타 시·도로는 17%에 해당하는 588명이 진학하였습니다. '92학년도 천안시내 고등학교 모집정원이 4,872명인 만큼 중학교 졸업생 3,564명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나, 인근 타 시·군의 학생들의 유입으로 인하여 교통상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는 인근지역인 온양과 연기군에 금년도 지역육성고를 새로이 지정하였으며, 각 시·군에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를 육성해 나가고 학부모의 도시선호 의식이 전환되므로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리라 봅니다.
김현근 (금산군)	• 본위원회 의원들이 도출한 문제점들을 제도적 측면	도지사 이종국	•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골재채취현장을 직접 살피시고 관련 문제점을 도출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현근 (금산군)	에서 지적해 보면 첫 번째로, 하천골재 채취료 수입구조가 불합리하여 대행업자 수입이 자체판매액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음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자치단체 채취료 수입률이 너무 적게 되어있어 실제로 공주시외 4개 군의 고시량 전체가 판매될 때 총 397억9천6백만원중 대행업자의 대행료가 157억 3,900만원이고, 시·군수입이 199억2,600만원, 도 수입이 10.4%인 41억3,100만원으로 불합리합니다. 두 번째로, 하천골재 채취업자중 부정당 업자에 대한 제재근거가 미약하여 처벌후에도 명의를 변경하여 사실상 대행업자를 계속할 수 있다는 점등이 제도적인 측면의 문제점입니다. 현장운영관리 측면의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면, 첫 번째로 골재채취장 진입 대형차량의 고속질주로 인한 도로파손, 먼지, 소음, 농작물 피해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	도지사 이종국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골재채취 업무에 대해서는 일부 몰지각한 채취업자들의 부정행위로 물의를 야기하고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행위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있어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채취업자중 부정당 업자의 제재문제에 있어서도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약하였습니다만, 금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 골재채취법에 의거한 제재조치가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과정에서 제도적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중앙에 적극 건의하여 골재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골재채취법의 내용은 종전에는 장비만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골재채취 업자의 자본까지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에게 사전 신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현근 (금산군)	민과의 마찰이 빈번합니다. 두번째로, 책임성이 미약한 청원경찰 1~2명을 배치 근무여건이 열악함에도 주야 맞교대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번째로, 카코차등 수십종류의 차량이 골재운반에 당하고 있음에도 측중기등을 미비치 목측에 의하여 계측하고 있는 불합리성 등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닙니다. 네번째로, 골재채취장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채취된 골재등을 하상에 산더미처럼 적치하고 있는등 화재예방조치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다섯번째로, 골재채취후의 원상복구는 수중채취라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안전사고 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님께서는 현행골재 채취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자체진단	도지사 이종국	고도 하게 되어 있고, 이런 제재조치가 강화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현근 (금산군)	하고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강구 시행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이를 묻고 싶습니다. • 모든 사업은 명확한 예측과 사업추진에 따른 돌발사태를 가정하면서 완벽한 추진으로 행·재정적인 손실의 미연방지와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개별적인 사업을 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사업에 있어서 부실공사 및 부진사업의 사례를 개괄적으로 말씀 드리면 첫 번째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효과적인 대처능력 결여로 시기를 일실하여 여름철 우기나 겨울철 공사로 완벽한 공사에 차질을 초래하여 부실공사의 계기가 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 실시설계의 보다 완벽한 설계로 설계변경없이 사업추진이 되어야 함에도 착공후 수시 설	도지사 이종국	• 건설공사는 설계 단계에서 부터 시공준공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사항이 사전에 완벽하게 검토된 후에 추진하여야할 사항으로 이중 어느 한 부문이라도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지적하신 바와같이 부실공사로 인한 관련주민의 불편은 물론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와같은 부실공사의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그동안 건설공사의 조기발주와 우기·동기시 현장보호대책 강구, 그리고 설계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자문등을 통해서 시공과 감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특히 부적격업체가 선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회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건설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사무연찬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설계 변경, 공사감독등에 소홀함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점이 반드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현근 (금산군)	계 변경으로 사업부진은 물론 예측한 예산보다 부족되거나 사업시기 지연으로 단위상승등 선의의 재정적 손실을 가져오는 사례를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내 각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시해 보면 한전 전주공사, 전기통신공사의 전화선 매설공사, 상하수도 매립공사 등으로 도로를 굴착하고 있는데, 도로 확·포장시 사전에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로 일시에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관계 기관의 비협조와 시기 일실로 국고와 지방재정낭비의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을 물론 재시공의 부실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의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하나 완공위주로 사업집행을 하여야 함에도 균형개발이라는 차원과 우선 시급을 요한다는 생각으로 부족한 예산을 가지	도지사 이종국	시 개선되고 바로잡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번한 도로 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 및 재정손실 문제에 대해서는 저 역시 그러한 현장을 지날때마다 아쉬움을 느끼면서 다시한번 확인도 해보고 있습니다만 도로의 신설이나 확·포장시에는 사전에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조를 해서 병행 시공토록 하고, 준공후 일정기간은 굴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상·하수도와 통신시설등 불가결하게 굴착할 경우에도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굴착 범위를 최소화해서 주민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부실공사로 인한 물의가 없도록 사전 사후감독에 철저를 기하면서 필요한 관계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현근 (금산군)	고 무리한 시공을 함으로써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얼마 못 가서 다시 투자를 해야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순을 스스로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서천 비인 임해공단」은 서천군 서면 마량리와 월하리 사이의 비인만을 막아 350만평 규모의 공단을 조성하고자 정부는 이 공단에 년산 30만톤 규모의 제3비료공장과 일산 2만배럴 처리규모의 정유공장을 건설 하고자 '65년 4월 6일 기공식을 가진바 있었으며, 그 후 총연장 1,350m의 방조제 공사와 20㎞에 달하는 진입철로 공사까지 시작하다가 돌연 중단 비료공장은 진해로, 정유공장은 울산 등지로 이전되는 바람에 비인공단은 정치적 희생양이 된 채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데도 현재까지 아무런 개발계획조차 수립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건설도시국장 정진홍	• 국가공단 개발사업은 국가 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이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비인임해공단의 경우에 있어서도 아까 김현근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27, 8년전에 당초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개발계획에 의거 국가공단으로 개발을 추진하던 사업이었으나, 김현근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국가 계획상의 장기적 개발측면에서 국토종합개발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동안 도에서 이 지역에 대한 국가공단 조성을 건의한 바는 없었습니다만 그후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차원에서 현지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인근에 서천화력이 건설되었고, 군장 국가공단개발계획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27, 8년 전의 일이라 거주불추이라 하겠습니다마는 아쉬운감이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현근 (금산군)	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천혜의 임해공단 여건을 갖추고 있는「서천 비인임해공단조성」에 대하여 국가공단으로 조성하여 줄 것을 정부 요로에 건의했던 사실이 있었는지와 서해안권 개발계획에 미포함 시키는 사유와 또 향후 본 임해공단 조성재개에 대한 어떤 복안이 있는지를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 설 도 시 국 장 정진홍	있는 것은 저도 김현근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서해안 고속도로의 건설과 여천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가기간시설 확충등 지역개발 여건이 급진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 수요가 발생할 경우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모든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선홍 (청양군)	• 지금 현재 주유소를 면마다 확대하고 계신데 수지타산이 맞느냐를 여쭈어 보고싶고, 또한가지 가스판매를 단위농협에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가스판매 설치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도 따라야 되고 공급하는 시설용기도 따라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수지계산을 따져 보셨는지, 또한가지는 우루과이등으로 인해서 지	농 협 중앙회 충 남 지회장 윤상열	• 주유소라든지 가스 이런 것은 우리가 농협에서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농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이것을 운영하는 경영면에서 손실이 간다하더라도 농민에게 편익과 도움을 주는 사업은 과감하게 실천하는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주유소 관계는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편익을 위주로한 사업이고, 가스안전관리 문제는 가스 취급을 하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기능공을 우리가 채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큰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정선흥 (청양군)	금 주유소와 주유소간의 간격이 1㎞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 140m로 축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 협 중앙회 충 남 지회장 윤상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第11節 第64回 臨時會

Ⅰ. 概 況

1. 開會背景

○ 제6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7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2년 6월 29일 집회공고를 실시하고 92년 7월 7일 14:00에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회기 : '92. 7. 7 ~ 7. 13 (7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2. 7. 7(화) 14 : 00	본 회 의 (제 1 차)	1. 제64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충청남도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보고	
'92. 7. 9(목) 14 : 00	내무위원회	1. 충청남도안면도휴양림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2.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 00	교육사회 위 원 회	1. 충청남도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2. 7. 9(목) 13 : 30	농림수산 위 원 회	1. 충청남도농촌지도자및4-H회원육성기금조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2. 현황보고 청취 가. 수협중앙회충청남도지회 나. 축협중앙회충청남도지회 다. 산림조합중앙회충청남도지부 3. 가뭄극복대책및우박피해대책보고	
14 : 00	지역경제 위 원 회	1.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92. 7. 13(월) 10 : 00	내무위원회	1. 충청남도안면휴양림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10 : 30	지역경제 위 원 회	1.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지역경제국소관당면업무추진상황보고	
14 : 00	본 회 의 (제 2 차)	1. 충청남도안면휴양림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2.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농촌지도자및4-H회원육성자금조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4. 충청남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92. 6. 29(월) 11 : 30	운영위원회	1. 제64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 건	비 회기중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수	안 건	비 고
계	10		
조 례 안	7	1.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기 타	3	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2. 제64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3. 충청남도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 보고	

4. 條例案 處理內譯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108	충청남도안면휴양림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도지사('92.6.29)	내무	○도유림의 합리적인 경영과 안면도 휴양림및 휴양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하려는 것임	'92. 7.13	'92. 7.14	수정
113	충청남도농촌지도자4-H회원육성기금조성과운용에관한조례안	〃	농림수산	○복지농촌 건설의 역군인 농촌지도자 및 4-H회원 육성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하기 위함이며 농촌지도자·4-H회원에게 농촌의 소득증대와 농촌발전을 위한 시범영농사업·	〃	〃	〃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새로운 영농기술연찬을 위한 국내외연수등 농촌근대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함.			
107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92.6.29)	내무	○개정이유 충청남도 지방공사의료원 업무중 경영지도(각종규정의 제·개정, 원장임명, 예산·결산승인) 업무가 1992.6.22자로 "보사환경국보건과" 에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 로 이관됨에 따라 직제의 기능과 부합되도록 조정하고자 함. ○부결이유 충청남도 지방공사의료원 업무지도를 보사환경국장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영관리업무를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한다면, 업무의 이원화를 초래시킬 수 있음.	'92.7.13		부결
109	충청남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교육사회	○의료보호법이 법률 제4353호('91.3.8)로 전면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346호('91.9.6) 및 동법시행규칙이 보건사회부	〃	'92.7.14	원안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령 제883호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설치 근거법령이 변경되어 상위법령에 맞도록 하며,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110	충청남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92.6.29)	교육사회	○ 의료보호법이 법률 제4353호('91.3.8)로 전문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346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위원회 설치 근거법령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하고, 구성 및 기능,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과 아울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비민주적인 요소 및 행정편의위주의 내용을 배제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	'92. 7.13	'92. 7.14	원안
111	충청남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	○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 불우청소년에 대한 자립기반지원 확충을 위하여 '87~'91 (5개년간)	〃	〃	수정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도·시·군 출연금등으로 15억8천만원 조성 ○'86년도의 조례제정 시점을 기준으로한 지원범위등이 현실과 불부합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기금관리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시행하고자 함.			
112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92.6.29)	지역경제	○현행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조례중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상업체 범위선정, 융자한도액, 상환기간등 일부제도 규정이 제정시행 당시와 현실 여건과는 불부합되는등 제도상 비현실적 규정으로 경직되어 있어 ○제도개선을 통한 일부 융자대상업체의 조정·융자금액의 상향조정, 융자기간을 연장해줌으로써 기업의 자금수요충족과 효율적인 육성지원이 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제도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조례를 개정코자 함.	'92. 7.13	'92. 7.14	수정

第12節 第65回 臨時會

Ⅰ. 槪 況

1. 開會背景

○ 제6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조례 제정과 개정안 심의의결 및 9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위하여 소집요구가 있어 92년 8월 6일 집회공고를 실시하고 92년 8월 14일 14:00에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회기 : '92. 8. 14 ~ 8. 22 (9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2. 8. 14(금) 14 : 00	본 회 의 (제 1 차)	1. 제65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李準喆의원외 10인) 3. 白承鐸교육감 인사 4. 朴重培부지사 인사	
'92. 8. 17(월) 14 : 00	내무위원회	1. 1992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 가. 기획관리실 소관 나. 공보관실 소관	
10 : 00	교육사회 위 원 회	1. 1992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 가. 가정복지국 소관 나. 보사환경국 소관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2. 8. 17(월) 14 : 00	농림수산 위 원 회	1. 농어촌개발국소관 1992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	
14 : 00	지역경제 위 원 회	1. 지역경제국소관 1992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	
14 : 00	건설위원회	1. 건설도시국소관 1992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	
'92. 8. 18(화) 14 : 00	내무위원회	1.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내무국소관 1992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 3. 충청남도체육회업무보고 4. 충청남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안 5. 재무국소관 1992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	
10 : 00	교육사회 위 원 회	1.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위임조례안	
10 : 00	농림수산 위 원 회	1. 1992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농림수산국 소관 나. 농촌진흥원 소관 2. 농어촌진흥공사충청남도지사업무보고	
10 : 00	건설위원회	1. 보령댐건설사업소소관1992년도상반기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2. 보령댐건설에따른광업권보상요구에관한청원 3. 공영개발사업단소관1992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2. 8. 19(수) 11 : 00	내무위원회	1. '92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 가. 민방위국 소관 나. 소방본부 소관 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라. 계룡출장소 소관	
'92. 8. 22(토) 10 : 00	본 회 의 (제 2 차)	1. 충청남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안 2.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 등에관한조례안 4. 충청남도교육 · 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안 5. 도정에관한질문	
'92. 7. 30(목) 11 : 30	운영위원회	1. 제65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 건	비 회기중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수	안 건	비 고
계	6		
조 례 안	3	1.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기 타	3	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2.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 3. 도정질문에 관한 질문	

4. 條例案 處理內譯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114	충청남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교육감('92.7.30)	교육사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91. 12. 31 법률 제4473호)됨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사국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92. 8.22	'92. 8.24	원안
115	충청남도종교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도지사('92.8.4)	내무	○현행지방세법 제10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1호에서 의료법에 의거 설립한 의료법인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있으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의거 설립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과세면제 조항이 없어 과세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의 의료법에 대하여도 과세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이들이 사회복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	〃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116	충청남도의회 사무처의설치 및사무직원의 정수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 례안	도지사 ('92.8.4)	내무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도의회 의장 보조 요원 및 의회사무처 총무 담당관실에 공보전담요원 을 보강하려는 것임	'92. 8.22	'92. 8.24	원안

5. 第65回 臨時會 道政 및 敎育行政에 關한 質問 · 答辯要旨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라신찬 (서천군)	• 군산과 장항에 총 4,060만평 부지의 산업기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미 군산쪽에는 착공되어 군산 2공단은 보상이 지난 5월말 완료되었으며, 부지조성 작업도 66% 이상의 공정을 보여 부분적으로는 공장건설이 가능한 단계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서천군쪽의 장항국가공단은 '95년도에야 470만평에 대하여만 착공을 한다는 계획만이 세워져 있는 상태로서 3단계로 나누어 2021년까지 장항쪽에 총 2,720만평의 해안매립으로 공단과 그에 수반되는 간접 지원시설을 한다는 그야말로 지도를 바꾸는 대역사를 이루는 기대높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를 믿으려하는 군민이 그리많지 않다는 것과 그 이유는 과거 정부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고, 가시적인 개발 추진의 현상을 볼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	도지사 이종국	• 군장산업기지개발은 국가적 차원에서 서해안 지역의 공업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3,915만평이며, 이중 장항지구 2,723만평, 군산지구 1,192만평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 내용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며, 공단건설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항만건설은 해운항만청에서 그리고 도로와 용수시설은 국토관리청에서 각각 시행하게 됩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장항측 도유제방은 지난 '90년에 착공을 해서 2.8㎞를 시공중에 있고, 또한 진입도로는 장항측에 8.5㎞, 군산측 22.3㎞를 '91년도에 착공을 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업단지 건설은 1단계로 군산지구 467만평과 장항지구 470만평을 건설키로 하고 군산지구 467만평은 '91년 11월에 실시 계획을 승인을 받아, 그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금년 12월에 착공을 할 계획이며, 장항측 470만평은 '90년 8월에 실시 설계를 착수해서 '93년 10월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라신찬 (서천군)	입니다. 그나마 그 모든 사업의 주관 및 지원기관과 부서가 해운항만청, 토지개발공사, 농어촌진흥공사등의 주사무실이 군산에 편중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의 공단시설이야말로 전주, 이리, 군산을 연결하는 벨트를 형성, 전북발전의 절대적인 요소로서 전북도의 각급 기관은 말할것도 없고 전북도민의 절대적인 관심과 지원속에 도지사가 직접 관계 유관기관을 수시로 심방, 모든 것을 도 차원에서 타협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전북위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과연 우리 충남도에서는 도지사를 비롯 각급 실·국장들이 그런 기관을 심방하여 한번쯤이라도 업무협의를 해 본 일이 있는지를 물으면서 유관기관의 사업소장이나 지사장들을 만나 보는 것이 의	도지사 이종국	에 완료하여 상공부와 건설부의 협의 및 승인등의 절차를 이행한 다음 '95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은 이 사업이 우리 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중대한 대단위 사업임을 감안하여 평소 중앙부처와 필요한 협의를 상속해 오고 있고, 관계 국장이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해서 건의한 바도 있으며, 공단사업의 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측에서도 건설부와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한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만, 군산측에서 군장국가공단 개발계획수립 이전에 군산 제1, 2공단을 지정받아 개발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공업용수, 생활용수, 진입도로 공사를 '88년부터 착공 시공중에 있어 외형적으로는 군산측이 먼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군장국가공단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라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하고 지역주민의 개발의지를 충분히 수렴해서 대규모 공단개발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라신찬 (서천군)	전이나 권위 때문에 격에 맞지 않아서 그러는지, 충남쪽의 손실이 없었는지 반성해 보면서 우는 아기에게 젖 더 주더라는 고유의 속담을 우리는 되뇌어야 할 것입니다. • 농어민 후계자는 퇴폐해 가는 농어촌을 살리고 이농 현상을 막아 농어민 후계자로 하여금 농촌을 지키고 국제경쟁에 이겨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영농 및 영어방법을 연구 확산 시키고자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2년도의 선정은 '92년 3월 20일까지 신청을 접수하여 '92년 4월중으로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지난 14대 총선 당시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에게만 지정을 받도록 하겠다고 공공연한 여론이 떠들썩하게 돌아다녔습니다만, 설마 정부에서 젊고 패기에 찬 그리고 농촌을 진정으	도지사 이종국	사업이 자칫 지역 균형개발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보다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오늘의 우리 농어촌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는 농사를 지을 「사람」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중시하여 앞으로 2001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농어촌구조 개선대책의 가장 선결적인 문제로 후계자를 양성해야 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전국에서 매년 1만명씩 10년간 10만명을 육성할 방침이며,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금년에 1,240명을 선발하여 육성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어촌의 후계인력 선정과 육성을 위한 노력은 농어촌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는 중요한 시책으로써 후계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해서 시·군과 읍·면의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라신찬 (서천군)	로 사랑하고 지키는 그야말로 말없이 묵묵히 일하는 젊은 농촌의 기수들에게 조차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냐고 본의원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선거이후 늦게야 지정된 농어민 후계자의 명단을 보고 본의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여론과 현실이 일치하여 이것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일이라고 자탄을 한 바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잘 맞아 떨어진 일치이면서 선정평가 방법 및 배점에 의해서 정실없이 정확하게 선정이 되었노라고 답변을 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농어촌의 많은 청년들이 정부의 농어민 후계자 선정 절차를 불신하고 있다고 하는 문제가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아주 걱정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농어민 후계자 선정 및 지원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종국	그러나 라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후계자의 선정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후계자 선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하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단 선정된 후계자들에게는 1인당 1,500만원씩, 그리고 전업농가에는 5,000만원씩의 정책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후계자들은 지원자금의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으며, 중앙에서도 이 자금의 규모상 안정정착을 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앞으로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들 후계자들의 구심체로 써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군 단위 사무실의 운영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라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하나하나 다시한번 챙겨보고 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이로인한 행정의 신뢰가 다시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라신찬 (서천군)	• 현재 농지세는 지방세법 제197조내지 제222조에 근거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농지세는 지방세에 대한 평균 비율이 0.1% 미만으로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지세가 대폭 경감되어 대부분의 농가가 면세대상이기는 하나 시기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에게 부담감만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지세액에 비하여 업무량이 과다하여 오히려 인건비대 세수율을 계산하면 농지세란 상징적 개념에 불과하므로 농지세 제도를 폐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 무 국 장 박중규	• 농지세는 농지에서 작물을 재배하거나 재배하게 함으로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필요 경비와 기초공제액을 뺀다음에 3%에서 50%까지 5단계로 구분해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을 해서 과세하는 소득세적 성격을 가진 조세입니다. '84년도 까지는 전체 농가의 72.6%에 해당하는 농가에 대해서 농지세를 부과를 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지난해 연말에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농지세 기초공제액이 280만원에서 배로 올려서 5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저희도의 경우 지난해에는 납세인원이 1만2,000명에 약 11억원의 농지세를 징수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납세인원이 약 900명이고 농지세액은 약 1억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농지세를 지방세로 계속 존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저희도에서도 지난해 8월 27일 내무부에서 개최하는 재무국장 회의시에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농지세를 폐지해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방세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재 무 국 장 박중규	법만 개정해서 농지세를 폐지할 경우에 농지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 국세인 소득세로 부과하게 되어서 오히려 농가의 조세 부담이 가중되는 모순을 초래하게 됨으로 현재 중앙에서도 관련 세법을 개정과 관련해서 신중히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중앙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불합리한 농지세 제도가 개선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준철 (부여군)	• 지사께서는 도청 조기 이전을 기피하는 이유로 도세의 안정기반과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행정적 여건성숙을 들어 가면서 시기 상조라고 하고 있는데, 도세의 안정기반, 사회적 분위기, 행정적 여건성숙의 기준정도는 어디다 두고 있으며, 이러한 조건들이 해소되어 도청 이전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우리 도의 현재 입장은 경기도와	도지사 이종국	• 도청의 이전문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은 물론 지역의 균형개발과 주민의 편익이 보장되어야 하고, 또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반시설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도청 입지선정 문제는 자칫 지역간의 유치경쟁에 과열로 지역안정과 화합을 헤쳐서는 안되며, 주민간의 갈등을 심화시켜서도 결코 안된다는 점을 우선 고려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 이전을 위한 여건의 성숙은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 도세나 행정적인 여건들을 살펴보면, 첫째는 대전직할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준철 (부여군)	경남보다는 입지선정의 주체인 의회가 구성되고 신도시 공영개발등 재원 연출방법까지 제시되고 있으므로 다른 도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타 도에서 20년을 걸렸다고 해서 우리 도는 20년을 기다려야 하는 이론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앞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을 선거하게 되면 지역이기주의가 더욱 팽배해 져서 더욱 어렵게 될 것입니다. 기왕 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제4대 우리 도의회에서 입지 선정만이라도 확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때, 도청이전 준비작업은 지금이 최적기라고 보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조기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입지선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구상등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금년 정기회의시 상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소신	도지사 이종국	시 분리 이후 지난 3년반 동안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주하여 도세 도약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35.3%라는 재정자립도가 말해주듯이 아직도 도청 이전을 추진할 정도의 충분한 여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무엇보다도 200만 도민의 합심과 노력으로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도세를 신장시키는데 큰 힘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또한 도청 이전과 관련한 사회적 분위기에 있어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청 후보지의 선정은 지역사회는 물론 도민 모두의 지대한 관심사인 만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첨예한 이해의 대립으로 도청 유치경쟁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유발될 소지도 있다고 하는 것을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도청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의 수립문제는 어느 정도의 도민적 공감과 인식의 합치점이 형성되고 공통적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준철 (부여군)	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종국	그러나 행정 내부적으로는 앞으로 도청이전과 관련된 기본적인 연구과제를 첫째, 도청 이전을 위한 추진과제의 선정 둘째, 도청 이전을 위한 추진과정과 개발방식 셋째, 도청 이전 규모와 재원조달 방법 넷째, 도청 이전의 입지여건 기준과 원칙설정등 크게 네가지로 삼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면서 행정공무원의 역량이 모자라는 부문은 사계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자 합니다. 도청 이전에 관한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구상등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는 기본적인 방침이 수립되고 제반 관련사항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 의원님들게 심층적으로 보고드린 다음에 협의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 도지사께서는 년초 '92 도정주요업무 계획보고서를 통해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지정과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정지역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서를 납품받아 도의회에 부의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92 상반기중에는 특정지역으로 지정받고, 본격적인 개		• 저 자신이 충청인의 한 사람으로서 백제권 개발에 대한 많은 아쉬움과 함께 새로운 개발을 향한 뜨거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 차원에서 백제문화를 새롭게 재현하기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기울여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기본조사와 계획수립 단계에 머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백제권 종합개발을 위한 그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준철 (부여군)	발사업을 착수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한 특정지역권에 논산군과 연기군을 포함시키도록 건설부에 건의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바라고,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이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또 다시 좌초되고 흐지부지 마는 것인지 도지사께서는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백제시대의 조각문화의 전승을 위한 아사달조각대전을 금년 상반기에 개최한다고 보고했는데 이를 개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의 연계성 홍보와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충청남도	도지사 이종국	동안의 추진상황은 지난 5월말 건설부의 기본조사 용역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게 이루어짐으로서 이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도의 타당성 조사 용역도 추진일정이 늦어졌으나, 9월말까지는 종합보고서 작성과 함께 도의회에 보고하여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정지역 지정문제는 현재 건설부가 중앙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년중으로는 지정절차가 완료될 전망으로 있으며, 내년도부터 실시설계와 함께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둘째, 특정지역의 논산군과 연기군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중앙 관계부처에 여러차례 걸쳐 건의와 협의를 해 오고 있으며, 현재 중앙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충청남도 전체를 백제권의 개념으로 인식을 하고 각종 문화사업을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로, 이 사업 추진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앞으로의 대책에 있어서는 도에서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준철 (부여군)	에서는 '92년말에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계획을 건설부에 승인 신청하여 금년 상반기에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금강종합개발계획용역을 '91년 12월에 발주하여 금년말까지 완성, 제2차 충청남도 종합개발계획용역등 금년말까지 납품받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대규모의 중장기종합계획들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사전 또는 중간과정에 민의수렴 차원에서 도민대표로 구성된 의회에 당연히 중간보고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견은 어떻습니까? 또 이러한 대단위 계획들이 상호 연계성과 실효성이 확보되었는지, 지사께서는 점검해 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와같이 대단위 사업계획을 밀실에서 수립함으로써 집행과정에서 관련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사고, 급기야는 사업추진 도중에 벽에 부딪치는 우를	도지사 이종국	본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된다는 기본인식을 갖고 '89년부터 도민의 개발의지를 중앙요로에 건의한 결과, 이에 따른 용역비로 국비 19억원을 확보하게 되어 기본조사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고 설계 용역도 곧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회와 도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도와 관련 시·군의 체계적인 추진태세를 구축하고 중앙 관계부처의 폭넓은 지원과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2001년까지 3단계로 구분하여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아사달 조각대전의 개최문제는 당초 백제문화의 전승과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아사달 조각대전을 구상하고 금년 상반기중 개최할 것을 검토해 왔으나 재정상의 어려움과 함께 무엇보다도 먼저 백제 조각사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현재 연구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완료되는 백제 조각사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아사달 조각대전을 개최하는 문제는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준철 (부여군)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차기 임시회때는 그 동안 발주된 대단위 용역사업추진상황을 중간 보고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第13節 第66回 臨時會

Ⅰ. 槪 況

1. 開會背景

○ 제6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鄭善興의원외 20인으로부터 조례안과 특위구성 결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992년 9월 22일 집회공고를 실시하고 92년 9월 30일 14:00에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회기 : '92. 9. 30 ~ 10. 9 (10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2. 9. 30(수) 14 : 00	본 회 의 (제 1 차)	1. 제66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 3. 92년도 수해상황 및 복구추진상황보고	
15 : 00	교육사회 위 원 회	1. 교육행정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92. 10. 1(목) 11 : 00	농림수산 위 원 회	1. 충청남도도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 2. 농어촌개발국소관사업추진계획보고 가. 수해복구 계획 나. 추곡수매 계획 다. 가을경제정리사업추진 계획 3. 무허가축사양성화추진방안보고 4. 농협중앙회충청남도지부당면사항보고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2. 10. 1(목) 13 : 30	지역경제 위 원 회	1. 대한무역진흥공사대전 · 충남무역관 현황보고	
10 : 00	건설위원회	1. 충청남도도립공원관리조례개정조례안 2. 보령댐건설에따른광업권보상요구관한철회동의의건 3. 서해안개발사업특별회원회구성결의안	
'92. 10. 6(화) 10 : 00	운영위원회	1. 충청남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 00	내무위원회	1. 충청남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화재예방조례안 4. 백제문화권종합개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4 : 00	본 회 의 (제 2 차)	1. 서해안개발사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백제문화권종합개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도정에관한질문	
'92. 10. 7(수) 10 : 00	교육사회 위 원 회	1. 충청남도교육 · 학예에관한공동도서관설치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92. 10. 8(목) 10 : 00	백제문화권 종 합 개 발 지 원 특 별 위 원 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백제문화권종합개발사업추진상황과 금후계획 보고	
14 : 00	서해안개발 사 업 지 원 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서해안개발사업 추진상황보고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2. 10. 9(금) 11 : 00	운영위원회	1. 충청남도에대한국정감사거부의결안 2. 의사일정변경 협의의 건	
14 : 00	본 회 의 (제 3 차)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충청남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길연의원외10인) 3.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조길연의원외 10인) 4. 충청남도화재예방조례안 5. 충청남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교육 · 학예에관한공동도서관설치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남도도립공원관리조례개정조례안 9. 충청남도도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 10. 충청남도에대한국정감사거부결의안 (이홍근의원외11인)	
'92.9.21(월) 11 : 00	운영위원회	1. 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 건 가.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가칭) 나. 백제문화권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가칭) 2. 제66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 협의의 건	비회기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수	안 건	비 고
계	17		
조 례 안	7	1.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결 의 안	3	1. 백제문화권개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 서해안개발사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충청남도에 대한 국정감사거부 결의안	
동의승인안	1	1. 충청남도도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청 원	1		
기 타	5	1. 제66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92년도 수해상황 및 복구 추진상황 보고 4. 도정에 관한 질문 5.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충청남도백제문화권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7인)

(제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趙日東 議員(위원장)
- 朴元來 議員(간사)
- 羅榮珍 議員
- 崔源植 議員
- 李基鳳 議員
- 李準喆 議員
- 禹智命 議員

○ 충청남도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13인)
(제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田溶鳥 議員(위원장)
- 金珍經 議員(간사)
- 尹用一 議員
- 李時雨 議員
- 金鍾煥 議員
- 李甲俊 議員
- 李相敦 議員
- 姜信國 議員
- 李東旭 議員
- 金成振 議員
- 李弘根 議員
- 全泳俊 議員
- 金文圭 議員

4. 條例案 處理內譯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123	충청남도화재예방조례안	도지사 ('92.9.23)	내무	○소방법이 1991. 12. 14 법률 제4419호로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시·군 조례로 제정 시행되어 오던 것을 충청남도 조례로 제정하면서 시행중 도출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92. 10.9	'92. 10.12	원안
118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공공도서관설치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감 ('92.9.8)	교육사회	○ "공주유규도서관", "보령웅천도서관", "태안도서관"이 준공(예정)됨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 ○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30조제5항 부칙 제7조(1991. 4.8 대통령령 제13,342호)에 의하여 1992.1.1부터 도서관 입관료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	〃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119	충청남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趙吉衍 의원외 10인 ('92.9.23)	의회운영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관련한 별표5의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가 개정됨으로써 ○충청남도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함	'92. 10.9	'92. 10.12	원안
120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을 심사하도록 되었으나, 상임위원회중 내무위원회 소관에 민방위국에서 분리된 소방본부를 민방위국 다음에 삽입하고자 하는 것임	〃	〃	〃
121	충청남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92.9.23)	내무	○현행 조례에는 건축주가 건축한 공동주택용 및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으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설립된 주택조합이 조합원의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과세하고 있어 이들 조합원들이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	〃	〃	〃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이에 따라 주택조합이 조합주택을 건설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과 등록을 조합명의로 하더라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여 건축주가 건축한 주택과 주택조합이 건축한 조합주택의 과세 형평유지로 민원을 해소하여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함			
122	충청남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92.9.23)	내무	○현행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자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공동시설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같은 사회교육 시설인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등록되는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도세면제 혜택이 없음 ○이에 따라 사회교육 진흥을 위한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에 대하여도 도세과세면제 혜택을 줌으로서 과세의 형평을 기하고 사회교육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92. 10.9	'92. 10.12	원안

5. 第66回 臨時會 道政 및 敎育行政에 關한 質問·答辯要旨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세호 (태안군)	• 환경문제는 이제 인류 최대의 당면 문제입니다. 지금의 환경현실을 타개하고 이 땅을 오염으로부터 구하는 첫 순서가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으나 우리는 정책의 빈곤에서 오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들, 또 국민이 환경에 대한 맞은 관심도와 그리고 관련법규의 미비와 비효율성 또한 조정기능의 부족과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서도 뒤쳐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환경지도 행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한 후 전문성 결여와 무지로 인한 수동적 자세로 일반 쓰레기는 물론 산업폐기물과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그리고 토양오염, 심지어 수질오염 등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 도의 환경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여 환경 오염으로 부터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각 분야	도지사 홍선기	• 세계 어느 선진국도 우리와 같은 산업혁명, 산업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공해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산업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30년간 개발행정의 역사를 펼쳐오면서 많은 개발의 부작용이 환경오염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는 80년대이후에 환경보존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김세호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저는 자인합니다. 도에서는 그동안 서해안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또 이와 관련해서 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개발에 앞서서 자연환경을 먼저 고려하고 개발과 자연을 서로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도의 개발정책의 방향과 기조를 전환시키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마는 또 개별적인 사업의 추진에도 충분한 환경의 검토와 실질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이렇게 제도화 하고 있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세호 (태안군)	별로 그리고 유형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선기	수질문제, 대기오염문제 또 토양오염문제,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등 분야별로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마련해서 도민에게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이 공해문제는 제가 시장을 조금 해보니까 절실히 느낍니다마는 행정기관의 힘만 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우선 가정에서부터 학교에서 부터 사회에서 기업에서 모든 사회 구성원이 환경공해 문제에 대해서 같은 인식을 하고 양을 줄이는 문제, 분리수거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동참을 해주어야 된다. 또 기업 스스로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에는 반드시 그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다시 말씀드리면 소음공해, 매연공해, 냄새공해등에 대해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우리 충청남도에 새로 입주되는 공장, 또 새로 시설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립니다마는 꼭 영향평가를 하고 영향평가를 받은후에 필요한 행정적인 인·허가 절차를 위하겠다 하는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의 제 의지만을 이렇게 밝혀 드립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세호 (태안군)	• 충청남도 농정에 관한 제반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현재의 방법보다는 좀 더 과학적이고 확실한 통계자료로 계획을 수립해야 마땅하거니와 지방화시대에 맞는 실질적인 시·군 통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간의 통계업무를 말씀드리면, 각 시·군통계계와 농수산 통계 출장소가 있는데 시·군통계계에서는 2~3명이 각 읍·면으로부터 자료를 보고받으나 잠정적인 수치에 불과한 신빙성이 없는 수치이고, 통계출장소에서는 중앙 또는 도를 모집단으로 하는 표본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통계로서는 맞지 않는 사항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도의 농정계획은 중앙으로부터 받은 지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 후 각 시·군 실정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여기에 대단한 문제점	도지사 홍선기	• 농업통계가 정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의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통계조사의 방법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도 전역에 걸친 모든 농업통계를 전수조사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농업통계소에서 하는 표본조사에 의한 통계방법이라든지 이런것들도 해마다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마는 김세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행정통계가 실질적으로 주민의 믿음을 사는 방향으로 통계의 조사 과정을 공개하고 정확히 하며 새로운 통계조사 방법을 도입 한다고하면 전수조사 만큼은 정확하지 못하겠지만, 대체적인 흐름은 파악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단기적으로는 우선 통계전문기관에 통계를 의존하고 좀더 시간을 두고 전수조사에 가까울 정도로 정확한 조사기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는데 본인 자신도 의지를 가지고 행정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버스공영 문제라든지, 서해안 해상도로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세호 (태안군)	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농어촌발전종합대책' 등은 황폐일로에 있는 우리 농촌을 살리려고 막대한 예산으로 활성화시키는 일은 우리 농어민이 기대하는 바 크다고 생각되는데, 이처럼 국가의 대사업이며 우리 농어촌을 일대 혁신시켜 살기좋은 우리 땅으로 만들기 위한 대 역사이면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시에 충분한 자료를 수집 분석해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이 필요한데도 확실치 않은 통계를 가지고 농어민의 의사를 외면하고 관주도적인 일방적인 정책이 이루어이고 있는 현실속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실질적인 통계가 합리적임을 인식하고 지방화시대에 필요한 과학적이고 실질적 통계는 물론 타당성 있는 조사를 획기적으로 시행해서 앞으로의 농정에 활용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세호 (태안군)	• 지난 4월 본 의원이 속해있는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전원이 버스운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박3일 동안 현지확인을 하여 주민들의 교통불편 내용에 대해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사항에 대해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버스업계에서는 요금을 더 안올려주면 학생할인을 폐지하고 수익 낮은 노선은 운행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요금인상으로 해결된다면 대중성, 공공성을 생각하여 요금인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봄에 23.5%의 버스요금을 올렸고 또다시 요금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정책과 시책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업체도 나름대로 3D현상의 여파로 운전기사 구하기도 어렵고 경영수익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 그동안 버스업계는 운전사만 저렴한 버스요금, 자가용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등에 의한 경영수익의 악화를 호소하고있는 한편,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요금인상과 낮은 서비스수준에 따른 불편을 겪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세호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버스공영제도는 일부 선진 외국의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저희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1967년부터 1974년까지 서울시에서 공영버스제도를 운영한 결과 재정부담의 과중과 전문성 결여등으로 실패한 사례가 있어서 이 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비록 공영제는 아니지만 공영제적 요소를 도입해서 금융지원이나 세제지원, 결손 보증금지원 확대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수립중에 있어서 앞으로 정부의 이와같은 개선대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해서 필요한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세호 (태안군)	선진외국에서는 이미 버스공영제를 도입하여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버스공영제를 실시, 대중교통 이용주민 불편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 역 경 제 국 장 노규래	경우 버스공영제 시행문제를 적극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김진경 (서산군)	• 서산, 성연, 지곡 대산간 도로 32㎞는 농어촌의 마을안길 같은 지역인데도 입지해결은 전혀 아니하고 극동, 삼성, 현대라는 대기업을 6년전부터 영입시켜 년간 국세 20억원, 도세 1백50억3천만원을 받아 크게 국·도정에 도움이 되리라고는 믿습니다만, 이 지역에는 현재까지 더불어 같이 살아간다는 공감대는 전혀 없고 크고 작은 교통사고만 1일 3~4건으로 고귀한 생명을 잃은 사람만도 매년 150명	도지사 홍선기	• 우리 도로써는 대산이 급격히 도시화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는 대산지역의 도시행정 수요, 개발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도 단위의 출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미 내무부에 설치를 건의한바 있어서 계속해서 내무부와 절충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정부 입장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새로운 기구, 증원의 억제방침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필요성을 계속 역설해서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진경 (서산군)	이 넘었고 불구가된 사람은 부지기수에 달해 가정이 파산지경이 된 수가 너무 많아 발전보다는 오히려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교통지옥의 참혹한 현실을 감안해서라도 산업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추진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장기적이고 적극성이 없는 비현실적이며, 비록 국토관리청의 일이라 할지라도 충남 도정이 진정 약하고 그늘진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자의 편의행정만 꾀하는 것으로 주민들은 불안속에 불평이 크며, 전국에서도 교통공해가 큰 지역인데 비해, 이 도로는 실질적으로 언제 착수하여 언제 완공하는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업들의 지역환수 이득금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으며, 기업은 이득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여 지역개발에도 참여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도지사 홍선기	두번째 항만시설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대산공단만을 위한 무역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한·중 수교가 되었을 때 어느곳이 과연 서해안의 거점역할을 할 것인가, 목포가 할 것인가, 광주가 할 것인가, 군산이 할 것인가, 우리 도의 대천이 할 것인가, 서산이 할 것인가, 인천이 될 것인가, 도 별로 여러 가지 경쟁적으로 주된 거점 지역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산항의 경우는 여러 가지 천혜적인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대산지역에 국제적인 무역항을 설치하는 문제를 깊이있게 검토를 하고 기회가 있는대로 중앙 정부와도 건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다음에 개발이익의 대산지역에 대한 환원문제, 그것도 서산출신 의원님으로써는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현재 그 지역에서 거둬들이는 개발이익금만 가지고 그 지역에 전부 투자를 한다고 보면 균형 개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진경 (서산군)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선기	도시에서 받은 세금을 농촌에 투자하고 또 개발수요가 많은데에서 받은 개발이익금을 개발이 다소 소외된 지역에 투자를 해서 전체적인 균형발전과 개발을 조화있게 이룩하는 것이 재정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김진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저희 예산에서 약 10억원을 계상해서 일부 환원투자가 되었다고 합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받아들인 개발환수금 보다는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 깊이 이해를 해 주시면서 앞으로 대산공단 항만청 설치, 또 대산신시가지 조성등에 막대한 도비 또는 국비가 투자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 민주주의라 함은 국민이 거주 및 주거의 자유를 기본법으로 하는데 그에 반해 모든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 필요한 물건들을 자유스럽게 사고팔며 살아가도록 하면 불평과 불만이 없을 것을 말만 거주이전 및 주거의 자유생활이라 해놓고 농어촌의 국민들만 이		• 우리의 경우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들어오던 농지 관리의 기본 철학입니다. 최근에 와서 농지가 선량한 농민들, 실지 경작을 해야될 농민들의 손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도시인의 투기대상이 되고 또 농지가 황폐화 되고, 이런 것을 방지하고 오직 우리 농촌은 농민이 땅을 실경작하는 사람에 의해서 소유가 되고, 경작이 되고, 경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진경 (서산군)	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여 농사일만 누대를 하라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사유재산을 허가를 받아 사고 팔아야 하며, 또한 지역을 묶어 놓고 농촌땅은 수입이 없는 농어민끼리만 사고 팔도록 하여 농어촌 땅값은 점점 하락하고, 도시 땅값은 날이 갈수록 올라가게 하여 농촌과 도시의 빈부의차이를 극심하게 만들고 있는가? 지금 농어촌에는 자녀교육비와 혼인 및 분가등 호당 1,000여만원이 넘는 각종 부채등으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점점 생활의 희망마저 잃어가는데 젊은시절에 노력하여 장만한 전답이라도 정리하여 부모된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자녀들이 국가시책에 대한 불평불만이 없도록 농어촌의 땅도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농업도 여유있고 능력있는 자가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고 팔며, 대농화 내지는 기	도지사 홍선기	영이 되어야 된다 하는 원칙에 의해서 정부는 우리 농촌진흥 10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42조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농업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농지가 소유가 되어야 하고, 또 외부인의 투기대상이 되지 말아야 되고, 또 이농을 하는 경우에 논을 팔 때에는 그 지역에 남아 있는 사람이 땅을 사주게 되면 호당 경지면적 규모가 좀 커져서 점차 농업을 기계화하고 근대적인 기업농을 경영할 수 있는 전제적인 기반이 닦아 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정책적인 차원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최근에는 실제 거주기간 6개월 이상이던 것을 3개월로 단축을 해 줄 것을 저희 도에서도 이미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 상호간에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를 않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고, 다만 매매 과정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불편문제는 저희가 행정적인 지도를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진경 (서산군)	업화되어 4,200만 국민 어느 누구도 슬기롭게 살수 있는 제도를 입안하여 빈부의차를 제도적으로 줄여서 농어촌 경제도 활성화 되어야 하며, 전국토 균형발전이 되도록 해야할 필요가 절실한데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전국의 농어민의 소리임을 직시하여 정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충청남도내 20개 시·군의 어느 지방이고 국가나 도·시·군·교육청이 필요로 하는 주민의 땅은 귀중한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희사 내지는 매각을 요구하여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에 반하여 부득이 꼭 필요하여 국공유지 일부 짜투리 땅을 사용하여 생계를 꾸려가는 도민이 우리 도만해도 약 5,500여 세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의 대기업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엄청난	재 무 국 장 박중규	•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 소규모 국·도유지 재산을 매각코자 관리 계획에 반영한 면적은 국유지가 171필지에 7만8,000여평, 도유지가 12필지에 2,300여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농경지와 대지의 경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경지의 경우는 절대농지는 1,000평, 상대농지는 400평, 기타는 200평 이하의 면적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또 대지의 경우는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그 대지안에 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지시법에 의해서 준공인가를 받은 건물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진경 (서산군)	국공유지를 하루 아침에 몇십만평씩 불하해 주면서 어찌하여 원주민에게는 불하를 안하는가? 현재 '87년도부터 지금까지 대기업들에게 충청남도 내에 들어있는 공유재산은 얼마나 불하해 주었으며, 그 당시 불하가는 얼마인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대를 고향을 지키며 어렵게 살아가는 약자의 주민들에게는 불하를 안해주고 기업에게는 싼값으로 불하해 준 뒤 그 지역을 자동으로 공업지역으로 만들어 주고나서 그 뒤에 지역 주민들에게 고가로 불하하려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앞날의 삶을 희망되게 설계하여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법규를 고쳐서라도 불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이들 짜투리 땅을 정리하여 유익한 재산을 조성하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재 무 국 장 박중규	이 있는 소규모 토지로써 시 지역의 경우는 90평, 군지역은 120평 이하인 면적에 한해서 그 건물 소유자의 매수 요청이 있을 때 수의계약 방식으로 해서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매각한 국·도유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매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3호에서 2년 이상 배부받은 자에게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87년도 당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7년도에 두산개발에서 초지로 사용하고 있는 도유지 5,891평 1,000만원에 매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서 공업단지내에 있는 국·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0년에 국·도유지 12만6,870평을 공단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삼성종합 과학에 150억4,200만원에 매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0년에 도유지 4,902평을 역시 공단사업 시행자인 주식회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진경 (서산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도민을 위한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데 높으신 행정지도력을 지닌 지사의 명쾌한 답변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재 무 국 장 박중규	사 현대석유화학에 5억9,100만원에 매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원창 (아산군)	• 지금 연기군수의 관권부정선거 양심선언에 대한 지사의 견해가 어떠한지, 또 앞으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공명선거를 치르기 위하여 충남공무원 1만3,336명의 책임자로서 선거에 임하는 자세와 각오는 어떤 것인지, 사실 공무원이 '91년 통계를 보면 1만3,336명 중에 몇몇사람이 선거에 개입되어서 수많은 공무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이 5, 6명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물러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합니다.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	도지사 홍선기	• 선거때 특정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원 활동을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본인은 전 공직자, 저 자신부터 대통령께서 내리신 9.28결단의 정신에 따라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는 법정업무를 정확하게 관리하면서 엄정하고 불편부당한 자세를 견지하는 가운데 행정의 선거개입 시비가 없도록 원천적으로 지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정치적 전환기에 특히 이완되기 쉬운 사회기강, 또 조직내부의 기강확립에도 중점을 두면서 주민 본위의 실질적인 봉사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우리의 쇄신된 모습과 달라진 행정의 모습이 주민들에 의해서 투영이 되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도정에 대한, 또 행정에 대한 믿음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역점을 기울여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원창 (아산군)	화적으로 생활의 영역에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또 어느 특수계급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사실 국민 대다수 여론에 의하면 축소 은폐했다고 합니다. 또 양심선언한 사람은 구속되고 부정을 지시하고 거액의 돈을 준 사람은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검찰에서 더 조사하겠지만 사실 우리 법에는 11조에 엄연히 평등원칙이 있습니다. 본의원이나 대다수 국민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았나 하는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 시·군에 지정된 사업에 집행하지 않고 타 종목에서 집행한 사실, 과연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또 포괄사업비를 우리가 1차 추경에서 6월달에 30억원을 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때 라신찬의원과	도지사 홍선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종국 전 지사께서 9월18일자로 면직이 되고, 9월22일자로 정식 기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장본인 한준수는 9월20일 구속 기소와 함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가 회부되었고, 김영중 전 보령군수는 9월 29일자로 직위해제와 동시에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양하고 예측불가능한 지방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당연히 국민의 세금을 받아 예산에 계상해서 주민대표 기관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계상할 당시에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새로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원창 (아산군)	본 의원이 예결위원회에서 정하용 기획관리실장에게 먼저번 풀사업비가 선거용 선심용으로 썼기 때문에 이번만은 적어도 8월, 늦어도 9월까지 집행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하용 기획관리실장은 분명히 답변에서 추경예산 19페이지, 81페이지에 오해와 시비의 소지가 없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기중에 9일까지 집행을 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 선거 이후로 집행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본의원이 도지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냐 하면 10월이나 11월달에 집행하게 되면 시·군에서는 어느 모의원이 돈을 끌어 왔다 해서 선심성 선거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도지사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도지사 홍선기	운 행정수요가 생길 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을 일정액 계상해 놓고, 도지사가 또는 시장·군수의 판단하에 쓰는 예산이, 소위 생활행정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예산이 바로 포괄사업비이며 기관장의 재량성이 다소 인정되는 사업비입니다. 어떤 뜻에 쓸 것인가? 저는 앞으로 선거기간이라고 해서 행정수요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거기간 동안에 않던 포장을 하고 가로등을 달아주면 주민들은 마치 예산을 투입해서 행정선거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제가 9일부터 도민과의 대화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시·군을 통해서 시·군에서 건의된 사항들을 우선순위를 골라서 각 지역별로 균형이 맞게 집행을 하되 그 사업은 다수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 어려운 이웃들이 사는 달동네, 또는 가로등, 농촌지역의 버스 승객 대기소, 마을 안길의 포장, 시장의 골목포장, 공중변소 이런 것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 각 주민들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원창 (아산군)	• 이제 우리도 도청문제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도청이전하는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이 한청수 지사나 또는 이종국 지사가 도세 확보가 되어야 이전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도세확충이라는 것이 어느 기준으로 한것인지, 홍선기 지사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새로 부임한 지사께서는 이번 의원들이 도청이전 문제를 특별위원회까지 다음 11월에 구성한다니까 홍선기 지사는 우리 의원들에 보조를 맞춰서 이번 본 예산에 실태조사라도, 기초조사라도 할 예산를 우리 의회에 요구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지사 홍선기	• 행정적인 불편, 생활의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도청을 하나 옮기는데는 막대한 재정적인 수요가 있고, 또한 그 위치를 어디에 정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도민의 사기와도 관련된 문제이고, 지역의 개발과도 관련을 깊이 맺고있기 때문에 쉽사리 어느 지역에 도청을 언제 옮긴다고 신임 지사가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경남 도청이 부산에서 옮길 때 20년이 넘었습니다. 마산하고 진주하고 서로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하게 대립되는 바람에 제3의 도시인 창원을 만들어서 창원으로 시청을 옮긴 선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전에 직할시가 된 인천직할시, 대구직할시, 광주직할시가 현재도 아직 도청이전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깊이있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또 문제는 사전에 도청 이전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선결문제이고 어느 지역이 되었든 간에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도지사 홍선기	대다수 도민들이 공감을 느끼는 지역, 그런 지역으로 이전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 아침에 짧은 기간동안에 이룩될 문제는 아니며, 여기에 대한 필요한 행정적인 연구도 해 가면서 자체방안을 마련을 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가름합니다. 다음에 도청이전에 대한 기본구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도 깊이 있게 다루어서 앞으로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찬규 (보령군)	• 먼저 의료원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래 병원이란 저소득층 및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1982년부터 '83년 사이에 홍성등 도내 4군데에 설립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작 200만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영세민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도립병원이 내용인즉 몇사람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는데 급급하였다는 오해마저 살 우려		• 잘 아시다시피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한 대가를 받고 양질의 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을 설립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선이 적정 대가냐, 그 경영수지면에서 최소한도 경영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선, 그런데 현재 우리는 병원이 그런 선까지 올려 받자면 많은 부담을 지기 때문에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 현재 이런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는 측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의료원이 기본적으로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의료원의 의무직인 의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오찬규 (보령군)	가 크다는데 이를 지적하지 않을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밥보다 고추장이 많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는 이를 두고 한 말이 아닌가 할 정도로, 병원이라면 의례 의사, 간호원, 간호보조원이 주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 왔는데 의외로 의료직보다 사무직이 많은 사실을 확인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지역의 종합병원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보령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직이 73%, 사무직이 27%, 순천향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직이 72%, 사무직이 28%로 뭔가 단적인 예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홍성의료원 같은 경우는 의료직이 86명인데 사무직이 1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서산의료원은 의료직	도지사 홍선기	사, 의료직과 사무직, 보건직, 기능직으로 네 직군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외형적인 직렬상으로 구분할 경우에는 사무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마는 그 중에 보건직과 기능직은 대부분의 의료기사, 간호보조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환자의 진료업무와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실질적으로 보면 의료업무 종사자가 약 70% 정도 되고, 순수한 일반 업무 종사자는 30% 정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오찬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수한 의료진을 최대한도로 확보하고 가능하면 일반 사무직을 줄여서 경영이 합리화 되는 선에서 운영이 적정하게 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오찬규 (보령군)	이 69명, 사무직이 78명, 천안같은 경우는 의료직이 58명, 사무직이 72명, 공주의료원같은 경우는 의료직이 64명, 사무직이 65명등으로 홍성의 경우는 사무직이 의료직에 비해서 51% 가까이 많은 현상을 보여서 일반 의료기관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본 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통상적으로 병원이라면 의료직이 절대 다수로 구성되어야 하고 사무직은 의료직을 보필하는 인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소 차이는 있을지라도 도립병원 4곳이 하나같이 사무직이 의료직보다 많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지사께서 도내 타 기관에도 이와같이 불필요한 공무원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 주시고,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구합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오찬규 (보령군)	• 그간 도내 각지에서는 핵폐기물 처리장이다, 쓰레기 처리장이다, 화력발전소 등 각종 공해시설을 자기네 지역으로 오지 못하도록 지나치리 만큼 심각한 반대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이 그대로 두어서도 아니되겠지만 이를 무시하는 일은 더욱 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행정당국이 근원적인 계획의 결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어느 지역이든 공해업체가 설치될려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상호 상식선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와같은 공해시설을 설치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피해보상적 지역개발이 보장되어 그러한 조건이 병행되어야지, 그런 조건이 병행되지 않고서는 민원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지사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남의 예를 들어	도지사 홍선기	• 오찬규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력발전소, 쓰레기 매립장등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혐오시설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혐오시설이라 하더라도 이런 시설이 없으면 우리가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화조도 있어야 하죠, 하수종말 처리장, 분뇨 처리장 이것이 어느 지역인가는 있어야 도시민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필요성은 절감하면서도 그 시설들이 자기 지역에 오는 것을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지역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팽배하고 있어서 행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입장입니다마는 요즘에는 이런 혐오시설이라는 말대신에 사회 공익시설이라고 합니다. 우리 도의 경우도 아까 오찬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공익시설은 전부 공해문제가 수반되기도 합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적으로 꼭 필요한 공공시설이고 주민생활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기본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차원에서는 공공용지의 취득이라든지, 손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오찬규 (보령군)	보더라도 서천, 보령 화력발전소, 논산 분뇨처리장, 보령의 사격장등을 예로 들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지역개발과 전혀 무관하고 지역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을 무작정 국가를 위해서 피해를 감수하고 수용하라는 것은 이제는 설득력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모든 시설이 그렇듯이 시설 초기에는 그런대로 공해방지시설이 잘 가동되는 것 같지만 그 기관이 목표로 하는 모든 목적이 달성되면 공해는 더욱 더 심해지는 것으로 도민이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환경청의 환경평가를 우리 도민 상당수가 믿으려 하지 않는데 있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간 푸대접 충남이라서 국가발전 중기에는 맨 뒷전 신세만 지더니 이제는 공해시	도지사 홍선기	보상에 관한 특례법 또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을 개정해서 그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등 다른 공공시설입지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서도 이를 제도화 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정부차원의 법적 제도적인 보상대책의 강구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개발에 따른 이익이 개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과 주민들에게 환원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개별적인 공공시설의 입지를 결정할 때에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함께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과정에서 오찬규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피해보상과 지역개발방법이 충분히 고려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오찬규 (보령군)	설만 앞다투어서 우리 충남으로 오는 것 같아서 더욱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사께서는 지금부터라도 모든 공해시설이 우리 지역에 가능하면 올 수 없어야 되고, 꼭 와야 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개발을 전제로 하고, 허가라든지 제반조치를 해 줘야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공주군)	• 보조금 및 재량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및 재량사업비가 원칙없이 지원되고 있어서 그로인한 불평과 불균형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바, 국가의 양여금처럼 조례 또는 도지사 훈령으로 원칙을 정하여 공정하고 균형있는 예산의 투입이 이루어지도록 할 용의를 묻고 싶습니다. 행정구역 개편문제입니다.	도지사 홍선기	•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의지가 말단의 주민에게 침투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한 단계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앙정부, 현정부, 촌정부, 촌이 기초자치단체인데 일본의 촌은 우리나라의 3개 면 내지 4개 면을 묶은 정도의 규모입니다. 또 현은 150만 내지 160만 정도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중앙에 연방정부가 있고, 주정부가 있고, 「카운티」가 있고, 이 3단계인데, 우리는 중앙정부, 시·도, 시·군, 읍·면 4단계를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유재원 (공주군)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행정력의 능률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현 자치단체의 구성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기초단체가 동·면 단위에서 시·군 단위로 격상되므로 해서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단위 자치단체의 위상과 역할이 중앙정부와의 중간에 끼어 사실상 비능률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구획이 재정리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바람직스런 행정체계를 위하여 도, 시, 군, 읍, 면, 동 체계를 한단계 없애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를 묻고 싶습니다.	도지사 홍선기	가지고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앙시책이 말단까지 침투되는데 경제성이 적다, 굴절될 염려가 있다, 또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중앙정부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한 단계가 더 있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관철되지 못하고 굴절되는 경우가 있고, 또 행정적으로도 낭비의 요인이 된다다는 등 많은 행정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이것을 지적하고 현재도 내무부에서 깊이 연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을 빨리 실현하지 못하는 것은 막대한 재정적인 소요가 있고, 또 오랫동안 관행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연기군하고 공주군을 합해서 무엇을 만든다고 할 때 공주에 살던 사람이 연기로 본적을 옮겨야 합니다. 공주에 사는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는 논산으로 가야 하고 이러한 행정구역의 개편에서 오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심리적인 갈등, 재정적인 막대한 수요, 또 일시에 이런 것들을 바꿈으로 해서 오는 행정적인 혼란 이런 것 때문에 알면서도 당장 개편을 못하는 것입니다마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유재원 (공주군)	• 도농간의 경제적 격차는 편협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자산가치의 변화에서 그 주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농촌 땅값의 하락과 매매의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는데 비해서 도시에서는 같은 기간동안 자산가치가 5배~10배에 이르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었습니다. 물론 년간 생산소득도 도시와 차이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더욱더 농촌의 빈곤감을 낳게 하는 자산가치 등 락격차로 인한 상대적 빈곤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이러한 농어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0년간 42조원을 집중	도지사 홍선기	라도 다단계화 되어있는 행정계층을 줄여야 된다고 하는 논리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할 사람도 없고, 이런 문제는 현재 중앙에서 깊이 연구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에서도 필요한 경우에 이문제를 중앙에 제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제 정부에서도 농어촌 구조개선 10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년간 42조원을 농촌구조개선을 위해서 투자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또한 우리가 고소득 작목을 새로 개발하고 농업의 경영기법을 혁신해서 농업도 이제는 원시적인 경종농업이 아니라 이제는 가공농업, 고소득 작목의 소득산업으로 점차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정부에서도 기울여 지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이와같은 정부정책에 맞추어서 우리 충청남도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을 입안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계획의 입안과정에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시책, 대단히 적절한 지적이십니다마는 농촌이 가지는 특수성 때문에 사실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시책을 개발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유재원 (공주군)	투자 하겠다고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실질적인 알맹이는 찾기 힘들고 피상적인 숫자 나열에 불과할 뿐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농어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 입안되어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자산가치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도지사의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선기	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점 이해를 해 주시면서 다만 농어민의 자산가치 제고문제, 이런 문제도 농촌이 점차 부유하게 되고 농촌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가 높아지면은 자연히 귀농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농촌이 근대화 되고 도시보다도 훨씬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농촌이 자리 잡아지면 자연히 농촌에 대한 가치인정이 커질 것이고 또 지가문제도 도시와 큰 차이가 점차 줄어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도 계속 하나의 도정의 큰 과제로 삼아서 깊은 연구가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조금과 재량사업비문제, 노인복지기금문제, 관광개발사업문제, 추곡수매물량문제, 또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문제에 관하여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불요불급한 용역비예산 절감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 획 관 리 실 장 정하용	• 현재 도에서 발주하고 있는 각종 용역은 도의 관계 실·국장과 2인 이상의 외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그 용역의 필요성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유재원 (공주군)	중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제외한 예산 총 5,180억원중 용역비는 112억원으로 2%가 넘게 책정 집행되었습니다. 각종 개발계획의 구상과 수립을 위한 용역을 함에 있어서 지역여건 변동이나 재원의 효율적 투자를 예측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개발계획이 사장되고마는 사례는 바로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입니다. 고도의 기술이나 장기간의 시일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것 마저도 외부용역을 줌으로서 예산의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능률화의 전산화로 인적, 물적 절약의 방법과 현실적인 기구의 통폐합 방안, 지방행정 업무의 민간으로의 위탁등 예산절감 운영방안을 추진함으로서 주민복지 예산에 더많은 투자를 이룰수 있는 방법등	기 획 관 리 실 장 정하용	과 타당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엄격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서 학술 및 종합기술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성과품에 대해서도 실효성과 다른 부문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키 위해서 수시 검토를 거치면서 조정기능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재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실효성이 적은 용역사업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용역계획의 수립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용역심의를 더욱 강화해서 나가면서 용역의 실효성과 연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무의 자동화, 전산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합리적인 조직과 인력의 관리를 통해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집행을 억제함으로서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유재원 (공주군)	을 모색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세 (연기군)	• 연기군청에 따르면 '91년2월19일 문화부장관 지시사항을 충남지사로부터 이첩 시달받아서 지방문화원 운영 및 사업활동방향 통보를 한 이래 오늘까지 무려 1년반이 넘는 시일을 분규수습의 실마리조차 잡히지 않고 있는데 비해서 본의원뿐만 아니라 연기군내 관심있는 분들의 안타까움을 넘어서 분노를 금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제와서 분규당사자간에 누구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고자하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분규의 장기화에 대한 책임을 묻고 조속한 정상화로 분규를 빚어낸 연기군민의 불화를 일소코자 하는 뜻일 뿐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91년8월6일자 '92년1월14일자 '92년1월24일자 '92년4월18일	도지사 홍선기	• 조치원 문화원 운영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종전의 문화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새로 선출된 원장의 취임승인 신청서를 연기군에서 반려한 뒤 별도의 새로운 문화원 창립을 추진하므로써 문제가 발단 되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최근에 연기군의회와 지역인사들이 기존의 조치원 문화원을 모체로 해서 정상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10월중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원장과 임원이 선출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연기군에서도 조치원 문화원에 대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 정상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필요하면 운영실태를 한번 점검을 해서 필요한 행정적인 또는 재정적인 지원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원이 진정한 지역문화의 구심체로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장, 군수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저희 도에서는 문화원의 발전을 위한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강기세 (연기군)	자 등 4차례에 걸쳐서 1차 감독기관인 연기군의 분규 수습을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등을 지시한 바는 있으나 도 관계관이 직접 개입하거나 조정한 흔적은 별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면서 책임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조치원 문화원의 장기분규 원인을 도 당국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둘째, 도 관계 당국에서는 수습 노력이 있었다면 그 실적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부에서의 별도 조치사항은 그간 없었는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1차 감독기관이 군청으로 되어 있는바 도지사는 문화부와의 사이에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밝혀 주시고, 비록 감독기관이	도지사 홍선기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질문에 대신합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강기세 (연기군)	아니라 하더라도 소상한 수습의 책임은 도로 되어있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 다음은 내고장 으뜸가꾸기에 대해서 간단히 그 실적을 보고 받고자 합니다. 내고장 으뜸가꾸기 본래의 목적은 무엇이며, 현재 추진중인 20개 시·군의 추진 실적과 추진 방법에 있어서 군 의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군수 단독 재량으로 이루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선기	• 강기세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을 주신 내고장 으뜸가꾸기 사업의 본래의 목적과 시·군별 사업추진 실적, 방법에 대해서 연기군 향약비 건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내고장 으뜸가꾸기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에게 긍지와 보람, 전통과 애향심을 심어 주면서 정신분야와 소득부문이 조화롭게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한 우리 도자체 시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대부분 지역특화가 가능한 지역특산물 육성등 마을단위의 사업으로 18가지 유형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선정 경위는, 지방자치시대에 맞추어서 마을마다 지니고 있는 특산물과 도의 명소나 민속등 자랑거리를 찾아 가꾸고 그 고장의 상징으로 삼으면서 주민의 화합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주민과 전문가 그리고 또 읍·면·동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장·군수가 선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군 의회에 보고해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도지사 홍선기	서 도비 30%, 시·군비 70%로 예산이 계상되고 군의회의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군의회와도 협조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도내 171개 사업중에서 130개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고, 나머지 41개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년내 알찬 마무리를 위해서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연기군의 향약비 건립 사업은 당초부터 으뜸가꾸기 사업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이고 승인된 바가 없습니다만, 추후에 확인한 결과, 연기군만이 유일하게 향약에 대해서 개인적인 애착을 느끼고 군비 1,600만원을 투자해서 향토 1개소를 건립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第14節 第67回 臨時會

Ⅰ. 概 況

1. 開會背景

○ 제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鄭善興의원외 19인으로부터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심의, 도정에 관한 질문과 조례 등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1992년 10월 19일 집회공고를 실시하고 92년 10월 27일 14:00에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회기 : '92. 10. 27 ~ 11. 3 (8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2. 10. 27(화) 14 : 00	본 회 의 (제 1 차)	1. 제6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 (조길연의원외 10인) 3. 백제문화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보고	
11 : 00	운영위원회	1. 제6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92. 10. 28(수) 14 : 00	교육사회 위 원 회	1.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지방공무원소송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 조례중개정조례안 3. 지방교육행정기관의직제변경및법령개정에따른 충청남도교육 · 학예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2. 10. 28(수) 14 : 00	교육사회 위 원 회	4. 충청남도충무상조례폐지조례안 5.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 건	
10 : 00	농림수산 위 원 회	1. 농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확대 건의안 2. '92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 건 3. '92행정사무감사에따른서류제출요구의 건 4. 우박피해현황과지원대책보고 5. 보고 가. 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 나. 추곡수매계획 다. 녹색시대진행상황 라. 미곡종합처리장사업지침	
14 : 00	지역경제 위 원 회	1.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 건 2.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요구의 건	
14 : 00	건설위원회	1.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 건 2.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관련자료 제출 요구의 건	
'92. 10. 29(목) 10 : 00	내무위원회	1.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 개정조례안 3. 정수물품취득및처분에관한 건 4. '92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 건 5. '92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 건 6. '92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 건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2.10.30(금) 15 : 00	서해안개발 사 업 지 원 특별위원회	1. 서해안개발단위사업별추진상황보고 가. 농어촌개발국 소관 나. 지역경제국 소관	내무위 회의실
'92.10.31(토) 10 : 00	서해안개발 사 업 지 원 특별위원회	1. 서해안개발단위사업별추진상황보고 가. 건설도시국 소관	내무위 회의실
'92.11.2(월) 11 : 00	운영위원회	1. 제6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 협의의 건 2.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조정 협의의 건	
14 : 00	본 회 의 (제 2 차)	1. 도정에 관한 질문 2. 의원해외연수결과 보고	
'92.11.3(화) 10 : 00	본 회 의 (제 3 차)	1. 충청남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지방교육행정기관의직제변경및법령개정에따른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충무상조례폐지조례안 6. 정수물품취득및처분에관한건 7. '92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8. 농업용기자료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확대건의안	
'92.11.9(월) 11 : 00	백제문화권 종 합 개 발 지 원 특 별 위 원 회	1. 백제문화권종합개발사업추진에 따른 건의안	(비 회기중) 내무위 회의실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수	안 건	비 고
계	13		
조 례 안	6	1.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건 의 안	1	1.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업율 적용확대 건의안	
동의승인안	2	1. 정수물품취득 및 처분에 관한 건 2. 92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	
기 타	4	1. 제67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백제문화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보고 4. 도정에 관한 질문	

4. 條例案 處理內譯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129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92.10.22)	내무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보사환경국 보건과에서 관장해 왔었으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행위 지도감독 업무를 제외한 경영지도(각종 규정의 제·개정, 원장임명, 예산·결산승인)업무	'92. 11.3	'92. 11.5	원안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가 1992. 6. 22자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기획관리실장과 보사환경국장이 각 의료원의 당연직 이사가 되므로 원장의 신분과 관련되는 "이사회소집과 의장이 되는 사항" 을 업무의 기능과 부합되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130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감 ('92.10.22)	교육사회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 ('92.9.17 대통령령 제13727호)으로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금액과 지급방법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92. 11.3	'92. 11.5	원안
131	충청남도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	〃	○부결이유 • 개정안 제명의 자구수가 지나치게 길어 조례의 운용상 많은 불편이 따르게 됨으로 제명을 간략하게 축소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지급할 수 있게한 근거가 없어 동 조항을 본조례에 삽입하기가 불가한 실정임			부결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132	지방교육행정기관의직제변경및법령개정에따른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감 ('92.10.22)	교육사회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제개편(대통령령 제13,451호)으로 시·도 교육청의 일부직제가 변경·신설되고, 지방재정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624호)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남도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중 관련조항을 현행 직제와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92. 11.3	'92. 11.5	수정
136	충청남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92.10.27)	내무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무등의 수당을 인상하여 의무직렬공무원의 우수인력확보 및 사기도모로 도민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함	〃	〃	원안
133	충청남도충무상조례폐지조례안	교육감 ('92.10.22)	교육사회	○폐지이유 • 충청남도 충무상 조례의 표창대상자는 충무정신을 체득하고 실천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한정하였기 때문에(조례 제1조) 1980년 이후부터 시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함	〃	〃	〃

5. 第67回 臨時會 道政 및 教育行政에 關한 質問·答辯要旨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조길연 (부여군)	• 현재 충청남도 가축위생 시험소가 대전시 문화동에 소재하고 있고 부여, 홍성, 아산, 당진군등 4개군에 지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더구나 우리 도내의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등 주요가축의 분포사항을 살펴보면 지난 6월말 현재 총 1,252만 23마리중 북부지역 즉 서산시, 군, 태안군, 홍성, 예산, 당진, 아산, 천안군등 8개 시·군에 최하 53.1%부터 최고 100%까지 많은 가축이 분포되어 있음을 통계상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러한 현실을 도외시하고 특별히 본 도청과 평소 업무상으로 밀접하게 연락을 한다거나 출입이 잦은 기관도 아니면서 아직도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욱이 가축위생 시험소	도지사 홍선기	• 행정조직의 재정비 문제와 관련해서 가축위생시험소 4개지소의 통폐합문제, 가축보건환경연구원, 여성회관의 이전문제, 잠업검사소와 잠종장의 통합 운영문제, 그리고 앞으로 행정조직을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조직으로 재정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조직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여건의 변화와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행정의 선한 가치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능률성과 민주성이 조화를 이루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조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그동안 자치역량의 제고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행정기구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부임초 관계부서에 전면적인 조정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먼저 가축위생시험소 지소의 통폐합 문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도는 축산 규모면에서 전국에서 경기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조길연 (부여군)	는 대전시에 설치해 놓고 4개군에 지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차제에 충청남도 가축위생시험소를 현실과 맞게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로 이전을 하고 4개 지소를 통합하여 막대한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하므로서 예산 낭비를 줄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선기	도 다음 두번째로 양축농가가 많고 비교적 축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서 가축질병의 진료, 시험연구 방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축위생 시험소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축농가와 지역적으로 가장 가깝게 접촉하면서 가축위생관리 기능을 분담, 수행함으로서 양축농가의 편익을 도모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크게 요청되기 때문에 도내 4개 지역에 지소를 분산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 내년도 대전 엑스포가 우수한 백제문화를 세계속에 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도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엑스포행사 관람객의 예상수와 그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도, 문화관광에 대한 행태 등 사전 분석을 통해 홍보전략을 미리 세우고 치밀한 계획하에 좋은 기회를 놓		• 대전 엑스포 행사때 백제문화 소개를 위한 준비계획은 우리 도는 기본적으로 엑스포개최지 인접 배후지역으로써 분담기능과 역할을 도민적인 공감과 참여속에 추진해 나간다는 기본방침 아래 문화 관광등 총 5개 분야에 35가지 관련사업을 현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공산성, 정림사지정비, 국립부여 박물관의 이전신축등 백제문화 유적의 정비 복원사업과 함께 10개의 도 자체 문화관광 루트개발사업, 엑스포 기간중에 백제문화재 개최준비등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조길연 (부여군)	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선기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조 의원께서 특히 관심을 갖고 있으신 백제문화의 홍보와 관련된 준비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엑스포 조직 위원회의 협조하에 언론기관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펴면서 백제문화 관광홍보 책자를 발간해서 전국의 주요기관 단체와 일본 등 인근지역에 배포한 바 있고, 백제문화 관광코스와 관련해서 근내 주요 관광회사와 사전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백제문화 관광지도 관광루트의 리후렛등 41만부의 홍보물을 내년까지 발간해서 외국대사관, 전국 기관단체등에 배포하고 도내 주요 문화관광지 홍보 포스터 또 간판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엑스포 조직위원회와 협조해서 엑스포 기간중에 백제문화의 특성과 전통이 부각되도록 백제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 의 자랑스러운 백제문화가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세계에 널리 소개되고 아울러 선양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 임을 약속드립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조길연 (부여군)	• 현 시점에서 중요한 문제는 그래도 농촌에 남아서 농촌을 지키고 있는 총각들의 결혼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가끔 농어촌 총각들이 결혼을 못해 자살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것이며, 정책상 어딘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시인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일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가 대책을 연구하는 것이 시급한 선결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농어촌 총각들의 결혼문제를 정책적으로 사회적인 복지차원에서 행정기관이 주관하여 해결 해줘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보고, 이제 중국과의 수교도 이루어졌으므로 중국의 한인 교포처녀들과의 결혼을 적극 추진해 줄	농 촌 진 흥 원 장 신건식	•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군과 농촌지도소에서 성혼상담실, 신랑교실, 신부교실 운영, 성혼 농가나 총각농가에 주거환경개선 자금지원, 성혼우수사례 홍보, 만남의 날 행사, 성혼돕기 간담회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재작년인 '90년도에는 169쌍, '91년도에는 102쌍, 금년에는 64쌍등 3개년간에 통 335쌍의 성혼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국 연변 처녀와의 결혼주선 문제는 작년부터 보사부산하 법인단체인 가정복지연구회에서 추진해 가지고 많은 성혼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조길연 (부여군)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김현근 (금산군)	• 공영개발사업의 현주소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영개발사업단의 그 구성은 정부가 지역개발의 촉진과 열악한, 지체한 지방 재정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89년도에 각 시·도에 공영개발사업단을 창설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본도 충청남도도 공영개발사업단이 발족된 이래 논산 내동지구 택지개발, 태안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대죽지구 지방공단조성, 천안 신부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4개 지역에 있어서 '92년 금년까지 무려 1,626억8,600만원이라는 막대한 자본을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택지 25만8,000평 공업단지용지 63만9,000	도지사 홍선기	•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완전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재정 자립도가 우선 충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아는 사실입니다마는 세계적인 지방행정의 추세가 이제는 경영 행정을 자치단체에서 추구하고 이의 일환으로 선진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공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에 있을 때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밭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서둘렀고, 내년도부터 발족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저희 도에서도 여건이 성숙되면 지방공사를 발족해서 도 재정에 일익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문제에 대해서는 잘아시는 바와 같이 공영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재정부담을 전혀 주지 않고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역개발의 추진 그리고 개발이익의 사회적인 환수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현근 (금산군)	평 합해서 89만7,000평을 구성 분양하기로 하고 계획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논산 내동지구 택지조성이 완료되어 일부 분양공고 이후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수치는 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때마침 불어 닥치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장기화 될 그러한 내용은 본 공영개발사업단에 있어서의 막대한 이자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다 같이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태안 신진지구 해안매립사업은 호안 유실등의 부실공사로 인해서 금년도에 분양을 개시해야 함에도 불가피하게 분양이 지연되어 사실상 공영개발사업단 발족이래 이상으로 미루어 봐서 속시원히 완결된 사업은 하나도 없음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의 문	도지사 홍선기	지난 '8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난 '89년5월15일 공영개발사업단을 발족해서 현재 5개 사업에 9,87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전국적으로 공영개발사업에 의한 택지분양이 순조롭지 못하고 선수공급 계약등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공영개발사업의 향후 투자문제도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사업의 규모와 착수 시기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보완하는 문제를 이미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공영개발사업에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둘째, 공영개발사업단의 공사화 문제는 지난 제63회 임시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내년도에 공사화 할 것을 목표로 해서 공영개발사업단을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 다만 현재 내무부 입장에서 공사화가 될 경우 과다한 조세부담과 전문인력 부족등에 따르는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공사화를 신중하게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현근 (금산군)	제의식은 물론이고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등등의 이유 즉,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진단도 없이 공영개발사업단의 사업을 추진하는 그것은 과연 향후 검토대상 사업으로써 굳이 공유수면매립을 통한 택지개발사업만을 구상하고, 고집할 그러한 때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몇가지 제안을 겸한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소신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도지사 홍선기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관계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이에 따라서 중앙에서 제도적인 보완등 필요한 선행조치등이 강구되면 저희 도도 적극적으로 이에 수용태세를 갖추겠다는 말씀으로 질문에 답변합니다. 셋째, 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차입한 기채액은 모두 309억원입니다. 그 중에 20억은 이미 상환을 완료해서 순기채액은 289억원입니다마는 기채액에 대해서는 택지분양 수익금으로 연차계획에 따라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부동산 경기가 장기 침체되는 등, 투자여건이 크게 변화할 경우에는 부득이 사업시기를 조정할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안 신부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공동주택용지가 선수공급계약이 되고 보상계획 통보 등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 지역은 천안시의 여건상 도시발전의 촉진과 유입인구의 흡수로 비교적 분양이 무난할 것으로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현근 (금산군)	•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일원에 금년 11월 착공예정인 용담댐은 총 저수용량 수로가 8억톤, 이중에 6억톤이 전주권으로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공급되고 나머지 2억톤을 하천 유지수로서 방류될 계획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최근의 대청호 수질을 대략 살펴보면 상류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생활오·폐수, 가두리 양식장, 퇴적물, 기타 무질서한 환경훼손등으로 인하여 오염정도가 날로 심각해 자칫 3급수로 전락할 심각한 국면에 처하고 있습니다. 금강 상류로부터 대청호로 유입되던 물 용량 135톤이 직경 3.8m, 길이 21.9㎞의 수도로를 통하여 금강물줄기를 완전히 전주권으로 바꾸어 놓는 것으로 대청호에 유입되는 수량이 격감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도지사 홍선기	전망되고 있습니다. • 용담댐 건설이 이루어질 경우 대청호의 수질악화, 환경오염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김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댐건설시 금강수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환경처에서 지난 7월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3차에 걸쳐 보완 심의중에 있습니다마는 도 자체적으로도 전문가의 자문과 함께 필요한 검토를 통해서 건설부와 환경처, 그리고 수질원공사에 용담댐 건설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강구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댐건설에 따른 우리 도의 기본입장은 댐건설이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질원의 효율적인 이용 차원에서 추진되는 국가적인 사업임을 감안해서 대전시 인근의 충북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댐건설에 따른 피해대상지역의 여론수렴, 환경처의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 보완된 후에 추진되어야만 된다는 것이 우리 도의 기본입장임을 밝혀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저희들의 의견은 이미 건설부, 환경처, 수자원공사에 건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현근 (금산군)	사실로 유량 감속으로 인하여 대청호의 유입수의 자정능력상실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대청호의 수질오염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은 뻔한 일이며 본 공사가 강행되어 대청호의 수질이 더욱 악화될 경우 현재 대청호 수계의 상수원을 운행하는 도내 서북부 지역의 주민 및 금강변 인접 지역 주민의 보건위생 악화는 물론이고, 「충청남도의 맑은 물 공급 대책」도 전면 수정하여 이에 소요되는 기하 급수적인 예산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용담댐 건설에 대한 충청남도의 반대의사의 표명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에서는 용담댐 건설에 따른 금강수계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하여 진단해 보신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본 댐 건설	도지사 홍선기	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하천유지 용수확대를 위한 적절한 댐규모의 설정, 지역간 도수로의 용수배분 문제의 재검토등은 갈수기 용수공급난에 따르는 대청댐과 용담댐간에 기술적인 연계와 운영관리 대책의 사전수립, 그리고 용담댐에서 대청댐에 이르는 지역의 오염해소에 필요한 환경유지비에 국가재원 보조의 확대등에 대해서도 건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환경처의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서 제반 문제를 적극 관계부처에 논의하고자 하며 건설부, 환경처, 수자원공사 그리고 대전시, 충북도와도 긴밀한 행정협의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현근 (금산군)	에 대한 도의 공식적인 입장과 그동안 도에서 대처한 내용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第15節 第68回 臨時會

Ⅰ. 概 況

1. 開會背景

○ 제6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2년도 제2회 충청남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등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2년 10월 30일 집회공고를 실시하고 92년 11월 9일 14:00에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회기 : '92. 11. 9 ~ 11. 18 (10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2. 11. 9(월) 14 : 00	본 회 의 (제 1 차)	1. 제6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3. 1992년도 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 설명 4. 1992년도 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제안 설명	
'92. 11. 10(화) 10 : 00	내무위원회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가. 공보관실 소관 나. 기획관리실 소관 2. 공주군과 논산군간관할구역조정안 건 3. 1992년도내무국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2. 11. 10(화) 10 : 00	교육사회 위 원 회	1. 충청남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 2. '92년도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의 가. 보사환경국 소관 나. 가정복지국 소관	
10 : 30	농림수산 위 원 회	1. '92행정사무감사계획결정의 건 2. '92행정사무감사에따른관계인출석요구의 건 3. '92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가. 농어촌개발국 소관 나. 농촌수산국 소관 다. 농촌진흥원 소관	
11 : 00	지역경제 위 원 회	1. '92행정사무감사계획결정의 건 2. '92행정사무감사에따른관계인출석요구의 건 3. '92년도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가. 지역경제국 소관	
'92. 11. 11(수) 14 : 00	운영위원회	1. 제68회충청남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구성협의의 건 3. 1992년도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 : 00	내무위원회	1. 1992년도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가.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나. 계룡출장소 소관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	
10 : 00	교육사회 위 원 회	1. 1992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92년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관계인 출석요구의 건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2.11.12(목) 10 : 00	내무위원회	1. 충청남도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2. 1992년도정수물품취득및처분에관한건 3. 1992년도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가. 재무국 소관 나. 민방위국 소관 다. 소방본부 소관	
11 : 00	건설위원회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결정의 건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관계인출석요구 및 현지확인협의의 건 3. 1992년도충청남도건설도시국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1992년도충청남도보령댐건설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1992년도충청남도공영개발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2.11.13(금) 14 : 00	본 회 의 (제 2 차)	1. 본회의의결을요하는1992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교육 · 사회위원회 소관) 2. 본회의의결을요하는1992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지역경제위원회 소관) 3.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4. 백제문화권종합개발사업추진에따른건의안 5. 제2차충청남도종합건설계획보고	
16 : 00	예 산 결 산 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제1 회의실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2.11.16(월) 10 : 00	예 산 결 산 특별위원회	1. 1992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1992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2.11.17(화) 10 : 00	예 산 결 산 특별위원회	1. 1992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	
'92.11.18(수) 14 : 00	본 회 의 (제 3 차)	1. 1992년도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2. 1992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 3. 충청남도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 에관한조례안 4. 충청남도화재구호기금관리조례안 5. '92년도제2회정수물품취득및처분에관한건 6. 공주군과논산군간관할구역조정의건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수	안 건	비 고
계	15		
조 례 안	2	1.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예 산 안 (결 산 안)	2	1. 1992년도제2회충청남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1992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구 분	건수	안 건	비 고
건 의 안	1	1. 백제문화권종합개발사업추진에 따른 건의안	
동의승인안	4	1. '92정수물품취득 및 처분에 관한 건 2. 공주군과 논산군간 관할구역 조정안건 3. 본회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교육청) 4. 본회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운수연수원)	
기 타	6	1. 제6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1992년도 제2회 충청남도추가경정안 제안설명 4. 199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5.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6. 제2차 도건설종합계획안 보고	

4. 條例案 處理內譯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139	충청남도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도지사 ('92.11.5)	내무	○제정이유 • 서울~부산간 경부축은 우리나라 사회·경제활동의 대동맥으로 내륙교통의 중심축이나 여객과 화물수송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극심한 교통혼잡으로 국민생	'92. 11.18	'92. 11.19	원안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활의 불편과 경제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타개하는 방안으로 정부가 경부간 고속철도를 건설하여 국민의 교통편익증진과 건전한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대도시간 거점수송 및 장거리교통망 구축으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첨단기술산업의 발전등 2000년대 선진사회를 건설하고자 추진하는 정부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143	충청남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	도지사 ('92.11.5)	내무	○제정이유 • 재해발생을 대비하여 매년 적립하는 재해구호기금을 자치입법인 조례로 제정 운영 관리함으로써 자치기능을 확충하고 기금을 적정히 운영하여 보다 알찬 재해구호를 도모하기 위함	'92 11.18	'92 11.19	원안

第16節 第69回 定期會

Ⅰ. 概 況

1. 開會背景

○ 제69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11월 12일 집회공고를 실시하고 92년 11월 20일 14:00에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회기 : '92. 11. 20 ~ 12. 24 (35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2. 11. 20(금) 14 : 00	본 회 의 (제 1 차)	1. 제69회충청남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 2. 1993년도충청남도예산안에대한도정설명 3. 1993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 교육시책 연설 4. 도지사, 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92. 11. 23(월) 13 : 30	운영위원회	1. 의사일정변경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협의의 건	
'92. 11. 30(월) 14 : 00	본 회 의 (제 2 차)	1. 의사일정변경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3. 1992년도제3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설명	
16 : 40	예 산 결 산 특별위원회	1. 위원장선임의 건 2. 간사선임의 건 3. 소위원회구성의 건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2. 12. 1(화) 11 : 00	내무위원회	1. '91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예산승인의 건 가. 재무국 소관 나. 공보관실 소관 2. '9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재무국 소관 나. 공보관실 소관	
11 : 00	교육사회 위 원 회	1. 보사환경국소관1991년도충청남도결산승인의 건 2. 가정복지국소관1991년도충청남도결산승인의 건 3. 1991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 건	
11 : 00	농림수산 위 원 회	1. '91년도충청남도결산승인의 건 가. 농어촌개발국 소관 나. 농림수산국 소관 다. 농촌진흥원 소관	
14 : 00	지역경제 위 원 회	1. '91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	
10 : 00	건설위원회	1. 1991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 2. 1992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 3. 199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	
'92. 12. 2(수) 10 : 30	내무위원회	1. '91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가. 기획관리실 소관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2. 12. 2(수) 10 :30	내무위원회	나. 계룡출장소 소관 2. '9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관리실 소관 나. 계룡출장소 소관	
11 : 00	교육사회 위 원 회	1. 199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보사환경국 소관 2. 1992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출추경예산안 가. 보사환경국 소관	
11 : 00	농림수산 위 원 회	1. '9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가. 농어촌개발국 소관	
11 : 00	지역경제 위 원 회	1. '93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지역경제국 소관 2. '93충청남도양여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지역경제국 소관	
10 : 00	건설위원회	1. '9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	
'92.12.3(목) 10 : 30	내무위원회	1. '91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가. 공무원교육원 소관 나. 내무국 소관 2. '9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공무원교육원 소관 나. 내무국 소관	
10 : 00	교육사회 위 원 회	1. 1993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가. 가정복지국 소관 2. 1992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 가. 가정복지국 소관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2.12.3(목) 10 : 00	농림수산 위 원 회	1. '9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가. 농림수산국 소관	
10 : 00	건설위원회	1. 1991년도충청남도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2. 1993년도충청남도예산안 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3. 1991년도충청남도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가. 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 4. 1993년도충청남도예산안 가. 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	
'92.12.4(금) 15 : 00	운영위원회	1. 1991년도충청남도결산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1993년도충청남도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3. 충청남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趙吉衍의원외1인)	
10 : 00	내무위원회	1. '91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가. 민방위국 소관 나. 소방본부 소관 2. '9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민방위국 소관 나. 소방본부 소관	
10 : 00	교육사회 위 원 회	1. 충청남도입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3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2.12.4(금) 10 : 00	농림수산 위 원 회	1. '9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가. 농림진흥원 소관 2. '92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어촌개발국 소관 나. 농수산국 소관	
'92.12.7(월) 10 : 00	예 산 결 산 특별위원회	1. 1991년도충청남도결산승인의 건 2. 1991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3. 199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199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5. 1992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6. 1991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 건 7. 1993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제1 회의실
16 : 00	예 산 결 산 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1. 위원장선임의 건 2. 간사선임의 건	제1 회의실
16 : 00	예 산 결 산 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1. 위원장선임의 건 2. 간사선임의 건	교육 사회위
10 : 00	내무위원회	1. '92제3회충청남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내무국 소관 나. 재무국 소관 다. 계룡출장소 소관 2. 충청남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93년도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2.12.8(화) 10 : 00	예 산 결 산 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1. 1991년도충청남도결산승인의 건 2. 1991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3. 1992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1993년도충청남도예산안 가. 내무위원회 소관 5. 1993년도충청남도수정예산안 가. 내무위원회 소관	내무위 회의실
10: 00	교육사회 위 원 회	1. 91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2. 91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1 회의실
'92.12.9(수) 10 : 00	예 산 결 산 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1. 1993년도충청남도예산안 2. 1993년도충청남도수정예산안 가. 내무위원회 소관 나. 교육 · 사회위원회 소관 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내무위 회의실
'92.12.10(목) 10 : 00	예 산 결 산 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1. 1993년도충청남도예산안 가. 지역경제위원회 소관 나. 건설위원회 소관 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 1993년도충청남도수정예산안 가. 지역경제위원회 소관 나. 건설위원회 소관 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내무위 회의실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2.12.11(금) 17 : 00	예 산 결 산 특별위원회	1. 1991년도충청남도결산승인의 건 2. 1991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3. 1992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1993년도충청남도예산안 5. 1993년도충청남도수정예산안 6. 1991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 건 7. 1993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제1 회의실
15 : 40	예 산 결 산 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1. 1993년도충청남도예산안 2. 1993년도충청남도수정예산안	제1 회의실
'92.12.14(월) 10 : 00	운영위원회	1. 충청남도의회에서의증언 · 감정등에관한조례안 (趙吉衍의원외 15인)	
10 : 30	내무위원회	1.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 00	본 회 의 (제 3 차)	1. 1991년도충청남도결산승인의 건 2. 1991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 건 3. 1991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4. 1992년도제3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5. 1993년도충청남도예산안 6. 1993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7. 충청남도입학교육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남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 00	건설위원회	1. 충청남도건축조례개정조례안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2.12.24(목) 10 : 00	농림수산 위 원 회	1. 쌀수입개방반대에대한결의문체택의건 (張基日의원외 1인)	
11 : 00	본 회 의 (제 4 차)	1. 충청남도의회에서의증언 · 감정등에관한조례안 2. 충청남도건축조례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9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 건 6. 충청남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쌀수입개방반대에대한결의안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수	안 건	비 고
계	23		
조 례 안	6	1.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예 산 안 (결 산 안)	6	1. 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공기업특별회계포함) 2.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3.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4. 1993년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5. 199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6. 1992년도 제3회충청남도추경예산안	
결 의 안	2	1. 충청남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쌀수입개방반대에 대한 결의안	

구 분	건수	안 건	비 고
동의승인안	1	1. '93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	
기 타	8	1. 제69회충청남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 2. 1993년도 충청남도예산안에 대한 도정연설 3. 1993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교육시책 연설 4. 도지사,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의사일정 변경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임선임의 건 7. 1992년도 제3회 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8.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4. 條例案 處理內譯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160	충청남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	趙吉衍 의원외 15인	의회 운영	○제정이유 •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실효성 있게 실시하려면 관계서류의 제출과 증언·감정등이 필요하므로 서류의 제출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 및 벌칙조항을 규정하여 정확하고 진실된 자료를 확보하고 안건심의와 행정사무감사	'92. 12.24	'92. 12.28 ('93. 1. 9 재의요구)	원안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및 조사활동등 의사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임			
150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감 ('92.11.17)	교육사회	○신설학교에 대하여 학교명칭과 위치를 삽입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으로 격하된 학교의 학교명칭과 위치를 삭제 또는 변경하며 유구고등학교를 유구공업고등학교로, 예산중앙종합고등학교를 예산공업고등학교로 학칙변경 인가함에 따라 충청남도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92 12.14	'92 12.15	원안
151	충청남도중학교학구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신설국민학교에 대하여 학군(구)를 배정하고 ○소규모학교 통폐합계획에 의거 '92.3.1일자로 학교폐지 및 분교장 격하교에 대한 학교명 삭제 및 변경 ○'93.3.1일자로 통폐합 예정인 광천중대하분교장의 중학구폐지에 따른 학구를 조정하고 ○본도 조치원학구로 진학하던 충북 청원군 상봉국민	〃	〃	수정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학교(상봉리, 심증리)의 학구를 조치원학구와 충북 미호학구 공동학구로 전환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하여 천안군 행정국민학교의 중학구 및 당진군 신평면 신송리2구 지나들기의 중학구를 조정하고자 충청남도 중학교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153	충청남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92.11.17)	내무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 1991.6.19) 및 동시행규칙(총리령 제395호)에 의거 급변하는 산업화,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무의 자동화 및 표준화 추진과 충청남도 재무회계규칙 개정으로 상이한 회계용어등 충청남도공인조례 일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능률을 증가시키고져 함	'92 12.24	'92 12.28	원안
158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충청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영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	〃	〃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단 설치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159	충청남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92.12.9)	건설	○ 건축법의 전문개정('91.5.1 법률 제4381호)과 건축법 시행령의 전문개정('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 그리고 건축법 시행규칙의 전문개정('92.6.1 건설부령 제504호)에 따라 충청남도 건축조례를 전문개정하여 도 건축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위임된 사항인 지방건축위원회의 설치와 도 건축조례로 정하여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건축기준완화 규정만을 조례로 정하여 운용하고 기타의 사항은 시·군의 조례로 정하여 운용토록 하려는 것임	'92 12.24	'92 12.28	원안

5. 忠淸南道廳 移轉推進 特別委員會 構成決議

충청남도청 이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안번호 157

제안년월일 : '92. 12. 4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 주 문

• 200만 도민의 숙원사업인 충청남도청 이전은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내에 "충청남도청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를 구성한다.

□ 제안이유

• 89년 1월 1일자로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됨과 동시 우리도에서 분단되었으나 도청을 비롯한 교육청과 농수축협 도지부등 지방 행·재정의 중추기관이 대전에 소재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자못 클뿐아니라 구심점이 대전으로 모아짐으로서 약화된 도세회복을 위한 지역 균형개발에 커다란 저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음.

• 또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자랑스런 충청인의 자긍심 앙양과 구심점을 설정하고 지방재정 자립도를 제고시켜 약화된 도세의 회복을 조속 실현키 위함.

• 충청남도청의 이전문제는 신중하면서도 시급하게 검토추진되어져야 할 200만도민의 최대 숙원인 동시에 당면 주요현안사항임에도

• 미온적인 집행부에 대하여 도청 이전추진을 촉구하고 필요하다면 의회 차원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키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것임.

충청남도청 이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안)

목 적

○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200만 도민의 최대 숙원인 동시에 당면 주요과제인 도청이전을 도민의 대표인 의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 약화된 도세의 회복, 자랑스런 충청인의 자긍심 앙양 및 구심점 설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기본방향

- 도청이전의 당위성에 대한 홍보활동 극대화로 공감대 형성
- 미온적인 집행부에 대한 도청 이전촉구 및 추진 상황평가
- 국회, 중앙정부등에 도청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도민의 의사전달과 건의
- 제반 행정절차를 통한 제도적인 보완장치 마련

□ 운영기간

'92. 12 ~ '95. 6. 30(임기만료시까지)

□ 특위 위원수 결정 및 위원선임

〈위원수 결정(안)〉

- 시군별로 1명씩 안배 : 20명

〈위원선임〉

- 시군별로 의원 협의하여 1명씩 추천 의장에게 선임권 일임

□ 구성결의안 채택

- '92. 12. 4 운영위원회 심의 제안
- '92. 12. 14 제69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의결

6. 쌀輸入 開放反對에 대한 決議

쌀수입 개방반대에 대한 결의안

의안번호 161

제안년월일 : 1992. 12. 24

제 안 자 :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 주 문

- 쌀농사는 우리 국민의 절대적인 주식으로서 식량 안보차원의 경제적인 측면과 동시에 풍요로운 국토와 자연환경의 보전, 국민정서의 함양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농업생산액, 재배면적, 생산량면에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특히 도민의 절대다수인 43%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본도의 경우에 쌀농사는 우리 도민의 주된 생계유지 수단이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생계수단이기도 하다.
- 따라서 현재 각계각층의 의지를 모아 범국민적인 쌀수입개방절대불가를 수차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은 우리의사와는 반대로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수출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일각에서 쌀수입 개방은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서서히 대두되고 있음을 볼 때 실로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어
- 이에 200만 충청남도민을 대표하는 충청남도의회에서 쌀수입개방 반대를 별첨과 같이 결의한다.

□ 제안이유

- 쌀 시장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개방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범국가적으로 개방에 반대하는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함으로써 우리 정부 대표단의 협상력을 제고시키고
- 또한 언론등 국내 일각에서 힘의 논리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쌀시장을 개방할 수 밖에 없다는 대세론이 확산되고 있어 이를 불식시킬 필요성이 강력히 요청되고 있는바
- 200만 충청도민을 대표하는 충청남도의회에서 쌀수입 개방 반대결의문을 채택 국회의장 및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건의 촉구하여 범국민적 의지를 다시한번 결집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쌀수입개방 반대에 대한 결의문

수천년의 역사를 통해 우리민족 삶의 근간이 되어온 쌀농사가 국내외적으로 그 존립기반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의지를 모아 범국민적으로 「쌀수입개방 절대불가」를 수차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은 우리 의사와는 반대로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 쌀수입 개방은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서서히 대두되고 있음을 볼 때 실로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쌀은 우리국민의 절대적인 식량으로서 식량 안보차원의 경제적인 측면과 국토와 자연환경의 보전, 국민정서의 함양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농업생산액, 재배면적, 생산량면에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특히 도민의 절대다수인 43%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충청남도의 경우에 쌀농사는 우리 도민의 주된 생계유지 수단이며 충청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따라서, 200만 충청남도민을 대표하는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제69회 정기회에서 식량안보와 지역경제유지, 발전차원에서 쌀수입개방은 우리의 젖줄 및 생명을 대외에 내 놓은 것으로 절대 불가임을 엄숙히 선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쌀은 국민의 안정적 식생활의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 문화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

야 함과 아울러 불공정협상내용을 담고 있는 GATT조항의 우선적 시정이 협상의 제정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셋째, 쌀을 수입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국내농업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화될 것이 분명함으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

넷째, 정부는 농촌에는 활력을, 농업에는 경쟁력을, 농민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쌀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할 획기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섯째,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의 농어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할 것을 200만도민 앞에 엄숙히 다짐한다.

1992. 12. 24

忠淸南道議會 議員一同

7. 第69回 定期會 道政 및 敎育行政에 關한 質問 · 答辯要旨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맹치호 (천안시)	• 지방자치의 일반적인 사무와 권한 가운데 중요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치단체 재정을 중앙 정부에 의존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치의 간섭과 통제를 받게 되어 지방자치가 겉돌 수밖에 없으며, 대부분의 주민들이 지방자치의 성공적 실시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취약성과 지역간 격차로 인해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적지않게 갖고 있는 것도 지방재정이 그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가 주민의 욕구와 바램에 부합되도록 운영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통제력이 최소한에 머무르는 선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주성이 확보되어야 함은 지방자치의 필요조건이며 지방자치와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는 동	도지사 홍선기	• 지방재정력 확충문제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경우 금년도 재정자립도는 42.4%로써 전국 9개도의 자립도 48.7%에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도내 20개 시·군 가운데 15대 시·군이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등 자주 재정력이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자주 재정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국세대비 지방세 수입이 20.9%에 불과한 현행조치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와같이 취약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거론되고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첫째, 국세와 지방세 체계를 조정하는 방안으로써 국세 가운데 지방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일부 세목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새로운 지방세목의 신설과 지방양여세 대상의 확대, 지방교부세율의 인상등 많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세 재정 개선을 통한 자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맹치호 (천안시)	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지난해 일반회계 기준으로 평균 66.5%이고, 재정 자립 수준이 높은 서울특별시는 98.6%, 직할시는 86.1%를 제외하면 각도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48.7%이며, 특히 충남의 재정자립도는 35.8%로 도평균 48.7%에 크게 뒤지고 있으며, 전국 시·도 가운데 전남 다음으로 낮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해서 국세중 지방세적 성격을 띠면서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세목을 골라서 지방세로 전환시키는 방안과 아울러 지방교부세의 법적 교부율을 현행 13.27%를 대폭 인상시켜서 명실공히 지방자치의 정착이 앞당겨지는 하나의 역사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지사께서는 중앙 정부에 강력한 건의를 할 용의	도지사 홍선기	주 재정 확충 방안으로써 주민세 균등화등 정액세율의 합리적인 조정과 자동차세의 전면개편, 그리고 지방세 비과세 범위의 축소조정과 과세시가표준액의 합리적인 조정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직자의 지방재정에 대한 인식과 발상을 전환시키고 세무공무원의 전문화등을 통해서 세무 행정력을 강화, 지방세수를 증대하는 일도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지방재정의 기업경영화 추세를 감안해서 경영수입사업과 지방공기업, 공공개발사업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벌어서 쓴다고 하는 풍토를 정착시키는 일도 시급한 과제로써 도에서는 앞으로 제3섹터 사업과 공사발족 문제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맹치호 (천안시)	는 없는지, 또한 자체적으로 도의 재정확충을 위한 발전 방안이나 새로운 재원발굴을 구상해 보았는지 성의있는 답변 바랍니다.		
	• 돌이켜 보면 민족사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 볼수 없는 동족상잔의 선혈로 물들인 6.25불법 남침으로 수백만의 인명 피해와 전 국토가 거의 황폐화되어 아비규환의 함성과 풍전등화와 같은 국운 앞에서 가슴졸이던 낙동강 전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물론 휴전선의 포성이 멎은지 오래지만 아직도 6.25의 연장선상에서 평시를 살아가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7,000불대를 목전에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혜국에서 지원국으로 성장하기 까지는 정부와 온 국민의 협심노력의 결과라고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도지사 홍선기	• 먼저 맹위원께서 지적한 바와같이 오늘날의 국가발전을 이루기 까지는 일찍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선열과 전상용사들의 호국충절의 정신이 그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오늘을 사는 국민 모두가 항상 이를 기억하고 추모하면서 보훈가족에 대한 따뜻한 보살핌을 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맹위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훈가족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보다 많은 배려와 보살핌으로 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훈가족의 공직 특별 채용문제에 있어서는 '92년도 우리 도에서 신규 채용한 기능직 공무원은 모두37명이 됩니다만, 대부분 사무보조원들로서 도청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자 가운데 이들의 사기와 연공을 고려해서 당해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 채용한 바 있고 보훈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맹치호 (천안시)	순국선열들의 자신을 돌보지 않고 오직 구국대열에 헌신하신 우국충정과 6.25전란의 총탄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다 산화한 호국영령, 그리고 신체의 일부분을 갈기갈기 찢기우며 용감히 싸우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전상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의 밑거름이 있었기에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에 우뚝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보훈제도가 실시된 지 30여년을 지나오면서도 그들은 가난을 슬퍼하지 않고, 소외감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오직 국가유공자 후예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이제까지 굳세게 살아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면 각 관공서에서 신규 기능직 채용시 20%의 범위내에서 우선 선발채용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본 도에서는 지금까지 채용한 인원이 몇 명인지?	도지사 홍선기	가족은 관계기관으로 부터 추천된 자가 없기 때문에 채용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기능직 공무원의 결원시 보훈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당해 직렬에 적합한 자가 추천되면 적극 채용해 나갈 계획임을 밝힙니다. 다만, 참고로 금년도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보훈가족 자녀에 대해서는 만점의 1할의 가점을 부여한 결과 14명을 합격시킨 바 있으며 도내 보훈가족 공무원 수는 총 129명에 달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또한 보훈가족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가능한 지원시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맹치호 (천안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절차상 국가유공자의 결격사유인지 그렇지 않으면 솔선수범해서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 주어야할 관공서에서 외면한 처사인지에 대해 지사께서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의 고도성장과 더불어 국민소득의 증가로 일상생활의 편리성, 쾌적성, 이동성, 기회창출의 다양성등으로 발달하는 가운데 1983년 6월 고급공무원의 자가운전 제도를 도입하면서 운전면허 취득이 해마다 급증하여 80년대 중반 우리나라에 불어닥친 자동차 증대와 움직임은 불과 5, 6년 사이에 새로운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자동차 문화시대를 맞이	지 역 경 제 국 장 노규래	• 우리 교통문화는 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등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교통수요와 교통량이 급증하였으나, 국민들의 교통질서와 교통안전 의식이 정착되지 못하였고 특히 운전자의 조급한 운전자세와 사회 일반의 인명경시 풍조, 그리고 난폭 과속 운전등으로 교통사고가 쉽게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날로 그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금년을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원년으로 삼고, 현재 중앙과 지방차원에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면서 필요한 행·재정 지원등 가능한 모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맹치호 (천안시)	하고 있으나, 자동차시대의 준비 미흡으로 도로여건과 열악한 교통환경에 따른 교통사고의 증가와 극심한 교통체증은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어 교통분야는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으며, 고속도로까지 한계용량을 넘어 국민생활에 미치는 불편은 물론이고 수출입 물량적기 수송에도 차질을 빚는 이러한 사회 현실속에서 교통문화를 올바르게 정착시킨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한해 전국에서 26만 5,96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1만3,429명이 사망하고 33만1,61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교통질서가 잘 지켜지는 선진국 여러나라에서는 어려서부터 각급 학교교육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일상생활화가 되도록 비중을 두어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각급	지 역 경 제 국 장 노규래	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맹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도로안전 특별회계 설치문제는 지난 11월 25일자로 자동차교통 관리개선 특별회계법이 공포되어 보다 효율적인 교통관리업무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이 조달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안전 전담 외청 신설문제는 각 기능의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써 현재 중앙에서는 교통부, 건설부, 경찰청등이 업무성격상 기능별로 전담하고 있고, 또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국도는 국토관리청, 지방도는 지방도로관리 사업소가 맡아서 하고 있고, 또한 사단법인격인 도로안전교통협회와 교통안전진흥공단이 있어서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그 필요성과 기능성을 좀더 심도있게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해 보고 조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긴말한 협의를 거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맹치호 (천안시)	학교에서조차 교통안전 교육이 부실하고 사회에 나와서도 교통안전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상황에서 우선 면허증이나 취득해 놓고보자는 조급한심리가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때 도로교통 안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과감하게 기구개편을 해서 세계 제1의 교통사고 왕국이라는 치욕을 씻기 위해서는 중앙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기능과 역할을 일원화 돼도록 도로교통 안전 전담외청을 신설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21세기를 대비, 홍수처럼 밀려오는 자동차 문화의 정착을 위해 포괄적이고 지속적이며 유기적인 도로교통 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도에 자동차로 인해 세입되는 모든 재원을 도로안전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 증진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교통사고를 줄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맹치호 (천안시)	이게 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주민의 억울한 희생을 막아주는 차원에서 도지사께서는 중앙정부에 기구신설과 이에 따른 일련의 조치를 강력하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공주시)	• 오늘로부터 '93대전 엑스포 개최일까지는 꼭 250일이 남았습니다. 국내외 관람객 1,000만명을 예상하고 있는 대전 엑스포가 이제 면전에 닥쳐왔는데도 과연 우리 충남의 발전이 국내외 선양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관광수입을 올리고 고장의 우수한 문화를 알리는데는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 장시간 머물수 있는 시설과 머물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볼거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도에서 무	도지사 홍선기	• 먼저 대전엑스포에 대비한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93년 대전 엑스포는 서울 올림픽보다도 그 질과 양 면에서 훨씬 국제적인 행사로서 바로 인접 배후지역인 본도의 입장에서 볼 때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학기술은 대전에서 문화관광은 충남에서」 라고 하는 기본 인식아래 총 5개분야, 35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중에 이를 모두 마무리 되도록 점검 확인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엑스포 개최 기간중 총 400여만명이 관광객이 우리 도를 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라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보다 많은 관광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나영진 (공주시)	엇을 보고 무엇을 돌려줄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개최시까지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동학사 온천개발 지구에 대한 공사가 지지부진하여 엑스포 관광객 유치는 고사하고 계룡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로부터 비난이나 받지 않을까 조바심이 날 정도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관광단지 조성은 이제 공사 진척도나 공정상의 문제로 인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라고 하지만 수려한 계룡산의 경관이 망가진채로 엑스포를 맞이할 것인지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그곳을 보고 혹시 한국인들은 자연보호 정신이 그 정도인가 하고 반문하지 않을까, 또는 주변을 아름답게 가꾸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아직도 미개한 민족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지	도지사 홍선기	객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우선 엑스포 조직 위원회와의 협조하에 다양한 홍보물의 제작, 배부와 함께 관광업체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깨끗하고 안락한 5,000개 객실의 숙박시설을 마련중에 있고, 10개의 핵심 관광루트를 관광상품화 하면서 향토 특산품의 개발등 분야별 실천계획을 세워서 하나 하나 가시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건의 백제문화 유적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엑스포 기간중 관광객에게 선보일 백제문화재와 다양한 문화 예술행사를 전문가와 자문을 받아서 새롭게 준비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도민의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완벽한 손님맞이 태세를 갖추는데 최선을 다 해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동학사 온천개발로 인한 계룡산 자연경관 훼손대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잘 아시다시피 토지 지주조합이 시행주체가 되어서 16만 2,000여평의 부지위에 1991년도부터 2000년 까지 2,400억원을 투자하여 새로운 충남 온천관광 휴양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부지조성 공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나영진 (공주시)	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가 무척 큽니다. 엑스포를 관람하고 충남을 들어서는 관광객들이 충남의 얼굴이 계룡산인데 일그러진 얼굴을 보여 줄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선기	사로 경관을 훼손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또한 언론의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만, 아직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1단계로 내년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럭간 석축, 옹벽공사, 단지 상단부 경계 비탈면에 녹지화 공사등을 실시하고 2단계로 내년 4월말까지 부럭 주변의 조경등을 추가로 실시해서 대전엑스포 개최 전까지는 계룡산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조경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본 의원은 교육감께서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20일 까지 유럽지역을 공무로 출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사전에 의회의 의장단의 양해를 구한바 있고, 독일연방정부 교육성 책임자와의 면담일정 관계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지만 차년도 당초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93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시책연설을 하	교육감 백승탁	• 저는 지난 '89년도부터 직업 및 기술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비율을 50:50으로 실업계 고등학교를 확충하여 2천년대를 산업화 사회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직업 및 기술교육 확충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체계를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이는 정부에서도 행·재정 지원을 뒷받침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중요한 과제이기에 저는 선진국의 직업교육 실태를 살펴보고, 우리 실정에 맞는 체제를 보다 강화시키기 위한 연구를 하면서 독일의 선진화된 직업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나영진 (공주시)	게 되어있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부교육감을 대리 참석토록 한 것은 동료 김재봉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의회를 경시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유감된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사항을 답변하시기 전에 이에대한 소상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백승탁	교육과 기술교육의 현황 파악과 자료를 수집하고,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독일방문을 추진하던중 독일 주재 한국대사관과 교섭이 이루어져 방문 계획을 협의한 결과 독일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면담자, 방문기관등 구체적인 방문일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따라 정부의 승인을 얻어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약속된 방문일정과 도의회 정기회 개회일이 중복되어 출국전에 도의회 의장단과 교육사회위원장에게 협의한 결과 중요한 외국기관과의 약속된 일정이니 신년도 교육개혁 설명은 부교육감이 대행토록 양해가 이루어져서 출장을 떠났습니다. 금번 출장중 수행한 주요 업무내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독일 연방정부 문교성을 방문하여 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정보와 자료교환, 교육매체분야 상호협력 교사교류, 학생교류 등을 협의하였고,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절차문제는 독일 주재 한국대사가 연방정부와 관계 주정부간 협의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한도원 (예산군)	•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와 KOTRA 충	도지사 홍선기	• 개방화, 국제화 추세의 진전에 따라 지방 차원에서 국제협력의 필요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한도원 (예산군)	남 무역관에서 업체의 참여도가 낮아 업체의 모집 과정에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당국의 시책 사업추진에 따른 기업체에 대한 충분한 사전홍보 부족이라든지 또한 기업들의 인식이 부족한 점도 원인이 있다고 보아집니다만 대부분 참여업체가 영세업체들로서 업체의 경기부담 능력부족이라든지 또는 경험 부족으로 인한 위험부담 우려등 자신감의 결여로 참여에 적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세업체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하여 앞으로 시장개척시 참여업체에 대한 편도 항공료정도의 도비지원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해외시장 개척지를 동남아로 국한하지 말고 중남미, 구라파등 전 세계지역으로 확대하고 시장개척단 파견횟수를 분기별로 1회씩	도지사 홍선기	성과 함께 해외시장 개척노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는 지난 10월 임시회 회기중에 직접 해외시장 개척단원의 일원으로 참여하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한의원님게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해 주신 사항 가운데 해외시장 개척 참여단체에 대한 예산지원문제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이 허용되는 대로 가급적 더 많은 예산을 지원 해 줘야 한다는 한의원님의 견해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활동에는 참여업체에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기업 스스로의 자생력제고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도 적합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별도의 기구와 전문인력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도 상정과에 행정경험이 있고 외국어 능력이 있는 직원을 선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면서 우리 도의 공업화 시책이 진전되는 추세에 맞추어서 점진적으로 전담인력과 기구를 늘려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외시장 개척동향 횟수의 증대와 과감한 투자확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한도원 (예산군)	연 4회정도로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도지사 홍선기	도 두차례에 걸쳐 중남미 지역과 중동 지역등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도록 하고 이 때에는 우리 각 시·군에서 각종 문화재가 있고 문화재 때마다 그 고장의 미인이 선발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인삼아가씨, 예산의 능금 아가씨등의 향토 미인사절도 동행시켜서 판촉활동을 하고 이 결과를 분석, 검토해서 횟수를 늘려나가는 문제와 함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의 전담기구 설치문제까지도 깊이있게 검토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5일 정기시장의 현대화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 지역경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전 시·군에 산재된 정기5일시장은 그 시장기능이 왕성하여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6, 70년대에는 생활용품과 농산물 유통의 중추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80년대 이후 교통수단의 발달, 산업구조의 개편, 의식의 변화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인구가 도시중심	지 역 경 제 국 장 노규래	•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 3월에 도내 정기시장 67개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되고 있는 시장 35개, 침체시장 19개, 기능상실시장 13개로 구분하고 정기시장 개설과 관리 책임자인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개선대책을 세부적으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존 가치가 없는 기능상실, 또는 침체된 시장은 시장·군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한도원 (예산군)	으로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농촌인구는 감소되었을 뿐 아니라 경제성장과 소득증대에 따른 국민의 소비욕구가 다양화, 고급화되고 대소규모의 소·도매상점과 슈퍼마켓등의 등장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매매관습, 또는 패턴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 왔음이 오늘의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지난 '91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실무국에 그 개선점과 문제점을 적시해 방향을 제시하여 강력한 요구로 개선과 시정책의 필요성을 촉구하였던 바 도에서는 지사명의 소위 정기시장 활용방안이란 제하의 시달문서를 일선 시·군에 하달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그 시장의 소재한 지역의 특성이나 시장기능 용도가치 지역발전 기여도등 다각적으로 분석 검토하고 그 활용에 따라 용도 폐지할 것	지 역 경 제 국 장 노규래	수가 불필요한 부지를 매각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서 시장 현대화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확보토록 하면서, 또 정주권개발사업, 소득가꾸기 사업 등과 연계하여 정기시장 관리와 현대화 사업을 추진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사례를 말씀드리면 청양군에서는 소득가꾸기 사업으로 '91년도에 청양시장에 8억원을 투자하였고, 부여군에서도 정주권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홍성시장에 3,000만원을 투자해서 시장활성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한편 활성화 시장에 대한 도비 지원문제는 그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이들 시장이 원래 시·군의 자체 재산일 뿐만아니라 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해 볼 때 시·군의 자체 재원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한도원 (예산군)	은 과감히 폐지하고 기능을 살릴곳은 현대화 시설을 하여 시장기능이 부분적으로 약화된 곳은 부분폐지하여 매각처분한 다음 그 재원으로 재투자한다면 부분기능을 살릴 수 있다 하겠고 재정형편상 어려움을 겪는 시·군에는 다소의 도비를 지원하는 대책을 강구한다면 충분히 정기5일시장의 현대화계획을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리라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시며 읍·면에 산재한 시장주변의 환경정화차원과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주어 발전의 계기를 부여하여 많은 주민들의 염원하는 바를 풀어주는 뜻에서 과감하고 신속한 특단의 조치를 내려줄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第17節 第70回 臨時會

Ⅰ. 概 況

1. 開會背景

○ 제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3년 1월 20일 집회공고를 실시하고 93년 1월 28일 14:00에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93 1. 28 ~ 2. 3 (5일간)

○ 회기 : '93. 1. 28 ~ 12. 3 (7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3. 1. 28(목) 14 : 00	본 회 의 (제 1 차)	1. 제7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199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3. 1993년도도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16 : 00	지역경제 위 원 회	1.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체택의 건	
16 : 00	건설위원회	1.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체택의 건	
16 : 00	도청이전 추진특별 위 원 회	1. 위원장선임의 건 2. 간사선임의 건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3. 1. 29(금) 11 : 00	내무위원회	1. '93주요업무 계획보고 가. 기업관리실 소관 나. 공보관실 소관 다. 내무국 소관 2. 각종 조례안(13건) 3. '92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 : 00	교육사회 위 원 회	1. '93주요업무 계획보고 • 보사환경국 소관 2. 충청남도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3. '93주요업무 계획보고 • 가정복지국 소관 4. '92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 : 00	농림수산 위 원 회	1. '92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2. '93주요업무 계획보고 가. 농어촌개발국 소관 나. 농촌진흥원 소관	
'93. 2. 1(월) 11 : 00	내무위원회	1. '93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재무국 소관 나. 민방위국 소관 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14 : 00	농림수산 위 원 회	1. '93주요업무계획보고 가. 농림수산국 소관	
14 : 00	건설위원회	1. 충청남도주민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2. 태안해안매립공원내 모항어항의 공원구역폐지 또는 용역지구 변경 청원 3. 건설도시국소관 '93주요업무 계획보고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3.2.2(화) 11 : 00	내무위원회	1. '93주요업무 계획보고 가. 소방본부 소관 나. 계룡출장소 소관	
14 : 00	교육사회 위 원 회	1.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공공도서관설치및이용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93도 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서산교육청 소관 나. 부여교육청 소관 다. 청양교육청 소관 라. 담당관실, 총무과 소관 마. 관리국 소관 바. 초등교육국 소관 사. 중등교육국 소관	
10 : 00	농림수산 위 원 회	2. '93도 유관기관 업무계획 보고 가. 농협중앙회 도지회 나. 수협중앙 도지회 다. 축협중앙회 도지회 라. 산림조합 연합회 도지부 마. 농어촌 진흥공사 도지부	
11 : 00	지역경제 위 원 회	1. '93주요업부계획 보고 가. 지역경제국 소관 나. 운수연수원 소관	
11 : 00	건설위원회	1. '93주요업무 계획보고 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나. 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 2. 장 · 군 국가공단해안매립지역 충청남도귀속 촉구 건의안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3. 2. 3(수) 11 : 00	본 회 의 (제 2 차)	1. 충청남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잠업검사소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종축장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내수면개발시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임업시험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남도치산사업소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남도농어촌공업유치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충청남도보령댐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충청남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충청남도휴양림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충청남도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5. 충청남도교육 · 학예에관한공공도서관설치및이용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충청남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17. 공원구역부지또는용도지구변경요구에관한청원 18.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5건) 19. 장 · 군국가공원해안매립지역충청남도귀속촉구건의안	
'93. 2. 15(금) 11 : 00	운영위원회	1. 제70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 건 2. '93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비 회기중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수	안 건	비 고
계	23		
조 례 안	16	1.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건 의 안	1	1. 군 · 장국가공단해안매립지역충청남도귀속촉구건의안	
재의요구안	1	1. '9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 건	
청 원 안	1		
기 타	4	1. 제7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1993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3. 199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4.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5건)	

4. 條例案 處理內譯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162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공공도서관설치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감(1. 7)	교육사회	○공공도서관 2개소(천안 성환도서관, 서산 해미도서관)가 준공됨에 따라 그 명칭과 위치를 동조례에 신설하기 위함.	2. 3	2. 4	원안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164	충청남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1.19)	내무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을 행정직공무원의 직급체계와 같이 조정함. • 기정 → 서기관 • 기좌 → 사무관 • 기사 → 주사	2.3	2.4	원안
165	충청남도잠업검사소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
166	충청남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	〃	〃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을 행정직공무원의 직급체계와 같이 조정함. • 기정 → 서기관 • 기좌 → 사무관 • 기사 → 주사	〃	〃	〃
167	충청남도종축장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
168	충청남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169	충청남도내수면개발시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1. 19)	내무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을 행정직공무원의 직급체계와 같이 조정함. • 기정 → 서기관 • 기좌 → 사무관 • 기사 → 주사	2. 3	2. 4	원안
170	충청남도임업시험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
171	충청남도치산사업소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
172	충청남도농어촌공업유치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
173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
174	충청남도보령댐건설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175	충청남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1. 19)	내무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을 행정직공무원의 직급체계와 같이 조정함. • 기정 → 서기관 • 기좌 → 사무관 • 기사 → 주사	2. 3	2. 4	원안
176	충청남도휴양림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
177	충청남도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도지사 (1. 20)	교육사회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관리코자 재원범위, 대상사업, 위원회 구성등을 정하고자 함.	〃	〃	수정
178	충청남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1. 19)	건설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이 폐지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충청남도 주거환경 개선기구 조례에 의거 인용하고 있는 예문을 제정하려는 것임.	〃	〃	원안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179	군·장 국가공단해안매립지역충청남도귀속촉구건의안	宋善奎 의원외 18인	건설	○군·장 국가공단조성과 관련된 장항 앞바다 1단지 추가해안 매립지역 370만평을 충청남도에 귀속시켜 줄 것을 건의함.	2.3	2.4	건설부장관에게이송

第18節 第71回 臨時會

Ⅰ. 槪 況

1. 開會背景

○ 제7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鄭善興의원외 18인으로 부터 조례안 제정 및 개정 그리고 대정부 건의안, 도정질문 등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3년 3월 9일 집회공고를 실시하고 93년 3월 18일 14:00에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회기 : '93. 3. 18 ~ 3. 25 (8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3. 3. 18(목) 14 : 00	본 회 의 (제 1 차)	1. 제7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도지사 · 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5 : 00	농림수산 위 원 회	1. 당면업무 현황보고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농촌진흥원)	
15 : 00	서해안개발 사 업 지 원 특별위원회	1. 서해안개발사업 추진상황보고 2. 서해안개발에 따른지원 대정부 건의안	
'93. 3. 23(화) 10 : 00	내무위원회	1.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3. 3. 23(화) 10 : 00	내무위원회	3. 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4. 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 : 00	교육사회 위 원 회	1.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1 : 00	건설위원회	1.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안	
14 : 00	본 회 의 (제 2 차)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93. 3. 25(목) 14 : 00	본 회 의 (제 3 차)	1. 의사일정변경의 건 2. 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3.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5. 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8. 개발제한구역의재도개선에관한건의안 9. 서해안개발사업관련국비지급및문제해결을위한건의안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수	안 건	비 고
계	12		
조 례 안	6	1.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건 의 안	2	1.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안 2. 서해안개발사업관련 국비지원 및 문제해결을 위한 건의안	
기 타	4	1. 제7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도지사, 교육감 및 관계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4. 의사일정 변경의 건	

4. 條例案 處理內譯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180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사 (3. 12)	내무	○기금내 회전기금 운용 ○지역개발공채소화기관 확대 ○융자대상사업 확대 및 우선순위 설정 ○융자조건의 개선 ○기금자금의 관리	3. 25	3. 26	원안
181	충청남도민원재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	〃	○반복되는 고질민원에 관한 해결방안을 연구코자 도에 민원재심의 위원회(7~15인)	〃	〃	수정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182	충청남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사 (3. 12)	내무	○조례명 변경 충청남도검인계약서 제도실시에 따른 도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검인계약서 제도실시 및 농가의 농지취득지원을 위한 도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전업농 육성대상자가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농지취득시 취득세, 등록세의 40%를 경감하여 과세형평 유지	3. 25	3. 26	원안
183	충청남도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농어촌소득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세면제대상을 "농공단지에 실제로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단지내 토지, 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자" 로 개정	〃	〃	〃
184	충청남도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	○장학금지급대상자취득범위 : 의용소방대원당 2명 → 시, 군별장학생정원의 2배수	〃	〃	〃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장학금지급대상정원을 시군의용소방대원수의 5/100 ○대학생장학금 지급액 : 50만원→60만원 ○선발장학생은 해당학년 계속지급			
185	충청남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충청남도지사 (3. 12)	교육사회	○법령의 폐지에 따라 동조례도 폐지하는 것임	3. 25	3. 26	원안
186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안	康基世 의원외 12인 (3. 18)	건설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 ○대도시와 지방과의 차등규제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운영비 국고부담	〃	〃	건설부·충청남도 이송
187	서해안개발사업관련 국비지원 및 문제해결을 위한 건의안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3. 19)	〃	○석문국가공단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아산국가공단 등 서북부지역공단개발과 관련된 사항 ○군·장국가공단 조성사업 ○천안, 논산간고속도로건설사업 ○홍성~예산간국도 확장공사 ○보령댐 광역 상수도 개발사업 ○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 사업	〃	〃	건설부·상공자원부.농림수산부 이송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홍보지역 농업종합 개발사업 ○금강 2단계 농업종합 개발 사업 ○금강종합개발사업			

5. 第71回 臨時會 道政 및 敎育行政에 關한 質問 · 答辯要旨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전용설 (홍성군)	▪보령댐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중 충남도가 부담해야할 270억원의 예산확보계획을 비롯한 한전 부담금 조기 확보 및 국비 716억원 지원등 배전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보령댐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려면 무엇보다도 도지사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담금의 조기확보 및 국비 지원 대책 등 재정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한전에 공급하는 공업용수의 정수비와 홍수조절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한전에서는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한전과 아직까지 미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대책과 준공후 정수비와 홍수조절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몰 지역으로 편입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은 지	도지사 이동우	▪먼저 보령댐 건설사업비에 대한 재정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령댐건설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3,374억원입니다마는 한전 부담금 2,160억원과 국비 361억원, 도비 853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은 기본적으로 한전 부담금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 아래 한전측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한전으로부터 490억8,000만원의 부담금을 받아 보상금과 공사비등에 충당한 바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기존 협약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도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모두 853억원이 됩니다마는 이중 583억원은 한전으로 하여금 우선 부담하도록 한 다음 댐 준공 후 연차적으로 상환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으며, 나머지 270억원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확보되도록 배당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전과의 미합의된 사항에 대한 대책과 준공후 정수비와 홍수조절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질 문 내 용	답변	답 변 내 용
전용설 (홍성군)	역외의 상수원 보호구역내 토석채취 및 임상이용 행위 등 재산권을 포기할 잔여 토지에 대한 보상대책과 본댐 공사로 지정 청원, 이의 신청등 집단민원 발생 건수 167건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동우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한전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되는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마는 한전 우선 부담금 583억원에 대한 상환 이자율, 한전 용수 사용료 부담여부, 상수도 정수시설비, 홍수 조절비 부담등 4가지 사항은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같은 미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입장이 최대한 관철되도록 협의를 계속하되, 사업기간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부분부터 우선 해결하고, 미진한 사항등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한 후 처리할 계획입니다. 시행으로 토지와 건물 영업권등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대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지않은 진정과 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대다수의 민원내용이 보상과 관련하여 착오, 또는 누락이 되었거나 고액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누락과 착오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민원인의 협조하에 정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영농 보상등과 같이 고액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몰지역 주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도지사 이동우	민의 자생조직인 대책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용설 (홍성군)	•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수질환경 보존을 위한 기본법으로 수질환경 보존법이 '90년 제정 공포되므로서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마는 이 법은 중앙정부인 환경처가 관장하므로서 국가 정책 성격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니나 거의 모두 환경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으로써 지방자치 단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수질행정 체계를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지 않게 중앙집권화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배출허용 기준의 설정, 배출시설의 사업체에 대한 허가, 공동방지 시설의 설치, 폐수종말 처리시설등 모두 환경처 장관의 소관으로 되	보 사 환 경 국 장 김정인	• 먼저 수질환경 보전과 관련된 업무추진 체계는 기본적으로 환경 기초계획수립등 정책적인 업무는 중앙에서 다루고 인·허가와 지도·단속등 지방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수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배출 허용기준의 설정등 고도의 전문기술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단위 업무여건이 성숙된 후에 점진적으로 이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와 시·군에서는 지방의 환경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 장비를 대폭 보강하고 환경처로부터 공단에 대한 배출업소 설치허가와 지도·단속등 중요업무를 인수하여 차질없이 수행하는등 당면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환경정보망 구축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는 '80년대 까지만 해도 정부나 국민 모두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이에대한 적절한 대응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전용설 (홍성군)	어 있으며 시·도지사가 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기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짧은 설명입니다마는 이같은 제도적 한계에 지방문화 시대를 맞이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은 자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중앙정부에 집중되고 있는 상당수의 집행기능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감사 및 조사 사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대한 선도적 지방 자치단체로서 우리 도가 노력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책수단 선택에 있어서 새로운 기법들이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들면 배출기준의 규제와 병행해서 미국처럼 기술기준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보 사 환 경 국 장 김정인	환경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는 현시점에서는 법과 제도면에서 필요한 개선보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염물질 농도 규제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환경처에서 총량 규제 방향으로 법개정을 검토 추진중에 있고, 행정정보망은 중앙과 도간에 온라인 전산망이 구축되어 신속한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수질환경보존 기초시설에 대한 투자재원 확보대책은 정부는 환경개선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도에 '96년까지 75개 사업에 2,9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중 국비가 72%, 지방비가 28% 투자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기간중에 설치할 주요 환경 기초시설은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는 쓰레기 위생처리를 위해 시지역에는 소각로와 대단위 위생 매립장 1개소씩을 설치하고, 군지역에도 위생매립장 1개소씩을 각각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하수처리장 27개소, 분뇨처리장 10개소,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10개소, 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 15개소등 환경 기초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전용설 (홍성군)	총량규격 적용을 확대하는 것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정책수단의 도입에 대한 도차원의 노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제의 공동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유기적이고 협조적인 형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수단으로 환경 정보망 구축이나 관리 기술제공등의 협조망 구축의 제도화를 선도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미국의 경우를 보면 환경보전 시설의 보조금을 시설에 55%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은 점을 감안한다면 더군다나 이 분야에 대하여 국비보조가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기 이전이라도	보 사 환 경 국 장 김정인	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으로 있어 이러한 사업들이 완료되는 '96년도에는 환경문제가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끝으로 삽교호 수질개선 대책은 현재 삽교호 수질은 전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상류지역의 주 오염원인 생활 하수로 인해 2급수를 약간 상회 하는 수질이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도에서는 생활하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서 '9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근 시·군에 하수처리장 7개소,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3개소, 하천정화 사업 3개소, 분뇨처리장 농공단지 공동폐수 처리시설등 6개 사업에 총 1,222억원을 투입해서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건설할 계획으로 있어 이 계획된 사업이 완료되면 수질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전용설 (홍성군)	이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은 무엇이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 분야에 대한 보조금 배당현황과 시·도간 보조금 배분 비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삽교호 수질 개선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삽교호는 충남 서북부지역의 담수호로서 준공당시 계획은 인근지역의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마련을 위하여 공업용수원의 확충등을 위해서 대규모 방조제를 축조하여 담수량을 조정하는 한편, 부과적인 효과로서 인근에 유명한 온양온천지역의 온천수 충원수원으로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목적의 삽교호가 상류의 공장폐수와 생활하수등의 무차별 유입으로 인하여 오염의 정도가 심각해서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하기 곤란한 지경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전용설 (홍성군)	도지사께서 충남 서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젖줄이라 볼 수 있는 삽교호 수질개선 방안을 심층 검토하여 지방단위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의 관계부처에 건의, 조속한 삽교호 정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 균 (논산군)	• 근자의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 대다수 성향은 양보를 미덕으로 하던 예전과는 달리 지역이기주의 의식이 팽배하다 보니까 공공사업이나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하려면 각 지역 공히 조금도 손해를 감수하려 들지 않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관서에서는 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지역주민과 상당한 대화와 협의가 된다면 매사가 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도지사 이동우	• 지역 이기주의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공의원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사회공익 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주민들에 대한 설득과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그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사회공익 시설의 설치로 인해 불편을 겪고있는 지역과 주민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공 균 (논산군)	그러나 지역주민의 대화와 설득, 그리고 약속은 꼭 지켜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수많은 주민들의 대규모 반대 데모와 저지를 반복하던중 당국으로부터 지역개발 약속과 피해 최소화 대책에 양순한 주민들이 이해하도록 본의원을 비롯한 지역유지 여러분의 협력으로 시위가 우선 진정되고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업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학교 주변도로인 사월리 1, 2구의 도로포장 공사와 노성산 개발은 예산 검토조차 하지않고 있고, 분뇨 수거차량이 통행되는 도로포장은 아직껏 착수하지도 않고 있어 제2, 제3의 집단행동이 지금 방금이라도 재개되게끔 주민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까지 파악하셨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뇨처리 자동차가 주택가를 통과하여 온종일 운행	도지사 이동우	현재 육군 항공학교의 입지 주변지역인 논산군 성동면과 노성면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지구로 책정되어 있어 생활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논산 군민의 숙원인 항공학교 주변 도로 정비, 분뇨 처리장 주변의 진입로 포장등에 대해서는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등 각종지역 개발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공 균 (논산군)	되는 것이 견딜 수 없는 혐오감을 주고 있으니 동네 주변에 기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제방을 외곽도로로 활용하도록 포장해서 분뇨처리장이 제방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민의 소박한 요구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으로 구시대의 밀어부치기식 행정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도정을 책임지고 계신 도지사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며,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살던 고향을 그리워 하고 어릴 때 뛰놀던 뒷동산이나 학교 운동장 그리고 그 운동장의 느티나무를 먼 훗날에도 기억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0여년을 학교의 실습장으로 사용해 오면서 많은 지역의 인사를 배출	교육감 백승탁	• 논산공고의 실습지는 매각이 아니고 강산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수용되어서 토지대금을 보상받게 된 것입니다. 보상금 30억7,000만원은 우선 논산공고에 필요한 교실증축, 실습시설 확충 환경개선비 등으로 그동안 18억 5,0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잔여재원은 논산 지역에 설립하는 체육고등학교 신설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공 균 (논산군)	한 논산 공고의 실습 부지가 92년도 당초 세입 예산중 30억7,000만원이 토지매각대로 예산에 상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토지매각과 관련하여 그동안 지역에서는 여러차례의 공식, 비공식 모임을 통하여 논란이 되어 왔고 끝내는 도교육청의 방침대로 매각이 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의 불만과 불평이 컸었던 터에 본의원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위원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여 이 예산을 심사 하였고, 그 과정에서 '91년도 12월 19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제2차회의 계수 조정 과정에서 삭감된 일부 예산을 시·군지역 도서실 신축비에 6억원을 증액하면서 4개의 시·군에 1억5,0000만원씩을 배정해서 도서실을 신축토록 도교육청 관리국장과 합의를 하였고 인구가 20만	교육감 백승탁	도서실 신축예산액은 '92년도 예산에 기숙사를 겸한 학생 도서실로 4개교에 학교당 1억5,000만원씩 6억원을 계상하고 추가경정 예산에 학교당 5,000만원씩을 비롯하여 8억원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에 도서실 신축비에 대한 예산계상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89년도에 대전직할시 분리이후에 우수학생의 타 시·도 전출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저하된 우리 도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고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내고장 학교를 육성, 정착시키기 위한 시책과 더불어서 지역사회 인사, 학부모 동창회등의 학력중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 그리고 학부모 동창회등의 협조하에 기숙사를 겸한 학생 도서실 신축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상 4개교가 계획되었으나 집행과정에서 인문계 고등학교의 진학지도를 돕고자 온양고등학교, 조치원고등학교, 부여고등학교에 교당 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170명 규모의 도서실 신축비로, 확보된 예산 8억원과 지역사회 부담금 3억원중 10억원을 집행 했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공 균 (논산군)	명이나 되는 큰 논산군에 교육청에서 관리한다고 하여 사용도 안되는 명목뿐인 도서관 1동만이 있는 실정이므로 논산군 지역의 도서관 1동을 신청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배정하겠다는 도교육감을 대리하여 예산안 심사에 참여한 관리국장의 약속이 있었고 다음날인 '91년 12월 20일 예산결산 제2소위원회의 제3차 회의에서 가결하여 동일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한 바 있고, 당일 본회의에서 동예산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대로 통과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시 도서관 신축비 6억원을 책정해서 4개 군에 1억5,000만원씩 배정해서 네군데의 도서관을 신축키로 해서 4개군중 논산공고에 부지매각 환수금으로 생각하고 도서실 신축비로 1억5,000만원을 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마	교육감 백승탁	1개교는 예산형편상 추진하지 못한 것이며 타지역으로 배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동안 공균의원님을 비롯하여 논산지역 출신 의원들께서 논산공고에 도서실 신축을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논산공고에는 250명을 수용하는 550평 규모의 대규모 기숙사를 신축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근무환경 개선시설, 실습실등 시설비로 18억5,000만원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에 10개 공업계 고등학교가 있는데 논산공고가 타 공고에 비해서 양호한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논산공고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장과 협의해서 기술인력 양성기관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시설지원 대책이 있다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공 균 (논산군)	는, 당시 교육감을 대리한 관리국장이 이런 약속을 묵살해 버리고 지난해 도 교육감 선출시 논산지역에서 모 인사가 교육감에 출마함으로써 시·군에 1억5,000만원씩 네곳의 도서실을 배정했던 것을 논산공고만 제외시켜 놓고 슬그머니 세군데에 2억원씩 배정하여 집행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사회 도의상이나 지방화 시대의 행정에서 온당한 것이라고 보는 것인지 개탄하여 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서천군)	• 농어민에 대한 지원은 직접적인 지원방식 보다는 간접적인 지원방식이 더욱 효과가 클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므로 간접적인 지원 사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민이 내는 농지세를 전면 폐지토록 도의회와 협의	도지사 이동우	• 농지세 폐지 건의 문제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지세는 '84년까지만 해도 시·군세중 30%나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세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기초공제액의 대폭 인상과 세율의 단계적 조정등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납세인원과 세액이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송선규 (서천군)	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또 농민에게 농기계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한 농기계 부품공장을 건설하여 도직영 체제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서해안 지역의 해면을 매립하고, 금강하류에 있는 서천군 화양면 와초리의 하천부지인 갈대밭 30만평의 하천부지에 대단위 영농단지를 조성하여 그 이익과 별도의 도비 지원으로 농민이 내는 수세를 대납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 도가 300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것과 같이 농민이 사용하는 비료, 농약구입에 대한 보조 기금을 별도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도지사 이동우	농지세를 지방세로 계속 존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지난해 내무부에 정책 건의를 올린바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방세법만 개정하여 농지세를 폐지하는 경우 조세체계상 또다른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어, 현재 중앙에서 관련 세법 개정문제를 신중히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농민에게 농기계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한 농기계 부품 공장을 설립하여 도 직영 체제로 운영하는 문제는 송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도 자체의 농기계 부품공장을 설립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농기계를 공급하는 문제는, 일응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농기계 생산 구조는 중소기업에 하청과 납품등에 의한 조립형태로 그 부품의 종류가 기종 및 규격에 따라 수백내지 수천종에 이르고 있으며, 회사별 규격별 부품이 서로 호환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농기계 부품 공장 설립을 위한 재정수요와 관련 기술 및 경영측면에서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안매립과 하천부지를 이용

질문	질 문 내 용	답변	답 변 내 용
		도지사 이동우	하여 대단위 영농단지를 조성하고, 그 이익과 함께 도비의 지원으로 수세를 대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공유수면 매립은 건설부에서 국토의 기능과 용도에 따라 타당성 조사와 투자가치등을 분석,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하여야 매립이 가능합니다마는 도 입장에서는 농민의 생존권과 자연 생태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강 하류에 있는 서천군 화양면 와초리 일대의 하천부지 30만평은 건설부의 금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금강 하구둑의 담수시 수위 상승에 따른 누수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동 하천부지에 대단위 영농단지를 조성하는 일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농민의 비료, 농약구입에 대한 보조기금을 조성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농민에게 공급되는 화학비료와 토양 개량제에 대해서 공급단가의 일부를 정부에서 차액 보조하고 있어, 별도 보조문제는 상대적으로 그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도지사 이동우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고 파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약구입시에는 정부의 보조가 없으므로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조기금등 별도의 재원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선규 (서천군)	• 일제시대의 잔재인 관사는 도청의 경우 대전시 대흥동 326번지선에 집단되어 있고, 소위 관사촌으로 불리워지고 있어 어떤 권위의 상징처럼 되어 있으며, 실·국장급 이상이 거주하고 있어 알게 모르게 매년 관사수선비, 운영비 등의 명분으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임에도 예산편성 지침상의 한도액등으로 떳떳하게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여 실무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관사에 입주하고 있는 실·국장들도 도지사 관사와 오밀조밀하게 집단촌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용면	재 무 국 장 이종현	• 송의원님께서는 현재의 도청 관사는 매년 유지, 보수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뿐 아니라 이용에도 불편이 있다는 지적을 해주시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관사를 전량 매각 처분하고 아파트등으로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대전 직할시 중구 대흥동에 소재하고 있는 도청 관사는 총 12동으로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의 건물이 노후되어 유지, 보수비가 많이 소요되고 이용이 불편해서 아파트등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현재의 관사를 바람직하게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왔고 내무부에서도 그 규모와 운영에 대한 세부 기준을 설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송선규 (서천군)	에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생활에 불편을 느낄때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작은 정부를 구현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로 각급 기관장실의 면적을 축소하고 있는 이 마당에 당연히 도청관사 운영제도 또한 예산을 절감하고 이용하기에 편리한 쪽으로 과감하게 개선할 시점임이 분명하므로 현행 도청관사를 전량 매각처분하고, 수선비가 안 들고 이용에 편리한 아파트 등으로 분산하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재 무 국 장 이종현	니다. 그러나 도청 이전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관사의 개축이나 매각 이전하는 문제는 시기적으로 보아 적당치 않다고 판단되므로 당분간 현 관사를 그대로 유지를 하되 앞으로 도청 이전시기 문제와 연계해서 송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유념해서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사 운영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창 (아산군)	• 이번에 용담댐 건설사업으로 인해서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파괴, 수리권 보상문제, 또 기온변화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문제, 인삼피	도지사 이동우	• 현재 건설부에서 추진중인 용담댐은 전라북도 진안군에 위치한 총 저수용량 8억1,500만톤의 다목적 댐으로서 수자원의 이용제고와 용수공급을 확대하고 금강수계 전체의 홍수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원창 (아산군)	해 문제, 초당 24.4t의 유량으로 흐르던 것이 5t으로 감수되므로써 그 수질 오염의 악화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기 때문에 용담댐 건설사업은 다시한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물은 갈수록 부족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가? 현재도 아산군청에서 '91년도, '92년도에 2,500t이라는 물을 2차례에 걸쳐 요구했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는 물이 없다고 공급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담댐건설로 인해서 대청댐 물이 줄지않고 그대로 공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또 환경전문가들이 전국 호수중 부영양화 현상이 가장 심각한 곳이 대청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사결과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동우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 '97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영향권에 있는 우리 도를 비롯하여 대전직할시와 충청북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해 오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담댐의 건설로 대청댐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대청댐의 유수 유입량은 연간 32억 2,000t이나 그중에서 51%에 해당하는 16억5,000만톤을 사용하고 있으며 댐건설시 유입량이 5억톤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전체 이용량은 61%에 지나지 않아서 수원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댐하류인 우리 도에 있어서는 유입량이 감소될 경우 수질변화와 하천의 자정능력이 저하되는등 문제가 우려되고 그간 두차례에 걸쳐서 댐하류에 미치는 영향을 제조사해 줄 것을 건의하여 지난 2월 9일 말씀하신대로 지방의회의원과 대학교수, 언론기관, 주민등 다수 참여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한국 수자원공사는 지난 설명회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지역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아래 구체적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원창 (아산군)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과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등 두가지만 기준으로 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질소(N)와 인(P)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청호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사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고도처리를 해서 N.P를 제거해야만이 물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대청호에는 분뇨처리장이 1, 하수종말 처리장이 1, 가축폐수 처리장이 2, 오수 처리장이 6개로 모두 10개로 알고 있는데, 지난 2월 9일 우리 도청 대강당에서 건설부와 수자원 공사에서 나와서 답변이 21개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본 의원은 10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질문하니까 우물쭈물하고 여태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도지사 이동우	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 대청호의 부영양화 문제에 대해서는 댐축조 당시 환경영향 평가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관심과 기술의 미흡으로 축조된지 오래된 타지역의 호수와 같이 부영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원창 (아산군)	우리가 질소는 팔당댐이 0.937, 대청댐이 1.506, 1급수는 0.1이하, 2급수는 0.4이하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청댐이 1급수보다 7.5배가 더 나쁘고, 2급수는 4배가 더 나쁩니다. 또 인에 대해서는 팔당댐이 0.045, 대청댐이 0.054, 또 1급수는 0.01이하, 2급수는 0.03이하입니다. 그렇다면 대청댐이 1급수의 5배, 2급수의 1.8배가 나쁩니다. 그래서 대청댐의 수질은 1급수라고 하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3급수 이하라고 봅니다. 정확한 수질의 급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농촌의 진흥지역과 경지정리를 언제쯤 해 줄 것인지, 늦어도 금년말까지는 공급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농촌사람은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것도 불평불만인데 농사를 편리하게 짓기 위하여 조속히 경지정리를 하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 지난해 지정한 정부의 농업진흥지역 지정 정책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70년대부터 운영해온 절대 농지와 상대농지로 구분하여 관리하던 농지제도를 산업화, 경제화, 도시화에 따라서 변화된 사회여건에 맞게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이 발표되자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원창 (아산군)	끔 정부에 건의하고, 또한 진흥지역의 지정이 잘못된 곳이 있다고 하는데 다시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농어촌 개 발 국 장 송석상	일부에서는 오히려 농지를 규제하는 제도가 아니냐 하는 불평이 있는가 하면 특히 도시와 인접된 지역에서는 땅값이 떨어진다 하는 이유로 상당한 우려를 나타낸 바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당시에 지역적 여건을 감안해서 잠정지역, 저희들 도에는 2,300㏊가 됩니다마는 제외한 지역이 있었던 반면에 일부에서는 진흥지역에서 왜 뺐느냐 추가로 해달라는 추가 희망 지정도 있었던 지역도 있습니다. 이와같이 보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다시 정밀 재조정토록 해서 금년말까지 합리적인 재조정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지지역내 즉 경지지역이 저희들이 15만7,000여㏊가 됩니다마는 경지정리는 92년까지 대상면적의 79%에 해당하는 9만1,799㏊를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2001년까지 즉, 농어촌구조 조정 효과년도가 되는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착실히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第19節 第72回 臨時會

Ⅰ. 槪 況

1. 開會背景

○ 제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3년 4월 17일 집회공고를 실시하고 93년 4월 26일 14:00에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회기 : '93. 4. 26 ~ 4. 30 (5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3. 4. 26(월) 14 : 00	본 회 의 (제 1 차)	1. 제7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및특별위원회위원보임의 건 3. '93충청남도업무보고 4. 충청남도교육청업무보고	
11 : 00	의회운영 위 원 회	1. 제7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 건	
15 : 00	내무위원회	1.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 조례안	
15 : 00	농림수산 위 원 회	1. 농기계반값공급추진업무보고	
15 : 30	지역경제 위 원 회	1. 충청남도에너지이용합리화에관한사무위탁조례안 2. 신경제100일계획세부실천방안보고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3. 4. 27(화) 16 : 00	내무위원회	1. 자연학습원방문	
09 : 00	교육사회 위 원 회	1. 금강의 오염수 유입 현장조사	
10 : 00	농림수산 위 원 회	1. 잠업검사소, 임업시험장(산림박물관), 2. 청양구기자 시험장 방문	
09 : 40	지역경제 위 원 회	1. 대전EXPO추진사업장 방문 2. 서천 한산모시타운 추진사업장 방문	
13 : 00	건설위원회	1. 보령댐 건설사업소 및 댐현장 방문	
'93. 4. 28(수) 09 : 30	교육사회 위 원 회	1. 장 · 군지역 매립지 현장견학 2. 보령군 공설 묘원공사 현장방문 3. 홍성 화장장 방문	
10 : 00	농림수산 위 원 회	1.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 방문	
11 : 00	건설위원회	1. 도로관리사업소 방문	
'93. 4. 29(목) 15 : 00	도청이전 특 위	1. 충청남도청이전 추진현황 보고 2. 충청남도청이전기획단설치조례안	
'93. 4. 30(금) 14 : 00	본 회 의 (제 2 차)	1. 충청남도에너지이용합리화에관한사무위탁조례안 2.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수	안 건	비 고
계	6		
조 례 안	2	1.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기 타	4	1. 제7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및특별위원회위원보임의 건 3. '93충청남도 주요업무 보고 4. '93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보고	

4. 條例案 處理內譯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188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사(4. 20)	내무	○도문예진흥기금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치할 수 있는 기관을 은행에서 금융기관으로 변경함.	4. 30	5. 3	원안
189	충청남도에너지이용합리화에관한사무위탁조례안	〃	지역경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제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정열사용기자재의 표시의무, 표시금지, 실태조사 등의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	〃	〃	수정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는 업무를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 위탁시행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를 유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第20節 第73回 臨時會

Ⅰ. 槪 況

1. 開會背景

○ 제7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건 처리를 위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93년 5월 15일 집회공고를 실시하고 93년 5월 24일 14:00에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회기 : '93. 5. 24 ~ 5. 31 (8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3. 5. 24(월) 14 : 00	본 회 의 (제 1 차)	1. 제73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 건 3. '92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4. '93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5 : 00	농림수산 위 원 회	1. 충청남도농촌지도자, 4-H회원육성기금조성 및 운용에관한보고 2. 지역특화작목 시험장 관리사 신축취득재산에 관한 보고 3. 농협충청남도지회 업무현황 청취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3. 5. 25(화) 14 : 00	내무위원회	1.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안 5. 충청남도정수물품취득및처분에관한 건 6. '93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 건	
10 : 00	교육사회 위 원 회	1. '93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1 : 00	지역경제 위 원 회	1.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 · 충남지부 업무현황	
'93. 5. 26(수) 11 : 00	예산결산 위 원 회	1. '93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93. 5. 27(목) 10 : 00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 위 원 회	1. '93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93. 5. 31(월) 10 : 00	예 산 결 산 특별위원회	1. '93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4 : 00	본 회 의 (제 2 차)	1. '93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남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안 3.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정수물품취득및처분에관한 건 7. '93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 건 8. 특별소비세의목적세전환철회촉구건의안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수	안 건	비 고
계	12		
조 례 안	4	1.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예 산 안 (결 산 안)	1	1. 1993년도 제1회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건 의 안	1	1. 특별소비세의 목적세전환 철회촉구 건의안	
동일승인안	2	1. 정수물품취득 및 처분에 관한 건 2. 1993년도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	
기 타	4	1. 제73회충청남도의회 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및 위임 선임의 건 3. '92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93제1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條例案 處理內譯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190	충청남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충청남도지사 (5. 15)	내무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와 동사업의 최초허가 및 고시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사	5. 31	6. 1	원안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해 주려는 것임			
191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사 (5. 15)	내무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택시공급기준과 그 작성에 관한 사항」과 중기등록 및 등록증 교부등 20건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5. 31	6. 1	원안
192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	〃
193	충청남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	〃	〃	○자연학습원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교육위원회교육감'에서 '부지사'로 하고 당연직 위원중 '도교육위원회 학무국장'을 '도교육청중등교육국장'으로 함	〃	〃	〃
194	정수물품취득및처분에관한건	〃	〃	○행정업무의 자동화 추세등에 따라 냉장고등 184대 1,422백만원을 취득하고, 4대 113백만원을 처분하	〃	〃	〃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려는 것임			
195	'93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충청남도지사 (5. 15)	내무	○공무원교육원 재산처분, 장항소방파출소 부지교환과 소방파출소부지확보 및 건물신축, 특화작목시험장관리사 신축등을 위한 것임	5. 31	6. 1	원안
196	'93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충청남도교육감 (5. 20)	예산결산특위 (교사위)	○교육부에서 교부금, 양여금, 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고, '92 잉여금등의 추가재원이 확보되어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시설비등 각급 학교현안사업추진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임	〃	〃	수정
197	특별소비세의 목적세전환철회촉구건의안	내무위원장 (5. 25)		○빈약한 지방재정속에서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휘발류, 경유, 승용차분의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하려는 것을 철회토록 하려는 것임	〃	〃	국회의장외 7인 건의

第21節 第74回 臨時會

Ⅰ. 概 況

1. 開會背景

○ 제7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93년 5월 29일 집회공고를 실시하고 93년 6월 7일 14:00에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회기 : '93. 6. 7 ~ 6. 14 (8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3. 6. 7(월) 14 : 00	본 회 의 (제 1 차)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 2. 충청남도청이전연구추진위원회및기획단설치조례안 특별위원회의의 건 3. 제74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5. '93제1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6. 충청남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조례안재의의 건 7.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도지사·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9. 휴회의 건	
15 : 00	의회운영 위 원 회	1. 제1회충청남도추경예산안 • 의회사무처 소관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3. 6. 7(월) 16 : 00	내무위원회	1. '93제1회충청남도추경예산안 • 공보관실, 민방위국, 소방본부 소관	
16 : 00	농림수산 위 원 회	1. '93제1회충청남도추경예산안 •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소관	
16 : 00	지역경제 위 원 회	1.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93제1회충청남도추경예산안 • 지역경제국 소관	
'93. 6. 8(화) 10 : 00	내무위원회	1. '93제1회충청남도추경예산안 • 기획관리실, 공무원교육원, 내무국, 재무국, 계룡출장소 소관	
10 : 00	교육사회 위 원 회	1. '93제1회충청남도추경예산안 •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소관	
10 : 00	농림수산 위 원 회	1. '93제1회충청남도추경예산안 • 농촌진흥원 소관	
11 : 00	건설위원회	1. 충청남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시 · 관할구역내국도의관리청지정조항삭제건의안 4. '93제1회충청남도추경예산안 • 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단, 보령댐 건설사업소 소관	
'93. 6. 9(수) 10 : 00	도청이전 특 위	1. 충청남도도청이전연구추진위원회및기획단설치 조례안	
14 : 00	예산결산 특 위	1. '93제1회충청남도추경예산안 • 내무위원회 소관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3. 6. 10(목) 10 : 00	예산결산 특 위	1. '93제1회충청남도추경예산안 •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백제문화권 특 위	1. 백제문화권종합개발사업추진상황보고	
14 : 00	본 회 의 (제 2 차)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93. 6. 11(금)	예산결산 특 위	1. '93제1회충청남도추경예산안 • 건설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지역경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3. 6. 14(월) 10 : 00	예산결산 특 위	1. '93제1회충청남도추경예산안	
14 : 00	본 회 의 (제 3 차)	1. 의사일정변경의 건 2. '93제1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3.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청이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안 7. 제4대충청남도후반기의장단선거실시에대한결의문 채택의 건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수	안 건	비 고
계	15		
조 례 안	6	1.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예 산 안 (결 산 안)	1	1. 1993년도 제1회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결 의 안	1	1. 제4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위장단 선거실시에 대한 결의안	
재의요구안	1	1. 충청남도의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기 타	6	1. 제74회충청남도의회 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93제1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도지사,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6. 의사일정 변경의 건	

4. 條例案 處理內譯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163	충청남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재의요구안	충청남도 지사 (1. 19)	본회의 상정	○선서의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지방자치법에 위배	6. 7	6. 8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조례로서 벌칙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헌법, 형법, 지방자치법에 위배됨			
198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장 (5. 31)	본회의 상정	○상임위원회간 불균형하게 배분된 소관부서와 위원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임 • 개정 내용 - 의회운영위 11인 - 기획경제위 11인 - 내 무 위 11인 - 교육사회위 11인 - 농촌수산위 11인 - 건 설 위 10인	6. 7	6. 8	원안
199	시관할구역내 국도의관리청 지정조항삭제 건의안	李甲俊 의원외 10인	건설	○ 유 보	6. 14		
200	충청남도도청 이전연구추진 위원회및기획 단설치조례안	충청남도 지사 (6. 3)	도청 이전 추진 특위	○ 부 결 본회의에 부의않키로 가결	〃		
201	충청남도중소 기업육성기금 설치및운용조 례안	〃	지역 경제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키 위함	〃	6. 16	원안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202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사 (6. 3)	건설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법령에 맞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증원하여, 위원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과 관련하여 현지조사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임	6. 14	6. 16	원안
203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새법령에 의거 심의위원수를 증원하고 또한 건설심의대상공사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대형화추세에 대응하고 전문적인 설계심의를 도모하기 위함	〃	〃	〃
204	'93년도제1회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예산결산특위	○ 일반회계 • 세입은 380백만원 감액 • 세출은 - 일반행정비등 660백만원을 삭감하고 - 사회복지비등 280백만원을 증액하며	〃	〃	수정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특별회계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함			
205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안	충청남도청이전특위위원회	(본회의 상정)	○'89.1.1일자로 대전직할시 분리로 도청이전문제가 대두되면서 '92.12.24 도의회에 도청이전특별위원회를 구성활용중에 있어 ○집행부에서도 도청이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도청이전추진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기 위함	6. 14	6. 16	
206	의사일정 변경의 건	孔均의원외 47인	〃	○제7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중「제6항으로 제4대 충청남도의회후반기 의장단 선거실시에 대한 결의문채택의 건」을 추가하기 위함	〃		
207	제4대충청남도의회후반기의장단선거실시에대한결의안	〃	〃	○제75회 충청남도의회에서 실시하게될 제4대 충청남도의회후반기 의장단의 선거실시와 관련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투표권을 행사하여 위원간의 화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		

5. 第74回 臨時會 道政 및 敎育行政에 關한 質問·答辯要旨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갑준 (서산시)	• 새정부 출범이후 간소한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내무부의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조직개편의 추진중에 있고, 그에 따르면 도의 재무국 및 일반실·과가 폐지 또는 통폐합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화 시대에 있어 행정수요와 지역실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내무부의 중앙집권적인 획일적 구상에 의해 지방행정의 자치기반과 탄력적인 대응능력을 상실시키는 요인으로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이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지방행정의 조직이 내무부의 조직감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마치 개혁과 사정의 대상이 지방행정에만 있는 듯이 개혁의 방향감각조차 상실한채 구시대적인 의식과 발상에 의해 짜 맞추는 듯한	도지사 이동우	•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직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의 지도·감독 권한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 행정조직의 개편 작업도 이러한 법규정을 근거로 해서 각 도의 사정을 기초로 개편작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국 신설당시 설치목적은 이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방 자치실시를 계기로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만 새정부 출범후 간소하고, 능률적인 정부를 실현한다는 지방행정조직도 비능률적인 조직은 통폐합하고 민원, 복지, 서비스 분야들은 보강한다는 개편방안이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국의 폐지도 이러한 방향에서 결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재무국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그 업무는 그대로 내무국에 통합되기 때문에 기능수행상 별다른 문제는 없게 됩니다. 특히 세입을 관장하는 세무과는 현재의 직제가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지방 세정 업무추진에는 아무런 지장이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갑준 (서산시)	형식적, 실적주의에 급급할 때 그 피해자는 누구인지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나마 1만5,000여 도 산하 공무원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인적인 소감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지방자주재정력의 확충을 위하여 '91년 7월 15일자로 기구를 개편하여 각 도에 재무국을 발족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만에 존폐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직제가 왜 신설되었는지 의구심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92년부터 '93년도는 전국 각 지역에서 유난히도 교량 및 아파트 붕괴사고 대형화재, 열차전복 사고등의 참사가 많았던 해 였으며 이들의 발생요인이 모두	도지사 이동우	없을 것입니다. 또한 내무부의 이번 개편방안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자율조직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고 있어 앞으로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같이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먼저 장마철 풍수해에 대비한 예방대책에 있어서는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능한한 사전에 예방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우기인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갑준 (서산시)	가 인재라고 불리어질 만큼 예방행정이 소홀했거나 늑장 행정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받은 바 있었는데, 최근 지난 1일 밤부터 우리 지역에 내린 태풍을 동반한 집중폭우로 23명의 귀중한 인명피해와 87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던 것도 기상청의 늑장 예고에다 태풍경보를 통보받은 기관에서의 대피령 미발령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예방행정의 중요성이 다시한번 강조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충청남도의 풍수해 예방대책 및 방역대책은 과연 완벽한 것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동우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에 대비해서 도 본청과 시·군·읍·면에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며, 지난 3월부터 재해의 우려가 있는 50개소의 위험지구를 일제히 조사·정비하였으며 특히 재해취약지구인 대형 공사장 17개소를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수해예방을 위해서 금년에는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8개소와 일반하천 개수 2개소, 수문 10개소, 배수장 1개소를 설치 또는 정비하고 있으며 95년까지는 모든 수해 상습지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여 수해에 대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금년도 내무부에서 네명이 승진하여 충청남도로 전입했는데, 충청남도에서 내무부로 전출된 공무원은 두사람 밖에 되지 않았으며,	내무 국장 이종현	•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내무부에서 전입되는 사무관은 군수급으로 6급공무원은 도의 과장급으로 보직되는 등 중앙정부의 인사 관행이 지방청에서 열심히 근무하여 온 많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갑준 (서산시)	상급기관에서 전입되는 공무원은 그동안에 인사관행이라는 구실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국비 서기관인 군수로 발령하여 도의 조직과 현실을 본다면 사실상 2단계 승진의 과분한 인사의 특혜 영광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무부의 6급 주사가 도의 과장요원으로 배치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근무하는 우리 지방공무원중 6급 주사가 5급 직무대리로 승진해서 사무관 시험을 거쳐 합격후에 보통 10여년 이상의 세월을 열심히 일을 해야만 도의 과장으로 발탁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도의 계장중에서는 국가에서 치르는 시험제도의 최고 수준인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난후, 도에 배	내 무 국 장 이종현	은 공무원들에게 소위 말하는 낙하산식 인사에 상당한 불만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이런 바람직스럽지 못한 인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를 지방행정 쇄신 과제로 선정을 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받아 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인사는 인사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격무부서와 남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여 온 공무원을 과감하게 발탁하여 사기를 올려주고 적재적소의 인사배치로 행정의 능률 제고는 물론 조직의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갑준 (서산시)	치되어 근무하는 공무원도 여러명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지방청 공무원의 입장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제시해 주시고, 이런 사례가 앞으로 없도록 인사운영시 반영하여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래 (논산군)	• 보령댐의 건설은 충남 서북부 2개시 10개지역의 생활용수, 공업용수난을 해결키 위하여 1일 29만2,000톤의 용수 공급을 목표로 한전 순수 부담금 2,160억원, 도부담 270억원, 건설부 국고지원금 361억원, 도에서 장기 상황하여야 하는 한전 우선 부담금 583억원 합계 3,374억원을 투자하여 '95년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지난 '90년 시행초부터 이주민의 보상문제를 시작으로 '92년 6월 착공된 바 있으나 사업비 부담금과 관련	도지사 이동우	• 그동안 도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의 추진을 촉구해 주신바가 있습니다만 보령댐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3,374억원으로 사업을 착수한 이래 한전에서 611억8,000만원이 지원되었고, 도비 25억원이 확보되어 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보상분배에 732억원중 520억원을 지급하여 보상실적 71% 댐 공사진도 15%에 이르고 있는 현시점에서 사업의 중단이나 사업소 철수문제는 어려운 문제임을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댐 건설과 관련한 충남 서북부 지역의 용수공급체제 재편 문제에 있어서는 보령댐 내동 광역 상수도의 급수계획 구역은 2시 10읍 6개면 등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박원래 (논산군)	하여 한전측과 도와의 입장 차이와 당초 건설부가 지원 키로 했던 361억원 마져 지원이 불투명해 지면서 본 사업은 목표년도 까지 완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서북부 지역의 용수공급 체계를 불가피하게 재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한전측과의 입장을 보면, 한전 우선 부담금 583억원에 대한 이자 상환율 문제, 1일 5만톤 규모의 한전 용수사용료 부담문제, 184억원의 상수도 정수시설비 문제, 홍수조절비 문제등 4가지가 쟁점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를 야기시킨 것은 건설부가 댐건설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면서 1일 9만2,000톤의 용수를 추가로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여 소요사업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거의 같은 규모의 용담댐 건설은 전액 국비를 투자	도지사 이동우	으로 사업 시행자와 관리자의 변동계획없이 용수공급은 계획대로 추진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최대한 지원되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소요 사업비 조달방안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총 사업비중 한전부담금 22,160억원중 2,075억원에 대하여는 이미 한전과 협약한 사항이며 한전부담금 583억원에 대한 이자율은 당초 우리 도의 의견인 5.5%와 한전측 요구인 15.0%에서 현재는 우리 도 7.5% 한전 9%안이 제시되는 등 점차적으로 의견 차이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해 주신 네가지 미 협의사항도 상호 최선의 방법으로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계속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국비 부담금 361억원을 비롯한 필요한 재원확보에 대하여도 우리 도가 계획한 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박원래 (논산군)	하여 건설하고 있음에도 보령댐의 경우는 충청남도가 막대한 소요사업비의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정확한 판단도 없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처음 시도하려는 과욕만을 앞세우고 이를 건설부측에 계속 요청하여 승인도 인정도 아닌 행정지도 고문만을 받고 하천 예정지로 고시하므로서 비롯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부에서 약속한 국비 361억원의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한전 우선 부담금 583억원에 대한 이자 상환율등이 타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재정자립도 36%의 열악한 도 재정으로는 사업추진이 더 이상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시점에서 보령댐건설을 전면 중단시킴은 물론 보령댐건설사업소를 철수시키고 서북부지역의 용수공급 체계를 개편해야 될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박원래 (논산군)	어떠한지,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면 막대한 소요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하여 언제까지 완공시킬 계획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충청남도가 현재 추진중이거나 구상중인 주요개발 사업을 보면 계룡신도시 건설, 교통망 확충, 공단개발, 문화 관광개발등 7개 분야에 50여건으로 그중 제2차 건설부 종합계획의 경우를 보면 총사업비의 12.3%인 3조5,474억원을, 농어촌관련 각종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17%를 차지하는 2조3,450억원을 민간자본으로 유치 충당토록 되어 있어,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투자 여건이 시급히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사업계획의 전면수정 또는,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청양 첨단산업단	도지사 이동우	• 우리 도가 현재 민자유치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관광지 개발사업 14건 공업단지 개발사업 15건 공원 개발사업 4건 기타 2건 등으로 모두 35개 사업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예상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모든 사업들이 자치 계획사업으로 아직까지는 사업의 성과가 크게 가시화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관광지 개발사업중 신정호, 용연저수지, 각원사 개발사업은 사업성이 미흡한 점을 감안 당초 계획을 재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도가 중앙과 협의하여 추진할 민자유치 사업으로 가로림만 조력발전, 보령항만 건설, 예산 농산물 유통센터등 대단위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박의원께서 염려하시는 바와같이 경기침체와 기업의 투자여건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박원래 (논산군)	지 조성은 민자유치에 실패함에 따라 당초 계획이 사실상 무산되어 첨단산업단지가 일반공단으로 전락되기에 이르렀으며, 백제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안면도 관광단지 조성사업등 대규모 민간자본 유치사업도 민간기업들의 투자의욕 저하로 정상사업 추진이 불투명함은 부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연례행사처럼 각종 개발계획을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 발주하면, 대부분의 연구보고서가 재원대책을 민간자본 유치로 수립 보고하고, 도측에서는 이 계획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착수조차 못하고 계획을 변경, 수정하는 악순환만 계속 되풀이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수립된 대규모 개발 사업계획중 민간자본의 유치실패로 계획자체를 수정해야될 사업은 어떤것들이며, 여타 사업계	도지사 이동우	예정된 민자유치의 제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발규모나 시기를 조정하거나 새로운 개발기법을 도입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신중히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의 피해보상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장이, 노후 복합건물의 안전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박원래 (논산군)	획도 민간자본 유치가 계속 부진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서천화력을 비롯하여 보령화력, 태안화력, 당진화력 등 4개의 화력발전소가 가동중이거나 건설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가동에 들어간 서천화력 및 보령화력 발전소 주변에는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서천화력 주변 주민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한국전력이 서천화력 발전소를 건설하므로서 동백정 해수욕장 폐쇄에 따른 피해, 발전소 주변의 해역일대가 어업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신규 면허의 획득과 어업권 행사 불능에 따른 피해, 발전소 주변 지역의 매립으로 인한 맨손 어업피해, 석탄재 및 분진으로 인한 호흡기	지 역 경 제 국 장 노규래	• 박의원님께서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철저한 환경피해 절감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서천화력과 보령화력이 가동중에 있고, 태안, 당진 등 두개 지역에 신규로 화력발전소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건설시에 해양오염방지를 위해서 해양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환경처와 사전 협의토록 하였고, 호안공사와 회사장에는 토사등에 의한 오탁을 방지하고자 오탁방지망과 차수벽을 설치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완벽한 집진설비를 설치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 자체적으로도 사후 환경관리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매분기별로 공해발생 여부를 분석, 보고토록 하여 이를 검토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박원래 (논산군)	질환등 건강상태에 대한 피해액 총 824억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며, 보령화력 주변 주민들도 분진과 온수방출, 유해물질 방출로 인한 가축의 폐사, 시력장애등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전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위원은 집단민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새로이 건설되고 있거나 계획되고 있는 태안화력, 당진화력 발전소가 건설후 똑같은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해안 청정해역의 어족자원등 천혜의 자원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보존한 후 후세에 값지게 물려 줄 책임과 의무가 있어 향후 도내 서북부 지역의 개발시에는 사전에 형식적이고 전래 답습적인 환경영향평가 방식을 탈피하고 책임소재가 분명한 환	지 역 경 제 국 장 노규래	그리고 서천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피해보상 요구의 문제는 지금으로부터 14년전인 '78년 10월에 주민과 한전전력이 합의 보상하고 건설되었기 때문에 민원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쉽사리 판가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보령화력 주변 주민들도 분진과 유해물질이 방출되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도에서는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전력과 지역 주민대표가 협의회를 개최하여 보상등 관련문제를 협의, 검토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박원래 (논산군)	경 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떤지와 화력발전소 주변의 집단민원에 대한 해결전망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치호 (천안시)	•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지시, 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지만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얼마든지 자율적이고 창의적이면 미래 지향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4월 도의회 임시회 개최시 충청남도가 의회에 보고한 '93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중 「모든 공직자는 다시 태어나는 자기혁신을 이룩해서 신한국 창조에 솔선수범하고, 형식과 절차에 얽매여온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내용과 결과를 중시하는 주민위주의 봉사행정을 수행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도지사 이동우	• 행정의 민주화와 지방화 추세에 따라 지방행정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제고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저 역시 맹치호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효율적인 지방자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의 기능배분 문제와 함께 지도감독 체계에 대해서 연구작업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 전반에 걸쳐서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 지방행정 쇄신 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10건을 발굴하여 이중 60건은 자체적으로 개선 완료하였고, 150건은 중앙에 개선을 건의하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날로 변화하는 사회적 여건과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맹치호 (천안시)	또한 새로운 생각과 자세로 행정전반에 걸쳐서 일대 쇄신을 하며 잘못된 제도와 관행과 행태를 과감히 쇄신하겠다고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본 의원은 적극적으로 찬사를 보내면서, 그렇다면 이제까지 중앙정부의 지침과 필요이상의 간섭으로부터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대처했고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혹시 도지사의 재량과 권리를 포기하신적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중앙정부의 필요이상의 지침과 간섭은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에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건의를 관련부처에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도지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은 산업의 뿌리이며 중소기업이 잘 살아야 국민경제가 건강하다는 것을 경제적인 기본상식입니다.	도지사 이동우	는 행정사무 처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맹치호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중앙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한 부작용 문제는 그동안 도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의 여건이나 도정 시책과 상충되는 지시에 대해서는 수시 협의를 통해서 지역 실정에 맞도록 운영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먼저 중소기업 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문제는 앞으로 기구 및 인력을 비롯하여 효과적인 중소기업 육성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해서 중앙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 적극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맹치호 (천안시)	이렇게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수는 '92년말 현재 2,700여개소로 전체 도내기업체 2,750여개의 98%를 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추진을 신경제 계획의 핵심과제로 삼고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1조 4,200억원의 공공재원을 조성하여 올해안에 전국 2,000여개의 중소기업에 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과학화 전문화 복잡화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통합하고 주민의 편리함과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중소기업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로 도에서 현재까지 조성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내역과 앞으로 조성할 기금은 어떠하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조례에 의해 조성	도지사 이동우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육성자금조성 내용 및 앞으로 조성할 기금과 중소기업 지원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81년부터 조성해서 현재 33억5,000만원을 조성하여 은행에 예치하고 예치액의 3배 정도는 운영 자금으로 도내 중소기업에 저리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가능한 한 많은 기금을 조성해서 중소기업의 육성에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문제는 현재 도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육성 기금설치및 운영조례안」에 기업 운전자금 계정과 기업구조개선 자금 계정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선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해 나가면서 별도의 특별회계 설치 필요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인력 대책과 기술지원 대책에 있어서는, 인력 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각 시·군 및 출장소에 취업 정보센터와 읍·면·동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맹치호 (천안시)	된 지원자금과 별도로 지방비에서 조성예정인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120억원에 대해 일괄성있고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소기업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중소기업경영에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인력과 기술 지원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느 기업은 해외인력을 부분적으로 고용하는 업체도 있습니다마는 떠나거나 떠났던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업체에서 일할 수 있는 제반 여건 조성대책은 어떠한지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대전 대덕연구단지에서 개발한 우수한 기술과 연구되는 기초과학분야를 도내 중소기업체에 소개하고 연계시키는 충남도의 역할과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에서 생산	도지사 이동우	에 취업상담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천안, 공주, 서산 등 3개 시에서는 광역 취업 전산망을 구축하고,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용 촉진 훈련 등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지정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고용촉진을 위한 훈련이수자 전원을 시·군 취업정보센터에 구직 등록토록 하는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기술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과제선정 및 업체 진단중에 있으며, 6월 중순 부터는 기술지원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관내 1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교수, 책임연구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지도 위원을 선정하고 1개 업체당 25일 범위내에서 기술지도위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전담 지도토록 할 계획입니다. 넷째, '92년도 도내 중소기업 제품 구입 내역과 앞으로 구매계획에 대해서는 '92년도에 우리 도청이 도내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입한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맹치호 (천안시)	된 제품이 판매되지 않는다면 기업의 존재 의의는 전혀 무의미할 것입니다. 우리 도가 '92년도에 구입했던 물품중에서 도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입한 내역은 어떠하며 앞으로의 구매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동우	실적은 총 253건에 5억4,800여만원으로써 '91년 대비 4.9배가 증가했으며, 앞으로 우리 도청이 구매하는 제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도내 중소기업체의 제품을 구입하여 중소기업의 판매난을 해소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 경제과학올림픽이라 불리는 대전EXPO는 우리나라의 첨단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활성화 시켜서 선진국을 향한 경제도약의 전기를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국민의식의 선진화와 문화예술의 국제화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한층 더 높혀 주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세계박람회를 우리도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각 분야별로 한차원 발전 승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 준비해온 사항 가운데 첫째로 대전엑스포 개최에 따른 도민의식 향상과 참	기 획 관 리 실 장 정하용	• 도에서는 그동안에 과학기술은 대전에서, 문화 관광은 충남도에서 담당한다는 기본 인식을 가지고 5개 분야 42개의 사업을 선정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중 31건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11건은 오는 7월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민의식의 향상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난 '91년부터 도와 시·군에 엑스포 추진 지원을 위한 범도민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각급 기관과 사회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아래 질서, 친절, 청결의 3대 실천 운동을 다각적으로 전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6월 18일에는 대전 엑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맹치호 (천안시)	여를 위하여 도에서는 어떠한 시책을 추진했습니까? 88서울 올림픽이 전국민의 성원속에 무사히 치룰 수 있었던 것처럼 대전과 바로 인접해 있는 우리 도민의 절대적인 지원과 자발적인 참여는 성공적인 엑스포 행사에 이바지 할 뿐만 아니라 도민의식 향상과 절호의 기회입니다. 둘째, 숙박문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엑스포기간 3개월은 여름방학과 더불어 맑고 높은 가을이 연속되는 기간입니다. 도내 온천지역과 관광지역의 숙박업소 정비문제와 숙박업소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산재되어 있는지 미리 널리 알리는 홍보체제 가동입니다. 셋째, 문화관광산업 추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충남은 백제문화의 본 고장입니다. 백제권 개발이 지지부진한데 대하여 신라문화권과	기 획 관 리 실 장 정하용	스포의 밤이라는 행사를 개최하는등 도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숙박업소의 정비와 안내에 있어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숙박시설 5,000실의 추가확보가 차질없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업소의 위생관리와 친절교육등 종합적인 숙박 대책도 숙박업 조합측의 협조와 함께 행정지도를 통해서 크게 개선이 되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와 협조해서 도내 465개소의 엑스포 업소를 지정하고 앞으로 13개소의 숙박 안내 정보센타를 운영하면서 정확한 숙박 정보를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제공해 주고 친절한 안내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문화관광 홍보 방안과 지역 특산품의 판매문제입니다. 엑스포 기간중 문화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서 금년에는 각종 홍보물을 국내의 관광 업소는 물론이고 일본인에게까지 이미 배부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박람회장 안에는 대형관광 안내판과 안내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맹치호 (천안시)	비교되기도 합니다마는 엑스포기간중 우리 도에 산재해 있는 각종 문화재와 문화행사에 대해 홍보하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 기간중 외국인 관광객은 30만~50여만명이며 이중에 50% 이상은 일본인이 차지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일본인들에게 가장 호기심을 끄는 관광상품은 백제문화입니다.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중에서 특히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엑스포 행사기간중에 충남 전통문화와 문화행사의 내용에 대해 어떠한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기 획 관 리 실 장 정하용	있습니다. 그리고 22개의 관광 루트에 대해서는 도로변에 지역 특산물 판매소를 설치하는 등 판촉활동을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박람회장 안에도 풍물시장을 설치하고 엑스포 해외 구매단과의 수출상담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대전 엑스포가 우리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도록 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시우 (대천시)	• '91년도까지 도내 총생산 추계결과 '91년도 현재 1인당 총생산에서 경상남도가 631만7,000원이고, 우리 충청남도는 경상남도의 절반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도지사 이동우	• 이번 통계청이 발표한 '91년도 지역 총생산량 추계는 총 도내 생산액을 단순히 우리 도 인구로 나눈 수치가 됩니다. 즉 생산소득을 최종적으로 어느 시·도 주민이 더 가지고 있는가에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시우 (대천시)	376만6,000원으로서 전국에서 제일 하위이며 성장속도 역시 최근 6년동안 경기, 경남, 인천지역은 년평균 11.6%에서 16.5% 성장을 거듭한 반면 우리 충남도의 경우는 매우 유감스럽게도 8.8%의 증가에 그쳤습니다. 전국 평균치에도 못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어 우리를 더한층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 소득부분에서도 서울, 경기, 인천이 46%, 영남지역이 30%인 반면 우리 충남도가 11%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간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낮다는 것은 생산기반이 약하다는 것이고, 생산 기반이 약하다는 것은 그만큼 개발이 안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역개발 사업부분에서 다른 시·도에 크게 떨어져 있	도지사 이동우	대한 수치는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발표내용만을 가지고 각 시·도민의 생활수준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총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번 통계와 관련해서 1인당 도내 총생산량이 전국에서 최하위로 나타난 것은 과거 우리나라는 부가가치가 높은 2차, 3차 산업이 대도시 중심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지난 '89년 대전직할시가 분리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농어업이 전국평균 7.9%에 비해서 우리 도는 26.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충남은 '89년에 대전직할시가 분리된 후 도세 회복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200만 도민과 더불어 공업화 시책등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92년 부터는 공업화 시책이 서서히 가시화되어 년간 총 생산액 증가율이 25%로 전국평균을 상회하여 증가하기 시작했고, 또한 그간 추진해 온 서해안 공업단지, 대산 석유화학단지, 지역별 농공단지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생산액을 기준으로 전국 증가율을 크게 상회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시우 (대천시)	으며, 도로포장 및 각종 개발사업등 산업기반 시설도 다른 지역에 비하여 뒤쳐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나마 있는 기존 시설도 수도권 지역에서 밀려난 공해배출 업소가 많다는 것을 우리들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로부터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져왔던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통계청 조사결과가 그같은 우리의 시각을 현실로 입증해준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다행이도 최근 서해안 공업단지, 대산석유 화학단지 유치에 힘입어서 지역생산 증가율이 전국 증가율이 상회하고 있어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고 받아 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당국에서는 이 통계자료를 정책자료로 활용하는데 주저하거나 인색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또	도지사 이동우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서해안 고속도로등 아산항 주요 사회간접 시설이 확충되면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체의 유치로 우리 도의 산업구조는 크게 변화, 발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통계 발표와 관련해서 잠시나마 우리 도민들에게 소외감과 실망을 드리게 된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번 '91도내 총생산액 발표를 계기로 200만 도민이 크게 분발해 늦은 개발의 잇점을 최대한 살려나간다면 머지 않아서 우리 도가 전국 제일의 농업도, 전국 제일의 공업도, 그리고 전국 제일의 관광도로 발전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시우 (대천시)	한 충남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한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낙후된 우리 충남도정 발전의 일로 매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시에는 마땅히 관할 자치단체와 사전협의 또는 인접한 지역 주민등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수렴을 해야되는 관례를 무시하고,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군사시설 보호구역 심의위원회를 거친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93년 1월 대전시에 일방적으로 이를 통보해 옴으로써 대천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접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생존권에 불편을 주고 있어서 매우 지역에 반발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도지사 이동우	• 대천해수욕장 주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에 있어서는 '92년 12월 국방부에서 개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심의회에서 우리 도 관계관이 참석하여 심의 과정에서 이 지역에 대한 해수욕장으로써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주민 및 관광객에게 위압감을 주고 관광지 개발계획의 추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시했습니다만,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이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의 군사시설이 보호구역 설정 통보에 따라 금년 1월 13일 대천시장의 의견을 받아 우리 도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 해제를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하였으나, 공군사격장은 국내 유일의 대공사격장으로써 사격 훈련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 보호구역의 유지가 불가피한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시우 (대천시)	대천시에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충남도에 이미 몇차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역시 충청남도지사께서는 이미 국방부에 두어차례 건의를 해 주신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 주민들은 각계 요로에 건의를 하는등 현재 반발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마침 이 자리의 뒷자리에 방청해 주신 분중에서도 역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대책위원회 간부 몇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문제로 인해서 심히 걱정하신점 위로를 드립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도지사님께서 대천시가 안고 있는 해수욕장 개발사업 또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리라 본의원은 믿습니다.	도지사 이동우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주변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 해제 문제는 사격장이 이전되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국방상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관계 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천안군 성환읍 주변으로써 이 지역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92년 8월에 국방부 장관에게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했습니다만 군사목적상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보령군 지역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다시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시우 (대천시)	특히 피해 농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사유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문민시대에 걸맞지 않는 군의 일방적 횡포라고 주장하는 등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충청남도에서는 정부 및 관계당국에 거듭 강력히 촉구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 충청남도내의 사회복지시설은 양로시설 7개소, 부랑인시설 1개소, 정신질환자 시설 12개소, 육아시설 15개소, 모자시설 1개소, 심신장애자 시설 6개소, 보육시설 81개소 등 총 123개소로서 '92년도말 현재 약 7,049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유지 시설 재단이 부실하여 자체 경영수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 우리 도에는 현재 노인복지시설 7개소를 비롯해서 정신질환시설 12개소, 장애인시설 6개소, 육아시설 15개소, 부랑인시설, 모자시설 각 1개소로써 42개소의 시설에 4,363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또한 어린이 집 등 보육시설 81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시설과 환경면에서 열악한 점을 현재 보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시설 종사자의 경우 좋지않은 근무 환경과 낮은 보수로 결원 발생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시우 (대천시)	익 사업이 전무한 상태로서 매년 엄청난 규모의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음에도 시설의 환경개선, 수용자들에 대한 급식상태등이 불량하여 수용자들의 건강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종사자중 특수분야 직의 종사원은 자격증 소지자로서 채용함에도 불구하고 원장, 또는 설립자의 친인척들이 자격도 없이 보모, 또는 영양사로 채용되어 수용자의 급식관리등을 전담하고 있어 각종 전염병이 발병되기 쉬운 하절기에는 집단 급식에 오는 식중독 사고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시설의 운영관리면 또는 수용자의 건강 관리면에 상당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충남도내 123개소에 이르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면서 도	보 사 환 경 국 장 김정인	시 충원에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사자중 간호사의 인건비를 비교하여 본바 10호봉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경우 월평균 75만원의 급료를 받고 있는데 비하여 지방공사 의료원에서는 93만원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기 위해서 첫째 시설 수용자의 생계비 지원수준을 그동안 꾸준히 인상한바 금년에는 1인당 매월 5만7,000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둘째 시설의 신증축등 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 보강 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시설 3개소에 7억 6,600만원을 비롯해서 장애인 시설 5건에 7억5,100만원, 노인복지 시설등 26건에 17억4,600만원 도합 34건에 32억6,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연차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금년 1월부터 처음으로 도비에서 1인당 월 3만원씩 처우개선비를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름철 집단 급식에 따른 식중독 사고와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시우 (대천시)	민의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도지사께서는 도내 각급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 관리면, 수용자의 건강 관리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각급 사회복지 시설의 수준 향상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사 환 경 국 장 김정인	하여 전염병 예방활동과 소독을 강화하는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를 수시 점검해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을 계속해서 개선, 보완하여 불우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복구 (서산시)	• 천수만은 하늘이준 천혜적인 자연경관과 수자원의 보고로서 인근 어민은 물론 우리 도의 귀중한 황금어장으로 축복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1979년 8월 24일 농림수산부 식량증산 정책으로 어민들의 생활근거지인 황금어장 1만 5,594㏊를 현대건설에 매립허가를 해주면서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생활터전을 잃어버린 어민들의 숱한 민원을 야기시킨 천수만 A, B지구 간척지 개발사업입니다.		• 서산 A, B지구 간척매립사업에 따른 피해어민 보상과 관련해서 매립면허기간 연장허가와 관련한 행정소송사건에 대처상황, 매립내측 보상공고계획에 대한 문제, 어민대표와 현대 책임자간의 협의 조정문제, 현대건설 면허조건 불이행에 따른 매립면허취소와 원상복구 또는 농지분양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민원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매립면허 기간연장 허가와 관련한 행정소송 추진문제는 1991년 9월 20일 농림수산부 장관이 매립면허 기간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복구 (서산시)	당초 현대건설은 '80년 5월 23일 착공하여 7월 6개월동안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87년 11월 22일 1차로 연기하고, 2차로 '91년 9월 20일자로 농림수산부는 '91년 9월 20일 공유수면매립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민간기업 참여 대규모 간척농지 개발사업 시행규정 제13조와 면허조건 제17항에 의거 피해어민과 보상관련 협의를 91년 11월 30일까지 협의토록 하고 2차로 연기하였는데, 연기허가를 받은 현대건설은 농림수산부 지시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 현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에 도지사께서는 행정소송관련 사건에 대하여 피해어민들을 위해 어떻게 대처하였는가를 말씀하여 주시고, 이에 도지사께서는 보상업무를 총괄 책임을 지고 보상지침을 수립하여 홍성군, 서산시, 서산군, 태안군에 시달하고, 보상 공고	도지사 이동우	을 연장 허가하면서 부여한 조건에 대해서 일부 조건의 부당성을 들어서 현대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농림수산부가 소송을 수행중에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어민의 입장에서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등을 작성 제출하였고, 관계 공무원이 법원에 출석하여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진술하는 등 농림수산부와 함께 소송에 적극 참가하고 있습니다. 매입내측 무허가 무신고 보상계획 공고와 보상신청자의 어업사실 확인 등에 대해서는 보상계획 공고는 보상의무자인 현대건설이 공고함이 원칙이나 당시 이를 회피하면서 지연시키고 있어서 조속한 보상추진을 위해 관련 시·군 및 현대건설측과 대책협의를 통해 관련 시장·군수와 현대건설 공동 명의로 공고하게 된 것으로써 보상계획을 공고한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업사실 확인절차는 보상지침에 리·동의 보상추진의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자료를 읍·면장이 보상대상자가 가족수등을 확인한 후 어업사실 확인서를 읍·면·동 어민대표와 현대에게 송부하여 대상자들끼리 협의해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복구 (서산시)	안을 '91년 12월 17일 도에서 4개시·군 및 현대건설 책임자와 협의하여 충청남도에서 보상업무추진에 적극 중재할 것을 약속하고 시장·군수 및 현대건설 대표명의로 공고케 하였는데, 어찌하여 면허권자인 농림수산부와 현대건설이 합동으로 공고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내 4개시·군이 관할이 되므로 도지사와 현대건설 명의로 공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장·군수 명의로 공고 한 것은 도지사의 책임회피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공고문안을 '92년 2월 15일자로 각종 일간지에 공고케하고 4개시·군 125개마을 9,279가구가 소정의 서류를 만들어 보상절차에 따라 읍·면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읍·면장은 접수된채로 확인도 하지 않고 접수된 대로 현대건설측에 제출	도지사 이동우	서 최종 확정토록 하였습니다만 현대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읍·면·동장과 공동 확인을 요구하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공동 확인하도록 보상지침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확인과정에서 객관적인 근거없이 읍·면·동장과 현대간에 공동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됨에 따라서 현대건설측이 읍·면·동 어민대표와 협의해서 어업의존도에 따라서 A, B, C급으로 구분 보상키로 일부 의견이 접근되었으나 현대에서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A, B급만을 대상자로 선별 통보하므로써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어민들이 발생한 것은 우리 도에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민대표와 현대건설 대표간 협의 조정문제는 도지사나 시장·군수는 조정 중재자로서 사실상 피해 어민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보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현대측에 대해서는 성실한 협의를 강력히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면허조건 불이행 문제에 있어서는 매립면허 기간이 오는 6월 22일로 만료됩니다마는 기간내에 피해보상이 완결되기는 어려울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복구 (서산시)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면허조건 제18항, 무면허 무신고 어업에 대한 보상에 관할 시장·군수와 읍·면장이 그 어업종사 사실을 확인한 경우 피면허자는 1년 이내에 보상토록 되어 있으며, 보상 지침서 어업사실 확인신청 및 대상자 선정절차등 규정 6항을 보면 관할 읍·면장은 개인별 어업 사실확인이 완료되면 어업사실 확인서를 어민대표에게 송부하고 현대건설의 요구가 있을시 확인내역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고문안에는 관할 읍·면·동장과 현대건설이 공동으로 어업사실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되어있고, 어떻게 공사전 그 지역의 사정도 모르는 현대건설이 개인기업이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는 도에서 주관 4개 시·군과 현대건설측과의 공	도지사 이동우	것으로 보이나 현재 현대로부터 연장허가 신청이 있어서 농림수산부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가 소송결과에 따라서 해결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소송결과 정당성이 입증될 경우 면허조건에 따른 보상과 매립지 분배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며, 불이행시에는 매립 면허권자인 농림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복구 (서산시)	고 문안 작성에서부터 잘못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현대건설측은 서류를 접수하고 보상지침에도 없는 농지보유 3,000평 이하인 자, 어장거리가 2㎞이상인 자 등 구구한 이유를 달고 보상기준 역시 A, B급으로 구분, A급은 어천계가 구성되어 있고 국회에 청원한 사람은 50만원, B급은 어촌계가 구성되지 않고 국회에 청원한 사람은 3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어업에 종사를 하고도 처분만 바라고 있던 선량한 어민을 제외시키는 것은 또다시 집단민원과 집단행동을 야기시켜 국력과 시간과 경비를 낭비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허조건 제18조 무면허 무신고 어업에 대한 보상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제30조 제2항 규정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복구 (서산시)	에 의하면 공공사업을 위한 공시가 있는날 현재 당해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 도시 근로자 평균 가계지출비 3개월분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92년 2월 보상계획 공고당시 산정된 도시근로자 3개월 가계지출비는 5인가족 기준 305만4,882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측은 A급이 5인가족 250만원, B급은 150만원의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동 특례법의 50%수준도 안되는 결과입니다. 도지사께서는 관행어업권자에 대한 보상관례를 알고계시겠지만 전남 동광양시 관내에 항만청의 호안공사를 면허없이 어촌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원시적인 어업에 종사한 동광양시 관내 12개 어촌계 어민 1,015명에게 100만원내지 1,500만원씩 모두 133억9,172만9,000원을 어장을 잃은 어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복구 (서산시)	민에게 지급하라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판결한 것이 최근의 일입니다. 도지사께서는 A, B지구 어장을 잃은 관행어업자의 대표와 현대건설의 책임자와 빠른 시일안에 협의,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농촌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모하면서 농촌을 떠나는 농민의 수가 급증하면서 농촌에는 어린아기 울음소리마저 듣기 어렵고 노인들만이 농촌을 지키고 있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때는 2~3십리 걸어서 학교를 다녔고 50~60년대에는 1개면에 국민학교 1개교가 있던 것이 2~3개교가 설립되었고 더욱이 중~고등학교 까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의 인구는 줄어들고 배워야 할 학생수는 적어지면서 부득이 통폐합하여야 하고, 폐교조치를 하	교육감 백승탁	• 정부방침에 의거해서 '82년도부터 현재까지 통폐합되어 폐교된 학교수는 51개교입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계속되어서 '94년도에 17개교등 2000년까지 추가로 약 97개교가 폐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폐교로 통합된 학교의 학생 통학 편의를 위해서 현재 우리는 통학버스를 지원해 주고 있고 통학비, 하숙비 지급 등으로 학생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현재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폐교학교 활용실태는 폐교된 51개교중 학생야영장등 교육 목적으로 20개교를 활용하고 있고, 7개교는 지역주민에게 창고등의 목적으로 임대되고 있으며 2개교는 '87년도에 서천군수와 국방부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복구 (서산시)	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몇 개교가 폐교되었고, 향후 전망은 어떠한지, 또 폐교된 학교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부에서는 농촌 활성화를 위해 농학도에게 정착자금 지원과 후계자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농어촌 구조개선사업등 농촌에 최대한 농업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떠나 다시 농촌으로 돌아와 살려는 청·장년이 농촌에 살면서 자녀교육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가까이 다니던 학교는 폐교되고, 통합되어 멀리 떨어진 학교에 등교하려면 8~12㎞를 어린 학생들이 걸어 다녀야 하며 버스나 차량을 이용하자니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농촌생활화를 위하여 교육감께서는 폐교되는 학교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교육감 백승탁	나머지 22개교는 도서벽지등 지역적인 여건으로 아직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폐교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정부방침에 따라 학생 야영장, 학습원, 자연관찰원등 교육목적이나 직업훈련기관 유치 또는 지역주민 복리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촌활성화에 따라서 도시인구가 농촌으로 돌아 올 것을 예상해서 폐교학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존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재산 사용허가에 따라 개인에게 점용허가해 준 토지현황과 이미 점용한 연고자에게 불하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등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도 교육재산중 개인에게 사용허가 해준 토지현항은 총 712건에 18만5,004평입니다. 그 내역은 주택등 건물부지로 205건에 1만8,846평, 전답등 농경지로 507건에 16만7,158평입니다. 개인에게 사용허가해 준 재산중 농경지등은 현상태로 계속 관리하겠으며 주택등 건물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장차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가치 여부와 도시계획법 관련법규 저촉여부를 검토하여 매각이 가능한 재산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복구 (서산시)	할 대책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으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백승탁	을 현 임대자에게 매각하여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조사검토중에 있습니다.
장기일 (천안군)	• 국가유공자들에 관한 것은 보훈처에서 관장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유족,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에 적으나마 지원과 관심을 갖어 주고 있는 것도 알고 있으나, 평소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유공자 개인이나 단체들을 보살피는 기관이 보훈처이지만 국가유공자들은 명칭 그대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장한 공로를 세운 분의 유족이거나 당사자일진대 어느 특정기관에서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을 받들어 예우함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분들이 삶이나 하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너와 우리를 위하는데 삶의 가치를 더두었고 나를 버	도지사 이동우	• 우리 도에는 다섯개의 보훈단체, 5,708명의 보훈가족과 기타 국가유공자 361명이 계십니다마는 도에서는 이번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와 자긍심을 진작시키고 국민적 예우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의원께서 지적하신 유가족에 대한 격려서한과 대통령 명의의 유공자 증서 수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에 계신 유공자에게 대통령 명의의 국가 유공자 대표 12명에게 저희 도에서 제가 직접 의식을 거행하면서 대통령 유공자 증서를 전수했습니다. 나머지 분들에게는 보훈청과 협의해서 시장·군수가 정중하게 전수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에서 장의원님의 지적대로 현충일 행사장에서 전달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장기일 (천안군)	리는 진정한 용기를 실천하며 주어진 생을 다하는 높고 깊은 정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미래를 살아야 할 후세들을 위한 인생 가치관의 확립과 혼미한 민족정기를 바로 잡고 불굴의 정신과 투지로써 국가와 민족번영을 위하여 헌신노력하고자 하는 국민성을 갖도록 하는데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되며 이는 신한국 건설과도 상통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해마다 6월을 맞으면서 갖가지 미사여구만 남발하여 크게 떠받드는 듯한 인상만 풍기는 겉치레를 지양하고 진정으로 국민 모두 국가유공자들을 받들며 예우하여 이제 거의가 노령에 처한 그 분들을 떳떳하게 긍지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마땅하다고 여기며 국가유공자분들 중에는 보훈의 혜택을 다소나마 받는 분도 계시고 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니	도지사 이동우	도록 엄중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이용사등 불우보훈가족과 고령 미망인회원등 528명에 대한 별도의 위문과 함께 어려운 역경을 이기고 꿋꿋하게 살아오신 모범 보훈가족 22명에게는 별도 표창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밖에 시·군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보훈가족 위문활동을 비롯하여 일손돕기, 자매결연, 취업알선, 공훈선양 사업을 적극 전개토록 지시하였으며 보훈단체의 운영 및 활동에도 각별한 지원과 배려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장기일 (천안군)	우선 우리 도에서 만이라도 특별한 예우를 하여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는 바이며, 예우차원의 작은 실례를 제시하자면 현재 노인우대 차원에서 버스 승차권을 드리고 있는데, 대상 노인들 중 국가유공자들에게는 일반 노인 우대용 승차권이 아닌 예우권을 발행하여 주던지 아니면 유공자증을 소지한 분에겐 도내에 적을 두고 있는 회사의 차에 한하여 무임승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도지사의 지시로써 각 시·군별로 1년에 몇차례 정도라도 이분들을 공경하고 위로하는 예를 갖도록 하는 방법, 국가유공자의 각 가정을 방문하는 손님이나 지나가는 사람들 특히나 지역민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뚜렷한 표식을 하여주는 방법, 지역의 어떤 행사시에 그 분들을 필히 모시어 소개하고, 치하하는 방법들 예우를 해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장기일 (천안군)	드려야 한다는 의지만 있다면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도내에는 각 부문별로 국가 유공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몇일전 6월 6일 현충일 행사장에서 목격했던 바를 설명드리고 거기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인이 6월 6일 현충일 행사시에 참여했을 때 그 행사장의 뒤쪽 한귀퉁이에 무엇인지 알수 없는 많은 물건을 쌓아놓고 그 자리에 참석하신 국가유공자들께서 그곳에 가서 한사람 한사람씩 무엇인가 받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니 바로 대통령께서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였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통령에 대한 심한 모독이요,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더할 수 없는 모독이라고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장기일 (천안군)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사께서는 이렇게 대통령이 발행한 유공자 증서를 소홀히 취급해도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현재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중 실제 생산을 담당하는 사람과 특히나 젊은 인력들에게 종합 내지 분야별로 수준에 따른 기술 자격증을 발급하여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그 이유로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젊은 인력들에게 보다 차원 높은 전문성과 농어민으로써의 자긍심을 갖게 하여 우수한 인력을 양성 및 확보하자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는 우리 도 농정의 중점 시책중 한가지인 우수인력 양성계획과도 일치하는 것으로써 그 효과면에서는 농어민들이 질높은 전문기술과 능력을 갖추도록 하여 UR을 대비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현재	도지사 이동우	• 농림수산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착안해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정예인력 확보방안의 하나로 우수특기자 자격증 제도를 계획하고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업농가중 일정수준의 전문기술과 전문기법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 영농인을 대상으로 농장경험 3년이상인 사람 또는 앞으로 설립 예정으로 있는 농업기술 전문대학 졸업자등에게 2급 농업기술사 자격증을 부여한 후 1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토록 하고, 농장경험 5년이상 특수기술소유자 2급 자격증 소유한 사람이 일정기간 현장실습을 마치게 되면 1급 농업기술자격증을 부여하고, 3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도록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획을 실시하기 위한 세부 추진일정은 아직 확정되지는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장기일 (천안군)	자영능력이나 여건이 열악하여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어쩔수 없이 적자를 감내하며 살아가는 희망없는 삶을 청산하고 규모가 큰 농어장이나 공공농어업기관에 기능근로자로써 취업하여 생활의 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농경지 상한제 확대와 기업적 농어업 육성책을 추진함에도 기여될 것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도지사 이동우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농림수산부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소년소녀 가장 학생들의 문제를 거론하자니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가슴 짓눌림을 금할길이 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꿋꿋이 생활하며 자라나는 어린 그들이 참으로 대견스러워서 희망스런 격려의 갈채를 보내 봅니다. GNP가 수천불을 넘어선 중진국 선두를 달리는 국민생활 수준이라 하지만 둘러보면 사회의 그늘진 곳에 있어서 세상의 밝은 빛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계층도 많습니다.	교육감 백승탁	•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개혁 중점과제로 선정 추진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그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고등학교 소년소녀가장 150명을 1인당 15만원씩 총 2,250만원을 지원하였고, 15개 지역교육청과 각급학교에서도 매년 성금을 모아서 소년소녀가장 돕기에 힘쓰는 한편 생활보호 대상학생에게는 생활보호법 그리고 수업료,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학비 지원과 감면,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혜택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장기일 (천안군)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스런 삶에도 동정이 가는데 더운 피가 흐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진대 하물며 자신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놀란가슴, 가녀린 몸으로 가계를 꾸리며 냉혹한 세파에 찢기면서 내일을 위한 배움을 계속하는 이들같은 처지야 더 말해 뭣하리까, 우리 모두 공감하는 바 크리라 믿으며 본의원은 교육적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며 그렇기에 다른 것은 차치하고 라도 우선 이들이 안정된 마음으로 배움의 터전에 밝은 웃음을 보이면서 자신있게 나갈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믿는데 그러할 용의는 있는지 묻는 바이며 불가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해결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도내 초·중·고별로 세대수와 인원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백승탁	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본도 산하 천안교육청이 관내에 초·중학교의 소년소녀가장 42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420만원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이들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 외에 지역교육청과 고등학교에서도 '94년도부터는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도의 소년소녀가장 세대수와 인원수는 국민학교가 155명, 중학교 360명, 고등학교 313명등 총 828명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최원식 (금산군)	• 농촌 사정을 모르는 자가 정책을 입안하는 전문가라는 전문의원들이 농촌을 살리는 일이 무엇인지 현 농민의 어려움과 고충을 모르고 10개년 계획에 42조원을 투입하여 잘사는 농촌을 건설하겠다고 부르짖고 있으나 영세 농민들은 우선 자녀 교육비, 결혼비용, 도시에 있는 자녀 전세방 마련 비용, 노동력 고령화로 경작능력 상실등으로 농지를 팔고자 하나 살사람이 없으므로 농협, 또는 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채무를 지게되며 갈수록 이자부담으로 더욱 어렵게 됨은 물론 농협에서 채권 확보당시의 땅값이 현재는 하락이 되어서 20~30%의 채권 미달이 된다는 것을 지난번 KBS방송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또한 농지소유상한선을 폐지하는 것은 과학영농으로 구조 개선을 도모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기	도지사 이동우	•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농지거래의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서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적을 해 주셨고 우리도에서도 오늘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비롯해서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정부에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그동안 정부에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대상을 자영농민과 국가 공공단체, 학교, 정부의 인가를 받은 공공기관 등으로 제한해 왔습니다만 최근 농지거래 완화차원에서 농업기술개발을 위한 민간 연구기관에서 실습후 종묘생산등에 필요한 농지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농지매매가 가능토록 하고 영농의사가 뚜렷한 예비 후계자와 농과계 졸업자가 농지를 구입코자 할 때에는 지금까지 농지가 소재한 지역에서 6개월 이상을 거주해야만 가능했던 규제를 해제하는 한편, 그 외의 사람들도 우선 농지를 매수하고서 사후에 농지매매 증명을 발급받아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할 경우에는 구입이 가능하도록 농지 임대차 관리법을 개정하고자 현재 입법 예고중에 있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최원식 (금산군)	업농을 육성하는 것이나 영세 농민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봅니다. 현 농민들은 농민간에는 농지 거래를 자유화하여도 팔 사람만 있고 살려는 사람은 없으며 심지어 조상을 위한 위토답마저 서로 경작을 기피하는 것이 현실의 농촌의 실정입니다. 때문에 농지소유 자격은 필히 농촌거주자만이 아니라 공무원, 회사원, 도시민들이 주말농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대단히 국가적으로 보아 유익하다고 보겠습니다. 주말을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낸다면 과소비, 퇴폐 향락이 많이 자제가 될 것으로 보며 예를 들어 400~500평 정도의 농민의 소유자격을 확대 한다면 자신의 농장마련의 희망과 꿈으로 열심히 맡은 직무에 충실하며 도시와 농촌과 함께 발전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이동우	앞으로 이러한 법들의 시행과정에 있어서 최의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질 문 내 용	답변	답 변 내 용
최원식 (금산군)	• 민원담당 공무원은 사람에 따라 주민의 편의를 위한 각종 인·허가 업무등을 수행하며 중소기업의 육성발전등 지역경제 발전에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는 민원 공무원들은 민원을 야기시키며 나아가서 주민에 대하여 불신을 조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혹자는 책임이 두려워 안되는 방향으로 답변하고, 또는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는 무책임하고, 소신없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은 능력이 있고, 성실한 인재로 배치되어야 할 것이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고, 창의적이고 연구하는 공무원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는 자에게는 다수의 실수는 관용하여야 할 것이며 능력있고, 성실한 자에게는 승진과 희망을 주	도지사 이동우	• 다음으로 최원식의원님께서는 민원부서에 청렴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을 배치하고 성실하게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등 인사관리의 혜택을 주도록 하는 방안이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사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원칙에 따라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해서 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인사풍토 조성에 힘써 나가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특히 최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종 민원담당 공무원은 업무의 성격상 능력과 청렴성이 특별히 요구되고 있어 우수한 공무원을 배치해서 근무토록 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대과없이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도상의 가점 혜택을 주어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민원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소홀함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최원식 (금산군)	는 혜택이 가도록 제도적인 인사관리의 뒷받침에 대하여 대책이 있다면 지사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 교통편의 위주로 자동차 운수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시민 교통인 시내버스가 시·도간 운행연결이 원활하지 못하여 주민생활 불편으로 정부에 대하여 주민들은 많은 원성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국이 일일 생활권 또는 지구촌이라는 이 시대에 3~4㎞ 오지 부락에 시내버스를 운행케 하여 일손 부족의 노동력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 문화의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운행되던 완행 시외버스가 폐지됨으로 시내버스와 직행버스로 운행계통이 2원화되어 시내버스 운행시간의 차가 한시간인 경우가 많아 주민불편이 야	지 역 경 제 국 장 노규래	•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내버스를 다른 시·도지역에 연결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 관련 시·도와 협의를 통하여 운행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시·도간 시내버스 연결운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대전시와 연기 시내버스 연결운행을 위하여 수차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안되어 나중에 교통부 재결을 받아서 대전시내 신탄진까지 연장 운행한바 있고, 그외 지역에서도 수차에 걸쳐 관련 시·도와 협의를 하고 있고 또한 교통부 재결등을 추진하는등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번 6월 3일 입법예고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종전 시내버스 운송사업구역은 타 시·도지역을 연결운행할 경우 시·읍·면 경계로부터 30㎞이내까지 해당 시·도와 협의를 통하여 운행토록 되어 있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최원식 (금산군)	기됨은 물론 직행 버스운행을 시·읍·면 소재지 등에만 정차하여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단위 대책과 중앙에 건의하여야 할 사항 그리고 그간 추진한 바가 있는지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도간의 시민교통의 원활한 연결이 되기 않기 때문에 원성이 있습니다. 그간의 질문을 받고 중앙에 건의 내지 도 자체에서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 역 경 제 국 장 노규래	었으나 앞으로는 시·군 경계로부터 시의 경우 30㎞, 군의 경우 15㎞범위내에서 해당 시·도와 협의를 통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앞으로 시·도간 연결운행이 다소 협의가 쉬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지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58개 벽지버스 노선을 개설 운행하고있고 시내버스도 늘려 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오지부락에 대한 교통대책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농촌주민의 교통편익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근 (당진군)	• 지난 '89년도 개발계획이 공식 발표된 이후 200만 도민은 벅찬 기대와 희망속에 서해안개발사업의 총 126개사업중 34개 사업이 본 도와 연계된 사업으로써 현재 4건의 사업이 완료되었고, 2건의 사업은 사업의 시기 미도래에 있고 28개	도지사 이동우	•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석문공단과 아산공단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서해안개발사업의 대부분이 장기적인 사업으로 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 용지보상등 준비절차 이행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현재까지는 추진효과가 가시화 되지 않고 있는 사업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의회차원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의 추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홍근 (당진군)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산공단의 경우 고대 부곡지구의 충남에 인접한 150만평의 공단조성에 있어서 입주 대상업체의 신청이 극히 저조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석문공단의 조성 추진사업에 관해서도 공업용수 대책의 미흡과 매립지에 대한 5.25m의 매립으로 인해서 평당 분양단가가 33만7,000원으로써 군산에 20만원 대구의 21만원에 비해서 투자비 과다로 중앙의 특별지원이 없이는 도 자체로써는 추진이 불가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의욕적으로 본 도에서 추진된 보령댐 계획도 좀전에 실무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중앙의 특별 계획이 없이는 성사가 어려운 사업이 아니냐 하는 것을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서해안 고속도로 제1차 구간인 인천과	도지사 이동우	진을 위해 특별의원회를 구성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계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도 '9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등 제반 문제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에 건의하는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보다많은 성원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참고로 석문국가공단은 금년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6월말경이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아산 국가공단은 현재 어업권 보상을 실시중에 있으며 지난해 6월에 진입도로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지역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이의원님 지적내용을 잘 감안해서 이런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개설 사업중 서해대교 가설은 금년 4월에 실시 설계가 완료되어서 금년 하반기에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기획원과 건설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신경제 5개년 계획과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준공시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홍근 (당진군)	당진 I.C까지 '96년도에 개통할 예정으로 공식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서해안 특위 활동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금년도 7월에 착공은 되지만 5년6개월이라고 하는 장구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98년도말 '99년도에 가서야 개통될지, 이런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것은 건설부 차관과 관계관 회의에서 확인된 사항이었습니다. 이러한 기관산업인 고속도로 건설 자체가 계획보다도 2년 이상 지연됨으로 인해서 충남, 서북부 지역을 비롯한 충남 발전에 중대한 차질을 예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중대한 차질을 볼 때 중앙계획에 의존된 계획의 결과인가,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예견하고도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는가,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은 무엇인가 확실하고	도지사 이동우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지연에 따른 교통대책 문제입니다. 지난 4월 15일 대통령께서 저희 도를 초도순방했을 때 서해안 고속도로 등 당진, 홍성간 노선을 제1단계 사업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이 문제는 현재 건설부 등 관계부처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 4차선 확장 문제에 있어서는 영인-신평간 16.5㎞ 금년에 착공하고 서산-태안간 17.1㎞를 내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실시 설계중에 있으며 나머지 구간인 서산-당진-신평간 39㎞에 대해서 내년에 실시설계가 착수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와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광역 아산만 종합개발 계획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서해안 개발사업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홍근 (당진군)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 엑스포 개최와 관련해서 우리 도가 해야 할 일이 소득증대를 위해서 힘써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람객들의 숙박유치에만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한 예를 보면 주요 추진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엑스포를 대비해서 특수 시책사업으로 동학사 개발과 고란초 분재 배양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학사 개발은 시기를 놓쳐 버리고 있습니다. 또 고란초 배양사업도 소득과는 거리가 먼 전시적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좀전 추경예산안에 자료를 보았습니다. '93년도 엑스포 대비 예산 현황을 뽑아 보았더니 총 23억2,800만원이라고 하는	도지사 이동우	• 대전이 엑스포 개최지로 결정된 '90년이후 개최지에 대한 기반조성 사업을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투자가 되고 있어서 인접 도의 입장에서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대적 낙후감이나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대전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많은 지역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모두 490여억원이 투자되어 천안-행정리간, 유성-박정자간 공주-부여간 국도의 포장과 위험구간 개량사업을 비롯해서 부여 박물관 건립에 153억원, 계룡산 국립공원 시설정비에 13억원, 한산 모시타운 건설에 3억원등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에서도 금산 인삼타운 건립과 전동-병천간 도로포장을 비롯한 도로망 정비사업 그리고 각종 문화유적 정비사업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조해 주신 대전 엑스포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홍근 (당진군)	예산밖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예산중에 환경정비가 15억8,600만원, 그리고 엑스포 홍보활동비가 5억 8,600만원이라는 그런 예산밖에 배정되지 않아서 충청도를 상징할수 있는 특수상품 개발비가 전혀 계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의원은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엑스포는 국가적인 행사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행사로써 충남이 전국적으로,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좀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했어야 옳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 1개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박람회를 치뤘던 스페인의 세비아나 가까운 일본등지의 사례를 조사할 수 있는 연구팀을 보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	도지사 이동우	와 관련한 도민 소득증대를 위한 대책에 있어서는 지역 특산품을 적극 개발하고 판촉활동을 강화해서 도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홍근 (당진군)	안을 찾아 보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 문제는 지구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특히 「리오」 환경 회의를 계기로 해서 지구 환경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이 제기되면서 세계 각국은 현안문제로 대두되기 시작을 했고, 그 대책을 세워 나가는 중요한 문제로 등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쓰레기 자체를 귀중한 자원으로 재활용함으로써 환경보존과 자원절약 차원에서 처리 곤란한 쓰레기가 제3의 자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을 해외의정활동을 통해서 선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 가고 있는 현상을 상기하면서 몇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보 사 환 경 국 장 김정인	• 현재 우리 도의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년간 124만3,000여톤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 95%는 단순매립처리되고 5%는 재활용 되고 있어 지적해 주신대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쓰레기의 위생적인 처리가 크게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쓰레기를 최대한 줄여 나가고자 쓰레기 30%줄이기 운동을 전개해서 착실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특히 하반기 부터는 소형 쓰레기 소각로와 캔압축기등을 설치 운영해서 쓰레기 줄이기 시책을 보다 더 가속화 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쓰레기 처리장 확보문제는 저희 도에서는 배출된 쓰레기를 장기간 걸쳐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지역은 '95년까지 소각로와 위생매립장 1개소씩을 그리고, 군지역은 위생매립장 1개소씩을 연차별로 설치하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홍근 (당진군)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 생활수준의 향상과 경제사회 구조의 발전이라고 하는 과정속에서 부산물로 발생되는 각종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은 공해와 환경오염이라고 하는 사회적 문제를 제기, 그 처리에 있어서는 수거기술의 부족, 장소부족, 또 제도의 미비를 비롯한, 특히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기 시작을 하면서 다행이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언론사인 중앙의 조선일보, 우리 지역의 중도일보에서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활발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인식부족에 있는 국민들에게 커다란 효과를 이루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환경산업면에서 볼 때 본도의 경우 한국자원재생공사 충남 도지사에 의해서 금산을 비롯한 6개 관리사업소를 두고 1개 관리 사업소에서 평균 3개 시·군의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4개 시·군은 현재 공사중에 있고, 금년도에 도비에서도 13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같은 사회공익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지역 이기주의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입지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사항은 수용하는 가운데 상호이해와 협조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같은 기본인식아래 관련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무리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둘째, 자원재생공사의 증설대책과 유관기관의 지원계획은 '92년이후 자원 재활용 수집운동을 범도민 운동으로 전개한 결과 수집량이 급증하고 있어 지적하신대로 인력과 운반차량이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운반차량 10대를 지원한바 있고 금년에도 10대를 현재추가 확보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원 재생공사에서도 올해안에 공주군에 사업소 1개소를 증설하고자 추진중에 있어 인력과 차량이 확충이 되어가면 이 문제는 해소될 것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홍근 (당진군)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수거차량과 인력의 절대 부족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사해 본 결과 월2회 정도밖에 읍·면에 재생공사 차량이 출입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공사의 수요는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이룩하기 위해서 시군에 관리소를 증설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가, 또한 수거에 있어서 유관기관의 차량을 지원할 수는 없는가 지사께서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환경 산업이 고속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재활용 쓰레기를 소화할 수 있는 재생산업이 육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쓰레기 문제를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	보 사 환 경 국 장 김정인	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재생공사에서 농약빈병 수거 보상금으로 금년도에 1억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문제,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행정기관, 기업,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바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부녀회등이 주관이 되어 투입구를 폐쇄하고 분리 보관용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을 위해서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홍근 (당진군)	인으로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본도의 계획과 지원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第22節 第75回 臨時會

Ⅰ. 槪 況

1. 開會背景

○ 제7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鄭善興의원외 22인의 의원으로부터 제4대 후반기 의장·부의장선거와 상임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위한 임시회소집 요구가 있어 93년 6월 22일 집회공고를 실시하고 93년 6월 30일 14:00에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회기 : '93. 6. 30 ~ 7. 2 (3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3. 6. 30(수) 14 : 00	본 회 의 (제 1 차)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 2. 제75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4. 의장·부의장선거 5. 휴회의 건	
'93. 7. 2(금) 14 : 00	본 회 의 (제 2 차)	1.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2. 상임위원장선거	
'93. 6. 30(수) 11 : 00	의 회 운영위	1. 제75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일정협의의 건 2. 제4대후반기상임위원회의원선임협의의 건 3.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및백제문화권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재구성협의의 건	비 회기중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수	안 건	비 고
계	4		
기 타	4	1. 제75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의장·부의장선거 3.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4. 상임위원장 선거	

4. 議長·副議長選擧 및 常任委員長 選擧

○ 의장·부의장 선거

- 의 장 : 李 大 熙
- 부 의 장 : 金 容 鎬
- 부 의 장 : 李 鍾 洙

○ 상임위원장 선거

- 의회운영위원장 : 金 顯 根
- 기획경제위원장 : 柳 在 元
- 내 무 위 원 장 : 田 溶 鳧
- 교육사회위원장 : 李 福 求
- 농림수산위원장 : 金 成 振
- 건 설 위 원 장 : 李 甲 俊

○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의회운영 위원회	기획경제 위원회	내 무 위원회	교육사회 위원회	농림수산 위원회	건 설 위원회
金顯根	柳在元	田溶鳥	李福求	金成振	李甲俊
趙吉衍	金善泰	羅榮珍	李傑宰	張基日	金文圭
金成振	姜模俊	康基世	金榮昶	姜信國	具興書
金佐泳	孔 均	金基興	金容鎬	金佐泳	金高盛
羅信燦	金南鎬	朴元來	金鍾成	孟致鎬	金鍾煥
李基鳳	金世鎬	禹智命	金珍經	徐重喆	朴東允
金善泰	金載鳳	李時雨	文性珪	梁熙喆	朴鍾武
羅榮珍	金顯根	趙日東	宋善奎	劉載甲	李元昌
金文圭	羅信燦	全泳俊	申載元	李根容	李弘根
張基日	李鍾洙	趙吉衍	李基鳳	李東旭	韓道源
李傑宰	鄭善興	崔源植	李準喆	李相敦	

第23節 第76回 臨時會

Ⅰ. 概 況

1. 開會背景

○ 제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3년 상반기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와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임시회소집요구가 있어 93년 8월 9일 집회공고를 실시하고 93년 8월 17일 14:00에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회기 : '93. 8. 17 ~ 8. 20 (4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3. 8. 17(화) 14 : 00	본 회 의 (제 1 차)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 2. 제76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3. '93상반기충청남도업무추진상황보고 4. '93상반기충청남도교육청업무추진상황보고 5. 휴회의 건	
15 : 00	기획경제위 (1차)	1. 간사선임의 건 2. '93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 가. 기획관리실소관	
15 : 00	내 무 위 (1차)	1. 간사선임의 건 2.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3. 8. 17(화) 15 : 00	내 무 위 (1차)	3.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조례안 4. 충청남도잠업사업소조례안 5. 충청남도농어촌공업유치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6. 충청남도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 자동차취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7. 충청남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및건축물에대한 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 00	교육사회위 (1차)	1. 간사선임의 건 2. 충청남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안 3. 충청남도학생야영장 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93상반기 충청남도교육청업무추진상황보고	
15 : 00	농림수산위 (1차)	1. 간사선임의 건 2. '93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 가. 농어촌개발국 소관 3. 충청남도농어촌발전대상운영조례안 4. 충청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15 : 00	건설위(1차)	1. 간사선임의 건	
'93. 8. 18(수) 11 : 00	기획경제위 (1차)	1. '93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 가. 공보관실 소관 나. 지역경제국 소관 2.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 조례안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3. 8. 18(수) 10 : 00	내 무 위 (2차)	1. '93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 가. 내무국 소관 나. 민방위국 소관 다. 소방본부 소관 라.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마. 계룡출장소 소관	
10 : 00	교육사회위 (2차)	1. 충청남도모자복지기금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2. '93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 가. 가정복지국 소관 나. 보사환경국 소관	
10 : 00 14 : 00	농림수산위 (2차)	1. '93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 가. 농수산국 소관 2. '93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 가. 농촌진흥원 소관	
10 : 00	건설위(2차)	1. 충청남도국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건축물제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도로보수용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93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 가. 건설도시국 소관 나.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다. 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	
'93. 8. 20(금) 11 : 00	의회운영위 (1차)	1. 간사선임의 건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3. 8. 20(금) 13 : 00	농림수산위 (3차)	1. 충청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14 : 00	본 회 의 (제 2 차)	1. 충청남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안 2.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4.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조례안 5. 충청남도잠업사업소조례안 6. 충청남도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 자동차취득에대한도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7.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남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및건축물에대한 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남도농어촌공업유치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10. 충청남도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11. 충청남도농어촌발전대상운영조례안 12. 충청남도국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건축물제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충청남도도로보수용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14. 충청남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안 15. 충청남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개정조례안 16. 충청남도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7.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	
'93. 8. 10(화) 11 : 00	의회운영위	1. 제76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 2. 충청남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안 3.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비 회기중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수	안 건	비 고
계	21		
조 례 안	17	1.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기 타	4	1. 제76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93년도 상반기 충청남도업무추진 상황 보고 3. 93년도 상반기 충청남도교육청 업무추진 상황 보고 4.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추천의 건	

4. 條例案 處理內譯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223	충청남도의회 고문변호사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8. 10)	본회의 상정	○ 의회에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법률의 전문지식을 자문받기 위함	8. 20	8. 23	원안
224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	〃	○ 지방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충청남도기구와 상임위원회소관을 일치시키기 위함 • 내무위원회 → 재무국(폐지) • 농림수산국(산림과) → 농어촌개발국(이관) • 농림수산국 → 농수산국으로 명칭 개정	〃	〃	〃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211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 관한조례안	충청남도 지사 (8. 10)	기획 경제	○위원회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9인으로 구성 • 5인 : 법관, 교육자 • 4인 : 도의원2, 소속공무원2 • 기능 : 재산등록사항심사 및 조사	8.20	8.23	원안
212	충청남도의회 사무처설치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내무	○사무처직원정수를 "59명"에서 "64명"으로 5명을 증원함	〃	〃	〃
213	충청남도산림연구소조례안	〃	〃	○임업시험장과 치산사업소를 산림환경 연구소로 통합함 • 소장 : 지방임업 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 • 연구소 : 대전시 유성구 덕명동	〃	〃	〃
214	충청남도잠업사업소조례안	〃	〃	○잠종장과 잠업검사소를 잠업사업소로 통합함 • 소장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 • 사업소 : 공주군 우성면	〃	〃	〃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215	충청남도농어촌공업유치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충청남도지사 (8. 10)	내무	○지방행정조직개편의 일환으로 폐지함	8. 20	8. 23	원안
216	충청남도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93대전엑스포에 참가하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대표 운영요원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함 • 재반출 조건의 일시 수입허가 자동차 • 행사용으로 국내에서 취득하는 자동차	〃	〃	〃
217	충청남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현행조례의 면제대상은 국가유공자중 "상이군경"에 대하여 상이등급 1급과 2급~5급중 상이정도에 따라 면제되었으나 조례를 개정하여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과 2급 대상자 전부를 면제함	〃	〃	〃
218	충청남도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	교육사회	○모자복지기금의 조성방법, 회계관리등 운용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모자가정의 보호지원 및 자립기반 확충 • 기존의 모자복지위원회가 업무 대행	〃	〃	〃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 지원금액 : 전년도이자수입금의 범위 • 지원범위 : 자녀교육비, 직업훈련비, 질병치료비 • 융자금지원 : 주택임차, 자립사업자금			
210	충청남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충청남도 교육감 (8. 3)	교육 사회	○도본청 내용과 동일	8. 20	8. 23	수정
209	충청남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교육감 (7. 14)	〃	○농어촌지역의 폐교된 학교시설을 학생야영장으로 활용 • '91.3.1자 폐교 : 4개 국교 • 이원화 되어 있는 충청남도 학생야영장설치조례와 충청남도 학생 종합야영장 설치조례를 통·폐합	〃	〃	원안
208	충청남도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	○건전한 학원운영 풍토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일계 학원간거리제한을 폐지하고, 기술계 학원설립 기준을 강화하여 양질의 학원교육 환경을 조성 • 동일계 학원간 거리제한 폐지 : 천안시 200m이상, 기타시·읍 100m이상	〃	〃	〃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 강의실, 독서실, 면적 및 시설기준 명시 • 독서실 : 남자 또는 여자 전용으로 구분 운영 • 강사의 교습범위 등			
219	충청남도농어촌발전대상운영조례안	충청남도지사 (8. 10)	농림수산	○UR협상 및 농산물 수입자유화에 따른 농어민과 관련기관, 단체에 대한 사기를 진작 • 대상 : 독농가, 농어촌관련기관 및 단체 • 수상부문 : 본상, 분야별상 ※ 예상쟁점 • 소요예산 삭감 • 실효성 미흡	8. 20	8. 23	수정
221	충청남도국도립공원시설지구내건축물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건설	○자연공원법 제49조에 의거 제정된 국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 건물에 관한 조례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과 중복되어 조례 개정 • 완화된 기본설계의 세부기준에 의거 집단시설 지구내 건축물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함	〃	〃	〃
222	충청남도도로보수용중기운	〃	〃	○중기의 노후화와 구형으로 인한 임차 기피로 세입이	〃	〃	원안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감소함에 따라 중기관리특별회계의 적자운영을 초래하고 있어 민간임대를 제한하고 도발주공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함 • 도에서 시행하는 도로보수공사와 재해 긴급복구용으로만 사용 • 사업소 직영공사시에는 신청절차 생략 • 중기도급공사의 범위를 축소하여 차선도색 공사 등으로만 제한 • 단순한 보유중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만 규정			

第24節 第77回 臨時會

Ⅰ. 概 況

1. 開會背景

○ 제7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3년도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을 위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993년 9월 8일 집회공고를 실시하고 93년 9월 16일 14:00에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회기 : '93. 9. 16 ~ 9. 23 (8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3. 9. 16(목) 14 : 00	본 회 의 (제 1 차)	1. 제7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93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백제문화권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7. 도지사 · 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5 : 30	내 무 위 (1차)	1. 충청남도영재육성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93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3. 9. 17(금) 11 : 00	기획경제위 (1차)	1. '93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관리실 소관 나. 공보관실 소관 다. 지역경제국 소관	
10 : 00	내 무 위 (2차)	1. '93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가. 내무국 소관 나. 민방위국 소관 다. 소방본부 소관 라.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마. 계룡출장소 소관	
10 : 00	교 사 위 (1차)	1. 충청남도임해수련원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안 2. 충청남도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학생과학관사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충청남도학생체육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 6. '93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가. 보사환경국 소관 나. 가정복지국 소관	
10 : 00	농림수산위 (1차)	1. '93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가. 농어촌개발국 소관 나. 농수산국 소관 다. 농촌진흥원 소관	
10 : 00	건 설 위 (1차)	1. '93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 나. 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 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3. 9. 20(월) 10 : 00	운 영 위 (1차)	1. '93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 : 00	예결특위 (1차)	1. 위원장선임의 건 2. 간사선임의 건 3. '93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나. 내무위원회 소관 다. 교육 · 사회위원회 소관	
'93. 9. 21(화) 10 : 00	예결특위 (2차)	1. '93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나. 건설위원회 소관 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4 : 00	본 회 의 (제 2 차)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2. 본회의 건	
'93. 9. 23(목)	본 회 의 (제 3 차)	1. '93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남도영재육성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임해수련원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안 6. 충청남도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 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남도학생과학관사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 충청남도학생체육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 10. '93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11. 호남고속전철건설사업의노선결정에따른정부건의안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3. 9. 23(목)	본 회 의 (제3차)	12.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3. 백제문화권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4.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5.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위원보임의건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수	안 건	비 고
계	23		
조 례 안	8	1.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예 산 안 (결 산 안)	1	1. '93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건 의 안	1	1. 호남고속전철건설사업의노선결정에따른건의안	
결 의 안	3	1. 백제문화권개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서해안개발사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동의승인안	1	1. '93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 건	
기 타	9	1. 제7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93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4. 도지사,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6.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7. 백제문화권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8.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9. 충청남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위원보임의 건	

4. 條例案 處理內譯

<table>
<tr><th>의안
번호</th><th>의 안</th><th>제안자
(제안일)</th><th>소 관
위원회</th><th>주 요 내 용</th><th>의결일</th><th>이송일</th><th>비고</th></tr>
<tr><td>228</td><td>1993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td><td>충청남도지사
(9. 11)</td><td>예산결산특별위원회</td><td>○예산규모
(단위:천원)
<table><tr><th>회계별</th><th>예산액</th><th>기 정</th><th>증감(추경)</th></tr><tr><td>계</td><td>950,210,194</td><td>967,874,000</td><td>△17,663,806</td></tr><tr><td>일반회계</td><td>482,192,000</td><td>478,774,000</td><td>3,418,000</td></tr><tr><td>특별회계</td><td>468,018,194</td><td>489,100,000</td><td>△21,081,806</td></tr></table></td><td>9.23</td><td>9.24</td><td>수정</td></tr>
<tr><td>229</td><td>충청남도영재육성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td><td>〃</td><td>내무</td><td>○충남도민의 자녀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중 우수학생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장학생 자격요건, 장학생선발, 장학금지급방법과 이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장학위원회 설치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td><td>〃</td><td>〃</td><td>〃</td></tr>
<tr><td>230</td><td>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td><td>〃</td><td>〃</td><td>○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93.7.16)으로 도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새로운 직제에 부합되도록 위임사무를 소관분야별로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td><td>〃</td><td>〃</td><td>원안</td></tr>
</table>

<table>
<tr><th>의안
번호</th><th>의 안</th><th>제안자
(제안일)</th><th>소 관
위원회</th><th>주 요 내 용</th><th>의결일</th><th>이송일</th><th>비고</th></tr>
<tr><td>231</td><td>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td><td>충청남도
지사
(9. 11)</td><td>내무</td><td>○ 공유재산관리, 처분중의 대부료, 무상위탁, 수의계약 매각등의 납기 및 범위를 확대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마을를 대표하는 마을회에 무상으로 위탁관리할 수 있는 범위 확대
• 건물대부료의 산출시 평가액을 세분화
• 대부료의 납기한연장(30일에서 60일로)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중 토지위에 사유건물이 있는 경우 사용가치가 없고 일정이하의 토지에 대해 건물소유주에게 매각가능하도록 개정</td><td>9. 23</td><td>9. 24</td><td>원안</td></tr>
<tr><td>232</td><td>'93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td><td>〃</td><td>〃</td><td>○ 내용
<table><tr><th>구분</th><th>재산별</th><th>필(동)수</th><th>면적(㎡)</th><th>가액(천원)</th></tr><tr><td rowspan="2">취득</td><td>토지</td><td>6</td><td>5,391</td><td></td></tr><tr><td>건물</td><td>5</td><td>1000.61</td><td>746,267</td></tr><tr><td>처분</td><td>토지</td><td>3</td><td>6,255</td><td>63,209</td></tr></table></td><td>〃</td><td>〃</td><td>〃</td></tr>
</table>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233	충청남도임해수련원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9. 11)	교육사회	○교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심신수양을 위한 휴식공간제공과 각급학교 학생들의 하계해양 훈련장으로 활용키 위함 • 원장(지방서기관, 교육연구관)과 관리부, 교수부를 둠 • 소속공무원 및 가족과 학생을 대상으로 함	9. 23	9. 24	원안
234	충청남도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	〃	○위원회 위원에게 일률적으로 30,000원씩 지급하던 일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타 위원회와의 형평을 유지키 위함	〃	〃	〃
235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	○공공도서관의 설·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사항이므로 공공도서관의 설·폐의 내용을 현 조례에서 삭제하고 학교 및 사업소 소속 지방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소속 학교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키 위함	〃	〃	〃
236	충청남도학생과학관사용폐지조례안	〃	〃	○본 조례가 충청남도 과학교육원 설치조례에 통합 운용되고 있어 이를 폐지코자 함	〃	〃	〃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237	충청남도학생 체육관설치조 례폐지조례안	충청남도 교육감 (9. 11)	교육 사회	○예산 형편상 충청남도학생 체육관의 설치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폐지코자 함	9. 23	9. 24	원안
238	호남고속전철 건설사업의노 선결정에따른 건의안	기획경제 위원회 위원장 (9. 17)	본회의 상정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 계획된 호남고속전철 건설 사업의 노선을 정부의 계 획안중 천안-공주-논산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제2안 또는 3안으로 확정해 줄 것을 건의함 〈건의기관〉 • 대통령비서실장 • 경제기획원장관 • 건설부장관 • 교통부장관 • 국회사무총장 • 민주자유당사무총장 • 민주당사무총장 • 고속철도 건설공단이사장	〃	〃	〃
225	조례정비특별 위원회구성결 의안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장 (9. 3)	〃	○제4대 충청남도의회가 부활 되기 이전에 시행되고 있는 현행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 여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행정편의주의 조례로써 주 민의 이익에 반하는 불편 부당한 조례를 과감히 개선 정비코자함	9. 16	〃	〃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226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9. 3)	본회의 상정	○도내의 현재 추진중인 사업(추진중 26 사업변경1, 시기미도래2)의 조기촉구와 국고예산 확보지원을 위하여 특위활동 기한을 '95년 6월말까지 연장하기 위함	9. 16	9.24	원안
227	백제문화권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	○'93.6.15일자로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지정이 확정됨에 따라 본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도에 개발을 촉구하고 조속한 예산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특위활동 기한을 95년 6월말까지 연장하기 위함	〃	〃	〃

5. 第77回 臨時會 道政 및 敎育行政에 關한 質問 · 答辯要旨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송선규 (서천군)	• 현재 중앙정부에서 1989년부터 5년간 의과대학 설립을 인가하지 않기로 한 기간이 만료되어서 전국 각 대학에서 의과대학 설립 신청이 무려 12개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최고의 교육열을 자랑하는 우리 도에서는 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 설립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주대학교 교육 관계자의 책임도 있지만 도 당국에서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만약에 도유재산의 감소로 인하여 사용상 어려움이 있다면 왜 국가가 건설해야 할 사업인 석문 공업단지와 보령댐 건설은 우리 도에서 건설한다고 하여 막대한 도비를 손실시키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공주대학교의 의과대학 설립을 질문하는 것은 중앙정부에 의과대학 설립을 요구할 시에 그에 따른	도지사 이동우	• 우리 지역에 유일한 국립대학인 공주대학교에서 우선 '97년까지 한의대를 설립하고 '98년부터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목표아래 대학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94년부터 본격적으로 설립절차를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공주 대학교와 협조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주의료원을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의과대학의 설립절차가 본격적으로 이루어 지는 단계에서 검토될 문제라고 생각하며, 의회와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기술대학의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 관내 전문대학을 포함하여 모두 19개의 대학에서 5만여명의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특히 천안에 있는 국립한국기술대학에서 500여명의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업화의 진전에 따라 고급인력수요를 감안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송선규 (서천군)	300억원의 예산 부족으로 연기하거나 거부하는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조속한 시일내에 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어 국립기술대학 유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공업기술 인력확충을 위해서 1998년도까지 전국의 공업고등학생을 21만명에서 40만명으로 증원할 계획이고 대단위 공업 지역에 국립기술대학을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엄청난 공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도는 국립기술대학을 유치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보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도내 서북부 지역의 공업단지와 장.군 국가공단의 공업기술 인력을 위하여 국립기술대학 유치를 하는데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송선규 (서천군)	• 우리 도는 연육 해안선이 922.8㎞이고 269개의 도서의 연장 해안선을 포함하면 1,312㎞의 해안선이 있습니다. 어민 가구수는 1만3,587가구이고 어민은 9만6,994명, 어선은 5,929척, 어획량은 8억6,051톤이고 어항은 다섯 곳이고 항만은 세 곳입니다. 이러한데 우리 도에는 항만청이 없어 보령군에 있는 고정항의 북쪽은 인천항만청에서 관리하고 남쪽은 군산 항만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 도에 항만청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장항에 있었던 것을 군산에 빼앗긴 것입니다. 전라북도 보다 해안선이 길고 항만과 어항이 많고 어선과 어민이 많은데 군산에 빼앗긴 것입니다. 이는 중앙정부에 잘못이 있지만 우리 도 당국에 더 많은 잘못이 있다고 본의원	도지사 이동우	• 먼저 항만청과 항만건설사무소 유치문제에 대해서는 군산에 지방해상국이 1948년도에 설치되어 있다가 1955년도에 군산과 장항에 지방해운청이 설치되어 운영해 왔습니다. 1961년 정부의 기구개편에 따라 군산 지방해운청은 군산지방 해운구로 조정되면서 우리 도의 장항은 군산에 비해서 물동량과 배후 경제권의 규모가 작아 출장소로 축소되어 현재이르고 있습니다. 송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장항의 신외항과 아산만의 국제 콘테이너 항구건설등 항만 시설이 확장되고 2000년대에는 우리 도에 3개의 국가공단을 비롯, 지방공단등 2,700여만평의 공단이 입주하게 됨으로서 해운물동량이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항만청과 교통부에 지방해운 항만청을 신설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물동량과 행정수요등 제반 여건상 신설이 어렵다는 내용과 함께 향후 해운항만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송선규 (서천군)	은 사료됩니다. 중앙정부에서 항만의 시설규모와 물동량 때문에 군산에 이전했다고 한다면 현재는 우리 도가 화물량이 많고 북쪽의 아산만에 국제 콘테이너 항구가 건설 되어 가고 남쪽의 장항에 신외항이 굴립식으로 30선좌가 건설되어 가고 있어 우리 도에 항만청과 항만건설사무소를 유치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우리 도의 항만청과 항만건설사무소를 유치하는데 어떠한 일을 해왔으며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본의원은 서해안 시대가 열리는 현시점에서 늦게나마 항만청과 항만건설사무소를 유치할 추진위를 구성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도 당국에서는 전 도민이 참여하는 추진위를 구성하여 유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도지사 이동우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협의를 계속 해 나가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 문제는 민간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등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항 신항만의 물동량 확보와 수송대책에 있어서는 장항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상 대전, 충남북등 중부권의 해운화물 처리의 거점항구로 계획된 바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2001년에는 완공될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서 물동량 확보와 수송에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대전-장항간 국도의 4차선화는 대전-논산간은 '89년도에 착공하여 이미 추진중에 있으며, 대전-장항-서천-논산-부여 구간도 '93년과 '94년도에 설계를 완료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송선규 (서천군)	• 현재 우리 도의 공공도서관은 1993년까지 개원할 천안, 성환도서관까지 합하면 19개소이고 좌석은 6,878석이며 장서량은 22만5,536권에 이릅니다. 도서관 수를 인구 비례에 의하면 도시 지역에서 전국 최하위권이고 장서는 17만 5,000권의 장서를 가진 제주도 다음으로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인구와 우리 도의 인구를 비례하면 우리 도가 전국 최하위입니다. 우리 도의 전국 도서관 좌석은 도민 190만8,000명으로 환산한다면 한 좌석은 290명이 활용하게 되는 것이고 장서는 도민 11명이 한 권을 보유한 것이 됩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의 도서관이 이러한 상황에 이른데 대하여 도 당국에 막대한 책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도 당국에서는 도서관의 건립과 장서의 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내 무 국 장 이종현	•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현재 우리 도내에는 20개의 도서관이 건립 운영중에 있습니다마는 도민들에 대한 평생교육진흥과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교육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는 이와같이 부족한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96년도까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금년에는 서산, 강경, 함덕, 아산의 둔포 등 44개소에 개소당 2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건립중에 있으며, '94년도에 6개소, '95년도에 4개소, '96년도에 3개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항읍의 경우 당초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동안 자체적인 노력으로 도서관 건립 여건이 마련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 건립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부에 추가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장서의 확보문제에 있어서는 장서보유 실태를 감안해서 '92년부터 5개소씩 선정해서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책의 해를 맞이해서 사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송선규 (서천군)	있습니까? 현재 우리 도의 20개 시·군중 아산군만이 도서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아산군의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여기에 더 나아가 도서관이 없는 인구 2만명 이상의 읍 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장항읍에서는 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2,000만원 이상 모금하고 3,500권의 장서를 확보했는데 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본 의원은 장항읍에 우선적으로 건립하여 우리 도의 각 시·군·읍·면이 도서관 건립 운동을 전개하는 도화선이 되기를 바라며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 무 국 장 이종현	랑의 책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각계에서 기증된 도서를 9개 도서관에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서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강모준 (서산군)	• 본 의원이 볼때는 이제 우리 도세는 도청이전을 추진할 수 있는 단계에 와있	도지사 이동우	• 지금까지 몇차례에 걸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청이전 문제는 도민화합과 지역안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강모준 (서산군)	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는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대전시의 분리 승격이후 전임지사들의 약화된 도세회복을 위하여 각종 공단과 기업을 유치하고, 발전소, 댐 등을 건설하는 등 획기적인 공업화 시책을 통하여 재정자립도가 경북이나 전라남도를 앞지르고 있으며, 재정사정도 지난번 1회 추경에서 서울, 경기, 경북, 경남에 이어 다섯번째로 많은 120억원이라는 예산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출연할 만큼 호전되었으며, 전국에서 아홉번째인 73억원을 출연한 전라남도는 그 계기가 다소 다르다고는 하겠으나 도청이전 문제가 이미 결정이 되어 연내에 입지선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보아도 짐작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사께서는 도세회복과 안정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도지사 이동우	된다는 점과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장기적 사업이므로 현재 우리 도가 안고 있는 재정여건과 신도시 건설에 대한 심도있고 정밀한 분석등이 필요하므로 단계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도의회에 도청이전 특위가 구성되어 의회 차원에서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있고 도에서도 이미 기획단이 구성되어 분야별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연구가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속에 착수되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유관기관의 이전에 대해서는 강위원님과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선 도와 의회와의 협의에 의한 방안을 먼저 마련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재원문제에 있어서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가 산술적으로는 경상북도나 전라북도의 경우보다는 다소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전라남도의 경우 현재의 도청 위치를 성역화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추진되고 있고, 경상북도의 경우도 현 부지가 4만8,000여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강모준 (서산군)	말하여 인구, 면적, 재정규모, 재정자립도, 공업화규모, 지역경제 규모, 교육, 문화, 1인당 GNP등 각종 지표상 얼마가 되어야 도세회복이 되고, 안정이 되어 도청이전 문제를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동우	평으로 시가로 1,500억원에 이르러 자체재원 조달의 여건이 유리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남, 경북과 우리도의 여건은 전적으로 같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도청 이전을 위한 재원문제는 공영개발 방안을 고려한다 하여도 현실적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실질적으로 막대한 소요재원은 국가의 재정지원과 자체재원 확보가 꼭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에 도청이전 특위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고, 도에서도 기획단이 만들어져 있으므로 앞으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민의 의견 수렴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업소 이전 문제등은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도청이전 적지선정 기준을 위한 용역 필지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있게 검토하여 가급적이면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적어도 서해안을 신산업지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 먼저 서해안 개발과 관련한 도단위 단일계획 수립문제에 있어서는 서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강모준 (서산군)	산업의 입지조건, 지역특성, 환경영향, 생태계와 생활권의 영향, 교통과 사회 간접시설, 용수대책, 공해와 주민대책, 유통과 고용, 무역 등 모든 연관관계를 지역을 초월해서 종합적인 단일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와 협의, 국가차원의 통제와 지원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서산의 A, B지구는 아직도 어민 피해보상을 해결하지 못한 채 준공을 미루고 있으며, 현대, 삼성등 대산공단은 3사의 통합된 공해방지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하여 주민들이 매연에 시달리고 있고 아산, 석문, 한보, 대산을 연결하는 서해안 산업 및 관광도로 건설구역은 불투명한채로 있으며, 서북부 지역의 대규모 공단건설에 따른 생활 및 공업용수 대책의 미수립이라든지 기타 항만시설, 농업 종합개	도지사 이동우	해안 개발사업은 지난 '89년부터 국가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도 관련사업은 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두 34억이 됩니다. 이러한 서해안 개발사업은 개개의 사업을 소관 부처별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입안하여 각각 추진하면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으로 흡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우리 도관련 서해안 종합개발사업을 현재 절차를 이행중에 있는 제2차 도건설 종합계획에 수용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별도의 단일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아직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과 연계된 사업의 지방 재정투자조정문제는 우리 도에서는 2001년까지 추진해 나갈 제2차 도건설종합계획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서해안 개발사업을 계획의 골격으로 하여 지방차원의 사업이 연계되도록 입안한 바 있어 지방재정 투자는 중앙의 서해안개발사업과 전체적으로 연계 조정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개발 부작용의 최소화와 관련기구간 협조체제 문제는 단위사업별 추진사항과 문제점등을 수시로 파악하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강모준 (서산군)	발사업장 등 개발현장마다 제기되고 있는 공해문제와 어민피해 대책등 한가지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문제 투성이지요.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수년내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이 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같이 산적한 문제를 도지사께서는 외면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과 도지사의 서해안개발 구상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동우	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회 서해안개발사업지원 특별위원회와 함께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 단위 서해안 개발사업소의 설치문제에 있어서는 교통통신이 발달한 현시점에서는 「작고 능률적인 정부」 구현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조직관리 기본방향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간소하면서도 주민들에게 큰 봉사를 할 수 있는 조직 체제를 지향하고 있고 서해안 개발사업은 지역발전 담당관실에서 종합적인 기획조정 업무를 담당하여 관련부서와 연계 추진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전담기구설치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만, 앞으로 이 문제도 사업추진 방향에 따라서 신중히 검토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 공무원이 신분상의 위협이나 불이익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풍토의 조성, 즉 공무원의 신분이 엄격히 법으로 보장되어야 관료 제도가	내 무 국 장 이종현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파견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 제4에 의해서 퇴직예정자에게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기관의 원만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강모준 (서산군)	확립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의 정년은 지켜져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의 퇴직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만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명예퇴직을 할 수 있도록 법규에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방 4급이상 공무원 다수가 그것도 이삼십년 동안 봉사한 중견 간부가 정년 1년을 앞에 두고 공로연수라는 명목으로 타의에 의하여 공직을 퇴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들은 정년퇴임때 까지 정원외로 별도의 보수 예산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써 본인은 물론 그 뒤를 따르는 공직자에게도 이러한 사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보장이 없는 한, 어떻게 강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소신껏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4급이상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정	내 무 국 장 이종현	후진들에게 인사운영의 폭을 넓혀 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에게는 공직의 잔여 임기중에 중앙연수라든지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 제도가 정착이 되지 않아서 당사자 공무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로연수 파견제도는 정년 1년이내 인자에 한하여 본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공로연수를 시키고 있으며, 금년에 4급이상 퇴직대상자 14명 전원을 공로연수 시켰으며, 본인 의사에 반한 공로연수는 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로연수 파견제도는 지방공무원법상 파견근무인 만큼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하는 내용은 법취지상 무관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강모준 (서산군)	년 퇴임 1년 이내에 공로연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은 예외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93년중에 지방 4급이상 공직자로서 공로연수 대상자중 공로연수를 하지 아니하고 정년퇴임한 자는 몇명이고, 공로연수중인 자는 얼마나 되며, 그 중에 진정 본인이 원해서 공로연수중인 자는 누구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아산군)	• 본의원이 제59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본도의 기존 골프장은 도고를 제외하고 8개소입니다. 8개소중 2개소는 코오롱 골프장과 미송이글골프장만이 공사중이었고 6개소는 미착공 상태에 있었습니다. 현재 5개소는 미착공중이고, 1개소 상록 휴양소가 금년 2월 17일에 현재 공정 4%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착공된 5개소는 천안,	도지사 이동우	• 먼저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미착공 골프장 문제, 회원권 분양가격 조정 문제, 코오롱 골프장의 독립기념관과 협의문제등 몇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사업승인을 받은 후 착공을 못하고 있는 골프장은 5개소가 됩니다만, 대부분이 그동안 토지매입과 인근 주민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미 적지 않은 사업비를 투자한 후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서류의 보완과 부수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으로 현행 법상으로는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만, 많은 투자자들이 입게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원창 (아산군)	병천, 금강, 한밭, 대전골프장입니다. 아직까지 착공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육시설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1호에 의하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의 설치를 착수하지 않을 때는 허가를 취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 골프장은 3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골프장은 사업시설 운영자금의 일체가 은행에서 중단되었기 때문에 또 하나를 완성하자면 적어도 700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회원권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착공이 안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착공하지 않는 5개소는 유용재단이나 휴양소로 전환하게끔 지사께서 대표들에게 설득할 용의가 없는지요?	도지사 이동우	될 재정적 손실등 제반상황을 비교할 때 사업승인을 취소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사업추진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여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되도록 촉구하고 고의적으로 장기간 착공을 지연시키는 경우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는 문제들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정힐스 골프장과 엑스포 골프장의 1, 2차 분양가격 차이문제는 골프장 회원권 분양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과 골프장 관리규정에 의거, 골프장의 공정이 30% 이상일때와 준공전까지 2회에 걸쳐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회원권의 가격결정은 토지구입비, 공사비, 관리비,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기타 간접비용등을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받아 도에서 회원권모집 승인신청을 하면 그 내용을 검토후 최종적으로 문화체육부와 협의하여 승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권의 분양가격은 분양하는 시점의 공정과 회원수에 따라 다르게 결정됨에 따라서 1차와 2차의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원창 (아산군)	목천면 운전리 코오롱골프장은 지금 현재 우정힐스 골프장이 되었습니다. 미송이글 컨트리클럽은 지금은 엑스포골프장이 되었습니다마는 회원모집 하는데 우정힐스는 700명 이상 1,800명이내, 회원권 가격은 1차에 8,500만원, 2차에 9,900만원 또 엑스포 회원모집권은 1,050명 이상 2,700명 이내, 1차 분양가격은 3,500만원 2차가 5,700만원으로 1, 2차가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반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분양이 안되면 분양가격이내려가는데 반대로 골프장 회원권은 가격이 상승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지사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미성골프장과 천안골프장 승인 당시 농어촌진흥기금 각각 15억원과 25억원 도합 40억원을 약속어음을 받	도지사 이동우	분양가격이 차이가 생기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해 주신 미송 골프장과 천안레저의 개발이익금 환수 문제는 어음증서상에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회원권 분양시에 지급하기로 약속됐던 사항입니다. 골프장사업이 계속 불경기를 맞게 되어 환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송골프장의 경우 사업자가 변경되어 두차례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11%밖에 분양되지 않은 상태로 약속어음 기일변경을 협의중에 있고 천안레저의 경우 사업 승인후 골프장 조성면적의 56%가 군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골프장 면적을 22%로 축소하고 위치를 변경하여 국토이용 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중에 있어 면적 축소에 따른 기여금을 17억원으로 조정하여 약속어음을 '93년 9월 17일 재발행 조치하였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원창 (아산군)	았는데 지급기일이 '91년 7월 19일과 8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수납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급기일 연기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므로 반환청구의 소멸시효로 휴지화 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도지사가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질 용의는 없는지요? 40억원을 수납할 방법은 무엇인지요? 지사의 답변을 구합니다.		
	• 대청호의 수질오염은 청원, 옥천, 영동, 보은 등 대청호 상류지역의 6,000여 축산농가와 향어, 송어를 기르는 22개의 가두리 양식장이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90년도 한해동안 대청호에는 1,433톤의 사료가 뿌려졌고 또한 하루평균 축산폐수는 3,300톤, 생활오수 8만톤, 공장폐수 2,800만톤이 유입되었습니다.	도지사 이동우	• 먼저 대청호는 저수량이 14억 9,000만t으로 하루 급수량은 67만 4,000t이며 이 중 우리 충남이 11만 3,000t으로서 급수량이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의 수질은 BOD 1.5ppm으로서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바와같이 대청호 상류지역인 충북의 영동, 옥천, 보은, 청원등지의 생활하수와 축산폐수, 가두리 양식장등이 주오염원으로 상존하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대청호의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원창 (아산군)	대청호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대청호의 22개 양식장 운영면적이 3만4,763㎡인데, '94년도 5개소, '95년도 1개소, '96년도 11개소, '97년도 5개소로 '97년도에 가야만이 모든 양식장이 전부 없어지게 됩니다. 축산농가는 소 한마리가 40명분, 돼지 한 마리가 10명분, 염소 한 마리가 5명분 닭한마리가 1명분으로 배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류지역에 6,000축산 농가가 있으니 그 오염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축산폐수가 큰 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지사는 정부에 건의하여 정화조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영세한 축산업자에게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도록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대청호를 살리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도지사 이동우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청호 상류 주오염원 지역을 특별 대책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상류지역에 위치한 우리 도 논산군의 경우 분뇨 처리장, 축산폐수 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 사업에 13억2,000만원을 투입,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특히 충북의 대청호 상류지역에 생활하수를 정화처리하기 위해서 '89년부터 하수종말처리장 3개소를 비롯한 환경시설 11개 사업에 182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9월 현재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2개소, 간이 오수처리장 6개소가 정상 가동되고 하수종말 처리장 3개소가 완공되어서 현재 시험 가동중에 있어 이 시설들이 정상 가동된다면 대청호의 수질은 앞으로 현재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두리 양식장에 대해서도 '90년 7월 19일 환경처 고시로 상수원 수질보존 특별대책 지역에서는 허가가 금지되고 있어서 충북에서 신규 허가 및 기간 연장은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법적 규제대상 미만의 영세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그간 3,974개소에 119억2,200만원을 투자한 바 있고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원창 (아산군)	원수가 좋아야 상수물이 좋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강이 죽으면 사람도 죽습니다. 물고기가 죽으면 사람도 죽는 것이 철칙인 것입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상수원의 수질개선에 대하여 정부 노력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지금 국민들은 생수와 정수기를 구입하고 약수터에 오르면서 자구책을 구하고 있으니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없는지요? 환경을 위시해서 정부의 환경관련 예산은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고 있음을 볼 때 우리가 맑은 강과 깨끗한 물을 언제다시 볼 수 있을런지 아득하기만 합니다. 대청호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BOD를 '80년 1ppm, '87년도 1.3ppm, '88년도 1.5ppm, 89년도 1.6ppm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오염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됐	도지사 이동우	금년에도 896개 시설에 대해서 개소당 300만원씩 융자 또는 보조하여 간이 축산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 설치자금을 계속 지원하여 축산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대청호의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90년에 1.7ppm, '91년에 1.6ppm, '92년에 1.5ppm, 금년 상반기 현재 1.5ppm으로서 '90년을 기점으로 수질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원창 (아산군)	습니다. '90년도부터 '93년도 까지 조사한 것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지구는 농어촌 진흥공사가 농업종합개발사업에 따른 문제로 되어 있고, 서산 A, B지구는 현대측이 간척매립지로 문제가 되어 있고, 장·군공단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장항지구 470만평 매립지로 인하여 어민들의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와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 장 박종순	• 그동안 도에서도 어민 보상대책에 대하여 농어촌진흥공사에 수차 촉구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 관계 요로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대로 매립면허 고시일 이후 신고한 맨손어업자가 고시이전 신고한 어업자와 동등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간 농어촌 진흥공사에 어민의견을 수렴,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으나, 건설부에서 공유수면 매립법 시행령상 동등한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민들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면서 농어촌진흥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서산 A, B지구 보상문제와 매립 면허기간 연장문제는 지난 74회 임시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농수산국장 박종순	습니다마는 매립지 분배는 '91년 9월 20일 농림수산부 장관이 매립면허기간을 연장 허가 하면서 면허조건을 추가하여 농림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면적의 매립지의 일부를 피해 농어민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토록 하였으나, 현대 건설에서 이 조건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서울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 소송결과에 따라 농림수산부의 합당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민보상문제도 매립허가 기간 연장 허가시에 매립내측의 자연산 어장 상실 어민에 대하여 공특법을 준용하여 보상토록 하고 매립외측은 당초 보상시에 예측하지 못한 피해와 새로운 피해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보상토록 하여 그동안 매립내측은 보상을 신청한 9,279가구 중에서 4,571가구가 합의되었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매립외측의 김과 낭장만 어업에 대한 추가 보상은 대상가구 1,687가구 중 1,062가구가 합의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 서산 문화회관에서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농수산국장 박종순	열린 집회는 서해안 피해 어민대책협의회라는 어민 순수 모임으로 우리 도에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날 모임은 피해 어민에 대한 보상문제 해결없이 현대건설이 매립면허 기간 연장허가를 반대하고 조속한 보상을 촉구한 모임이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농림수산부에 어민보상문제 해결후에 매립면허 기간을 연장하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김문규 (천안군)	• 도계 행정강화의 긴요성 인식과 방향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와 더불어 지방행정의 행정서비스 수준이 양적 질적으로 상당히 향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자립도 도정의 방향과 중점 추진 시책에 따라서 상당한 수준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의 북부 관문인 천안군의 경우 경기도와 충청북도에 인접되어 있어 비교행정을 피부로 느낄	도지사 이동우	•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는 경기, 충북, 대전, 전북등 4개 시, 도와 도계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대전직할시를 비롯하여 평택시, 청주시, 군산시등 대도시와 인접하고 있어 도계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낙후함을 느끼고 있는것도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제2차 도건설 종합개발계획을 입안하면서 이점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성환, 천안, 연기 등 동북부 지역은 첨단산업 및 도시형 공업 벨트로, 장항 지역은 대규모 국가공단을 중심으로한 임해형 공업지대로 각각 발전시키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문규 (천안군)	수 있는 지역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재정투자 면이나 지역개발, 주민숙원 사업, 복지문화 행정에 대하여 많은 열등감과 소외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인접한 지역은 행정구역 안내판이 없어도 도계를 확연히 구분할 만큼 모든 면에서 미개발된 것이 사실인데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이에 대한 관심을 어느정도 가지고 계시며, 앞으로의 추진 계획도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동우	앞으로 우리 도의 이러한 기본 구도가 장기적으로 차질없이 추진되어 지역간 균형을 이루고 주민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도계행정에 최선을 다 해 나갈 생각입니다.
	• 우리 도내에 위치한 국가단위 주요국가시설에 대하여 반드시 타산적인 측면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요 국가시설로 인하여 지역발전 저해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		• 다음 산업 입지에 따른 피해 개선대책에 있어서는 우리 도에서는 대전직할시 분리이후 도세 회복 차원에서 공업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산업 구조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로인한 환경등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도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산업화는 장단점이 병존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문규 (천안군)	니다. 독립기념관 건립으로 인한 인근주민 불편사례 및 지방재정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밝혀 주시고, 이로 인한 중앙정부의 특별 재정적 지원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대부분의 산업체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여보다는 본사 및 사업주가 서울등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지역에는 지역발전과 소득보다는 오히려 공해 피해, 쓰레기 피해, 노사갈등, 도로파손 등으로 주민들의 집단 반발만 시켜서 정다운 지역 인심만 악화시키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산업체 본사의 지방이주 대책 및 제반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 재활용에 관련하여 여러가지 시책들이 많이	도지사 이동우	되는 것으로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는 물론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산업화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이상 사업에만 적용하던 환경영향 평가를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 영향평가 및 교통 영향 평가를 더욱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의 공업화가 지역 주민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감으로써 산업입지의 이점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중요 공장이 우리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그 본사도 이전 해 오도록 관계 기업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해마다 격증하고 있는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문규 (천안군)	전개되면서 과거에 비해 많은 양의 재활용품이 수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양이 수거됨으로써 재활용품의 판매단가의 급격한 하락으로 주민들의 수거의욕이 점차 저하되고 있는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94년 부터는 예산을 특별지원하여 재활용품 수거 보상제를 도입하여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파트등 집단 주거지역은 쓰레기 분리수거 등으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도시의 단독주택지역과 농촌지역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다른 방안을 적극 모색해 보셨는지요. 이를 위하여 본의원이 한가지 제안을 한다면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선정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퇴비화통을 각 가정에 보급하여 추진할 용의	도지사 이동우	금년도를 기점으로 '95년도까지 3개년 동안 총 900억원을 투자하여 쓰레기 처리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시단위에 위생매립장과 소각장을 그리고 15개 군에는 위생매립장을 1개소씩 설치하고자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재정형편상 도비 13억원과 시·군비 37억원등 총 50억원을 투자해서 서산시를 비롯해서 8개 시·군에 위생매립장 건설을 착수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도로 포장등 지역개발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심각하게 대두되어 가고 있는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코자 우선적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도민보건 향상과 쾌적한 환경보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쓰레기를 감량하고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활용품 수거 보상제는 금년도에 천안시를 비롯해서 각 시·군 노인회, 부인회등에 9,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민간봉사단체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문규 (천안군)	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동우	또한 음식쓰레기 퇴비화 및 사료화 사업도 온양시와 논산군등 일부지역을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그 성과에 따라 점차 확대 실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서산군)	• 자동차 산업은 지방화 시대에 꼭 필요한 산업으로 전국은 현재 농민이 20%인데 반해 우리 충남은 도민의 40%가 농어민인 점을 보아도 산업화시대에 너무 동떨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도세가 빈약하여 인구에 비해 실업자가 너무 많아 심각한 상태이므로 도세확충과 지역개발을 위하고 실업자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자동차공장을 꼭 유치하여야 되겠다는 것이 200만 도민의 숙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1차로 본의원이 '93년 8월 17일 도지사와 단독 면담시에 건의를 하였고, '93년 8월 26일 천안시민회관에서 황인성 국무총리와 각 부처장관과의 대화의 장에서도 본의원이		• 자동차 공장의 유치 문제는 대산지역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난 8월 28일 2,140명의 주민이 연명하여 대산읍 돗곳리와 오지리간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삼성 승용자동차 공장을 유치하여 달라는 건의서를 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매우 좋은 건의라고 생각되어서 지난 9월7일 상공자원부와 삼성그룹에 출장하여 도지사의 건의서를 전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협의결과 삼성측에서는 현재 대형차 부분에만 사업계획이 되어 있을 뿐 승용차 부분은 아직 계획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계획된 대형자동차 공장은 창원의 삼성 중공업 공장내에 연간 4,500대 생산규모로 '97년도부터 생산할 계획으로 시설중에 있어 현재로서는 건의를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도세회복과 막중한 역할을 할 자동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진경 (서산군)	강력하게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도 도민의 한 분이시며, 도정의 책임자이시고, 중앙부처와의 유대가 좋으신 점을 익히 알고는 있습니다. 도민이 도지사께 자동차 공장을 유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도지사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훌륭하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이동우	차 공장과 같은 대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정부, 대기업 등과 협의해 나감으로써 지역발전의 전기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도지사께서도 익히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정부나 도차원에서 서해안개발의 시급성을 너무나도 당연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계절따라 찾아와 우는 철새인양 수년전부터 서해안개발이 국가나 도의 중심개발지역이라고 목청높여 소리쳐 놓고 그 시간만 지나가면 꿩구어 먹던 자리로 흔적조차 찾아볼수 없는 참으로 안타깝기만 한 현실이어서 본의원의 생각으로		• 먼저 서산과 태안 지역의 항로 개설 문제에 있어서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해상 교통로 개설 업무가 해운 항만청 소관으로서 그동안 도에서는 지난 '92년 11월에 인천지방 항만청에 관계 공무원을 출장시켜 항로개설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제반 사항에 대하여 협의 했습니다만, 현재 운항중인 인천, 홍도, 육도, 난지도 및 삼길포 까지의 항로도 적자로 운영하고 있으며 점차 승객이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실정으로 신규항로 개설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앞으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진경 (서산군)	는 충청남도 서해안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인천과 안흥항까지 신항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천항에서 출발하는 항로가 경기도 풍도와 육도를 거쳐 당진군 난지도와 서산군 삼길포까지 2시간 30분대의 카페리호가 30노트의 속도로 운행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20여년에 운행하던 서산군 오지, 팔봉면 구도, 태안군 어항까지 다니던 배가, 항로가 북한의 월북하기 쉬운 노선이라 하여 1972년 10월달에 항로를 폐쇄하고 말았는데 이에 국민소득이 10배이상 발전했고 또 서해안 당진군, 서산군, 태안군의 해협이 207㎞에 달하는 지역은 세계에서도 보기드문 리아스식의 경관의 해협이며 세계 무역의 전초지임을 감안할 때 인천항만청과 협의하여 다시 항로를 살려 인천출발 당진군, 서산군, 태안군의 안흥항과	도지사 이동우	로 승객의 변화추세에 따라 추가 운행을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관할 항만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항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서산-태안간 산업 관광도로의 확장은 국도 32호로서 총 17.1㎞에 이르고 있으며 총 사업비가 581억원으로 '93년도에 용역비 5억원을 투자하여 실시 설계중에 있어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94년부터 연차계획에 따라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진에서 대호 방조제를 거쳐 서산-대산읍 까지 연결되는 구간은 현재는 지방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건설부의 전국 도로망 확충계획에 국도로 조정해 줄 것을 신청중에 있어 중앙에서 이 계획이 확정되면 전액 국비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성, 서산, 대산간 철도 건설문제는 아직까지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만, 2000년대 서북부 지역의 산업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에 대비해서 성한, 당진, 서산, 태안 및 안흥항을 연결하는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한 결과 현재로서는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진경 (서산군)	안면도까지 일일권 해상로를 다시 살려 획기적인 발전의 촉진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항로개설에 대한 검토를 한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 없다면 앞으로 항로개설을 위한 제반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해안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서산, 태안간 관광산업도로를 확·포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부터 확·포장되며 당진과 대호방조제를 거쳐 서산군 대산읍까지 산업도로 확장계획은 언제부터 실시할 수 있는지 또한 서산군의 비행장시설에 맞춰 육로로는 천안과 홍성을 거쳐 서산군과 태안군을 경유하여 대산읍까지 철도를 신설하여 교통의 폭주로 고통을 느끼는 도민의 편익과 국가발전 기간산업에 위치한 대산읍 간의 교통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 이동우	철도 신설계획은 없지만 지역의 발전추세를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검토 해나가겠다는 중앙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진경 (서산군)	도지사는 검토한 적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모두의 염원은 후세교육을 잘 시키는 길이며 국가적으로도 후세의 교육만이 국가장래를 좌우한다고 본다면 어찌하여 공립학교 학군내 부모나 학생은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사립학교의 학군내 부모나 학생은 다른 나라의 국민이라는 말입니까? 차등을 두는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30년, 40년 동안 서자취급 받고 시설환경 및 모든 지원혜택 없이 지나온 세월도 한맺힌 교육행정이었는데 언제 까지 공립과 사립의 차등을 두어 편파적인 행정을 해야 하는가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엔 사립중·고등학교의 경우도 국가가 모두 맡아서 교육에 대한 시설을 해야 할텐데 국가의	교육감 백승탁	• 저는 평소 우리나라의 사학은 교육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은 물론 국가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기회의 확충과 인재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사학의 중요성과 그 기여도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1880년대 개화기에 우리나라 사학은 신문화와 신교육 도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종교계, 그리고 외국선교사들에 의한 조국 근대화를 위하여 설립된 사학이 있고, 또 외국지사와 독지가에 의한 구국 이념의 목적하에서 설립된 사학이 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민족정신의 함양과 한일 독립정신의 고취에 기여하고, 해방이후 교육수요의 상당 부분을 충족시켰으며, 산업화 과정에서는 전문기술인력 양상의 이바지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학은 지역사회와 학교 교직원,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하고 설립자의 건학 이념을 충실하게 실현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진경 (서산군)	재정이 빈약함으로 농촌지역에서 지역의 유지가 교육열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학교를 설립하여 헌신하여 온 것이 요즘의 사립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과거사도 교육행정의 푸대접 속에서 지내왔고, 이제는 옛날의 교육행정의 잘못된 점을 버리고 공·사립 공히 똑같은 보호와 지원속에서 후세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한지, 사립학교의 시설 개보수에 대하여 지원을 소홀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사립 중·고등학교의 재단이 튼튼하여 재단의 지원으로 자체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얼마나 되며, 재단이 부실하여 지원이 전혀 없는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확실히 밝히고, 향후 지원대책은 어떠한 계획으로 운영할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백승탁	해야 할 것입니다. 저로서는 공·사립간 그리고 도시와 농촌간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차등없이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이 저희 행정 소신입니다. 사학자체도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독자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내 사학의 비중은 31% 사학에 자주적 독창적 발전없이는 교육발전이 있을 수 없으므로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공·사립 차등없이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립학교의 기준 재정수입인 입학금과 수업료, 법인 전입금이 공립학교 기준의 인건비, 운영비등 기준재정수요를 충당하지 못할 때 그 차액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92년도에 지원한 341억원보다 25% 증액된 430억원을 사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제정된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법에 의하여 '90년부터 '92년까지 3개년에 걸쳐 116억4,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질문	질 문 내 용	답변	답 변 내 용
		교육감 백승탁	또한 '93년도에는 자체지원으로 88억2,300만원을 공·사립 차등없이 지원하여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학교 법인중 정부 지원없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수와 지원받는 학교수, 그리고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도내 사립 중·고등 학교중 정부 지원없이 운영되는 학교는 한화그룹에서 설치 경영한 천안 북일고등학교 단 1개교 뿐이고, 중학교 55개교, 고등학교 34개교가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은 법인으로 하여금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저수익 재산이 전·답·대지·과수원·염전등을 고수익 재산으로 전환하여 수익 제고에 힘쓰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第25節 第78回 臨時會

Ⅰ. 槪 況

1. 開會背景

○ 제7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2년도 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위하여 93년 10월 9일 집회공고를 실시하고 93년 10월 18일 14:00에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회기 : '93. 10. 18 ~ 10. 26 (9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3. 10. 18(월) 14 : 00	본 회 의 (제 1 차)	1. 金高盛의원청가의 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 3. 제7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5. 본회의 건	
15 : 00	기획경제위 (1차)	1. '92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가. 기획관리실 소관 나. 공보관실 소관 다. 지역경제국 소관 2. '92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가. 지역경제국 소관 3.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선정의 건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3. 10. 18(월) 15 : 00	내 무 위 (1차)	1. '92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가. 내무국 소관	
15 : 00	교육사회위 (1차)	1. '92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가. 보사환경국 소관 나. 가정복지국 소관	
15 : 00	농림수산위 (1차)	1. '92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가. 농어촌개발국 소관 2. '92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가. 농어촌개발국 소관	
15 : 00	건 설 위 (1차)	1. '92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 나. 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 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2. '92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	
'93. 10. 19(화) 10 : 00	조 례 정 비 특위(1차)	1. 위원장선임의 건 2. 간사선임의 건	기획경제 위회의실
10 : 00	서해안특위 (1차)	1. 위원장선임의 건 2. 간사선임의 건	교육사회 위회의실
10 : 00	백제권특위 (1차)	1. 위원장선임의 건 2. 간사선임의 건	농림수산 위회의실
11 : 00	운 영 위 (1차)	1. 제7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일정협의의 건 2. 충청남도의회특별위원회운영규정협의의 건 3. '92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3. 10. 19(화) 11 : 00	내 무 위 (2차)	1. '93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가. 민방위국 소관 나. 소방본부 소관 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라. 계룡출장소 소관 2. '92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가. 계룡출장소 소관	
14 : 00	교육사회위 (2차)	1. '92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14 : 00	농림수산위 (2차)	1. '92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가. 농림수산국 소관 나. 농촌진흥원 소관 2. '92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및건의안 가. 농수산국 소관	
'93. 10. 22(금) 10 : 00	예 결 특 위 (1차)	1. '92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2. '92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93. 10. 25(월) 10 : 00	예 결 특 위 (2차)	1. '92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93. 10. 26(화) 15 : 00	본 회 의 (제 2 차)	1. 의회운영위원회위원보임의 건 2. '92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3. '92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4. '92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5. 농업재해지원기준현실화및재해농가특별지원에관한 건의안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수	안 건	비 고
계	8		
예 산 안 (결 산 안)	3	1. '92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2. '92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3. '92충청남도교육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건 의 안	1	1. 농업재해지원기준현실화 및 재해농가특별지원에 관한 건의안	
기 타	4	1. 金高盛의원 청가의 건 2. 제7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4. 의회운영위원회위원보임의 건	

第26節 第79回 臨時會

Ⅰ. 槪 況

1. 開會背景

○ 제7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현근의원외 21명의 의원으로부터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3년 10월 27일 집회공고를 실시하고 93년 11월 4일 14:00에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회기 : '93. 11. 4 ~ 11. 8 (5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3. 11. 4(목) 14 : 00	본 회 의 (제 1 차)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 2. 제7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3. '93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 건 4. 본회의의결을요하는'93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5. 휴회의 건	
11 : 00	의회운영위	1. 제80회정기회회기일정협의 2. '93행정사무감사계획서조정협의	
14 : 38	기획경제위 (1차)	1. '93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93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및 보고 요구의 건 3. '93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의 건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3. 11. 4(목) 14 : 40	내 무 위 (1차)	1. '93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93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및 보고 요구의 건 3. '93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4 : 49	교 사 위 (1차)	1. '93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93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및 보고 요구의 건 3. '93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의 건	
15 : 30	농림수산위 (1차)	1. '93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93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및 보고 요구의 건 3. '93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의 건 4. 충청남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14 : 45	건 설 위 (1차)	1. '93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93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및 보고 요구의 건 3. '93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의 건 4. '93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의 건 5.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 조례	
'93. 11. 8(월)	백제특위(1차)	1. 백제권종합개발 사업 추진 상황보고	
14 : 00	본 회 의 (제 2 차)	1. 충청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2. 충청남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4. 본회의의결을요하는'93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5. '93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수	안 건	비 고
계	8		
조 례 안	3	1.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기 타	5	1. 제7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2건) 3. '93행정사무감사 실시시간 및 기간 결정의 건 4. '93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	

4. 條例案 處理內譯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220	충청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충청남도지사 (8. 10)	농림수산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의 산림소유자가 충청남도소재산림내에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1. 8	11. 10	원안
244	충청남도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사 (10.28)	건설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1993 8.14, 대통령령 제13,958호)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도로에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로점용의 경우	〃	〃	〃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에 지켜야할 기준을 정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도로부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245	충청남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사 (10. 28)	농림수산	○농지분야 경제행정규제완화 및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확정된 과제중 관련법령(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령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령)의 개정없이 도조례 개정만으로 시행가능한 사항을 우선 개정 시행함으로써 도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키 위함	11. 8	11. 10	원안
242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본회의 상정)	○지방자치법 제1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운수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본회의 의결을 얻어 실시하려는 것임	11. 4	11. 5	〃
246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지방자치법 제1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93행정사무감사를 본회의 의결을 얻어 실시하려는 것임	11. 8	11. 10	〃

第27節 第80回 定期會

Ⅰ. 槪 況

1. 開會背景

○ 제80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11월 11일 집회공고를 실시하고 93년 11월 20일 11:00에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회기 : '93. 11. 20 ~ 12. 24 (35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3. 11. 20(토) 11 : 00	본 회 의 (제 1 차)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 2. 제80회충청남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 3. '94충청남도예산안에대한도정설명 4. '94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교육시책 연설 5. 도지사, 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93. 11. 22(월) 11 : 00	기획경제위 (1일차)	1. '93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관리실 소관	
14 : 00	내 무 위 (1일차)	1. '93행정사무감사 가. 내무국 소관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3. 11. 22(월) 10 : 00	교육사회위 (1일차)	1. '93행정사무감사 가. 보사환경국 소관 ※ 보건환경연구원(15 : 00)	
14 : 00	농림수산위 (1일차)	1. '93행정사무감사 가. 농촌진흥원 소관	농촌진흥원 회 의 실
11 : 00	건 설 위 (1일차)	1. '93행정사무감사 가. 도시건설국 소관	
'93. 11. 23(화) 10 : 00	기획경제위 (2일차)	1. '93행정사무감사 가. 공보관실 소관 나. 지역경제국 소관	
10 : 00	내 무 위 (2일차)	1. '93행정사무감사 가. 내무국 소관 나. 민방위국 소관	
10 : 00	교육사회위 (2일차)	1. '93행정사무감사 가. 가정복지국 소관 ※ 여성회관 (15 : 00)	
10 : 00	농림수산위 (2일차)	1. '93행정사무감사 가. 농어촌개발국 소관	
10 : 00	건 설 위 (2일차)	1. '93행정사무감사 가. 건설도시국 소관	
'93. 11. 24(수) 10 : 00	기획경제위 (3일차)	1. '93행정사무감사 가. 지역경제국 소관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3. 11. 24(수) 10 : 00	내 무 위 (3일차)	1. '93행정사무감사 가. 소방본부 소관 나.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10 : 00	교육사회위 (3일차)	1. '93행정사무감사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10 : 00	농림수산위 (3일차)	1. '93행정사무감사 가. 농어촌개발국 소관 나. 농수산국 소관	
10 : 00	건 설 위 (3일차)	1. '93행정사무감사 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3. 11. 25(목) 10 : 00	기획경제위 (4일차)	1. '93행정사무감사 가. 운수연수원 소관 나. 지방공사공주의료원 소관	운수연수원 지방공사 공주의료원
10 : 00	내 무 위 (4일차)	1. '93행정사무감사 가. 계룡출장소 소관	계룡출장소
10 : 00	교육사회위 (4일차)	1. '93행정사무감사 가. 충청남도교육청소관	교사위 회의실
10 : 00	농림수산위 (4일차)	1. '93행정사무감사 가. 농수산국 소관	
11 : 00	건 설 위 (4일차)	1. '93행정사무감사 가. 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	보령댐 건설사업소
'93. 11. 26(금) 14 : 00	기획경제위 (5일차)	1. '93행정사무감사 가. 지방공사천안의료원 소관	지방공사 천안의료원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3. 11. 26(금) 09 : 30	내 무 위 (5일차)	1. '93행정사무감사 가. 공주, 대천, 서산소방서	각 소방서
10 : 00	교육사회위 (5일차)	1. '93행정사무감사 가. 지방공사 서산의료원 나. 지방공사 홍성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10 : 00	농림수산위 (5일차)	1. '93행정사무감사 가. 현장확인 (잠업사업소, 산림박물관 건립현장)	
10 : 30	건 설 위 (5일차)	1. '93행정사무감사 가. 현장확인(공주시 · 군 하천골재채취장)	
'93. 11. 30(화) 11 : 00	서 해 안 개발특위 (2차)	1. 서해안개발사업 추진상황보고	
14 : 00	본 회 의 (제2차)	1. 민방위국장임용개선건의안 2. 추곡수매량확대및수매가인상에관한건의안 3. 도정에관한질문	
'93. 12. 1(수) 11 : 00	운 영 위 (1차)	1. '94충청남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93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4 : 00	본 회 의 (제 3 차)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2. '93제3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93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제안설명 4.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3. 12. 2(목) 10 : 00	기획경제위 (1차)	1. '94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관리실 소관 나. 공보관실 소관 2. '93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가. 기획관리실 소관 나. 공보관실 소관	
10 : 00	내 무 위 (1차)	1. '94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내무국 소관 2. '93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가. 내무국 소관	
10 : 00	교육사회위 (1차)	1. '94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보사환경국 소관 2. '93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가. 보사환경국 소관	
11 : 00	농림수산위 (1차)	1. 충청남도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소관재산의 무상이관 동의안 2. '94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어촌개발국 소관 3. '93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가. 농어촌개발국 소관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3. 12. 2(목) 10 : 00	건 설 위 (1차)	1. 충청남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세계은행차관군도및지방도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3. '94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 4. '93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	
'93. 12. 3(금) 10 : 00	운영위원회 (2차)	1. '94예산안(의회사무처소관) 2. '93제3회추경(의회사무처 소관)	
11 : 00	기획경제위 (2차)	1. '94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지역경제국 소관 2. '93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가. 지역경제국 소관	
10 : 00	내 무 위 (2차)	1. '94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내무국 소관 나. 민방위국 소관 2. '93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내무국 소관 나. 민방위국 소관	
10 : 00	교육사회위 (2차)	1. '94충청남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가. 가정복지국 소관 2. '93제3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출추경예산안 가. 가정복지국 소관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3.12.3(금) 10 : 00	농림수산위 (2차)	1. '94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어촌개발국 소관 나. 농수산국 소관 2. '93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가. 농어촌개발국 소관 나. 농수산국 소관	
10 : 00	건 설 위 (2차)	1. '94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나. 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 2. '93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나. 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	
'93. 12. 4(토) 10 : 00	교육사회위 (3차)	1. '94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보사환경국 소관 나. 가정복지국 소관 2. '93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가. 보사환경국 소관 나. 가정복지국 소관	
'93. 12. 6(월) 10 : 00	기획경제위 (3차)	1. '94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계수조정 의결 2. '93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 ※ 계수조정 의결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3. 12. 6(월) 10 : 00	기획경제위 (3차)	3. 충청남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4. 충청남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8. 충청남도운수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남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 충청남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 충청남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12. 충청남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3. 충청남도에너지이용합리화법관련과태료징수폐지조례안	
10 : 00	내 무 위 (3차)	1. '94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소방본부 소관 나.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 '93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가. 소방본부 소관 나.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10 : 00	교육사회위 (3차)	1. '94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3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11 : 00	농림수산위 (3차)	1. '94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수산국 소관 나. 농촌진흥원 소관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3. 12. 6(월) 11 : 00	농림수산위 (3차)	2. '93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가. 농수산국 소관 나. 농촌진흥원 소관	
'93. 12. 7(화) 10 : 00	내 무 위 (4차)	1. '94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계룡출장소 소관 2. '93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가. 계룡출장소 소관 ※ 계수조정 의결	
10 : 00	교육사회위 (4차)	1. '94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3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 ※ 계수조정 의결	
10 : 00	농림수산위 (4차)	1. '94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농림수산위 소관 2. '93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가. 농림수산위 소관 ※ 계수조정 의결	
'93. 12. 8(수) 10 : 00	내 무 위 (5차)	1. '94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3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3. 충청남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3. 12. 8(수) 10 : 00	내 무 위 (5차)	6.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남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충청남도지방도로포장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11. 충청남도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2.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93. 12. 9(목) 14 : 00	예 결 위 (1차)	1. 위원장선임의 건 2. 간사선임의 건 3.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19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1994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1993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3. 12. 10(금) 10 : 00	예 결 위 (2차)	1. 소위원회구성의 건	
11 : 00	제 1 소위 (1차)	1. 위원장선임의 건 2. 간사선임의 건	내무위 회의실
11 : 00	제 2 소위 (1차)	1. 위원장선임의 건 2. 간사선임의 건	교사위 회의실
'93. 12. 13(월) 10 : 00	제 1 소위 (2차)	1.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19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3. 12. 13(월) 10 : 00	제1소위 (2 차)	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나. 내무위원회 소관 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10 : 00	제 2 소위 (2 차)	1. 1994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1993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활동	
'93. 12. 14(화) 10 : 00	제 1 소위 (3 차)	1.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19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나. 건설위원회 소관 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소위원회구성 활동	
'93. 12. 15(수) 10 : 00	제 2 소위 (3 차)	1.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19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1994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1993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3. 12. 16(목) 11 : 00	조 례 정 비 특위 (2차)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심의	
15 : 00	내 무 위 (6차)	1. '93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3. 12. 16(목) 14 : 00	본 회 의 (제4차)	1. '94충청남도예산안 2. '93제3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3. '94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4. '93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5. 충청남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충청남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남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남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 충청남도운수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충청남도지역홍보대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2. 충청남도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3. 충청남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4. 충청남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 조례안 15. 충청남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16. 충청남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7.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8.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 충청남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 21. 충청남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22. 충청남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 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3. 충청남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 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3. 12. 16(목) 14 : 00	본 회 의 (제4차)	24. 충청남도지방도로포장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25. 충청남도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26. '94도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27. 충청남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8. 충청남도세계은행차관군도및지방도개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29. 충청남도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소관재산의무상이관동의안 30. 휴회의 건	
'93. 12. 23(목) 14 : 00	교육사회위 (5 차)	1. 충청남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교육위원회의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교육위원회관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남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1. 충청남도교육 · 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12. '93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3. 12. 24(목) 11 : 00	본 회 의 (제5차)	1.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교육위원회관인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남도충남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남도교육 · 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2. 충청남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3. '93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5건) 14. 지방자치법개정요구에따른결의안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수	안 건	비 고
계	55		
조 례 안	36	1.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구 분	건수	안 건	비 고
예 산 안 (결 산 안)	4	1. '94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3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94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3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건 의 안	2	1. 민방위국장임용개선 건의안 2. 추곡수매량확대 및 수매가인상에 대한 건의안	
결 의 안	1	1. 지방자치법 개정요구에 따른 결의안	
동의승인안	2	1. '9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 건 2. 충청남도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소관재산의 무상이관동의안	
기 타	10	1. 회의록서명의 선출 2. 제80회충청남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 3. '94충청남도예산안에대한 도정설명 4. '94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 교육시책연설 5. 도지사·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6. 도정에 관한 질문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선임의 건 8. '93제3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9. '93제3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0.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4. 條例案 處理內譯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254	1994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충청남도 교육감 (11.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요구액 : 635,366백만원 ○증감내역 ┌증액 : 242,341백만원 └감액 : 242,341백만원 ○의결(사정)액 : 635,366	12.16	12.17	수정
255	1993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	○예산요구액 : 644,281백만원 ○증감내역 : 없음	〃	〃	원안
247	충청남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교육사회	○94.3.1 개교예정인 서산부춘중학교를 서산학군에 배정하고 서산여중학구를 폐지 · 서산학군에 편입 ○소규모학교 통합계획에 의거 93.3.1자로 통폐합및분교장 격하교에 대한 학교명칭 삭제 및 변경 ○천안군 목천면 신계국민학교의 중학교학구를 현재의 목천중학구 단일학구에서 목천중학구, 천안시 중학구로 전환		11.30	철회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태안군 고성국민학교 학구 중 도내1리를 현재의 팔봉중학교 단일학구에서 팔봉중학구, 태안읍 중학구의 공동학구로 전환			
248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 포상조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교육감 (11. 15)	교육 사회	○포상의 종류를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협조상으로 구분 ○결격사유 강화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개선	12.24	12.27	원안
249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신설학교 명칭기입 ○통·폐합학교 학교명칭과 위치 삭제 ○분교장 개편학교 명칭변경 ○금산농업고등학교외 7개교 명칭 변경 ○용남고등학교 위치 변경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변경	〃	〃	〃
250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복무조례를 정비함	〃	〃	〃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251	충청남도충남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교육감 (11. 15)	교육 사회	○수상자의 자격 '충청남도교육감산하 각급 교육기관'을 '충청남도교육감 산하각급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충청남도교육위원회' 로 개정 ○수상후보자 추천서류를 전산용지로 개정	12.24	12.27	원안
252	충청남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의사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담당관밑에 의사계장을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함 ○의사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현재 12명에서 16명으로 함 ○교육위원회의 사무처리지원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	〃
253	충청남도교육위원회관인조례중개정조례안	〃	〃	○관인은 의사국의 의사담당관이 관리하도록 함	〃	〃	〃
256	충청남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충청남도 지사 (11. 16)	기획 경제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단위 물가대책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12.16	12.17	〃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공공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 심의하여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57	충청남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사 (11. 16)	기획경제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2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12.16	12.17	원안
258	충청남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	○종전에는 입력실이 있었으나 현재는 입력실이 없으므로 관련조항 삭제 ○그동안 활동이 미약하고 유명무실한 전산추진위원회 규정을 삭제	〃	〃	〃
259	충청남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	○별표의 내용과 주관의 인건비 및 전산자료 입력료의 기준이 상이하여 이를 일치시킴	〃	〃	〃
260	충청남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중개정조례안	〃	내무	○가축위생시험업무 확대추세에 맞춰 설치목적과 관장업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	〃	〃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관장업무처리원활및오지양축농가 보호를 위하여 태안지소를 설치하여 이에 따라 각지소의 명칭을 알기쉽게 행정구역명으로 변경함			
261	충청남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사 (11.16)	내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을 일반회계에서 관리토록 하고 ○지금까지 우수농고생 영농정착특별지원금을 1년 거치 2년 상환 조건으로 1인당 100만원씩 융자해주던 것을 3년거치 2년 상환으로 연장하고 융자금도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12.16	12.17	원안
262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	○상업지역에 한해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었던 것을 공업지역까지 표시할 수 있도록 함 ○고속국도 주요경계시설 차폐용간판의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동간판의 규격설정권을 시장·군수에게 권한위임함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 항목중 플래카	〃	〃	〃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드란을 삭제하고 현수막으로 통합 운영함 ○돌출간판 수수료의 일부를 경감함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서의 제출을 1월말에서 2월말까지로 연장함			
263	충청남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사 (11.16)	내무	○충청남도자연학습원 운영위원회 간사의 직명을 국민운동지원과장에서 사회진흥과장으로 함	12.16	12.17	원안
264	충청남도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	○건축주(주택사업자)가 사원용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고용주에게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함 ○이 경우 본래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5년 이내에 양도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면제세액을 추징함	〃	〃	〃
265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시 회계과 공무원이 행하던 입회제도를 폐지함	〃	〃	〃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266	충청남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사 (11. 16)	교육사회	○먹는 피임약 1인당 1개월분을 30원(200→230원) 인상함	12.24	12.27	원안
267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	○관계법령 개정으로 용어가 변경된 사항과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를 개정함 ○하수종말처리장과 기타 공동급수시설을 수수료 감면 대상에 추가함	〃	〃	〃
268	충청남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	○충청남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심사관지정, 관계전문가 위촉,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및 인과관계 규명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분쟁조정업무 수행으로 주민의 권익증진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	〃	〃	〃
269	충청남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	○제명을 충청남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로 함 ○청소년기본법령의 인용조항 및 용어를 상위법령에 적합토록 수정 ○지원대상을 청소년상담실운영비 및 수련활동비등 건전	〃	〃	〃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육성사업비에 추가 지원토록 함			
270	충청남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사 (11. 16)	기획경제	○충청남도직제규칙 개정으로 농림수산국장을 농수산국장으로 변경하는등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함	12.16	12.17	원안
271	충청남도운수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법령의 폐지·흡수등으로 인해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 관리법으로 함	〃	〃	〃
272	충청남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건설	○제명을 충청남도농어촌주택사업운용관리 조례로 함 ○농어촌주택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	〃
273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내무	○특별회계 설치조문 폐지 ○공유임야의 대부요율 체계를 산림법상의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개정함	〃	〃	〃
274	충청남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	기획경제	○협의회 운영실적이 전무하여 유명무실하고 특히 언론의 자유화와 개방화 추세에 부합되지 않아 폐지함	〃	〃	〃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275	충청남도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충청남도지사(11. 16)	기획경제	○지방양여금법에 의거 설치 운영되던 충청남도양여금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94.1. 1부터 일반회계로 통합함	12.16	12.17	원안
276	충청남도지방도로포장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	내무	○재정여건의 변동으로 지방채 발행이 취소되어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함	〃	〃	〃
277	충청남도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	〃	○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전무하고 충청남도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과 유사하므로 동조례를 폐지함	〃	〃	〃
278	충청남도에너지사용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	기획경제	○충청남도에너지 이용합리화법 관련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함	〃	〃	〃
279	충청남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	○지방공업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외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업입지개발지침」 「공업단지관리지침」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폐지함	〃	〃	〃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280	충청남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충청남도지사 (11. 16)	기획경제	○법률 및 특별조치법등에 농공단지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져 폐지함	12.16	12.17	원안
281	충청남도세계은행차관군도및지방도개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	건설	○세계은행(IBRD)차관 군도 및 지방도개발사업은 '89. 6.30 완료되었고 도급 시공업자에게 발행된 지방채도 89.10.27 전액 상환 완료되어 존치할 필요가 없음	〃	〃	〃
287	충청남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사 (11. 30)	내무	○불균일과세의 적용세율을 100분의 40에서 앞으로는 100분의 30으로 조정함	〃	〃	〃
289	충청남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 (12. 7)	교육사회	○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던 중학교학교군구 및 추첨방법에 관한 사항이 교육감이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시토록 동법령이 개정되어 이를 폐지함	12.24	12.27	〃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290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사 (12. 17)	내무	○'93.12.31까지로 되어 있는 설치시한을 94.12.31까지 1년간 연장함	12.24	12.27	원안
282	9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건	충청남도지사 (11. 16)	〃	○'94년도에 시행하는 도유재산 취득, 처분, 교환에 따른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함 〈취득재산〉 - 토지 : 7필지 20,870㎡ - 건물 : 6동 2,382.22㎡ 〈처분〉 - 토지 : 9필지 3,365.1㎡	12.16	12.17	〃
283	충청남도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소관재산의무상이관동의안	〃	농림수산	○충청남도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소관 재산인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29-1번지외 13필지내의 면적 58.36㎡를 일반회계 재산으로 무상이관함	〃	〃	〃
285	민방위국장임용개선건의안	내무위원회위원장	본회의 상정	○민방위국장은 일반직으로 비상대책과장은 군출신 장교로 임명하도록 개선해 줄것을 내무부, 총무처, 비상기획위원회에 건의함	11.30	12.1	〃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286	추곡수매량확대및수매가인상에대한건의안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본회의 상정	○물가상승률과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추곡수매량 확대와 수매가를 인상하여 줄 것을 건의함	11.30	12.1	원안

5. 第80回 定期會 道政 및 教育行政에 關한 質問·答辯要旨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갑준 (서산시)	• 우리 도는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심부로써 수도권에서 영남권과 호남권을 연결하는 교통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천혜적인 관광 자원도 어느 시·도에 못지 않게 가지고 있으며, 서해안을 이용한 항로 개설도 역시 많은 적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혜적인 여건이 있으면서도 우리 충청남도는 생산과 수출활동에 기본이 되는 도로, 철도, 항만, 댐, 발전소, 공업용수 등의 사회간접 시설이 과연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공업화 시책과 관광레져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지 도지사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건설부 발표에 의하면 생산을 위한 원료나 완제품의 수출이나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수송과정에서 1년간 체화비가 4조8,000억원으로 막대한 손실이 있다고 합니다.	도지사 이동우	• 현재 우리 도의 도로시설은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등 모두 4,200km에 달하며 지금까지 추진중이거나 계획된 도로 사업은 먼저 앞으로 우리 도 교통망의 주축을 형성하게 될 서해안 고속도로로서 당진에서 대천 서천~장항간 130km는 제2차 국토종합개발시행계획에 의거 '91년에 착공되어 2001년 완공목표 공사중에 있으며 제3차 국토건설 종합개발 계획에 대전-진주간 천안-논산간, 공주-서천간, 당진-대전간이 신설될 계획이고 당진 대산공단간 22km는 당진-대전간 신설계획에 포함해줄 것을 건설부에 건의하여 함께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공단, 항만, 배후도로와의 연계기능을 확충하여 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 기타 비법정도로등 597km를 국도로 조정, 승격 해줄 것을 요청한바 있어 현재 조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항만건설은 석문공단 2개 선좌, 아산공단 2개 선좌, 장항공단 36개 선좌로서 모두 40개 선좌를 국가공단 건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갑준 (서산시)	또한 전남 대불공업단지에도 도로, 항만, 공업용수, 전력공급 등으로 입주 업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도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우리 도의 사회간접 시설이며, 공업화 시책이 먼저 해결해야 될 수송에 필요한 도로와 항만시설과 공업용수 문제가 어떻게 계획 추진되고 있는지 대단위 공업단지에 연결되는 도로개설과 공업용수 확보 사항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동우	설과 연계하여 2001년 까지 개발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공업용수의 안면도 관광지 연결 도로와 상수도 계획에 있어서는 공업용수확보를 위하여 보령댐 건설사업소에서 용역발주한 보령댐 광역 상수도와 건설부에서 시행 또는 계획중인 아산호 대청댐 2단계, 금강계통 광역 상수도 사업등 모두 4개 사업이 추진 또는 계획중에 있습니다. 안면도 관광지와 관련된 진입도로 및 상수도 계획은 '93년 12월 초에 중앙진입로 2.3km와 해안도로 1.6km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고 연결 도로는 지방도 603호선에서 관광지내 진입도로 3개소가 있으며 관광지내 상수도는 보령댐 계통 광역 상수도를 사용할 계획이나 우선 해수욕객의 편의를 위해서 상수도 공급 이전에 지하감정을 철저히 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앞서 사회간접 시설중 도로의 확포장이 되어야 생산과 수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간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도내 도로의 확포장을		•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국도는 13개 노선, 1,100여km로서 4차선 확장사업은 '92년 까지 5.9%로써 전국 평균 12.2%에 비해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12개 노선 194km가 시행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갑준 (서산시)	'94년도까지 100% 목표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본의원이 볼때 요원한 듯하여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 도로 확포장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지방도의 경우 49개 노선에 총연장 1,117km중 75%인 835km만이 포장이 되었고, 국도는 13개 노선에 총연장 1,108km중 2차선 포장은 100% 거의 완료되었다지만 4차선은 전국의 12.2%에 비하여 우리 충청남도는 5%로써 전국의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음은 주무부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심스러운 일이 아닌가 합니다. 인근 충청북도의 경우 많은 국도가 4차선으로 확포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때 우리 충청남도는 도로행정 부재로까지 대두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국도 4차선 확장 계획과 비포장된 지방도에도 교통량이 증가됨에 따라 2차선으로써는	도지사 이동우	중에 있고 '94년에도 4개노선 73.3 km의 공사착공과 8개노선 140km의 실시 설계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어 현재 시행중인 12개 노선이 마무리되는 '96년에는 약 25%로 전국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도는 49개 노선에 1,100여km로서 '94년 까지 100% 포장을 목표로 '90년 지방 양여금법을 제정 추진하였으나 양여금 재원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여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다소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사업이 완료되면 포장율이 83%가 됩니다만, 그동안 교통안전 시설의 확충과 황산대교, 신진대교, 선인교등 대규모 교량건설에 따라 지방도 포장이 저조했으며, 앞으로도 안면 연육교, 제원대교, 미호교등 노후 위험교량 개량과 지방도 4차선 확포장 사업등이 지방도 포장과 연계 추진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94년 사업이 마무리되면 장대교량, 터널, 미개통 취약도로를 제외한 지방도의 포장사업이 일단 마무리될 전망입니다만, 앞으로 국도의 4차선 포장사업과 지방도로의 확포장사업이 조기에 이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갑준 (서산시)	통행이 어려운 곳은 있는지, 있다면 몇 개 노선이며 이를 4차선으로 확포장할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동우	가면서 의회와도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통량이 많아서 확장이 시급한 4개 노선은 천안~음봉과 천안~입장, 홍성~덕산, 당신~석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이중 2개 노선 즉 천안~입장, 홍성~덕산은 내년도에 확장공사를 착수하고 나머지 2개 노선도 연차적으로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대산항은 대한민국의 서해안에 중간 부분이고 충남의 서북단에 위치하여 서해바다로 돌출되어 중국과의 거리가 최근접지에다 연안의 수심이 40여m에 달하여 대형선박의 입·출항이 자유로워 30여만톤의 유조선이 자유로이 입·출항하는 천혜의 항구이며, 대단위 정유공장이 건설되어 '93년 10월말 현재 외항선 출입이 327척이고, 화물은 711만 5,000톤으로 군산항 207만 8,000톤 보다 3배를 능가하고 있는데도 군산지방 항만	기획관 송성헌	• 우리 도의 지방해운 항만청을 설치하는 문제는 그동안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촉구해 주셨고, 도에서도 서해안 개발을 촉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육성할 수 있는 지방 해운항만청의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데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금년 1월 관계부처에 이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건의에 대해서 해운항만청에서는 우리 도에 소재한 대산항등 무역항은 주로 유류등 특수화물을 취급하는 항만이고 아직 현재로서는 행정수요가 미흡한 실정이지만 현재 추진중인 아산항 개발등으로 '96년에 가서는 해운항만과 관련된 제반 여건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갑준 (서산시)	청의 산하 기관인 대산 출장소로 되어 있어 일부 부두, 컨테이너 설치가 되지 못하고 있음은 화물 발생의 해상 수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대산 출장소를 항만청으로 승격시키면서 그에 따른 고용증대는 물론 지방세수의 증대등 지역경제 발전을 기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중앙에 적극 건의, 대산 출장소가 하루속히 항만청으로 승격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송성헌	이 크게 변화될 것이 예상됨으로 그때 가서 충남지역에 지방해운 항만청 설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는 회신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촉구하신 바와같이 대산공단, 아산공단, 장·군국가공단등 대규모 공단과 연계된 항만수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지방항만청이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서중철 (홍성군)	•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충청남도 5개 시지역을 제외한 15개 군지역에 사는 도민은 1991년 말 현재 인구 146만 4,770명이던 것이 1992년말 현재는 143만 6,632명으로 1년 사이에 1.9%가 감소 하였으며, 그중 19세 이하 인구 46만 9,622명을 제외한 96만7,010명 중 50세 이상이 37만	도지사 이동우	• 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추세에 따라 영농의 기계화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기계화를 위한 기반은 열악하다는데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 보조와 도의 재정형편상 보다 많은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항상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91년도에 농어촌도로 정비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서중철 (홍성군)	3,861명으로 3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농어촌에 고령자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이 통계숫자로 증명되고 있고, 나머지 61.3%의 노동적령 인구도 거의 2,3차 산업에 종사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농어촌에는 대다수 50세 이상의 노인들이 지키고 있음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2년도에 도내 휴경농지가 580ha에 이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날로 황폐화되어 가는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심각하게 행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감소와 함께 노동인력의 부족현상을 타개하고 아직도 그 중요성에 대해 간과할 수 없는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유지를 위해서 농업의 기계화가 필연적이	도지사 이동우	법을 제정하고 '93년 부터 '97년까지 농어촌도로정비 5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도 4차선 확장과 지방도 군도 포장등 기반사업에 대한 투자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어 계획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농어촌도로정비 5개년계획을 말씀 드리면 농어촌도로의 총연장은 약5.900여km로서 '92년말 까지 1,497km가 포장되어 금년부터 5년간 1,475km에 지방 양여금과 군비 3,270여억원을 투자하여 포장율은 지금의 25.3%에서 50%이상으로 신장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은 주민들의 숙원도가 가장 높은 사업임을 감안하여 금년도 중기계획에 의한 사업이외에 도비 57억원을 지원해서 64.3km의 포장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92.4km를 포장하기 위해서 도비 8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심의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의원님께서 농공단지 조성이 농어민 소득향상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만, 농업생산에 의한 소득의 한계를 극복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서중철 (홍성군)	라고 믿는 바, 실제로 금년도 모이앙과 벼수확의 경우 영농 기계 이용율이 98% 수준을 나타내어 이를 실감케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완벽한 대안은 될수 없겠지만 우선 농어민소득 향상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 농공단지 유치등을 이제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그에 소요되는 재원을 농어촌 도로와 마을진입로, 마을간 도로 확·포장에 투자하여 기계화 영농기반을 빨리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살펴 주시고 지금 까지 시행해 오고 있는 경지정리를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업용수 확보에만 국한하지 말고 도내 경지정리가 가능한 8,828 ha의 밭과 경사가 완만한 임야까지도 대단위로 과감히 넓혀서 기계화 영농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일이 바로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도지사 이동우	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농어촌의 소득원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 까지는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장가동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주민의 고용증대화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더욱 내실있는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밭과 임야를 포함한 경지정리 확대문제에 있어서는 영농의 기계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논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경지정리 사업도 금년도 까지 전체 논면적의 48%밖에 이루지 못한 실정이고,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실정에서 이를 지형적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재정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서중철 (홍성군)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도민중 19.3% 36만2,000여명이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차 간이급수 시설의 수원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지리라 생각합니다. 축산폐수는 유기물 농도가 매우 높아서 하천이나 지하수에 흘러들게 되면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물속의 산소량을 현저히 줄어들게 함으로써 「죽은 물」을 만드는 무서운 오염원의 원천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1일 총 8,322톤의 축산폐수가 발생되고 있어 대다수 농가가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고 있지만 아직도 허가대상 농가와 신고대상 농가중 868농가가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그대로 방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가대상 시설의 처리수 허용치가 BOD 150ppm이고	도지사 이동우	• 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축산의 규모가 전업화 내지 기업화됨에 따라서 축산폐수가 수질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또하나의 농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내에도 1만여 축산농가가 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까지 축산 진흥기금과 농어촌 발전기금, 지방비등 264억원의 지원과 자가설치로 7,250호 농가가 정화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였으나 아직도 2,850여 농가가 설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촌의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96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서의원님께서 대단위 축산단지를 설치하는 문제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현재 우리 도에서 2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으로 그 결과를 분석해서 확대여부를 검토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서중철 (홍성군)	신고 대상시설의 처리수 허용기준치가 BOD 3,000ppm으로 허용기준치가 이런 정도 일진데 처리되지 않은 축산 폐수가 그대로 방류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심한 오염인가를 가히 짐작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화시설 미설치 농가 대부분이 영세한 농가로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처리시설을 설치할 능력이 없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심각한 상황를 타개하기 위하여 대단위 축산단지를 조성해서 한쪽으로 축산단지를 몰아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도지사께서는 도내 축산폐수가 100%정화될 수 있도록 도내 영세농가에 시설비용을 일부 부담해 주고 양축시설의 통·폐합 특별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동우	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환경정화를 위한 정부지원이 미흡할 경우에는 지방비 지원을 확대해서라도 전농가가 조기에 설치 완료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이미 설치된 정화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수질 오염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서중철 (홍성군)	• 그동안 공장, 기업의 근로자나 해외 건설업체의 근로자들이 수출의 역군으로서 때로는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까지도 각종 복지혜택을 많이 누려 왔습니다. 그러나 농어촌의 고향을 지킨 사람들은 극단적인 현실은 몰라도 고작 마을 회관에서 TV한대 설치해 놓고 대접받는 일 밖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농어민들에게 양질의 농산물 생산의욕이 있을리 없고, 고향을 지키고자 하는 애착심이 생길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자명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농어민도 다른 계층의 사람들과 똑같이 각종 복지혜택을 누리고 살아갈 때이며, 또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농어민에 대한 그동안의 소외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혜택을 줘야 하겠지만 여러가지 문제와 한계가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최선책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 서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농어민 복지회관 건립문제는 우리 도 80여만 농어민을 위한 매우 바람직한 시책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는 잘 아시다시피 농어민의 숫자로 보나 농경지 비율로 보나 농도임에는 틀림이 없고, 이와 관련한 구심적 역할과 상징이 될만한 회관이 없어서 아쉽게 생각해 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더우기 직능별로 볼때 근로자를 위한 복지회관이나 청소년을 위한 회관, 또는 수련원, 노인들을 위한 복지회관 등은 있으나 우리 농어민을 위한 회관이 아직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날로 어려워지는 농어촌문제를 하나하나 짚어 나가기 위해서는 한정된 재정형편상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문제점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립비 마련을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활용문제에 있어서는 본래 이 기금은 100억원을 조성한 뒤에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서중철 (홍성군)	이라고 생각하며, 우선 도차원에서 할 수 있는 우선사업으로 농어민 복지 회관을 건립하여 농어민들에게 수준 높은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농어민의 기술교육장 등 종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어민에게 다소나마 사기를 높여주고 농어촌 발전의 부가가치를 더 창출시켜 주는 방안등의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농어촌발전 기금등을 활용한다든지 도비를 직접 투자해도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이를 적극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어민 복지회관 문제는 '92년도에 20억원이라는 예산까지 세웠다가 삭감한 바 있습니다. 장소도 두군데 물색을 해서 한군데 선정을 해 줬는데도 집행부의 성의없는 그러	농어촌 개 발 국 장 송석상	일정액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등에 보조 또는 융자금을 지원해줄 목적을 가지고 조성중에 있습니다만 그 동안 조성기간이 짧아서 목표액의 34%에 지나지 않은 34억원만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1, 2년간은 지출보다는 적립을 해야 할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서중철 (홍성군)	한 무책임한 일로 결국은 무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거론함에 있어 집행부에서 너무나도 성의 없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냥 무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시우 (대천시)	• 보령댐건설사업에서는 보령댐건설 사업지역내 광업권 보상 대상의 광업권이 10개소가 있으나 그중 보상에 문제가 도출된 탄광중 미산탄광 등 사금광 2개소를 포함한 4개소의 광업권을 제외한 6개소의 광업권에 대해서 지난 '91년 11월 광업권 평가전문 국가공인 기관인 한자엔지니어링과 동우 엔지니어링 2개 기관에 감정평가 용역을 의뢰하여 '92년 6월 위 2개 기관으로 부터 평가결과 보고서를 접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측에서는 평가된 금액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뒤 광업권평가액을 결정하고 2개 기관	도지사 이동우	• 먼저 이의원님께서는 보령댐 건설사업 지역내 성우탄광에 대한 광업권 보상문제와 관련해서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여러가지 격려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성우탄광에 대한 감정평가 문제에 있어서는 1차 감정액은 약 3억4,000만원이었으나 '93년 9월에 실시한 재감정 평가액은 15억9,0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이 평가액이 증가된 이유를 확인한 결과 성우탄광측에서 개별용역에 의해서 추가광량이 있다는 평가결과를 감정평가시 제시해서 이 자료를 토대로 평가사측에서 상향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재감정 평가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시우 (대천시)	에서 제출한 평가액중 평가액을 6개소의 광업권자들에게 협의 요청한 결과 성우탄광 광업권자 대표 박유진을 제외한 남광탄광, 대창탄광, 동산탄광, 미산규석, 활석광의 광업자들은 협의요청한 평가액에 동의를 함으로써 5개소의 광업권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이미 지급하고 그에 따라 광업권말소 또는 감구처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후 보령댐건설사업소측에서는 1차 감정평가결과에 불응한바 있는 성우탄광광업권자에게 정당하게 평가가 되었음을 통보한 바 있으며, 계속 불응하고 재감정 평가를 요구해 옴에 따라 1차 평가한 향후 1년이 경과한 지난 '93년 5월 제3의 광업권 평가전문 국가공인 기관인 대성광업 기술조사소와 한신응용 지질조사소의 2개 기관에 재감평 평가용역을 의뢰하여 지난 10월 위 2개 기관으로부터 평가	도지사 이동우	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추가매장량 적용등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93년 11월 9일 재감정 평가서를 반려하고다시 평가하도록 지시하여 이 재감정 평가가 통보되는 대로 정밀하게 재검토해서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업체의 용역비 청구에 대해서도 평가서를 이미 반려한 상태로 그 지급을 보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시우 (대천시)	결과보고서를 접수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2차 재감정평가 결과 역시 국가공인기관인 광업권 전문평가 기관으로 하여금 1차에 평가한 2개 기관에 비해 도저히 납득키 어려운 평가결과가 나옴으로써 보령댐 건설사업에 따른 보상업무에 막대한 영향과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1차 평가액에 불응한 성우탄광의 경우 1차 평가결과 2개 기관의 평가액이 3억4,400여만원으로 평가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평가한 2개 기관의 평가액이 15억9,200여만원으로서 1차 평가액보다 무려 12억4,800여만원이 높게 평가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엄청나고 깜짝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보령댐건설사업소 측에서는 2차 재감정 평가한 2개의 기관에서 제출받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시우 (대천시)	은 평가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평가된 평가액 결정과 광업권자에게 협의 요청을 유보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본의원은 보령댐건설사업 인접지역의 보령탄전에서 다년간 광업을 자영해 온 경험으로 미루어 볼때 2차 재감정 평가를 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부정이 개입된 부당한 평가였다고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에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충청남도내 현재 등록된 광종별광업권 현황 및 채광인가 현황 그리고 조업 또는 휴면광구 현황에 대해서 알고져 합니다. 비단 충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광산업에 대한 제도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무분별하게 광업권이 등록된 후, 특히 채	도지사 이동우	• '93년 10월말 현재 우리 도내에는 1,168개의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으며, 광종별로는 금·은265개소, 고령토 174개소, 규석 137개소 장석 86개소, 석회석 77개소, 석탄 68개소, 기타 36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채광계획이 인가된 광산은 총 301개소이고 현재 가동중인 광물은 19.1%에 해당하는 223개이며 945개 광업권이 휴광중에 있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시우 (대천시)	광인가서를 받았다할지라도 장기간 동안 계속해서 개발 또는 조업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휴면광구가 매우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앞서 질문에서도 언급했듯이 보령댐건설에 따른 광업권 보상과도 관련된 사항으로서 추후 충남도내 일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시행하게 될 경우 장기간 계속 방치 하고 있는 휴면광업권으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거나 지장을 초래케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광업권 보상으로 소요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대상 광업권에 대해서는 양질의 자원을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과 조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당국에서 권장 독려해 나가야 될 것이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하고 있는 광업권에 대해서는 현재의 광업법이 안고 있는 잘못된 제도가 개	도지사 이동우	이같이 많은 휴면 광업권이 방치되어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종 공공 사업에 대한 보상문제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등에 제약요인이 발생되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고 '92년부터 지금까지 세차례에 걸쳐 상공자원부장관에게 휴면광업권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해서 278개 광업권이 취소된 바 있으며, 나머지 휴면광업권 정리를 위해서 광업권 설정요건 및 취소규정을 강화하도록 상공자원부 장관에게 광업법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쇄신 차원에서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 광업법 개정을 건의해서 '94년 상반기까지 광업법령을 개정키로 결정된 바 있어 앞으로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휴면광업권에 대한 취소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시우 (대천시)	정되지 않는 한 쉬운 일은 아니겠으나 충남도에서는 정부와 주무부처인 상공자원부에 건의하여 대상광업권을 직권 말소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사료되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게 될 공공 사업계획을 사전 정보를 입수하여 부도덕하게도 한탕주의를 노리는 자들이 사업이 추진될 인접지역에 사전 광업권을 등록하는 사례 또한 있을 것으로 미루어 보아 향후 광업권 실태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잘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 서해안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 사업이 충남도 일원에서도 그간 추진되었거나 앞으로도 계속 추진되리라고 믿습니다. 실례로 서산 A·B지구, 홍보지구, 장군 국가공단 사	농수산국 장 박종순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적정한 보상이 뒤따라야 하나 일부지역, 홍보지역 같은 예산은 사업비, 예산부족으로 사업착수 이전에 전액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개발사업으로 많은 어업권에 대해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시우 (대천시)	업을 시행하면서 어업권 보상문제가 쟁점이 되어 특히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한 어업권 피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하나 일부에서는 어업권보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업권만 받아 놓고 제대로 시설투자도 하지 않은 어업권에 대한 보상은 향후 면밀히 검토해 나가야 될 것이며 실지 시설투자를 위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주위의 많은 분들이 본의원에게 건의도 했고, 또 본의원도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도지사에게 감히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의원의 뜻에 대해서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본의원의 생각과 뜻을 함께 하고 계신다면	농수산국장 박종순	서 보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부실어업권에 대하여 과다 보상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시행기관에서는 피해조사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엄정하게 조사평가 보상이 되어야 하나, 부실어업권에 대한 피해액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사례가 있다면 조사과정에서 착오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절대 동감입니다. 부당한 보상으로 국고를 낭비한다거나 또는 부당한 보상으로 정당하게 보상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사업시행기관 및 피해조사 기관과 협조해서 어업권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평가 후에 보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평소 어업권 실태 조사를 철저히 하여 부실어업권을 정비하고 제도상에 문제가 있어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물론이고, 어업권 손실로 공공사업으로 인한 어민생업과 관련되는 손실보상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상기구 전담설치 문제등까지도 아울러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시우 (대천시)	국가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책을 정부당국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 장 박종순	법제도적인 문제를 위의 상부기관과 건의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원창 (아산군)	• 도금고는 1954년 1월 25일 부터 현재까지 제일은행과 거래하고 있는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지방화 시대에는 도금고를 지방은행에 또는 농협으로 바꾸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일은행에 계속 40년간 거래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협으로 금고를 바꿈으로써 200만 도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제일은행에 도 금고를 이용함으로써 지방은행이나 농협 보다 이점이나 이율의 차이가 있는지요? 또 일시 예탁이나 정기예금의 금리의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요? '91년도, '92년도, '93년도 도 금고 이용으로 이자수입	도지사 이동우	• 우리 도의 금고은행인 제일은행은 1954년 1월 25일 도와 금고계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총거래 실적 약 1조원중 60%에 해당하는 금액만 도금고인 제일은행과 거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0%는 충청은행과 농협을 통해 거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군 금고는 모두 지방은행인 충청은행 또는 농협이 맡고 있으며, 연간 거래실정은 약 1조5,000억원이 됩니다. 지난 10년간 은행별 자금 차입내역을 보면 제일은행에서는 수해복구비 등으로 280억원을 일시 차입하였고, 지방은행으로 부터는 특별회계 사업비로 68억원을 차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에 있어서도 제일은행에서 1,586억원을 융자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도금고 자금의 예탁관리 면에 있어서는 현행 은행금리는 지난번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원창 (아산군)	은 얼마인지요? 지난번 신문보도에 의하면 특혜대출이라고 크게 대서특필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하루속히 제일은행에서 농협으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농협은 각 면단위마다 있어 200만 도민에게 고루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사는 이 점을 감안하여 '94년도부터 도금고를 반드시 바꾸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도의원 대부분과 200만 도민이 원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사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도지사 이동우	금리 자유화 조치에 따라 은행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이자수입으로 연간 20억원 이상으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 사업단의 금고는 특별회계의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과 별도로 금고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방은행인 충청은행과 계약을 한 것입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충청은행으로 부터 차입 또는 융자받은 금액은 앞서 말씀드린 68억원의 차입금 이외에 3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만 '93년도에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각 금융기관에 공채인수 문제를 협의했던 결과 충청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에서는 융자의사가 없다는 회신을 받아 충청은행으로 부터 차입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제일은행에서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포함하여 모두 50억원을 우리 도 중소기업에 융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도금고를 변경하는 문제는 금융운영의 편의성 문제, 금융대출 능력과 지역경제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원창 (아산군)	• 보령댐건설은 1989년 12월 충청남도와 한전간 협약체제로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건설목적은 2000년대의 급속한 물수요 대비와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서북부 지역의 생활·공업용수는 물론이고 지역개발 촉진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루 공급량은 24만8,000톤이고, 그중 생활용수는 17만 4,000톤, 공업용수는 7만4,000톤입니다. 생활용수는 2개시 11개읍 3개면 대천 서산시, 서천, 장항, 광천, 홍성, 예산, 삽교, 당진, 합덕, 대산, 태안, 안면, 웅천면, 갈산면, 해미면이며 송수관으로는 267.8 km입니다. '91년부터 '93년도까지 도비 부담액은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투자한 금액을 환수할 용의는 없는지요? 사업기간이 '90년 8월부터 '95년말까지 인데 그 기간	도지사 이동우	• 보령댐 건설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부담한 도비는 모두 25억5,700만원으로 이중 금년도에 부담할 19억원은 사업시행 이관주체 추진과 동시에 집행을 유보해 왔었으며, 지난 10월 30일 이미 환수조치 하였고 나머지 6억5,700만원은 이미 지출된 예산으로서 추가로 환수하거나 앞으로 우리도가 부담해야 될 정수장건설 사업비와 상계 처리하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편입지역내 보상물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총 보상지정액 992억원중 협의요청 통보액 747억원의 80%에 해당하는 660억원을 협의 보상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연말까지 잔여분에 대한 협의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절차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간접 및 잔여보상과 상수도 관로보상 등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의원님께서 강조해 주신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금년 12월중에 보상금액 3,000만원 이하 수령자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선정 심의회를 개최해서 3등급으로 분류한후 400만원부터 1,000만원 한도내에서 이주에 필요한 자활대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원창 (아산군)	에 준공이 가능한지요? 현재 보상은 건물, 토지, 가옥 기타에 대하여 몇%나 되었는지요? 수몰민에게 최대한 보상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주민 376세대 중 132세대에 대한 이주 정착금 미수령 문제는 해결되었습니까? 보령댐은 이제 도에서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여 도의 재정형편상 천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관됨에 따라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급수지역이 축소된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축소된다면 그 지역은 어디입니까? 그 지역은 대청댐 물이나 팔당댐 물로 급수가 되는지요? 도 사업에서 국가사업으로 이관이 되는데 확대가 아니고 오히려 축소가 된다니 이것은 200만 도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도지사 이동우	있습니다. 이주 대상자에 대한 이주정착금 미수령 문제는 이주대상자 387세대중 124세대가 이주정착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으나 수몰지역내에 있는 미산면사무소의 이전대상지가 확정되면 대부분의 주민이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자유 이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별도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문제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지난번 '94년도 도정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 규모나 시설과 내용면에 있어서 도에서 추진하는 것과 다름없는 자세로 적극 협조하여 서북부 지역의 물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령댐 건설사업소 폐지에 따른 공무원의 처우문제는 댐건설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이관 추진되더라도 수몰지역과 광역 상수도 관로통과 지역 보상과 이주대책등을 위하여 발족하게 될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에 흡수하고 잔여인원에 대해서는 열악한 근무조건하에서 열심히 노력한 점을 감안하여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특별히 배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원창 (아산군)	축소가 사실이라면 강력히 정부에 시정토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두번째로 보령댐건설사업소에 근무하는 도 공무원의 신분상의 처우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지에서 한직 공무원으로 몇년간 보상문제로 고생한 이들을 인사교류에 특별한 배려를 해줄 용의는 없는지요? 특별한 대우를 해 줌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앙양이 진작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 도내 고속전철 역사와 보상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내 고속전철 역사는 아산군 배방면 장재리에 아산전철 역사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외에 역사가 생기는 곳이 있는지요? 도내 고속전철로 인하여 편입된 토지면적과 전, 답, 임야, 기타 보상가는 정당한	지 역 경 제 국 장 노규래	• 현재 진행중인 경부고속전철 건설사업은 저희 도내에서는 아산군 둔포면에서 연기군 전동면간 39km가 사업계획으로 공사중에 있는데 여기에 편입되는 토지 면적은 총 47만여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은 우리도 관내의 유일한 전철역사인 아산군 배방면 장재리 지역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약 7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원창 (아산군)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아산군 일대에 편입된 토지소유자는 현싯가에서 60%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고속전철로 인하여 편입된 땅 이외에 잔여분 땅, 다시 말하면 자투리 땅은 토지 소요자들이 국가에서 매입하여야 당연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서 있는지요? 정부에 건의하여 정당한 보상과 쓸모없는 땅도 매입하게끔 할 용의는 없는지요? 아산군 배방면 장재리에 역사가 신설되는데 명칭을 아산역사나 충무역사로 하여야 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지 역 경 제 국 장 노규래	보상가격은 해당 시·군단위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공시지가, 현 싯가 등을 감안한 감정기관의 평가를 거쳐 결정된 금액인데 물론 이 금액이 주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정도는 미치니 못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싯가에 가까운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편입용지의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공공용지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매입 보상을 하고 있고, 그 이외로 잔여토지 매수를 희망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최대한 매입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정선흥 (청양군)	• 정부는 전국의 기초, 광역의회의 절대적인 반대결의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휘발유 등 유류에 부과되던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	도지사 이동우	• 유류관련 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 단체가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서 관계 요로에 재검토 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 사항이기도 합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정선홍 (청양군)	환함에 따라 우리 도의 경우 '94년도에 3,000억원에 이르는 지방 교부세가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내 16만 7,000여명에 대한 노인의 교통비 63억5,600만원, 6급 이하 국가직 공무원 313명에 대한 인건비 45억8,200만원 등의 총 110억원정도의 막대한 금액을 전액 지방비로 부담토록 지시됨에 따라 '93년도와 비교하여 '94년도에는 약 410억원 정도의 국비재원이 감액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재정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됨으로서 도자체의 시책은 엄두도 못내는 형편임을 예상할 수 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벌여놓은 각종 대규모의 현안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도 없고 재원부족으로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사께서는 '94년도에 8,698억원이라는 방대한 예	도지사 이동우	니다만 국가차원에서 사회간접 자본시설의 확충을 위해 금년도 정기국회에 관련법률의 개정을 상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세 전환으로 인한 내국세 규모의 감소로 우리 도의 경우는 약 71억원, 시평균 7억원, 군평균 15억원등 약 300억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지방양여금의 재원이 주세의 세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인상 조정하여 감액되는 지방교부세 300억원을 지방양여금으로 보조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지원하던 노인교통비와 6급이하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도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약 110억원 정도의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러한 국가 부담의 지방이전에 따른 재원대책으로 현행 한갑당 360원인 담배소비세를 460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우리 도의 경우 금년보다 약 205억원의 세입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양여금 보존액과 지방세 세입증대 금액은 약 505억원으로써 정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감액, 또는 지방비로 전이된 410억원 정도의 재원보충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정선흥 (청양군)	산을 편성하시면서 이러한 면을 충분히 고려 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재정자립도가 38% 정도의 도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도는 타지에 비해서 현저하게 재정 자립도가 낮습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떠 맡기는 재정수요를 감당키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획기적인 자주재원 확충방안이 마련되지 아니하는 한 지역개발 사업과 도민의 복지수준 향상은 타 시·도에 비하여 더욱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94년도 도재정 수입에 대한 전망과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동우	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4년도 도 재정수입 문제는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신규 사업의 증가와 자연증가율을 감안할때 다소 신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부동산 경기의 침체등으로 신장이 둔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성패와 지역발전의 관건은 사실상 자주재정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력을 확충하는 문제는 우리 도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자주재정력을 확충하는 방안으로는 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공업화 추진등 세원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조세에 마찰을 최소화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세제의 개편 노력과 전공직자의 지방재정에 대한 인식과 발상의 전환,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전문화를 통한 세무행정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지난 '89년 대전시가 직할시로 분리됨에 따라 충청	내무국장 이종현	• 대전시에 인계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89년 1월 1일 대전직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정선흥 (청양군)	남도가 대전시에 사무와 행정재산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잘못 인계된 대전시 동구 대별동 364-2번지 현대전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 3,229평의 싯가 약 30억원 상당의 재산으로 엄연히 충청남도 소유로 되어 있음에도 인계재산 목록에 포함하여 인계한 후 뒤 늦게 잘못된 사실을 인지하고 수차례에 걸쳐 이를 환원토록 대전시와 협의한 바 있으나 대전시에서 이에 불응하므로써 도에서 내무부에 재산분쟁 조정신청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내무부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충청남도에 이 재산을 환원토록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전직할시가 이에 불응하고 있어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한술 더 떠서 대전시에서는 충청남도 소유로 되어 있는 대덕구 오정동 674번지외 14필지의	내 무 국 장 이종현	할시 분리 당시 재산인수인계 과정에서 대전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재산을 지방자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대전시에 위치한 행정재산이라 하여 착오로 인계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대전시에 환원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이에 불응하기 때문에 부득이 '93년 8월 26일 내무부에 재산 분쟁 조정 신청을 한 바, 현재 심의중에 있으므로 별도 결정이 나서 통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도매시장등 앞으로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대전직할시의 업무와 관련된 행정재산이라 하여 대전시에서 소유를 주장하고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위생처리장 부지 4,010평에 대해서는 내무부의 운전면허시험장 부지에 대한 조정 결정 통보결과를 봐 가면서 별도 처리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정선흥 (청양군)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를 대전시 소유라고 맞주장하고 나서서 이를 대전시에 인계토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지사께서는 엄연한 도유재산을 대전시에 인계하게 된 경위와 대전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에 대한 소유권 다툼을 어떻게 마무리 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체육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민정서 함양과 자긍심을 살리는데 같은 입장이시라 믿으면서 교육감께서는 충청남도의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커다란 획을 그어주실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학교체육에서 담당하고 있는 전국소년 체전과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출전하는 선수의 관리에 대하여 강화훈련과 지도교사의 운영문	교육감 백승탁	• 학교 체육발전을 위하여 체육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으로 운동하며 공부하는 기풍을 조성하고 학생 과외자율활동의 생활화와 체육대회의 효율적 운영과 체육특기자의 합리적 지도관리 등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종목별 연계육성 정착화로 학교 체육진흥개선을 위한 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진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소년체전과 전국체전 대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89년 대전직할시 분리에 따라 우리 도내 국민학교 10학급 이하가 75%, 중학교는 10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정선홍 (청양군)	제 그리고 훈련의 소요경비 대책등에 대한 교육감의 획기적인 대책강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도의 학교교육에 대한 진흥대책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다면 선수훈련 문제, 지도교사의 적재적소 배치문제, 강화훈련등에 필요한 소요예산 상황 등을 가능하다면 '93년도와 '94년도를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백승탁	학급 이하가 50%, 고등학교는 15학급 이하가 33%의 영세한 학교 실정으로 선수, 지도자, 시설등 70%이상이 손실된 상황에서 충남체육 발전과 200만 도민의 자긍심을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 100억여원을 투자하여 충남 체육고등학교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각급 학교 훈련장과 합숙소 건축에 '92년, '93년에 10억여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지도교사의 배치는 인사관리 원칙에 의거 교육장과 학교자의 요청으로 특기교사는 전보유예하거나 특별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수 육성을 위한 소요경비를 말씀 드리면 '94년도의 충남 소년체전 예산은 금년 4,600만원 보다 1,000만원을 증액하여 5,600만원을, 전국 소년체전의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의 2억9,500만원 보다 9,200만원을 증액한 3억8,700만원을, 그리고 전국 체전의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1억6,000만원 보다 1억6,200만원을 더 증액한 3억2,200만원을 그리고 우리 도의 특색사업인 충남 학생체전의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3,900만원 보다 1,100만원을 증액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교육감 백승탁	에서도 초·중·고 연계 육성과 계획적인 진흥책으로 전국 소년체전에서 중위권을 그동안 확보하였으며 금년도 전국 체전에서는 고등학교부는 10위에서 9위로 한자리수에 올라감으로써 충남 종합성적 7위에 머물게 하는 견인적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걸재 (천안군)	• 지금 도내 모든 하천은 오염이 되어서 몸살을 앓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으며 대기 또한 시·군에서 장비도 없고 기술조차 미흡하여 단속을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태입니다. 어떠한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조차 모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 총 투자된 예산은 얼마이며 공해방지를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주요시책이 무엇인지 또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이 있으면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분뇨종말처리장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 이동우	• 우리 도의 금년도 공해방지를 위한 주요시책과 투자내용은 먼저 수질 및 폐기물 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는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8개지역에 50억원을 투자하여 위생매립장 설치 및 하수종말처리장등 5개소는 총 20개 사업에 377억원을 투자하여 일부 사업은 완료상태이며 나머지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의 환경개선 계획과 연계하여 '96년까지 10개 사업에 4,678억원을 투자하여 수질을 보호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 및 소음진동 분야에 있어서는 그 동안 대기의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천안시 대기 오염물 측정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서산군에 대기오염 자동측정망과 태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걸재 (천안군)	우리도의 15개 시·군 분뇨 종말처리장의 검사결과를 보면 아홉군데가 부적합 판결이 나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기준치가 초과한 곳이 부여군, 온양시, 천안군, 금산군, 홍성군, 예산군, 청양군, 대천시, 태안군등 10개 시·군입니다. 다음으로 기준이내에 있는 시·군은 공주시, 천안시, 연기군, 당진군, 서천군입니다. 이를 대비해서 더 정확하게 가장 심각한 그런 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초과액이 가장 심화된 곳이 부여군으로써 부존율이 제일 높습니다. 7번을 실험한 결과 5회가 기준이 초과됐습니다. 다음은 BOD가 174.7mg으로서 기준치의 4.4배를 초과했고 부여군이 SS부유물질에서 재개 400mg으로서 기준치의 5.7배를 초과했습니다. 다음 예산군은 대장균이	도지사 이동우	안군의 장거리 이동감시 측정소를 설치중에 있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배출업소의 연료를 천연가스 및 저유황료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면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환경 정화수 식재, 녹지공간 확보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연료수급계획과 연계하여 천안시를 중심으로 LNG 의무지역을 확대하는등 맑은 공기보존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전역을 생활소음규제 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천안시 충무로를 교통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관리 중이나 앞으로 계속 필요한 지역을 확대 지정해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해 배출업소의 지도단속에 있어서는 배출업소 3,238개소에 대해서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을 꾸준히 실시해서 금년도에 연 8,615개소를 점검하였고 그중 666개소를 적발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수질의 경우는 단속 공무원이 폐수를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함으로써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대기오염의 경우 단속 공무원이 직접 시료를 채취할 수 없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과 장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걸재 (천안군)	11,000개로서 기준치 3,000의 3.7배를 초과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내역을 보면 9군데가 부적합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의뢰한 서류를 보면 한군데도 부적합한데가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취소한 우리가 똥물은 먹고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기준치 이상을 초과하는 것은 예산 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93년도 총 투자 예산을 말씀해 주시고 정상 가동률은 그대로 하고 있는지 또한 '94년도의 계획은, 이로 인해서 인근주민의 불편과 불만 또한 장비로 기능인력부재, 직원의 처우개선이 또한 다를 것입니다. 또한 약품처리의 미흡등이 문제되고 있는바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에	도지사 이동우	비의 부족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자동차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매연측정기는 전 시·군에 구입 완료하였습니다만, 앞으로 별도의 실험실이 없어도 현지 측정이 가능한 첨단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여 단속시 오염도 검사를 병행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공해방지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걸재 (천안군)	대해서 지사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오롱 골프장은 우정힐스라는 이름으로 오픈을 해서 지금 한창 나리들이 와서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당시 코오롱 골프장이 들어선다고 할때 지역 주민들은 상수원 지역에 맹독성 농약을 뿌린다 해서 적극적인 반대을 하자 당시의 심대평 도지사와 유호근 기획관리실장이 와서 300여 주민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지역이 발전되고, 20억원이라는 개발환수금을 받아서 지역발전에 보탬을 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건너 갔습니다. 기탁금은 어떻게 했느냐, '90년도 8월 17일날 10억원, 동년 8월 30일 3억원, 동년 11월 30일 7억원, '93년 6월 30일 10억원 기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	도지사 이동우	• 우정힐스 골프장의 경우 지난 8월 6일 천안 군수가 9억7,200만원을 '94년 2월 6일 납기로 부과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기일 미도래로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에 앞서서 '89년부터 도내에 입주하는 대기업에 대해서 용도 변경에 의한 토지가격 상승분의 50% 범위안에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지역발전 협력금 제도가 운영되어 온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오롱 골프장의 경우 당시 도민체전을 앞두고 공주 공설운동장에 우레탄 시설을 대행해 준 바 있고 현금으로는 20억원을 기여키로 약속한 바 있으며, 그 중 10억원이 '91년에 납부되어 일단 도의 체육진흥기금으로 적립된 후 군 사용분 50%인 5억원은 '92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해당지역 개발비로 배정 하였습니다. '93년에 기여된 10억원에 대해서도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걸재 (천안군)	역에 있는 상수원 지역에 맹독성 농약이나 뿌리고 오·폐수나 흘려 내 보내면서 털끝만큼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은 반발이 일어나고 여러가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발이익환수금에 관한 법 제4조 2항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시행령 제3조 1항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의 50/100, 이것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에 속하는 지역으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50%의 예산이 어디로 갔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법에 명시도 되어 있고, 약속한 사항이면 당연히 돌려줘야 할 것이지, 어떻게 해서 도백이 오고 기획관리실장이 와서 약속한 사항을 그렇게 저질렀는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안될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도지사 이동우	일단 체육진흥기금과 농어촌 진흥기금으로 각각 5억원씩 적립하였습니다만, 군 사용분인 50%인 5억원은 내년도에 천안군에 배정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걸재 (천안군)	행위입니다. 도민을 우습게 보는 행위입니다. 공직에 있다고 해서, 조금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쇠스랑 든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런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 본래 민자당 정치연수원은 천안군 병천면 병천리 331-6번지에 위치하여 부지는 12만6,000위에 건물 11동 1만5,000평 규모로 집계되어 '92년 4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달도 못되어 5%공정에서 중단이 되고 1년이 넘도록 미관을 저해 시키는 등 여러가지 악조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단되고 착공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첫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매입 당시 지역이 발	건 설 도 시 국 장 이기형	• 천안군 병천면에 건립하고 있는 민자당 정치 연수원은 지난 '92년 3월 19일자로 도로 부터 4만2,000평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을 받았고, 같은해 4월 25일 천안군수로 부터 건물 12동 연건평 1만4,700평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서 '92년 5월 1일에 착공하여 '93년 4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건립주체측에서 당초 연수원 건립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92년 7월 중순경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건립주체측에 탐문한 결과 당초 계획을 일부 조정하여 내년 2, 3월에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사중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걸재 (천안군)	전 된다고 하여 지역주민을 모아놓고 감언이설을 다 해서 토지를 매입하는가 하면 지역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온 전답을 팔고 더구나 묘지 수백개를 이장하는등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방치하여 미관을 해치고 농경지에 대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자당측에서는 아무런 대꾸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대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면으로 보면 칼자루를 쥔 집권 여당의 횡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을 해서 다시 짓든지, 짓지 않으면 다시 환원을 시키든지 타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에 도지사는 우리 도민이 이러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 설 도 시 국 장 이기형	단으로 인한 민원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주체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공 균 (논산군)	• 금번 중소기업 육성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요구 자료와 본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전라남도가 1,855개의 제조업체인데 540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경상남도가 4,700개 업체에 940억원, 경상북도가 3,700개 업체인데 830억원, 강원도가 1,166개 업체인데 430억원, 이웃 대전시가 951개 업체인데 244억원 우리 충청남도는 제조업체가 2,755개 업체에 겨우 100억원을 책정해 놓고도 80억1,900만원만을 지원했습니다. 이 자금은 도산이 늘어나는 중소기업을 살려보자는 정부의 비장한 굳은 의지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과감하게 지원해준 인근 시·도 지원 내력입니다. 금번 충청남도 중소기업, 그것도 제조업체만 2,755개 업체나 되는 우리 도에서는 인근에서 우리 도보다 1/3밖에 되지 않는 951개 업체를 가진 대전이 120억원, 1,300개 업	도지사 이동우	•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경제는 양적, 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만, 우리중소기업은 자금, 기술, 인력, 시장 그리고 경쟁력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제를 실시함에 따라 지방 경제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게 되었고 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무역의 자율화로 인한 시장개방으로 수출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졌던 경공업 부분제품들도 경쟁력을 상실하고 내수시장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내수시장 역시 중국, 동남아 등지의 저가제품들에게 차츰 시장을 빼앗기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구나 우리 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재정 자립도가 낮고 산업구조가 대부분 1차 산업에 편중되어 공업화 추진이 늦어짐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가능한 다품종 소량 생산의 고 부가가치 상품과 기술집약적인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구조개선사업이 우선 해야 된다는 판단으로 금년 6월 지방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구조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공 균 (논산군)	체가 있는 인근 충북이 244억원, 1,855개 업체가 있는 전라남도가 540억, 경남이 940억원, 경상북도가 830억원, 강원도가 1,166업체인데도 430억원, 특별히 제조업체가 많은 우리 도에서 100억원의 자금을 조성 해 놓고도 80억1,900만원만 형식적으로 눈가림을 했으며 그나마 지원방법도 우리 충청남도와 같은 경상남도는 2억원에 2년씩, 전라남도는 1억에 2년씩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제조업체가 2,755개 업체중 101개 업체만 엄선해서 5,000만원에 1년 그것도 몇십개 업체만 골라서 1억원에 1년 또 잘보인 업체는 6개월 연장을 해주는 선심을 써가면서 공업육성 도라고 말만 요란하게 떠드는 동안 10월말 현재 도내 부도율이 1.18%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규 부도율이 0.15에 비해서 1.18%라는 것은 전국 부도율의 7~8배의 높은	도지사 이동우	자금으로 도비 120억원을 출연하고 중앙재원 414억원과 금융기관 재원 173억원 등을 합쳐서 총 707억원의 자금으로 구조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91년도말 우리 도의 중소기업체수 2,027개 업체와 전국 10만 2,874개 업체를 비교할 때 우리 도는 중소기업체수가 2.8%인데 비해서 전국 지원규모의 5.4%를 차지하므로서 구조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타 도에 비해서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의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융자금액이 적고 단기성 자금으로 지원효과가 적다고 판단되어 업체당 융자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였고 융자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있도록 금년 6월 30일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10월말 현재 운전자금 지원 실적은 공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101개 업체에 80억원이 지원되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151개 업체의 6개월 연장분을 포함한 '93년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공 균 (논산군)	부도율이 우리 충청남도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정책의 영향을 받지못한 아픔이라는 것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제자신이 도정에 관여하는 도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덕분에 작년, 금년 우리 도내에 휴·폐업 업체가 100여개 업체에 달하며 평생을 몸담아온 회사와 직장과 일터를 잃은 수천명의 종업원과 수만명의 그의 가족들의 절규의 소리는 듣지 못한채 이대로 방치만 해 놓는다면 늘어나는 중소기업의 도산을, 전국 제일의 부도율은 어떻게 처방해야 할 것인지 지사님의 확실하고도 명백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도지사 이동우	도 실제 지원된 것은 151개 업체에 102억원의 운전자금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융실명제와 경기부진등으로 기업이 상환기간을 연장 신청하는 경우 모두 1회에 한해 6개월 까지 연장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업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가능한한 완화하여 기업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특히 운전자금에 대해서 '94년 추가적으로 증액해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규모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第28節 第81回 臨時會

Ⅰ. 槪 況

1. 開會背景

○ 제8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조례안 심의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위하여 94년 1월 20일 집회공고를 실시하고 94년 1월 28일 14:00에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회기 : '94. 1. 28 ~ 2. 2 (6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4. 1. 28(금) 14 : 00	본 회 의 (제 1 차)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 2. 제8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3. '94충청남도주요업무계획보고 4. '94충청남도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5. 휴회의 건	
'94. 1. 31(월) 14 : 00	기획경제위 (1차)	1. '94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기획관리실 소관 나. 지역경제국 소관	
11 : 00	내 무 위 (1차)	1.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4. 1. 31(월) 14 : 00	내 무 위 (1차)	4. 충청남도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94주요업무계획보고 가. 내무국 소관 나. 민방위국 소관	
11 : 00	교 사 위 (1차)	1. '94주요업무계획보고 가. 보사환경국 소관 나. 가정복지국 소관	
14 : 00	농림수산위 (1차)	1. '94주요업무계획보고 가. 농어촌개발국 소관 ※ UR대책별도보고 2. 임업협동조합중앙회충청남도지회업무현황설명	
14 : 00	건 설 위 (1차)	1. '94주요업무계획보고 가. 보령댐건설사업소 나. 공영개발사업단	
'94. 2. 1(화) 11 : 00	농림수산위 (2차)	1. '94주요업무계획보고 가. 농수산국 소관 나. 농촌진흥원 소관 2.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충청남도지회업무현황설명 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충청남도지회업무현황설명	
11 : 00	건 설 위 (2차)	1. 충청남도건설종합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94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건설도시국 소관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4. 2. 2(수) 14 : 00	본 회 의 (제2차)	1. 충청남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무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중·고등학교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10. 충청남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충청남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충청남도고등학교선발고사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조례안폐지조례안 13. 충청남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4. 제2차도건설종합계획확정공고결과보고 15. 중국하북성과의자매결연추진계획보고	
'94. 1. 20(금) 11 : 00	도청이전 특 위 (4차)	1. 충청남도도청이전에 대한 주민여론 조사결과보고(한국갤럽조사연구소) 2. 현지주민과 간담회계획 - 유보	비 회기중
'94. 1. 21(토) 11 : 00	운 영 위	1. 제81회 임시회 회기일정 협의 2. 충청남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3. '94의정운영계획보고(의회사무처소관)	〃
'94. 1. 27(목) 14 : 00	조 례 정 비 특위(3차)	1. 충청남도조례정비검토 결과보고 청취	〃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수	안 건	비 고
계	19		
조 례 안	14	1.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기 타	5	1. 제8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94충청남도주요업무계획보고 3. '94충청남도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4. 제2차도건설종합계획확정공고결과보고 5. 중국하북성과의 자매결연추진계획보고	

4. 條例案 處理內譯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292	충무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교육감 (1.15)	교육 사회	○설치목적의 내용을 변경하고 학생수련에 필요한 예·체능교사를 5인 이내에서 둘수 있도록 함	2.2	2.3	원안
293	충청남도중·고등학교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장학생의 요건중 "기능우수자" 를 "재능 및 기능우수자" 로 하고 "수산교육진흥" 을 "실업교육진흥" 으로 함	〃	〃	〃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294	충청남도고등학교선발고사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1. 15)	교육사회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8 제2항에 의거 도조례로 시행하여 오던 고등학교 선발고사 추첨배정입학제도 적용지역의 학군설정에 관한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본조례를 폐지함	2. 2	2. 3	원안
295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	○ "관사의 사용대상 공무원을 간부직 공무원" 에서 "관사의 사용대상 공무원을 소속공무원" 으로 함	〃	〃	〃
296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	〃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조례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72조" 를 "지방재정법 제116조" 로 함	〃	〃	〃
297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사(1. 20)	내무	○시험수당의 상향조정 • 문제선정심의수당을 30,000원 → 35,000원 • 감시관수당을 9,000원 → 10,000원	〃	〃	〃
298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	○ "적출물처리업자지정 및 지정의 취소" 등 11건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	〃	〃	〃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 "적출물 처리업자 지정 및 지정의 취소" 등 5건을 계룡출장소장에게 위임 ○6급이하 별정직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 등 3건을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함			
299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사 (1.20)	내무	○과세물건의 명칭을 "중기"에서 "건설기계"로 함	2.2	2.3	원안
300	충청남도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과세면제대상을 "중기"에서 "건설기계"로 함	〃	〃	〃
301	충청남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	건설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장을 도지사에서 부지사로 변경 ○당연직 위원수를 간부 5인 이내로 조정 ○당해 소관 심의시에는 위원 정수에 관계없이 위원이 되도록 함 ○재적위원 2/3로 개회하던 것을 과반수로 함	〃	〃	수정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302	충청권소방학교설치·운영행정협의회규약안	충청남도 지사 (1.20)	내무	○전국을 5개권역으로 지방소방학교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내무부의 계획에 의거 충청남도소방학교에 대전직할시·충청북도의 비간부직 소방공무원을 위탁교육시킬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2	2.3	보류
303	충청남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교육감 (1.20)	교육 사회	○설치목적의 문구정정 ○하부조직을 "지도부, 전산부, 자료부" 에서 "지도연수부, 전시운영부, 자료개발부" 로 함	〃	〃	원안
304	충청남도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하부조직 "운영부" 를 "연수부" 로 함 ○교수부장 및 연수부장 주관연수과정에 관한 사항 신설 ○총무부에 생활관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	〃	〃
305	충청남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장 (1.21)	(본회의 상정)	○수당을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	〃

第29節 第82回 臨時會

Ⅰ. 概 況

1. 開會背景

○ 제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출신 金顯根의원외 23인 의원으로부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각종 조례 개정안 처리를 위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4년 3월 3일 집회공고를 실시하고 94년 3월 11일 14:00에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회기 : '94. 3. 11 ~ 3. 18 (8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4. 3. 11(금) 14 : 00	본 회 의 (제 1 차)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 2. 제8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3. 도지사 · 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15 : 30	기획경제위 (1차)	1. 충청남도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2.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15 : 30	내 무 위 (1차)	1. 충청남도소방학교 설치운영 행정협의회 규약안 2. 청원 심사	
'94. 3. 14(월)	내 무 위	○ 현장시찰 - 소도읍 가꾸기 현장(금산읍) - 청원현장(아산군 둔포면사무소)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4. 3. 14(월)	교육사회위	○ 현장시찰 - 충남과학고등학교(공주 반포) - 부여 청소년수련원(부여 동남) - 충남임해수련원(대천 신흑동)	
	농림수산위	○ 현장시찰 - 대전 관상농업시험장(충남농촌진흥원) - 농민교육원(유성) - 내수면개발시험장(논산) - 농산물원종장 논산분장(논산)	
'94. 3. 15(화)	교육사회위	○ 현장시찰 - 병원선(충남 501호) - 원산도 보건진료소(보령 오천)	
	농림수산위	○ 현장시찰 - 홍성군 농촌지도소(홍성) - 청양 구기자시험장(청양)	
'94. 3. 16(수) 13 : 30	내 무 위 (2차)	1. 충청남도행정정보공개조례안	
14 : 00	본 회 의 (제2차)	1. 도정에관한질문 2. 휴회의 건	
'94. 3. 18(금) 10 : 30	농림수산위 (1차)	1. 설날연휴 정전사고 상황설명 - 한국전력공사 충남지사	
14 : 00	본 회 의 (제3차)	1.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4. 3. 18(금) 14 : 00	본 회 의 (제3차)	3.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도 · 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중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남도한미친선협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남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충청남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11.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2. 충청남도농어촌도로포장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 13. 충청남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충청남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5. 충청남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중개정조례안 16. 충청남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7. 충청남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8. 충청남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폐지조례안 19. 충청남도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20.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21.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존치건의안 22. 충청권소방학교설치운영행정협의회규약안 23.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 비회기중 활동상황

일 시	위 원 회	내 용	비 고
'94. 2. 17 ~ 2. 28	백제권종합 개발지원특위	1. 백제권개발에 따른 자료수집차 경주보문 관광단지 신라촌, 신라문화유적지 시찰	
'94. 3. 2 11 : 00	운영위원회	1. 제82회 임시회 회기일정 협의 2. 의회사무실 확장방안 보고 청취	
'94. 3. 3 14 : 00	조례정비특위	1.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안외 17건 본회의 상정하기로 의결	
'94. 3. 7 ~ 3. 9	서해안개발 사업지원특위	1. 서해안개발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 (농어촌개발국,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 2. 개발사업 현장시찰 (홍보지구 농업 종합개발사업등 주요 서해안개발 10개 사업현장)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수	안 건	비 고
계	26		
조 례 안	20	1.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건 의 안	1	1.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존치건의안	
동의승인안	1	1. 충청권소방학교설치, 운영행정협의회 규약안	
기 타	4	1. 제8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도지사,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 3. 도정에 관한 질문 4.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4. 條例案 處理內譯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306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3. 3)	(본회의 상정)	○당연직위원에 소방본부장과 공영개발사업단장 추가 ○분과위원회 조항 삭제	3. 18	3. 21	원안
307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	〃	○일비를 수당으로 자구정정	〃	〃	〃
308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직제 개편으로 위원을 지역경제과장에서 사회진흥과장으로 대체 ○불합리한 조항 삭제 및 신설	〃	〃	〃
309	충청남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폐지조례안	〃	〃	○존치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함	〃	〃	〃
310	충청남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	○「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괄적 개념인 「그밖에」 로 수정	〃	〃	〃
311	충청남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	○조례내용중 부적합한 자구 및 중복된 내용을 조정 정리하여 조례의 내용을 보다 간단, 명료하게 함	〃	〃	〃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312	충청남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3.3)	본회의상정	○조례내용중 부적합한 자구 및 중복된 내용을 조정 정리하여 조례의 내용을 보다 간단, 명료하게 함	3.18	3.21	원안
313	충청남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	〃	○제17조 및 제18조를 제39조와 제40조로 개정	〃	〃	〃
314	충청남도한미친선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	〃	○위원의 구성에 있어 도정자문위원회를 삭제함	〃	〃	〃
315	충청남도농어촌도로포장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	〃	〃	○조례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7조를 지방재정법 제8조로 개정	〃	〃	〃
316	충청남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제3조제3항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함 ○제7조제1항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함	〃	〃	〃
317	충청남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	〃	○간사를 문화예술과장에서 문화체육과장으로 함	〃	〃	〃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318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3. 3)	본회의상정	○간사를 문화예술과장에서 문화체육과장으로 함	3. 18	3. 21	원안
319	충청남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	○문구·자구 정정	〃	〃	〃
320	충청남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	○간사를 환경관리과장으로 서기를 환경기획계장으로 함	〃	〃	〃
321	충청남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중개정조례안	〃	〃	○농업진흥공사를 농어촌진흥공사로 농지개량연합회를 농지개량조합연합회로 명칭변경	〃	〃	〃
322	충청남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	○위원구성에 있어 보건환경국장을 보사환경국장으로 농림수산국장을 농수산국장으로 함	〃	〃	〃
323	충청남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	○도직제의 개편에 맞게 부적절한 자구 및 중복된 내용을 수정함	〃	〃	〃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325	충청남도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충청남도지사(3.7)	본회의상정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자치단체국제교류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여 국제교류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3.18	3.21	원안
326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	〃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	〃
327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존치건의안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3.16)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설치된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는 행정조직쇄신차원에서 폐지키로 검토하여 서해안개발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서해안개발사업의 효율적추진을 위하여 동위원회를 계속 존치하여 줄 것을 국무총리, 경제기획원, 총무처, 건설부에 건의함	〃	〃	건의
302	충청남도소방학교설치·운영행정협의회규약안	충청남도지사(1.20)	내무(본회의상정)	○협의회는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인 대전직할시, 충청남도, 충청북도로 구성하고 위원은 관계 시·도지사로함	〃	〃	원안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둠 ○협의회는 연2회의 정기회와 필요시 임시회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함			

5. 第82回 臨時會 道政 및 敎育行政에 關한 質問 · 答辯要旨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전영준 (아산군)	• 200만 도민의 손과 발이 되는 도산하 1만5,806명의 공직자 모두에게 직결되는 신상관계인 인사문제중 전보, 충원, 승진, 교육차출, 해외연수의 정당한 절차와 기회부여도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 인사권은 지사의 고유권한인 것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 했거늘 해당 공직자는 나름대로 기대와 희망속에 마땅히 경력과 능력에 따라 순리에 의한 공명성이 보장된 당사자의 권한이라고 주장하는 공직사회의 정론을 누구도 부인못할 것 입니다. 표면화 된 조짐은 없었으나 인사불만의 후유증이 있었는지, 있다면 어떤 조치를 했는지, 혹이나 취임후 실정을 잘 파악하지 못한 환경속에 도인사위원회와 참모진의 실수였는지, 차제에 신문보도에 무반응이었던 도지사님의 답변 기회도 되	도지사 박태권	•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공무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고 지적해 주신 대로 인사가 조직의 능률과 사기, 행정의 발전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데 대하여 의원님과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공무원 각자의 능력과 개성, 조직에 대한 공헌도 등을 기준으로 적절한 대우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인사운영을 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만 인사 기회가 협소하여 모든 공무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앞으로 능력과 경력, 전문성 등을 위주로 하면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전영준 (아산군)	는 만큼 앞으로 열린사회 투명한 인사와 만인이 공감이 가는 공정 인사로의 더욱 발전적이고 획기적인 인사 방침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산만 개발의 서해안 시대를 맞아 충남일원에 걸쳐 정부 공약사업이 박지사님 부임후 '94년 들어 투자계획이 활기를 띠는 듯 적극적으로 앞당겨지는 듯한 감을 주는데 반해 충남도의 여건조성과 뒷받침이 이에 뒤따르지 못하는 현실인데 200만 도민의 속시원한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아산만 개발에 있어 선좌대부분이 경기도에 편중되어 있어 본 의원의 심정은 아산만 개발 이름만 빌려준 기분입니다. 특히 1년에 두 번씩 명절만 되면 교통전쟁을 치르는 인력수송과 앞으로 충남도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경기도, 인천, 통일을 대비해	도지사 박태권	• 아산만개발과 관련한 선좌와 여객선부두 설치계획에 있어서는 아산만의 지역여건상 경기도 지역은 수심이 깊고 항만개발에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본계획이 입안된 것이었습니다만 최근 해운항만청에서는 이미 계획된 아산항 기본계획을 보완하기 위한 용역을 5월 중에 발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난 2월 25일 국제관광 전용부두를 설치해 줄 것을 중앙 관련기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고속철도와 아산만개발등과 관련하여 온양-아산 중심부를 관통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계하는 천안-아산-당진 고속도로를 2001년 이후 장기적으로 개설한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고, 제2차 도 건설종합 계획에서도 주요 간선도로인 천안-온양간 4차선에서 6차선으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전영준 (아산군)	서 아산만에 여객선 선착장을 확대하고 해상로를 더 적극 개발해서 경관이 수려한 태안반도, 안면도 해상공원의 해로가 전라북도, 제주도에 연결되도록 개척할 계획은 없는지, 더 발전적으로 신문에 보도된 서산군의 군공항이 일부 민항도 검토된다면 고속철도역 건설, 아산만 개발등 당진IC로 부터 아산군 장재리 고속철도역까지 내륙으로 직통하는 4차선 도로개설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 명실상부 「한국 방문의 해 '94년」을 원년으로 찬란한 백제문화가 발원지가 되는 부여, 공주를 중심으로 관광벨트를 형성키 위하여 남으로 청양·논산, 북으로 아산·온양·천안으로 육·해·공 모두 어울려 돌아가는 종합적인 충남건설을 계획할 용의는 없는지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속철도 아산	도지사 박태권	로, 그리고 온양-둔포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도로의 확장계획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고속철도건설을 주변 개발여건과 교통 수요변화 추세에 맞추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끝으로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관광벨트를 개발하는 문제는 도에서는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해서 지난해에 충청남도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 전역을 지역특성에 따라 서해안권과 백제문화권, 성역휴양권 등 3개 권역으로 설정해서 2001년까지 체계적인 관광개발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륙권의 남북관광벨트개발은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천안, 온양, 아산, 예산의 성역 휴양권과 청양, 공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전영준 (아산군)	군 장재리 역세권 개발사업에 지방 행정청인 천안시, 아산군 그리고 지역주민의 참여 및 의견수렴이 반영되도록 충남도의 각별한 의지를 촉구하며 2000년대를 중국대륙 교역 중심지로 충남을 가꾸고 번영시키는데 도정과 교육행정을 챙기는 쪽과 도정을 살피는 쪽 모두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협력할 것을 다짐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도지사 박태권	주, 부여, 논산의 백제문화권에 있는 관광자원을 연계 개발하여 벨트화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개발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다양한 관광코스의 개발과 홍보를 통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조길연 (부여군)	• 우리는 지난해 부여, 공주, 계룡등이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으로 고시됨으로 해서 매우 큰 기대를 가지고 하루빨리 사업이 진척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로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자세한 경위와 앞으로의 전망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백제권개발지원		•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지난해 6월 15일 백제문화권을 특정지역으로 지정 고시한데 이어 '94년도 소요예산 사업비를 확보하여 문화유적정비사업을 비롯한 백제큰길 건설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어 부분적으론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종합개발계획내용중 백제 역사촌 조성을 비롯하여 공주 금강교 가설문제 등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국고지원 범위를 놓고 중앙 관계부처와 우리 도간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현재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를 이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조길연 (부여군)	위원회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중앙에 구성된다는 소식을 접한 바 이는 중앙의 관심이 매우 크고 사업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생각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충청남도를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과거 신라문화권개발사업에서 보았듯이 역시 지방적인 색채를 강하게 지니고 있는 사업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앙에 지원위원회가 구성됐다 할지라도 지방의 노력이 사업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앙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가시적인 힘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 도의 연결고리를 만들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전략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	도지사 박태권	해 설득시키고자 노력을 펴오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쟁점사항이 타결되는 대로 조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중앙의 백제권개발지원위원회에 상정시켜 늦어도 금년 상반기 중에는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경제기획원과도 예산문제가 매우 점진적으로 긍정적 방향으로 협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부, 문화체육부에서는 이미 확고한 동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그 동안 지난 3월 3일 중앙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기획원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등 중앙의 8개 부처 장관과 충청남도, 전라북도 두 도지사가 위원으로 구성된 백제권 지원 위원회 구성과 때를 맞춰서 지난 7일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백제권 개발 추진단을 발족시켜 중앙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조의원님께서 관심사항이신 지역 위원회의 구성도 가까운 시일내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계, 학계, 문화재 전문위원 등 향토역사학자등을 망라한 백제권개발추진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조길연 (부여군)	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도의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백제권개발추진단을 구성해서 중앙 관련부처와 협의등을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너무 소극적인 대처 방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지방적 색채가 짙을 뿐더러 충남의 대표적인 상징 사업임을 감안할 때 우리 도는 각계각층이 참여해서 총체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중앙지원을 촉구하면서 나름대로 지방적 노력을 극대화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 숨쉬는 관광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묻혀진 백제의 숨결을 찾아내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도지사 박태권	자문단을 구성하여 백제문화유적에 대한 조사발굴 정비 복원사업은 물론 백제역사촌 조성사업에 참여시켜 명실상부한 백제역사를 재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백제역사촌 조성사업 등이 본격 추진될 경우 가칭 백제권개발 사무소 등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해 나갈 복안입니다. 백제문화의 실체를 규명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동안에도 꾸준히 발굴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지난 12월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금동향로를 발굴해 내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더불어 올해에도 문화체육부에서 별도로 올해 현재 1억3,000만원의 발굴지원비를 도에 보내 왔습니다. 이에 도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발굴사업은 앞으로도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가장 본질적 요소라고 생각하고 백제문화의 실체를 찾아내는데 행정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조길연 (부여군)	• 어떤 조직이든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 자체의 구성이 상황에 적합하게 짜여지고 상황변화에 신축성있게 재구성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정조직을 잘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멀리 볼 필요도 없이 '60년대 근대화가 시작된 시기부터만 따져 보더라도 그때와 지금의 산업구조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달라져 있고, 국내외적으로 사회적 상황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도 국내는 물론이요 세계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안되는 국제화 시대에 깊숙히 진입하고 있음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의 행정조직을 좀더 효율적으로 그 기능이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과	도지사 박태권	• 기본적으로 행정조직은 시대적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운영되어야 한다는 조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행정여건은 국제화, 개방화, 능률성이 강조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어느때 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현재 종합적인 조직 진단을 실시 중에 있으며, 보조기관 즉 사업소 등의 조직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나치게 세분되어 있거나 중복된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UR이나 GR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과 주민의 복지향상, 재난예방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하는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간소하면서도 효율적인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조길연 (부여군)	상황에 맞게 대폭적으로 개편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아산군)	• 도청이전과 관련된 도민의 폭넓은 여론을 정밀히 측정 수렴하여 이를 공론화 시키고자 국내에서 가장 신뢰성있고 권위가 있는 「한국 갤럽조사 연구소」에 의뢰하여 '93년 11월 19일부터 12월 14일까지 25일간에 거쳐 도내 20세이상 남녀 2,000명을 표본으로 개별 면답식에 의거 가장 과학적이고 정밀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도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있겠지만 등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도민의 71%라는 절대다수가 도청이전을 찬성하고 있으며, 찬성자의 66.2%가 도청이전은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이고 또한 도청이전이 필요한 이유로는 충청남도의 균형발전을 위하고 도청을	도지사 박태권	•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도지사로서 부임하기 전부터 지역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있었습니다만, 김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충청남도의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도청 이용의 편리성 등을 감안하여 도청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또한 도청이전 문제는 도민 화합과 지역안정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빠른 시기에 추진되야 한다는데에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청이전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선 우리 도의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국토계획, 또 다른 도의 추진사례와 우리 도의 여건 등을 종합 비교분석하여 도청이전 입지선정 및 이전계획을 입안토록 하고 입지선정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검토된 대안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한 후 도청이전 및 도시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 도청이전 후보지안이 확정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남호 (아산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도청은 도 관내에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이라는 견해가 81.5%나 되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도민전체의 이익과 개인 편리 및 당위성 때문에 도정을 빨리 이전해야 한다는 도민의 여론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94년 당초 예산심의에 입지 기준설정 및 후보지 선정용역비 예산을 의회에서 증액까지 하면서 3억원을 계상한 바 있음에도 1/4분기가 다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도 발주는커녕 사업추진 내용조차도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은 소요예산을 증액심의한 의회를 경시하고 있는 처사가 아닌지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입지선정 용역을 조속히 발주하여 연내에 최적 입지가 선정되도	도지사 박태권	될 경우 도의회의 의결 등 법적절차를 이행한 후 도청이전 및 도시개발사업을 착수하는 순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확보된 용역비 3억원의 집행문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난 1월 18일과 1월 26일에는 관계공무원을 경상북도와 전라남도에 각각 보내어 그곳의 용역시행자 결정방법, 용역계약 체결 절차 등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집행방법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타 도의 집행사례를 참고하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여 관련 용역을 가까운 시일내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도청이전문제에 대한 도의 입장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은 모든 문제를 도청이전 특위와 협의해 가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입지선정 기준 및 적지판단 용역을 서둘러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남호 (아산군)	록 용역비의 조기집행과 이전추진계획단의 조속한 가동을 도지사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정치권에서는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직할시의 폐지 또는 도와 통폐합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지사께서는 직할시의 통폐합문제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며 차제에 대전직할시의 충청남도 편입 문제를 중앙정부 또는 정치권에 강력히 건의하여 채택되도록 정치역량을 발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도지사 박태권	•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최근 직할시와 도를 통합하는 문제와 일부 시·군을 통폐합하는 문제를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행정 구역은 역사적 전통성과 지리적, 사회적인 여건을 비롯하여 장기적인 지역의 발전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며 특히 당해 지역 주민들의 의사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구역 개편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지니고 있는 특성을 감안할 때 어느 한쪽의 논리나 필요성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충분한 공감대의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장기일 (천안군)	• 국제화, 세계화의 무한 경쟁 시대를 맞아서 우리 도민의 의식개혁 운동의 구체적 실천방안은 세워졌는가, 그것들은 어떻게 실천하는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전체 도민의 근검절약 정신을 고취시킬 실천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국제사회 변화에 대한 국제적 감각을 고취시킬 방안은 없는가, 또한 굳건한 국가관과 도민 의식을 앙양시키려면 국가나 자기 지방에 대한 투철한 역사의식을 가짐이 절대 필요한데 우리 도민들의 역사의식을 주체로한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그 한 예로서 역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한가지 예로서 현존하는 도내 각지역의 산성들을 보호하며 철저한 고증에 의한 정확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도민들의 건강을 겸한 역사의 산교육장으	도지사 박태권	• 공직사회의 의식 개혁에 있어서는 저역시 장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바와같이 행정 환경이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따라 우리 공직자의 자세도 보수적, 소극적인 입장에서 진취적이고 적극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사고로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도 공직자가 먼저 변화와 개혁의 실천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아래 행정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의식개혁 교육과 기업체 위탁 경영기법 교육, 해외연수 확대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의 의식과 행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실효성있는 의식과 행태의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어민 복지회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후보지를 물색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현재 지금까지 물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장기일 (천안군)	로 활용될 수 있도록 등산로를 개척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농어민복지회관 건립의 조기 추진을 촉구하면서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을 대략적으로 밝혀 주시고 앞당겨 추진하기를 모든 의원님들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농어민복지회관이 왜 건립되어야 하는 필요성은 굳이 이 자리에서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미 도지사께서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도지사 박태권	색한 3개 후보지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립후의 운영관리 방안과 도내 농어민의 복지증진이라는 당초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등을 폭넓게 검토하면서 후보지를 조속히 확정하여 농어민을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명실상부한 종합 농어민복지회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경지정리의 새로운 단위면적 확대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성이 야기될 수 있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해결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차제에 아울러 경지정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도지사의 뜻을 물어 보고자 합니다.	농어촌 개 발 국 장 임규환	• 먼저 경지정리 사업은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블럭당 3,000평 이상의 대규모로 시행함이 절실해서 시범적으로 금년까지 여건이 좋은 4개 지구 680㏊를 완료 또는 시행중에 있으며 앞으로 가능한 지구는 대규모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단위 경지정리 사업시 소유자별 경계를 양뚝에 말목으로 표시해서 소유권 문제로 인한 분쟁이 발생치 않도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장기일 (천안군)	이 경지정리 사업문제는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룰적에도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시킨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또 해당 시·군 등에서 각기 분산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한곳으로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의지는 없는지를 아울러 묻고 싶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임규환	록 조치를 하고 있으며 경지정리 결과 300평 미만은 금전 정산을 해 주고 300평 이상은 환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경지정리 사업의 대구획화로 인하여 거름주기, 농약살포등 영농관리에 불편한 점은 있겠으나 경작자의 공동작업 또는 위탁 영농하는 방법등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물음을 주신 경지정리 사업 시행 주체는 농촌 근대화 촉진법에 의해서 대단위 농업조합개발사업 구역내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수행을 하고 농지개량 조합구역은 해당 농지개량 조합장이 그리고 농조구역 외에는 시장·군수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개량조합구역과 시장·군수 사업구역은 당해 조합장과 시장·군수의 협의로 시행 주체를 변경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은 농기계 지원센타 설치 운영에 관한 도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원센터는 일반적으로 농가에 보급되는 기종이 아닌 것으로서 농가에서 꼭 필	농수산국장 박종순	• 먼저 우리 도의 농기계공급 현황은 '93년말 현재 29종의 총 48만 1,000대가 공급됐습니다. 따라서 농가당 평균으로 보면 2.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도단위 경우에는 경운기, 이앙기, 수확기등 95%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장기일 (천안군)	요한 것이지만 그 사용기간이 짧고 값이 비싸서 개별 농가에서 구입하지 못하는 장비들로써 각 시·군의 농업특성에 따라서 선택하도록 하여 그 기계의 관리 및 운영을 농촌지도소에 맡겨서 지역나름대로의 특수농업 활성화와 농민의 편익증진 및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본 의원이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계산해 본 결과 1개 시·군에 약 3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면 농가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줄수 있고, 또한 소득증대를 상당히 늘려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를 전체 시·군을 일시에 실시하기가 곤란하다면 시범적으로 몇 군데 시·군을 선정하여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원이나, 본 의원이 작성한 것을 참조하시고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박종순	이상의 기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작업과정은 아직도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작년부터 정부에서 의욕적인 시책으로 농기계 반값 공급으로 '97년까지 매년 2만대 내지 3만대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가 농기계를 자치단체가 구입해서 농기계 지원센타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내에는 시·군 농촌지도소, 농민교육원등에 트랙타, 이앙기, 콤바인등 약 511대를 확보해서 농민교육은 물론이고 농번기에 인근 지역에 영농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장기일 (천안군)	• 현재 각 부락마다 산재하여 사육되고 있는 대·중·소의 가축들로 인한 농어촌의 환경오염은 심각할 정도인데 이것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촌공업단지처럼 각 읍·면별로 적정한 지역에다 현재와 장래의 양축농가를 파악 감안하여 집단적으로 그 시설을 갖추고 양축하도록 유도하고 점진적으로 법제화 하여서 실시한다면 국제경쟁력을 높이며 양축농가의 소득향상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되고 아울러 이것은 환경보호를 실시하면서 농어촌의 쾌적한 삶을 위한 환경개선에 가장 큰 비중을 갖고 기여되리라 여겨지며, 도내 전역의 전면 실시가 어려울 것이므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시범지역을 설정하여 실시한다면 보다 효과적이라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듣고자 합니다.	농수산국 장 박종순	• 축산산업과 관련해서 장의원님께서 가축사육 시설의 산재로 농어촌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걱정하시면서 현대시설을 갖춘 집단화된 양축시설을 도입하는등 축산 단지를 점차 확대 조성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축산업은 농가소득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환경오염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오늘날 참으로 당연히 해야 할 시책입니다. 물론 도시화의 확대로 이전이 불가피한 양축 시설을 단지화 해서 축산분뇨를 공동 처리하고 또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사육, 생산, 출하 등 여러가지 공동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축산단지 조성은 도가 '9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92년도에 1개 단지를 했습니다. 논산 광석에 1개 단지이고 '93년도에 논산 연무, 당진 석문등 3개 지역에 양돈 대단지를 육성해서 96억원을 투입해서 지금 운영 또는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도 수립해서 3월말까지 축산단지 조성 희망신청을 받아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장기일 (천안군)		농수산국장 박종순	가지고 중앙의 사업승인을 받은 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 지역농업개발센터 조기 확대추진 용의를 묻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이나 추후 계획에 관한 것은 농촌진흥원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리라 믿으며, 지도소로 하여금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개발센터를 설립하여 연구, 시험, 지도를 계속하면서 선진 농업으로의 유도와 그 시기를 앞당기고 지속시키고자 하는 이 계획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현재까지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도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도지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 저희들이 새로운 첨단기술을 직접 지도기관에서 가서 보고, 배워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자는 것이 지역농업개발센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서천과 홍성군 농촌지도소에는 시설을 그런대로 정확히 갖춰 놨습니다. 이 시설을 갖추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또 각 도에서 많이 보러 옵니다. 어제도 농림수산위원님께서 홍성군 지도소에 개발센터를 보시고 가셨습니다마는 지금 16개 중에서 2개 시설이 완성이 됐고 주로 서천군에서는 유리온실이라든가 또는 종합 검정실에서 21가지에 대한 새로운 기술, 장비를 갖춰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의 경우는 가축진료 진단소나 또는 조직 배양실, 여성회관등 14개 항목에 대한 시설을 완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지도소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지사님과 군수님께서 역점을 두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장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원창 (아산군)	• 1978년 10월 5일 자연보호헌장이 선포되었고, 이제 15년이 경과되었습니다마는, 자연의 파괴는 날이 갈수록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자연보호헌장을 실천하는데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운동이 국민운동으로 전개되고 지속적인 계도 단속을 하여 자연을 훼손하는 자와 쓰레기 투기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조치가 수반되어야 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우리나라의 '90년 현재 국토면적이 9만9,274㎢ 인데 그 중 산지의 면적은 65.2%이고, 농경지가 21.4%로써 자연환경의 혜택을 받는 산림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조트개발의 붐이 일면서 골프장 건설, 스키장 건설로 자연이 파괴되고 야생동식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서식환경이 파괴되어 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도지사 박태권	• 자연보호를 위한 민간기구 창설에 대해서는 지난 1977년 10월 5일 자연보호 중앙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지방단위까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민간단체 이기는 하나 자연보호 지도위원 20개대 630명과 어린이 봉사대 42개대 1,400명, 노인봉사대 26개대 804명 등이 조직되어 지역단위 기관 단체들과 유기적으로 자연보호 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교육과 자연학습원을 통한 교육 확대와 그리고 계도 활동의 강화를 통한 성실한 실천력을 기르고 이를 기초로 한 자연보호 국민운동의 조직적인 확산에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에 있어서는 근복적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국민 모두가 " 자연은 곧 생명의 원천" 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생활화 될 때 깨끗한 환경이 보존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도 쓰레기와 공장폐수, 생활하수등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 하도록 지도하고 처리시설을 확장해 나가는 한편 환경을 파괴하거나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원창 (아산군)	멸종되고 있습니다. 자연이 변모되고 파괴됨으로써 '93년도에 국회에 상정된 수질대기환경보존법 개정안이 하루속히 국회에 통과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 개정안에 총량규제 조항이 있어 폐수, 하수처리장에 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과 농도데이타를 컴퓨터로 한데 모아 한곳에서 자동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누가 어디서 얼마만큼 오물을 버렸는지 알 수 있고, 강의 자정능력에 맞게 오염물질을 내 보내도록 총량을 규제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으니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또 자연환경에 물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건강으로 국민의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200만 도민의 식수인 대청호 상류에 영동 물한계곡	도지사 박태권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하는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도에서도 금번 봄철을 맞이해서 범도민 농토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대청호 상류의 옥천휴게소 건립문제는 대전지방환경청과 공동으로 금강 수계에 미치는 영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에 건의하는 등 필요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대청호 수질 개선을 위한 질소, 인산 제거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대청호 내에 있는 23개소의 양식장은 허가기간이 만료될 경우 기본적으로 재허가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대청호로 유입된 질소와 인산 제거를 위해 조류제거선 1척을 운영중이나 금년 하반기에는 1척을 추가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23기의 수중폭기시설을 설치하여 가동중에 있어 대청호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제거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원창 (아산군)	조성사업과 옥천휴게소 건설로 인하여 대청호뿐만 아니라 금강 상류까지 수질오염이 크게 악화될 전망입니다. 이 사업은 108만평의 부지에 골프장 24홀을 비롯하여 스키장, 콘도미니엄등 대규모 위락시설이 설치되게 되어 물한계곡 일대의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요, 수질오염이 되는데 지사는 200만 도민을 위하여 물한계곡 건설과 옥천휴게소 건설을 정부에 건의하여 사업을 취소하게끔 할 용의는 없는지요? 대청호에 축산폐수, 산업체의 오염물질, 생활폐수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대청호 광역상수도가 2단계 설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조속히 공사를 착수하게끔 할 용의는 없는지요?		
	• 국제경쟁력 시대에 급격히 예상되는 수입 농산물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우리	도지사 박태권	• 지적해 주신 쌀수입 개방문제는 UR협상 내용중 정부가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부분이었습니다마는 우리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원창 (아산군)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UR대응책으로 어떠한 농산물을 주도하고 특수작목은 무엇입니까? 정부는 과감하게 농어민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현재 농어민 후계자 육성자금이 1,500만원으로 연리 5%, 5년거치 5년상환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그 자금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육성자금을 최하 5,000만원 이상, 연 2%,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지원해 주어야만 이농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현재 도내 농어민 후계자가 총 몇 명이며, 이농한 후계자는 몇명입니까?	도지사 박태권	와 같은 입장을 취해오던 다른 국가들이 관세화 원칙에 동참하기로 입장을 선회함으로써 불가피하게 개방하게 된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농정의 신뢰회복과 농어촌의 활력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UR대응을 위하여 중점 육성되어야 할 농산물은 비교적 경쟁력이 있는 작목으로 분석된 사과, 배, 단감, 버섯, 신선채소 및 양계, 양돈이며 특히 각 지역별로 특화되어 있는 토마토, 딸기, 구기자, 화훼류 등을 성장 유망 작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융자금의 확대와 더불어 상환조건과 이자율의 조정문제는 이미 중앙에 건의했으며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는 지난해 까지 총 8,043명이 우리 도에서 선정되었으나 이 중 타직종 전업 150명, 타지역 이주 170명 기타 243명등 563명이 이농 하였습니다. UR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사업으로써 는 농축어업의 인력 양성과 영농의 집단화를 비롯한 유통체계의 개선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원창 (아산군)	왜 이농하였는지 그 이유를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민 스스로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고 수입농산물 안사기 운동을 전개해야 하겠습니다. 도의 UR대책 농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 행정구역이란 일정한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개 특별시, 5개 직할시, 9도의 15개 광역자치단체와 68개 시, 136개 군, 56자치구에 260개 기초자치단체, 그 아래 행정기관으로서 18구 178개읍, 1,257개면, 2,233동의 행정구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맞게 행정조직의 기능 재조정과 행정 서비스의 합리적 개선, 그리고 주민편의 도모 차원에서 중소도시 통폐합	도지사 박태권	및 해외시장 개척, 품종개발 보급 확대 등으로 정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다음은 행정구역 개편문제로 이의원님께서 행정구역은 생활권을 중심으로 개편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도내 시·군의 통·폐합 문제와 동일 생활권에 속하는 일부 지역의 편익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행정구역 개편문제는 지난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김남호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도내 5개 시와 인접한 군의 통·폐합 문제는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전적으로 주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정부의 기본 방침으로 하여 이를 위한 지역별 공청회 개최등 세부일정을 마련중에 있습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원창 (아산군)	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시·군 통합 예상지구는 아산군·온양시·서산시·서산군·대천시·보령군·공주시, 공주군 4개 지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94년 2월 18일 국회의원 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행정구역 개편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에 관하여 토론회에 참석하여 느낀 점은 여야가 공히 인구 20만명이 아니고 군에 속해 있던 읍이 인구 5만 이상이 되어 시가된 지역은 통합대상으로 정하여 충남은 4개 지역으로 통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천안시, 천안군 포함해서 5개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여당에서 백남치 의원, 야당에 박상천의원, 조창현 교수가 20만 미만으로 하자고 해서 사실 거기	도지사 박태권	니다. 또한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생활권이 같은 지역을 불합리하게 구획한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자치단체간의 의견조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원창 (아산군)	에서는 20만으로 대두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신문에는 천안시가 포함되었습니다. 시·군 통합대상 지역을 3월 20일까지 1차 도지사가 선정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는 5개 시지역이 다 포함되는 것인지요? 통합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각종 기부금이 불법 부당으로 징수되었고 그 돈의 일부가 기관장 판공비, 경조비 등으로 유용된 사실은 공직기강이 해이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도내에서도 금강외 20개 업체에서 1억1,070만원을 천안시에서도 9,270만5,000원을 거두어 유용했다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 되었는데, 이외에 도내 시·군에는 없는지요?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자세	도지사 박태권	• 불우이웃돕기 성금 접수와 집행은 1976년 5월 18일 제정된 새충남 상조은행 설치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성금의 접수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각 언론사 도의 실·국장등 26명으로 구성된 새충남 상조은행 이사회에서 결정된 모금 방침에 따라 자발적인 기탁을 받아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순수 기탁된 불우이웃돕기 성금액은 '92년도에는 2억4,900만원이었고 '93년도에는 2억9,800만원이 기탁되어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각종 성금운영 상황에 대해서 내무부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원창 (아산군)	한 답변을 바랍니다. '94년도 적십자 회원모집 및 회비 모금계획서를 보면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되어 일반회원은 1,000원 이상 3만원 미만이고 특별회원은 3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금기간은 '94년 1월 25일부터 '94년 3월 5일까지 40일간 정산기간이 '93년 3월 5일부터 3월 14일까지 9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산군 모금계획을 보면 일반회계 3,311만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2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남의 배정액은 총 얼마이며, 시·군별 배정액은 얼마인지요? 현재 모금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94년도와 비교할 때 얼마나 증가되었는지요. 적십자 회비도 성금과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내야 되는데 준 강제성은 없는지요?	도지사 박태권	만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91년부터 '92년 사이에 방위협의회 위원등으로부터 도에 기탁한 군·경 위문금 1억1,070만원, 금강회사외 19개 업체와 '91년도 천안시에 기탁한 체육성금 9,275만원, 대우외 120개 업체에서 접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모금과정에서 이권관련 허가나 할당방식등 준강제적으로 모금하였거나 집행과정에서 목적외 유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큰 지적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적십자 회비는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법률 제3988호입니다. 따라서 국내거주 세대중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을 제외한 회원이 년 1회 납부하는 회비로써 '94년도 회비는 총 8억4,000만원으로 '93년도 보다 9.8%가 증가하였으며 시·군별로 지방세의 규모, 가구수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고 있으며 시·군별로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모금은 동·리 단위로 모금위원회를 구성하여 모금하고 있으며 회비 모금 과정에서 별다른 무리는 없었습니다. 적십자 회비는 생활이 어렵고 불행한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 직접 지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원창 (아산군)	'92년도와 '93년도 적십자사로부터 어느정도 도에 혜택을 받았는지 도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도지사 박태권	원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경우 '92년도에 7억1,200만원, '93년도에는 7억6,8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유념해서 성금의 운영관리를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 영세민, 결손가정, 심신장애자, 노인복지 문제, 특히 장애자 교육 고용 문제, 편의시설 문제가 어느정도 되었다고 봅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모델을 개발해 사회보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복지의 기본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게끔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 현재 저희 도내에는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등 1만4,714명의 등록장애인이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 수용시설 6개소에 수용인원 604명이 재활보호를 받고 있어 금년에도 장애인 재활보호를 위하여 9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복지시설을 2개 신축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애발생의 예방과 각종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보령군 주교면에 장애인 종합복지이용시설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과 의료비 본인 부담액을 지원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신체기능 보완, 생활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장애인보호장구를 무료로 지급하고, 중증, 중복장애인에게는 월 2만원의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자립의지 고취를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도지사 박태권	위하여 각종 장애인 단체의 체육행사 및 장애인의 날 행사등에도 작년도에는 6,83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1,804세대의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를 위하여 190명의 자녀학비와 102명의 아동양육비 8,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모자복지기금도 계획대로 '95년까지 10억원을 조성해서 이들이 생활안정과 자활을 적극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원창 (아산군)	• 제일 먼저 학교장 평가제와 교사 자격증 유효기간제 시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교장의 자질, 직무수행 능력, 전문성 신장에 평가의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제를 구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부에서는 교사자격증 유효기간제 도입과 관련 1급 정교사는 10년, 2급 정교사와 준교사는 5년내지 10년사이에서 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교장은 임기제, 수업교사 및 교감은 정년을 보장하고 신규임용	교육감 백승탁	• 학교장 평가제는 학교경영의 책임자인 학교장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 그리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의 일환입니다. 교장임기제 실시 이후에 학교장의 지도력이 약화되고 교내 장악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내년 1995년 8월말로 학교장의 1차 임기가 만료됨으로 중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할 시점에서 그의 적절한 연구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라 지난해 전국 교육감 회의에서 우리 도의 학교장 경영력 신장을 위한 학교장의 역할 증진에 따른 학교장 평가와 관련된 연구를 위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공주대학교에 연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원창 (아산군)	교사로 부터 적용 하겠다고 하는데, 교육감의 솔직한 견해는 어떠한지요? • 농촌지역 국민학교에 병설운영되고 있는 유치원의 수업료를 징수하는 법적 근거는 있는지요? 의무교육 차원에서 국민학교나 중학교에서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병설유치원 교육비를 징수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병설유치원에 대한 지원도 의무교육과 같기 때문에 국고에서 전액 부담해야 옳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읍·면의 차액은 얼마이며, 도내 연 총 수입액은 얼마입니까?	교육감 백승탁	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 연구결과는 앞으로 전국 교육감 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된 후에 시·도별로 적용여부를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 국민학교와 시지역을 제외한 중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교육법 제86조에 의한 의무교육 대상자이기 때문에 수업료 전액을 무상으로 하고 있으나 유치원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므로 수업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교육 진흥을 위하여 도서벽지는 전체원아와 기타 지역은 전체원아의 15% 범위내에서 수업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무상교육은 교육법 등 관계규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도의 공립병설유치원의 수업료는 월 최고 13,200원의 한도내에서 지역실정에 따라 당해 교육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간이나 지역교육청내에서도 시·읍·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시 지역의 수업료는 월 7,600원에서 1만1,400원, 읍지역은 5,500원에서 1만1,000원, 면지역은 4,300원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교육감 백승탁	에서 9,2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93년도 공립유치원의 수업료 총수입액은 8억3,900만원으로 유치원 운영 총경비 84억5,300만원의 10%에 해당합니다.
송선규 (서천군)	• 먼저 우리 도의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됨으로 인한 문제점과 시·군 합병으로 인한 공무원 감축과 시·군 공무원수의 불균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도 공무원은 8,531명으로 본청에 1,371명, 시·군에 7,1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가 공무원이 본청에 236명, 시·군에 394명으로 총 630명입니다. 이 국가 공무원들을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를 대비하여 지방 공무원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가 공무원을 지방 공무원으로 전환하는데 대하여 우리 도 당국에서는 빈약한	도지사 박태권	•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화는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공무원으로 배치한다는 방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이미 일반 행정분야 6급 이하 313명은 '94년 1월 1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되었으며, 5급 이상은 선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는 시기에 지방직화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산하 국가직 정원은 1,113명으로서 지도직과 양특 요원등 특수직종을 제외한 5급 이상 정원은 도 64명, 시·군 20명입니다마는 아직 지방화의 범위는 시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무원을 국가직 또는 지방직으로 구분하는 것은 임용권자의 인건비의 부담 주체만 다를뿐 지방직 전환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사기저하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오히려 인사관리의 통일성과 자율성을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송선규 (서천군)	재정자립도를 위하여 정부에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줄 것을 건의한 사실은 있습니까? 현재 우리 도에 있어서 6급이하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된 공무원은 몇 명이며, 차후 전환될 5급이상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국가 공무원이 지방 공무원으로 전환된데 대한 사기저하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국가 공무원이 지방 공무원으로 전환됨으로 인해 우리 도에서 감당할 예산 부담은 얼마며 이에 대한 세입의 재원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 장항 신항만 건설에 있어서 5,000톤급에서 5만톤급 이상까지 30선좌가 건설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장·군 국가공단을 위한 북측 도류제가 완공되는 시점에서부터 장항 신항만 건설 시행 계획은 어떻게 되	도지사 박태권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통합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는 방침으로 이를 위한 내부 추진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마는 통합된다 하더라도 현직 공무원의 신분은 법과 규정에 따라 보장되고 있으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먼저 항만 시설에 있어서는 아산, 석문, 장·군국가공단 조성과 관련한 항만시설은 해운항만청과 이미 국가공단계획 수립시 협의가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른 항만시설은 항만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되어 있으며 향후 항만 계획수립협의시 도의 계획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군국가공단내의 항만건설 계획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송선규 (서천군)	어 있습니까? 철도에 있어서도 장항선의 복선화와 직선화를 1998년 이후로 연기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그 이유는 재원의 부족과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서해안 시대가 개막된 시점에서 철도 운송과 육로운송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통경제의 상식인데 우리 도에서는 이에 대하여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해 왔으며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장항 신항만 건설을 위하여 장항에서 강경과 논산을 거쳐 대전을 연결하는 산업 4차선 도로를 건설해야 하는데 우리 도 당국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소신과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도의 공업용수는 2010년도에는 국가공단에서	도지사 박태권	은 2021년까지 81선좌로써 그중 장항측의 36선좌는 우선 해운항만청에서 도류제 공사를 '90년 8월에 착수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96년 까지 모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항, 강경, 논산, 대전을 잇는 4차선 산업도로 건설은 '87년도에 시작해서 대전-두마간은 이미 작년에 완공되었습니다마는 두마-논산-강경간은 '92년에 착공해서 '96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잔여 구간인 강경-장항 구간에 대해서는 장군 산업기지 개발과 서해안 산업발전에 따른 교통량 증가 추세를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항선의 복선화, 직선화 등 철도 운송 수단 확충에 대해서는 서해안 개발에 따른 교통량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철도 확충이 긴요하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도내 국가 및 지방공단 공업용수 공급원을 전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송선규 (서천군)	만 1일 51만6,000톤의 용수가 필요하고 지방공단에서는 1996년까지 1일 35만5,300톤의 용수가 필요하며 2001년까지는, 불과 6-7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즉, 1일 55만6,000톤의 용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데 우리 도에서는 공업용수의 78%를 담수에서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업용수와 농업용수, 상수도 용수도 부족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잘못된 계획이라고 사료되지 않습니까? 공업용수 공급에 대하여 담수에서 다른 것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습니까? 공장의 입지조건이 좋아야 공장의 입주가 원활히 되고 분양가가 높아도 분양이 되는 것이기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도지사 박태권	우리 도에 건설중인 3개 국가공단에 대한 용수 공급은 아산호 공업용수 공급계획에 의하여 석문공단에 1일 4만7,000톤, 아산공장에 2만4,000톤, 용담댐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에 의한 장·군 국가공단중 장항지구에 3만5,000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 조성된 3개 지방공단중 조치원 지방공단은 자체 지하수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성되는 지방공단중 인주, 대죽, 독곳 지방공단은 아산호 공업용수 공급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차 용수수급의 원활을 위하여 보령댐 계통 광역상수도와 대청댐 2단계 그리고 아산만 2단계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계획과 내무부의 중·장기 계획에 의한 지방상수도 연차별 개량 사업 계획에 따라 시설을 확충하여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수자원의 부존량 한정에 따른 대책의일환으로써 건설부에서 한번 사용한 수도물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중수도 제도를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음도 아울러 답변드립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송선규 (서천군)	• 금번 설 연휴기간 동안에 우리 도의 서해안 지역에 강풍과 폭설과 정전으로 72억2,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 피해액을 세분화하면 강풍과 폭설로 인하여 선박과 양식장, 어항, 비닐 하우스 등의 피해가 37억6,000만원이고 정전으로 인하여 특용작물, 가축, 양어장, 김 가공, 수산물, 활어장 등의 피해가 34억6,000만원입니다. 피해 발생지역은 서천군을 비롯하여 6개 시·군입니다. 도지사께서도 피해현장을 살펴 보셔서 그 실태를 잘 아시리라 생각 합니다. 이에 대한 피해대책은 현재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며 한전측과의 보상협의는 어떻게 진전되고 있습니까? 또, 우리 도 당국에서는 최단기간 내에 원상복구토록 중앙 및 관계 부처에 조치한 상황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태권	• 저도 현지를 가 보았습니다마는 농수산위원 위원님들께서도 현지를 방문하여 주민들을 격려하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시는 등 걱정을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도에서는 피해 복구를 위해서 폭풍과 폭설 피해에 대하여는 풍수해대책법에 의한 「재해구호 비용부담 기준」에 의거 피해 전농어가에 시설 복구비와 대파대 지원은 물론 생활의 조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이재민 구호금과 중·고등학교 학생의 등록금등으로 56억6,400만원의 복구비를 확정했습니다. 정전사고 피해에 대하여는 중앙 6개 관련부처, 회의에서 피해 농어가의 구호적 차원에서 사고의 원인에 불구하고 폭풍피해와 같은 지원기준으로 12억3,600만원을 확정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 놨으며, 1차 피해조사 확정이후 추가로 확인된 정전사고 피해액 10억8,800만원에 대하여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추가지원을 건의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대학교 산업연구소에 정전사고 원인조사를 의뢰하여 현재 용역조사중에 있으며, 사고원인 조사결과에 따라서 중앙에서 별도의 대책을 수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도지사 박태권	립 조치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앞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송선규 (서천군)	• 우리 도 당국에서는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을 대비하고 도민의 교통편익을 위하여 고속버스를 유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도에서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수는 교통부 통계연보에 의하면 연간 584만명이고 이 가운데 우리 도민은 56만명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외지 고속버스에 유실되는 금액은 1,500억원인데 고속버스를 유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 역 경 제 국 장 이종은	• 송선규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고속버스 운수사업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서 규정한 대로 운행구간의 70% 이상을 고속도로를 운행해야 되며,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는 운송사업으로써 교통여건의 변화로 새로운 교통수요가 발생될 경우 신규업체를 유치하거나 기존 직행버스를 고속버스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현재의 운행계통으로는 신규업체의 유치나 기존 직행버스의 고속버스로의 전환은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등 교통여건에 변화가 오거나 직행버스의 운행계통이 변경될 경우에는 고속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현재 우리 도의 수출물량은 33억불이고 그중 4개의 화물 운송비가 150억원입니다.	건 설 도 시 국 장 이기형	• 우리 도의 '93년말 도로포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도는 이미 2차선 포장이 100% 완료됐고, 지방도가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송선규 (서천군)	여기에다 국가공단과 지방공단과 농공단지가 완성되면 화물 물량이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도 당국에서는 대전과 서산을 연결하는 4차선 산업도로 건설을 추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재원의 부족과 현재의 이용 효과가 적어 이 도로 건설을 1998년 이후로 연기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 당국에서는 어떠한 행정을 진행해 왔으며 어떠한 대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80%, 군도는 66%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도로 포장목표가 당초 계획보다 미진한 것은 '90년도 부터 지방 양여금법을 제정 추진하였으나 양여금 재원이 당초 계획보다 부족하여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앞으로는 노후위험교량 개량과 지방도 4차선 확장사업을 지방도 포장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94년 계획된 사업이 모두 끝나면 지방도로서는 장대교, 터널, 미개통 도로를 제외하고는 지방도로 포장사업이 전부 완료되겠으며, 군도의 경우 75%의 포장율이 제고될 전망입니다. 또한 국도 4차선 확장사업은 전국 하위권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13개 지구 171㎞가 시행중에 있고 6개 지구 99㎞가 금년도 신규착공 계획으로 타도에 비해 많은 사업이 추진중에 있어 13개 지구 171㎞가 마무리되는 96년에는 4차선율이 전국 평균 25%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앞으로 4차선 확장사업의 확대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도와 시·군도의 직선화와 확장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하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건 설 도 시 국 장 이기형	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및 시·군도의 직선화 계획은 현재 2차선 확·포장시 노후교량과 도로의 선형을 과감히 개량하여 직선화하고 강변 또는 저수지 유심부를 가급적 안전지대로 개량하고 취락지통과도로는 우회도로로 개설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4차선 확장계획은 천안-입장 등 4개노선 21㎞에 대해서 51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우선 금년도에 천안-입장간 2㎞와 홍성-덕산간 1㎞에 44억원을 투자해서 지방도 2차선 확장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도 4차선 확장계획은 현재는 교통량이 적어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교통량 증가 추세에 따라서 점차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第30節 第83回 臨時會

Ⅰ. 概 況

1. 開會背景

○ 제8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부의하고자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94년 4월 19일 집회공고를 실시하고 94년 4월 27일 14:00에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회기 : '94. 4. 27 ~ 5. 6 (10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4. 4. 27(수) 14 : 00	본 회 의 (제 1 차)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 2. 제83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3. '94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휴회의 건	
15 : 00	농림수산위 (1차)	1.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 개정 건의안 2. 농어촌 진흥공사 충남지사 업무현황 설명	
'94. 4. 28(목) 10 : 00	내 무 위 (1차)	1. 충청남도행정정보공개조례안 2.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안 3. 충청남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4. 4. 28(목) 10 : 00	내 무 위 (1차)	4.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94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관한 건 7. 행정구역 편입요구 청원	
10 : 00	교육사회위 (1차)	1. '94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	
09 : 30	건 설 위	○ 현장시찰 - 제원대교 가설현장(금산 제원) - 계룡 하수종말처리장(논산 두마) - 덕산 도립공원(예산 덕산)	
'94. 4. 29(금) 10 : 00	교육사회위 (2차)	1. '94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	
10 : 00	건 설 위	○ 현장시찰 - 국도29호 4차선 확장공사(서산 대산) - 삼성, 현대 유화단지(서산 대산) - 석림 주공APT 건설현장(서산시) - 한보철강 건설현장(당진 송악) - 환영철강(당진 석문)	
'94. 5. 3(화) 10 : 00	예결특위 (제1차)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94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	제1회의실
'94. 5. 4(수) 10 : 00	예결특위 (제2차)	1. '94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4. 5. 6(금) 10 : 00	건 설 위 (1차)	1. 중부권 특정폐기물 공공처리 시설 입지계획 반대 건의안	
11 : 00	서해안특위 (5차)	1. 서해안개발사업관련 국비지원등 문제해결을 위한 건의안	
13 : 30	교육사회위	1. 애국열사추모비(각)·건립에 관한 청원	
14 : 00	본 회 의 (제2차)	1. '94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남도행정정보공개조례안 3.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안 4. 충청남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94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8. 한국전력공사전기공급규정개정건의안 9. 중부권특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입지계획반대 건의안 10. 서해안개발사업관련국비지원등문제해결을위한 건의안 11. 행정구역편입요구청원의건(경기도평택군팽성읍 노성1리 이천수외 44인으로부터 이원창 의원의 소개로 제출)	

○ 비회기중 활동상황

일 시	위 원 회	내 용	비 고
'94. 4. 18 11 : 30	운 영 위 (1차)	1. 제83회 임시회 회기일정 협의 2. '94 회기운영 수정계획 협의의 건 3. '94 예결특위위원 선임 협의의 건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수	안 건	비 고
계	16		
조 례 안	5	1.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예 산 안 (결 산 안)	1	1. '94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건 의 안	4	1. 서해안개발사업관련 국비지원 등 문제해결을 위한 건의안 2. 한국전력공사전기공급규정 개정건의안 3. 중부권특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입지계획 반대건의안 4. 시관할구역내 국도의 관리청지정조항 삭제 건의안	
동의승인안	1	1. '94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	
기 타	5	1.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2. 제8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94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5. 행정구역편입요구청원의 건	

4. 條例案 處理內譯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327	충청남도행정정보공개조례안	김재봉 의원외 10인	내무	○주민에게 행정정보 공개 의무 부여 ○청구권자 및 공개대상 정보를 명시 ○획득한 정보의 타목적 사용 금지 ○소요비용 청구인 부담등	5. 6	5. 9	원안
332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안	충청남도지사 (4. 22)	〃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사무를 정함 ○위탁사무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정함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규정을 정함	〃	〃	수정
330	충청남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1명 증원함	〃	〃	원안
331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	○지방공업단지의 관리업무중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 ○중기→건설기계로 명칭 변경	〃	〃	〃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333	충청남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사 (4. 22)	내무	○도시개발법과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일시적으로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 면제	5. 6	5. 9	원안
334	'94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	〃	○취득재산 • 토지 : 8필지 24,777㎡ • 건물 : 3동 656㎡ ○처분재산 • 토지 : 12필지 25,750㎡ • 건물 : 11동 958㎡	〃	〃	〃
335	서해안개발사업관련국비지원등문제해결을위한건의안	송선규의원외11인 (4. 27)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	○아산국가공단등 서북부지역 신 산업지대 조성 ○석문국가공단 조성 ○장·군국가공단 조성 ○서해안고속도로 건설 ○보령댐 광역상수도 사업 ○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사업 ○금강수계 치수사업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홍·보지구 농업 종합개발 ○금강2단계 농업 종합개발	〃	〃	〃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336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 개정건의안	농림수산 위원회 위원장 (4.27)	(본회의)	○전기공급 규정에서 전기 수요자인 고객에게 불리하게 되어있는 제51조 규정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함	5.6	5.9	원안
337	중부권 특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입지계획 반대건의안	이홍근의 원외17인 (5.3)	건설	○현재 추진중인 당진 석문국가공단 조성사업 지구내에 중부권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입지계획을 재검토 변경하여 줄 것을 건의함	〃	〃	〃
339	시관할구역내 국도의관리청 지정조항삭제 건의안	이갑준 의원외 10인	〃	○철 회 (4.29)			
청원 5	행정구역 편입 요구에대한청원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노성1리 이천수외 44인	내무	○주민생활의 편익과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원칙에 합당하므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서를 채택	5.6	5.9	도지사 이송처리
청원 6	애국열사추모 비각건립에관 한청원	천안시 두정동 25-12	교육 사회	○2개 기관이상에 제출된 이중청원이였으며 도지사가 기 접수 처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 미채택			

第31節 第84回 臨時會

Ⅰ. 概 況

1. 開會背景

○ 제8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개의 안건을 부의하고자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4년 5월 30일 집회공고를 실시하고 94년 6월 7일 14:00에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회기 : '94. 6. 7 ~ 6. 13 (7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4. 6. 7(수) 14 : 00	본 회 의 (제 1 차)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 2. 제84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3. '93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4. 도지사, 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94. 6. 9(목) 14 : 00	내 무 위 (1차)	1.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시 · 군통합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15 : 00	교육사회위 (1차)	1. 충청남도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4. 6. 9(목) 15 : 00	교육사회위 (1차)	2. 충청남도사회복지시설수용아동장학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천수산고등학교 병설 전문대학과정설치 건의안 5. 공주대학교 국책대학선정을 위한 건의안	
14 : 00	농림수산위 (1차)	1. 충청남도농어촌특산물상설전시판매장설치 운용조례안 2. 충청남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 조례안	
'94. 6. 10(금) 14 : 00	본 회 의 (제2차)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2. 휴회의 건	
15 : 30	농림수산 위 원 회	1. 현장방문	
15 : 20	내무위원회 (2차)	1. 행정구역 편입요구에 관한 청원	
'94. 6. 13(월) 14 : 00	본 회 의 (제3차)	1. 결원된교육위원보궐선출 2.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사회복지시설수용아동장학금지급 조례중개정조례안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4. 6. 13(월) 14 : 00	본 회 의 (제3차)	6.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 실비변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8. 대천수산고등학교병설전문대학과정설치건의안 9. 공주대학교국책대학선정건의안 10. 행정구역편입요구에관한청원 (전라북도익산군망성면강중선외3,403인으로부터 공균의원의소개로제출) 11. 시군통합에관한의견요청의 건	

○ 비회기중 활동상황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4. 5. 27 11 : 00	운 영 위 (1차)	1. 제84회 임시회 회기일정 협의 2. '93 결산검사위원 선임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수	안 건	비 고
계	15		
조 례 안	6	1.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건 의 안	2	1. 대천수산고등학교병설전문대과정 설치 건의안 2. 공주대학교 국책대학 선정 건의안	

구 분	건수	안 건	비 고
기 타	7	1. 제8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93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3. 도지사,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5. 결원된 교육위원 보궐선거 6. 시군통합에 관한 의견 요청의 건 7. 행정구역편입요구청원의 건	

4. 條例案 處理內譯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338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교육감 (5. 30)	교육사회	○증인등에게 직접 지급하던 실비를 민사소송비용법에 맞게 당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법원에 납부함으로써 지급한 것으로 갈음	6. 13	6. 14	원안
340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지사 (6. 1)	내무	○사적국외여행시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외국여행 신고제도 폐지 ○지방공무원 외국파견근무시 재외공관장에게 복무감독권 위탁	〃	〃	〃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승진·전보 시험시 공가 허가 ○배우자의 형제자매 경조사시 특별휴가			
341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사 (6. 1)	내무	○현재 도지사가 시장·군수·출장소장에게 행정권한을 훈령으로 내무위임 처리하고 있는 것을 도기구에 맞게 조정하여 권한 위임으로 함	6. 13	6. 14	원안
342	충청남도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교육사회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 및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기금관리관 직명과 운영위원을 개정 법령에 맞도록 고침	〃	〃	수정
343	충청남도사회복지시설수용아동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
344	충청남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농림수산	○농지분야 행정규제 완화 시책의 일환으로 농림수산부 훈령(제784호)이 개정되어 도조례 존치 불요	〃	〃	원안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345	대천수산고등학교병설전문대과정설치건의안	이시우 의원외 15인 (6. 7)	교육사회	○대천수산고등학교에 전문대과정을 설치하여 줄 것을 청와대,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건의함	6. 13	6. 14	수정
346	시군통합에관한의견요청의건	충청남도지사 (6. 8)	내무	○시군 통합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에 관한 사항 ○통합시 명칭에 관한 사항	〃	〃	원안
347	공주대학교국책대학선정건의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6. 9)	본회의 상정	○공주대학교를 국책대학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함	〃	〃	〃
청원 8호	행정구역편입요구에관한청원	논산,강경 대흥52-9 강중선외 3,403인 (6. 2)	〃	○전북 익산군 망성면을 충남 논산군 강경읍으로 편입 요구 ○소개의원 : 공균의원	〃	〃	도지사 이송처리

5. 缺員된 敎育委員 選出

○ 제8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교육위원이 보궐선거를 위하여 홍성군의회로부터 2인의 후보가 추천되어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결원된 교육위원을 선출하였다.

○ 교육위원 당선자

소 관	당 선 자	
홍성군 교육청	蔡 光 鎬	

6. 第84回 臨時會 道政 및 教育行政에 關한 質問 · 答辯要旨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맹치호 (천안시)	• 지난 3월에 아산국가공단 사업소를 방문해서 사업계획을 살펴보니 이 지역에는 7,400㎢의 공단조성과 1만톤급 17개 선좌를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항만을 건설한다는 것이 사업의 주요내용입니다. 이 경우에 충남의 고대 부곡지역에는 1만톤급 2개 선좌를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이 고작이고 나머지 15개 선좌는 경기도 포승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이 아산만 사업이 완료되면 아산만의 주도권은 경기도에서 잡게되고 충남은 공단의 전용항만에만 의지한채 명맥만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깝기 그지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장 · 군국가공단 역시 주체는 전북이 되도록 계획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오는 2021년까지 6조4,000억원이 투자되는 이 지구의 사업중 항만시설은 군산지구의 경우 45개 선좌가 계획	도지사 박중배	• 서해안개발 사업은 지난 '89년부터 국가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장기사업으로서 그동안 재정투자의 미흡으로 성과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어 도는 물론 의회 차원에서도 재정투자의 확대와 조기추진을 수차에 걸쳐 관련부처에 건의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맹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계획된 사업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추진에 따라 우리 도의 산업구조가 크게 발전될 것으로 희망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과 장군 국가공단과 관련하여 일부 추진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문제와 항만건설 규모에 있어서도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함께 하시면서 촉구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산항만 건설은 화물수송에 필요한 2만 내지 5만t급 대형 선박이 자유롭게 입 · 출항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심과 해저 지형상태등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입지조건을 감안하여 계획을 수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맹치호 (천안시)	되어 있고 장항지역은 36개로 되어 있음은 물론 불합리한 해면경계로 인해 충남쪽과 인접되어 있는 상당면적의 매립지도 전북에 편입될 지경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군산지역은 진입도로는 물론 해면물막이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장항지역은 진입도로 사업비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실정인 바 장·군국가공단 사업은 전북이 주도권을 잡고 충남은 보조역할에 머물지 않을까 착잡한 심정을 가눌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개발이 지속된다면 충청권이 아산국가공단과 장·군국가공단을 대 중국교역의 전진기지로 명실공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지사님의 명쾌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도지사 박중배	립한 것으로 같은 항만시설지구라도 지역간 선좌수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군공단의 경우도 군산측은 '88년부터 개발된 군산 제2공단과 연계하여 공단기반 시설이 이미 완비된 상태에서 '92년부터 국가공단 조성사업이 착수되었습니다만, 우리 도 장항지구의 경우는 국가공단개발조성 공장용지 수급계획에 의거해서 '95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어업권보상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항만시설의 경우도 2021년까지 건설계획인 81개 선좌중 일반 화물수송을 위한 일반선좌가 20개, 공업항으로 개발되는 선좌수는 61개 합해서 81개 선좌입니다만 장항측에는 이중 모두 41개의 선좌가 설치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산업과 기술의 발달로 농수산물 분야에도 획기적으로 개선할수 있음에도 생		• 우리 도에서는 농수산물의 판매경쟁 제고를 위해서 지역별, 시기별 농수산물의 생산량과 특성을 조사하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맹치호 (천안시)	산자인 농어민은 농어민대로 소비자인 구매인은 구매인대로 불만족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수산물 정보센타」와 「외국 농수산물 정보센타」를 우리 충남도청은 물론 모든 행정관서에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생산자인 농어민은 물론 모든 소비자가 생산, 판매, 구매 단계에서 농수산물 정보센타를 이용하여 모두가 손해 보지않고 유익하다는 마음으로 원숙한 시장활동을 위한 정보제공을 서비스 정신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5월말 한국경제 연구원의 조사분석에 따르면 배추 1kg의 경우 산지에서 179원 짜리가 출하수집 단계에서 274원, 도매단계에서 640원, 소비자단계에서 832원으로 산지가격의 4.6배로 소비자에게 유통되고 있다	도지사 박중배	여 홍보 및 정보책자로 만들어 소비업계에 배포할 계획으로 있고 매분기별로 농수산물 수출 정보지를 발간하여 관계기관 단체와 수출 유망작목반에 배부하여 수출에 대한 식견을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정보 제공을 위해서 농수산물 유통공사와 협조하여 국내외 시장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협의 자동응답 전화를 이용한 국내 시장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컴퓨터 통신망인 천리안과 하이텔 단말기를 작목반과 농가에 753대를 이미 보급하여 국내외 시장정보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도의 기구개편시에 부지사 직속으로 「국제통상협력실」을 신설하여 해외시장 정보와 수출확대를 도모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유통정보를 개선하기 위해 산지에는 집하장, 저장고, 공판장과 소비지에는 직판장과 도매시장을 확대 설치하고 있으며 금년 6월부터 10월 까지 한시적으로 관련기관 단체가 참여한 「농수산물 유통개혁 기획단」을 설치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또는 중앙에 건의하는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맹치호 (천안시)	고 하며, 수입 농산물의 경우에도 수급조절이 잘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보화 시대에 농수산물 정보센타는 모든 국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모든 행정관서에 설치하여 진실로 봉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지사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은 우리에게 가혹한 시련을 주었듯이 그 만큼 이 시련을 극복하면 발전과 도약의 단계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명년인 '95년부터 쌀을 포함한 15개 기초 농산물이 전면 개방됩니다.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내년 15개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가 피해액은 총 7,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UR협상이 7년간이나 진행	도지사 박중배	등 모순된 유통구조를 바로잡아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농수산물은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고 유통정보는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현재는 기관별 분담 또는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정보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행정관서에 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문제는 좀더 시간을 갖고 연구 검토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맹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농산물은 외국 농산물에 비해 생산이나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현시점에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상 품목으로는 신선도 측면에서 외국수입 농산물에 대응할 수 있는 채소류, 맛과 질에서 승부를 걸 수 있는 과일류 그리고 기술과 기후조건이 적합하여 수출 능력이 있는 화훼류 등을 들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작목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 추진은 작년 까지와는 다른 생산과 유통의 통합체제로 채소 6개소, 과수 5개소, 화훼 2개단지등 13개소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맹치호 (천안시)	되면서도 우리나라의 그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했듯이 이미 많은 외국 농산물이 유통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모든 생활필수품이 많은 양이 아니라 좋은 품질로 경쟁력을 갖추듯이 우리 농산물도 외국 농산물보다 더 나은 품질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 광활한 토지와 최신 영농장비로 대량의 생산과 저렴한 가격으로 유리한 조건에 타국에 수출하는데 비하여, 우리는 예산낭비와 비효율적인 경지정리 시책 및 소규모영농으로 최신 영농장비가 있다한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사용하더라도 일부 지역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가격이 저렴한 외국 농산물에 비해 경쟁력을 고루 갖춘 우리 농산물 생산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획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중배	에 355억원을 투자하여 새로운 재배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시설의 현대화와 규모화 그리고 단위 유통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500억원을 투자하여 생산, 유통시설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협의중에 있고 우리 도자체 특수시책으로 성장유망작목단지 50개소에 91억원을 투자하여 조성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98년 까지 200개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품목을 설정하여 중점 육성함으로서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국제경쟁력 있는 얼굴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1군1명품 지역특화 산업육성」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서산, 당진, 보령군 등 3개군에서 시행하여 청결미 제조, 땅콩가공, 꽈리고추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97년 까지의 당초계획을 앞당겨 12개 군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품질좋은 농산물이 저렴하게 생산되어 우리 농산물도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맹치호 (천안시)	• 충청남도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개 분야로서 목표액이 563억2,900만원인데 비하여 '93년말 현재 목표액의 42%인 235억7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내역별로 분석해 보면 기금설치 목적과 수혜대상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성질의 기금도 있지만 설치목적이나 수혜대상이 유사하거나 업무의 중복등으로 비능률적인 기금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어느 부서에서든지 일원화하여 행정의 낭비를 막고 수혜대상자의 중복지원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도 기금을 통폐합 운용하여 능률적으로 기금을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획 관 리 실 장 손인완	• 먼저 맹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어촌진흥기금과 농촌지도자 및 4-H회원 육성기금은 수혜 대상자와 지원대상사업이 서로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촌의 발전과 개발을 위하여 전체 농어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자 및 4-H회원 육성기금은 지원대상이 농촌지도자와 4-H회원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농촌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촌지도자 및 4-H회원 육성기금은 농촌의 핵심요원을 육성하는 목적사업으로 현행대로 계속 운영을 해 나가되, 앞으로 농정의 여건이나 주변의 상황변동으로 인한 통합필요성이 제기될 때는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기금에 대해서도 기금의 설치목적이나 수혜대상, 운영방법 등을 면밀히 비교 분석해서 필요한 경우에 통합 조정하여 각종 기금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최근에 농지전용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어 시장 군	농정국장 임규환	• 현재의 농지문제는 경제의 성장과 국토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1차산업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맹치호 (천안시)	수 및 도지사에게 농지전용 허가 권한이 대폭 위임된바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 군수는 일반농지 전용허가시 농업진흥 지역에는 3,000㎡, 진흥지역밖의 농지는 1㏊까지 가능하며 그 이상의 면적은 도지사에게 허가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경지정리 사업은 비과학적이고 비효율적이며 근시안적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하면서, 쌀농사를 위하여 많은 시행착오적 예산투입이 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식량안보는 논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식인 쌀농사는 반드시 계획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논에 물을 넣어 벼를 자라게한 후 수확하는 쌀농사의 환경보전적인 유익함은 숫자로 계산할 수	농 정 국 장 임규환	용지에서 2, 3차산업 개발에 필요한 용지로서의 전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벼농사가 농가의 직접 소득외에 공기정화, 수해예방 등 환경적 측면에서 기여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적절히 보전되어야 한다는데도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발전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농지를 전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도내에서 작년 한해동안 1,384건에 381.5㏊가 전용됐습니다만 내용별로 이를 살펴보면 서해안개발과 관련해서 서해안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으로 인한 전용면적이 전체의 69.2%에 해당하는 264.2㏊이고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중소기업 공장설립과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전용한 면적은 전체의 18.6%인 70.8㏊, 그리고 나머지 46.5㏊는 주로 농어민의 주거시설과 농·어업용 시설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구조 정책에 따라 우량농지에 대하여는 진흥지역 지정관리 등을 강화하여 농지의 보전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국가정책상 추진되는 시설의 수용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량의 안정적 생산, 나아가서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맹치호 (천안시)	없는 인류생명 공학적 차원일 것입니다. 산업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하고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공장설립과 공단조성일지라도 지형과 지역에 따라 개발과 보존의 갈림길에서 무분별한 개발 전략은 바람직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개발에 따른 농지전용과 환경보존 및 농가소득증대와 연계하여 지사의 철학을 듣고자 합니다.	농 정 국 장 임규환	는 식량안보적 측면을 고려해서 우량농지가 최대한 보전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원창 (아산군)	• 1994년 3월16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3조 4항에 7조 2항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이나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을 도·농 통합형태의 시로 할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고 규	도지사 박중배	• 먼저 이의원님께서는 시·군통합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절차상의 일부 문제점과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소상하게 파악하시고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군통합은 날로 변화하는 국내외적인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낭비적인 요소를 줄이면서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지난 3월 16일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도·농 복합형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원창 (아산군)	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고 되어 있고 제7조 4항에, 제4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치, 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서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시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3조 4항, 4조 1항, 7조 2항, 7조 4항, 13	도지사 박중배	시」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10개 시·군을 통합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주민의견 조사와 시·군의회 의견을 듣는 절차를 끝내고 도의원님들의 의견과 함께 내무부에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시한 주민의견 조사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한 "주민투표 절차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인데 시·군 통합에 대한 의견은 개개인의 이해관계나 선택이라기 보다는 세대단위의 이해와 결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세대단위 의견을 세대주가 대표하여 표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 판단하여 실시한 것입니다. 주민투표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실시하게 되는 제도로써 주민투표에 관한 절차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제정된 후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 통합작업을 시행한다면, 통합시의 발족은 '95년 6월에나 가능하게 되고, 따라서 내년 6월중에 있을 네가지의 지방선거를 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선거에 의한 단체장이 선출된 후에는 통합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원창 (아산군)	조 2항을 개정하였기 때문에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통합에 대한 의회 의견과 주민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금년에 무리하게 통합을 하지 않아도 되고 내년이나 후년이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때가서 통합에 찬반을 물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속히 통합할려고 하는 정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지사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시·군민 대다수가 통합에 대하여 과연 통합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표를 하였으니 과연 이것이 얼마나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또한 올바른 주권행사가 되었는지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도지사 박중배	고 매우 곤란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이 방법을 채택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군 통합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안지역은 그 입지여건으로 보아서 천안지역 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과 충남도 지역발전 전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좀더 인내를 가지고 지혜로운 천안군민의 의견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천안군 일부지역에서 주민의견 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방법은 제반 여건상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원창 (아산군)	• 인사에는 개인별 업무처리 능력과 추진실적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그에 상응한 보상과 승진제도를 확립함으로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도내 기술직 공무원에 대하여 일반직 공무원과 차별대우를 하지말고 기술직 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승진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인사원칙을 보면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낙하산 인사는 내무부에서 국가직 5급 공무원이 도에 발령을 받으면 국가직 4급으로 지방서기관을 거치지 않고 2계급 승진하여 부임하니 이것이 인사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요? '91년 7월 8일부터 '94년 6월 9일까지 내무부에서 낙하산 인사로 충남에 배정된	도지사 박중배	• 먼저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사 운용문제에 대해서는 저 역시 인사는 개인의 사기는 물론 조직의 활력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반드시 공평무사한 인사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공정한 인사관리가 되도록 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함께 엄정한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1년 7월 이후 내무부에서 10명이 전입하고 10명이 내무부로 전출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만, 이는 중앙과 지방간 인사교류를 통하여 상호 이해증진과 협조체제를 유지함과 동시에 지방행정을 보완·발전시킴과 아울러 인재의 양성면에서도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입공무원의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정원도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기구와 정원에 관하여 조례를 정하는데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원창 (아산군)	공무원수와 현재 직책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낙하산 인사를 못하게끔 강력하게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도지사 박중배	까지 이에 관한 대통령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날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고 부응하기 위하여 부득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청댐 광역상수도 사업은 시설용량 1일 40만톤 사업기간은 '95년도부터 '98년도 까지로 되어 있고, 총 사업비가 900억원, 시행주체는 건설부로 되어 있습니다. 대청댐 2단계 기본설계 용역은 되어 있는지요? 실시설계 시행계획은 언제쯤 되는지요? 또한 시행 및 공급을 조속히 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현재 대청호의 수질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는데 BOD 와 COD의 기준치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요, 묻고 싶습니다. 3단계 고도처리시설은 언제쯤 설치할 것인지요?	건 설 도 시 국 장 이기형	• 먼저 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에 있어서는 주무부서인 건설부에서 '94년 5월 4일 7억원의 예산으로 기본 설계용역을 실시 중에 있고 실시설계를 위하여 '95년도에 25억원의 사업비를 경제기획원에 요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서북부지역의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원할한 용수공급을 위하여 건설부 등에 조기 용수공급을 여러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 있고 한국수자원공사와도 긴밀한 협조로 서북부지역의 용수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보령댐 계통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투자한 사업비는 790억원이 되겠고 그동안 추진한 주요공사로는 댐부분에 있어서 여수로 굴착과 가배수 터널굴착, 이설도로 및 진입도로 개설 등 종합진도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원창 (아산군)	대전직할시와 충남·북 3개 시·도가 공동으로 대청댐 2단계 사업과 대청호 수질 문제점, 해결방안을 모색할 용의는 없는지요? 보령댐 광역상수도 사업은 총사업량 댐시설 용량 29만2,000톤이고, 광역상수도 공급용량 24만8,000톤중 생활용수 17만7,000톤, 공업용수 7만1,000톤이고 사업기간은 '90년 8월부터 '95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3,374억원이고, 사업시행자가 한국수자원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투자한 금액과 공사현황, 보상은 얼마나 진척되었는지요? 그리고 '95년 12월까지 용수공급이 가능한지 지사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건 설 도 시 국 장 이기형	35%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문제에 있어서도 현재까지 보상대상은 2만4,750건에 756억원이며 그중 1만8,230건에 642억원을 지급하여 84.8%를 보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몰지구의 간접보상 및 관로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12월말까지의 용수공급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사업비 중 국비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사업시행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적극 협조하여 국비등 사업비 확보로 목표기간내에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가정과 학교,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청소년 교육에 나서야만 청소년 탈선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부는 일선 고교에 대해	교육감 백승탁	• 다시 말씀드려 인간을 인간답게 기르는 인간교육과 지식을 지식답게 가르치는 지식교육의 조화와 균형을 학교 교육의 근간으로 하여 교육환경의 인간화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원창 (아산군)	'96년도 부터 시행될 철학, 종교과목등 교육과정에 관계없이 교장의 책임하에 윤리교사를 통하여 적절한 인성순화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시하고 또한 장학사를 시·도에 파견하여 일선 고교의 철학 및 윤리교육을 지도·감독하기로 하였다고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늦은 감은 있으나 천만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구호에 그치지 말고 실천에 이행하여 주기를 바라면서 고교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학교부터 윤리·도덕에 치중하여야만 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우리나라의 교육은 입시위주로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 도덕 교육이 소홀해져 있고 윤리, 도덕교육이 강화되려면 우선 입시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교육감 백승탁	있습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 각급 학교의 모든 교육계획에 인간존중의 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 인지적이고 정의적인 교육계획을 조화롭게 수립하도록 하고 학생 개개인에게 희망을 심어 주면서 모든 물리적 심리적 교육환경은 학생을 최우선으로 하여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국민학교에서는 바른생활과 도덕교과를 중심으로 전 교과에 걸쳐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가정과의 연계 지도가 필요하다고 절감하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 교육청에서는 3년전에 올바른 가정교육이란 책자 40만부를 발간하여 도내 전 학생의 가정에 이미 배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계속 이를 발간하여 가정과 학교의 연계속에 국민학교때 부터 지도하여 기반 생활을 습관화 시키므로써 자연스러운 인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교육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추진하고 있는 교육발전 협의회에서도 학부모 및 지역 사회인사들과 구체적인 도덕성 회복을 위한 논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교육감 백승탁	의와 상호지원대책을 꾸준히 검토해 왔으며 인간교육 실현을 위한 부단한 교원의 연수활동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나영진 (공주시)	• 도정을 책임지고 진두지휘해야 할 도지사가 자주 바뀐데서도 원인이 있지만 그기간 동안 차분히 업무에 정진해야 할 공무원들을 움추려 들게한 주변의 상황들이 너무도 많이 변화하면서 안정적으로 또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할 도정은 침체를 면치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동안 고질적인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채 주민들만 애를 태우고 바위에 계란던지듯 정부 요로에 뛰어 다니기만 했지 결론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데도 도에서는 수수방관만 하는 듯 한 인상 지울수가 없습니다. 도정을 함께 걱정하는 뜻에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루 빨리 탈피하지 않으면 안되는	도지사 박중배	• 나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최근 행정의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복지부동이라는 질책의 소리가 높게 일고 있는게 사실입니다만 저 나름대로 진단한 우리 도의 조직은 그렇게 우려할만큼 동요하거나 침체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건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할 현실을 직시하고 취임이후, 우리 도정이 지향해야 할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는 안정된 조직 분위기속에서 공직자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긍지와 보람을 찾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도정의 활력 회복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도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공직내부의 기강을 확립하고 결속을 다지는 가운데 도정의 현안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적 실천노력에 더욱 박차를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나영진 (공주시)	상황으로 인식해서 도정 전반에 걸쳐 재점검하고 반성하고 심기 일전하여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고 믿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이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누차에 거론됐던 문제이지만 진척상황이 너무도 미미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촉구하는 의미이며 새로 부임한 박중배 지사의 도청이전에 대한 의지와 소신을 확인코자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컨데 박중배 지사께서는 본도에서 부지사를 역임하면서 도청이전에 대한 문제가 도민전체의 뜨거운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으리라 믿고 또한 도지사로 부임하면서 이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부임하셨으리라 기대합니다. 언필칭 지역안정, 지역갈등	도지사 박중배	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제4대 도의회가 개원되면서부터 중점적으로 거론되어온 사항입니다만 그동안 제반여건상 의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만큼의 추진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일 예산에서 개최한 도의회 도청이전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관계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당초 예산에 의원님들의 배려로 도청이전 입지기준 설정및 적지판단을 위한 용역비 3억원을 확보하고 그동안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왕에 도청이전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전라남도와 경상북도에 관계관을 보내서 용역비 집행과정을 비롯한 관련업무 추진상황, 타도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나영진 (공주시)	집단 및 지역이기주의를 내세우고 그것이 무슨 큰 화근덩어리나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지역문제를 잘 알고 있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의 뜻은 내고장의 발전을 바라는 순수한 애향심의 발로라고 볼 진대 전체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전체의 이익이 최대한도로 수용될 수 있는 위치로 가장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아니면 과감히 도민의 열망에 따라 어려운 문제이지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중배	사례의 장단점 비교 분석을 통하여 우리 도의 추진방향을 모색하면서 구체적인 집행절차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용역관련기관 선정에 있어서는 지방행정에 관련성이 있고 대외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살릴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단체를 엄선해서 도내는 물론 타시·도의 기능별 사계 전문가를 연구원으로 폭넓게 위촉시켜 관련용역을 수행해 나가되 도청이전기획단 기능을 활성화 시켜서 용역과업 진행과정에서도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청이전 문제는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밀도있게 추진할 방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돈 (서천군)	• 현정부에서는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격을 입은 농촌이 다시 설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어촌 발전 대책을 세우면서 농·어민 연금의 농민부담 경감, 농·어민 재해 보상법, 통합의료 보험제, 대학특례 입		•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정부에서는 UR타결로 인하여 위축된 농어민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어촌 특별세를 신설하고 농어촌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정부방침에 따라서 농정의 신뢰회복과 영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상돈 (서천군)	학제, 도·농통합 학군제, 경영이양 장려금 지급등 농·어민을 위한 방대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의 조속한 타결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농수산물 유통부분에 대한 개혁과 투자확대가 시급한 시점에서 농안법 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가 6개월후로 유보되는 불미한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실행방법은 농수산물 집배센터와 직판시장을 신설 확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기계 반값 공급으로 인해 농가의 새 농기계 부품값이 비싸고 농가에 보급되는 농기계의 부품규격이 표준화 되지 않아 이의	도지사 박중배	농의지 제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구조의 개선, 고품생산을 위한 시설현대화와 기술지원, 복지향상을 위한 정주요건개선, 정보부족 유통구조 모순의 혁신, 효율적인 농정추진체계 확립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하는등 지방적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중앙정부의 농어촌발전대책이 확정 되는대로 도단위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는등, 농어촌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농어촌 종합대책 수립과 관련해서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비롯하여 그동안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농어촌발전위원회와 중앙부처등에 농어촌발전 방안을 위한 132건의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중앙부처간에 타결되지 않고 있는 대학특례입학제도, 도·농통합학군제, 통합의료보험제, 농어민 연금 부담의 경감, 농작물재해 장려금 지급 문제는 각부처 합의사항으로 도단위에서 대책을 수립할 사안이 아니지만 농어촌종합대책이 확정 되기전에 중앙 각부처가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저희들도 기대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상돈 (서천군)	고장시 부품구입이 어려워 농가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기계 반값공급에 못지 않게 기존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품값을 내리고 수리가 신속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중앙정부의 세정 정책방향이 갈수록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금번 1994년 5월 21일 경제기획원의 발표에 의하면 정부 예산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낭비와 비 효율성을 제거한다는 명분아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영점 기준하에 전면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올해들어 국비의 지원이 대폭 삭감되면서 노인 교통비와 경지 정리비, 각종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도지사 박중배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이의 타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신속한 정비와 부품값을 인하하는 문제는 현재 농기계의 수리는 1차적으로 농기계를 공급하는 대리점과 농협에서 고장부품 공급및 수리를 책임지도록 되어있으며, 도내의 농기계 공급 업체와 농협, 지도소등 528개소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 삭감사업의 재원 문제에 있어서는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그 동안 국비에서 70%를 지원해 주던 노인 교통비를 올해부터 전액 지방비로 부담토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부담 비율을 조정한 관계로 77억원 가량 지방비 부담이 증가되어서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욱 어려운 실정에 놓이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부담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대책으로 담배 소비세를 갑당 100원씩 인상함으로써 우리도의 경우만 해도 작년도에 비해서 약 200억원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상돈 (서천군)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까지 지방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유류와 승용차에 대한 특별세를 경부고속철도와 신공항 건설등 사회 간접자본에 투자하기 위해 목적세로 전환하고, 감축추세에 있는 주세와 담배소비세등을 지방몫으로 돌려 지방재정이 날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예산지원이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감소되어 가는 주세와 담배세에 대하여 어떠한 대응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침체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중소기업들의 부도와 고질적인 체납자 및 담세자의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해져서 중소기업체들의 체납액이 50%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도지사 박중배	예상되고 있어 최근 확산되는 금연운동에도 불구하고 감액되는 재원의 보조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류관련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으로 326억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의 감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지방 양여금의 재원인 주세의 세율을 60~80%로 인상조정해서 도 82억원,시·군 244억원등 326억원의 지방양여금을 보조 받아서 '94년 예산에 반영한 바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총액 책정에 있어서 세입 감소액은 없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의 고질체납액 징수와 중소기업의 부도방지를 위한 대책에 있어서는 '93년도에 부과한 지방세중 미수 이월액은 3%에 해당하는 93억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5월 한달은 체납액 일소기간으로 설정하고 합동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는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18억8,400만원을 징수하고 현재 74억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중 중소기업이 못내고 있는 세금이 43%에 해당하는 32억원이며, 고질적인 체납자 31명에 7억8,000만원은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상돈 (서천군)	부도방지에 대한 지원책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현재 충남도 20개 시·군에서 지방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자구책으로 경영행정을 도입하여 골재채취 판매, 유료주차장 운영, 특용수 조림사업 택지조성, 공원묘지 조성등 다양한 사업으로 159억1,700만원의 순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투자재원은 어떻게 확보되었으며 사업시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우리 도에는 각 시·군마다 등기부에 등재돼 있지 않은 부동산과 일제 무단통치 시절 귀속 부동산이 공지 기간동안 소유권 주장자가 나타나지 않는 무주부동산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들의 색출, 취합, 공고등을 통하여 각 시·군에서 인력을 동원하여 찾고 있는데, 국가는 민법 제 252	도지사 박중배	또한 중소기업의 부도방지를 위한 지원 문제는 현재 도내 중소기업의 부도율이 평균 0.5%로 '93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감소되었습니다만, 서울 지역을 제외한 전국 평균으로 볼때는 0.1% 정도가 저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부도율이 타지역에 비하여 높은 이유는 도내 지역의 98%가 중소기업으로 전체적으로 취약한 공업기반 및 경기침체등과 맞물려서 계속되는 자금난, 판매부진, 경영난 악화등에서 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신정부 출범이후 신경제 5개년 계획추진과 더불어서 지난해 도내 97개 업체에 707억원의 구조개선 자금과 167개 업체에 110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활발한 설비투자와 체질개선으로 수출실적도 작년 동기에 비하여 30% 이상 호전되는 등 경기가 회복하고 있어 부도율도 서서히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상돈 (서천군)	조와 국유재산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시킴은 물론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매각대금은 중앙정부 금고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힘든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도맡아 하고 단물은 국가가 아무런 보상없이 가져가는 비 합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무주부동산의 소유, 매각권을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여 지방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실은 있는지 또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 수질오염 실태에 대하여 최근 환경처에서는 금강대권역 수질보전종합계획 아래 '97년까지 총예산 1조13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44개의 환경 기초시설을 설치키로 했습니다. 당초 '92년부터 '96년까지 시행키로 한 사업을 1년 연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 먼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수질보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7년까지 신경제 5개년 계획과 연계해서 물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계획으로 총 5,215억원을 투입해서 하수종말처리장등 99개 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32개 사업이 계획대로 착공하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상돈 (서천군)	장하면서 사업비를 증액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진행정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본 의원은 가장 근본적인 소하천의 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모든 사업은 그 사업이 이루고자 뜻한 목표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리라 생각되기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현행법령에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등은 그 관리권이 명시되어 있어 정비사업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소하천은 비 법정하천이므로 하천정비와 유지·보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소하천에 유입되는 축산 오·폐수, 생활쓰레기, 폐가전제품등을 방치해 악취발생은 물론 여름철 파리, 모기등의 해충서식지로 변해가고 있는데도 이를 처리하거나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 사 환 경 국 장 노규래	여 추진중에 있고, 일부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하천 정비문제는 현재 내무부에서 재해예방과 수질오염 방지 차원에서 소하천 정비법을 제정중에 있어서 이 법이 제정 시행되면 소하천 정비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소하천 정비가 시급한 예산 산성천, 금산 비래시천, 당진 쑥고개천 등 3개 하천을 금년 정비사업으로 선정하고, 총 6억원을 투입해서 금년말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정비 소하천에 대하여도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서 주변환경 개선은 물론 수질보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중에 금강수계인 부여 은산천외에 연기 미호천, 공주 유구천등에서 발생한 물고지 떼죽음등 수질사고에 대해서는 도·시·군 그리고 금강환경관리청과 합동으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수계별 책임감시자 198명을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하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상수원 주변 폐수배출업소, 축산폐수, 폐기물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상돈 (서천군)	우리 도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해 소하천정비에 따른 대책을 세워 수질오염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금강수계의 주요하천에 각종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해 물고기의 떼죽음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무방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사의 솔직담백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등 공해배출업소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서 도와 시·군에 21개반 63명의 상설기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공휴일, 야간시, 우천시등 취약시간대에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경제생활 규모가 날로 발달 할수록 쓰레기량은 증가하고 지역 이기주의는 더욱 심화되며 쓰레기 매립장의 확보가 어렵기만 한 현시점에서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하는 관계기관의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번 우리 도 천안군 풍세면 생활쓰레기 매립장에 산업특정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사태가 발견돼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공해문제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 끝으로 날로 심해져 가는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저희 도는 하루 약 2,800여톤의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이중 8%는 재활용하고, 6%는 소각처리하고, 나머지 86%인 2,400톤은 대부분 매립처리되고 있으나, 적정부지가 드물고 사업비의 과다소요로 매립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장은 추진상황은 서산시, 서천군은 조성 완료되어서 사용중에 있고, 서산군과 연기군은 공사가 완료단계에 있고 천안시, 공주시, 부여군, 홍성군 등 4개 시·군은 매립장과 소각로를 병행하는 사업을 추진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상돈 (서천군)	더욱이 많은 쓰레기가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의 위해는 물론 대기, 수질,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쓰레기의 처리문제가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입니다. 또한 각 시·군별로 이미 포화상태가 되어버린 쓰레기 매립장을 대치할 또다른 매립장 확보가 어려우며 늘어나는 쓰레기 때문에 토양이 오염되고 대기오염, 수질오염마저 심화되어 다시한번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투자와 인력배치에 미흡함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 사 환 경 국 장 노규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처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내년도까지 600억원을 투자해서 10년이상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군단위 위생매립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第32節 第85回 臨時會

Ⅰ. 概 況

1. 開會背景

○ 제8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부의하고자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4년 6월 30일 집회공고를 실시하고 94년 7월 8일 14:00에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회기 : '94. 7. 8 ~ 7. 22 (15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4. 7. 8(금) 14 : 00	본 회 의 (제 1 차)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 2. 제85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3. '94제1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설명 4. '94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94. 7. 11(월) 11 : 00	운 영 위 (1차)	1. '94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4 : 00	기획경제위 (1차)	1. '94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가. 지역경제국 소관 나. 공보관실 소관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4. 7. 11(월) 14 : 00	건 설 위 (1차)	1. '94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 나. 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	
'94. 7. 12(화) 14 : 00	기획경제위 (2차)	1. '94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가. 기획관리실 소관	
14 : 00	내 무 위 (1차)	1.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94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가. 내무국 소관	
15 : 00	교육사회위 (1차)	1. '94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14 : 00	농림수산위 (1차)	1. 충청남도농어촌특산물상설전시판매장설치 운영조례안 2. '94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가. 농정국 소관	
10 : 30	건 설 위 (2차)	1. '94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2. 태안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부두시설 재공사에 관한 청원	
'94. 7. 13(수) 10 : 00	내 무 위 (2차)	1. '94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가. 민방위국 소관 나. 소방본부 소관 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라. 계룡출장소 소관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4. 7. 13(수) 10 : 00	교육사회위 (2차)	1. '94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가. 보사환경국 소관 나. 가정복지국 소관	
10 : 00	농림수산위 (2차)	1. '94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가. 농촌진흥원 소관	
'94. 7. 14(목) 10 : 00	내 무 위 (3차)	1. '94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가. 내무국 소관 나. 민방위국 소관 다. 소방본부 소관 라.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마. 계룡출장소 소관	
'94. 7. 18(월) 11 : 00	예결특위 (1차)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94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나. 내무위원회 소관	내무위원회 회의실
'94. 7. 19(화) 10 : 00	예결특위 (2차)	1. '94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다. 건설위원회 소관	〃
'94. 7. 20(수) 10 : 00	예결특위 (3차)	1. '94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교육청) 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4. 7. 22(금) 14 : 00	예결특위 (3차)	1. '94제1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2. '94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안	

○ 비회기중 활동상황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4. 7. 1 11 : 00	운영위원회	1. 제85회 임시회 회기일정 협의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수	안 건	비 고
계	13		
조 례 안	6	1.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예 산 안	2	1. '94제1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2. '94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기 타	5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 2. 제85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3. '94제1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94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선임의 건	

4. 條例案 處理內譯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348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사 (7. 4)	내무	○양곡가공업의 등록권이 위임된 가공업에 대한 영업의 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 양곡매매업의 신고, 신고한 내용의 변경,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의 신고등을 시장·군수, 출장소장에게 위임	7. 22	7. 25	원안
351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사 (7. 11)	〃	○산림환경연구소 설치목적에 산림박물관, 수목원, 휴양림등 시설물의 운영관리 기능을 추가 ○연구소의 위치를 공주군 반포면 도남리 산21-1로 변경 ○연구소의 관장업무에 산림박물관, 온실, 수목원, 휴양림등의 시설관리와 전시자료수집, 분류, 연구 및 전시관리업무 추가	〃	〃	〃
353	충청남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본회의 상정)	○국제통상협력실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함 ○농어촌개발국과 농수산국을 농정국으로 함	〃	〃	〃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339	충청남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안	충청남도 지사 (6. 1)	농림 수산	○농어촌특산품 상설전시 판매장을 대전시 서구 둔산동 168-4 브럭에 둠 ○판매장의 기능, 판매품, 위탁, 사용료, 관리운영비, 운영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7. 22	7. 25	수정

第33節 第86回 臨時會

Ⅰ. 槪 況

1. 開會背景

○ 제8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4상반기 업무추진상황보고와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고자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4년 8월 22일 집회공고를 실시하고 94년 8월 30일 14:00에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회기 : '94. 8. 30 ~ 9. 13 (15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4. 8. 30(화) 14 : 00	본 회 의 (제 1 차)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 2. 제86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3. 충청남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4. '94상반기충청남도업무추진상황보고 5. '94상반기충청남도교육청업무추진상황보고 6. 도지사, 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7. 휴회의 건	
15 : 30	운 영 위 (1차)	1. 의회청사 확보대책의 건 2. '94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4. 8. 31(수) 11 : 00	기획경제위 (1차)	1. 상반기 업무추진상황보고 가. 공보실 소관 나.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다. 기획관리실 소관 2. 충청남도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3. 충청남도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10 : 00	내 무 위 (제1차)	1. '94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내무국 소관 나. 민방위국 소관 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 : 00	교육사회위 (1차)	1. '94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가정복지국 소관 나. 보사환경국 소관 2. 충청남도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 조례안	
10 : 00	건 설 위 (1차)	1. '94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건설도시국 소관 나. 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 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4. 9. 1(목) 11 : 00	기획경제위 (2차)	1. '94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지역경제국 소관	
10 : 00	내 무 위 (2차)	1. '94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소방본부 소관 나. 계룡출장소 소관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4. 9. 1(목) 11 : 00	교육사회위 (2차)	1.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2. '94상반기 도교육청 업무추진상황 보고	
'94. 9. 5(월) 10 : 00	농림수산위 (1차)	1. '94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 가. 농촌진흥원 소관	
'94. 9. 6(화) 10 : 30	농림수산위 (2차)	1. '94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 가. 농정국 소관	
'94. 9. 8(목) 13 : 00	내 무 위 (3차)	1. 계백무공훈장 상훈지정 건의안	
14 : 00	본 회 의 (제2차)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94. 9. 9(금) 10 : 00	도청이전 특별위원회 (제5차)	1. 도청이전관련현안사항보고	내무위 회의실
14 : 00	본 회 의 (제3차)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94. 9. 13(화) 14 : 00	본 회 의 (제4차)	1. 충청남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2. 충청남도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3.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5.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 조례안 6. 계백무공훈장상훈지정건의안 7. UR시대의한국인삼국제경쟁력확보를위한대책 건의안	

○ 비회기중 활동상황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4. 8. 18 11 : 00	운영위원회	1. 제86회 임시회 회기일정 협의 2. 충청남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3. 지방 재정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 4.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수	안 건	비 고
계	14		
조 례 안	6	1.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건 의 안	2	1. 계백무공훈장 상훈지정 건의안 2. UR시대의 한국인상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 건의안	
기 타	6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 2. 제8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94상반기 충청남도업무추진상황보고 4. '94상반기 충청남도교육청업무추진상황보고 5. 도지사,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도정질문답변	

4. 條例案 處理內譯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354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교육감 (8. 16)	교육 사회	○공무원 국외여행을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내에서 실시 ○공무원 국외여행시 신고제도 폐지 ○공무원배우자측의 경조사에도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9. 13	9. 14	원안
355	충청남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장 (8. 18)	(본회의 상정)	○의원일비를 50,000에서 60,000으로 인상 ○국내여비 지급기준 인상	8. 30	8. 30	〃
356	충청남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충청남도 지사 (8. 23)	기획 경제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 을 준용 ○사망시에는 일비의 2년분, 장애시에는 일비의 1년분을 지급 ○의원상해등의 해당여부와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를 두며 위원장(부지사)과 위원 4인을 둠	9. 13	9. 14	〃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357	충청남도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충청남도지사(8. 23)	기획경제	○시·군 상호간의 분쟁사항을 심의하기 위함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함 ○회의진행내용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함	9. 13	9. 14	원안
358	충청남도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에관한조례안	〃	교육사회	○세부적인 과태료부과금액을 규정함 ○부과된 과태료의 납부기한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방법등을 정함	〃	〃	〃
359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내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갱신허가등 8건의 사무를 시장·군수·출장소장에게 권한 위임 ○해양시설의 설치등록업무를 시장·군수에게 권한 위임함	〃	〃	〃
360	계백무공훈장상훈지정건의안	李準喆 의원외 11인	〃	○무공훈장의 명칭에 계백무공훈장을 추가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회, 총무처, 국방부에 건의함	〃	〃	수정
361	UR시대의한국인삼국제경쟁력확보를위한대책건의안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본회의 상정)	○현행 인삼사업법을 인삼사업진흥법으로 대체 제정 ○소관부서를 재무부에서 농림수산부로 이관	〃	〃	원안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인삼검사의 국가기술자격제도 도입등을 행정개혁위원회, 재무부, 농림수산부, 보건사회부에 건의함			

5. 第86回 臨時會 道政 및 敎育行政에 關한 質問 · 答辯要旨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종환 (온양시)	•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챙기고 힘써 나가야 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지방재정력을 확충하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참 지방자치란 지역의 일을 지역 사람들끼리 서로 오손도손 의논해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와같은 일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의 성패는 지방 자주재정력을 확충하는 일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충남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69.9%의 절반도 안되며 전국 15개 시 · 도중 전남 전북 다음으로 13위로써 31.4%에 불과 인건비 충당에도 급급한 실	도지사 박중배	• 자주재정력을 확충하는 문제는 우리 도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중의 하나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도에서는 재원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공업화 추진등 세원의 확충과 조세마찰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지방세제 개편을 수시로 중앙에 적극 건의하고 있고 전 공직자의 지방재정에 대한 인식과 발상을 전환함을 물론 세무공무원의 전문화를 통한 세무 행정력을 강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경영화 추세를 감안하여 경영수익사업과 공영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효율적인 지방공기업 운영등 「벌어서 알뜰히 쓴다」는 기업형 경영재정 구현을 위해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방재정 제도에 대한 지방차원의 연구와 함께 자체지원의 발굴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재정력 뒷받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종환 (온양시)	정이라고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충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주재원 확충방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공영개발사업 지구의 분양 실적을 살펴보면 '89년부터 '93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 215억원을 투자하여 조성완료된 태안 신진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현재까지 분양실적 48억원으로 17.7%의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90년도부터 '93년까지 4개년에 걸쳐 총 367억원을 투자하여 조성완료된 논산 내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현재까지 분양실적 158억원으로 분양율이 45.4%에 불과하며 '92년부터 '94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816억원을 투자하여 공사중인 천안 신부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분양실적 525억원으로 69.7%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박중배	• 김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채무부담 문제에 있어서는 기채상환 종료기간까지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사업비를 책정하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채상환 기간내 분양이 완료될 경우 채무의 상환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간내 분양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분양조건의 개선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 해 나가는 한편 수익성이 있고 지역개발에도 공헌할 수 있는 석문 국가공단조성, 대둔산 도립공원개발, 대천 종축장 부지 택지개발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균형개발과 지방 재정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부차원에서도 많은 검토를 하고있는 사항으로서 당분간은 현 체제대로 유지하고 향후 제반 여건이 성숙되면 공사로 전환해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종환 (온양시)	이에 반하여 현재 채무액은 지역개발기금 356억원, 사모공채 290억원, 교부공채 46억원, 토특융자금 50억원등 총 742억원에 달하여 연간 이자부담금만도 70여억원에 달하며 매년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어 지방재정 확충은 커녕 자칫하면 지방재정의 빚이 눈덩어처럼 불어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중배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해 드립니다.
	• 정부에서는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92년부터 '98년 까지 7개년에 걸쳐 총 42조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도의 경우에도 총 6조1,595억원을 투자,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품	농 림 국 장 임규환	• 우리 도의 낙후된 농업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경지정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는데에는 저도 김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중 농업진흥 지역은 총 11만 9,165㏊중 74.7%인 8만8,932㏊가 완료 되었고 나머지 3만233㏊는 '98년도 까지 경지정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시행시 국고보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종환 (온양시)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산비를 줄이려면 규모를 늘리고 기계를 이용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단 한푼의 경비, 단 한사람의 인건비라도 더 줄이면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 기계화 및 선진 과학영농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지정리사업은 우리 도의 경우 '93년말 현재 9만4,525㏊로 48%에 불과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는 농업도로서 경지면적이 전국의 13.4%에 해당한 2,749㎢나 되고 농업인구 또한 전 도민의 38%에 해당하는 70여만명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금년도 경지정리 사업비로 배정된 국비를 지방비 부담이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계획보다 2,588㏊를 감하여 246억원의 국비를 반납	농 림 국 장 임규환	조금 246억원을 반납하게 된 것은 지난해 가을 착수 사업시 당초에는 4,700㏊를 착공할 예정으로 조사 측량 및 설계를 실시해 본 결과 사업대상지역의 여건, 물가 인상등의 사유로 1㏊당 소요 사업비가 1,78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92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의 1㏊당 사업비 1,740만원 보다 10%가 감액된 1,514만원만 지원하고 1㏊당 266만원의 차액을 지방비로 추가 부담토록 지시되어 모두 244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현행 정액 지원 방식을 현실화 시킨 단가에 의한 보조 비율로 지원해 주는 문제와 물가 인상분을 감안해서 1㏊당 사업 단가를 현실화 시켜 줄 것등을 중앙 관계 부처에 건의했고 이는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종환 (온양시)	조치하였다고 하는데 제일 우선순위로 투자되어야 할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인 경지정리 사업비가 국고로 반납치 않으면 안될 사유와 대책을 지사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민정부 출범이후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인사는 만사" 라고 하셨는데 지방행정의 일선에서 200만 도민의 봉사자로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는 공직생활을 통한 자기 발전인 동시에 주어지는 보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관리이며 바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 20일부터 시행중인 정책보좌관 제도에 있어서 한 사람도 희망하지 않는 정책보좌관 자리를 전국 14개 시·도 총 66명중 우리도가 7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대구직할시에 있어서는 정	내무국장 이종은	• 각 시·도의 정책보좌관 수는 시·도의 실정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정하게 되므로 시·도별로 인원수에는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정책보좌관들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 활동사항은 그동안 내무, 보사, 농정, 건설 등 업무분야별로 전담 보좌관을 지정하여 도정 주요업무 추진시에 수시로 조언과 자문을 받고 있으며, 도지사 대신 시·군 에 출장하여 국·도정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사안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 평가하는 동시에 도정의지를 직접 전달 독려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인별로 연구과제를 부여한 광역행정 활성화 방안, 지방 자주재원 확충방안 등 여덟건의 정책 연구과제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연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종환 (온양시)	책보좌관이 한명도 없으며 경기, 전남 다음으로 우리도가 가장 많게 정원을 책정받게 된 배경과 이들이 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이며 4개월이 지난 현재 활용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무 국 장 이종은	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교육원에 출강과 각종 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하는 등 정책보좌관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규 (서천군)	• 금번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수산계 기술전문대학 설치령에 의하여 수산청에서 우리 도의 서천군이 수산기술 전문대학 유치에 적합하다고 우리 도에 타진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서천군이 선정된 이유는 수산청의 설립요건대로 첫째, 해안선이 연결되어 해수의 활용과 취수를 할 수 있고 둘째, 금강 하구언의 금강호가 있어 담수의 활용과 취수를 할 수 있고 셋째, 서천군과 인접지역인 군산에 수산대학에 있어서 상호간에 기술 및 학문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고 넷째, 인근지역인 군산에 수산진흥원	도지사 박중배	• 수산기술 전문대학의 유치문제에 있어서는 UR타결 이후 경쟁력있는 수산업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수산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수산청 주관으로 가칭 수산기술 전문대학 1개교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28일 수산청장으로부터 학교설립 부지의 무상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조사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는 서천, 대천, 보령, 태안지역의 5개소를 조사하여 수산청장에게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저희가 추적을 해서 가능하면 충청남도내 입지가 될수 있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송선규 (서천군)	이 있어서 관련기술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학교부지 최소한의 1만2,000평을 확보 하는데 하등의 무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 당국에서는 이러한 여건을 갖춘 서천군이 수산기술 전문대학을 유치하는데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학교의 건립 및 교육장비도 100% 국비이고, 학교운영비도 100% 국비인데다 학생전원 기숙사를 제공하고, 학생정원은 240명으로 학과도 한국수산업을 이끌 어업과, 양식과, 가공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 당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수산기술 전문대학을 유치하는데 어떠한 행정을 펴왔습니까? 도 당국에서는 우리 도의 수산교육과 5만여명의 어민을 위하여 도지사께서 추진위원장이 되어 이를 진행할	도지사 박중배	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도내 서북부지역 및 장항등 신산업지대에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도내 대학과 전문대학의 이공계 학과증원 및 신규설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송선규 (서천군)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도의 '94년도 1/4분기 어획량을 보면 총 어획량이 1만8,522톤입니다. 이 가운데 자연산 어패류가 38%인 7,060톤이고, 양식 어패류가 60%인 1만57톤이고, 내수면 어획류가 2%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1/4분기의 2만457톤보다 10.4% 감소된 것입니다. 이렇게 어획량이 감소된 이유는 우리 도에서 이루어지는 간척사업과 공단의 수질오염에서 이루어 졌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우리도 당국에서는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어민의 수익감소가 우리도의 수익감소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의 서해안 간척사업 대상면적이 37개 지구로 3억6,072만평이 됩니다.	도지사 박중배	• 먼저 서해안의 수질오염과 남획에 의한 자원의 감소로 우리도의 경우 '91년도에 9만t이었던 어획량이 '93년도에는 7만5,000t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매년 인공어초를 투하하고 수산종묘를 방류하는 등 어획량감소에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척사업등으로 인한 연안어장의 감소와 황폐화 문제에 있어서는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농지조성과 공단조성등 산업용 용지확보를 위한 해안의 매립으로 해마다 많은 어장이 감소하고 있어 어민들의 생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게 사실입니다만,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업화 시책을 함께 펴나가야 하는 현시점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간척 매립으로 감소되는 어장의 대체조성비를 부담토록 하여 대체어장 조성의 지원과 각종 수산자원의 보존 및 증식사업에 활용하는 문제를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송선규 (서천군)	이 가운데 432만6,300평이 이미 개발 완료되었고, 1억1,764만1,700평이 개발중이고, 2억3,876만1,600평이 개발계획 중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바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연안어장이 황폐화되어 어민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도 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민이 폐선을 처리할 때 충남도내에는 폐선을 처리할 폐선처리장이 단 한곳도 없는데 어디에서 폐선을 처리해야 합니까? 우리 도 당국에서는 전국에서 제일 먼저 폐선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도지사 박중배	제도화하는 방안을 계속 건의해 오고 있으며 어업용 기자재공급을 확대하고 어촌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어촌종합개발과 관광어촌 개발사업을 실시하는등 모두 16개 사업에 93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선처리를 위한 처리장설치 문제는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어민들의 이용도, 시설후 보지, 해체장비, 지원방법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어 저희가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첫째, 우리 도에서 이루어지는 시·군 통합은 4개 지역인데 통합할 시의 시청 소재지는 어디이며, 어떻게	내 무 국 장 이종은	• 우리 도내의 통합지역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주시·군을 비롯해서 4개 지역입니다. 지난 8월 20일 4개 지역 일제히 통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송선규 (서천군)	결정되어 있습니까? 둘째, 시·군을 통합할시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군청사의 활용 방법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통합으로 인한 기구와 인력 팽창으로 사용하지 않는 청사를 출장소로 할 경우, 단일 행정의 단일기구가 단일 지역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공무원과 주민이 불편을 느끼게 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민원실과 주민이 자주 사용하는 실, 과를 출장소에 설치하면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 시·군 통합은 이름만 통합일뿐 지방자치 행정에 아무런 효과도 없지 않습니까? 잉여로 발생한 청사와 부속 사무실을 내무부에서는 도서관이나 문화시설로 사용하라고 했지만, 현재의 청사로는 통합시의 청사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매매하여 새로운 청사를 신	내무국장 이종은	합시 준비단을 구성하여 현판식을 갖고 모든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 소재지의 결정은 준비단에서 양 시·군간 협의하여 청사의 규모와 여건 그리고 이용편이도 등을 종합 검토해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만 양 시·군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도에서 조정 결정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통합시별로 사무소 소재지를 결정한 곳은 없습니다. 앞으로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원만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조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시·군 통합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군 청사의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따라서 기존의 시청사나 군청사를 보수하여 주된 사무소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항구적인 청사는 통합시 발족이후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잔여 청사가 남을 경우 활용하는 문제는 별관 또는 출장소, 사업소 청사 등으로 적의 활용을 하되 그래도 남을 경우에는 도서관이나 전시실, 사료실 등 주민을 위한 문화시설 등으로 전용 활용하는 방안등 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송선규 (서천군)	축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통합시가 되었을 때 행정기구의 통합은 어떻게 이루어 집니까? 행정기구를 도시행정과 농촌행정으로 분류한다면 시·군의 통합은 아무런 효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농간 지역민의 갈등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내 무 국 장 이종은	각적으로 검토하여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송의원님께서는 출장소를 설치할 경우 행정계층이 늘어 주민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출장소의 기능상 시장의 권한을 대행 처리하는 것이므로 주민불편을 초래할 염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기구의 통합과 잉여인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시와 군기능을 하나로 통합해서 기구를 만드는 것으로 현재 내무부에서 기본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근 (당진군)	• 본 도의 서북부권 지역은 국가공단, 지방공단, 대단위 민간투자업체, 화력발전소를 비롯해서 무려 1,350여만평의 공단조성 계획들이 정부계획에 의하여 일부 가동착수·계획단계에 와있음은 서해안시대의 개막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 현장으로 특히 경인지역의 물류를 분담할 계획으로 아산만을 신산업	도지사 박중배	• 앞으로 도에서는 서북부지역에 오는 2001년까지 건설될 960만평의 공업단지와 대산~당진 배후도시, 안면도와 태안 해안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벨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통망, 용수확보 등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이 긴요하다고 판단하고, 우선 서해안 고속도로 충남구간의 조기 착공을 추진하고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천안~태안간 동서산업철도, 천안~삽교호~가로림만 ~ 안면도~대전을 연결하는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홍근 (당진군)	지대로 개발 항만, 공단 배후도시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지난 9월 6일 천안시민회관에서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설명회를 통해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볼 때 이는 충남발전의 획기적인 전기인 동시에 미래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보상 문제가 심각히 제기되고 지역 이기주의의 팽배와 또한 환경문제를 비롯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는 현재 초동단계에 있습니다만 지역민이 엄청난 공해에 시달리고 있으나 이들을 해결해 줄수 있는 기구하나 제대로 갖춰 놓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뒷받침할 수 있고 지역의 도민이 개발현장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쾌적한 환경속에서 서해안	도지사 박중배	245㎞의 서해안 산업관광도로 개설에 행정력을 모아 나가면서 해운항만청에서 2001년을 목표년도로 하여 수립중에 있는 항만 기본계획에 아산, 대산, 보령, 석문항을 국제수준의 무역항으로 건설되도록 계획에 포함시킬 예정이며, 개발에 따른 물문제 해결을 위해 보령댐은 '97년, 대청댐 단 계광역상수도사업은 '98년도까지 마무리하여 1일 104만톤의 용수를 공급하며 장기적으로 아산, 대호, A.B지구 담수호의 수질을 개선하여 1일 63만톤의 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우리 도가 서해안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주역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북부권의 개발에 따른 종합적인 조정대책기구의 설치문제는 우선 현재 기획관리실내에 설치된 지역발전담당관실을 통하여 도정개발의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케 하고, 추후 개발에 따른 행정수요를 보아 가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홍근 (당진군)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와 도의 발전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오염 문제는 최근 낙동강의 페놀오염, 암모니아 악취, 부산지역의 급수중단, 영산강의 물고기 떼죽음, 목포시의 급수중단등의 사태가 지상을 통하여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본 도에서도 지난 7월 금강을 비롯한 주요하천 36곳의 수질을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상·하류 대부분이 환경 기준치를 크게 웃돌고 있으며 일부하류 지천은 BOD 81.35ppm까지 나타나 죽은 천과 같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충청인의 젖줄인 금강의 수질악화는 대전, 충북, 충남지역의 오·폐수처리장 관리운영 부실 상태를 비롯한 74건의 감사원 감사	도지사 박중배	• 현재 우리 도 관내 금강을 비롯한 담수호 수질상태는 2급수를 약간 상회하고 있어서 낙동강변 타수계에 비하여 비교적 아직은 양호한 상태로 판정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바라는 예전의 자연상태로의 수질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의 확대는 물론 전 도민이 환경의 파수꾼이라는 인식아래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강과 각 지천, 담수호 등의 수질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신경제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생활하수, 분뇨, 공장과 축산폐수, 쓰레기등의 수질오염원 처리를 위해서 총 107개사업에 5,616억원을 투입하여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같은 투자사업과 병행하여 맑고 푸르고 깨끗한 충남 가꾸기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홍근 (당진군)	지적사항은 금강수계의 오염방지 대책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천오염원은 생활 하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의 오염원인이 있겠으나 특히 공업용 폐수는 생활오수의 34 내지 48배의 오염과 축산폐수는 소의 경우 사람의 30배, 돼지는 5배라고 하는 심각한 오염원인 동시에 쓰레기 위생매립 처리장도 대부분 고지대에 있으며, 차수막을 비롯한 시설미비로 침출수가 여과되지 않은 채 결국 소하천으로 흘러 수계의 오염의 고질적인 요인으로 등장 상당수의 하천이 회생불능 상태에 와 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해 놓은 담수의 기능을 상실케 하는 주범이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도의 종합적인 오염수질 방지대책은 무엇인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삽교호를 비롯한 도의 대단위 담수호의 수질보호 대책도	도지사 박중배	의 범 도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도민 정신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특히 대천시, 금산군, 논산군의 도심하천을 시범적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 정화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 상류 10㎞이내에는 폐수 배출업소 입지를 전면 배제하고 주변의 각종 수질오염원의 단속을 위하여 21개반 63명으로 편성된 상설기동 단속반을 연중 운영하여 공휴일, 야간, 우천시 등의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도내 전 수계별로 하천 책임 감시 공무원을 지정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5년도부터는 군부대의 지원을 받아 공익요원, 소위 방위병을 의미합니다. 187명을 배치하여 하천내에서의 환경오염을 철저히 감시함으로써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홍근 (당진군)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도내 묘지에는 공동 묘지 623개소, 공설 공원묘지 3개소, 법인 공원묘지 7개소등 총 633개소에 7,394만9,000평을 확보하고 이중 66만2,097기를 매장했습니다. 향후 26만6,849기의 소유가능면적은 통계 숫자가 말해 주고 있는 수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중 88%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공동묘지는 각 시·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나 예산부족과 관리 부실로 해방이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우리의 공동묘역은 좌향에 따라 무질서하게 내려온 관행은 묘역의 무정비 상태에 있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발전에 따라 묘역의 정비도 복지면에서 정비 개선되어야 할 요청사항으로서 현실에 적응할 수	가 정 복 지 과 장 조춘자	• 정부에서는 묘지제도의 개선과 선진화를 위해서 그간 사문화된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을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국민적 합의를 통한 개정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자연 경관의 제고를 기하고 묘지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92년도에 묘지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1단계 기간인 '93년도부터 '95년 까지 623개소의 공동묘지에 대한 경계 측량등 기본적인 사항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2단계 기간인 '96년부터 '97년 까지는 묘지를 일제 조사하여 무연 분묘를 과감히 정비하고 기존 공동묘지를 공설 공원묘지로 조성하여 도로망 정비와 주차장 시설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묘지 정비 계획에 의거 시·군별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시·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 비해 다소 부담이 되고 있어 가시적 효과를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홍근 (당진군)	있는 묘역의 정비, 특히나 도로망의 구성과 주차장 시설의 확충은 필요 불가결한 개선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의 복지행정상의 계획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 복 지 과 장 조춘자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묘역의 도로망 정비와 주차장 시설을 포함한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애로 사항을 일제히 점검하여 묘지 재정비 계획을 보완하고 국·도비 지원 방안등을 적극 모색하여 무질서한 공동 묘지가 잘 정비된 공동묘지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본도의 실업계 고등학교는 농업, 상업, 공업으로 구분되어 실업계의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발전해 가면서 농업계에서 상업계로 상업계에서 공업계로 진학을 선호하고 있음은 사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본도의 경우도 농업계 학교의 운영문제로 공업계와 병행 지도육성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현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계 학교는 지원자의 미달로 인해서 2차,	교육감 백승탁	• 상업고등학교 졸업생은 취업이 된다해도 일반 기업체나 생산현장에서 전공분야와는 거리가 멀은 부서에 근무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공고를 졸업하면 전공한대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또 취업의 문도 넓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업계 고등학교 기피와 공업계 고등학교 선호 현상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경우가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남학생의 상업고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자 상업과, 회계과, 무역과 등의 학과를 인력수요가 비교적 많고, 취업전망이 밝은 정보처리과와 사무자동학과 등으로 개편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홍근 (당진군)	3차 모집으로 정원을 충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학교 운영의 예산상에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연산이라든지 한산상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남녀 구분없이 모집하고 있는 실정속에 있으므로 상업교육의 문제를 벗어나서 지역의 문제요, 사회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실업교육에 대한 규정과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과 남학생의 지원율이 감소되고 있는 새로운 상업교육의 교육관을 정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교육감님의 견해와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백승탁	학생 모집과정에서 남학생은 대학진학률이 높고 여학생은 대학 진학률이 낮은 편입니다. 공업계는 기계를 다루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여학생의 상업계 지원율이 월등이 높아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공업계는 인력수요가 확대되는 반면 상업계는 진로는 한계에 부딪쳐 일시적으로 선호도가 낮게 나타나고는 있으나 2000년대 초기에는 유통산업이 산업구조를 주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어 그렇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산업인력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지난 '90년도 당시 인문고 대 실업고의 비율이 68:32으로 되어 있었던 것은 현재는 58:42로 실업계 고등학교를 매년 확충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본도의 실정에 맞는 수준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더욱이 상업계에 활력을 넣기 위하여 남학생들이 선호할 수 있는 산업디자인과, 관광 경영과 등으로 학과를 과감히 개편하고 단순 사무직 뿐만 아니라 유통 산업인력도 양성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교과 선택폭을 다양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교육감 백승탁	하게 확대하며 시설확충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상업교육 확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일동 (공주군)	• 유구면의 읍 승격 문제는 지역주민의 숙원인 동시에 본의원이 입후보 당시에 집권 민주자유당이 당정 협의를 거쳐 공약사업 중의 하나로 제시했던 사업입니다. 얼마 있으면 주민의 숙원인 읍으로의 승격은 실현이 되겠으나 읍으로서의 면모와 걸맞는 지역개발이 시급한 실정임을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한 바와같이 시내 중심지는 도시형태를 모방한 시가지화 되었지만 도로망과 하수도 등은 거의 정비되지 못한채 비가 조금만 와도 하수도가 범람하여 점포와 인가, 도로가 침수되며 도시계획은 되어 있으나 아직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각종 차량과 사람이 뒤섞여 교통 혼잡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이외에도 본의원은 여러차례 걸쳐 촉구한 유구면	도지사 박중배	• 정부에서는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과 관련하여 읍이 없는 통합시의 경우에는 요건에 관계없이 한 개 읍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유구면의 경우가 시·군통합에 따른 읍승격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구면에 대해서는 이미 도시기반 시설확충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29㎞중 8.8㎞에 19억원을 투자하여 시공중이고 내년도에는 약 25억원을 투자하여 간선도로의 개설 등 각종 기반시설사업을 추진 또는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수로 하여금 의지를 가지고 상하수도 시설확충 사업등 도시기반 시설을 최대한 확충할 수 있는 장단기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는 한편 도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조일동 (공주군)	개발에 대한 많은 사안이 있으나 일일이 이 자리에서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간 건의한대로 읍 승격에 어울리는 각종 시설의 개발과 정비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내 도로정비와 개설, 상·하수도의 정비, 상가개량, 불량가옥개량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지사께서는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으신지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충청남도 당국에서는 산림환경연구소에 들어갈 진입로와 진입로의 개설은 물론 계획조차 세워놓지 못하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강의 모래 채취업자가 모래 운반차량 통행용으로 임시 만들어 놓고 사용하던 도로로써 지적도상 금강변의 무적도로로 통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 정 국 장 임규환	• 산림환경연구소는 당초 유성에 있던 임업시험장을 산림박물관 건립과 더불어 기능 수행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공주군 반포면 , 도남리로 이전해서 지난 7월 15일부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진입도로가 아직 개설되지 않아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조일동 (공주군)	얼마전 개소식이 끝난 현재에도 진입로개설 예정 후보지를 4가지안 만을 가지고 이 시각까지도 확고한 계획조차 없으니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민간인이 단 몇평의 가옥을 신축하려 해도 확실한 진입로가 없으면 건축허가조차 나지를 않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본 연구소는 어떠한 이유로 진입로 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 개소식까지 할 수 있었습니까? 아직 진입로 계획조차 안된 상태에서 본의원은 4가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바탕으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연구소의 진입로는 국도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여야 하겠으며, 둘째, 연구소나 박물관의 비중으로 볼 때 진입로는 고개를 넘지 않는 경사가 없는 평탄한 길이어야 하겠	농 정 국 장 임규환	소하기 위해서 반포면 금암리에서 진입하는 노선과 대평리쪽에서 진입하는 노선 그리고 창벽로와 환경연구소 앞에 새로 개설 포장중인 지방도 608호 선에서 직접 교량을 가설하여 진입하는 노선등을 놓고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의 노선이 결정되어서 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창벽 임시도로와 대평리에서 전암리간에 버스 운행 노선, 공암리에서 도남리에 이르는 도로를 잠정적인 진입도로로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당해 지역 군수와 협의해서 농어촌 도로포장 사업 또는 군도 포장 사업과 연계해서 진입도로 개설이 빠른 시일내에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조일동 (공주군)	습니다. 세번째로, 공주 시·군민은 본 연구소와 박물관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공주시 군민이 통행하기 편리한 위치여야 하겠습니다. 인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 여부는 그 기관의 존립과 번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넷째, 본 기관이 연간 90만명 이상이라는 관광객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위치가 요구되므로 전면 교량가설을 하는 진입로를 개설하는 제4안을 적극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진입로를 개설해 주기를 바라며 지사께서는 진입로의 위치와 착공시기, 준공예정 시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충청남도 각급 학교에 재직하는 교사중 우수 교원 내지 각종 예·체능 특기 교사들이 어떠한 선을 이용하든 대전으로 전출해 가는	교육감 백승탁	• 교원의 시·도간 교류는 교원 수급의 원활을 기하고 교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교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약을 줄여야 하나 이로 인한 교원의 질적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조일동 (공주군)	사례를 보고 우리 도의 교육의 질적 저하가 심히 우려되어 본의원은 기회 있을 때마다 우수 교사나 각종 예·체능 특기자 특기 교사를 우대하여 타 시·도 전출등 도내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도내의 유능한 교사들이 부득이한 사유로 타 시·도로 전출할 때는 해당 시·도에서 그에 상응하는 실력있는 교사와 상호 교환하는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본도의 교사의 질적 저하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지난 교육청 추경예산 심의시 천안 교육 문화회관 건립문제로 각 언론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도된바 있는 본 회관을 충청남도 교육재정 형편상 125억7,000만원이나 투입하여 신축을 꼭 해야 하는지 교육에 많은 관심이 있는 인사들에 의하여 의문이 제기되는바 도의	교육감 백승탁	저하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잘아시는 것처럼 대전직할시 분리 이후 대전에 거주하면서 우리 충청남도에 재직하는 교원이 약 38%가 이르렀고, 그들은 대전시 전출을 열망하기 때문에 부득이 실적과 경력평정을 기초로한 전용 전보를 실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도의 우수한 교원이 많이 전출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교육 실적을 중시한 전용 전보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각 시·도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부부교원, 부부공무원, 국가 유공자 등의 순위에 의거해서 전보업무를 추진하되 가급적 1:1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 전입하고자 하는 교사 중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나 성행이 불량한 자, 임기지정에 조건을 붙이는 자 그리고 전입일 현재 만45세 이상인 자들을 배제하여 우수하고 모범적인 교사의 전입을 유도함으로써 교사의 질적 저하를 막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조일동 (공주군)	회의 답변을 통하여 이해할 만한 교육감의 타당한 이유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좌영 (당진군)	• 우리 민족은 참으로 천혜의 복받은 민족입니다. 지구상에서 절대로 견줄 수 없는 아름다운 산천과 기름진 땅 그리고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우리 한반도를 금수강산이라 일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수강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도 역시 세계에서 가장 맛이 뛰어나고 또 영양가도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수입업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무조건 외국 농산물을 수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소비자인 우리 국민들에게도 더욱 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외국산을 선호하니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애국심을 가지고 또 농촌과 농민을 살리	도지사 박중배	•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간 우리 농업은 보호정책속에 국내소비 위주의 생산으로 국제수준의 품질이나 가격경쟁력, 그리고 수출상대국 기호에 맞는 제품개발은 물론 전문적인 대응과 투자가 미흡하였건 것이 사실입니다만, UR타결 이후 시장개방이 예상되면서 경쟁력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현대화 된 생산시설 단지를 조성하고 국제식품 박람회의 참가와 일본, 미국, 동남아 지역등에 대한 시장개척단을 파견 확대하면서 농어민에게 수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보지를 발간 보급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도에 국제통상협력실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수출실적은 3,200만불로서 '93년도 동기보다는 19%가 증가하였으며 1차 상품보다는 수송, 보관, 통관, 검역에 유리한 가공제품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상당한 수출성과를 기대할 수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좌영 (당진군)	기 위해서 또 우리 문화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들이 건강을 위해서 맛좋고 영양가 높은 우리 농수산물 애용 운동을 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불법유통 외국 농수산물을 단속하고 있으며 우리 농수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외국산 농수산물을 수입해다 먹었을 때 국가 또는 농촌 그리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또 운동을 벌릴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중배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통상협력실에 전문요원을 채용하여 해외시장 정보수집과 분석활동을 강화하고 무역진흥공사나 농협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우리 도 농수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두번째 그간 묶여있던 농지전용 문제가 그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서 농지전용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량도 쌀은 현재 남는다고 하지만 지금같은 추세로 간다고 보면은 머지 않아 쌀도 모자랄 것으로 예견됩니다. 또한 농촌은 어디까지나	농 정 국 장 임규환	• 금년 상반기동안 농지전용허가 현황을 작년같은 기간과 대조해 말씀드리면 산업시설을 위한 전용이 288%, 농가주택 및 주거시설이 149%, 농산물 유통가공 시설이 260%, 공공부문 및 기타시설이 208% 증가된 반면에 농업용 시설은 63%가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지전용허가 규제 완화조치이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좌영 (당진군)	깨끗하고 아름답고 청정한 전원적인 공간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농촌에 불규칙하게 공장등이 들어선다고 할 때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농 정 국 장 임규환	종 생산적인 시설을 위한 전용허가가 증가 추세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무분별한 농지의 전용을 억제하고 우량농지를 보존키 위하여 그동안 시·군 담당공무원들 대상으로 관계법령 개정내용에 대해서 집중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업무편람을 제작, 업무취급시 활용토록 하는 한편 전용 허가시에는 우량농지의 전용은 최대한 억제하고 생산활동에 소요되는 농지전용은 적극 검토 처리하여 농지보존 및 이용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에 유치되는 공장도 공해문제, 농지 이용문제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요즈음 도시에서 학생들 도시락을 보면은 외국식품을 가지고 다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전히 허세를 부리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한심스럽고 안타깝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교육감 백승탁	• 우리 도에서는 현재 218개 국민학교에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학교 급식은 우리 농산품을 주로 하는 식단짜기, 식사예절 지도, 편식교정등 바른 식생활 문화 확립에 직접 기여함은 물론, 질서의식이나 환경보전 교육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교육적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좌영 (당진군)	그럼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잊어버리고 또 건강을 해치고 우리 국가 또는 농촌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말입니다. 근자에 보면 비만증환자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그렇습니다. 장차 우리 국민건강문제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전통식생활을 하면 절대로 이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근자 2주간의 국민학교 급식 메뉴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잘 짜여져 있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학생들에게 우리의 전통식생활문화 교육을 적극적으로 펼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우리 농촌은 모든 국민의 뿌리이며 농촌이 망하면 국가도 망하	교육감 백승탁	또한 '92년도에는 우리 도에서 전국 최초로 가정관리 교육관 실습 지도서를 발간하고 도내 중·고등학교에 배부하여 우리 전통예절과 고유의 식생활 문화의 계승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 고등학교에 가정관리 교육관을 남자 고등학교에는 생활관을 설치하여 예절교육과 올바른 인간교육 실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생활 개선은 학교 교육만으로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모든 학부모, 전 도민이 가정에서 보다 세심한 배려와 바른 지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좌영 (당진군)	느니만치 농촌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농업은 참으로 깨끗한 그야말로 천하지대본이란 것을 가르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김진경 (서산군)	• 석문국가공단은 상공자원부의 수도권 공해 발생업체인 염색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오다가 지역주민 및 도민의 집단민원이 되어 왔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떠하며, 어떤 종류의 기업들을 유치할 계획이며, 현재 유치계획된 기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산 석문국가공단과 대호방조제를 이어 대산 임해공단의 공업벨트가 형성되어 있는데 현재 일부 회사만 유치된 상태에서도 원자재와 생산제품의 원활한 수송이 안되어 빈번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여 이 지역의 부곡-고대-석문국가공단-대호방조제 구간의 15㎞를 4차선 산업도로로	도지사 박중배	• 지난 '91년 국가공단으로 지정된 석문국가공단은 '92년 1월 9일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서 '92년 1월 23일 우리 도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서 현재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1월 18일에 개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 실시계획에 대한 관련부처의 검토협의가 완료단계에 있어 금명간 승인되면 '9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공업단지의 조기착공을 위해서 접근수송로 2개도로 확·포장공사와 지방도 615호선의 도로개설 사업비등 기반시설 사업을 국비지원으로 추진해 주도록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석문공단의 유치대상 업종에 있어서는 국가공단이라는 특성상 우리 도의 입장과는 조금 달리 국가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일부 공해업종인 염색업종의 유치가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상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진경 (서산군)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요구한 바 있는데 우이독경이 되어지고 있지나 않나하여 답답한 심정으로 확인차원의 질문을 드립니다.	도지사 박중배	공부에서 확보요청한 30만평을 13만평으로 축소조정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 공단관리 기본계획을 승인받아 수송용 기계정밀화학, 일반기계, 조립금속, 섬유제조 업종등을 대상으로 입주업체를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김의원님께서 촉구의 말씀을 주신 부곡, 고대, 석문공단 대호방조제를 연결하는 도로의 확장문제등 '93년 4월에 국도로 지정하여 확장해 줄 것을 건설부에 건의한 결과 우리 도의 의견이 반영된 가운데 이 노선을 국도 제38호인 대산 동해선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금년 7월에 입법예고 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노선에 대해서는 국도 확·포장 계획에 따라 추진될 것입니다만, 가능한 한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서산군 대산읍의 삼성·현대 현대정유 3사의 인근 피해지역 주민들은 대산읍의 임해공단지역의 반경 3㎞이내 주민 500세대와 반경 6㎞ 이내의 2,000여 세대의 주민들은 각종 소음과 분		•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89년부터 대산지역에 대규모의 석유화학 단지가 조성되어 관련업체가 입주 가동됨에 따라서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주민들과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원만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진경 (서산군)	진, 공해등으로 인체 및 농작물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회사 차원이나 국가 차원의 이주대책 방안을 요구하는데, 현안문제를 풀기 위하여 서산군수로부터 서울대학원 환경연구팀에게 환경조사 및 실태조사를 하여 그 결과 반경 3㎞내의 주민의 농작물에 약 15%의 농작물 피해가 있어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였다는데 주민들은 인적 피해보상까지 요구하며 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또한 현대정유에서 공장확장을 위하여 30여만평의 바다를 더 막아 공장부지를 하겠다고 충청남도청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에는 연결된 지역을 매수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공장을 확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도지사 박중배	있습니다. 그동안 대산 임해공단내 3사와 주민 그리고 서산군이 협의하여 서울대학교 환경계획 연구소에 피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용역조사를 의뢰하여 지난 5월 21일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최종 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관련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피해 보상금액과 대산 3사에서 제시한 금액과의 차이가 너무나 커 그간 군에서 5차에 걸쳐 상호협의 조정을 시도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주민과 대산 3사가 상호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하여 협의조정을 유도해 나가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경오염 피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정유의 공장 확장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을 먼저 이주시키고 공장을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매립을 확정되어야 함으로 현대정유가 제출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을 현재 건설부에서 관계부처와 해당 시도에 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를 조회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건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진경 (서산군)		도지사 박중배	설부 입장과 주변 여건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여기에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 현재 농어촌에는 2,091개소의 간이급수 시설이 있고 이를 이용하는 세대는 6만5,397세대로 그 급수인원은 26만9,422명이 훌륭한 급수를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파악결과와 의견으로는 현재 2,091개 지역의 간이급수는 그 수의 90%가 지하수가 아니고 지표수로 되어 있으며 물 양이 적고 물의 질이 나빠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 많은데, 무슨 일이든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 행정을 탈피하여 진정 도민속에 확실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하여야 된다고 보며 이렇게 많은 시설을 확인 점검하여 최소한 80m이상의 지하수를 개발하여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라는데 지사의 견해와 앞	보 사 환 경 국 장 노규래	• 먼저 수질이 불량한 간이급수 시설에 대하여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 도내 농어촌 간이 상수도 시설은 '67년도 부터 설치하여 2,091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중에 지표수를 이용한 자연 유하식이 1,110개소로서 53%, 동력 양수식이 943개소로서 45%, 압축 송수식이 38개로서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어촌지역에 오염원이 없었고, 시설 투자비 저렴등으로 자연 하류식을 선호하였습니다만, '90년도 이후부터는 급격한 산업의 발달과 농어촌 지역의 산업폐수 오염등을 대비해서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간이 상수도 시설에 대하여는 지하 암반층등의 관정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지표수를 이용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연 2회 이상 정밀수질 검사를 실시하였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식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 4회 이상 수질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진경 (서산군)	으로의 보건환경의 예산지원과 더불어 대책에 대한 현명하신 답변을 바랍니다.	보 사 환 경 국 장 노규래	앞으로 간이 상수도 시설사업은 연차사업계획으로 내년도의 49개소를 비롯해서 '98년까지 총 143개소를 설치해서 농어민이 안심하고 음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우리 20개 충청남도 시·군중에 8개 시·군이 바다를 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사실인지 당진, 서산, 태안 앞바다는 물론 안면도 앞바다까지 경기도 옹진군 해역이고 전북과의 경계는 우리 서천군 앞바다까지 전북의 옥구군 옥동면의 해역이 되어 바다의 경계는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데 지사는 이 문제를 그냥 옛날의 문제라고 방치하고 계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 문제를 연구하여 문제해결의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 200만 도민의 자존심과 생존의 문제이므로 소신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많은 어민들이 살기 위해서 바다에 배를 띄우면 자	농 정 국 장 임규환	• 현행법상 행정구역은 육지와 섬에만 적용되고 있을뿐 해면에 관해서는 명시된바 없으며 국립지리원에서도 지형도상의 해상경계는 섬의 소속을 해독할 수 있도록 적당한 위치에 경계를 표시한데 불과하며 지형도상에 표시된 해상경계를 행정구역 경계로 볼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만, 어업권상의 관할권과 관련해서 육지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어업권상의 관할구역으로 설정, 운영되고 있어 아직까지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연안어민들의 어로활동을 지원하고 인접도 어민들과의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차에 걸쳐 중앙관련부처에 건의하여 관련 시·도와 해상도계 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만, 관련지역 어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현행 해상도계가 조정될 때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진경 (서산군)	기도 모르는 사이에 경기도 앞바다나 전북 앞바다로 갑니다. 그러면 타지역으로 들어 왔다고 해서 고발되는 일이 너무 많고, 경기도나 전북에서는 어업법 제17조를 적용하여 벌금으로 대처하는데, 어찌하여 내가 살고 있는 본도의 수산과로 이첩되면 어업법 제47조를 적용하여 어업허가권을 취소하는등 가혹한 처벌을 일삼고 있는가 또한 모든 어민들이 집앞의 좋은 여건의 바다를 활용, 살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도 그 지역의 장래 개발이나 허가 이후의 다른 피해보상을 바란다는 이유로 그 불쌍한 어민들의 생존에 지도와 편의는 커녕 공직자의 안일무사한 생각과 직무유기만을 일삼고 있는가?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 정 국 장 임규환	까지 우리도 어민들이 타 도의 조업구역 침범으로 인한 어업허가 취소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업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불합리한 해상도계가 조속히 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내에서는 현재 연안어업은 총 7,380건을 허가해주어 현재 조업중에 있으며 앞으로 가급적이면 어민들의 생활터전이 마련되도록 계속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15개 교육청별로 보면 도시근교 학교에도 벽지학교	교육감 백승탁	• 도서벽지 수당과 부가점수는 도서벽지 교육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진경 (서산군)	로 선정되어 있는가 하면 진정 낙도학교나 벽지학교에서 근무해온 선생님들에게 벽지수당과 고과점수를 주지 않은 사례가 있어 민원이 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문제된 곳을 밝히고 문제해결에 대한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5개 교육청별로 보며 낙도·오지 학교수를 밝힙니다.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는 섬인 무인도가 222개, 유인도가 37개 섬으로 섬을 낀 교육청이 15개 교육청중 대천, 서천, 홍성, 당진, 서산, 태안 6개 교육청이 바다와 섬을끼고 있어 섬마을엔 5개의 국민학교와 1개의 중학교 그리고 분교 및 교육장이 17개 교가 있는데, 섬 학교를 폐쇄할 것으로 계획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섬마을 학부형이나 학생, 주민들은 안보차원 및 통일 차원에서 선생님들은 마을 모든 일의 선구자로서 꼭 학교가 교육 예산	교육감 백승탁	교원에 대하여 공무원 수당 규정과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85년부터 낙도 지역 일부 분교장을 폐쇄하고 교육장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금년 도서벽지 교육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시 교육장은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삭제됨으로써 교육장에 근무하는 교원의 수당과 부가점수의 적용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교원의 사기진작과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재정상의 문제점을 감수하면서 지난 9월 1일자로 교육장을 분교장으로 변경하여 교육장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미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또는 도서지역의 영세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교육 과정 운영에 정상화와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중장기 학생 수용 계획을 검토하고 지역 주민과 학부모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고 일방적인 통·폐합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진경 (서산군)	절감만 내세우지 말고 오지벽지 낙도의 발전과 삶의 희망을 갖도록 학교를 존치하여 주실 것을 섬마을 주민들은 갈구하고 있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교육감 백승탁	앞으로도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第34節 第87回 臨時會

Ⅰ. 槪 況

1. 開會背景

○ 제8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3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과 조례안을 부의하고자 94년 10월 6일 집회공고를 실시하고 94년 10월 14일 14:00에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회기 : '94. 10. 14 ~ 10. 27 (14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4. 10. 14(금) 14 : 00	본 회 의 (제 1 차)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 2. 제8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3.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94. 10. 17(월) 13 : 20	운 영 위 (1차)	1. 제88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회기일정협의의 건 2. '93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 : 00	기획경제위 (1차)	1. '93충청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관리실 소관 나. 지역경제국 소관 다. 공보관실 소관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4. 10. 17(월) 11 : 00	기획경제위 (1차)	2. '93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충청남도정신문조례안 4.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4 : 00	내 무 위 (1차)	1. '93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내무국 소관 2. '93충청남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가. 내무국 소관 3. 충청남도백제권문화개발사업소조례안 4. 충청남도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조례안 5.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14 : 00	교육사회위 (1차)	1. '93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가. 보사환경국 소관	
11 : 00	농림수산위 (1차)	1. '93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가. 농정국 소관 2. '93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농정국 소관	
'94. 10. 18(화) 10 : 00	내 무 위 (2차)	1. '93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가. 민방위국 소관 나. 계룡출장소 소관 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 '93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계룡출장소 소관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4. 10. 18(화) 10 : 00	내 무 위 (2차)	3. '93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가. 소방본부 소관 4.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10 : 00	교육사회위 (2차)	1. '93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가. 가정복지국 소관 2.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93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4 : 00	농림수산위 (2차)	1. '93충청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농촌진흥원 소관	
'94.10.19(수) 14 : 00	내 무 위 (3차)	1. 충청남도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 2. '94 제2회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	
10 : 00	건 설 위 (1차)	1. '93 충청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 나. 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 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라. 소방본부 소관	
'94.10.24(월) 11 : 00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93충청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4. '93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4.10.25(화) 10 : 00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1. '93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94.10.27(목) 10 : 00	내무위원회	1. 행정구역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요청의 건	
11 : 00	본 회 의 (제2차)	1. '93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2. '93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3. '93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4. 충청남도정신문조례안 5.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안 6.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조례안 7. 충청남도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조례안 8.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남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 11. 충청남도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 12.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충청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14.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요청의 건	

○ 비회기중 활동상황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4. 10. 6(목) 11 : 00	운영위원회	1. 제87회 임시회 회기일정 협의 2. '94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협의 3. 충청남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수	안 건	비 고
계	18		
조 례 안	12	1.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예 산 안 (결 산 안)	3	1. '93충청남도결산승인의 건 2. '93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3. '93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기 타	3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 2. 제8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4. 條例案 處理內譯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362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 조례중개정조 례안	趙吉衍 의원외 19인 (9. 30)	의회 운영	○감사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연장 ○감사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중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되지 않은 지방공사공단을 제외하고 도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추가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정하지 않은 국가사무를 감사대상사무에 포함 ○증언·진술을 거부하거나 불출석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및 허위증언자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함	10.14	10.14	원안
366	충청남도교육 위원회교육위 원일비및여비 지급에관한조 례중개정조례 안	충청남도 교육감 (10. 4)	교육 사회	○일비를 50,000원에서 60,000원으로 조정 ○국내·국외여비의 지급기준을 조정함	10.27	10.28	〃
367	충청남도정신 문조례안	충청남도 지사 (10. 8)	기획 경제	○발행횟수를 월1회에서 순보로 발행	〃	〃	수정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15인 이내의 편집위원을 두도록 함 ○도정신문 상임편집위원 2인을 두며 도정신문발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토록함			
368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충청남도지사 (10. 8)	기획경제	○수입은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금, 기채, 선수금, 기타 수입금으로 함 ○세출은 토지매입비, 개발사업비, 기타개발에 필요한 경비로 함	10.27	10.28	원안
369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내무	○어선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 ○지하수개발등의 업무를 시장·군수와 계룡출장소장에게 위임	〃	〃	〃
370	충청남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 "1가구2주택" 에 해당하는 주택분양자의 명확한 규정을 정함 →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 자매인 가족	〃	〃	〃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371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사 (10. 8)	내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5인이내" 에서 "5인이상 10인이하" 로 함 ○일비를 5만원에서 6만원으로 함	10.27	10.28	원안
372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	○천재지변등의 사고발생시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 기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함 ○농경지의 대부료를 현행보다 3분의 1수준으로 인하 ○대부료 연체요율을 17%에서 15%로 인하 ○변상금 납기지연에 대해서 연 15% 연체요율 적용	〃	〃	〃
373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의용소방대의 설치를 시지역은 소방서장이, 군지역은 군수가 설치토록 함 ○군지역 소방대장은 군수가 임명하고 예산도 편성운영함 ○출동수당을 인상함	〃	〃	〃
374	충청남도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을 소속기관별로 편성 운영토록 함 ○소속기관별로 장학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	〃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376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조례안	충청남도지사 (10. 13)	내무	○설치목적, 위치, 관장업무를 정함 ○소장은 부이사관으로 함 ○'98.12.31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함	10.27	10.28	원안
377	충청남도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조례안	〃	〃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의 설치목적, 위치·관장사무를 정함 ○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함 ○'97.6.30까지 한시적 설치 ○충청남도보령댐사업소 설치 조례는 폐지함	〃	〃	〃
363	'93충청남도결산승인의건	충청남도지사 (10. 1)	예 산 결 산 특 별 위원회	○세입세출결산 • 일반회계 ┌ 세입:5,268억6천9백만원 ├ 세출:4,756억2백만원 └ 잉여금:512억6천7백만원 • 특별회계 ┌ 세입:1,584억2천3백만원 ├ 세출:1,510억7백만원 └ 잉여금:74억1천6백만원 • 계속비 : '93년 최종부과액 지출없음 • 채권현재액:1,824억9천만원 • 채무현재액:2,876억3백만원	〃	〃	〃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공기업 회계 • 재산총액 : 3,560억8백만원 • 부담총액 : 3,231억6천 5백만원 • 자본총액 : 328억4천3백만원 ○기금 : 235억8백만원			
364	'93충청남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충청남도 지사 (10. 1)	예 산 결 산 특 별 위원회	○일반회계 : 11억1천6백만원 ○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 4천7백만원 ○계룡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 5억1천5백만원	10.27	10.28	원안
365	'93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충청남도 교육감 (10. 4)	〃	○교육비특별회계 - 세입 : 6,793억3천4백만원 - 세출 : 6,027천4천2백만원 - 잉여금 :765억2천2백만원 • 계속비 : 없음 • 채권현재액 : 105만원 • 채무현재액 : 없음	〃	〃	〃

第35節 第88回 臨時會

Ⅰ. 槪 況

1. 開會背景

○ 제8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金顯根의원외 18인으로부터 '94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의결과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94년 10월 25일 집회공고를 실시하고 94년 11월 7일 14:00에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회기 : '94. 11. 7 ~ 11. 11 (5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4. 11. 7(월) 14 : 00	본 회 의 (제 1 차)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 2. 제8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3. '94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 건 4. 휴회의 건	
16 : 00	운 영 위 (1차)	1. 제89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회기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3.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 조정협의의 건 4.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협의의 건 5. '94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 및 보고요구의 건	
15 : 00	기 경 위 (1차)	1.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4. 11. 7(월) 15 : 00	내 무 위 (1차)	1. '94제2회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2. '94제3회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3.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협의의 건 4. '94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인출석 및 보고요구의 건 5. '94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6.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94행정사무감사 대상의 건	
15 : 00	교 사 위 (1차)	1. 충청남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 : 00	농 림 위 (1차)	1. 충청남도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4. 11. 8(화) 11 : 00	교 사 위 (2차)	1. 충청남도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공업계고등학교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 3.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협의의 건 5. '94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및 보고요구의 건 6. '94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요구의 건 7.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94충청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특정사안 채택의 건	
'94.11.11(금) 11 : 00	기 경 위 (2차)	1. '94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 2. '94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인출석 및 보고요구의 건 3. '94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4.11.11(금) 11 : 00	농림수산 위 원 회 (제2차)	1.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 건 2. '94행정사무감사에따른관계인출석및보고 요구의 건 3. '94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 건	
11 : 00	건설위원회 (제1차)	1.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 건 2. '94행정사무감사에따른관계인출석및보고 요구의 건 3. '94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 건	
14 : 00	본 회 의 (제2차)	1.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 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 9. 충청남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충청남도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11. 충청남도소규모양곡가공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 조례폐지조례안 12. 충청남도공업계고등학교기계공동실습소설치 조례안 13.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4.11.11(금) 14 : 00	본 회 의 (제2차)	14. '94년도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 15. 본회의의결을요하는'94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기획경제위원회소관) 16. 본회의의결을요하는'94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 승인의건(교육 · 사회위원회소관) 17.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6건)	

○ 비회기중 활동상황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4. 11. 4 11 : 00	조례정비 특 위 (5차)	○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청남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청남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청남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청남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7 건의 조례안 제 의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수	안 건	비 고
계	19		
조 례 안	13	1.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동의승인안	4	1.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 건(교육청) 2.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 건(운수연수원) 3.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6건) 4. '94제2회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기 타	2	1. 제8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94행정사무감사실시시간 및 기간 결정의 건	

4. 條例案 處理內譯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379	충청남도공업계고등학교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	충청남도 교육감 (10. 24)	교육 사회	○공업계고등학교 학생에게 최신 실습기자재에 대한 이론 및 실습교육과 교사의 특별연수를 위하여 연무대 기계공업고등학교에 설치함 ○소장 및 부소장, 하부조직, 수당, 예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	11.11	11.12	원안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380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교육감 (10. 24)	교육 사회	○신설학교의 학교명칭과 위치 기입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으로 개편된 학교의 학교명칭과 위치를 삭제 또는 변경 ○고등학교 학과개편으로 인한 교명 변경	11.11	11.12	수정
381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	충청남도 지사 (11. 2)	기획 경제	○백제문화권개발사업에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참여시켜 사업시행상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국민적 공감대하에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함 ○목적, 구성, 위원장의 직무기능, 의원의 해촉, 회의, 간사, 실비보상등을 정함	〃	〃	원안
382	충청남도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	교육 사회	○기금조성을 지방세 수입액에서 적립하던 것을 앞으로는 적립금과 이자수익금으로 함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생활보호기금 계좌를 설치하고,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높은 금융기관에	〃	〃	〃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정부보증 채권을 매입 관리 ○도지사는 기금의 운용결산서를 다음연도 4월말까지 도의회에 제출			
383	충청남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사 (11. 2)	교육사회	○시설의 사용허가권자 및 허가시설의 타인양도 또는 전대의 허가권자를 관장으로 규정하고 허가시설의 사용제한에 대하여 규정 ○여성회관 사용료 및 수수료를 원가수준으로 인상 조정함	11.11	11.12	수정
384	충청남도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농림수산	○양곡관리법의 개정으로 정수규정이 등록제로 전환되었으며 관계 법령으로도 등록업무가 가능하여 폐지함	〃	〃	원안
386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11. 4)	(본회의 상정)	○의료원장 임면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임면 하였으나 사무위임에 의해 도지사가 임면하게 됨	〃	〃	〃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387	충청남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11.4)	(본회의상정)	○일정한 시점의 표기시 "로" 자는 사용되지 않으며 부적합한 자구를 정리함	11.11	11.12	원안
388	충청남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	○부적합한 자구의 정리로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함	〃	〃	〃
389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약어로 표기되어 있어 바로 잡음 ○기금출납명령관을 직제에 맞도록 바로잡음	〃	〃	〃
390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	○별표의 순번번호를 바로 잡음	〃	〃	〃
391	충청남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	〃	○간사 및 서기의 직명을 현직제에 맞도록 바로 잡음	〃	〃	〃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392	충청남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11. 4)	(본회의 상정)	○서기의 직명을 현직제에 맞도록 바로 잡음	11.11	11.12	원안
393	본회의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11. 10)	〃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본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	〃
394	본회의의결을 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운수연수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11. 11)	〃	〃	〃	〃	〃
395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6건)	각상임위원회위원장 (의장) (11. 11)	〃	○각 위원회별로 감가실시를 위해 본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	〃
385	'94년도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각상임위원회위원장 (의장) (10. 8)	내무	○취득재산(토지) 4필지 8,614㎡ 95,351천원 ○처분재산(토지) 3필지 15,655㎡ 37,659천원	〃	〃	〃

第36節 第89回 定期會

Ⅰ. 概 況

1. 開會背景

○ 제89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11월 21일 11 : 00에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회기 : '94. 11. 21 ~ 12. 30 (40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4. 11. 21(월) 11 : 00	본 회 의 (제1차)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 2. 제89회충청남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 3. '95충청남도예산안에대한도정연설 4. '95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교육시책 연설 5. 도지사, 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14 : 00	기획경제위 (1일차)	1. '94행정사무감사 가. 공보관실 소관 나. 국제통상협력실소관	
14 : 00	내 무 위 (1일차)	1. 행정사무감사 가. 내무국 소관	
14 : 00	교육사회위 (1일차)	1. '94행정사무감사 가. 보건환경국 소관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4. 11. 21(월) 14 : 00	농림수산위 (1일차))	1. '94행정사무감사 가. 농정국 소관	
14 : 00	건 설 위 (1일차)	1. '94행정사무감사 가. 건설도시국 소관	
'94. 11. 22(화) 10 : 00	기획경제위 (2일차)	1. '94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관리실 소관	
10 : 00	내 무 위 (2일차)	1. '94행정사무감사 가. 민방위국 소관 나. 소방본부 소관	
14 : 00	교육사회위 (2일차)	1. '94행정사무감사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 : 00	농림수산위 (2일차)	1. '94행정사무감사 가. 농정국소관(농민교육원, 농산물원종장, 잠업검사소, 종축장, 가축위생시험소, 내수면개발시험장, 산림환경연구소, 휴양림관리사무소)	
10 : 00	건 설 위 (2일차)	1. '94행정사무감사 가. 건설도시국 소관	
'94.11.23(수) 11 : 00	기획경제위 (3일차)	1. '94행정사무감사 가. 지역경제국 소관	
10 : 30	내 무 위 (3일차)	1. '94행정사무감사 가. 천안소방서 소관 나. 소방학교 소관 다. 온양소방서 소관	현지회의실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4. 11. 23(수) 10 : 00	교육사회위 (3일차)	1. '94행정사무감사 가. 여성회관 소관 나. 가정복지국 소관	여성회관회의실
11 : 00	농림수산위 (3일차)	1. '94행정사무감사 가. 농촌진흥원 소관(딸기, 토마토, 구기자, 백합, 국화 시험장)	
11 : 00	건 설 위 (3일차)	1. '94행정사무감사 가. 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 나.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도로관리사업소 회 의 실
'94.11.24(목) 11 : 00	기획경제위 (4일차)	1. '94행정사무감사 가. 지방공사 서산의료원 나. 현지확인 (서산군고북, 성연공업단지)	서산의료원회의실
09 : 30	내 무 위 (4일차)	1. '94행정사무감사 가.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나. 계룡출장소 소관 다. 현지확인 (공주소방서, 자연학습원)	교육원회의실 계룡출장소회의실
10 : 00	교육사회위 (4일차)	1. '94행정사무감사 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청회의실
09 : 00	건 설 위 (4일차)	1. '94행정사무감사 가. 현지확인(연기 · 부여 · 청양골재채취 장, 연기와촌공단조성사업예정지)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4.11.25(금) 10 : 00	기획경제위 (5일차)	1. '94행정사무감사 가. 현지확인(태안군 태안농공단지) 나. 현지확인(안면도관광지개발지역)	
11 : 00	내 무 위 (5일차)	1. '94행정사무감사 가. 현지확인(대천 · 서산소방서)	
10 : 00	교육사회위 (5일차)	1. '94행정사무감사 가. 충청남도교육청(온양교육청)	온양교육청 회 의 실
10 : 00	건 설 위 (5일차)	1. '94행정사무감사 가. 현지확인(당진군 석문-고대간 도로공사 현장, 당진천 하천개수공사현장, 태안신진지구 부두보강 공사현장, 태안군골재채취장)	
'94.11.26(토)	기획경제위 (6일차)	1. 예비시간 및 감사자료 검토	
	내 무 위 (6일차)	1. 예비시간 및 필요시 현지확인	
	교육사회위 (6일차)	1. 예비시간 및 감사자료 검토	
	건 설 위 (6일차)	1. 예비시간 및 감사자료 검토	
'94.11.28(월) 10 : 00 14 : 40 16 : 30	기획경제위 (7일차)	1. '94행정사무감사 가. 지방공사공주의료원 소관 나. 현지확인 - 공주시 검상농공단지 - 공주군 정안농공단지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4.11.28(월) 14 : 00	내 무 위 (7일차)	1. '94행정사무감사 가. 내무국 소관	
11 : 00	교육사회위 (7일차)	1. '94행정사무감사 가. 지방공사천안의료원 소관	천안의료원 회 의 실
11 : 00	농림수산위 (6일차)	1. '94행정사무감사 가. 현지확인 - 청양군 칠갑산 산림훼손지 - 부여읍 군수리 왕포, 세도면 청포리 청포 경지정리 지구	
11 : 00	건 설 위 (7일차)	1. '94행정사무감사 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4.11.29(화) 11 : 00	기획경제위 (8일차)	1. '94행정사무감사 가. 지방공사 홍성의료원 나. 현지확인 - 홍성군 구항농공단지	홍성의료원 회 의 실
10 : 00	내 무 위 (8일차)	1. '94행정사무감사 가. 내무국 소관 나. 계룡출장소 소관	
14 : 10	농림수산위 (5일차)	1. '94행정사무감사 가. 현지확인 - 서천군 서면 인공어초 시설지	
14 : 00	건 설 위 (8일차)	1. 행정사무감사 가. 건설도시국 소관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4.11.30(수) 11 : 00	운영위원회	1. '94행정사무감사 가. 의회사무처 소관	기획경제위 회 의 실
'94.12.1(목) 14 : 00	본 회 의 (제2차)	1. 추곡수매량확대및수매가인상에관한건의안 2.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94.12.3(토) 11 : 00	본 회 의 (제3차)	1. '94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2. '94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94.12.5(월) 10 : 00	운영위원회	1. '95충청남도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94제2회충청남도추경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3.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내 무 위 회 의 실
11 : 00	기획경제 위 원 회 (1 차)	1. 충남발전연구원육성조례안 2. '95충청남도예산안 가. 공보관실 소관 나.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3. '94제2회충청남도추경예산안 가. 공보관실 소관 나.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4. 충청남도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	
14 : 00	내 무 위 (1차)	1. '95충청남도예산안 가. 내무국 소관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4. 12. 5(월) 14 : 00	내 무 위 (1차)	2. '94제2회충청남도추경예산안 가. 내무국 소관	
11 : 00	교육사회위 (1차)	1. '95충청남도예산안 가. 보사환경국 소관 2. '94제2회충청남도추경예산안 가. 보사환경국 소관	
11 : 00	농림수산위 (1차)	1. '95충청남도예산안 가. 농정국 소관 2. '94제2회충청남도추경예산안 가. 농정국 소관	
11 : 00	건 설 위 (1차)	1. '95충청남도예산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 2. '94제2회충청남도추경예산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	
'94. 12. 6(화) 10 : 00	기획경제위 (2차)	1. '95충청남도예산안 가. 기획관리실 소관 2. '94제2회충청남도추경예산안 가. 기획관리실 소관	
10 : 00	내 무 위 (2차)	1. '95충청남도예산안 가. 내무국 소관 나. 민방위국 소관 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라. 소방본부 소관 2. '94제2회충청남도추경예산안 가. 내무국 소관 나. 민방위국 소관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4. 12. 6(화) 10 : 00	내 무 위 (2차)	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라. 소방본부 소관 3. '94제3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 4. '94제4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 : 00	교육사회위 (2차)	1. '95충청남도예산안 가. 가정복지국 소관 2. '94제2회충청남도추경예산안 가. 가정복지국 소관	
09 : 30	농림수산위 (2차)	1. '95충청남도예산안 가. 농정국 소관 2. '94제2회충청남도추경예산안 가. 농정국 소관	
10 : 00	건 설 위 (2차)	1. '95충청남도예산안 가. 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 나.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2. '94제2회충청남도추경예산안 가. 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 나.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4. 12. 7(수) 10 : 00	기획경제위 (3차)	1. '95충청남도예산안 가. 지역경제국 소관 2. '94제2회충청남도추경예산안 가. 지역경제국 소관	
10 : 00	내 무 위 (3차)	1. '95충청남도예산안 가. 계룡출장소 소관 2. '94제2회충청남도추경예산안 가. 계룡출장소 소관 3. '94제5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4. 12. 7(수) 10 : 00	교육사회위 (3차)	1. '95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2. '94제3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09 : 30	농림수산위 (3차)	1. '95충청남도예산안 가. 농촌진흥원 소관 2. '94제2회충청남도추경예산안 가. 농촌진흥원 소관	
'94. 12. 12(월) 11 : 00	예결특위 (1차)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95충청남도예산안 4. '94제2회충청남도추경예산안 5. '95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6. '94제3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7. 소위원회구성의 건	제1회의실
16 : 00	예결특위 제1소위 (1차)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제1회의실
16 : 20	예결특위 제2소위 (1차)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제1회의실
'94. 12. 13(화) 10 : 00	예결특위 제1소위 (2차)	1. '95충청남도예산안 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나. 내무위원회 소관 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라.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내 무 위 회 의 실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4. 12. 13(화) 10 : 00	예결특위 제1소위 (2차)	2. '94제2회충청남도추경예산안 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나. 내무위원회 소관 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라.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내 무 위 회 의 실
10 : 00	예결특위 제2소위 (2차)	1. '95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2. '94제3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 계수조정	교 사 위 회 의 실
'94. 12. 14(수) 10 : 00	예결특위 제1소위 (3차)	1. '95충청남도예산안 가. 건설위원회 소관 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 '94제2회충청남도추경예산안 가. 건설위원회 소관 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내무위원회 회 의 실
'94. 12. 15(목) 11 : 00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 차)	1. '95충청남도예산안 2. '94제2회충청남도추경예산안 3. '95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4. '94제3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 소위원회 심사결과보고, 의결	제1회의실
'94. 12. 16(금) 10 : 30	서해안개발 특별위원회 (6 차)	1. 서해안개발사업 추진상황보고	기 획 경 제 위 회 의 실
14 : 00	본 회 의 (제4차)	1. '95충청남도예산안 2. '94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4. 12. 16(금) 14 : 00	본 회 의 (제4차)	3. '95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4. '94제3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5. 충남발전연구원육성조례안 6. 충청남도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94제3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 8. '94제4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 '94제5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 휴회의 건	
'94.12.27(화) 11 : 00	기획경제 위 원 회 (4차)	1. 충청남도기업인대상조례안 2. '94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 : 00	내 무 위 (4차)	1. 충청남도세감면조례안 2.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95도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8. '94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 : 00	교육사회위 (5 차)	1. 충청남도청소년대상조례안 2. 충청남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3.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공공도서관설치 및 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94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4.12.27(화) 11 : 00	농림수산위 (4 차)	1. '9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 : 00	건 설 위 (3 차)	1.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보령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3. '9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94.12.30(금) 10 : 00	예결특위 (3 차)	1. '94제3회충청남도추경예산안	내무위 회의실
11 : 00	본 회 의 (제5차)	1. '94제3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기업인대상조례안 4.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안 5.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충청남도청소년대상조례안 11. 충청남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12.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충청남도보령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4. 충청남도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충청남도교육 · 학예에관한공공도서관설치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95도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7. '9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5건)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수	안 건	비 고
계	35		
조 례 안	16	1.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예 산 안 (결 산 안)	5	1. '95충청남도예산안 2. '94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3. '94제3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4. '95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5. '94제3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건 의 안	1	1. 추곡수매량확대및수매가인상에관한건의안	
동의승인안	4	1. '93제3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 건 2. '94제4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3. '94제5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4. '95도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기 타	9	1. 제89회충청남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 2. '95충청남도예산안에대한도정연설 3. '95충청남도교육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교육시책연설 4. 도지사 · 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6. '94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7. '94제3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9. '9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5건)	

4. 條例案 處理內譯

<table>
<tr><th>의안
번호</th><th>의 안</th><th>제안자
(제안일)</th><th>소 관
위원회</th><th>주 요 내 용</th><th>의결일</th><th>이송일</th><th>비고</th></tr>
<tr><td>397</td><td>'95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
계예산안</td><td>충청남도
교육감
(11.11)</td><td>예산
결산
특위</td><td>(단위:억원)
<table><tr><th>구분</th><th>예 산
요구액</th><th>증감액</th><th>의결액</th></tr><tr><td>세입</td><td>7,289</td><td>0</td><td>7,289</td></tr><tr><td>세출</td><td>7,289</td><td>7</td><td>7,289</td></tr></table></td><td>12.16</td><td>12.16</td><td>수정</td></tr>
<tr><td>398</td><td>'94제3회충청
남도교육비특
별회계추가경
정예산안</td><td>〃</td><td>〃</td><td>(단위:억원)
<table><tr><th>구분</th><th>예 산
요구액</th><th>증감
액</th><th>의결액</th></tr><tr><td>세입</td><td>706,376</td><td>0</td><td>706,376</td></tr><tr><td>세출</td><td>706,376</td><td>0</td><td>706,376</td></tr></table></td><td>〃</td><td>〃</td><td>원안</td></tr>
<tr><td>401</td><td>추곡수매량확
대및수매가인
상에관한건의
안</td><td>농림수산
위원회
위원장
(11.25)</td><td>(본회의
상정)</td><td>○추곡수매량 1,100만석 확대와 수매가 10% 인상을 국회, 경제기획원, 농림수산부, 민자당, 민주당에 건의함</td><td>12.1</td><td>12.1</td><td>〃</td></tr>
<tr><td>402</td><td>충청발전연구
원육성조례안</td><td>충청남도
지사
(11.26)</td><td>기획
경제</td><td>○연구원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매회계년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승인토록 함</td><td>12.16</td><td>12.16</td><td>〃</td></tr>
<tr><td>403</td><td>충청남도국제
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중개
정조례안</td><td>〃</td><td>〃</td><td>○협의회의 심의대상에 「UR 극복을 위한 농업정책 및 우리 농산물 수산진흥과 국제통상진흥에 관한 사항」을</td><td>〃</td><td>〃</td><td>수정</td></tr>
</table>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추가함 ○협의회의 구성인원을 15인에서 20인으로 확대 구성함 ○위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를 분기1회 하던 것을 년2회로 함			
385	'94년도제3회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충청남도지사 (11.2)	내무	○취득 •토지 4필지 8,614㎡ 95,351천원 •선박 1척 60톤 960,000천원 ○처분 •토지 3필지 84,926㎡ 244,191천원	12.16	12.16	수정
409	'94년도제4회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충청남도지사 (11.26)	〃	○취득 •토지 1필지 180㎡ 5,581천원 ○처분 •토지 2필지 8,822㎡ 190,555천원	〃	〃	원안
412	'94년도제5회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충청남도지사 (12.5)	〃	○취득 •토지 1필지 2,480㎡ 800,000천원	〃	〃	〃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410	'95도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충청남도지사(11. 26)	내무	○취득 • 토지 208필지 561,823㎡ 2,400,675천원 • 건물 8동 13,698㎡ 11,194,701천원 ○처분 • 토지 11필지 10,322㎡ 1,256,232천원 ○건물 21동 1,350㎡ 111,737천원	12.30	12.30	수정
417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장 (12.5)	(본회의 상정)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함 ○건설위원회소관 보령댐건설사업소를 삭제함	〃	〃	원안
418	충청남도기업인대상조례안	충청남도지사(12.19)	기획 경제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구축등에 공이 많은 자에게 수여하는 기업인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충청남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체로서 수상대상 범위를 정하도록 함	〃	〃	수정
420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안	〃	내무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단체, 음성나환자등이 취득·소유하는 부동산등에 대하여 취득세·	〃	〃	〃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등록세 및 공공시설세를 면제함 ○종교단체의 의료원·의료취약지구내 의료업, 사회교육시설 및 사립학교의 교육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함			
404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사 (11.26)	내무	○시장·군수에게 위임 처리하도록 한 신고체육시설업에 관한 업무의 근거법 조항을 개정법령에 맞도록 함	12.30	12.30	원안
413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사 (12.5)	〃	○나병에 대한 등록관리업무 등을 나관리전문기관인 대한나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에 위탁하고 위탁에 따른 경비를 보조토록 함	〃	〃	〃
405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사 (11.26)	〃	○도민생활 관련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에 대응하고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수수료 규정을 응익주의에 입각하여 현실과 적합하게 행정정보공개와 관련된 수수료 요율을 정함	〃	〃	〃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406	충청남도물품 관리조례중개 정조례안	충청남도 지사 (11.26)	내무	○모든 비품적 성격의 물품구입은 물품출납원과 경리관의 심사를 거쳐 구입 ○불용품의 매각시 감정하여야할 장부상 가격을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의 비치장부중 소모품대장을 삭제함	12.30	12.30	원안
419	충청남도공영 개발사업단설 치조례중개정 조례안	충청남도 지사 (12.19)	〃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시한을 '95.12.31까지 1년 연장함	〃	〃	〃
414	충청남도청소 년대상조례안	충청남도 지사 (12.5)	교육 사회	○수상대상자 : 도내 3년이상 거주자로 9~24세 청소년 ○수상부문 : 건강, 정서, 용기, 예절, 협동, 긍지 ○추천 : 각급 학교장 또는 소속기관 단체장이 시장·군수 경유 ○심사위원회 : 7인 이내 ○시상시기 : 매년 5월	〃	〃	〃
408	충청남도피임 약제기구보급 수수료징수조 례폐지조례안	충청남도 지사 (11.26)	〃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으로 수수료만 받는 피임약제기구 보급의 필요성이 감소되어 폐지함	〃	〃	〃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399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11.16)	교육사회	○인가, 취소 또는 등록말소된 장소 재설립 운영금지규정 삭제 ○위치변경과 설립자변경 제한규정 삭제 ○학원의 설립경영자가 다른 학원강사가 되거나 교습소 설치금지 규정 삭제 ○교습소 시설면적 제한규정 삭제 ○강사 채용신고 구비서류중 신원증명서 삭제	12.30	12.30	원안
400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공공도서관설치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사용료 면제범위를 도서관장에게 위임 ○개관시간을 도서관장이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정함 ○휴관일을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로 축소	〃	〃	〃
415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사(12.5)	건설	○점용료 산정기준중 점용료 부과기준을 전기관 및 전기통신관과 수도관 및 하수도관으로 구분하여 점용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전기관 및 전기통신관의 점용료를 수도관 및 하수도관과 동일하게 부과함	〃	〃	〃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416	충청남도보령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충청남도 지사 (12.5)	건설	○충청남도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의 조직기능에 부합되도록 본칙에는 특별회계의 설치목적, 세입과 세출, 예비비, 준용규정을, 부칙에는 폐지조례 경과 조치 등을 규정함	12.30	12.30	원안

5. 第89回 定期會 道政 및 教育行政에 關한 質問 · 答辯要旨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라신찬 (서천군)	• 본도의 '94년도말 채무 현재액을 추정해 보면 무려 3,869억원으로써 쉽게 말을 해서 우리 도민의 빚이 4,000억원대에 육박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열악한 재정형편에 할 일은 많고 재원은 없으니 빚을 내서라도 우선 사업을 해 보겠다는 의욕은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만 우리 속담에 「우선 먹고 보기는 곶감이 달더라」고 자꾸 부채만 늘어나니 큰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의 기채 조기상환을 위하고, 통일에 대비한 '95년도 흑자예산편성의 의지와 노력에도 관심을 가져보면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기채 조기상환에 대한 연구를 해 보셨는지요. 도지사께서는 채무의 내역과 상환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채무를 지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답	도지사 박중배	•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우리 도의 채무액은 '94년 7월 1일 현재 일반회계가 241억원, 공영개발특별회계가 1,505억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1,966억원등 모두 3,712억원입니다만, 특별회계간 대출액 550억원을 제외한 순채무는 3,162억원이 되겠습니다. '80년대초에 지방도로포장을 위한 차입한 IBRD차관의 상환잔액 159억원과 '70년대 말과 '80년대 중반에 의료원시설 사업을 위해 차입한 OECF 차관 상환잔액 22억원, 그리고 '90년대 들어 계룡신도시 상수도 시설을 위해 차입한 토특자금 60억원 등이고 공영개발특별회계 채무 1,505억원의 내역은 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천안신부, 논산 내동, 태안 신진지구 등 택지개발과 대죽지방공단 조성을 위해 차입한 951억원과 계룡출장소에서 엄사, 금암, 왕대지구 택지개발을 위해 차입한 554억원입니다. 이와 같은 채무는 자체 재원이 빈약한 우리 도의 재정여건에서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재원,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고 특히 재정자립도를 높혀 가면서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경영수익 사업의 활발한 전개가 절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라신찬 (서천군)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중배	히 요구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이자율이 낮은 채무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때로는 불가피한 실정으로써 경영적 측면에서 볼 때 채무는 소홀히 생각해서도 안되지만 채무를 두려워 하기만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채무가 경영적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의 경영화 노력과 함께 기채 조건에 의한 상환을 원칙으로 하면서 기채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에서는 그간 경제성장과정에서 도농간 격차가 심화되어 환경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의 인력이 도시로 유출되어 노동력이 감소하는 등 여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살리고 「우루과이라운드」 등 불어 닥치는 외풍에 대치하기 위하여 신농정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구조개선을 비롯한 정주권 생활기반 조성 등을 위해 그 일환책으로 매년 정주권 개발사업을 시		• 우리 도에서는 금년 3월에 '98년까지 42조원을 투자하는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지역별 실천계획으로 시·군 단위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만, 라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투자환경의 변화와 특히 농어촌 특별세 15조원의 신규재원이 추가 편입됨에 따라 당초 계획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농림수산부의 조정 지침이 시달 되는대로 농정여건 변화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재조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라신찬 (서천군)	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94년도에 23개 면에 305억7,600만원을 투자하였고, '95년도에도 23개 면에 34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농로 확포장, 마을안길 포장, 주택개량, 마을회관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오늘의 우리 농촌실정을 살펴볼 때 그 사업들이 일부 긍정적 측면이 있기는 하나 사업의 우선 순위가 뒤 바뀌어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농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지방의 압력은 가중되는데 우선 경쟁력을 갖추려면 농업생산비가 절감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지사께서는 신농정 5개년 계획의 사업간 투자비 재조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중배	앞으로도 여건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합리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과 농어촌 특별세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라신찬 (서천군)	• 도정의 홍보수단으로는 역시 텔레비젼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도의 텔레비젼 보유세대의 40.5%가 대전지방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KBS의 대전방송 난시청율이 도내 19개 시·군에서 37%이고 MBC의 대전방송의 난시청율은 도내 44%가 되고 있습니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KBS, MBC 양 사의 난시청 세대가 6개 시·군에 4만5,899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87%가 지방방송을 듣고 있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도정을 이해하고 협력하고 지방화 시대에 경쟁을 해가면서 살아 나가는 것입니까? 더구나 설상가상으로 요사이 텔레비전 시청료가 전기료에 병산부과 되면서 곳곳에서 시청료 납부와 관련하여 많은 저항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난시청 해	공보관 이해성	• 먼저 도내 TV 난시청 문제해결에 있어서는 지난 2월말 현재 도내 TV 보유대수는 총 세대수의 99%인 51만 1,760세대가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총 TV 보유세대 중에서 지역권 TV 방송매체를 시청할 수 없는 난시청 세대수가 KBS의 경우는 37%, 대전 MBC의 경우는 44%로 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도에서는 지난 3월 3일 지역권 TV 난시청 해소를 공보처 장관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문화방송 사장, 그리고 KBS 대전방송총국장, 대전 문화방송사장에게 각각 건의하는 등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각 수용가에게도 TV 수상기 안테나를 올바로 설치하는 등의 기술적인 조작 방법이 요구되기도 합니다만 현재 KBS에서는 도내 3개 기술팀이 순회하면서 기술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서 도에서도 KBS와 함께 이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서 주민들의 기술적인 문제도 아울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라신찬 (서천군)	소 문제를 중앙과 어떤 절차에 의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난시청 해소 전망에도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난시청 해소시까지 시청료가 면제되도록 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김종성 (당진군)	• 우리의 농촌이 국민의 생명창고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농촌을 살리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판단할 때 위탁 영농회사의 설립은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의 해소와 적기영농에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도내에는 위탁 영농회사가 119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도내 군 지역의 읍·면 수만 해도 169개 읍·면이 되는데 이는 1개 읍·면당 1개소도 못미치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로 보아지며 또한 이들의 연간 영농대행 면적	도지사 박중배	• 위탁영농회사는 일손부족 농가의 영농편의 제공과 농기계 활용도를 높이고 영농기업화의 초기 단계로 볼 때 농촌의 실정에는 매우 적합한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91년부터 '97년까지 시·읍·면당 1개소 이상씩 설립 지원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도에 설립된 위탁영농회사는 모두 119개로서 금년까지 100개소에 대하여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희망에 따라 창고시설비 3,300만원과 매년 영농비 2,000만원을 융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확대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현 운영상황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119개 회사중 보령댐 수몰지구내 1개소 등 자율위탁 영농회사 4개소를 제외한 115개 회사에서 연면적 2만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종성 (당진군)	도 1개회사 당 설립기준 면적이 50ha로 볼때 총 6,000 ha로서 이는 도내 답 면적의 5~7%에 불과하므로 최소한 1개 읍·면 당 1개소 이상은 조속한 기일 내에 확대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업체 중에는 보조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회사설립을 선택하는 예가 많고 전문적인 운영 지식 없이 주먹구구식 방법으로 체계적인 회사로서의 관리 능력이 부족하며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변칙운영, 즉 기계 품팔이에 지나지 않는 경향이 있는 바, 따라서 그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리 및 지도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 당진군 합덕읍과 우강면의 경우 삽교천 방조제가 축	도지사 박중배	9,746ha에 대한 경운, 정지, 이앙, 수확 등을 실시하여 작업 종류별로 볼 때 우리 도 답면적의 5~7%에 해당하는 영농을 대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탁영농회사는 개인회사로서 보다 많은 자체적인 노력과 운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회사의 특성상 운영기반이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원에 행정적 편의를 최대한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 삽교천 농업종합개발사업이 완료된 '81년 9월 30일부터는 삽교천으로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종성 (당진군)	조된 이후 전 농토가 삽교천 용수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2억8,490여만원에 달하는 수세를 과거의 예를 따라 아직까지도 예산농조에 납부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예산농조에 편입되어 있으면서도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당진농조에 편입시키고 당진농조에서 수세를 수취해야 할 것입니다. 엄연하게 당진농조가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수익을 예산농조에서 수취하는 것은 큰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지사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바로잡을 의지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지사 박중배	수계가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삽교천 웅전양수장에서 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은 현실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농촌근대화 촉진법과 관련 농조 그리고 농가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구역 조정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 현재 저희 충청남도에는 난지도 청소년 수련장을 비롯한 도 소관 청소년수련장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 청소년 수련시설은 자연권과 생활권 시설로 대별되며, 자연권 시설로는 수련마을, 수련의 집, 야영장이 있으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종성 (당진군)	이 크고 작게 32개소가 있고, 교육청소관 청소년 야영장이 21개소가 있으며, 이들 수련장에서 각종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질적인 수련내용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지나치게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각종 수련장이 여름철이면 어김없이 이곳의 주인이 되어야 할 청소년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각종 단체가 피서지의 숙소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개원한 난지도 청소년 수련원의 경우 일반인이 1,975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청소년이 건전한 사고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	가 정 복 지 국 장 조춘자	며, 생활권 시설로는 수련원, 수련관, 수련실이 있습니다. 수련마을과 수련원은 다양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규모가 큰 종합 수련시설로써 부여 청소년수련원 및 당진 청소년 수련마을, 천안시 청소년수련관은 시군 사업소로 개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모가 적고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인 수련의 집, 수련실, 야영장은 군 직영 또는 관할 교육청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종합수련원 시설인 부여 청소년 수련원과 당진 청소년 수련마을은 음향설비, 전시관, 영상기기, 야영장 부대시설 등 보강을 위하여 금년 추경예산에 각 1억원의 시설보강비를 도비로 지원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도 시설 보강비로 각 1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이 시설 보강 사업이 마무리되면 완벽한 시설을 갖춘 수련시설이 될 것입니다. 또한 '9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이러한 청소년 수련시설에 일정 자격을 갖춘 청소년 지도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설보강 사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종성 (당진군)	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와 교육감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의 도내에 청소년 수련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 훈련 프로그램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 복 지 국 장 조춘자	업의 마무리와 아울러 내년부터는 명실상부한 수련시설로서의 기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일동 (공주군)	• 우리 충청남도 사람들은 15년전인 1978년 정부에서 약속한 백제문화권 개발은 신라문화권 개발시의 졸속이나 시행착오 없이 완벽하게 개발한다는 발표와 수없이 많은 각종 선거 때마다 중앙의 정치인들이 우리 충남에 와서 백제문화권 개발에 대한 거창한 약속 때문에 그 동안 끈기있는 인내로 기다려왔습니다. 물론 백제문화권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정치적, 지리적 이유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가 본인을 포함한 충청도 사람들의 비	도지사 박중배	• 먼저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백제권개발사업이 신라권개발사업에 비하여 국비지원 비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신라권 개발사업은 당시 전신, 전화, 전력, 도로, 철도, 치수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극히 빈약하여 국비로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중이 높았던 반면, 백제권개발에 있어서는 그와 같이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상당수준 갖추어진 상태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비지원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남교 가설, 역사재현단지 진입로, 백제 큰길등 핵심사업에 전액 국비로 대체 이미 착수되고 있음으로 질적인 면에서의 국비지원은 그렇게 낮은 편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조일동 (공주군)	진취적인 양반기질과 현실에 안주하려는 전통적인 보수적 기상이 근본 원인이었다고 자성하면서 비록 늦은 감은 있으나 내년부터 개발이 시작될 예정인 백제문화권개발 기회마저 충남인의 아무런 검증없이 중앙 정부의 계산대로 수동적인 자세로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역사와 후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과오를 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 정부에서 확정 발표한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은 대폭 보완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지사 박중배	앞으로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계획의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 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계룡신도시 건설은 서울 중심지에 상주해 있던 육군본부와 공군본부를 비롯해서 또다른 지역에 있던 해군본부를 현재의 장소로 이전하기 위한 중앙정부 즉 국방부의 주도면밀한 육이공(620) 사업계획에 의하여 추		• 계룡 신도시는 3군 본부가 이전해 옴에 따라 배후도시로써의 기능을 담당하면서 대전 인접지역으로서 인구의 자연유입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계획도시 입니다만 개발에 따른 투자에 있어서 계룡지역을 시로 개발하는 것은 충남발전에 기여하는 바도 크기 때문에 국방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조일동 (공주군)	진되어온 사업으로써 그 도시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건설비용은 당연히 전액 국가의 예산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계룡출장소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매년 많은 예산이 충청남도의 지방비로 충당되므로 가뜩이나 열악한 충남도 재정에 크나큰 어려움을 겪게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간 계룡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계룡출장소 예산을 심의하면서 계룡신도시는 육·해·공군의 3군 본부가 주둔하고 있으며, 계룡신도시 건설이 국가의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충청남도비가 아닌 전액 국가예산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3군본부가 그곳으로 이전해 오면서 계룡신도시에 거주하는 군요원과 그 가족의 생활을 지원	도지사 박중배	과 관련한 사항은 국비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비는 사안에 따라 도비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신도시건설 사업비를 도비로만 충당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민자유치와 함께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90년 2월 27일 출장소 개소이래 투자된 총 사업비는 3,012억원으로써 이중 중앙지원이 165억원, 지방비 441억원이며, 공영개발사업 2,406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순 지방비 441억원의 내역은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 법정 필수경비와 경상적 경비가 전체의 23%이고, 나머지 77%는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액으로써 상·하수도 시설 등 신도시 기반 시설과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계룡 신도시개발을 백제권개발계획에 포함시킨 것은 계룡 신도시 건설지역은 지난 '91년부터 수 차례에 걸쳐서 별개의 특정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설부에 건의해 온 사항입니다만 관계부처에서는 지역세가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조일동 (공주군)	하기 위한 군사 지원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충청남도민이 큰 기대를 하는 백제문화권 개발 비용을 전체 38%나 되는 5,590억 원을 투자해야 하며 더구나 충청남도비를 계룡신도시 건설, 백제문화권 개발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계획은 충남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특히 최근 각종 언론보도에 의하면 행정구역 조정시 계룡신도시가 대전직할시로 편입 운운하는 여론이 있는 이 시점에서 논산군의 계룡 신도시 건설은 충청남도 지방사업이 아닌 중앙정부의 사업으로 국가가 맡아서 추진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 차제에 계룡 신도시를 논산군과 합병하여 통합시로 만드실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중배	협소한 계룡 지역만을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백제문화권 계획에 포함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투자는 자체 공영개발과 민자유치에 역점을 투고 추진하겠으며, 재정여건과 투자효과를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국·도비를 투자하여 나갈 계획이며, 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주체를 중앙 정부에 이관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으로 볼 때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논산군에 흡수하여 논산군 전체를 시로 승격시키는 문제는 검토의 가치가 있다고 보아지며, 도의 주관으로 어느 정도 도시여건이 성숙하면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원창 (아산군)	• 도내 '89년부터 '91년 1월 4일까지 8개 골프장을 사업승인하여 주었습니다. 그중 5개 골프장은 4년이 경과토록 사업시설 설치를 착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94년 1월 7일 개정된 법에 의하면,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 1호에 의하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시설을 착수하지 않은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5개 골프장은 4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취소를 하여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취소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골프장 허가 당시 개발협력기금 및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액은 우정헬스 골프장이 35억원, 엑스포 골프장이 25억원, 금강 골프장이 25억원, 병천 골프장이 25억원, 한밭 골프장이 22억	도지사 박중배	• 현재까지 허가된 골프장 중 미착공된 5개 골프장은 그 동안 사업착공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또 국토이용계획 변경, 사업계획 변경 설계, 민원해결, 토지매입 문제 등 골프장 별로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 1월 7일 개정 공포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에 의거 미착공 골프장에 대한 사업착수 기한이 '96년 2월 6일까지 2년간 연장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착수 되도록 촉구하고 이 기간이 초과되면 예외 없이 취소 조치할 방침입니다. 골프회원권 분양문제는 골프회원 모집은 구법에서 18월 기준 최소한 700인 이상을 모집하되 회원권 가격은 골프장 건설 투자비 범위내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계법의 개정으로 회원수의 제한 규정이 삭제되어 회원권 분양 총 금액이 총투자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골프장 사업자에게 회원권 분양에 대한 자율성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천안 상록 골프장에서 있었던 어린이 익사사고에 대해서는 사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원창 (아산군)	5,000만원, 천안 골프장이 17억원, 대전 골프장이 25억원으로 총 금액이 169억 5,000만원입니다. 이중 코오롱 골프장 30억원과 엑스포 골프장 5억원만 입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134억5,000만원은 현재까지 미수 상태에 있습니다. 당초 납기일로 따지면 1년 내지 3년 6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도에서는 10% 이자만 환산하더라도 25억 9,750만원의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 엑스포 골프장 20억원은 지급기일이 '91년 7월 19일로 되어 있는 것을 변경 납기일을 회원권 50% 분양시 10억원, 완료시 10억원으로 해주고, 천안 골프장 17억원은 지급기일이 '91년 8월 30일로 되어 있	도지사 박중배	업자가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기타 골프장 주변에 울타리 설치 등 주민 요구사항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마무리되었으며, 도에서는 이러한 사고와 관련하여 전 골프장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를 특별점검하고 위험시설물에 대한 보완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논산군 두마면에 있는 양정 골프장의 사업승인에 있어서는 양정 골프장은 연기군 전의면 소재 회원제 엑스포 골프장 건설에 따른 부설 대중간이 골프장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 제14조에 의해서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시설하여야 하는 골프장이며,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관내 이장단을 비롯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으나 사업주와 주민 대표간에 원만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골프장 관련 지역발전 협력금은 골프장 건설에 따른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차원에서 골프장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제도로서 지난 '90년 우리 도가 처음으로 시도하여 그 동안 7개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169억5,000만원의 지역발전 협력금을 약속 받고 그 중 25억원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원창 (아산군)	는 것을 변경 납기일을 착공시 4억원, 1차 회원권 분양시 5억원, 사업등록 후 8억원으로 해 주고, 금강 골프장 25억원은 당초 납기일 '91년 2월 28일 25억원, '91년 12월 20일 20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착공시 5억원, 회원권 분양완료시 20억원으로 해주고, 한밭 골프장 22억5,000만원과 대전 골프장 25억원은 당초 납기일이 '93년도 6월 30일로 되어 있는 것을 변경 납기일을 '94년도 6월 30일로 연장해 줌으로써 골프장 사업계획에 특혜를 주었는데 이렇게 엄청난 특혜를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사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한밭 골프장과 대전 골프장 47억5,000만원은 납기일이 경과되었는데도 징수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안 상록 골프장은 개발협력기금, 즉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액이 없는데 그 이유	도지사 박중배	은 현금으로 10억원은 현물로 기여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 134억5,000만원은 기여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시 지역발전 협력금은 공사 착공시와 회원권 분양 완료시에 기여 받기로 협약을 체결한 뒤 이를 확실히 담보하기 위하여 공증된 약속어음을 징수하였습니다만 병천, 금강, 대전, 한밭, 천안 등 5개 골프장은 아직까지 공사가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사가 완료된 엑스포 골프장은 총 25억원을 기여하기로 협약되어 공사 착공시에 5억원을 기여 받았고, 나머지 20억원은 회원권 분양 실적에 따라 기여토록 하였으나 회원권 분양 실적이 저조하여 기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발전 협력금은 사업주와 자치단체간 협약에 의한 자발적 회사금으로 지방세와 같이 강제 징수할 수는 없는 성격이나 앞으로 협약조건이 충족되는대로 약속된 기금을 납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록 골프장의 경우는 사업주가 사기업이 아닌 비영리 법인인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며 개발이익도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원창 (아산군)	는 무엇입니까? 이 골프장도 특혜를 준 것입니까? 지사께서는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것입니까? 강한 자에게 강력하게 대처할 용의는 없습니까? 골프 회원권이 고가 분양한다고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사업주가 최소 회원제만을 적용하라고 도에 회원모집 변경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까? 대중화 정책으로 보아도 최소 회원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도지사 박중배	특정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전체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임을 고려하여 지역발전 협력금에 대한 협약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진흥청이 밝힌 전국농가 실태조사에 의하면 농민들의 이농현상이 25%이고, 경영주의 고령화가 평균 56세이며, 경영규모의 영세성에 3헥타 이상이 3.5%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에 장래희망을 주기보다는 암담하기만 합니다.		• 먼저 농촌 이농현상은 대체적으로 농촌의 소득이 낮고 농사일이 어려우며 농촌의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교육이나 문화 등의 복지여건이 도시보다 뒤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원인들을 하나하나 착실히 해결해 나갈 때 이농 인구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원창 (아산군)	전국 농가 150만 가구중 91%에 해당하는 136만 가구는 승계 하겠다는 자녀가 없어 이농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구조개선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먼저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바탕을 두고 영농규모의 확대를 통한 기계화가 필수적이어야 하고, 쌀농사 위주의 농업구조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지역에 따라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을 치중 개발하여야 하고 농업금융제도가 현실적이고 효율성 있게 개선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대폭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도지사 박중배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농어촌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지역특산물의 개발과 시설채소, 과수단지의 조성, 유통구조 개선과 축산업 지원사업 등에 올해부터 '98년까지 총 1조2,000억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이며, 일반농가 농기계 공동사업, 기계화 전업농 육성을 위한 투자를 9,000억원 규모로 늘려 어려운 농사일을 완전히 기계화하여 생산비 절감을 도모해 나가는 한편 농어촌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의 교육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농어촌 특별세 재원을 활용하여 농어민 자녀 교육비의 면제 범위를 현재 15%에서 30%까지 확대하고 농어촌 공공도서관의 건립, 농어민 연금제도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농어촌의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투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면 우리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이농현상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 금융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리의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도지사 박중배	융자사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담보대출에 따른 문제와 지원규모의 미흡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우리도에서는 농림수산부에 수차 건의한 바 있으며, 그 결과로 내년부터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기금을 활용한 신용대출을 현행 7%내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증한도도 개인에 대하여 현재 1억원에서 2억원까지 확대하고 단체에 대하여는 최고 5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으로 있으며, 또한 대출금 상환상의 애로 타결을 위하여 원금상환 정도에 따라 자동연장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농업금융 제도상의 농어민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의 포장개발사업입니다. 농산물의 포장미비로 인한 손실방지를 최소화시키고 상품성 제고와 공정한 거래질서의 정착을 통하여 생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규격출하 지원 사업을 매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원창 (아산군)	• 교육문화회관 건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천안시 원성동 191번지외 1필지 3,232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2,087평으로 소요예산은 125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개관 예정은 '96년 6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회관의 설립목적은 우리 도내의 각급학교 학생들이 학예발표대회를 개최할 때마다 음향이나 조명시설 등이 미비하고 협소한 지역의 시민회관, 군민회관 등을 임대하여 사용해온 실정으로 학생들의 예술적 재능이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회관 건립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관 신축공사는 토목, 건축 부문에 대한 총액 입찰로 실시한 결과 예정가격의 63.52%인 67억 9,7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과연 예정가격 63.5%의	교육감 백승탁	• 우리 고장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태어날 교육문화회관 신축공사는 200만 도민의 관심과 기대가 큰 중요한 공사인데 낙찰금액 가지고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느냐?며 제가 큰 걱정을 했습니다. 그때 시공자는 "천안은 내가 태어나서 자라난 곳이기에 늘 각별한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고향을 위해 무언가 뜻있는 일을 하여야 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충남교육문화회관이 천안에 건립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응찰하게 되었다" 고 말하면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향토애와 사명감을 갖고 헌신적으로 완성하겠으며 특히 사업이익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사재를 더 투자해서라도 이 공사는 완벽하게 시공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문화회관 기공식장에서도 교육가족, 각급 기관장,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 한 번 이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치부의 목적으로 이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고장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공사를 완벽하게 시공하겠다." 는 약속을 하였으며, 특히 지난 11월 24일 도의회 교육·사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현장 확인차 방문하였을 때도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원창 (아산군)	설계도면대로 완벽하게 하자없이 공사가 추진될 수 있을런지 의문스럽습니다.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만약 67억9,700만원 가지고 설계도면대로 토목, 건축을 할 수 있다면 설계가 잘못되었고, 그 금액을 가지고 건축을 할 수 없다면 낙찰회사가 자기 자본을 투자해야만 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최저 낙찰가이기 때문에 회사가 차액 보증금 22억9,715만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현재 현금 납부가 되었는지요? 당초 예산은 125억7,000만원인데, 41억원이 감액된 것은 예산절감은 되었으나, 만약 63.52%의 금액으로 건축하여 하자가 발생되면 법적, 도의적 책임은 교육감이 져야 되는데 책임질 용의는 없습니까?	교육감 백승탁	이병주씨를 비롯한 당사자들이 의원님들께 그와 같은 뜻을 밝히며 책임있는 시공을 확약한 바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하자 발생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신화엔지니어링과 전면 책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철저히 공사 감리를 하도록 하고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분야별로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계속적인 감독을 하게 하는 등 성실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수 보증금율을 보통 공사의 두 배인 6%로 하고, 보증기간도 10년으로 계약하여 하자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액보증금 22억9,715만원은 '94년 9월 15일자로 전액 현금으로 납부되었음을 밝혀드립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원창 (아산군)	• 도청특위, 서해안특위, 백제권특위, 조례정비특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4개 특위활동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 무성의한 태도는 무슨 이유입니까? 도청이전특위는 도청이전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전라남도와 경상북도에 관계관을 보내어 용역비 집행과정과 추진사항을 타 시·도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 도의 추진방향을 모색한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의 진척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요? 입지선정 및 후보지 선정 용역비 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어떻게 용역 관련기관을 선정하였는지요?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 그동안 의회에서 도의 현안사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서해안개발사업 지원특별위원회를 비롯하여 모두 4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계십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각종 자료의 제공과 현장 활동 안내 등 수시로 필요한 지원을 해오고 있으나 의원님들이 활동에 충분한 지원을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별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청이전 입지기준 설정문제에 대해서는 '94년도 예산에 도청이전 입지기준 설정 및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비 3억원을 확보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전라남도와 경상북도의 집행과정과 업무추진상의 장단점 등을 비교 분석한 뒤 도청이전 추진기획단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부의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지난 9월 9일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전특위에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와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기 획 관 리 실 장 손인완	관련해서 용역집행을 당분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에 따라서 그 동안 집행을 유보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도청이전 특위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연구용역기관을 확정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도청이전 입지기준 설정 및 후보지 선정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선규 (서천군)	• 우리 도의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실업계 고교의 입학정원은 1만5,642명인데 입학생은 1만4,775명으로 867명이 미달되었습니다. 이와같은 미달현상은 왜 일어난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또한 정원이 미달된 학과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현 사회실정에 맞지 않는 학과와 정원이 미달되는 학과를 농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농업기계과, 농업중장비과, 농업유통사업과로 학과 개편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업계 고교의 입학	교육감 백승탁	• '94학년도의 신입생 모집에 있어 실업계 모집정원은 1만3,976명인데 1만3,729명이 지원하여 농업계에서 326명이 미달되었습니다. 이같은 미달현상은 도농간의 교육문화, 생활 여건 등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농촌 지역의 인구가 급속히 감소되었고 최근 경제성장에 따른 3D 기피 의식의 확산과 어려운 영농을 꺼리는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 과 실업교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확보한 결과 '9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있어서는 농업계 정원 1,638명에 1,824명이 지원하여 186명이 정원을 초과하였습니다. 어제 김종성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업계 육성방안에 대한 답변에서 구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송선규 (서천군)	생은 1만4,775명인데 졸업생은 1만 1,420명입니다. 그러므로 중도탈락 학생은 입학생의 22.6%인 3,335명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중도탈락생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이에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중도 탈락율을 보면 공고와 상업계는 낮고, 농고와 해운고의 탈락이 높은데 농고와 해운고를 공고와 상업계로 전환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994년 7월 11일 국회에서 교육부장관의 업무보고시 1995년도까지 초·중·고교에 1개교당 1개 교실에 30대의 컴퓨터를 보급하여 컴퓨터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우선적으로 상업계 고등학교에 컴퓨터 교실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8비트와 16비트 컴퓨터가 용량	교육감 백승탁	체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교육을 정예화하고 순수 농고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개방화, 국제화에 대비하는 선도적 농업교육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우리 도에서는 농고 지원자수의 감소에 대처하기 위하여 '89년부터 '94년 현재까지 21개 학급을 산업발전 추세에 걸맞는 식품가공과, 농업기계과, 유통정보과 등으로 이미 개편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업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중도 탈락 발생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업계 고교의 중도 탈락자수는 재적 학생 3만5,419명중 2.5%인 895명입니다. 이 학생들은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적성과 능력이 맞지 않는 학생들로서 학업의 의욕을 상실하거나 목적의식이 결여되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들 실업계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고 학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송선규 (서천군)	부족으로 인하여 교육과 실무의 일치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실무에 맞게 32비트로 바꾸어 교육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백승탁	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직업윤리 교육과 진로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89년 이전에 8비트 컴퓨터가 일부 학교에 보급되었으나 기능상 교육과정에 맞지 않아 현재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16비트 컴퓨터는 주기억 용량이 640킬로바이트가 됨으로 초·중·고등학교 교육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단 16비트 컴퓨터 생산이 중단되어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상위 기종인 32비트 컴퓨터를 186개교에 3,228대를 보급하였고 앞으로도 기능이 좋은 32비트 이상의 기종을 계속 보급하여 컴퓨터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1994년 4월 30일에 대통령께서 한국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주관 아래 각 시·도에 기능대학을 설립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기술대학과는 다른 대학입니다. 이러한데 우리 도에서는 기능대학 유치를 위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도지사 박중배	•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보다 양질의 기능인력 양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기능대학 설치계획은 대학의 신규 설립보다 현재 1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 산업인력 관리공단 산하의 직업전문학교를 2년제의 대학과정으로 승격시킨다는 정부의 기본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에서는 우선 오는 '96년까지 전국 40개 직업 전문학교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송선규 (서천군)	건물의 신축비와 실험장비와 실습비와 교재비, 학비가 100% 국비지원이고 전학생의 기숙사비도 100% 국비지원이요, 학교의 운영비도 100% 국비지원인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3개의 국가공단과 16개의 지방공단과 49개의 농공단지가 있어 공단면적에 있어서는 전국 2위인데도 기능대학을 유치하지 않는다면 우리 도의 발전을 포기하는 것이며, 미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설립할 부지와 지사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의지만 있으면 기능대학을 설립할 수 있기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현재 부산직할시와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전라북도에서는 12학과에 다기능사 630명, 기능장 80명을 양성하기 위하여 온 시·도민이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 당국에서는 여기	도지사 박중배	가운데 시·도별로 1개교 씩 모두 16개교를 기능대학으로 승격시키고 나머지 24개 직업전문학교는 실습시설과 장비, 교수 요원 확보 실태와 지역별 기술인력 수요, 공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승격시킨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지난해부터 노동부에서 한국 산업기술교육 대학을 천안군에 설치하여서 운영 중에 있으며, 홍성과 논산 직업전문학교중 홍성 직업전문학교는 생산, 기계, 기술 등 6개과에 320명 정원의 다기능사 과정으로 '96년에 기능대학 승격이 계획되어 현재 준비중에 있으며, 논산 직업전문학교의 기능 대학 승격은 '98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송선규 (서천군)	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느끼며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 금년 7월 20일 감사원의 우리 도 취수원인 금강수계 오·폐수 처리장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수질 오염방지를 위해 설치한 오·폐수 처리장이 금강수계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이 드러나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금강수계는 전북 장수군을 시점으로 하여 충북과 대전을 지나 충남 장항읍에 이르고 있기에 금강하류에 자리하고 있는 충남도민의 한사람으로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금강수계에는 47개 환경기존시설이 있는데 이번 감사에 무려 74건이나 적발되었습니다. 적발내용을 보면 관로공사 부실시공 협잡물 파쇄처리기 비미, 처리장 기자재 부식된 자재사용, 용량초과에따른 미처리 오수방류, 1	도지사 박중배	• 금강 수계환경 기초시설의 시공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감사원의 특별감사결과 일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공과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감독을 소홀히 한 관계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고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재시공 조치와 함께 시공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따라서 도에서도 전문교수와 연구직 공무원으로 정밀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32개 시설을 보완 조치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운영요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확대하여 전문화를 도모하고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폐수처리에 있어서는 전체 대상 농가 1만 2,088호에 대하여 88년 이후 현재까지 450억원을 투자하여 대상농가의 76%인 9,193개소에 폐수정화 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미설치 2,895호에 대하여는 '95년도에 2,100개소를 설치할 계획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송선규 (서천군)	차 처리 하수처리장에 분뇨 투입처리 등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는데 우리 도 당국에서는 이의 감시가 소홀한 책임은 없는 것입니까? 축산농가의 배출폐수는 BOD 1,400~4,200PPM의 고농도 폐수인데 금강수계 158개 축산농가중 64개 농가만 폐수 처리되고 94개 농가는 무단방류 된다고 발표했는데 우리 도의 축산농가의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충북 옥천군 금강유원지를 비롯한 금강수계의 많은 유원지들은 국립공원이 아닌 까닭에 불법취사나 야영을 하고 있었는데도 아무런 대책마련이 없어 수질오염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이의 방지책을 우리 도에서 수립하여 금강환경관리청에 요구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8월 18일 금강환경관리청과 충남도의 발표에 의하면 충청남도내 금강수	도지사 박중배	으로 중앙에 지원 요청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 3년 내에 전 대상 농가가 설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축산시설 지구의 공동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연차적으로 설치하여 수질 오염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강 수계 유원지내에 불법취사와 야영으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문제는 해당 시·도와 금강 환경관리청과 협의하여 적극 근절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전과 충청북도에서 우리 도내 금강유역으로 유입되고 있는 생활하수 등 수질 오염물질은 1일 약 65만 1,000톤에 달하여 특히 갈수기에는 수질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상류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철저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기초시설에 대한 엄격한 지도·감독이 병행되어야 하나 타 시·도 시설에 대하여는 금강 수계를 관할하고 있는 금강 환경관리청과 협조하여 감시체계를 구축토록 하는 한편 금강 수질보존대책 협의회를 활용하여 인접 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송선규 (서천군)	계에 21개 지천이 있는데 7월말 수질오염도 검사결과에 의하면 모든 하천이 사천, 즉 죽은 물과 같은 상태임이 드러났습니다. 이들 지천의 오염원인이 금강상류의 청주, 대전 및 소도시에서 방류되는 오염물질 부하량의 영향으로 드러난 바 금강하류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 도 당국에서 금강상류에서의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우리 도민을 위하여 전북, 충북, 대전의 환경기존시설들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도록 할 계획은 없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중배	록 하고 있습니다.
	• 우리 도당국에서는 제1단계로 '92년부터 '95년말까지 소요예산 940억원을 투자해 도내 각 시·군에 20개의 위생매립장을 설치키로 했는데 현재 4개 위생매립장만이 확보되었고 소요예산 300억원을 투자해 6	보 사 환 경 국 장 노규래	• 먼저, 쓰레기 매립장 등 기반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는 '93년부터 '97년까지 16개 시·군에 위생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 계획을 수립해서 '93년도에 4개소를 완료했고 현재 4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95년도에는 6개소를 도비 16억원 등 총 218억원을 투자해서 설치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송선규 (서천군)	개 지역에 설치키로 한 소각로도 천안과 홍성에 소각로 설치계획만 서 있을 뿐 아무런 진전이 없고 40억원을 투입해 압축식 차량 100대를 확보하기로 했으나 14억5,000만원을 투입해 29대만을 구입했습니다. 이는 도당국의 예산 부족과 환경시설 투자노력 부족탓이라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겠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현재 우리 도의 1일 쓰레기 발생량은 2,660톤으로 매립 91% 재활용 8%, 소각 1%로 재활용 쓰레기를 제외한 2,060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쓰레기가 위생매립장 4개소에서 20%만이 적절한 방법으로 매립되고 있을 뿐 87개 임시매립장에서 침출수 방지와 복토처리가 않된채 토양 오염과 악취를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 기존의 임시 쓰레기 매립장의 문제점의 해결책은	보 사 환 경 국 장 노규래	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외 2개소는 '96년부터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5년부터는 쓰레기 처리체계를 매립위주에서 소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소각로를 대폭 확대 설치하고자 '97년까지 대형 4기, 소형 240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이미 추진 중인 천안시와 홍성군에 대형 소각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이행토록 촉구하고 소형 소각로를 각 시·군당 2기씩 40기를 도비 포함 12억원을 투자 설치토록 하겠으며 그외 국비지원을 받아 더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업체에서 기왕에 설치되어온 소형 소각로가 현재 84기로서 업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미설치 업소에 대하여도 소형 소각로를 적극 설치토록 권장하겠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처리장비 현대화를 위하여 압축차량 16대와 재활용품 운반차량 32대를 확보토록 하는 등 쓰레기 기반시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시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제반 문제점, 그리고 해결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송선규 (서천군)	무엇입니까? 셋째, 현 행정부에서는 쓰레기 감량정책에 의하여 일반 사업장들의 자체소각로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우리 도에도 많은 자체 소각로가 설치 운영중에 있는데 소각할 때 발생하는 악취와 매연 등으로 인하여 대기오염도가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의 방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일반폐기물 소각량이 1시간당 100kg 이상과 특정폐기물 소각량이 시간당 25kg이상만이 대기환경법의 허가대상인데 소각량이 작은 소형소각로에도 대기환경법의 규정을 보완하고 허가기준을 강화하여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할 계획은 없는지요? 다섯째,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할 쓰레기 종량제에 대비하여 우리 도에서도 일부지역에서 종량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보 사 환 경 국 장 노규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 10월말 현재 저희 도내에는 총 89개소의 쓰레기 매립장중 위생 매립장 4개소 이외에는 대부분이 단순 매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악취와 침출수, 해충의 발생으로 민원이 야기되는가 하면, 인근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으로써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도와 시·군의 재정 부족으로 일시에 완벽한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까지 시·군별 1개소 이상의 위생매립장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정기적인 방역소독과 완벽한 복토 등을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자체 소각로 설치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에 대하여는 모든 소각로 설치시 환경관리공단의 성능검사결과 적합 판정된 시설만을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소각용량에 알맞는 쓰레기량의 투입 등 운영기술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해서 자체 소각로 설치로 인한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소각로의 공해배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송선규 (서천군)	그 결과를 보면 종량제의 실시후 일부지역은 쓰레기 양도 줄어들었고 재활용 쓰레기의 수거량도 많아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 후미진 곳에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일도 있고, 무분별하게 불에 태워 악취와 화재의 위험을 안고 있는데 이의 단속과 지도체계는 어떻게 마련되었으며, 각 지역별 반상회를 주관하는 통장들과 반장들을 종량제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실시해 쓰레기 종량제의 성과를 올릴 계획은 없습니까? 여섯째, 1994년 8월 26일 한국산업연수원의 쓰레기 처리방법별 경제성 분석이라는 연구결과 발표에 의하면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보다 소각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쓰레기 처리방법이 매립이 91%를 차지하고 있기에 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심층	보 사 환 경 국 장 노규래	출 허가기준 강화문제에 대하여는 소각로 설치기준은 대기환경 보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나 너무 적은 소각로까지 일일이 규제하면 소각로의 보급에 어려움이 있게 되고 또 완화하면 대기 오염이 우려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현 규정을 성실히 준수토록 하면서 규제미만의 시설에 대하여는 대기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지도 점검과 운영기술 교육 등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송선규 (서천군)	분석하여 도정에 임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태안군)	• 지금의 추곡수매 제도는 과거 쌀이 모자라던 시대의 농민과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지만 사실은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만족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농민에게는 생산비 보상과 소득 보장에 미흡했고, 대도시 소비지의 쌀값은 계속해서 왜곡현상이 일었습니다. 이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 역시 양특적자는 3조 1,000억원 규모로 늘어났고 양곡증권 발행에 따른 부채도 6조원에 육박해 버린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소야대였던 지난 '88년 추곡수매 국회동의제가 생긴 이후 쌀값이 정치논리에 매여서 시장기능을 상실해 온게 사실입니다.	도지사 박중배	• 현행 추곡수매제도는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정부안을 마련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확정토록 되어 있어 매년 수매량과 가격의 결정이 지연되는 등 제도 운영상 문제점이 없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곡수매를 민간단체에 이양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부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쌀이 우리의 주식이고 식량안보적 차원에서 가격과 수급에 대한 국가의 관여가 불가피하고 양곡수매에 따른 막대한 자금의 소요 등을 감안할 때 현단계에서 민간이양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수매에 따른 정부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91년부터 농협차액 지급 수매제도를 도입하여 '91년도에는 13%에서 '94년에는 38%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자금은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에 투자하여 경지정리 용수개발 기계화 등 쌀 생산기반 확충과 쌀 생산비를 줄여 나갈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세호 (태안군)	여당은 물가조절을 위해 쌀값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고, 야당은 표를 의식해서 수매가 및 수매량 조절에 개입했던 것이기 때문에 매년 수매문제는 본질을 벗어나 정치쟁점으로 연례 행사화 되어버려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쌀이 남아돌고 국제화 개방화라는 대외적 여건도 크게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며, WTO 출범으로 쌀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우리 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대한 사안인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란으로 인한 직 간접적인 많은 손실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입니다. 내년도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원년에 양정제도의 개편을 적극 추진하고 정부중심의 추곡수매를 생산자 단체인 농협 등 민간	도지사 박중배	니다. 또한 민간유통기능의 활성화와 농민들의 산지 쌀값지지를 위해 5~10%의 계절폭 허용과 농협 등 시·군에 설치된 미곡종합 처리장에 벼산물 매입을 위한 자금을 7억원씩 융자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 민간 유통기능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매입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이미 건의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곡수매가 인상 및 수매량 확대 문제에 대하여는 금년도의 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년에 없던 극심한 가뭄으로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어 농민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도에서는 수매가 인상 및 수매량을 전년도 수준 이상을 배정해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양곡관리특별회계 적자의 누적에 따라 불가피하게 '94년산 수매량 970만석과 가격 동결을 정부안으로 확정하고 국회의 동의 절차를 남겨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회 농림수산위에서는 어제 정부안보다 80만석이 높은 1,050만석으로 정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세호 (태안군)	단체의 기능에 대폭 이양토록하고 생산자 단체가 농민의 입장에서 쌀값을 결정하고 유통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추곡수매 부담감소에 따른 정부의 재정적인 여유를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과 농업발전 계획에 확대 투자하여 과거 농정불신을 회복하고 추곡수매 개편에 따른 일시적인 후유증을 보완하는 정책개발을 동시에 서둘러서 하도록 하여, 혹 생산자 단체가 이러한 역할을 하기에 역부족이라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이점에 대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중배	특히, 추곡 수매가격 문제는 생산자와 소비자는 물론 정부의 재정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정책사항으로 정부에서도 신중하게 대처해나가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안 해안국립공원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이 천혜로 조성된 자연의 조화가 잘 어우러진 곳으로서 태안군 6개 읍·면		• 자연공원의 지정은 자연풍경제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원 내에 거주하는 주민은 각종 규제에 묶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세호 (태안군)	과 보령군 1개면을 포함한 2군 7개면으로 총 3억2천8백99만㎡에 이르고 있으며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난 1978년 10월 건설부 공고 제109호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바, 공원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 보존하자는 취지에서 공원법을 도시공원법과 자연공원법으로 분류 재정된 것인데 다섯 차례의 개정을 거쳐서 많은 내용을 보완하였으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투자계획을 세우고 12년이 넘도록 개발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입장료 징수에만 전념하고 있는 인상이 짙어서 주민과의 마찰이 빈번하고 있으며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손실이 가중되는 현상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지사 박중배	정부에서는 이러한 불편사항을 감안하여 '94년 5월 자연환경 지구 안에서 행위 제한폭을 완화하여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의 최소시설기준에 관계없이 연면적 600㎡까지는 설치가 가능토록 하고 취락지구 안에서도 휴게음식점 및 일반 음식점 등의 시설을 종전 100㎡에서 200㎡까지 설치가 가능토록 관계법령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공원법 개정시 공원의 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 불편사항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태안 해안국립공원의 관리권 이관 문제에 대하여는 금년 6월 24일 공원관리청인 내무부에 제가 직접 지휘보고를 통하여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내무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부족과 전국 20개 국립공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 중에 있으며, 특히 전국 3개의 해안국립공원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중앙관련부처의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세호 (태안군)	오랫동안 개발계획과 재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애매한 주민의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는 극단적인 표현이 일고 있으며 개발규제로 인하여 사실상 엄청난 불이익을 당한것 만큼은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개발 또는 국방이라는 미명하에 공원지역이 필요한 만큼만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만 제약을 당하므로 인해서 행정불신풍조가 이로 인해서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행 자연공원법은 공원구역내의 점·사용허가는 공단에서 하고 관광사업 건축 인·허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원화되어 같은 민원이라도 여러개의 기관을 거쳐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체의 구역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생각되며, 지방화시대를	도지사 박중배	검토사항을 주시하면서 관리권 이양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우리 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세호 (태안군)	맞이해서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립공원의 관리권을 자치단체로 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할 용의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계는 물론 우리 모두가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조림사업은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날로 심각해져 가는 대기 속의 오염 물질과 공해와 산성비, 눈 더욱이 새로 밝혀진 산성 안개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파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개발이라는 명분하에 시행되는 각종사업이 엄격히 말해 환경파괴 행위라고 결론되어지는 바, 그에 따른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기 속의 오염물질로 인한 산성비의 경우 최근 몇년간 평균 강우산도가 PH5	농 정 국 장 임규환	• 김의원님께서는 앞으로의 조림사업은 자연 생태계와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하에서 공해에 강한 수종을 식재하여야 한다는 강조의 말씀과 함께 우리 도의 지역별 수종 갱신 계획과 식수계획 및 대체조림 수종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치산 녹화 1, 2차 및 산지자원화 계획에 의해서 총 계획면적 27만2,000헥타 중 26만8,000헥타를 금년말까지 조림을 실시했습니다. 나머지 4,000헥타는 '95년도부터 '97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산녹화 1, 2차 계획기간 중 조림된 은사시, 리기다 등 경제성이 적은 불량임재 등에 대해서는, 98년 이후 산지 자원화 제2차 계획에 반영해서 수종 갱신을 실시하므로써 산지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세호 (태안군)	정도라는 국립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로 비쳐볼 때 이번에 밝혀진 산성안개는 그보다 더 강산성이며 지표부근에서 발생하여 대기중에 폭넓게 퍼져 오래 머물러 있으며 특히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은사시나무와 산수유나무의 잎 표면에서 엽록소 내부에 있는 마그네슘을 용출시킴으로써 잎에 검은 반점이 생기고 잎의 가장자리를 변색을 시켜 결국에는 나무를 고사시키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호흡기 질환 환자가 많다는 사실을 내과 전문의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자연생태계와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속에서 공해에 강한 수종을 식재하여 앞으로 발생될 많은 피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파괴로 인하여 대체	농 정 국 장 임규환	자원화를 앞당기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수종갱신 계획과 식수계획 및 대체 수종은 산지자원화 계획에 의해서 '95년도에는 중산간 지역 1,800헥타에 우리 도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잣나무, 느티나무, 물푸레나무, 상수리나무 등 13개 수종을 선정해서 식재하고 해안지역에는 해동, 버지니아 소나무 등을 조림토록 하겠습니다. 유실수로는 밤, 호도나무와 아울러 은행나무 등과 같이 잎과 종실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종은 비옥한 산간부 등 임야 외의 자영으로 식재토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이 적은 수종은 과감히 대체 식재토록 하여 목재소에 충당하도록 하는 한편 미래시대에 대비하는 경제조림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토록 하고 날로 심각해져 가는 대기오염 방지 및 산지소득을 올리기 위해 공해에 강한 환경조림 수종인 은행나무, 회화나무, 벗나무, 때종나무, 물푸레나무 등을 '95년도에 40헥타 조림을 시작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 식재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세호 (태안군)	조림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장래 환경을 앞서 생각하는 뜻에서 그에 맞는 식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해에 강한 수종이 환경처와 산림청에서 선정한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토양과 지형과 기후에 따라 적당한 것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우리 충청남도의 지역별 수종 갱신 계획과 식수계획 및 대체조림 수종은 무엇으로 하고 있으며, 장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지난 75회 전국체전에서 충남체육이 한자리 수 진입을 목표로 경기에 임했으며 전국 8위로 급부상하게 된 것은 학교체육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하며 학교체육 관계자 여러분이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질문을 하고자 하면서 무에서 유를 창	교육감 백승탁	• '89년 1월 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대전시와 분리할 당시에는 우수선수의 70%와 각종 시설 그리고 지도자가 대전시로 이전됨에 따라 충남지역 선수의 경기력이 약화되면서 전국체전 전력이 하위에 머물게 되어 이의 회복을 위한 온갖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전국체전 하위의 불명예를 씻고 충남도민의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해 여러 의원님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어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세호 (태안군)	조하는 교육이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우선하고 있지 않나 하는 노파심이 앞섭니다. 하지만 많은 체육인들과 도내 체육종목을 육성하는 공사립 중·고등학교 체육지도교사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결정하는 관심사이기 때문에 차제에 소상히 알고자 합니다. 도내 전 중·고등학교가 전부는 아니지만 학교 형편과 지역여건 또는 체육종목에 따라 훌륭한 선수를 양성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도내 일부 대규모 중·고등학교에서는 충분한 여력과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당국에서 아무런 체육종목도 선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충남체육의 장래를 위하여 뜻있는 분들의 우려와 빈축을 사고 있다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다면 차제에 답	교육감 백승탁	려운 재정 형편을 무릅쓰고 자체 재원으로 논산에 충남 체육고를 설립하고 육상을 비롯한 9개 정책 종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전국체전에서 충남체고 선수들이 도내 고등부 금메달 총 17개중 10개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트 체육에 대한 관심 부족과 선수생활 기피현상으로 국민학교, 중학교의 각 종목별 선수 저변 확대가 미흡해 우수선수가 적고, 이에 따라 체육 특기자 입학자원이 부족하여 많은 고등학교에서 운동부를 정상적으로 육성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는 184개 중학교중 89개 중학교와 104개 고등학교중 59개 고등학교가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고등학교에서 '95학년도에 모집하고자 하는 체육특기자의 총 수는 462명이 되나 특기자 진학희망 인원은 252명으로 54%밖에 채울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중학교에서 육성된 선수의 대부분이 체육고를 지원하기 때문으로 분석되어 앞으로 일반계 고교에서는 체육고에서 육성하지 않는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세호 (태안군)	변을 통하여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백승탁	종목을 중심으로 초·중·고 연계 육성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 대전에서 개최된 제75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우리 고등부의 경기력이 월등한 성장을 보여 전국 15개 시·도중 200만 도민이 갈망하던 한 자리수 8위를 성취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초·중·고의 각 종목별, 지역별 육성종목과 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내년 전국체전과 먼 미래를 내다보는 장·단기적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김재봉 (온양시)	• 행담섬이라고 하는 당진군 신평면 내산리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서해안 개발이라고 하는 미명과 서해안 고속화 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전국 제일의 서해대교가 세워지는 마당에 그 개발의 틈에서 고통의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곳입니다. 서해대교가 이곳을 통과하면 전국 제일의 관광명소가 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서해대교가 직접 지	도지사 박중배	• 제가 지난번 행담도쪽의 교량가설과 관련해서 신문보도도 보았습니다만 대기업과 또는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대의 명분속에서 약한 입장에 있는 우리 주민들을 주민들만의 노력으로 방치해 둘 수 없겠다, 앞으로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주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편에서 적극적인 사업과 대정부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행담도에 관한 기사가 났을 때도 즉시 관련부서를 파견을 해서 상황도 조사를 하고 현장에서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당초의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재봉 (온양시)	나면서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이곳은 지금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9가구,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3가구, 주민 26명이 살고 있습니다만 서해대교를 놓고 있는 중장비의 굉음소리와 망치소리는 26명의 12세대의 행담섬 주민들에게는 통곡의 소리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이 수려했던 이곳 어민들이 내일의 꿈을 안고 살아왔던 이 행담섬이 생태계의 변화는 물론, 자연의 파괴와 어장의 황폐화로 도저히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고 이들의 신음소리는 도처에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과연 극소수인 26명의 주민과 12세대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들도 충청남도의 도민임에는 틀림없고 이들도 당연히 충청남도의 도민이라면 도정의 행정 서비스를 받고 도정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한 삶의 길을 찾아야 하	도지사 박중배	환경영향 평가나 이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는 공사를 함으로써 우리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요청을 강력히 했고, 또한 이와같은 요청을서면으로 해당 관련 중앙부처나 사업시행주체에 대해 서면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석유 3사 설립 이후에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호소를 들어 왔습니다. 이미 여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서산군에 특별하게 환경지도계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사업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중앙에서 「사업소까지는 좀 과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군에 계를 증설을 해서 관리를 해라」 이런 조건으로 해서 군에 환경지도계를 설립을 하고, 현재 4명이 환경감시를 위해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주를 시킨 이유는 민원이 있을 때 가서 체크를 해 보면 별로 나오는 것이없고 또 들어오면 민원이 나오고 해서, 1년 12달 상주해서 조사하기 전에는 바람의 방향이나 또는 날씨에 따라서 측정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 기간을 두고 체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재봉 (온양시)	는 것은 당연할진데 과연 12세대가 받는 고통과 이들이 앞으로 살아나가야 할 향후대책 등 이러한 것들은 과연 어떻게 도가 추진해 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놓고 있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극히 일부분입니다만 서해안 시대, 앞으로의 아산만 시대하면서도 아산만 시대, 서해안시대는 오히려 극히 일부분에는 그늘진 곳에 소외받고 고통을 받고 아픔에 눈물져야 하는 이러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되며 지금 본 의원이 물은 이 두 가지 내용 중에서 도지사께서는 직답을 요구하며 만약에 정확한 피해액이라든가 정확한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다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동법 시행령 제2조와 충청남도의회 운영규정에 의해서 서면답변도 할 수 있음을 아울러 말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끝내는 바입니다.	도지사 박중배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결론에 따라서 대산쪽에 있는 정유 3사에 대해서 환경문제에 대한 적절한 공해예방대책과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또는 인근지에 대한 매수 까지 저희가 요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행담도 어민들의 보상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산만권 개발과 관련해서 부산수산대학교에서 조사를 해서 나온 전체적인 보상 판단액이 482억원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481억원을 이미 보상금으로 지급을 했고, 나머지 일부가 이의신청 중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보상은 90%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행담도 어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맨손 어업, 무등록 어선에 대한 평가는 2차 평가대상으로 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김재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체 공무원들이 정말로 주민의 편에 서서 약한 입장에 있는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는 자세로 도정을 이끌어야 된다고 하는 충고로서 깊이 받아들이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第37節 第90回 臨時會

Ⅰ. 槪 況

1. 開會背景

○ 제9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5년도충청남도업무계획보고와 조례안을 부의하고자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5년 2월 3일 집회공고를 실시하고 95년 2월 10일 14:00에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회기 : '95. 2. 10 ~ 2. 21 (12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5. 2. 10(금) 14:00	본 회 의 (제 1 차)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 2. 제9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3. '95충청남도주요업무계획보고 4. '95충청남도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5. 휴회의 건	
11:00	도청이전 특 위	1. 연구용역집행계획심의 및 기타사항 토의	
'95. 2. 13(월) 11:00	기획경제위 (제1차)	1. '95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공보관실 소관 나.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다. 기획관리실 소관 2.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5. 2. 14(화) 11 : 00	기획경제위 (제2차)	1. '95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감사실 소관 나. 지역경제국 소관 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	
14 : 00	내무위원회 (제1차)	1. '95주요업무계획보고 가. 내무국 소관 2.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 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5. 충청남도소방서설치에관한조례안 6. 충청남도소방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 : 00	교육사회위 (제1차)	1. '95주요업무계획보고 가. 보사환경국 소관 2. 충청남도환경보전대상운영조례안	
10 : 30	농림수산위	○ 한해 및 주요사업지구 현지방문 - 논산 ┌ 저수지 준설사업지(탑정 저수지) └ 대단위 축산단지(광석축산단지) - 부여 : 최첨단산업시설지(농촌지도소)	
'95. 2. 15(수) 10 : 00	내무위원회 (제2차)	1. '95주요업무계획보고 가. 민방위국 소관 나. 소방본부 소관 다. 계룡출장소 소관 2. 도지사 출석, 답변 요구의 건 3. 의사일정 변경의 건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5. 2. 15(수) 10 : 00	교육사회위 (제2차)	1. '95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가정복지국 소관 나.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09 : 00	농림수산위	○ 한해및 주요사업지구 현지방문 - 공주 ┌ 현대화유리온실사업지(계룡) └ 신진농업 육묘시설지(정안) - 연기 : 경지정리지구(남명)	
'95. 2. 16(목) 10 : 00	농림수산위 (제1차)	1. '95주요업무계획보고 가. 농정국 소관 나. 농촌진흥원 소관 다. 농어촌진흥공사 업무현황 청취	
11 : 00	건설위원회 (제1차)	1. '95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건설도시국 소관 2. 충청남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 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5. 2. 17(금) 11 : 00	건설위원회 (제2차)	○ '95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5. 2. 21(화) 13 : 30	내무위원회	1. 도지사출석, 답변요구의 건	
14 : 00	본 회 의 (제2차)	1.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소방서설치에관한조례안 3. 충청남도소방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5. 2. 21(화) 14 : 00	본 회 의 (제2차)	4.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환경보전대상운영조례안 6. 대전 · 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안	

○ 비회기중 활동상황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5. 2. 3(금) 10 : 30	운영위원회	1. 제9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일정 협의 2. 본회의장 의석배정 조정의 건 3.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	○ '95.2.10~ 2.21(12일간) ○ 현행대로조정 ○ 제90회본회의 부의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수	안 건	비 고
계	9		
조 례 안	5	1.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동의승인안	1	1. 대전 · 충청권 행정협의회규약안	
기 타	3	1. 제9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결정의 건 2. '95충청남도주요업무계획보고 3. '95충청남도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4. 條例案 處理內譯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422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운영위 (2. 3)	(본회의 상정)	○기획관리실소속 감사담당관실이 부지사직속의 감사실로 됨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감사실을 추가함	'95. 2.21	'95. 2.23	원안
423	대전·충청권 행정협의회규약안	충청남도지사 (2. 3)	기경위	○대전·충청권의 주요현안 업무와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무를 공동으로 협의처리하여 권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함	〃	〃	〃
426	충청남도소방학교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	〃	내무위	○소방학교장을 소방정으로 보하고 소방학교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	〃
427	충청남도도세 조례중개정조례안	〃	〃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시장군수에게 신고 납부토록 조정하고 취득세 과세물건중 종합 체육시설 이용권을 추가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표준인 세율조정	〃	〃	〃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 음용수(1㎥) - 100원 온천목욕용수 - 50원 기타목욕용수 - 10원			
428	충청남도소방서설치에관한조례안	충청남도지사 (2. 3)	내무위	○ 도관할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서의 명칭, 설치관할 구역을 정하고 소방서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소방파출소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 소방서의 공무원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정함	2.21	2.23	원안
430	충청남도소방서설치에관한조례안	〃	〃	○ 환경보전운동이 토착화되고 환경보호의식이 널리 확산되도록 환경보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와 기관(단체)을 발굴 표창 ※ 개인부문 금상, 은상, 동상 각1 ※ 기관단체 대상, 금상, 은상, 동상 각1 ○ 심사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부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함	〃	〃	수정

第38節 第91回 臨時會

Ⅰ. 槪 況

1. 開會背景

○ 제9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羅榮振의원외 18인으로부터 도정 및 교육행정전반에 관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소집요구가 있어 95년 3월 20일 집회공고를 실시하고 95년 3월 28일 14:00에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회기 : '95. 3. 28 ~ 4. 11 (15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5. 3. 28(화) 14:00	본 회 의 (제 1 차)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 2. 제9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3. 도지사 · 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4. 천안시 · 군통합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 건 5. 휴회의 건	
'95. 3. 29(수) 14:00	기획경제 위 원 회	1.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 2.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 3.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13:20	내무위원회	1. 천안시 · 군통합의견채택의 건	
11:00	서 해 안 특별위원회	1. 서해안개발사업추진상황보고	기경위 회의실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5. 4. 3(월) 11 : 00	운영위원회	1.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공명선거자율실천에관한결의문채택	
14 : 00	본 회 의 (제2차)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95. 4. 4(화) 10 : 00	내무위원회	1.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 2.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3. 충청남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 00	본 회 의 (제3차)	1. 도정및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10 : 00	내무위원회	1.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소조례안 2.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95제1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1 : 00	농림수산 위 원 회	1. 충청남도어항정책심의회조례안 2.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 00	건설위원회	1. 충청남도거주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95. 4. 11(화) 14 : 00	본 회 의 (제4차)	1.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 4.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5. 충청남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소조례안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5. 4. 11(화) 14 : 00	본 회 의 (제4차)	7.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남도어항정책심의회조례안 10.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충청남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12.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 13. '95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14. '95제1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5. 공명선거자율실천에관한결의안	

○ 비회기중 활동상황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5. 3. 16(목) 14 : 00	운영위원회	○ 제9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일정 협의	○ '95.3.28~ 4.11(15일간)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수	안 건	비 고
계	20		
조 례 안	11	1.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결 의 안	1	1. 공명선거자율실천에관한 결의안	

구 분	건수	안 건	비 고
동의승인안	3	1. '95제1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2.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 3. '95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기 타	5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 2. 제9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3. 도지사·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4. 천안시·군통합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 건 5.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4. 條例案 處理內譯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424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충청남도지사	내무위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규정 제21조에 의거 충청남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 ※ 1. 본청 : 1,065인 2. 직속기관 : 1,081인 3. 사업소 : 514인 4. 출장소 : 171인 →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함	'95. 4.11	'95. 4.13	원안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425	충청남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사	내무위	○의회사무처의 공보계설치와 필요한 정원(3명)을 증원 ※ 총정원(현 65명→68명)	'95. 4.11	'95. 4.13	원안
429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	〃	〃	○지방자치법에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 규정 제7조에 의거 충청남도에 두는 실·국 본부등의 행정기구설치와 분장사무를 규정 ※ 기획관리실등 2 실과 내무국등 7국, 소방본부를 두며 과·담당관 설치와 그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함	〃	〃	〃
431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기경위	○의료원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구성을 합리적으로 조정 ※ 현재 이사회의 장을 기획관리실장에서 예산담당관으로 변경	〃	〃	〃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432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	충청남도지사	기경위	○지역개발욕구 및 복지행정 수요충족을 위하여 전국단위로 자치복권을 발행하기 위한 15개시, 도가 참여하는 행정협의회 구성	4.11	4.13	원안
433	'95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	〃	○'95.7.1부터 1,000억원 규모의 즉석식복권(500원권)을 전국에서 발행 판매	〃	〃	〃
434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내무위	○민원인의 편익을 위하고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도록 공해배출업소의 배출시설 허가, 전용상수도 인가등의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	〃	〃	〃
435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소조례안	〃	〃	○안면도를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전담사업소를 설치 ※ 사업소장은 5급으로 하고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함	〃	〃	〃
436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	○국가유공자의 주거용부동산 및 보철용자동차취득시 취득 및 등록세면제 ○종교단체나 도청소재지, 시지역의료업은 등록세 과세	〃	〃	〃

의안 번호	의 안	제안자 (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주택조합명의의 원시취득시 주택조합은 취득·등록세를 면제하고 ○주택조합원이 주택조합에서 신탁법에의한 신탁등기시 도세감면대상에서 제외			
437	충청남도어항정책심의회조례안	충청남도지사	농수위	○어항의 지정·변경 및 해제와 어항시설계획의 수립 및 변경등의 업무를 심의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으로 추진	4.11	4.13	수정
438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	○농업부분 투자비용의 수입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용도는 타목적사용을 금하며 융자사업에 대한 기금의 관리, 회수등을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금융기관에서 자체자금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처리	〃	〃	〃
439	충청남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	건설위	○도시저소득층 주민밀집주거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건축법령의 조문을 개정법령에 맞도록 수정	〃	〃	〃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440	'95제1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충청남도지사	내무위	○토지8필지(13,022㎡) 및 건물5동(1,386㎡)를 취득하고 토지1필지(103㎡)의 처분 및 토지11필지(23,000㎡)를 토지 2필지(11,276㎡)와 교환	4.11	4.13	원안
441	천안시·군통합에관한도의회의견채택의건	〃	〃	○천안시·군을 주민투표와 의회의 의견을 들어 통합하고 명칭을 천안시로 함	〃		
442	공명선거자율실천에관한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본회의	○오는 6월 27일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에 있어 과거의 잘못된 선거풍토를 청산하고 선진민주사회 구현과 건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현역 도의원이 솔선하여 부정 선거방지법을 준수하고 타락불법선거를 추방함	〃		
443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	○교육사회위원회소관중 가정복지국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추가함	〃	4.13	원안

5. 第91回 臨時會 道政 및 敎育行政에 關한 質問·答辯要旨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전영준 (아산시)	• 제4대 충청남도 의회 마지막 임기를 85일 목전에 두고 지난 4년간 도정과 도 교육행정의 집행사항을 총정리하고 그 동안 도정업무를 어떻게 챙겼는지 또 앞으로 '95년 살림은 물론 긴 안목에서 발전적으로 계획된 방향대로 효율적으로 도정을 실천할 도지사의 의지가 있는지 2백만 도민편에서서 그늘진 곳, 소외된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빈틈없이 살피고자 귀중한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도지사 김한곤	•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성의껏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이겠습니다만 방금 전에 취임인사를 드렸던 사정 등을 감안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도정 전반을 심도있게 파악해서 도정을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의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만, 전영준의원님께서 신임 지사의 도정 소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제가 인사말씀에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첫째는 공명선거, 두번째는 도민의 소득증대사업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다는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 1991년 지방의회 출범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과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취소를 구	기 획 관 리 실 장 손인완	• 지난 '91년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에서 패소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행정처분의 명백한 잘못이나 소송수행의 오류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전영준 (아산시)	하는 행소에서 관청이 패소하는 경우가 절반을 넘고 있어 행정불신을 가중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형편이며, 특히 소송기간이 2, 3년 가는 등 쌍방이 지루하고 어려운 업무처리에 애로사항도 본 의원이 참고하지만 구조적으로 대부분 전문성이 결여된 하위직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소송에 있어 행정관청의 잦은 패소는 권리·구제의식의 향상과 주민들의 자신들에 대한 불이익에 적극 대처하는 원인도 있지만 공무원의 업무처리 능력 미흡과 권의주의적, 편의주의적 행정관행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파생되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전문성 있게 직급을 승격시키든지 획기적인 소송비용을 현실화하여 패소율을 점진적으로 줄여야 할 대책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보다는 법령 해석과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범위에 대하여 법원과의 견해 차이가 주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패소율을 감소시키고자 법령해석과 적용 능력의 향상에 중점을 두고 법무 및 민원관련 업무 대상자를 대상으로 매년 법률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관 업무별로 담당 실무자인 5급과 6급 공무원이 소송수행 대리자로 지정되어 있으나 간부 공무원들이 지도를 받으며 소송을 수행하고 있고, 특히 법률 쟁점이 복잡하거나 사건이 중요하고 전문적인 소송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승소율을 높이고 있으며, 수시로 소송사건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여 효율적인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전영준 (아산시)	• 지난 '94년 후반기 전 국민을 경악케 한 특히 충남이 제외된 전국 도처에 걸쳐 복마전같이 사건사고가 연속극처럼 자고나면 터지는 수난사속에 행여나 우리 고장 도민으로써 가슴을 조이던 세무행정비리사건, 일명 세도사건은 불신과 분노, 실망과 불안속에 혼미를 거듭한 불확실한 안개 정국속에 가상할 정도로 조상이 대대로 물려주신 충청인의 자존심, 긍지는 물론 충남의 명예를 드높여 준 한 점의 부끄럼 없는 1만6,000여 충남 공직자 모두에게 도민을 대표해서 격려와 찬사를 보내면서 눈물 날 정도로 고맙습니다. 특히, 세무행정의 청렴성은 길이 후대 역사의 귀감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백으로서 세무 행정에 종사하는 공직자는 물론, 일선 하위직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흐트러진 근무의욕	내 무 국 장 이종은	• 지난해에는 지방세 비리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 했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공무원과 관련된 세무비리가 한 건도 없음이 정부 합동특별감사 결과 밝혀짐으로써 세무공무원은 물론 도 전 공무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으며 전통적인 충남의 기풍을 과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구조적인 세무비리의 예방과 부과 징수업무의 현대화를 위해서 지방세 관련 모든 업무를 완전히 전산화하고 현금 취급을 금지시킴으로서 세무공무원의 비리를 차단하여 신뢰감을 더욱 높혀갈 계획입니다. 또한 모든 세무공무원과 일선 민원부서 근무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포상 기회를 확대하고 해외연수, 그리고 선진지 비교 견학 등을 추진해서 근무의욕과 사기를 진작시켜 더욱 발전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세무감사 결과에 따른 포상적 여행으로 세무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도·군 읍·면·동공무원 50명을 선발해서 9박 10일씩 2진으로 나누어 지금 현재 연수 중에 있음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전영준 (아산시)	을 고취시키고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키 위하여 획기적인 사기앙양책으로 당근을 듬뿍 주고 땀 흘린 만큼 상응한 보상을 구체화하여 실천할 방안을 발표할 시기조차 늦은 감이 있으나 이번 기회에 집행부의 확고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 삶의 질을 세계화한다고 천명한 이때 소외된 농촌지역의 음용수 안전공급을 목적으로 생활의 고통을 덜어줘야 할 간이상수도의 관리가 도의 관련 부서간 업무이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 일선 시·군에서 간이 상수도 시설 및 보수관리는 사회과에서 소독 및 수질 검사는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이원화된 업무를 합리성 있게 일원화 시켜 농어촌 지역 생활의 근본문제인 식수행정이 무엇보다 급선무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 먼저 도의 간이상수도 업무 관리부서 일원화 조정문제는 급속한 산업발달에 따른 수질오염의 악화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농업용수 관련법령인 공중위생법과 수도법의 개정 및 먹는 물 관리법 제정 등 잦은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중앙관련부처의 업무 조정도 보건복지부에서 건설교통부로 이관되었다가 현재에는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군의 간이 상수도 업무의 일원화 문제에 대해서는 수질검사업무의 경우 검사 인력 및 장비를 보건소에서 관리하면서 맛, 색도, 탁도 등 생물학적 검사 8개 항목을 연 4회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간이 상수도 시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전영준 (아산시)	는데 업무처리에 혼선이 장기화된 이유와 대책을 분명히 듣고자 합니다.	보 사 환 경 국 장 임규환	관리부서인 사회과와의 업무통합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농어촌 지역의 농업용수 안전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맹치호 (천안시)	• 지금 세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적과 동지가 따로 없는 적자생존의 무한경제 전쟁시대가 열렸다고 봅니다. 세계경제 질서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결과 WTO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기업체 중에서 95%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경제는 과거 30여년간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룩했습니다만 지방화시대 세계화의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 역 경 제 국 장 민종기	• WTO출범, EC통합 등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 우리 경제 특히, 중소기업의 체질개선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더욱 강조되는 시기라고 보며,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많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뜻을 같이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의욕을 고취시키고 활력있는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도원인 방지대책을 포함하여 우리 지방 중소기업의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핵심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각종 자금 지원입니다. 금년에 중소기업의 어려운 자금 사정을 지원하기 위해 구조조정자금, 운전자금 등 760억원을 확보하여 시설자동화, 기술개발, 창업지원, 정보화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맹치호 (천안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거 타성에 젖어서 간섭이나 하고 지시통제하는 관주도의 소리가 아직도 높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지방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무엇인지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중소기업은 경기호조에 힘입어서 생산과 수출에서 활발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도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90년대 이후 사상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지역의 경우 어음부도율이 0.8%를 상회하고 있으며 부도원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산업구조적으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연, 금융실명제로 인한 사채시장의 위축, 금융기관의 소비성 대출 증가, 기업내부의 담보능력 부족, 제품판매에 대한 대금결제 지연 그리고 담보가치의 저하 등	지 역 경 제 국 장 민종기	사업 등에 가능한 금년도 조기에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은행에서 자금대출 시에 고충을 겪고 있는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남신용보증조합」을 설립 추진될 시 은행담보가 없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업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봅니다. 두번째로 기술지원입니다. 낙후된 우리 도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이에 따른 개별 중소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자 여건에 맞는 꾸준한 기술개발이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신기술보육센터」를 저희 도 지원 아래 호서대학교에 설립 신기술 창업 보육사업을 국내 최초로 실시할 예정이며,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을 위해 2개 대학 32개 업체와 지역 컨소시엄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농어촌 오지에 있는 기업체는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 경영, 행정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해외판로 확장입니다. 협소한 국내시장에서의 한계를 벗어나 상품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통하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맹치호 (천안시)	을 들 수 있는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상 열거한 사항들의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 역 경 제 국 장 민종기	여 대외시장 확보를 위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상설직판장 설치 및 국제무역전시회, 박람회 참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지방 공무원의 무역학교 운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충청남도 사유지 가운데 해당 시·군이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지구로 시설결정만 해놓고 시행을 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토지가 7,484만 9,00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중 20년이상 방치한 곳이 모두 도로용지로서 59만7,000㎡에 달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만 해놓고 방치한 미집행 시설 면적이 전체 면적의 27% 정도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되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사	건 설 도 시 국 장 김만식	• 현재 도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전체 면적은 126㎢이나 이 중 약 61%인 76㎢ 정도가 미집행 시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집행된 시설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61%에 해당하는 10년 미만 경과된 것은 약 3,653건, 35%에 해당하는 10년~20년 경과된 것이 2,098건, 4%에 해당하는 20년 이상 경과된 것이 22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려 13조 2,000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20년 이상 장기집행 시설은 우선적으로 조기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또한 미집행 시설 중에서도 재정비시에 과감히 해제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가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맹치호 (천안시)	유재산을 최대한 보호해 주어야 할뿐만 아니라, 장기간 집행되지 않음으로써 지가상승에 따르는 막대한 재원부담과 함께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이 쇄도함은 물론이고 행정의 공신력만 실추되는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축소 변경 또는 해제하든지 아니면 조기에 사업을 집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건 설 도 시 국 장 김만식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무리한 시가화 구역을 확장하는 도시계획 수립을 지양하고 택지개발 등 도시계획사업을 통하여 도시기반 시설이 병행 설치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개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외국에 유학하는 대다수 우리 학생들의 고충은 언어뿐만 아니라 수업방법에 당황하여 학문 습득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입식 교육과 객관식 시험에 익숙한 학생들은 여러 가지 상황설정과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학문을 습득하는 선진외국의 교육방법에 낯설고 어려움이 봉착하는 것은 당연지사라 하겠습니다.	교육감 백승탁	• 저도 평소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는 신념 아래 각종 연수를 통한 교원들의 의식전환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연수의 기본 방향을 교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신장 그리고 교육자로서의 교직윤리관을 확립하고 교육의 세계화, 정보화, 전문화를 기하여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 자격연수 1,305명, 일반연수 5,122명, 국외연수 224명의 연수를 계획하고 있으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맹치호 (천안시)	현재의 선생님들 중에서는 암기 위주와 객관식 시험으로 초·중·고를 보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앞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보화 시대의 튼튼한 차세대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인성과 소질이 개발되는 초·중·고 시절을 책임지는 학교 선생님들의 구태의연한 교수방법의 개선을 위해 교사들의 교육이 더 절실하다는 대책을 촉구하면서 학생들의 교육방법을 일방적인 암기와 교사 중심의 수업 행태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이해하고 학문을 습득하는 학생 중심 수업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백승탁	며 그 내용과 방법을 현장 중심, 실습 중심으로 개선하고 작년부터 실시해 온 원어민 교사의 활용, 현장 어학연수 확대 등 미래지향적인 시책을 확대 추진함은 물론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을 제고하고 직무수행 능력 향상, 전문성 신장에 역점을 두어 현장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제6차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방법에 관한 연수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나 교육개혁은 교단개혁이 있고 교단개혁은 교사들의 의식개혁에 있기 때문에 교단개혁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교사들이 전문직 자질을 높이고 제자애, 학문애, 교직애의 교직3애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교육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신뢰받는 교사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욱 (예산군)	• 우리 도가 '95년도 생산지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생산·유통시설의 통합 지원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생산비 절감과	농 정 국 장 이상선	• 농산물간이집하장은 농산물의 수집, 선별, 포장 등 산지유통기능을 강화하고자 '90년도부터 '94년까지 도내 총 509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164개소를 설치할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동욱 (예산군)	고품질 생산에 의한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7대 사업을 정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바 이중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계획을 보면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164개소에 걸쳐 73억5,800만원을 투입, 농협이나 작목반, 영농회, 영농조합등 생산조직 등에 지원 설치하고 농산물 수집, 선별 포장, 저장, 수송 등 산지유통기능을 담당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부실 운용 사례별로 자료를 요구하고 개선책을 강구토록 촉구한 바도 있으나 개선의 여지는 고사하고 전시한 바와 같이 오히려 물량만을 늘려 예산산정을 한 바 모든 예산이 합목적성과 효율성, 적정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산정하고 시기적절한 운용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사고에 의해 획일적이고 관행적 타성에서 합목적성만을 고	농 정 국 장 이상선	계획입니다.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치 및 대상자의 적정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90년도부터 많은 물량을 공급하다 보니까 위치 및 대상자 선정이 잘못되거나 집하장을 서로 자기 가까운 지역에 유치하려는 주민들의 불평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 외 사용 등 문제가 있는 집하장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간이집하장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철저히 지도·감독을 통해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설치예정인 간이집하장에 대해서는 간이집하장 본래의 기능 수행에 적합하도록 위치 및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수집, 포장, 저장 수송능력을 최대한도로 확보하기 위하여 간이집하장내에 선별기, 결속기, 소형 저온창고, 저장고 등을 병행 설치토록 유도하여 간이집하장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동욱 (예산군)	려한 채 현실과 여건을 무시한 사업집행은 탁상행정의 산표본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은 산발적인 나열식 물량 중심을 탈피하고 그 내용이 알차고 실속 있는 실제 유통기능을 소화할 수 있는 기능집중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며 곧 집하장의 경우 지금처럼 집하장만 덜렁 지어놓고 단순 수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수집, 포장, 저장, 수송능력에 이르기까지 유통기능을 체계적으로 갖추어야만 농가소득에 직접 기여하고 시장경쟁력과 국제경쟁력 제고에 부응할 것이라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견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이 국화 시험장이나 백합 시험장 등에 들러 시험연구과정과 향후 전망에	농촌진흥원장 허일범	• 그동안 성과를 보면, 청양 구기자 시험장에서는 「청양종」이라는 일반 재래품종보다 수량이 4배가 더 나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동욱 (예산군)	관하여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한 바도 있는데 현지에서 시험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종사인력 전원이 의욕적이고 꼭 무엇인가 해 내야만 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여 믿음직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들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문제, 연구인력 확충의 어려움 등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개의 시험장이 오지에 위치해 있고 주거환경과 복지문제, 교통, 문화, 교육 등, 제반의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연구업무에 투입되는 종사 인력은 일반직급이 순환보직되는 통상적 인사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 전문 고급인력으로 확충해야 하며 인력고와 연구장비 보강을 위해 과감한 예산투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오늘날 선진 농업국들이 농업생산 능력을 배양하고 국제사장 점유비율을 높이는 원인은 첨단농법과 시설투자, 기술장비의 현대화,	농 촌 진 흥 원 장 허일범	반면에 탄저병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내병 다수성 품종이 개발이 되어서 금년부터 농가보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구기자를 이용한 음료, 차, 엑기스 등 가공 신제품이 개발이 되어서 8종이 지금 특허 출원 중에 있습니다. 또 백합시험장에서는 담브란체라는 품종을 비롯해서 수출적응 품종 11개 품종이 지금 선발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94년 작년에 설치된 논산의 딸기, 부여의 토마토, 예산의 국화시험장은 지난해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망한 품종들은 전부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 국화시험장에는 국화 품종 약 1,000여종이 지금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또 부여의 토마토 품종도 약 60품종 유전자원이 완전히 수집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연구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현황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종사인력의 순환보직에서 벗어나고 전문 고급인력 확충과 근무여건 개선이라고 표현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동욱 (예산군)	작목개발 연구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우리 입장을 비교한다면 엄청난 차이를 보게 됩니다. 일예를 들어 네덜란드의 경우를 보면 백합 무균종구 한 가지를 개발하기 위해 우리 예산의 10배 이상을 20여년 전부터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겨우 시작하여 걸음마를 하는 단계에 불과한데 어느 세월에 그들을 능가하고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적응하며 우리 농촌의 미래가 있다고 보겠습니까. 우리 농촌의 미래는 어둡고 한치앞도 안보이는 안개속을 헤매고 어떤 나락의 미로를 기우뚱 기우뚱 더듬어 가는 모습 같아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사께서 기왕에 지역특화작목연구 강화를 위한 시책을 입안 하셨다면 우선 획기적인 시책의 전환과 과감한 연구예산 투입을 통해	농 촌 진 흥 원 장 허일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화작목 시험장에 배치되는 인력은 농업연구직 공무원으로서 그 분야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면 못갑니다. 그래서 순환보직은 최대한 인사상 막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구진의 자질향상과 근무여건 그리고 사기진작 이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째로 금년부터 시험장에는 논산 딸기하면 전국적으로 그와 유사한 연구진들이 있습니다. 부산 원예시험장이라든지 또 국화시험장하면 화훼를 전문으로 하는 수원에 일부 연구진이 또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진이 전부 팀을 이루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이 시험장에 와서 간담회를 하고, 앞으로 이 시험장의 연구방향 외국의 연구동향, 또 각종 유전자원을 모아주는 이러한 정보교환을 하도록 해서 비록 오지에 있지만 외롭지 않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3월부터 첫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두번째,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어쩌니저쩌니해도 외국의 선진기술을 직접 접해 보는 것이 제일 빠르다해서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동욱 (예산군)	고급연구 인력 유치, 근무여건 개선등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며 과연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지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 촌 진 흥 원 장 허일범	시험장 연구진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올해도 다섯명 정도 그 분야 해외연수를 시켜서 자질을 높이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지역의 농가와도 완전히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 그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와 그 지역 출신 대학교수, 그 연구소 시험장 직원들이 동우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농민의 여론도 수시로 듣고, 연구진의 연구업적도 수시로 농가에게 발표하고 거기에서 정보교환이 되도록 그런 역할도 시작을 했습니다.
	• 요즘 초 · 중 · 고 · 대학에 이르기까지 학교주변에 각종 유해시설물이 난립하고, 음란서적등 학생들이 쉽게 퇴폐문화에 접하면서 사치와 낭비, 향락과 폭력등 탈선을 조장하고 범죄행위까지 유발함으로써 강 · 절도 등 심지어 패륜범죄까지 서슴치 않는 작금의 현실과 오늘의 교육환경, 그리고 일그러져 가는 사회병리현상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감 백승탁	• 먼저 쾌적한 교육환경과 건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학교주변에 산재해 있는 비교육적 환경을 정화하고자 학교환경 정화구역 내에서는 유해 업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자체 점검반을 편성 지도점검과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토요일을 「학교주변환경 정화의 날」로 정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각종 캠페인과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금년도 12월말까지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동욱 (예산군)	술집과 노래방, 만화방, 커피숍, 여관, 여인숙등 실로 헤아릴 수 없는 유해업소들이 우후죽순 같이 난립하면서 불법 퇴폐영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해환경에서 각급 학생들의 정서가 병들고, 사고와 품성이 병들고, 사회와 국가관이 흔들이고,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도덕과 예절이 쓰러지는 절대절명의 낭비의 사간이 자꾸만 흐르고 있는데, 오늘의 현실상황에서 학교와 가정과 사회가 일체하지 않는 교육풍토와 환경을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보시며, 학교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전제를 배제하고 새로운 교육환경과 풍토조성을 위하여 교육방향의 설정을 재고하고 교육방침을 새롭게 다듬을 필요는 없다고 보시는지? 우선 학생들이 잘못되는 것은 그 책임이 어디에 있든 간에 1차 적으로 교육행정이 폭넓게 끌어 안	교육감 백승탁	폐쇄하여야 할 14개 유해업소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지속적으로 정화 조치토록 요청하고 업주에게는 건전 업종으로 전환하도록 협조 서한문을 보내는 한편 현장 방문지도를 강화하며 다각적인 정비 대책을 수립하여 금년도 말까지는 이전, 폐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이동욱 (예산군)	아야 할 책임이 있고, 일선 학교의 학사관리 또는 손이 미치지 못하는 교외지도 역시 교육행정이 져야 할 책임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송선규 (서천군)	• 주된 수익사업 내용을 보면 토지개발, 골재채취, 사용료수입, 재산매각수입 등으로 이 사업들이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현상에 따라 수익률의 부진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들 가운데 본 의원이 구체적인 한 예를 들어 묻겠습니다 지난해에 112억8,350만원의 수익을 올려 우리 도 행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골재채취 사업은 부존자원을 이용한 수익사업이기에 부존자원 고갈로 인하여 수익률이 저하될 것으로 이에 대응하는 다른 경영수익 사업을 도 당국과 도의회에서는 반드시 마련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 도에서는 자치단체 수익사업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토지개발이용, 건설자재 생산공급, 관광유원지 개발운영,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등 5개 분야에 대하여 사업을 마련하여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총 53건의 경영수익 사업에 488억원을 투자하여 293억원의 순익을 올릴 계획으로 적극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 분야를 더욱 확대하여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여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택지의 우선 분양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택지는 태안신진지구, 논산내동지구, 천안신부지구로 3개 지구에 14만5,000평을 개발, 현재 분양 중에 있으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송선규 (서천군)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도 당국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준비하면서 어떠한 수익사업을 마련했습니까? 그리고 '93년 말 우리 도의 부채액이 2,876억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반재정 확충을 위해 실시했던 도 공영개발사업이 742억원의 부채가 있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의 사업을 보면 태안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 논산 내동지구택지개발, 천안 신부지구 택지개발, 서산 대죽지구 지방공단 조성, 당진 석문국가공단 조성사업 등으로 택지개발이 주된 사업인데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는 6월 이후 토지실명제의 실시 등으로 부동산 경기는 갈수록 침체되기에 우리 도 당국에서는 조성된 택지의 우선분양 대책과 공단에 기업유치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기 획 관 리 실 장 손인완	며 분양율은 50.5%입니다. 지구별로는 신진지구 22.5%, 내동지구 46.1%, 신부지구 78.2%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3개 지구에 현장분양 안내소를 설치 운영하면서 지방 및 중앙일간지에 분양광고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4월초에는 TV방송을 통한 홍보와 해당 지역 및 서울, 경기지역 부동산 업소와 부동산컨설팅 회사등에 우편물을 이용한 팜플렛, 안내문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분양율을 제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에서는 2001년까지 총 92개 단지 7,483만㎡의 공단조성을 목표로 현재까지 64개 단지 2017만㎡를 조성, 758개 업체를 유치하여 539개 업체가 준공 또는 가공되어 3만3,25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미분양된 지역에 업체유치를 위해 홍보물 제작 배포, 입주설명회등 다각적인 홍보를 전개하여 오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입주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서산 대죽공단 39만평에 (주)금강, 고려화학 등을 유치하였으며, 많은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입주를 상담해오고 있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송선규 (서천군)	충남도가 도내 주요공단 500여만평에 입주업체 선정을 위하여 '94년 11월 23일 서울상공회의소 입주센타에서 입주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아는데 성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충남 서해안이 중국과 수교 후 최적의 공장입지로 손꼽히고 있는데 도내의 주요공단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거나 대중전용공단으로 전환하여 공단분양에 내실을 기할 용의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활성화로 인한 우리 도의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공영개발의 근본취지에 어긋남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 획 관 리 실 장 손인완	도 내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중앙부처와 협의 천안 3공단에 외국인 전용공단을 조성중에 있으며, 향후 외국의 고도기술 업종을 적극 유치할 생각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중전용공단으로서의 전환은 현재 중국의 대한 투자가 미약한 관계로, 향후 그들의 추이를 보아 가면서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석문국가공단 입주설명회에는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200여 업체가 참석하여 입지여건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입주희망 업체의 유치를 위하여는 우선 국가공단 관리기관지정이 선행되어야 입주모집 공고 등이 가능하므로, '94년 12월 5일 우리 도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통산산업부 장관에게 요청하였고, 우리 도의 관리기관 지정에 대한 당위성을 수차에 걸쳐 중앙부처에 건의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충청남도와 통상산업부 산하 서부지역 공업단지 관리공단이 공동으로 관리기관 지정을 받아서 우리 도에서 공단 용지분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송선규 (서천군)	• 우리 도의 행정공무원은 1994년도 통계연보에 의하면 도청 및 연관사업소에 2,054명이고, 시·군청에 1만2,966명으로 총 1만5,020명입니다. 이를 우리 도민 185만 7,911명을 기준으로 할 때에 공무원 1명이 도민 124명을 담당하고 있어 도민 124명이 공무원 1명의 생활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는 우리 나라 15개 시·도의 평균치보다 월등하게 높은 숫자입니다. 정보화 행정이 이루어지고 전산화 사무가 실시되는 현 시점에 우리 도의 공무원을 줄여 경상비 지출을 감소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도에서 이루어진 4개 시·군 통합시에 있어서 통합전의 공무원은 총 4,237명입니다. 통합으로 인하여 다른 시·도로 전출된 공무원은 몇 명이며, 감원된 공무원은 몇명입니까?	내 무 국 장 이종은	• 먼저 시·군 통합으로 인한 감원 현황과 통합시의 민원처리 실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자 8개 시·군의 통합으로 인하여 감원된 정원은 총 165명이며 잉여 인력은 49명이었고, 타 시·도로 23명을 전출하고 현재 26명이 과원상태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인사 동결을 통한 타시·군 전출 등을 적극 추진해서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송의원님께서는 통합시의 인구가 천안시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행정기구는 비대한 이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송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4개 통합시의 기구는 천안시보다 다소 크게 편제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통합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공존하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써 농수산 분야 등 1차 전업분야 업무처리를 위한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며 하부조직이 도시 밀집지역인 동으로만 구성되는 천안시와 달리 통합시는 읍·면을 둠으로써 기본 정원이 동보다는 많은 읍·면의 공무원이 다소가 소요됩니다. 면적이 천안시보다 6배 내지 11배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송선규 (서천군)	인구 20만3,489명인 천안시의 공무원은 840명이므로 이를 근거로 할시에 4개 통합시의 전 공무원을 최대한으로 늘린다고 해도 3,302명이 되어 917명이 감원되어야 하는데 몇 명이나 감원되었습니까? 국가에서는 통합시를 위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한지 5개월이 지났으며 지금에 와서 우리 도 천안시와 천안군을 통합하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군에 3개의 읍이 있고, 인구가 현 통합시보다 많은 15만3,368명인 논산군을 시로 승격하여 논산군을 발전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계획이 없다면 도 당국에서 전국 최초로 이를 중앙에 건의하여 실시하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본 의원이 거주하는 서천군 장항읍과 마서면의 일부는 2000년대에 전북 군산시와 통합하여 장군 광역시로, 건설교통부에서 말하는	내 무 국 장 이종은	가 되어 광활한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데 따라 인력이 다소 소요된다는 점을 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통합시는 일시에 기구와 정원을 대폭 감축할 경우에 많은 잉여 인력이 발생하여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이 있게 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등 부득이한 면이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통합시의 적정한 규모에 조직을 운영한다는 방침 아래 일부 기구와 정원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는 '99년까지 5개년 연차적으로 감축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송의원님께서는 기존 4개 통합시보다 인구가 많은 논산군에 시 승격과 함께 장항읍이 군산시에 통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천군을 시로 승격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지역의 일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도세의 악화를 막기위한 사전 대응책을 제시해 주신 송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군에 시 승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군은 송의원님께서 말씀드린대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송선규 (서천군)	군장 광역시로 될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0년대의 도세를 위하여 2개 읍이 있는 서천군만을 시로 승격하여 군산시와 통합을 막을 계획은 없습니까?	내 무 국 장 이종은	로 4개 통합시보다 인구가 많고 면적도 넓어 벌써부터 시 승격이 되어야 한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94년 시·군 통합을 추진할 당시 논산군에 도농 복합형 시로 설치하거나 만일에 불가능하다면 군에 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내무부에 제시했으나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앞으로 중앙관계부처와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천군의 시 승격에 관하여도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시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당분간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 세계화를 앞당기기 위하여 '97년부터 본격 실시하는 국민학교 영어조기교육에 대비하여 교육자의 확보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현재 국민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일정기간 연	교육감 백승탁	• 우리 도에서는 국민학교 학생들의 영어회화 지도를 위하여 지난해 말까지 2,363명의 선생님이 영어연수를 받았고 금년에도 16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점차 연수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도 세계화를 향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송선규 (서천군)	수를 하도록 하여 영어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더 나아가 교대출신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가운데 학교에 배속되지 않은 채 대기중인 교사들을 선별하여 영어교원교육을 실시하고 영어교육자격증을 발부하여 자격증 유·무에 따라 수당 지급제도와 선임용제를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교육감 백승탁	한 조기 영어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회화능력이 뛰어난 학부모와 지역인사를 초빙하여 질 높은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특활영어연구, 시범학교 지정 등으로 학습지도방법 개선에도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도에서는 지난해 미국 LA 교육위원회와 교육문화 교류협력 체계를 통하여 이루어진 원어민 영어교사를 채용하여 시·군 별로 각 1명씩 배치하고, 학생들이 영어지도와 교원들의 연수를 담당토록 하여 영어교육의 질적 관리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교육 수혜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정부에서도 우수 시책사업으로 채택하여 금년에는 전국 각 시·도 교육청 단위로 확산해 가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 위탁하여 매년 20명의 교사들에게 현지 어학연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재원 (공주군)	• 우리 도와 농수협에서는 농수산물의 다단계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농수산물의 제값 받기 일환으로 도시 지역에 농수산물 직·공판장을 확대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 정 국 장 이상선	• 농산물 공판장은 도매시장의 축소형태로써 소규모 도시에서 소비지 유통시설로서의 나름대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서 기 설치한 공주, 온양 공판장의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98년까지 보령서산지역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유재원 (공주군)	그러나 그 점포망을 통하여 판매되는 농수산물이 생산량의 일부 극소 수량일 뿐만 아니라 가격도 공판장 및 직판장에서는 일반 백화점이나 시장보다도 싸지 않다는 점입니다. 운영결과를 집행부에서도 분석하여 보았겠지만 이는 전시적 탁상행정에 불과합니다. 유통구조의 개선은 우리나라는 서구와는 달리 도시계획부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시구조는 문밖만 나서면 상점들이 즐비하여 어느 물건이든지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소매점 형태를 벗어 날 수 없도록 주택가에 근린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도시계획 자체가 주거 지역엔 대로변에도 일체의 판매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한적한 도시 외곽에 별도의 상업지역을 정하여 쇼핑	농 정 국 장 이상선	도매시장의 설치는 도시의 규모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중앙에서 투자대상 도시를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98년까지 전국 거점도시 및 중소도시에 34개소를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교통의 중심지인 천안시 신당동에 사업비 60억7,900만원을 투자해서 부지 1만990평, 건물 2,829평 규모의 「천안시 농산물 도매시장」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중에 개장할 목표로 하고 있으며, 농산물 도매시장이 개장될 경우 연간 11만4,000톤 정도의 과채류를 중개함으로써 중서부권의 농산물 유통구조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서 농어민 소득증대와 소비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하리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단위 집하장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94년말 현재 농산물 간이집하장 개량 저장고 등 형태의 집하장이 부락단위, 또는 읍·면 단위로 총 585개소가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농산물의 수집, 선별, 포장, 수송 등 산지유통기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욱 확대 추진할 계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유재원 (공주군)	물 등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이제 자동차 문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앞으로는 분명 외국과 같은 자동차 문화가 급속히 오리라 생각되므로 공판장 및 직판장 확대를 중지하고, 그 예산을 모아 장기적으로 대단위 농수산물 집하장 및 시장을 준비하여 우리 도 주체의 유통회사를 만들어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과 농어민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농 정 국 정 이상선	획에 있습니다. 유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대단위집하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농민들의 의견과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서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개발지역에 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사들인 사람들이 많아 개발을 완료해 놓고서도 시설투자를 않고 있어 개발지가 황폐화되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많아질 것 같은데 개발 추진을 위하여 토지개발공사처럼 정해진 기간 내에 시설을 하지 않으면 환	건 설 도 시 국 장 김만식	• 유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투자기관인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와 지방차지단체에서 개발한 택지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내에 주택 등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 환매하도록 환매조건부로 계약하여 분양되고 있습니다. 현재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중 단독주택용지의 분양은 장기간 부동산 경기침체로 현재 30%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유재원 (공주군)	수 매입조치하는 환매조건부 등기제도를 개발지역에 도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개발지역을 훼손되기 전의 모습과 형태를 사진과 종합기록으로 충실히 남겨서 개발전의 생활풍습과 문화가 자세히 후세에 전해져야 되며 현 시대상이 그대로 꾸밈없이 보전될 수 있도록 어느 마을들을 시대별로 계속 보존 지정하여 역사의 변천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역사의 현장을 조성, 100년~200년 또는 100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펼 용의는 있으신지요?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토지를 투기목적으로 매입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분양된 택지가 장기간 방치되어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신규개발지구에 대한 개발 전·후대비 기록보존은 오늘의 생활풍습과 문화의 실상을 후세에 전해준다는 측면에서 볼 때 필요하다는데 대하여는 유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공단조성이나 신도시 건설시에는 개발 전·후의 모습을 대비한 영구시설물 설치를 적극 검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 우리 도는 1983년 일본국 구마모도현과 자매결연을 하여 유대를 맺어 오면서 그 동안 많은 교류가 있었고, 올해도 6개 분야 9차례에걸쳐 154명이 구마모도현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고, 구마모도현을 두번에 걸쳐 65명이 우리 도를 방문할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3월 19일자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미화하고 한국식민지 지배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는 결의문을 일본내 12개 현 가운데에서 구마모토현 의회가 제일 앞장서서 채택하였다는 보도를 접한 후 본 도에서는 한·일 및 양 도·현 관계의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그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유재원 (공주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중 4월에는 국제통상협력실 7명이 구마모도현을 방문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 도와 자매결연 관계에 있는 구마모도현 의회는 "태평양전쟁에서 사망한 전몰자를 추도하고 그들의 행위에 감사한다"는 등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일본의 한국식민지 지배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고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본국내 12개현 의회 가운데서 제일 앞장서서 반한국적인 구마모도현과의 자매결연관계는 마땅히 파괴되어야 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교류확대를 계획하는 의도는 아무리 구마모도현의 집행부가 아닌 의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응분의 대응을 해야하고 즉각 모든 교류계획을 중지하고 자매관계를 청산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국 제 통 상 협 력 실 장 곽유신	진상을 규명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보도내용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구마모토현 지사에게 진위여부를 의뢰하고 그 회신을 받아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1994년 12월 19일 구마모토 현의회에서 "태평양전쟁의 전사자추모와 항구적인 평화에 관한 결의"를 하면서 세계항구 평화에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맹세한다는 내용은 있었으나 기타 다른 내용은 전연 없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구마모토현과의 관계는 양국간의 관계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국익과 도정에 도움이 되고 국민정서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문규 (천안군)	• 충남도는 지리적 여건상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고 발전 잠재력을 고루 갖추고 있으면서도 무슨 사유인지 여러 분야에 걸쳐 상대적으로 타도와 비교할 때 많은 분야에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서해안 개발과 서·북부지역 중심의 공업화 추세로 도세가 다소 신장되고 있는 현상은 일면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매우 고무적인 도정 성과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진취적이고 구체적인 발전 전략을 펼쳐 나가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7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도정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도계 행정강화의 긴요성 인식과 방향에 대하여 질의한 바 있지만 도계지역 투자비가 아직도 타도와 현격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충남도민의 자긍심과 내고장에 대한 애착심을 떨어뜨리고 지역간	기 획 관 리 실 장 손인완	• 우리 도는 성환읍이 경기도 평택시와 조치원읍이 충북 청원군과, 장항읍이 전북 군산시와, 논산과 금산이 대전광역시 및 전북과 도계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인접한 대전광역시, 평택시, 청원군, 군산시 등 대도시는 재정여건이 비교적 양호하여 지역개발에 있어 우리 도가 상대적으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인접지역과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도계지역 개발사업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성환·조치원 지역을 도시형 첨단공업벨트, 장항 지역은 임해형 공업지대, 논산·금산 지역은 대전권 연계개발 등 지역특성을 살린 장기발전구도를 설정하고 특화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 취약한 재정여건상 투자비 확대에 한계가 있었고, 장기발전계획이 대단위사업인 관계로 완공까지는 수년이 소요됨에 따라 주민의 기대에는 다소 미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을 유념하여 도계지역 개발촉진을 위해서 행·재정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문규 (천안군)	경쟁력에서 우리 도는 항상 뒤만 따라 간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균형개발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것은 심각히 챙겨 보아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오다보면 도로가 좁아지는 지점 혹은 농로 포장이 종결되는 지점이 충청남도 경계라는 것은 우리 도계 주민이 느끼는 행정의 현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계 행정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상황과 앞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구상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차량의 급속한 증가와 대형화, 과속질주 그리고 국도, 지방도, 군도등의 획일적인 개량과 인적교류 및 물자수송등의 기하급수적인 팽창으로 인명과 재산상의 대형 사고 등을 미리 막기 위해서는 도로, 교통 안전시설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는 것을 다같이 절	지 역 경 제 국 장 민종기	• 금년도에는 교통신호기등 도로교통 안전시설의 확충에 7개사업 28억 6,500 만원을,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171억8,000만원등 5개분야에 걸쳐 24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기타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과 교통안전 시설이 필요한 2,934개소에 대하여 337억 3,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문규 (천안군)	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 당국에서도 나름대로 해마다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많은 분야에서 개량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만, 지금 현실은 도로의 종류에 따라 관리청이 각각 다르고 적용법규와 기준이 다르고 사소한 시설물을 놓고도 예산확보, 시설, 관리, 보수 등의 체계가 이원화, 삼원화되고 있어서 국토관리청, 경찰청, 도청, 시·군 등이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시설의 설치와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서 신설하거나 고장 등으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즉시 현장기동처리태세가 이루어지도록 관련법규 등의 정비가 이루어져야함은 물론 지방비 차원에서의 도로교통 안전시설물의 획기적인 확충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있는지 지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 역 경 제 국 장 민종기	교통안전시설물의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관리체계의 일원화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 관리토록 하고 있어 사실상 일원화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교통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도에서도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 등을 적극 지원해 오고 있으나, 체계적이 관리체제가 아직 미흡하고 이에 따른 기동처리등에 다소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향후 바람직한 개선책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도로교통 안전시설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적절하신 지적과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그간 우리 도에서는 교통사고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른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줄이고자 교통사고 줄이기운동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을 '92년부터 '96년까지 시행코자 충남지방경찰청 및 도로교통안전협회 충남지부 등과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문규 (천안군)		지 역 경 제 국 장 민종기	협의하여 5개년 중기계획으로 총 5,946개소에 1,049억원을 투입하여 위험도로 선형개량, 위험교량 개량 및 육교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 아직까지 물 문제가 우리 지역에서는「발등의 불」로 볼 수는 없지만 남부지방의 현실은 농업용수, 공업용수 심지어 생활용수 할 것 없이 가히 「물전쟁」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갈수록 용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지역에서도「보」를 치려해도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으로 여간 고충을 겪고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물이 많을때 흥청망청 흘려 보내거나 허비해 버리고 가뭄이 닥쳐서야 절수를 위해 벽돌을 넣는다, 제한급수다, 용수원 굴착이다,「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처방에 급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미 남부권은	농 정 국 장 이상선	• 먼저 우리 지역의 '94년 이후 평균강우량은 평년보다 175㎜가 적은 1,132㎜이나 평균저수율이 94%를 보이고 있어서 현재 가뭄에 대한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과 같은 가뭄이 1, 2개월만 더 지속된다 하더라도 현재 저수량으로 몽리구역내 모내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3월들어 4, 5차례의 강우와 흐린 날씨의 영향으로 대부분 농경지가 일정수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밭작물은 가뭄의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식수공급은 지난 1월부터 서천 장항읍 일원에 제한급수를 실시한 바 있으나 암반관정개발로 3월 중순부터 정상 급수중에 있습니다. 5월말까지 가뭄이 지속될 것에 대비해서 절수운동을 추진을 하면서 지역별로 보충수원의 확보, 부족수원의 개발 등 단계별 대책을 수립 추진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문규 (천안군)	여러 지역에서 물부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줄로 아는데, 우리 고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지금과 같이 가뭄이 계속될 경우 못자리 설치와 5-6월 모내기 그리고 밭작물 등의 피해는 없는지 또 먹는 물 제한급수 지역과 수질상의 문제는 없는지, 공업용수의 부족으로 관내 공장중 생산에 차질을 빚는 곳은 없는지,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용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금년도에 투자되는 국·도비의 규모는 얼마나 되며, 타 시·도와 비교할 때 물문제 해결에 적정한 투자액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서 약간만 가물어도 물이 부족해서 쩔쩔매는 지역주민의 물문제의 근본적 해결대책을 세워 가지고 도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농 정 국 장 이상선	중에 있습니다. 공업용수 공급도 공업단지별 자체 용수원 확보로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가뭄의 장기화에 대비해서 하루에 300톤 이상 물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자체 지하수개발을 권장하는 등 대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우리 도의 총 투자규모는 38억1,000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저수율이 낮은 지역의 관정개발을 위해 예비비 13억8,000만원, 양수장 설치비 1억원을 투자하였고, 도자체 예산사업으로 소형관정개발비 10억5,000만원, 농업용수 시설확충비 3억2,000만원, 소류지 준설 9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투자규모는 가뭄이 극심한 영호남 지방에 비해 적은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가뭄상태를 비춰볼 때 용수확보대책을 위한 예산은 어느 해 보다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물문제의 근원적 해결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질 문	질 문 내 용	답 변	답 변 내 용
김문규 (천안군)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농 정 국 장 이상선	앞으로 지구별 가뭄실태를 파악하여 해당지구 실정에 맞는 용수원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어 적정한 예산을 투입토록 하겠으며, 우선 당면 가뭄극복을 위해 관정 1,635공, 저수지 준설 46개소 등 용수개발 사업을 5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第39節 第92回 臨時會

Ⅰ. 槪 況

1. 開會背景

○ 제9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궐원된 교육위원 선출과 당면한 각종 조례 제·개정안 등을 부의하고자 95년 5월 13일자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5년 5월 15일 집회공고를 실시하고 95년 5월 23일 14:00에 개회하였다.

2. 議事日程

○ 회기 : '95. 5. 23 ~ 5. 27 (5일간)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5. 5. 23(화) 14:00	본 회 의 (제 1 차)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 2. 제9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3. 궐원된교육위원선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5. '95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제안설명 6.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휴회의 건	
'95. 5. 24(수) 11:00	조례정비 특 위 (제6차)	1. 충청남도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충청남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5. 5. 24(수) 11 : 00	조례정비특위 (제6차)	4. 충청남도도립공단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지방항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 00	도청이전 특 위 (제7차)	1. 도청이전 업무추진상황보고 및 기타사항 토의	
13 : 10	내무위원회	1. 충청남도시 · 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휴양림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15 : 00	교육사회 위 원 회	1. '95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2. 충청남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5 : 30	기획경제 위 원 회	1. 충청남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2. 충청남도금강종합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	
11 : 00	농림수산 위 원 회	1. 충청남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 3. 충청남도농촌지도자4-H회원육성기금조성 및 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5. 5. 25(수) 10 : 00	예산결산 특 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선임의 건 3. '95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내무위 회의실
'95. 5. 27(토) 10 : 20	운영위원회 (간담회)	1. 도의회 청사확보방안 보고 2. 도의회 본회의장 확충계획 검토보고	
11 : 00	본 회 의 (제2차)	1. '95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지방항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8. 충청남도금강종합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 조례안 9. 충청남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10.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11.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2.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4. 충청남도휴양림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5.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16. 충청남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17. 충청남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8. 충청남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 19. 충청남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20. 충청남도농촌지도자4H회원육성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1.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2. '95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비회기중 활동상황

년 월 일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95. 5. 12(월) 11 : 00	운영위원회	○ 제9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일정 협의	○ '95.5.23~ 5.27(5일간)

3. 案件處理現況

구 분	건수	안 건	비 고
계	27		
조 례 안	21	1. 조례안 처리내역 참조	
예 산 안 (결 산 안)	1	1. '95제1회충청남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동의승인안	1	1. '95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기 타	4	1. 제9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궐원된교육위원선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4. '95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제안설명	

4. 條例案 處理內譯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444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위원장 (5. 12)	본회의	○도의회 의원정원이 55인 → 61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정수를 각 12인으로 함(단, 의회운영위원회는 11인)	'95. 5.27	'95. 5.29	원안
445	충청남도금강 종합개발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안	충청남도 지사 (5. 16)	기획 경제	○충청남도직할하천인 금강 구간에서 사업으로 얻어지는 골재수익금, 전입금, 기타 수입금을 금강종합개발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 및 기타 운영비로 하는 특별회계 설치운용	〃	〃	〃
446	충청남도민자 유치사업심의 위원회운영조례안	〃	〃	○민자유치사업관련 주요시책 및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등을 심의하기 위한 의회의원, 공무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	〃
447	충청남도시군 의회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 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내무	○지방의원선거구 및 의원정수에 관한 법적근거를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서 앞으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으로 하고 행	5.23	5.24	〃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정구역개편 및 동의명칭 변경에 따른 선거구명칭을 변경하고 인구증감 선거구에 대한 의원 정수를 조정함			
448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사 (5. 16)	내무	○천재지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은 지방의회의결로 감면 조치됨으로써 조례로 따로 정하게된 감면조례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의 모든 신고, 납부, 통지, 제출등의 기한연장을 가능토록 하며 법령의 폐지 및 중복규정등 조문을 정리함	5.27	5.29	원안
449	충청남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	〃	○지정수량 1/5미만의 소량위험물과 지정수량 10배 미만의 농업용, 어패류 양식장용 위험물 취급신고조항 및 과태료조항을 삭제함	〃	〃	〃
450	충청남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교육사회	○항결핵제는 처방의 종류에 관계없이 2,000원으로 하고 피라지나마이드와 리팜피신 처방을 신설함	〃	〃	〃
451	충청남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	농림수산	○어항시설사용료는 어항시설가액의 50/1,000으로 하고 사용기간이 1년이상	〃	〃	〃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일 경우에는 매년 1년분을 선납(일할계산)하고 국가, 지자체, 수협, 어촌계등 행정목적 수행이나 고용사업 수행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감면함			
452	충청남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	충청남도지사 (5. 16)	농림수산	○법에서 정한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우리도 일원을 수렵 구역으로 하고 수렵장사용료 감면대상자 및 사용료와 포획조수, 수량을 정함	5.27	5.29	원안
453	충청남도농촌지도자4H회원육성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맞도록 기금관리공무원관직명을 변경하고 기금운용관을 상향조정(사회지도과장→지도국장)하며 기금지원대상자선발시 심의에서 이를 규칙으로 정하여 사업추진에 능률을 기함	〃	〃	
454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 (5. 16)	교육사회	○조례의 설치근거조항에 상위관련법규를 추가하고 유치원과 신설학교의 명칭 및 위치를 정하며 이전학교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함	〃	〃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455	'95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충청남도교육감(5. 16)	예결특위	○세입, 세출예산총액 728,932,500,000원을 762,780,800,000원으로함	5.27	5.29	수정
456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사(5. 16)	내무	○가격표시명령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권한과 공장입지금지지역의 고시업무를 시장·군수 및 계룡출장소장에게 위임함	〃	〃	원안
457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건설도시국의 명칭을 건설교통국으로 변경하고 건설도시국에서 관장하던 상하수도 업무를 보사환경국으로 조정하며 지역경제국 분장사무중 교통행정업무를 건설교통국으로 조정함	〃	〃	〃
458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	○본청정원중 정무직 1인을 증원하고 정원관리기관중 의회사무처(68인)를 추가하며 직속기관정원중 79인을 증원함	〃	〃	〃
459	충청남도휴양림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사(5. 23)	〃	○휴양림관리사무소의 위치를 명시하고 효율적인 도유림관리를 위하여 분소를 두며 관할구역을 명시함	〃	〃	수정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관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460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사 (5. 16)	내무	○위원회에 미리 안건검토사항을 보고하는 위원에게만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사전에 안건을 배부받아 연구 검토하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안건별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비지급규정이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함	5.27	5.29	원안
461	'95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	○도립청양전문대학설립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의회의 동의 요청	〃	〃	〃
462	충청남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조례특위 위원장 (5. 23)	본회의	○고용직공무원이 기능직으로 전환되어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음으로 폐지함	〃	〃	〃
463	충청남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관리방조제 심의회 위원의 직명을 현직제에 맞도록 개정 (농어촌개발국장, 농림수산국장 → 농정국장)	〃	〃	〃

의안번호	의 안	제안자(제안일)	소 관 위원회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송일	비고
464	충청남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특위 위원장 (5. 23)	본회의	○새로운 기술, 공법등이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제5항으로 개정하고 심의범위에 있어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도지사로 조정함	5.27	5.29	원안
465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	○도립공원위원회 위원의 직명을 현직제에 맞도록 개정(농어촌개발국장, 농림수산국장 → 농정국장)	〃	〃	〃
466	충청남도항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	○도지사가 임명하던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위원장이 임명토록 함	〃	〃	〃

5. 關員된 敎育委員 選出

○ 제92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교육위원 보궐선거를 위하여 태안군과 연기군의회로부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았으나 태안군은 후보자등록 신청자가 없어 연기군 의회에서 추천받은 2명중 무기명 비밀투표로 1명을 충청남도교육위원으로 선출하기로 하였다.

○ 당선자 명단

소 관	당 선 자	비 고
연기군교육청	孔 敬 男	

第4章 第4代議會 議政活動 決算

第1節 會期運營

第2節 議長團 및 常任委員長 會議開催

第3節 豫算審議

第4節 各種 議案處理

第5節 行政事務監査實施

第6節 道政 및 教育行政 質問

第7節 請願 및 陳情등 民願處理

第8節 常任委員會 現場活動

第9節 特別委員會 構成 運營

第10節 議員 研鑽會 開催

第11節 歷代會議錄 復原發刊

第4代 議會 議政活動 決算

總 決 算

30년만에 부활된 제4대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높은 기대와 열악한 재정수준의 이중적 어려움속에서 이룩해 낸 4년간의 의정활동을 총결산 및 스스로 평가해 본다.

□ "충남당" 이라는 대명제 아래 당파를 초월하여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 · 균형 · 원조자 · 동반자적역할을 원만히 수행함으로써
⇒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과도한 요구나 주장을 여과해 주는 중재자의 역할을 함

□ 그간 중앙정부에 대한 끈질긴 요구로 많은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시켰고,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위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게 하여 지방의회에 고발권과 과태료 부과권한이 주어지도록 하였으며, 갖가지 중앙시책 및 사업을 시행에 앞서 지역주민 편의와 의견을 우선 수렴하는 행정 행태의 개선을 관철 시켰으며

□ 지역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서해안개발사업」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이룩하였음

□ 반면 의원이 명예직이라는 것에서 변형되어 예산에 의한 의정활동비지급, 해외연수등으로 주민의 비판적인 시각과 함께 지역주민생활과 관련한 조례제정 미흡및 형식적인 민원처리 등으로 아쉬운 면도 노정되었음

主要議政活動成果

1. 회기운영 : 총39회 411일(정기 4회 139일, 임시 35회 272일)
2. 의장단, 상임위원장 회의 : 총18회 129건 처리
3. 예산심의 : 총28회 6,374,449백만원(삭감 68,411백만원 -1.1%)
4. 안건처리 : 총661건(조례 349, 예산결산 38, 기타 274)
   ※ 조례 349건중 91건(26.1%)은 의원 및 위원회 제안
5. 행정사무감사 : 총4회 - 25일
   ○ 자료요구 - 2,977건
   ○ 처리요구 - 621건(시정 174, 처리 294, 건의 153)
   ○ 조치현황 - 완료 533건(85.8%), 추진중 88건(14.2%)
6.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18회 - 82명, 446건
7. 민원처리 : 총298건(청원 11, 진정등 287)
   ※ 수리된 민원 253건중 민원사항 해결 133건(52.6%)
8. 상임위원회 현장활동 : 총57회(회기중 40, 비회기중 17)
9.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 4개 특위 - 48명
10. 의원연찬회 개최 : 12회 - 600명(국내 7회, 국외 5회)
11. 역대 회의록 복원 발간 : 1차 복간 - 23회분 완료

第1節 會期 運營 狀況

구 분	계		정 기 회		임 시 회		비 고 (본회의 일수)
	회 수	일 수	회 수	일 수	회 수	일 수	
계	39	411	4	139	35	272	100(24%)
'91	7	62	1	29	6	33	21(34%)
'92	9	97	1	35	8	62	24(25%)
'93	11	100	1	35	10	65	28(28%)
'94	9	120	1	40	8	80	25(21%)
'95	3	32	-	-	3	32	8(25%)

第2節 議長團 및 常任委員長 會議 開催

○ 구 성 : 9명(의장단3, 상임위원장6)
○ 개최시기 : 월1회(수시)
○ 그간 개최회수 : 18회
○ 주요안건 : 129건 처리
  • 회의 운영관련 협의 - 60건
  • 의회 당면업무 논의 - 54건
  • 도주요업무현황 사전 청취등 - 15건

2-1 議長團 및 常任委員長 會議開催 狀況

일 시		회 의 안 건 (건)					비 고
		계	협 의	토 의	사무처보고	집행부보고	
합 계		129	60	20	34	15	18회
'92. 6. 2		7	5		2		
'93	소 계	49	22	14	13		
	7.13	11	2	8	1		
	8.17	17	8	2	7		
	9.16	7	3	1	3		
	9.23	2	2				
	10.18	6	4	1	1		대천현포동
	11.16	6	3	2	1		사무소
'94	소 계	47	23	6	13	5	
	1.5	2	1		1		
	2.21	6	3	1	1	1	
	4.18	8	3	2	3		
	5.23	13	7		2	4	
	6.29	4	2		2		
	8.17	5	1	1	3		
	10.5	5	4	1			
	11.7	4	2	1	1		
'95	소 계	26	10		6	10	
	1.25	6	4		2		
	3.16	9	2			7	
	5.11	11	4		4	3	

第3節 豫算審議

〈道廳分〉

(단위 : 백만원)

구 분	요 구		삭 감		비 고
	회 수	금 액	금 액	%	
계	15	3,680,364	59,854	1.6	
'91	2	46,284	12,181	26.3	
'92	4	874,613	6,064	0.7	
'93	4	862,240	36,426	4.2	
'94	5	1,897,227	5,183	0.3	'95 본예산 포함

〈教育廳分〉

(단위 : 백만원)

구 분	요 구		삭 감		비 고
	회 수	금 액	금 액	%	
계	13	2,694,085	8,557	0.3	
'91	2	28,733	200	0.7	
'92	2	531,913	521	0.1	
'93	3	664,281	1,860	0.3	
'94	5	1,425,310	5,996	0.4	
'95	1	33,848			

第4節 各種 案件 處理

4-1 案件總括

(단위 : 건)

안건 / 위원회	계	예산결산	조 례	건 의	결 의	동의·승인	재 의	기 타
계	661	38	349	23	12	38	1	200
운 영 위	8		7		1			
기획경제	39		36			3		
내 무	184		150	2	1	26		5
교육사회	80		78	1				1
농림수산	17		15			2		
건 설	28		19	5	1			3
특 별	42	38	2	1	1			
본 회 의	263		42	14	8	7	1	191

4-2 條例案

제안자 / 구 분	계	의 원	위 원 회	도 지 사	교 육 감
계	349	9	42	247	51
제 정	70	2	2	57	9
개 정	254	7	38	172	37
폐 지	25		2	18	5

4-3 主要案件 處理事例

〈事 例 1〉

○ 안 건 명 : 충남도청이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안
○ 제안 년월일 : '93. 6. 9(의결 '93. 6. 14)
○ 제 안 자 : 충남도청 이전특별위원회

○ 이 유
- 의회의 특별위원회 활동과 보조를 맞춰
- 집행부에 도지사 직속으로 전담기구를 설치하기 위함

○ 주요골자
- 부지사를 단장으로, 도청국장급 이상을 단원으로 구성
- 기능으로는 자료수집, 주민의견수렴, 재원조달등 이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의회와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함

〈事 例 2〉

○ 안 건 명 : 충청남도행정정보공개조례안
○ 제안 년월일 : '93. 3. 14의결 ('93. 5. 6)
○ 제 안 자 : 김재봉 의원외 10인

○ 이 유
- 주민의 알 권리가 무시된채 중대한 사안들이 대부분 비공개로 추진되어 공정집행, 책임행정, 공개행정을 제도화 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각종 행정정보 공개의무화 (사생활침해, 불이익우려 제외)
- 공개거부시 이의신청및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통보
- 심의위원회는 도지사가 9인이내로 위촉

< 事 例 3 >

○ 안 건 명 : 백제문화권개발에 따른 건의안
○ 제안 년월일 : '92. 11. 9(의결 '92. 11. 13)
○ 제 안 자 : 백제문화권개발지원특별위원회

○ 이 유
- 사업추진전담기구설치 및 각부처간 협조체제 구축
- 중앙부처간 이견으로 특정지역 지정 지연

○ 주요골자
- 국가사업으로 선정하여 적극추진
- 사업추진 총괄기능을 가진 별도 전담기구 설치
- 특정지역 지정에 따른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여 조속 지정

○ 건 의 처 :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재정경제원, 내무부, 문화체육부, 건설교통부

< 事 例 4 >

○ 안 건 명 : UR시대의 한국인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건의안
○ 제안 년월일 : '94. 9. 6(의결 '94. 9. 13)
○ 제 안 자 : 농림수산위원회

○ 이 유
- UR타결로 저가의 외국인삼 수입예상에 따라 국내경작인을 보호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인삼사업법을 폐지하고 인삼산업진흥법을 제정
- 홍삼검사제도의 폐지 및 수매, 제조, 유통상의 규제해제

○ 건 의 처 : 행정개혁위원회, 재정경제원, 농림수산부, 보건복지부

〈事 例 5〉

○ 안 건 명 : 추곡수매량 확대 및 수매가 인상 건의안
○ 제안 년월일 : '94. 11. 25(의결 '94. 12. 1)
○ 제 안 자 : 농림수산위원회

○ 이 유
- 전국단위 추곡수매량 및 수매가 결정에 있어 농민의견 수렴
- 우리 도가 농업도임을 감안하여 배정물량 확대

○ 주요골자
- 추곡수매량을 1,100백석 확대 및 수매가 10% 인상
- 충남도의 배정물량 확대

○ 건 의 처 : 국회, 재정경제원, 농림수산부, 민자당, 민주당

〈事 例 6〉

○ 안 건 명 : 지방자치법 개정요구에 따른 결의안
○ 제안 년월일 : '93. 12. 21 (의결 '93. 12. 24)
○ 제 안 자 : 김현근 의원외 29인

○ 이 유
- 지방의회에서 요구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 중앙정부에서 수용토록 촉구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지방의회에서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전면수용
- 지방자치발전에 역행하는 모든 시책 즉각 중단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 철회

○ 건 의 처 : 국회, 내무부

第5節 行政事務監査實施

[監査概要]

○ 실시회수 : 4회
○ 시 기 : 매년 정기회중 10일 이내
○ 대상기관 : 47개 부처(당연 45, 승인 2)
○ 자료요구 : 2,977건('91 - 301, '92 - 553, '93 - 896, '94 - 1,227)

[處理要求]

구분 \ 위원회별	계	기획경제	내 무	교육사회	농림수산	건 설
계	621	161	100	186	94	80
시 정	174	48	35	39	23	29
처 리	294	88	46	98	30	32
건 의	153	25	19	49	41	19

[措置結果]

구 분	계	완 료	추 진 중	조치불가	장기검토	비 고
계	621	504	84	29	4	
시 정	174	151	17	6		
처 리	294	238	44	10	2	
건 의	153	115	23	13	2	

5-1 監査結果 主要指摘 事項

〈事 例 1〉

○ 감 사 년 도 : 1991년도
○ 해당 위원회 : 기획경제 위원회
○ 소 관 : 기획관리실
○ 지 적 내 용 : 제2차 도건설종합계획수립 철저

• 제2차 도건설종합계획은 상위계획과 연계성을 유지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주민 숙원사업이 반영되도록 도의회에 보고후 계획확정
※ 계획의 성격
10년을 주기로 하는 법정계획으로서 도단위의 최상위계획으로 하위계획의 지침적 역할을 하며, 2001년을 목표로 함

○ 조치내용

- 입안단계에서 부터 제3차 국토계획과 연계 및 지역민의 숙원을 폭넓게 수용토록 조치
- 도의회의 검토과정을 거치는등 의회 의견수렴의 제도화
- 도와 시군간의 건설종합계획이 연계되도록 행·재정 지원 및 지도

< 事 例 2 >

○ 감 사 년 도 : 1992년도
○ 해당 위원회 : 내무 위원회
○ 소 관 : 기획관리실, 내무국
○ 지 적 내 용 : 도지사 포괄사업비 집행철저

- 포괄사업비 집행권한을 실국에 이양하여 권한과 책임 일치 및 지역간 균형배분
- '92년도 연기군에 지원된 2억원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조치 및 재발 방지대책 강구

○ 조치내용

- 실국에 집행권한 이양은 곤란하나 사업책정시 실국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운영방법 개선
- 연기군의 사업비 2억원은 '92. 12. 30일 보조 결정 취소 조치
- 사업비집행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재원대채 사용시 전액 반환조치 확행

〈事 例 3〉

○ 감 사 년 도 : 1993년도
○ 해당 위원회 : 교육사회 위원회
○ 소 관 : 가정복지국
○ 지 적 내 용 : 공원묘지 실수요자 피해대책 강구

• 공원묘지가 일부 외지인 투기대상이 되어 인근주민 실수요자에게는 공급 되지 않고 있는등 큰 피해를 끼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대책 강구
※ 공원묘지 현황
총 7개소 2,219,280㎡(57,662기분)중 '94. 1. 1일 현재 43%인 24,636기가 이장되었으나 잔여기 대부분이 예약되어 있음

○ 조치내용

- 충청남도묘지 관련규정 개정 및 법인공원묘지 관리지침을 수립 시달함('94. 1월)
  • 시군별 묘지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충분한 집단묘지 조성
  • 법인정관 일제정비 및 표준계약서 사용 조치
  • 공원묘원 사무감사요령 제정시달
- 법인공원묘지 지도감독 강화 및 집단묘지 증설추진

< 事 例 4 >

○ 감 사 년 도 : 1994년도
○ 해당 위원회 : 농림수산 위원회
○ 소 관 : 농정 · 건설도시국
○ 지 적 내 용 : 칠갑산 도립공원개발지 산림초과훼손 조치

- 청양군 정산면 신덕리 산39-4번지외 2건의 산림훼손이 허가지역과 훼손지역이 상이하고 면적이 초과됨
- 청양군 정산면 천장리 산6-1번지 농산물판매장조성 부지를 측량결과 6,198㎡로서 허가면적보다 초과훼손 되었으니 개발법에 의거 조치

○ 조치내용

- 신덕리 산39-4번지 담당공무원 2명 문책 실시
- 천장리 농산물 판매장 부지조성공사 시행자 입건 및 벌금 150만원
- 청양군수로 하여금 공원계획으로 확정된 내용에 의거 시공측량등을 재실시하고 다시 발생치 않도록 조치함

〈事 例 5〉

○ 감 사 년 도 : 1994년도
○ 해당 위원회 : 건설 위원회
○ 소 관 : 건설도시국
○ 지 적 내 용 : 노후 및 위험교량 안전관리 대책 강구

• 도내 지방도 노후교량 60개소중 개량완료 및 공사중인 3개소를 제외한 57개 교량이 전문기술인력 및 유지보수 예산부족으로 완벽한 안전관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방안강구

○ 조치내용

- 연차별 투자계획수립 : 총 46지구 34,222백만원
  ('94 - 6지구 7,800, '95 - 15지구 13,612, '96 - 25지구 12,810)
- 지방양여금 및 교통유통대책사업비의 위험교량에 우선투자 : 14지구 12,440백만원
- 300M이하 교량, 지방도 유지보수사업 병행추진
- 정밀안전진단 장비(교량 굴절차외 5종) 구입예산 486백만원
  '95 제1회 추경에 확보 추진

第6節 道政 및 敎育行政 質問

[質問現況]

(단위 : 회/명)

구분 \ 년도별	계	'91	'92	'93	'94	'95
회 수	18	3	6	4	4	1
인 원	82	13	17	24	22	6

[分野別 質問內譯]

(단위 : 건)

구분 \ 년도별	계	'91	'92	'93	'94	'95
계	446	67	75	139	119	46
기획관리	58	11	16	11	14	6
내 무	89	12	15	24	25	13
보사환경	38	9	2	14	12	1
가정복지	13	4	3	1	5	-
농 정	73	4	16	21	25	7
지역경제	35	10	7	15	2	1
건설도시	67	16	12	25	13	1
민방위소방	2	-	-	1	1	-
교육행정	60	-	2	23	20	15
기 타	11	1	2	4	2	2

第7節 請願 및 陳情等 民願處理

[請　　願]

(단위 : 건)

구 분	접 수	처리						
		수리				불수리		
		계	해 결	철 회	추진중	계	반 송	폐 기
계	11	6	4	2	-	5	5	-
'91	-	-	-	-	-	-	-	-
'92	2	2	1	1	-	-	-	-
'93	2	-	-	-	-	2	2	-
'94	7	4	3	1	-	3	3	-
'95	-	-	-	-	-	-	-	-

[陳情等 民願]

(단위 : 건)

구 분	접 수	처리						
		수리				불수리		
		계	해 결	불 가	추진중	계	반 송	폐 기
계	287	247	129	104	14	40	28	12
'91	44	37	17	19	1	7	4	3
'92	80	67	38	26	3	13	6	7
'93	68	64	29	33	2	4	3	1
'94	73	63	37	21	5	10	9	1
'95	22	16	8	5	3	6	6	

7-1 民願處理 主要事例

< 事 例 1 >

○ 민원요지

- 제　　목 : 공원지역 폐지 또는 용도지구 변경요구 청원
- 민 원 인 : 천안군 소원면 모항리 송순웅외 1,070인
- 제출년월일 : 1992. 12. 19
- 민 원 내 용

> 태안해안국립공원구역내 위치하여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모항어항지역을 "공원구역을 해제하거나 취락지구로 용도변경"하여 수산물 보관 · 가공 · 포장 · 공동판매시설등의 설치가 가능토록 요구

○ 처리경위

- '93. 2. 3 : 도의회에서 청원채택 의결
- '93. 2. 4 : 내무부장관에게 건의토록 도지사에게 이송
- '93. 3. 9 : 민원인에게 처리결과 통보

○ 처리결과

- 공원구역해제는 어렵고 자연환경지역내에서도 민원인이 요구하는 시설의 설치가 가능토록 법규 개정
- 대책지역 0.114㎡를 취락지구로 용도변경('94. 2. 23)

< 事 例 2 >

○ 민원요지

- 제　　목 : 신진지구 공유수면매립지 부두시설 재공사 청원
- 민 원 인 :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1268 조호선외 158인
- 제출년월일 : 1994. 5. 30
- 민 원 내 용

> 신진지구 공유수면매립 부두시설공사 구조물을 T자형으로 시공하여 정박된 선박이 파손·침몰되는 사례가 발생되어 조속한 시일내에 부두시설을 ㄱ자형으로 재 시공 조치 요구

○ 처리경위

> - '94. 6. 23~24 : 현장답사(의원 10, 공무원 8)
> - '94. 7. 12 : 건설위원회개최(본회의에 상정않기로 결정)
> - '94. 7. 18 : 민원인에게 처리결과 통보

○ 처리결과

> - 충청남도지사가 청원인의 요구사항을 전면수용하겠다고 약속
> • T자 옹벽을 → ㄱ자 옹벽으로 재시공하고 단계에 난간을 설치

< 事 例 3 >

○ 민원요지

- 제　　목 : 주유소 철치허가 재고 요망 진정
- 민 원 인 : 공주시 중동 233 조병진외 150인
- 제출년월일 : 1993. 2. 10
- 민 원 내 용

• 주유소 설치허가지인 우금치고개는 동학혁명의 유서깊은 유적지로서 다른 곳으로 허가하여 줄것과 • 위령탑 조성지역을 매입하여 사적지로 지정요망

○ 처리경위

• '93. 2. 10 : 공사중지 조치 • '93. 2. 26 : 민원인에게 통보

○ 처리결과

• '93. 11. 9 : 수허가자가 취하 • 위령탑 조성지역을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사적지 지정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

〈事 例 4〉

○ 민원요지

- 제　　목 : 직행버스 결행단속 요망진정
- 민 원 인 : 천안시 성정동 656-4 김충래
- 제출년월일 : 1994. 4. 7
- 민 원 내 용

> 천안시 → 조치원 → 유성 → 서대전간 직행버스가 손님이 없으면 수시로 결행되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으니 이에 대한 단속과 시정을 요구

○ 처리경위

> • '94. 4. 19 : 도 관계공무원이 현지조사 실시 4월중에 2개 회사 11대가 결행되고 있는 것을 적발

○ 처리결과

> • 결행 2개 회사에 각 500,000원씩 과징금 부과
> •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정상운행

第8節 常任委員會 現場活動

[活動現況]

(단위 : 회)

연도별	위원회별 회 기 별	계	기 획 경 제	내 무	교 육 사 회	농 림 수 산	건 설
계	소 계	57	13	5	13	15	11
	회 기 중	40	6	5	7	13	9
	비 회 기 중	17	7	-	6	2	2
'91	소 계	5	-	1	2	1	1
	회 기 중	4	-	1	1	1	1
	비 회 기 중	1	-	-	1	-	-
'92	소 계	12	3	1	3	2	3
	회 기 중	9	2	1	2	2	2
	비 회 기 중	3	1	-	1	-	1
'93	소 계	15	5	1	3	4	2
	회 기 중	11	2	1	2	4	2
	비 회 기 중	4	3	-	1	-	-
'94	소 계	22	4	2	4	7	5
	회 기 중	15	2	2	2	5	4
	비 회 기 중	7	2	-	2	2	1
'95	소 계	2	1	-	-	1	-
	회 기 중	1	-	-	-	1	-
	비 회 기 중	1	1	-	-	-	-

8-1 現地活動 主要事例

< 事 例 1 >

[活動槪要]

○ 제　　목 : 버스운행실태 현지답사
○ 시　　기 : '92. 4. 28 ~ 4. 30(3일간)
○ 인　　원 :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9명
○ 활동내용
- 대　상 : 천안시, 연기군, 금산군, 논산군, 청양군, 태안군(6개 지역)
- 교통편익 증진사항 및 벽지주민 불편사항
- 버스 운행실태 파악 및 주민의견 수렴 등

[活動結果 및 執行部 移送事項]

○ 시내버스의 운송사업지역을 관할행정구역에서 타도 및 시군까지 확대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토록 교통부장관에게 건의
○ 벽지버스 손실보상금 지급제도를 개선하여 운행기피 방지
○ 대전, 전북, 충남간 광역교통문제협의회 구성제의
○ 오 · 벽지 마을버스 운행에 따른 행 · 재정 지원 건의
○ 현지에서 기관, 업체 간담회 개최로 2개 버스 노선 신설

< 事 例 2 >

[活動概要]

○ 제　　목 : 도정현장 시찰
○ 시　　기 : '91. 11. 11 ~ 11. 12(2일간)
○ 인　　원 : 내무위원회 소속 13명
○ 활동내용
- 대　상 : 10개소(문화유적지 7, 체육시설 2, 소방서 1)
- 도정현장실태와 문제점 및 애로사항 파악
- 문제사항에 대한 대책 및 의견제시등

[活動結果 및 執行部 移送事項]

○ 코오롱골프장내 농산물판매장 형식적 설치보완 및 주변환경오염 방지시설 철저 요구

○ 천안소방서의 장비부족, 노후와 인력의 부족실감

○ 천안종합체육시설계획에 있어 지가상승 억제대책과 사업비 412억 (도비 120억)지원 건의

○ 문화유적지 개발은 원형의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도록 유념

< 事 例 3 >

[活動概要]

○ 제　　목 : 시군통합지역 현지답사
○ 시　　기 : '94. 10. 19 ~ 10. 21(3일간)
○ 인　　원 : 내무위원회 소속 11명
○ 활동내용
- 5개 지역 시군통합 추진현황 파악
- 통합과 관련한 주민여론 청취
- 통합에 따른 제반 문제점 및 애로사항 파악

[活動結果 및 執行部 移送事項]

○ 세원누락 및 관변단체의 예산낭비사례 예방

○ 신분보장이 안되는 일용인부의 인력문제 각별배려

○ 시의 농촌동 지역과 군지역간의 차별 혜택으로 인한 민원해소 대책 강구

○ 통합시 개청행사를 간소화하고 행사비용 일부를 도에서 지원

○ 유관기관 · 단체 및 자생단체의 통합에 행정기관 개입금지

〈事 例 4〉

[活動概要]

○ 제　　목 : 금강수질조사 및 민원사업장 답사
○ 시　　기 : '93. 4. 27 ~ 4. 28(2일간)
○ 인　　원 : 교육위원회 소속 9명
○ 활동내용
- 금강유입 주요지천 및 수질조사 (8개 하천)
- 금강유역의 배출업소 시설 가동상황 점검
- 보령군 공설공원묘지 시설공사 현장답사
- 홍성 화장장 답사

[活動結果 및 執行部 移送事項]

○ 조치원, 공주, 부여, 논산등 도시생활하수 유입을 줄이기 위해 하수 및 분뇨종말처리장 단속시공 및 완료촉구

○ 금강유역내 오 ·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단속 · 지도 촉구

○ 보령공설공원묘지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은 사전 지도 권고

○ 홍성화장장은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해결하여 주고 조속 정상가동 되도록 적극 지원 촉구

< 事 例 5 >

[活動槪要]

○ 제　　목 : 서해안지역 폭설 폭풍 및 정전피해 시찰
○ 시　　기 : '94. 2. 17 (1일간)
○ 인　　원 :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9명
○ 활동내용 : 피해원인규명과 재해지원 및 복구대책 강구
- 지　역 : 부여, 서천, 보령 홍성, 태안등
- 피해액 : 총7,290백만원(폭풍 3,945, 정전 3,345)
  · 농산분야 2,240백만원(1,079호)
  · 축산분야　358백만원(　375호)
  · 수산분야 4,692백만원(1,530호)

[活動結果 및 執行部 移送事項]

○ '94. 2. 28 재해 농어가 특별지원 건의(경제기획원, 내무부, 농림수산부, 수산청, 한국전력공사)
- 정확하고 빠짐없는 피해조사 실시
- 농수산물 피해지원기준인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을 현안개정 또는 별도의 제도적 조치
- 농어민의 안전생산활동 보장을 위해 "농어업 재해보험제도" 마련 시행
- 한전의 진솔한 원인규명과 피해보상 조치

○ '94. 4. 28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 개정건의(국회, 상공자원부, 한국전력공사)

< 事 例 6 >

[活動概要]

○ 제　　목 : 폭염과 무강우 피해지 시찰
○ 시　　기 : '94. 7. 25 ~ 7. 26(2일간)
○ 인　　원 :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13명
○ 활동내용 : 가두리 양식장 피해현황 및 원인답사
- 서산군 부석면 간월도, 창리, 태안군 남면 법인어촌계양식장 우럭의 폐사실태
- 서산A, B지구 담수호의 갑문배수로 인한 피해조사등

[活動結果 및 執行部 移送事項]

○ 양식장 우럭의 폐사원인을 수산연구소에 의뢰 조치
○ 폐사체 조기수거 매설, 산소공급, 약물소독 조치당부
○ 서해수산연구소의 태안군 남면새우 폐사원인규명에 따라 대책강구
○ 가두리 양식장의 어종피해에 대하여도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조치 강구
○ 서산시 읍내동 부춘산 옥녀봉에서 기우제를 실시

< 事 例 7 >

[活動概要]

○ 제　　목 : 노후 및 위험교량 안전전검
○ 시　　기 : '94. 11. 1 ~ 11. 2(2일간)
○ 인　　원 : 건설위원회 소속 9명
○ 활동내용 : 구조물 손양부분 재확인 및 진동상태 시찰
- 대　상 : 도주관 1차 점검결과 위험지방도 교량 5개 시군소재 11개소
- 교량위험발생의 근본원인규명 및 대책강구

[活動結果 및 執行部 移送事項]

○ 부실시공 추방을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 조기정착

○ 교량관리에 있어 전문기술을 갖춘 관리요원을 확보하고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뒷바침에 만전

○ 등급화 되어 있는 도로(교량)의 시공구조와 화물수송 체계의 일원화방안 강구 및 중앙부처 건의

○ 도로나 교량의 설계시공시 1급(고속)도로 수준으로 시공

第9節 特別委員會 構成運營

□ 백제문화권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 구 성 : 92년 10월 6일 (7명)

○ 주요활동상황

- 백제문화권종합개발관련건의서 8개부처 발송('92. 11. 13)
- 신라문화권개발 및 문화재관리실태 시찰('94. 2. 17)
- 일본의 백제문화유적지 탐방('94. 3. 23)

□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

○ 구 성 : 93년 10월 20일 (12명)

○ 주요활동상황

- 국비지원 및 문제해결을 위하여 13개 중앙부처 방문 건의
- 서해안개발사업지구 현장시찰
- 서해안개발사업추진상황 보고청취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 구 성 : 93년 9월 16일 (9명)

○ 주요활동상황

- 도 및 교육청조례 170건 일제점검 발췌
- 특별위원회 회의 6회 개최하여 조례 개정 29건 폐지 2건

□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 구 성 : 92년 12월 4일 (20명)

○ 주요활동상황

- 충청남도청 이전추진기획단 설치조례제정('93. 6. 14)
- 도민여론조사 실시('93. 10. 10 용역)
- 입지기준설정 및 후보지선정을 위한 용역추진

第10節 議員研鑽會

10-1 國內 研鑽會

○ 실시회수 : 7회('91-1, '92-2, '93-2, '94-2)
○ 참여인원 : 498명(의원 328, 직원 162, 기타 8)
○ 실시방법 : 사계전문가 및 대학교수 초빙 강의
○ 주요내용
- 의정운영실제 및 기법
- 지방자치발전방향 및 의원 역할
- 세계화시대의 지역개발 방향 등

10-2 國外 研修

○ 실시회수 : 5회('92-1, '93-2, '94-2)
○ 참여인원 : 112명(의원 95, 직원 13, 기타 4)
○ 소요예산 : 282,900천원
○ 방문국(15개국)
- 유 럽 : 프랑스,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그리스 오스트리아, 영국, 노르웨이
- 아·대양주 : 호주, 뉴질랜드, 싱가폴
- 미 주 : 미국, 캐나다

第11節 歷代 會議錄 復元 發刊

[背 景]

○ 단절된 도의회 역대회의록을 복간하여 의정사 완전복원
○ 충청남도의회 의정사를 재조명하여 발전적 의정활동 자료활용

□ 復元槪要

○ 총 복원대상 : 53회분(제1대 ~ 3대 회의록)
○ 추 진 기 간 : '94. 1. 1 ~ '95. 12. 31(2년간)
○ 사 업 비 : 37백만원(1차 17백만원, 2차 20백만원)

□ '94 推進現況

○ '94(1차)복간 : 총23회분(1대 21회, 3대 2회), 43% 완료
○ 복 간 부 수 : 150질(1질 5권 4×6배판)
○ 배 부 처 : 전·현직 도의원, 대학도서관, 시·군, 유관기관등
※ 잔 여 분 : 총30회분(자료 미확보)

□ '95 推進計劃

○ 2차 복간대상 : 총30회분(1대 1회, 2대 28회, 3대 1회분)
○ 추 진 기 간 : '95. 3 ~ '95. 12
○ 추 진 방 법 : 잔여회의록 자료모집 완전복원
• 생존 전직의원 추적 자료수집(현지방문, 서한문 발송)
• 행정홍보 및 지역언론 매체활용 자료공모(지역신문, TV)
• 복간 완료후 마이크로필름 수록 영구보존

向後 發展 課題

1. 회기운영 개선

○ 회기를 실정에 맞도록 신축적, 자율적으로 결정
○ 회기 및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에서 초안작성 및 결정

2. 의원입안 능력제고로 의원발의 입법활동 강화

○ 주민의 권익보호, 지역개발 및 경제활성화,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조례제정 등

3.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제도 보완

○ 질문자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여 선정
○ 질문자 질문순서를 상임위원회 직제순 윤번제로 실시

4. 청원 및 진정등 민원처리 강화

○ 민원사항을 최대한 경청하여 준다는 차원에서 해당지역구 의원과 함께 직접 현지답사 처리

5. 특별위원회의 상설화 운영 지양

○ 당면 시기성 있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처리결과후 바로 해산

6. 의원연찬활동 방법 개선

○ 해외연수를 축소하고 실질적인 국내연수 확대

附　　錄

第1節　忠淸南道 現況

第2節　第1代議員 ~ 第3代議員 尊影

第1節 忠淸南道 現況

1. 沿 革

연 대	연 혁
1896. 8. 4	○ 전국을 8도제에서 13도제로 개편 충청남도 설치
1932. 10. 1	○ 도청을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
1938. 10. 1	○ 논산군 논산면, 서천군 장항면을 읍 승격 설치 (1부 14군 6읍 167면)
1940. 11. 1	○ 예산군 예산면을 읍 승격 설치(1부 14군 7읍 165면)
1941. 10. 1	○ 아산군 온양면, 홍성군 홍성면을 읍 승격 설치 (1부 14군 9읍 163면)
1960. 1. 1	○ 부여군 부여면을 읍 승격 설치(1시 14군 12읍 16면)
1963. 1. 1	○ 전북 금산군을 충남에 편입 ○ 논산군 연무면을 읍 승격 설치 ○ 천안군 천안읍을 천안시로 승격설치(2시 15군 15읍 164면)
1973. 7. 1	○ 예산군 삽교면, 당진군 합덕면, 서산군 태안면, 천원군 성환면을 읍 승격 설치
1979. 5. 1	○ 서천군 서천면, 청양군 청양면을 읍 승격 설치 (2시 2구 15군 23읍 156면)
1980. 12. 1	○ 서산군 안면면을 읍 승격설치(2시 2구 15군 24읍 155면)
1985. 10. 1	○ 천안군 성거면을 읍 승격설치(2시 2구 15군 24읍 153면)
1986. 1. 1	○ 공주, 대천, 온양읍을 시로 승격 설치
1989. 1. 1	○ 대전시와 대덕군을 대전직할시로 승격 분리 ○ 서산읍을 시로 승격 설치 ○ 서산군에서 분리 태안군 설치
1990. 2. 1	○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설치
1995. 1. 1	○ 공주시 · 군, 대천시 · 보령군, 온양시 · 아산군, 서산시 · 군등 8시군을 4개 시로 통합(5시, 11군)
1995. 5. 10	○ 천안시 · 군을 천안시로 통합(5시, 10군)
1996. 3. 1	○ 논산군을 시로 승격(6시 9군 22읍 147면 42동)

2. 自然與件

가. 位 置

남한의 서부에 위치하여 북쪽은 남북부 일부가 경기도에 접하고 동북부 일부는 경기도의 평택시, 안성군과 접하고 있으며, 동쪽은 충청북도의 진천 · 청원 · 옥천의 각 군과 남쪽은 전라북도의 완주 · 익산 · 옥구의 각 군과 각각 접경하고 서쪽은 황해에 면하고 있으며, 지리적 위치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도상으로는 북위 35° 58′에서 37° 03′간을 차지하는 약 2°에 걸치고 경도상으로는 동경 125° 32′에서 127° 38′간을 차지하여 약 2°를 차지하나 본 도의 대부분이 역시동경 126° 30′에서 127° 30′의 약 1°간에 포함됨.

서울 동부를 통과하는 동경 127° 자오선(子午線)은 대략 본도의 중앙부를 관통하고, 남한의 표준시 자오선 127° 30′선은 대전광역시 동쪽 근방을 지나고 있으며, 도청소재지인 대전광역시는 북위 36° 16′ 동경(東經) 127° 16′ 지점에 자리 잡고 대전 광역시와 위도(緯度)가 비슷한 지역은 우리도의 부여, 경상북도의 의성 등이고, 일본의 송본(松本), 중국본토의 청도와 란주, 중동지방의 알레프, 유럽남단의 지부랄타르 등도 대체로 대전광역시와 비슷한 위도상에 자리잡고 있음.

<충남의 위치>

소 재 지	단	경도와 위도의 극점		연 장 거 리
		지 명	극 점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번지	동단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북위 136° 01′ 47″	동서간 187.7㎞
			동경 127° 38′ 31″	
	서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북위 136° 36′ 37″	남북간 120.8㎞
			동경 125° 32′ 21″	
	남단	금산군 남일면 신동리	북위 35° 58′ 30″	
			동경 127° 29′ 15″	
	북단	당진군 석문면 난지리	북위 37° 03′ 44″	
			동경 126° 25′ 46″	

나. 地 形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전국 어느 지역으로든 갈 수 있는 교통망을 갖추고 있으며, 차령산맥을 중심으로 한 동고서저의 지형지세로서 해발100m 이하의 평야와 구릉지가 전체 면적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높은 산으로는 서대산(904m), 계룡산(845m), 대둔산(878m) 등이 있고, 큰 하천으로는 삽교천, 곡교천, 무한천 등이 있으며, 금강주변과 하천중심으로 평야가 잘 발달되어 있고 해안은 전형적인 리아스식 해안으로 발달되어 있고, 길이는 953㎞이고,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여 가로림만 · 천수만등 만이 잘 발달되어 있음.

다. 氣 候

□ 氣候의 變動

대체로 온화하나 전체적으로는 대륙성 기후이며, 특히 겨울에는 북서풍을 막을 만한 지형적 장애물이 적어 같은 위도상의 동해안보다 추우며, 서북부 해안지대는 적설량이 많은 것이 특징임.

□ 氣 溫

우리도는 대륙성 기후로 1월 평균 기온이 도서지방이 -1℃, 내륙지방은 -3℃이며, 8월 평균기온은 도서지방이 24℃, 내륙지방이 26℃로서, 도서 지방과 내륙지방의 기온의 차는 2℃이고 1년 쾌청일수는 60~70일이며, 북으로 갈수록 많아지며, 일조일수는 58~60%로 해안지방이 200~220일이며, 내륙지방은 180~200일임.

□ 降水量

강우량도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서해안의 도서지방 (연 강우량 800mm)을 제외하면 년간 1,150mm~1,350mm로서 전국적으로 볼때 많은 편이고, 그중에서도 금강유역과 태안반도 지방이 가장 많고, 1년 강우 일수는 해안지방이 약90일이며, 내륙지방이 약 110일인데 7월에 많고 1월에 가장 적음.

3. 人口 및 行政區域

충청남도는 상고시대에는 마한땅이었으나 삼국시대 백제의 중심지로써 왕도가 웅진(공주)과 사비(부여)에서 185년간 찬란한 문화의 전성기를 미루었으며 통일신라시대에는 구주중 웅주(공주)에 속하고 후삼국시대에는 후백제, 고려시대에는 하남도(河南道)라 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태종때에 충청도(忠淸道)라 불리다가 고종33년 1896년 8월 4일 13도제 실시에 따라 37개 군을 둔 「충청남도」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후, 1932년 10월 도청 소재지를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하였고, 1963년 1월 전북 금산군이 충남에 편입되었고, 천안읍이 시로 승격, 1986년 1월 공주 · 대천 · 온양읍이 시로 승격되었으며, 1989년 1월에는 대전시와 대덕군이 통합하여 대전직할시로 승격 · 분리되고 서산군에서 서산시와 태안군이 분리 승격됨으로써 모두 5시 15군을 두게 되었다.

1995년 1월에는 공주 · 보령 · 아산 · 서산시가 5월에는 천안시가 기존의 승격 · 분리되었던 시군을 다시 통합하여 도농 복합형태의 통합시로 발족하였고 1996년에 3월에는 논산군이 시로 승격되어 현재에 이르면서 모두 6시 9군을 두고 있다.

또한 인구는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 · 분리되기 인전에는 303만명이었으나 분리직후 203만명에서 1994년말 184만명까지 감소추세에 있었지만 1995년부터 다시 증가되어 1999년 말에는 192만명으로 충남의 서해안 개발과 공업화시책등의 추진에 따라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연도별 도내인구 및 세대현황

연도별	인 구 (명)			세대수 (세 대)	비 고
	계	남	여		
92	1,872,095	938,873	933,222	511,843	
93	1,875,911	932,962	924,949	524,727	
94	1,844,692	926,294	918,398	533,852	
95	1,855,346	931,357	923,989	552,450	
96	1,878,130	943,668	934,462	575,236	
97	1,903,171	956,875	946,296	600,344	
98	1,919,308	965,689	953,619	614,309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99. 12. 31 현재)

구분 / 시군	읍·면·동			시·면출	법정동리		행정리통		자연부락	반	면적 (㎢)	가구 (세대)	인구 (명)
	읍	면	동		동	리	리	통					
계	22	147	37	2	108	2,113	4,380	822	10,136	22,358	8,585.82	626,723	1,926,243 (6,913)
천안시	2	10	13		30	148	377	384	540	3,568	636.48	132,292	406,052
공주시	1	10	6		24	185	279	110	966	1,925	940.71	43,872	137,104
보령시	1	10	5	2	10	101	234	97	746	1,130	567.77	38,971	120,889
아산시	1	10	6		19	143	331	105	593	1,831	542.30	60,712	181,786
서산시	1	9	5		14	125	257	78	658	1,441	739.16	48,114	151,021
논산시 (계 룡)	2	12 (1)	2		11	189 (15)	469 (54)	48	1,100 (67)	2,539 (319)	615.54 (60.68)	56,084 (8,550)	171,600 (26,809)
금산군	1	9				106	249		474	1,112	575.98	21,870	65,495
연기군	1	7				106	201		305	941	361.45	26,544	81,284
부여군	1	15				191	428		858	1,657	624.85	31,474	95,213
서천군	2	11				172	315		737	1,272	357.59	26,415	78,073
청양군	1	9				115	182		501	764	479.63	13,995	42,154
홍성군	2	9				141	333		622	939	443.65	31,148	97,472
예산군	2	10				177	296		790	1,172	543.14	32,851	103,985
태안군	2	6				65	179		585	792	503.53	22,561	69,194
당진군	2	10				149	250		661	1,275	654.07	39,820	124,921

※ 인구 "계"란의 ( )내서는 외국인 수

4. '99年度 財政規模

〈 총 규 모 〉 ——— 3조 7,001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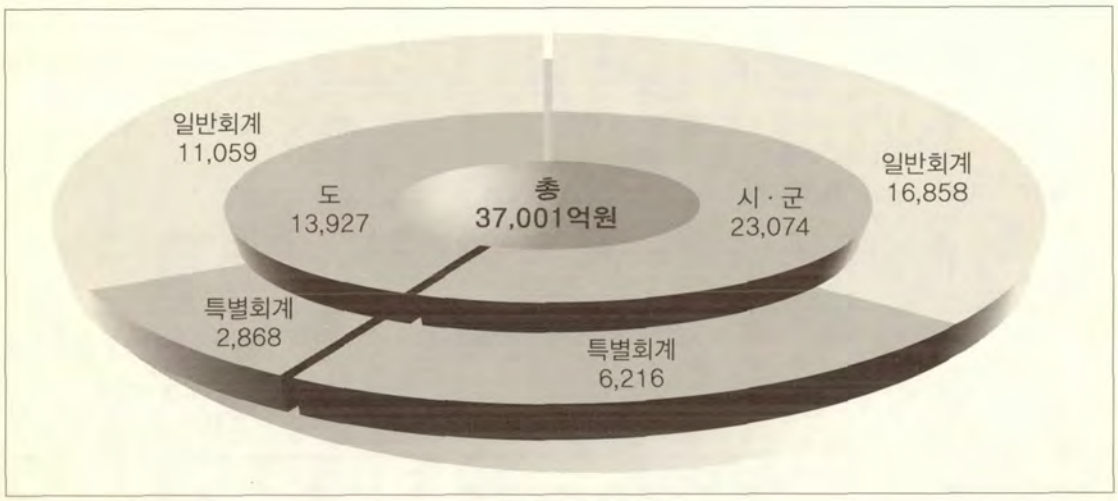

〈 도의 일반회계 예산 〉 ——— 1조 1,059억원

세 입

〈 자체수입 〉	2,977억원	(27%)
• 지 방 세 :	2,200억원	(20%)
• 세 외 수 입 :	777억원	(7%)
〈 의존수입 〉	7,857억원	(71%)
• 지방교부세 :	1,910억원	(17%)
• 지방양여금 :	1,058억원	(10%)
• 국고보조금 :	4,889억원	(44%)
〈 지 방 채 〉	225억원	

세 출

〈 성 질 별 〉		
• 경 상 예 산 :	1,193억원	(11%)
• 사 업 예 산 :	8,803억원	(80%)
• 기 타 :	1,063억원	(9%)
〈 기 능 별 〉		
• 일반행정비 :	835억원	(7%)
• 사회개발비 :	3,195억원	(29%)
• 경제개발비 :	5,641억원	(51%)
• 민방 위비 :	326억원	(3%)
• 기 타 :	1,062억원	(10%)

※ 재정자립도 : 道 26.9%, 市 평균 37.3%, 郡 평균 24.6%

歷 代 道 知 事 名 單

역 대	성 명	재 임 기 간
1	이 영 진 (李 寧 鎭)	'48. 10. 18 ~ '51. 12. 17 (3년 3월)
2	진 헌 식 (陣 憲 植)	'51. 12. 17 ~ '52. 8. 29 (9월)
3	성 낙 서 (成 樂 緖)	'52. 9. 9 ~ '54. 9. 27 (2년 1월)
4	이 기 세 (李 琦 世)	'54. 9. 27 ~ '56. 9. 24 (2년)
5	민 병 기 (閔 丙 棋)	'56. 9. 24 ~ '58. 6. 17 (1년 10월)
6	김 학 응 (金 鶴 應)	'58. 7. 29 ~ '60. 4. 30 (1년 9월)
7	김 홍 식 (金 弘 植)	'60. 5. 2 ~ '60. 10. 7 (6월)
8	김 양 현 (金 亮 鉉)	'60. 10. 7 ~ '60. 12. 3 (2월)
9	이 기 세 (李 琦 世)	'61. 1. 5 ~ '61. 5. 24 (4월)
10	윤 태 호 (尹 泰 皓)	'61. 5. 24 ~ '63. 12. 17 (2년 7월)
11	노 명 우 (盧 明 愚)	'63. 12. 19 ~ '66. 3. 19 (2년 3월)
12	김 의 창 (金 義 昌)	'66. 3. 19 ~ '67. 10. 10 (1년 7월)
13	김 윤 환 (金 玧 煥)	'67. 10. 10 ~ '71. 6. 12 (3년 8월)
14	민 유 동 (閔 有 東)	'71. 6. 12 ~ '73. 10. 20 (2년 4월)
15	정 석 모 (鄭 石 謨)	'73. 10. 20 ~ '73. 12. 10 (2월)
16	김 수 학 (金 壽 鶴)	'73. 12. 10 ~ '74. 9. 2 (9월)
17	서 정 화 (徐 廷 和)	'74. 9. 2 ~ '76. 1. 12 (1년 4월)
18	정 석 모 (鄭 石 謨)	'76. 1. 12 ~ '78. 9. 11 (2년 8월)
19	손 수 익 (孫 守 益)	'78. 9. 11 ~ '80. 4. 27 (1년 7월)
20	이 계 완 (李 啓 完)	'80. 4. 28 ~ '82. 1. 4 (1년 8월)
21	유 흥 수 (柳 興 洙)	'82. 1. 5 ~ '84. 3. 27 (2년 3월)
22	안 응 모 (安 應 模)	'84. 3. 28 ~ '87. 1. 4 (2년 9월)
23	한 양 수 (韓 陽 洙)	'87. 1. 5 ~ '88. 5. 19 (1년 4월)
24	심 대 평 (沈 大 平)	'88. 5. 20 ~ '90. 12. 27 (2년 7월)
25	한 청 수 (韓 淸 洙)	'90. 12. 28 ~ '92. 1. 8 (1년 1월)
26	이 종 국 (李 鐘 國)	'92. 1. 9 ~ '92. 9. 17 (8월)
27	홍 선 기 (洪 善 基)	'92. 9. 18 ~ '93. 3. 3 (6월)
28	이 동 우 (李 東 雨)	'93. 3. 4 ~ '93. 12. 27 (7월)
29	박 태 권 (朴 泰 權)	'93. 12. 28 ~ '94. 4. 15 (4월)
30	박 중 배 (朴 重 培)	'94. 4. 16 ~ '95. 3. 29 (11월)
31	김 한 곤 (金 漢 坤)	'95. 3. 30 ~ '95. 6. 30 (3월)
32	심 대 평 (沈 大 平)	'95. 7. 1 ~ '98. 6. 30 (3년)
33	심 대 평 (沈 大 平)	'98. 7. 1 ~ 현재

충청남도 도민헌장

우리충청남도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인심이 온후하여 살기좋은 고장으로 꼽혀 왔다.

찬란한 백제문화와 충절의 정신이 깃든 충청남도를 더욱 알차게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 주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1. 우리는 충청남도 도민임을 긍지로 여긴다.

1. 우리는 성실과 근면 봉사를 생활화 한다.

1. 우리는 지역 발전을 위하여 서로 돕고 함께 일한다.

1. 우리는 문화 유산과 자연 환경 보호에 앞장선다.

1. 우리는 창조정신으로 세계와 미래를 개척해 나아간다.

충남의 5大 정신

충남정신을 아는 것은 우리가 지녀야 할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 되새겨 보는 일과 같습니다.

조상의 사상속에 배어 내려오는 충남정신을 이해하고 그 개념을 마음속으로 체득할 때 비로소 우리의 정신이념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충 효 정 신
1. 절 의 정 신
1. 선 비 정 신
1. 예 의 정 신
1. 개 척 정 신

충청남도 상징



심벌마크

'충남'의 한글 첫글자인 ㅊ·ㄴ과 영문의 이니셜 C·N을 조합하여 시각화하였으며, 자연·인간·미래가 함께하는 진취적인 충남과 21세기를 향해 도약하는 충남인을 상징



금강과 서해바다의 풍요 상징



계룡산과 깨끗한 자연 상징



21세기를 창조하는 인간 상징



나무 : 능수버들

은유 자적하며 편협하지 않고 선을 미덕으로 여기는 격조높은 충남인의 성격표현



꽃 : 국 화

그윽한 향내음과 꾸밈새 없는 소박한 모습, 강인한 생명력은 지조와 고고한 성품을 자랑으로 여기는 충남인의 표상



새 : 원앙새

기품있고 화목한 금실좋은 부부애는 충남인의 장점인 화합을 상징

충청남도 마스코트

귀도리



<해설>

거북이를 친근한 이미지로 형상화하여 도민과의 관계를 보다 친숙하게 연결하여 주는 역할로 대민고지사항, 계몽활동, 도의 사업내용등 메시지 전달에 있어 보조적 열할로 도민에 대한 행정기관의 친근하고 따뜻한 봉사 행정의 이미지를 전달

– 옛문헌에 의하면 거북이는 거북 · 구복(居福) · 남성(南星)이라고 하고 현의독우(玄衣督郵) · 현령성모(玄靈聖母) 등으로도 불리워지며, 또한 용이나 봉황과 함께 우리나라 민화에 등장하여 우리민족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 특히, 십장생중의 하나로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설화에는 장수와 다산을 의미하는 상서로운 동물로 인식되어 있으며 은근과 끈기의 상징으로 민족성을 대표해오고 있다.

응용프로그램



활기찬 충남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문화, 축하행사



알려드립니다

충청남도 관광CIP



넉넉해진 나 자신

느낌여행 충남

<해설>

충청남도 관광 CIP의 심볼마크는 느낌표를 통해 충정남도 관광에 대한 감탄이나 만족감을 상징하고 있으며 두 개의 느낌표가 조합되어 하트를 이루면서 충청남도의 중요성 및 애정등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부해안 관광권과 중부내륙관광권을 두 개의 느낌표가 결합하여 충청남도 관광산업의 잠재적 가치 및 발전가능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전체적인 조형에 동감 및 입체감을 부여함으로써 신라이프 스타일을 창출하는 감성계층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또한 로고 및 스테이트먼트는 충청남도 관광의 차별성, 즉 단순관광이 아닌 오래 기억되는 의미있는 여행의 추구를 문자적인 요소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응용프로그램



백제마주보기



테마콘서트



씨프드페스티벌



엔조이레포츠

第2節 歷代議員尊影

1. 初代 忠淸南道議會議員 尊影



2. 第2代 忠淸南道議會議員 尊影



3. 第3代 忠淸南道議會議員 尊影



第4代 議會

議 政 白 書

2000년 10월 일 인쇄
2000년 10월 일 발행

발 행 : 충 청 남 도 의 회
편 집 : 충청남도 의회사무처
(301-763)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
Tel. (042) 255-7762
디자인 · 인쇄 : 대한정판인쇄사
Tel. (041) 565-5000

CHUNG CHEONG NAM – DO
AM009022